인도

정보수정일자: 2014. 08.25

작성처: 뉴델리 무역관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재,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 엄격하게 금지되며 위반 시에는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kotra

http://www.kotra.or.kr
http://www.globalwindow.org

◀ 목 차 ▶

Ⅰ. 국가일반

국가개요 / 1
정치사회동향 / 5
한국과의 주요이슈 / 18

Ⅱ. 경제

경제지표 DB/25
경제동향 및 전망 / 26
주요산업동향 / 34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 76

Ⅲ. 무역

1. 교역동향
수출입동향 / 88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 92

2. 무역관련 주요제도 및 절차
수입규제제도 / 96
대한수입규제동향 / 110
관세제도 / 115
주요인증제도 / 125
지식재산권 / 131
통관절차 및 운송 / 135

3. 무역환경
수출유망품목/140
시장특성/146
바이어발굴/152
상관습 및 거래 시 유의사항/156
주요 전시회 개최일정/159
수출 성공실패사례/167
수출 시 애로사항/169

Ⅳ.투자

1. 투자환경 및 동향

투자환경 / 171
투자인센티브제도/193
외국인 투자동향 / 195
한국기업 투자동향 / 209
한국기업 진출현황/ 214
투자진출 성공실패사례/219

2. 외국인투자 유치제도

주요 투자법 내용 / 227
투자방식 / 248
투자진출형태 / 250
진출형태별 절차 / 261
투자법인철수 및 청산/ 295
투자입지여건/ 298
투자진출 시 애로사항/ 341

3. 사업관리

노무관리제도 / 348
조세제도 / 365
금융제도 / 382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 387

V. Business 참고정보

물가정보 / 396
취업유망분야 및 유의사항/ 398
비즈니스 에티켓/ 402
이주정착 가이드/ 410
생활여건/ 417
취항정보/ 418
출입국 및 비자제도/ 430
관광/호텔/식당/통역/ 434
출장 시 유의사항 및 참고사항/ 450
유관기관 웹사이트 / 454
KOTRA 무역관 안내/ 457

Srinagar
Chandigam
Simla
kotra
New Delhi
Delhi
(-3:30)
Jaipur
Lucknow
Gangtok
Itanagar
Kohima
Nagaland
Sillong
Meghalaya
Imphal
Tripura
Aizawl
Gandhinagar
Bhopal
Calcutta
Bhubaneshwar
Silvassa
Mumbai
kotra
Hyderabad
Arabian
Sea
BAY of Bengal
Panaji
kotra
kotra
Chennai
(Madras)
Bangalore
Pondicherry
Trivandrum
Laccadive Sea
INDIA

Ⅰ. 국가일반

1. 국가개요

가. 일반 사항

국 명	인도(India)
위 치	서남아시아(동경 68.7-97.25도, 북위8.4-37.6도)
면 적	3,287,260㎢(한반도의 15배, 남한 면적의 33배)
기 후	열대 몬순, 온대 기후, 고산 기후(북부) 등 다양
수 도	뉴델리(New Delhi)
인 구	12억 5,970만 명 (2014년 기준)
주요도시	New Delhi(1675만 명), Mumbai(1383만 명), Kolkata(514만 명), Chennai(462만 명), Bangalore(544만 명), Hyderabad(407만)등
민 족	인도 아리안족(72%), 드라비다족(25%), 몽골족 및 기타(3%)
언 어	힌디어, 영어 외 21개의 공용어
종 교	힌두교(80.5%), 회교(13.4%), 기독교(2.3%), 시크교(1.9%), 불교(0.8%), 자이나교(0.4%)
건국(독립)일	1947년 8월 15일 (영국으로부터 독립)
정부형태	내각책임제
총 리 (실권자)	○ 국가 원수(대통령): 프라납 무커지(Shri Pranab Mukherjee) ○ 취임일 2012 년 7 월 25 일 (5 년 임기)
	○ 총리: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 취임일 2014 년 5 월 26 일 (5 년 임기) ○ 소속 정당: 인도인민당 (Bharatiya Janata Party)

자료: Census of India, Ministry of Home Affairs, CIA World Fact book, 인도통계청

나. 경제지표

GDP	US$ 4,672 억 (2014 1월-3월)
실질경제성장률	5.4%(2014년) 4.9% (2013-14회계연도)
1인당 GDP	US$ 1,492 (2012-13회계연도) 명목GDP/인구 (10113281 crores) 12-13년 (11355073 crores) 13-14년
실업률	3.8% (2014년 예상치, ILO)
물가 상승률	도매물가상승률(WPI): 8.26% (2012-13회계연도), 6.01% (2014.5월 기준 자료이나 2013년 5월의 WPI와 비교하였음) 소비자물가상승률(CPI): 7.97%(2014년) 8.28% (2014년 5월 기준)
화폐 단위	Rupee, Paise
환율	US$ 1= 54.45(2012-13회계연도 평균) US$ 1=60.80(2014년 1.1-6.25 평균) US$ 1= 61.87(2013.12.24)
외채	US$ 4,259억 (2013-14 3분기 기준)
외환보유고	US$ 3,126억 (2014년 5월 기준)
산업구조	농업 및 어업(13.9%), 광업(1.9%), 제조업(14.9%), 전기·에너지(1.9%), 건설(7.4%), 금융, 부동산 및 기타(20.6%), 무역, 호텔, 교통, 통신 (26.4.), 기타 서비스(12.9%) (2013-14회계연도)
교역규모	○ 2014년도(1-6월) - US$ 3,135억(수출), US$ 4,505억(수입), 무역적자 US$ 1,370억 ○ 2013년도 - US$ 3,000억(수출), US$ 4,907억(수입), 무역적자 US$ 1,907억 ○ 2012년도 - US$ 2,973억(수출), US$ 4,904억(수입), 무역적자 US$ 1,931억 ○ 2011년도 - US$ 3,071억(수출), US$ 4,651억(수입), 무역적자 US$ 1,580억 ○ 2010년도 - US$ 2,229억(수출), US$ 3,508억(수입), 무역적자 US$ 1,279억
교역품	○ 주요 수출품 - 자동차 제품, 철강판, 합성수지, 석유제품, 합성고무, 석유화학합성원료, 기타기계류, 기타석유화확제품, 무선통신기기, 금형 등 ○ 주요 수입품 - 석유제품, 식물성물질, 합금철선철및고철, 알루미늄, 천연 섬유사, 기초유분, 정밀화학원료, 농약및의약품, 곡실류, 아연제품 등

주: 인도의 회계 연도는 전년도 4월부터 금년 3월까지로 2011-12년은 2011년 4월부터 2012년 3월까지를 의미함. / 입수 가능 최신 자료 기준으로 작성함.
자료: 인도중앙은행(RBI), 인도통계청, 상공부, 재무부, 인도경제모니터링센터(CMIE)

다. 한-인 관계

	체결일	체결내용
체결협정	○ 1974.8	무역협정
	○ 1974.8	문화협정
	○ 1976.3	과학기술협정
	○ 1985.7	이중과세방지협정
	○ 1992.3	항공협정
	○ 1993.9	관광협력협정
	○ 1996.5	투자보장협정
	○ 2004.10	형사사법공조협정/범죄인인도조약
	○ 2005.8	외교관 및 관용여권사증면제협정
	○ 2005.9	한-인도 방산군수협력 양해각서
	○ 2006.2	세관협력협정
	○ 2006.2	과학기술협정
	○ 2009.08조인,2010.1발효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서명
	○ 2010.10 체결, 2011.11발효	한-인도 사회보장협정
	○ 2011.7	한-인도 민간원자력협력협정
	○ 2011.11	한-인도 업무협력양해각서(MOU)체결
	○ 2011.7체결, 2011.10발효	한-인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정
	○ 2012.3	한-인도 사증절차간소화협정
	○ 2014.1	한-인도 정상회담
교역규모	○ 2010년 - 114억3460만 달러(우리나라 수출) - 56억7446만 달러(수입): 무역 흑자: 57억6014만 달러 ○ 2011년 - 126억5408만 달러(우리나라 수출) - 78억9357만 달러(수입): 무역 흑자: 47억6051만 ○ 2012년 - 119억 2203만 달러(우리나라 수출) - 69억 2082만 달러(수입): 무역 흑자: 50억0121만 달러 ○ 2013년 - 113억7579만 달러(우리나라 수출) - 61억8017만 달러(수입): 무역 흑자: 51억9508만 ○ 2014년(1-5월) - 51억9702만 달러(우리나라 수출) - 21억8206만 달러(수입): 무역 흑자: 30억1496만	
교역품	○ 우리나라 수출 - 자동차 부품, 합성수지, 윤활유, 냉연강판, 선박, 합성고무, 건설광산기계 - 기타석유화학제품, 열연강판, 건설중장비, 석유화학합성원료 등 ○ 우리나라 수입 - 석유제품, 나프타, 합금철, 박류, 알루미늄괴 및 스크랩, 기타금속광물 - 면사, 기초유분, 기타정밀화학원료, 철광, 의약품, 천연섬유사 등	

투자교류	○ 우리나라의 對인도 투자 - 1980 년 ~ 2014 년 3 월 말까지 - 1,805 건, 44 억 6,117 만 달러(신고기준), 33 억 7,738 만 달러(투자기준) - 주요 투자 업종 (투자금액 2014 년 기준) - 제조업(35.4%), 광업(31.7%), 도·소매업(4.7%), 금융업(4.6%), 전기&가스 (2.9%) ○ 인도의 對한 투자(신고기준) - 1981~2013 년 12 월까지: 5 억 6975 만 달러(산업통산자원부)
교민	총 교민 수 약 10,397명 (2013년)

자료: 인도통계청, 한국무역협회, 한국외교통상부, 한국수출입은행

2. 정치사회동향

가. 특징 및 개관

인도의 국토는 서유럽 전체 크기와 비슷하고 남한의 33배에 해당하는 광활한 면적으로 지방에 따라 상이한 기후와 풍토, 다양한 인종 구성을 보이고 있으며, 힌디어와 영어를 제외하고 공용어만 21가지에 이르는 등 언어의 분포 또한 복잡하다. 그 밖에도 힌두교 및 이슬람교 등 다양한 종교, 극심한 빈부격차, 교육 수준의 차이, 수천 년을 내려온 카스트 제도의 잔존 등 매우 복잡한 사회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인도인들은 이러한 다양성을 자연스럽게 포용하는 가운데 수천 년에 걸친 전통에 대한 커다란 자부심을 가지고 국가적·사회적 조화와 정체성을 유지해 오고 있다. 정치면에서 보면, 인도는 문자 그대로 세계 최대의 민주주의 국가이며 높은 문맹률과 극심한 빈부 격차에도 불구하고,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이 일반화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인내와 관용의 국민성을 갖추고 있으며, 이러한 국민성이 민주주의 확립에도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중국과 더불어 세계 경제의 차세대 리더로 인정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전체 경제를 두고 볼 때는 아직 많은 어려움이 있다. 국민의 약 19%가 절대 빈곤층에 속하고, 빈약한 국내 자본과 낙후된 사회 간접 시설은 경제 계획 수행에 상당한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 안정, 외부에 크게 의존할 필요가 없는 풍부한 자원, 광범위한 산업 기반, 증가 일로에 있는 양질의 기술 인력, 경제 개방과 자유화 정책 등에 힘입어 본격적인 고도 성장 궤도에 진입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골드만삭스, 미국 국가 정보위원회(NIC) 등 세계 주요 연구기관들은 인도의 젊고 풍부한 노동력,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전통, 과학기술 분야의 우수성, 영어 사용 능력 등 중장기적 경제 성장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인도 경제가 21세기에 미국, 중국과 함께 세계 경제를 이끌어 갈 3대 강국으로 도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나. 정부구성 및 정치제도

○ 주요 정당

- Indian National Congress(INC), Bharatiya Janata Party(BJP);
- Communist Party of India(Marxist), Telegu Desam Party(TDP),
- Samajwadi Party,Shiv Sena,Bahujan Samaj Party(BSP),
- Dravida Munnetra Kazhagam(DMK),Janata Dal,
- Samata, All-India Anna DMK(AIADMK), Biju Janata Dal(BJD),
- Trinamool Congress(TC),Nationalist Congress Party(NCP),
- Rashtriya Janata Dal(RJD),Rashtriya Lok Dal(RLD),
- Shiromani Akali Dal(SAD)

○ 국가 형태: 연방공화국 (28개의 주와 7개의 연방 자치령)
○ 국가 원수: 대통령 (Pranab Mukherjee, 2012년 임명, 임기 5년)
- 상하원 및 주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에 의해 간접 선출되며, 국가원수로서 상징적 역할을 수행
○ 행정 수반: 총리(Narendra Modi, 2014년 임명, 임기 5년)
- 다수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추천권을 가지며 대통령이 명하고 연방정부의 행정실권 행사
○ 입법 체계: 양원제
- 상원: Rajya Sabha(254석, 하원·주의원·연방자치령에 233석 배정, 대통령이 12석 지명), 임기 6년 매 2년마다 1/3씩 선출
- 하원: Lok Sabha(545석, 543석은 직접 투표에 의해 선출, 2석은 대통령 지명) 임기 5년
○ 주의회: 단원제 또는 양원제로 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주지사는 대통령이 지명하고, 행정실권을 가진 주총리(Chief Minister)는 주 의회 다수당 지도자가 지명
○ 법률체계: 1950년 제정된 헌법 및 영국법
○ 집권당: 통합 진보 연합(United Progressive Alliance-UPA, 의회당연합)
○ 최근 선거: 2014. 4. 7~5.12

다. 주요 인사

○ 주요 내각 구성원
- 총리: Narendra Modi
- 내무: Rajnath Singh
- 외무: Sushma Swaraj
- 재무: Arun Jaitley
- 도시 개발: Venkaiah Naidu
- 도로 교통 및 농촌 개발: Nitin Gadkari
- 철도: Sadanand Gowda
- 수자원: Uma Bharti
- 소수민족: Najma Heptulla
- 소비자, 식품 및 공공 분배: Ramvilas Paswan
- 중소기업: Kalraj Mishra
- 여성 및 아동 발전: Maneka Gandhi
- 화학 및 비료: Ananth Kumar
- 정보통신기술 및 법무: Ravi Shankar Prasad
- 민간 항공: Ashok Gajapathi Raju
- 중공업 및 공기업: Anant Geete
- 식품가공: Harsimrat Kaur Badal
- 철강 광산 및 노동고용: Narendra Singh Tomar
- 부족: Jual Oram
- 농업: Radha Mohan Singh

- 사회정의 및 역량 강화: Thawar Chand Gehlot
- 인적자원개발: Smriti Irani
- 보건복지: Harsh Vardhan

라. 대외관계

인도는 초강대국의 세력권 확장 배경과 모든 국가와의 평화 공존 추구를 외교정책의 기조로 삼아, 좁게는 서남아 지역에서의 지도적 위치를 확고히 하고, 넓게는 비동맹 운동의 기수로서 제3세계에서의 지지 확보 및 강화를 대외 관계의 주안점으로 삼았던 전통을 지니고 있다. 냉전 종식 이후 신 국제 질서 형성에 따라 다극화를 지향하며 실용주의 외교 노선에 따라 세계 모든 국가와 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나, 과거 개도국 세력을 대표하고자 했던 외교 형태도 상당 부분 유지되고 있다.

인도는 1991년 경제개방개혁조치와 더불어 동방정책(Look East Policy)를 추진하고 있다. 상품수출입을 위한 새로운 시장개척과 증가하는 에너지 수급을 위한 천연자원 확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아세안 국가와 한국, 일본 등과 협력을 확대하는 반면, 중국과의 교역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는 점을 경계하려고 한다. 동남아 국가는 민주주의 국가 인도와 자연적인 친밀감을 가지고 있으며, 안보위협 및 해적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공통의 이익관계가 있다. 특히 인도의 모디 총리는 이번에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ARRC)을 포용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주변국 정상들을 모디 총리 취임식에 초청하였으며 인도 모디 총리의 첫 해외 방문지를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 국가 중 한 곳인 부탄으로 채택하여 남아시아와의 관개 개선에 힘을 쏟고 있다.

특히 인도는 고도 경제성장 실현, 국제원자력 협력추진을 통한 핵 보유국으로서의 국제적인 위상 확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추진 등 최근 세계 강대국(World Power)의 하나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세계 기후변화 협약 등 국제적인 주요 이슈에서 높은 목소리를 내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국제 사회에서의 영향력도 지속적으로 신장되고 있다.

마. 정치동향

□ 16대 총선과 현 정부 구성

인도는 2014년 4월~5월 16대 총선을 실시하였으며 인도인민당 중심의 BJP 연합이 총선에서 대승을 거둠으로써 10년 만에 정권 교체가 일어났다. 국민의회당(INC) 정권 기간인 10년 동안 경기 침체, 높은 물가, 부패 스캔들 등의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이번 정권교체는 국민의회당에 대한 인도 국민들의 실망과 앞으로 새로운 경제 대국으로 거듭나는가 하는 기로에 서 있는 인도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데 모디 총리에 거는 인도 국민들의 희망을 보여주는 자리였다. 인도인민당은 이번 총선에서 284석을 차지하여 압도하는 승리를

거두었으며 구자라트 주총리 출신의 나렌드라 모디를 인도인들의 대다수가 지지했다는 것은 이전과는 다른 변화에 대한 갈망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나렌드라 모디의 실용적인 경제 정책과 친 기업적인 성향으로 모디 총리는 인도의 경제를 부흥시킬 수 있는 새로운 지도자로 평가 받고 있다. 모디 총리는 앞으로 인도의 낮은 경제 성장을 끌어올리는 노력과 함께 경제 관련 정책을 가장 우선시하여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모디는 한 내각 장관이 여러 개의 부처를 담당하도록 하여 내각 장관을 이전 정부보다 5명이 더 적은 23명으로 축소하였다. 최소 정부와 최대 거버넌스 정부를 지향하고, 정부 부처 간 갈등과 중복 기능을 최소화하여 부처 간 업무 협조 향상과 신속한 행정업무 이행을 위한 방향으로 정부를 이끌어 나아가고 있다.

□ 부정부패와 정권교체

하지만 2010년까지 연 8~9%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해 온 인도 경제가 유럽발 금융위기 영향과 개혁정책의 지연 및 번복으로 인한 외국인투자자들의 실망과 자금인출, 높은 인플레이션과 고금리로 인해 2011년 경제성장률이 6.5%로 하락하면서 집권여당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 더군다나 2G 이동통신 주파수 부정 특혜 사건, 커먼웰스 조직위 자금횡령 사건, 석탄 채굴권 부당 배정 등 연이은 부정부패 사건으로 인해 큰 홍역을 치르면서 인도는 국내외적으로 이미지를 크게 실추했다. 2012년 국제투명성기구(TI)의 2012년 부패인식지수(CPI) 발표에서 인도는 100점 만점의 36점을 받으며 176개국 중 94위를 차지하였다

인도의 총선은 2014년 4월 7일~5월 12일 사이에 실시되고 5월 16~17일 개표를 거쳐 543개 의석 중 인도인민당 (BJP)이 282석을 확보하여 44석에 그친 국민의회당(INC)에게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BJP는 총 1947년 독립 이후 INC를 제외한 정당으로는 처음으로 단독 정부를 구성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가 8억 1,450만 명 중 투표에 처음 참여하는 1억 2,000만(15%) 청년층과 도시 중산층이 66.4% 의 역대 최대 투표율을 기록하는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계층의식이 희박하고 경제 논리에 민감한 청년층이 인도 정치와 경제의 주역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인도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음을 의미한다. 게다가 이제 인도 사회에서 정치, 종교, 카스트보다 경제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인도인들의 의식 변화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 새 정권의 정책

모디는 총선 공약에서 인도 경제가 직면한 시급한 거시경제 과제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물가안정, 고용창출, 성장률 회복을 제시하였다. 우선 인도의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인도 물가상승의 주요인으로 지목되었던 식품가격 안정을 위하여 물가안정화기금 설립, 인도식품조합(Food Corporation of India) 역할 재정립, 농산물 전산관리 시스템 도입 등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고용창출을 위해 섬유, 신발, 전자부품 조립과 같은 노동집약적 제조업의 전략적 육성, 소매업 현대화와 시장 연계성 강화, 인프라 건설로 일자리 창출, 청년 창업 장려, 기술개발을 통한 취직능력 제고를 강조하였다. 또한 경제성장률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단기간의 성장률 회복 처방을 제시하기보다는 경제개발계획의 이행을 통하여 산업발전과 고용창출을 이루어 결국 고성장을 회복하는 단계적인 플랜을 제시하였다.

BJP 공약의 주요 내용과 실현 가능성

분야		주요내용	위험요인	실현가능성
당면과제	물가안정	물가안정화기금 설립, 농산물 전산관리, 식품조합 개혁	주정부 협조 필수, 기술 부족	중
	고용창출	노동집약적 제조업 육성, 소매업 현대화, 인프라 건설, 창업 장려, 취업상담 및 훈련 실시	구체적 실천계획 부재, 제조업 생산 증대로 일자리 창출	중상
	부패척결	국민인식 제고, 정부 투명성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 해외유출 블랙머니 국고환수	행정적 실행의 어려움	중상
	국가신뢰도개선	정부 기능 부활, 전 사회의 행정 연계성 강화	주정부 및 전 부처 협조 필요	중
국가경영	Team India	중앙-주 정부 간 Team India 구성을 통해 주정부의 정책결정 및 집행 참여 독려	주정부간 이해관계 상이	중하
	국가·국민 통합	낙후지역 발전 및 연계성 확대, 국회 여성 의석 33% 할당, 여성 기술 및 직업 교육 실시	우선순위 낮음	중하
	참여촉진	PPPP(People-Public-Private Partnership)독려, 지방 자치기구 빤짜야뜨 활동화	행정적 실행의 어려움	중하
경제 개발 계획	인프라 개발	전 가정에 전력 및 기본 인프라 공급, 신도시 100개 개발 및 위성도시 건설, 고속열차, 항구 개발 및 하천 연결	주정부 협조 필요, 민간자금 동원이 관건	중상
	제조업 육성	산업 현대화 및 경쟁력 향상, 세계적 수준의 제조업 허브 육성 업체, 은행개혁(NPAs 소), 인구 및 자원 집중 지역 개발	사업토지 승인은 주정부, 사법 절차는 입법부의 협조 필요	상
	토지 수용	국가토지활용정책 도입으로 과학적 토지 수용 추진	토지수용법(Land Acquisition Act)의 한계	하
	조세	세제 간소화 및 합리화(복잡한 소득세, 소비세 등 철폐와 상품서비스세(GTS) 도입), R&D 투자 세금혜택 부여	상품서비스세(GST)도입은 지난 수년 동안 조율해왔음	상

분야		주요내용	위험요인	실현가능성
	FDI	FDI 적극 유치, 일부 국방산업 개방(소상공인 보호 위해 멀티브랜드 소매유통 추가개방은 반대)	소상공인과 다국적 유통기업 간의 이해 상충	상
	노동	노동법 개정, 비공식부분의 노동자 조직화(신원카드 발급), 노동자 대상 금융 서비스 지원, 연금·의료보험 대	경제·사회적 비용 과대	하
	교육	고등 및 직업 교육 강화, 노동자 대상 사이버 직업교육 공간 마련 등 실용적인 교육 강조, IIT, IIM, AIIM과 같은 전문 고등교육기관을 인도 전역에 설립	예산 배정 우선순위 낮음	중하
	농촌	농촌의 전산화로 수출입 지원, 도시와 같은 시설·기회 부여로 Rurban 개념 도입	자금 및 조직화가 관건	중
	에너지	종합적인 국가에너지 정책 마련, 대체 에너지 적극 개발	구체적 실천계획 부재	중
	환경	탄소배출권(Carbon Credit) 도입, 환경친화적인 생산, 환경친화적 건물과 에너지 효율 작업장을 위한 지침 마련, 환경 기술 분야의 R&D 및 인력 개발 장려	정책 의지는 있으나, 우선순위가 낮음	중
	외교통상	개방적 통상정책 강화(동아시아, 미국) 및 국제사회 발언권 확대 추구	테러리즘의 위협 상존	중상
	안보	안보 위해 요인 및 테러리즘 강력 대응, 국가보안기구 강화, 국방대학4개 신규 설립, 국방 관련 R&D 확대	힌두-무슬림 간 갈등, 테러 발생 가능성 증가	중상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최신동향: 인도 16대 총선 실시

2014년 5월 16일~17일 제 16대 총선이 실시되었다. 총선 결과, 인도국민당(BJP)가 현재의 집권당인 INC를 압도적인 표차로 따돌리고 10년 만의 정권교체 및 30년 만의 단독 정부 구성을 앞두고 있다.

전국민주연합(NDA;National Democratic Alliance) 연정의 최대 정당은 인도국민당(BJP;Bharatiya Janata Party)이며, 통일진보연합(UPA;United Progressive Alliance)의 최대 정당은 국민회의당(INC;Indian National Congress)이다.

연성 구성 최종 결과표

정당명	의석수
BJP (Bharatiya Janata Party)	282
기타 (9개 정당)	52
NDA 연정 계	334
Cong (Indian National Congress)	44
기타 (13개 정당)	17
UPA 연정 계	61
연정 외부 지지세력 계	148(AAP: 4)
총계	543

이번 정권교체는 인도 유권자가 집권 2기 동안 국민회의당의 경기침체, 고물가, 부패스캔들 등의 실정을 겪는 가운데 향후 인도를 강력한 국가로 이끌 수 있는 적임자로 나렌드라 모디를 선택한 결과로 풀이된다. 또한 글로벌 경제위기의 여파로 경제 불안과 루피화 가치 하락 및 5% 이하의 낮은 경제성장률 등의 문제를 보이는 인도는 구자라트주의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끌었던 나렌드라 모디 총리 후보에게 높은 기대를 걸고 있다.

과거 주 총리 시절 모디의 정책을 볼 때, 신정권의 중점사항은 부진한 인도 경제의 회복이 될 것이며 기업활동 지원에 정부의 모든 지원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총선의 결과는 강한 정부, 새로운 인도를 바라는 유권자의 심리가 정권교체를 이룬 것이라 볼 수 있다.

특히 하층민 출신의 모디가 이끄는 BJP애당으로 과반수 이상 의석을 차지한 것은 경제성장이 최우선 순위에 있음을 보여준 것이며 계층의식이 희박하고 경제논리에 민감한 청년층이 인도 정치와 경제의 주역으로 부상하면서 나타난 인도사회의 큰 변화를 나타내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나렌드라 다모다르다스 모디

(नरेन्द्र मोदी)

○ 생년월일: 1950년 9월 17일 ~

○ 구자라트주(뭄바이주) 바드나가르 출생

○ 델리대학 정치학 전공

○ 2014년 총선에서 인도국민당을 대표하는 총리 후보자

- 2001년 구자라트 주 총리직에 오른 이후 최장기 주 총리를 역임하며 경제성장에 많은 기여
- Gujarat 주 총리로 있는 동안 혼다 모터스의 공장 건립을 유치하고 인도 국영 정유회사(Indian Oil Corporation, IOC) koyali 정유공장의 확장을 유도하는 등 대규모 투자유치 성과를 이뤄냄.
- 최근 인도의 경제성장률 저하가 주요 이슈가 되면서 모디의 이러한 정책과 업적이 부각되며 인도국민당(BJP)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 냄.
- 하지만 도시 중산층 중심의 경제 정책은 빈부격차의 확대를 가져왔다는 비판도 있음.
- 힌두민족주의에 대한 강조가 인도 사회 내 무슬림의 처우를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

나렌드라 다모다르다스 모디는 '짜이왈라' 출신이다. 1950년에 카스트 신분제 하위계급인 '간치(상인)'에 속하는 식료품 잡화상 집안의 6남매 중 세 째로 태어난 모디는 부친을 도와 어린 시절에 기차역 근처에서 짜이를 팔았고, 10대 시절에는 형과 함께 버스터미널 인근에서 짜이 노점상을 꾸리기도 했다. 그는 서부 뭄바이주(지금은 구자라트주)에 속한 소도시 바드나가르에서 태어났고 결혼은 관습에 따라 했다. 모디의 양친은 간치 계급의 전통에 따라 13세 때에 정혼을 시켰고 18세에는 결혼을 하도록 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3년 밖에 가지 못했다. 모디는 아내에게 학업을 계속하라고 한 뒤에 2년간 인도 전역을 다니며 떠돌이 생활을 했다. 이후 모디는 아내와 왕래를 끊었다. 모디는 정치인으로 선거에 나갈 때마다 미혼이라고 밝혔지만 이번 총선에 입후보하면서 자신의 배우자 란에 이름을 써넣었다. 그는 고향으로 돌아와 다시 짜이를 팔다가 국수주의 단체 민족의용단(RSS)에 관심을 두게 됐다. 1970년에는 선전단원이 됐다. 이듬해에 인도-파키스탄 전쟁이 벌어졌을 때에는 민족의용단에 정식 가입하며 델리대학에서 정치학을 전공하고, 구자라트대학에서는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모디가 정치적으로 첫 등장한 것은 1987년 민족의용단이 1980년에 조직한 인도국민당의 아메다바드 지부에서 사무총장에 오르면서이다. 5년 뒤에 인도국민당이 지자체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모디는 인도국민당의 주 사무총장에 올랐다. 그는 1995년과 1998년 구자라트 주 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르면서 인도국민당 내에서 핵심 전략가로 부상했고, 2001년 전임자가 사임하자 선거에 나서 구자라트 주지사에 올랐고 3차례 연임에 성공했다. 2009년 총선부터는 인도국민당의 핵심 인물로 선거를 치러왔다.

□ 인도 신정부의 경제, 통상, 투자, 외교 정책 전망

인도 신정부는 노동집약적 제조업 육성과 기업환경 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세계 수준의 산업특구를 설립하고 복잡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각종 규제를 철폐해 중국을 넘어 글로벌 제조업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나설 전망이다.

또한 국내외 자본을 활용해 고속도로 및 공항, 항만의 신축공사를 추진하고 인도 전역에 100개의 스마트 도시 건설과 천연가스 수송배관을 설치하는 등 인프라 시설 구축을 강화할 계획이다. 신정부는 10%가 넘는 물가상승률을 억제해 경제를 안정화시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물가안정펀드를 조성하고, 단일한 국가농업시장을 형성하는 한편, FCI(Food Corporation of India)의 분리를 통해 조달, 저장, 유통 과정을 효율적으로 개선할 것을 발표했다. 그리고 복잡한 세제를 간소화하고, 기존의 소비세와 서비스세를 통합한 상품서비스세(GST)를 도입해 조세 행정 효율성을 증진하고 납세자의 편익을 추구할 예정이다.

모디노믹스 주요 내용

인프라 개발/도시화	신규 스마트 도시 100개 건설
	고속철도 건설
농업	스마트 농업(데이터 확충을 통한 수입, 수출 농산물), 농산물 가격 안정화
부정자금 대책	외국 회피 자금
고등교육	주별 IITs, IIM, AIIMS 유치
외국인직접투자(FDI)	보험부문 FDI에 대한 양면적 입장, BJP: 멀티브랜드 소매유통 부문 FDI 허용 반대
세금	복잡한 조세제도 간소화: 세부내용 부재
제조업	부족마을, 광물자원 풍부한 지역 토지 구입
초등교육	초등교육 서비스 질적 향상

자료: Economic Times 요약

최근 늘어나는 대외무역수지 적자를 축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인도산 고부가가치 상품의 수출을 장려하여 대외무역수지 적자 축소에 노력하고 있다. 인도 국민당은 95% 이상이 영세업자 위주인 멀티브랜드 소매유통분야를 제외한 전 분야에 대해 외국인투자유치를 확대할 것이라 밝혔다. 외국인 투자 친화적인 정책 추진이 예상된다. 인도는 소매유통업분야에서 싱글 브랜드 100% 개방, 멀티 브랜드 51% 개방의 조치를 취했으나 상품의 현지조달의무(30%) 및 세부 투자의무 등의 조건으로 장벽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신정부는 건설, 철도 분야의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심을 보임. 그 밖에 일자리 및 자본 창출, 인프라 개발에 필요한 분야라면 어느 분야든 투자 허용에 긍정적이다.

또한 인도의 국가 브랜드가치 향상과 남아시아지역 성장과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인도 국가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해외 거주 인도인(NonResident Indian · NRI), 인도계 외국인(Person of Indian Origin · PIO), 재외동포인도인(NRI),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신정부는 전정부가 인접국과 외교 정책에서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언급하며 남아시아의 성장과 개발에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발표했으며 또한 강대국과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제지역협력기구(SAARC, ASEAN), 글로벌 경제모임(BRICs, G20)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 신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와 평가

○ 신정부 출범에 대한 인도 국내 반응

인도 언론은 구자라트주의 성공적인 경제발전의 사례가 인도 전역으로 퍼져 침체된 인도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나렌드라 모디의 독선적인 성격과 힌두민족의 성향이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경제계는 작은 정부와 자유로운 경제활동 장려로 요약되는 모디노믹스를 통한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를 표명했다. 한편, 모디의 글로벌 개방 정책이 저소득층 및 노동자에 대한 보호막을 사라지게 해 복지 및 분배 문제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 신정부 출범에 대한 주요국의 반응

일본의 아베 총리와 나렌드라 모디 총리 후보는 민족주의자이자 강경파 보수주의자로 공통점이 많은 인물로 평가하고 있다. 모디 총리의 친일본 성향은 향후 일본 기업의 대인도 진출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은 인도 신정부와 전략적, 정치적 대화를 강화하고 양국의 상호이익 증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국방교류 및 협력으로 지역평화 발전 및 통합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양국의 오랜 국경문제 및 최근 중국의 인도양 지역에서 세력 팽창전략에 따라 긴장관계는 불가피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은 인도 신정부와의 외교, 통상투자 정책 관련 불편한 입장이다. 인도국민당(BJP)은 핵무기 선사용 금지 정책 재검토를 언급한 바 있으며, 이는 오바마 정부가 추진하는 핵감축 전략과 대치된다. 또한 미국은 인도의 소매유통업시장 개방을 희망하지만, 인도 신정부는 부분 개방을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대만은 인도의 신정부 수립 및 나렌드라 모디 총리 후보의 당선에 긍정적 입장을 표명하고 특히, 구자라트주에 건설 예정인 철강공장에 대한 허가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신정부 출범에 대한 외국 기업의 반응

월마트는 신정부 출범에 맞춰 기존의 투자방향을 선회해 대형 온라인 도매사이트를 시험운용하고, 성공 시 전국적 확장 계획을 발표했다. 까르푸는 현재 인도시장에서 운영하는 도매점의 사업 실적이 예상치를 크게 밑돌다 인도사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에는 소매유통분야 외국인 투자를 반대하는 신정부의 정책 발표도 큰 몫을 했다.

GE 헬스케어는 인도의 경제 상황이 단기간 내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향후 인도 제조업 발전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며 산업 장비 및 인프라 부분의 투자를 증대할 것이라

발표했으며, 혼다는 신정부의 기회균등 정책에 농촌지역에 대한 각종 투자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이에 발맞춰 인도의 중, 소도시 지역을 집중 공략하는 마케팅 계획을 발표했다.

○ 인도 진출 우리 기업의 반응

우리 진출 기업은 내수판매 부진 및 환차손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했는데, 경제개혁 및 투자유치를 내세운 인도국민당(BJP)이 집권하면 이러한 상황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기대감을 표명하고 있다. 부정부패 척결을 우선순위로 내세운 신정부인만큼 사업 환경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총선 후 신정부 전망

신정부의 과감한 경제정책을 통한 경제회복을 예상하고 있다. 총선 이후 인도 경제는 당분간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지만, 신정부가 경제개혁과 부패 척결이라는 과제를 해결한다면 하반기부터 경제가 서서히 회복되어 2014년 5%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인프라, 제조업, 석유화학, IT 등 분야로의 진출 확대를 예상하고 있다. 이는 외국인투자 개방의 주요 수혜분야인 인프라, 제조업, 석유화학, IT 분야 등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의 진출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새로운 인도시장 접근전략이 요구된다. 우리 기업은 인도 정부의 제조업 육성 정책을 활용해 인도 시장을 수출시장뿐만이 아니라 제조기지로 활용해 중동·유럽·아프리카 등으로 수출하는 인도 생산기지화 전략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한국이 경쟁력을 가진 자동차, 가전, 기계류 및 인프라 관련 발전, 송배전, 도로, 항만 등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가치가 있다. 2014년 1월 한-인도 정상회담 당시, 양국 정부의 협력 하에 라자스탄 주에 한국기업 전용공단 조성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이것이 완료되면 한국 중소기업의 투자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2010년 1월에 발효된 한-인도 CEPA가 올해로 4년 차에 접어들면서 관세인하 폭이 커져 그 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2014년 1월 한-인도 정상회담 시, 지지부진하던 한-인도 CEPA에 대한 업그레이드 협상을 촉구한 바 있다.

바. 사회동향

□ 21세기와 19세기의 공존

경제가 성장하면서 경제 성장의 가장 큰 혜택을 받은 도시 지역 거주민을 중심으로 인도 국민들의 생활 방식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인터넷의 발달과 해외 TV 프로그램 및 영화의 유입으로 서구 문화에 동경의 시선을 보내는 젊은 층이 증가하고 있으며, 여성의 의복을 포함해 과거 전통 생활양식이 규정하고 있던 틀을 깨어나가는 모습이 감지되고 있다.

최상류층을 위한 럭셔리 쇼핑몰과 쓰러져갈 것 같은 구멍가게가 바로 옆에 있고, 하루 1달러 미만의 삶을 살아가는 극빈층과 최고급 수입승용차를 여러 대 보유한 부유층이 동시에 살아가능 곳, 마을 단위로 공중전화가게 하나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최신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유비쿼스족이 공존하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 종교 및 카스트 제도

여전히 일상 생활에 있어서는 국민 대다수가 아직 오랜 전통 생활양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종교와 카스트 제도는 인도인의 생활을 지배하는 가장 주된 요소로서 많은 국민들이 여전히 이를 숙명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종교 없는 생활을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종교가 생활에 밀착되어 종교라기보다는 생활 양식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이며, 헌법상 카스트 제도에 의한 차별이 금지되어 있고 카스트 제도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꾸준히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카스트 제도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도인들은 미술·조각·건축·음악 등 전통문화에 대한 강한 애착과 긍지를 갖고 있다. 자문화에 대한 강렬한 긍지가 때로는 외래문물에 대한 배척과 국수주의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러한 자문화에 대한 강한 긍지가 부정적인 결과로 드러나기보다는 경제성장과 결합해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자세로 연결되고 있다.

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인도가 많은 난제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 거대한 나라에서 복잡다기한 문제들이 하루 아침에 완전히 해소되기를 기대할 수는 없으나 안정적이고 민주적인 정치체계를 바탕으로 고도 경제성장을 실현하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 빈곤 및 실업, 양극화

세계 제 2위의 경제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 인도에 대한 2008/09 UNDP가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인도의 인간개발에 대한 투자가 전체 179개 국가 중 132위의 낮은 순위를 차지했다. 인간개발 내용은 수명, 교육, 삶의 질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인도는 제11차 개발 계획에 포함된 인간개발에 대한 내용과 달리 운영되고 있으며, 인도의 인간개발은 빛나는 인도인, 고통 받는 인도인을 창조하고 있으며 이들의 차이가 크다고 UNDP 보고서는 밝혔다.

인도의 여름은 물 부족으로 많은 도시들이 심각한 식수난을 겪고 있다. 현재 인도는 세계 물의 4%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수 부족으로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1개 도시 중 약 50%의 마을에는 전혀 식수가 공급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식수에 대한 오염치수도 조사된 122개 국가 중 120번째로 매우 높아 열악한 물 공급 국가로 나타났다.

인도의 델리 사회 연구소는 빈곤과 실업으로 지난 10년간 무려 약 10만 명의 걸인이 증가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델리의 걸인 수는 6만 명, 뭄바이가 30만 명, 콜카타가 7만 5,000명, 방갈 로르가 5만 6,000명으로, 이들이 1일 걸인 행각으로 얻는 수입은 20-100 루피

정도라고 한다.

현재 인도의 15~64세 노동가능 인구는 향후 10년간 약 1억 2,500만 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앞으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저개발 비도시 지역에서 도시로 꾸준히 유입되는 비숙련 노동자의 유입으로 이미 대도시의 노동 불안이 증가되고 있으며 비숙련 노동자 외 매년 인도에서 수용 가능한 인력의 2배 이상의 대학 졸업생이 배출되고 있으며 대학 교수들도 학생들이 장래에 직업을 구하지 못할 것을 염려하는 등 교육수준이 높은 대학 졸업생들도 고용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아울러 빈곤에 따른 범죄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시아에서 가장 큰 교도소로 유명한 Tihar 감옥은 지난 2011년 전체 수용자들 중의 92%가 월수입이 8,000루피가 이하인 빈곤층이었으며, 특히 이들 중 75%는 연 수입이 50,000루피가 채 되지 않는 극빈층이라고 밝혔다.

인도 내무부 산하 NCRB(National Crime Records Bureau)가 발표한 "Crime in India 2011"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인도에서 발생한 살인, 유괴와 같은 폭력범죄는 총 256,329건으로 전체 범죄의 21.2%를 차지했으며 성폭행, 강간 등 여성에 대한 범죄는 228,650건을 기록, 전체 범죄의 18.9%를 차지하는 등 이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안전장치 구축이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다.

3. 한국과의 주요이슈

가. 한-인 관계 개관

한국과 인도는 불교 교류 등 수천 년에 걸친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1973년 수교 이후 지난 30년 동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제반 분야에서 관계 발전을 해 오고 있다.

역사적으로도 가야국과 아요디아 왕국의 혈연관계로 맺어진 양국은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인도는 의료지원부대를 파병하여 도왔고, 1953년 정전협정상의 '중립국 송환 위원회' 의장국을 역임했다.

한국전쟁 이후 양국 관계는 소강상태를 유지하다가 1973년 외교관계를 수립하면서 양국간 현대 외교 관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993년 인도 라오 총리의 방한까지 20년간 우리는 고위인사 상호 교류 등을 통해 인도와의 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켰고, 인도도 표면적으로는 비동맹 중립 정책에 따라 남북한 등거리 외교정책을 표방하면서도 실제로는 우리와의 실질 협력을 보다 중시했다.

1990년 이후 한-인도 관계는 남북한 대결로 인한 기존의 정치외교 중심의 관계에서 무역투자를 중심으로 한 실리적인 관계로 양국 관계가 격상되었다. 1990년대 초 수억불 수준에 불과했던 양국간 교역액은 2011년 200억불을 넘어 전년 대비 41%가 증가하는 등 빠른 성장세를 시현하고 있다. 1991년 인도 경제 개방 직후 여러 가지 이유로 외국기업들의 대인도 투자는 부진했지만,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LG전다 등 한국 기업들이 1990년대 중반부터 인도의 저력과 장래성을 믿고 적극적인 대인도 투자를 감행, 인도 내 각 분야에서 시장점유율 수위를 점하는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

한편 양국 상호 투자진출은 2004년 인도 타타그룹이 한국 대우자동차 상용차 부분을 인수하고 2010년 마힌드라가 쌍용자동차를 인수한 것처럼, 한국의 대인도 투자라는 일방적인 방향에서 벗어나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 중이다.

2014년 1월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인도 경제협력포럼 오찬 간담회에 인도를 국빈 방문하면서 양국 정상은 2009년에 체결한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더욱 강화하여 양국 간 경제협력강화 방안과 미래 비전에 대해 논의를 비롯하여 양국 간의 경제적 협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나. FTA를 포괄하는 한-인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CEPA) 발효

경제적 기준, 정치·외교적 기준, 지리적 기준과 실현 가능성 등 전반적 측면에서 인도는 한국의 FTA 체결 상대국으로서 매우 좋은 조건을 구비하고 있다. 경제적 기준으로 볼 때 양국 상호 간의 교역 증진 효과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정치·외교적 기준에서는 정치적 우호 관계 형성, 경제 관계의 전략적 활용 가능성, 아시아 역내(서남아시아 및 ASEAN)와의 관계 강화 측면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

특히, "China Plus One" 전략에 따른 인도와의 경제협력 강화는 대중국(對中) 경제 의존도를 줄이면서 우리 경제의 토대를 강화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기도 하다.

한·인도 양국은 경제협력 강화를 통해 win-win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며, FTA 체결은 양국 경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국 간 통상관계, 상호보완적 산업 구조, 정치적 협력 등 전략적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한-인도간 포괄적 경제협력 협 정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합의는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인도 시장에서 한국기업, 한국산 제품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매우 긍정적이다.

2009.8월 서명된 한-인도 CEPA는 2009. 10월 중 국회비준 통과 후 2010. 1. 1일 정식으로 발효되었다.

○ 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상품교역, 서비스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 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채택된 용어로써 실질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과 동일한 성격이다.

다. 한국의 대인도 무역수지 불균형 완화 필요

한국의 대인도 무역수지는 1992년 이후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무역수지의 불균형은 인도 정부의 중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 따라서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舊 방콕협정)과 GSTP (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 among Developing Countries)의 양허 품목 확대 및 최근 체결된 한-인도 CEPA를 통해 대인도 수입을 확대함으로써 극심한 무역수지 불균형을 완화시킬 수 있다.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은 거대 시장인 인도와 중국을 포괄하는 유일한 지역 경제협력체로 최근 동 협정의 활성화를 통한 경제 발전 가능성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인도는 의류, 녹차, 제지류 등 HS 10단위 기준 한국의 1,204개 일반 양허 품목에 대하여 평균 30%의 특혜 관세를 부여 받고 있으며, 한국은 HS 6단위 기준 인도의 396개 일반 양허 품목에 대하여 평균 20%의 특혜 관세를 적용 받고 있다.

GSTP는 UN 산하 기구인 UNCTAD에서 한국, 인도를 포함한 44개 개도국 간 특정 품목에 대해 양허를 하는 관세 협정이며 한국과 인도의 교역을 확대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GSTP는 모든 회원국이 아닌 참여 회원국만을 대상으로 양허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므로 인도로부터의 수입 확대가 예상되는 품목에 대한 양허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CEPA의 경우 우리나라의 대인도 양허가 품목수 기준으로는 93%, 수입액 기준으로는 90%가 되는 높은 수준의 양허이며, 향후 양측의 협의에 따라 관세 자율화를 가속화 할 수 있는 채널도 열어두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무역수지 불균형 완화가 가능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인도 조달 주요 품목인 원자재류의 경우, 원자재 해외 의존도의 우리나라의 특성상 CEPA를 활용해서 낮은 가격으로 원자재를 조달 완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더 높일 수도 있기 때문에 호혜적인 무역관계를 고려 대인도 무역수지를 고려한 교역 형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라. 한국-인도 CEPA 발효 후 2년 후 재협상 성과

2009년 한국-인도 CEPA가 발효되었지만 협정 이후 2년간 약 70%의 교역 규모 증가라는 가시적인 효과에 그쳤다. 또한 CEPA 활용률은 한국과 다른 나라가 체결한 FTA 의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에 점차 재협상을 시도하게 되었다.

2014년 1월 16일 인도를 국빈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은 싱 전 총리를 만나 정상회담에서 CEPA(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개선 및 한국 기업의 인도 진출 활성화를 위한 과세 부담 축소 합의 등의 성과를 이끌어 냈다. 게다가 두 정상은 아울러 교역, 투자 환경 개선, 인프라 분야 진출 확대, 기업 애로사항 해결, 과학 기술 및 정보통신 기술 협력 등에 합의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 냈다. 또한 이중 과세 방지와 양국 간 조세 조약 개정으로 상대국에 진출한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투자 및 진출을 활성화하는데도 의견 일치를 보였다. 이자 및 사용료 소득에 대한 세율은 15%에서 10%로 인하해 원천징수세액이 줄어들게 되었으며, 해운 소득에 대한 원천지국 면세를 10%에서 100%로 확대하였다. 주식 투자 과세와 관련하여 인도가 주식 양도 차익 과세권을 현행 거주지국 과세에서 원천지국 과세로 완전 전환을 요구하였지만,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과점주주에게만 원천지국 과세를 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였다. 양국 정상은 한국 전용 공단 조성을 통한 우리 중소기업 진출 기반 마련, 양국 간 항공편 증진을 위한 항공협정 개정, 양국 최고경영자 20명씩이 들어가는 상설 민간 비즈니스 협의 채널 신설 등 다양한 성과를 보였다.

마. 한국-인도 도착비자 2014년 4월 15일부터 시행

인도 도착 비자 시행은 박근혜 대통령의 인도 국빈 방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것으로서 인도 정부는 정상회담으로 조성된 양국간 협력 기조를 더욱 강화하고, 우리 국민들에 대한 각별한 배려와 호의를 보여주는 차원에서 도착비자 시행 예정인 다른 국가들보다 예외적으로 빠른 4월 15일 시행되었다.

대한민국 국적자는 관광비자에 한하여 인도 도착 후에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델리, 뭄바이, 첸나이, 콜카타 등 8개의 인도 공항에 도착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바. 한국-인도 문화 교류 협력 체결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1월에 인도를 국빈방문하여 싱 전 총리를 만나 양국간 문화 교류 활성화를 위한 2014-17년 한-인도 문화교류시행계획서 체결을 환영하는 동시에 교육분야에서의 학생 교류를 지속 추진하자고 제안하였다. 또한 국제교류단의 인도 대학 내 한국어 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결정하여 점차 증가하는 인도 대학 내 한국어에 대한 관심을 활용하고자 하기로 하였다. 창조경제 육성을 위한 영화 등 문화산업 협력 강화에 의견을 함께하며 상대 국가 영화에 대한 시사회 개최를 고려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아리랑 TV와 인도 DD 방송국간 국제교류 방송협력 MOU 체결을 환영하였다.

사. '바이브런트 구자라트(Vibrant Gujarat)' 동반 참여

2003년부터 실시된 바이브런트 구자라트는 2년마다 열리는 세계 투자가들의 모임으로 구자라트의 투자 기회를 전파하고 투자를 유치하는 회의다. 이 결과 구자라트는 제10차 경제개발 계획 기간(2002~07) 인도 전체 경제성장률 8.4%보다 훨씬 높은 10.9%를 기록하였다. 삼성전자와 현대중공업을 비롯, 전자산업과 조선 해운 사업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관련 업종 기업에게 2013 바이브런트 구자라트 홍보와 유치를 목적으로 인도 사절단이 2012년 9월 17일부터 29일까지 방한하였다.

아. 구자라트 한국 전용공단 설치 계획

인도 투자진출의 가장 큰 걸림돌인 부지 확보 애로 해소를 위해 KOTRA에서 라자스탄주정부와 협의하여 델리NCR 지역에서 가깝고, 전력 및 물류 등 인프라 여건이 양호하면서도 토지 가격이 저렴한 님라나 인근 길롯 지구에 약 30만평에 달하는 한국전용공단을 설치하기로 하였다.

라자스탄 주는 인도에서 가장 큰 주(전체면적의 10.4%, 34만 평방 km)로 유명 관광지에서 투자 유망지로 부상하고 있는 지역으로 주도인 자이푸르는 월드뱅크가 조사한 인도에서 기업하기 쉬운 도시 순위에서 방갈로르, 하이데라바드에 이어 3위를 차지한 바 있다. 주로 신재생에너지, 귀금속, 자동차, IT, 섬유산업이 발달해 있으며 공장 입주 가격은 마루티 스즈키 공장이 입주한 하리아나주의 대표적인 산업 단지인 IMT Manesar에 비해 1/4 수준, 삼성 및 LG 전자가 생산공장을 갖추고 있는 노이다의 1/4~1/10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길롯 공단 입주 조건은 인도에 단독으로 진출한 한국 기업이나 한국기업 지분율이 51% 이상인 한국기업이며, 주요 이점으로는 고속도로(NH8) 및 철도연결이 원활해 물류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전력 공급이 거의 100%에 가까워 별도로 발전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없고 하리아나주에 비해 낮은 인건비, 저렴한 토지 가격, 외국기업 투자유치에 매우 적극적이고 신재생에너지 분야 투자시 별도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등 투자 친화적인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는 라자스탄주정부 등이 있다.

현재 공단은 RIICO(Rajasthan State Industrial Development&Investment Corportation Ltd)에 의해서 개발되고 있다. 길롯(Ghiloth) 공업단지에 한국 투자 존이 들어설 계획이며, 일본 공업단지가 들어서 있는 님라나(Neemrana)에서 15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RIICO는 길롯(Ghiloth) 공업단지를 일본 투자 구역과 한국 투자 구역으로 나뉘어 개발 중이며, 2015년 말까지 기본적인 인프라 시설이 다 들어설 것으로 예상한다.

자. 박근혜 대통령-만모한 싱 전 인도 총리 1월 정상회담

2014년 1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의 인도 국빈 방문으로 양국 정상 간의 정상회담이 열렸다. 양 정상은 공동의 비전으로 첫째, 보다 강화된 고위급 정무 협력 추구, 둘째, 보다 개방된 경제통상 환경 구축, 셋째, 보다 깊은 문화적 이해 추구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공동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정치 및 안보 분야에서 양국간 전략적 소통 채널 강화, 경제 및 통상 분야에서 양국 간 경제협력의 제도적 틀을 공고히 하고, 통상 및 투자 확대를 위한 더 우호적인 여건 조성, 사회 문화 분야에서 인적 및 문화교류 증진을 통해 상호 이해 심화, 지구촌 행복 시대를 함께 열어나가기 위한 파트너로서 인류의 공동과제 해결을 위해 지역 및 국제기구에서의 긴밀한 협력 모색 등의 정책 방침을 설정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의 임석 하에 군사비밀정보보호 협정, 미래부-인도 과기부 간 과학기술 공동응용 연구 및 개발 프로그램 양해각서, 항공우주연구원-인도 우주연구기구 간 우주협력 이행약정, 날란다 대학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 한-인도 2014-2017년간 문화 교류 계획서 양해각서가 체결되었다. 양 정상은 양국 간 경제협력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향후 양국 간 경제 관계를 확대·심화시키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으며 2014년 1월 뉴델리에서 개최된 제4차 한-인도 재무장관회의의 결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적극 이행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양국은 경제협력 방안을 더 포괄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하고, 이를 위해서 중장기 협력 로드맵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는 한편, 양국 간 경제정책 경험을 폭넓게 공유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양국 경제협력 강화 방안에 관한 보고서를 각국 정부에 제출하는 CEO포럼을 설립하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양국 간 교역 및 투자 증진에 기여해왔음을 평가하였고 2014년 1월 15일 개최된 통상장관회담 결과를 환영하면서, CEPA 개선을 통한 양국간 상품 및 서비스 교역 및 투자 확대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선 작업 완료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에 합의하였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서울에서 통상장관회담을 갖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안에 가서명한 것을 환영하고, 협정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양국은 무역·투자 전반에서 협력 확대를 위해 기존 한-인도 투자촉진협의회를 각료급의 한-인도 무역·투자촉진협의회로 확대·개편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코트라 벵갈루루 사무소와 한국무역협회 델리 사무소의 신설을 환영하고 이 사무소가 양국 간 교역, 투자 확대에 기여할 것을 희망하였다. 양 정상은 인도 오디샤주 POSCO 프로젝트를 위한 부지 확보, 광산탐사권, 환경인허가 갱신 등 진전을 환영하고, 프로젝트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POSCO가 조속한 시일 내에 프로젝트에 착수하기를 희망하였다. 만모한 싱 전 총리는 발전소 및 철도 건설 등 한국 기업의 인도 내 인프라 건설 참여를 환영하였다.

차. 한-인도 경제 협력 포럼 개최

2014년 1월 17일 한-인도 경제 협력 포럼이 개최되었으며 대한상공회의소와 인도상의연합회는 인도 뉴델리 르메르디앙 호텔에서 양국 기업인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인도 경제협력 포럼'을 개최하고 양국의 투자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8명의 경제 관련 기업인들을 비롯하여 300명이 참석을 하였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이날 포럼에서 인도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현재 400개 이상의 한국 기업이 진출하여 있지만 인도의 IT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생명공학 분야에서의 세계적인 경쟁력과 한국이 보유한 제조업 기술력 미 인프라건설 등의 경제 개발 경험을 결합시키면 더 많은 성장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2010년 1월에 발효된 한-인도 CEPA가 양국 간의 교역 확대에 크게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양국의 경제협력 관계를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해서는 CEPA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세율을 더 낮춰야할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사우랍 찬드라(Saurabh Chandra)인도 상공부 차관은 '인도 투자환경과 창조경제 정책'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인도는 지속적으로 외국인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과의 투자협력을 기대하고 있으며, 인도는 창조 경제의 핵심인 기초과학과 첨단과학 기술에서 높은 기술력을 보유 하고 있기 때문에 창조경제를 추구하는 한국과의 좋은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이번 성공적인 한-인도 경제 협력 포럼의 개최로 인도 경제사절단은 인도에서의 투자환경이 개선되고 추진중인 사업의 탄력 증가, 수주 증대와 사업 구체화 등의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실제로 많은 성과가 있었다. 글로벌 패션기업인 제이에스코퍼레이션은 인도 첸나이 지역에 추진 중인 대규모 투자에 대한 협의를 구체적으로 진행하였으며, 롯데제과는 금년 상반기 중에 델리 인근에 신공장을 건립하기로 결정을 하였다. 전자카드 제조업체인 바이오스카트는 인도 현지 공장설립과 현지 은행들과의 카드 관련 계약을 협의하였으며, 벨금속 공업은 현 거래 기업과 2백 만불의 추가 오더를 수주하는 성과를 올렸다. 개임죽염식품은 말레이시아 바이어의 인도 법인을 통해 50만 불

규모의 수출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나라 산업은 육묘 플랜트 설비 계약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동근 대한 상의 상근부회장은 이번 국빈방문은 CEPA 개선과 이중과세방지협정 등 그 어느 때보다 세일즈 외교로서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경제사절단에 참가한 기업들의 개별적인 많은 성과보다 사업기회가 무궁무진한 인도의 투자 및 무역환경이 개선된 점이 무엇보다도 의미 있는 성과라고 말하였다.

II. 경제

1. 경제지표 DB

구분	지표	단위	2013			
국가 일반	인구	(명)	12억 2000만명			
	면적	㎢	3,287,590㎢			
	한반도 대비면적	배	15배, (남한 면적의 33배)			
지표		단위	2010-11	2011-12	2012-13	2013-14
대내 경제	*경제성장률	%	8.4	6.2	5.0	4.9
	*1인당 GDP	US$	1,344	1,450	1,492	1,587
	*명목 GDP	US$	1조 3974억	1조 6064억	1조 8417억	1조 9,370억
	*정부부채/GDP	%	-	50.5	51.9	***23.2
	**소비자물가상승률	%	10.7	8.9	9.2	9.9
	민간소비증가율	%	-	-	-	-
	종합주가지수		20,509.09	15,454.92	19,426.71	25,099.92
	실업률	%	10.7	9.8	9.9	-
대외 경제	*수출실적	US$	2,511억	3,060억	3004억	3135억
	*수입실적	US$	3,698억	4,893억	4,907억	4,506억
	대외의존도	%	-	-	-	-
	*무역수지	US$	-1,187억	-1,833억	-1,903억	-1,371억
	민간투자증가율	%	-	-	-	-
	외국인투자금액(당해분)	US$	21,007	34,621	22,789	-
	**총외채	US$	3,060억	3,452억	3,941억	4,260억
	**외환보유고	US$	2,973억	2,967억	2,966억	2,957억
	**이자율	%	6.75	8.5	8	7.75
	환율	US$	45.57	47.9	54.45	58.62

주: * 인도의 회계연도 전년도 4 월부터 금년도 3 월까지를 기준으로 함

** 각 연도 12 월 기준

*** 정부부채는 인도 회계연도 2013-14 년도 3 분기 기준(2013 년 4 월-2013 년 12 월)이나 GDP 는 인도 회계연도 2013-14 년도 4 분기 기준(2013 년 4 월-2014 년 3 월)

자료: 인도 경제모니터링센터(CMIE), 인도중앙은행, CIA, GTA, 인도 산업정책진흥부, 인도 재무부

2. 경제동향 및 전망

가. 거시경제지표

지 표	단위	2010-11	2011-12	2012-13	2013-14
*경제성장률	%	8.4	6.2	5.0	4.9
*1인당 GDP	US$	1,344	1,450	1,492	1,587
1인당 GNP	US$	-	-	-	-
*명목 GDP	US$	1조 3974억	1조 6064억	1조 8417억	1조 9,370억
*정부부채/GDP	%	-	50.5	51.9	***23.2
**소비자물가상승률	%	10.7	8.9	9.2	9.9
민간소비증가율	%	-	-	-	-
종합주가지수		20,509.09	15,454.92	19,426.71	25,099.92
실업률	%	10.7	9.8	9.9	-
*수출실적	US$	2,511억	3,060억	3004억	3135억
*수입실적	US$	3,698억	4,893억	4,907억	4,506억
대외의존도	%	-	-	-	-
*무역수지	US$	-1,187억	-1,833억	-1,903억	-1,371억
민간투자증가율	%	-	-	-	-
외국인투자금액(당해분)	US$	21,007	34,621	22,789	-
**총외채	US$	3,060억	3,452억	3,941억	4,260억
**외환보유고	US$	2,973억	2,967억	2,966억	2,957억
**이자율	%	6.75	8.5	8	7.75
환율	US$	45.57	47.9	54.45	58.62

주: * 인도의 회계연도 전년도 4월부터 금년도 3월까지를 기준으로 함

** 각 연도 12월 기준

*** 정부부채는 인도 회계연도 2013-14년도 3분기 기준(2013년 4월-2013년 12월)이나 GDP는 인도 회계연도 2013-14년도 4분기 기준(2013년4월-2014년 3월)

자료: CIME, 인도중앙은행, CIA, GTA, 인도통계청, 재무부

나. 인도 경제 특징 및 개괄

□ 인도 경제 개괄

인도 경제는 대외 수출 의존도는 낮으나 경제개발 재원의 해외자금 의존도가 높아, 유로존 경제위기로 인한 선진국 자본의 디레버리징 및 위험자산 재조정 전략에 따라 심각한 자금 유출을 경험한 바 있으며, 이는 기업의 투자 위축, 실업률 증가, 소비 위축 등으로 직결되어 빠른 경기 위축세를 보이고 있다.

2014년 4월 인도 FDI 유입액은 3,265억 9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인도는 자국 경상수지

적자를 상쇄할 만큼의 외국 자본유입을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주로 인도 정부의 정책 일관성 결여 및 관료주의, 투자에 열악한 인프라 등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

인도 산업생산지수(Index of Industrial Production, 산업생산활동 추세를 나타내는 지표)는 2012-13년에 비해 0.1% 감소를 기록했다. 광산과 제조업은 각각 -0.6%와 -0.7%의 감소를 보였으며, 전력분야는 6.1% 상승하였다.

국제 금융 청렴 조사위원회(Global Financial Integrity, GFI)가 2010년에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인도가 영국에서 독립한 이래 1948년부터 2008년까지 해외로 불법유출 된 자금의 규모는 총 4620억 달러에 달한다. 부동산, 보석류, 공공조달, 조세 피난처 등을 통해 조성된 블랙머니는 외국인직접투자(FDI), 참여증권(PNs), 해외주식예탁증서(Global Depositary Receipts: GDRs) 등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 탈루세원의 확보를 위해 인도 전 재무부 장관 프라납 무커지는 2012년 5월 21일 블랙머니 백서를 발표하여,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사용 장려, 현금 사용 한도 인상 각종 협동조합을 포함한 비정부기구 데이터 뱅크 구축 등을 제안하였으며 각 부처 간 공조 노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2011-12회계연도 인도 GDP 성장률은 6.2%로 예전 8% 이상 꾸준히 유지하던 때에 비해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으나 세계 주요 신흥국과 비교하였을 때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2012-13회계연도에는 유럽 경제 위기, 루피화 가치 급락, 불안정한 투자환경으로 인한 투자금액 유입 감소 등으로 인해 인도정부의 성장률은 5.0%를 기록하였다. 그리고 2013-14 회계연도는 GDP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인 4.9% 기록하였다. 이와 더불어 최근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는 루피화 대미 환율 급락으로 인해 전체적인 인도 경기가 악화 및 불안정한 정세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의 인도 정부의 대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인도 경제 특징

인도 경제는 외국인 투자자금(FDI, FII, PE 펀드 등)을 재원으로 국내 산업 및 인프라에 투자, 내수를 성장 동력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중국과 기타 아시아 신흥 경제국과 차별화가 된다.

인도의 개발 정책은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계획되어 IT산업과 제조업이 집중된 서부지역과 남부지역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북부와 동부지역보다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8~9%의 고도 성장세는 도농간, 주(州)간 심각한 개발격차를 줄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IT 산업, BPO 산업 및 기타 영세 서비스업으로 구성된 3차 산업이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제조업 등 2차 산업 부문도 성장하고 있으나, 경제 성장 기여도는 26.1%(2013-14 기준)로 GDP의 30%대에 못 미치는 실정이다. 1차 산업의 경우 GDP 기여도가 13.9%(2013-14기준)에 불과하나, 인구의 약 60%가 해당 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몬순에 따른 농업성과가 물가상승률을 비롯한 경제 성과에도 영향을 끼치는 등 중요한 산업이다.

□ 무역수지

제조업 기반이 열악한 인도는 산업 생산을 위한 원자재, 중간재 및 원유 수입이 필수적이며 이에 대한 외국 의존도가 높아 만성적인 무역적자 구조를 가지고 있다. 2013-14회계연도(1-6월) 인도의 대외 수출은 3,135억 달러로 전년도 대비 162억 증가하였으나 2013-14회계연도(1-6월) 수입은 4,505억으로 전년도 대비 399억 달러 증가하여 2013-14회계연도(1-6월) 무역적자가 1,370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인도의 주요 수출 시장인 유럽 경제위기와 수출용 상품에 들어가는 수입원자재 가격이 상승이 루피화 절하가 수출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지 않아, 지난 1년간 인도 루피화가 23% 절하됐음에도(2011.5.31~2012.5.31) 유럽 경제위기로 인해 수출경쟁력 강화로 바로 연결되지 않았었으며 이번 루피화 절하 역시 전체적인 타국가의 통화가치 하락과 맞물리는 등 수출경쟁력 확보로 바로 이어질 것인지는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세계 주요 기관의 인도 경제성장 전망 발표

새로운 정권의 등장으로 인도 경제는 그 동안 미뤄온 이전 정부의 미해결 과제 및 경제 개혁과 부패 척결을 해결한다면 하반기부터 경제가 서서히 회복되어 2014년도에도 5%대의 성장은 무난 할 것으로 평가된다. Standard and Poor's(S&P)는 신정부의 효율적인 경제 정책 실행과 재정 정책, 그리고 상품 서비스세 도입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인도의 국가 신용 등급 평가를 재조정할 것을 시사하였으며 최근에 인도중앙은행의 적극적인 경기 안정화 정책과 신정부의 설립은 향후 인도 경기 회복에 대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인도 경제 일간지인 Economic Times는 지난 4월 12일자에 경제자문기관들의 인용을 통하여 인도 경제가 급속히 회복되는 추세이며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8%까지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 인도의 루피 가치 회복세

인도의 높은 인플레이션과 지지부진한 경제 성장에 활력을 점차 잃어감에 따라 2013년 9월에 인도의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인도 중앙은행 총재에 임명된 라구람 라잔 총재는 취임하자마자 기준 금리를 두 차례 연속 올리는 등 인플레이션 잡기에 열을 올렸다. 그리고 외국계 은행들이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장을 만들고, 국내 기업들의 금융업 진출을 더 허용하고 국영 은행의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그리고 인도 금융서비스의 광범위한 개혁의 하나로 2014년에 신규 은행의 영업을 십년 만에 허가해주는 것은 물론 외국계 은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새 규정을 발표하였다. 이 같은 조치로 인도의 경제는 점차 안정화를 찾아갔다.

루피화 환율 강세 추세 6월 9일 현재 달러당 59.20루피에 거래 되고 있다. 이는 사상최고치 68.15루피를 기록했던 지난해 9월의 루피화 약세 쇼크에 비해 상당히 안정을 찾아가는 양상을 보였으며 무역수지 개선과 신정부 기대로 인한 투자 유입 증가에 따른 것으로 이와 같은 루피화 강세 추세는 당분간 계속되는 것처럼 보였다.
한편 최근 이라크 사태로 인도 루피화 가치가 앞으로 3~6개월 내에 미 달러당 65루피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루피화 가치 하락세는 이라크 사태로 국제유가가 근 9개월 만에 최고치인 배럴당 113달러를 웃돈 게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국내 원유 수요량의 3분의 2가량을 수입하는 인도의 루피화 가치는 유가 영향을 쉽게 받는다. 유가 상승세는 인도 국내물가 상승과 경상수지 적자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 1년간 달러 대비 루피화 환율 추이

자료: x-rates.com

하지만 새 정권에 대한 기대감과 낮은 유가는 달러 대비 루피의 가치를 상승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듯 하였으나 최근 시리아 사태는 루피의 가치를 다시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인도는 해외에서 수입하는 원유의 양이 75%에 달하는 세계 4위 원유 수입국이다. 시리아의 정치적인 불안 요소는 국제 유가를 출렁이게 하였으며, 이로인해 2014년 6월 16일에 상승세를 타던 루피가 다시 하향세를 타고 있는 추세로 달러 대비 루피가 60선이 붕괴되었다. 일부 전문가는 이라크 사태로 향후 3~6개월 안에 달러 대비 루피가 65루피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으며 인도 경제가 급성장하고 있고 새로운 정권의 첫 출발이 휘청대고 있는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인도 새 정부의 경제 살리기 정책

BJP 당에서 발행한 선거공약집에서 언급했듯, 인도 새 정부는 “Good Governance”와 “Inclusive Development”와 함께 인도의 경제 재성장을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핵심내용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친기업적 사업 환경 조성을 통한 경제 활성화, 제조업 육성 및 인프라 개발을 통한 경기 회복, 물가안정과 세제간소화를 통한 소비 심리 개선, 수출 장려를 통한 대외 무역수지적자 감축 등이 있다.

최근 총 저축률이 국내 총투자율을 하회하고 있어서 신정부의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한 산업개방 노력이 가속화 될 건망으로 FDI 확대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회의당도

FDI를 통하여 경상수지 적자를 줄이고 경제 활력을 유지하려는 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었던 만큼, 야당도 신정부의 FDI 확대 추진 정책에 별다른 이견을 보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 활성화에 발목을 잡고 있는 인프라 부문에 대한 투자를 장려함으로써 제조업의 성장과 활성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의 기반이 되는 도로, 교량, 철도, 고속도로, 항만, 공항 등 전반적 분야의 인프라 건설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인도의 주요 도시 간 산업회랑을 만들어 물류 접근성을 높이고 화물 열차와 수송 열차의 노선을 확장하여 운행열차 수도 확장하는 등 낙후된 물류개선에 집중할 계획이다. IT 기술로 연결되는 도시를 구상하고 있으며 100여 개의 스마트 시티를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인도 IT를 더욱 발전시킬 계획이다.

신정부는 10%가 넘는 물가상승률을 억제하여 경제를 안정화시키는데 주력을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물가안정펀드를 조성하고, 단일한 국가농업시장을 형성하는 한편, FCI(Food Corporation of India)의 분리를 통하여 조달, 저장, 유통 과정을 효율적으로 개선시킬 것을 발표했다.

사업하기에 불편한 기존의 복잡한 행정절차를 단순화하고 불필요한 장애물을 제거하여 친기업적인 시스템 구축으로 인도에서 기업이 사업하기에 좋은 환경을 조성할 전망이다.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중앙정부와 주정부 간 단일행정 창구를 마련하여 원활한 진행을 유도하고 환경개발승인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신속한 업무처리에 집중할 계획이다.

다. 경제정책

□ 재정정책

2000년을 전후해 GDP의 10%를 상회하던 재정적자는 인도 정부의 재정건전화 노력과 경제성장에 따른 법인세, 소득세의 수입 증가 등에 힘입어 2007년 중 GDP의 4.2%까지 축소되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 부양과 빈곤층에 대한 유류, 식량 보조금 지출 등으로 인해 재차 확대됐다.

2011-12 회계연도 인도 재정적자는 GDP의 5.76%로 당초 추정치 5.9% 보다 소폭 줄어들었으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약 70% 수준에 달하고, 재정수지 적자 역시 GDP의 8~9%대 수준에 머무르는 등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여력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인도 정부는 2012-13 회계연도 중 재정적자를 GDP의 5.1%로 억제를 목표로 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보조금을 GDP의 2% 미만으로 제한, 비생산적인 지출을 삭감을 목표로 긴축정책을 추진했다.

인도 정부는 재정적자 축소와 물가 상승 억제 등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데, 이번 2013년 2월 28일 인도 정부가 발표한 예산안의 주요 골자는 전 회계연도 예산안의 주요 골자였던

재정적자 축소와 세금 징수 확대와 비슷하게 재정적자 경감 및 인플레이션 억세 등을 위한 과세 규정 소폭 개정을 필두로 인프라 개발 및 제조업 육성, 안정적인 과세 시스템 구축, 차기 총선을 위한 자금 확보 등을 위한 정부 방침이 주로 반영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구분		2012-13	2013-14	증감
GDP 성장률		5.0%	8%	2.5% ↑
재정적자		5.20%	4.80%	
보조금	보조금 총액		2 조 4,800 억 루피	
	석유보조금	9,688 억 루피	6,500 억 루피	3,188 억 루피 ↓
	식품보조금	8,500 억 루피	9,000 억 루피	500 억 루피 ↓
	비료보조금	6,597 억 루피		
차입	총 시장 차입		6 조 2,900 억 루피	
	순 시장 차입		4 조 8,400 억 루피	
	단기차입		1,984.4 억 루피	
	채권발행		5,000 억 루피	
총 예산지출		14 조 3,000 억 루피	16 조 6,500 억 루피	2 조 3,500 억 루피 ↑
세입	간접세		470 억 루피	
	직접세		1,330 억 루피	
	공기업 주식 매각		5,581.4 억 루피	

□ 통화정책

인도 기준금리는 2014년 6월 기준 8%이다. 2010년 3월부터 이루어진 13차례 인상으로 8.5%까지 치솟았으나 성장률이 둔화되었다는 판단 하에 2012년 4월 8.0%로 하향 조정되었다. 인도중앙은행은 물가 상승의 위험이 어느 정도 해소될 때까지 추가 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2012년 12월부터 물가상승률이 완화조짐을 보이기 시작하여 2013년 1월 29일 기준금리를 7.75%로 0.25% 인하하고 예금지급준비율 또한 기존 4.25%에서 4%로 인하하였다. 이러한 물가 상승률 완화 추세는 지속되어 2014년 5월 인도 도매물가상승률(WPI)가 8.28%로 전년 동월 7.69% 대비 2% 가량 대폭 하락하여 중앙은행에서는 3월과 5월 각 0.25%씩 기준금리를 인하하여 현재 7.25%의 기준금리, 지급준비율은 종전 4%를 유지하고 있다.

□ 환율정책

인도 중앙은행은 해외거주 인도인의 보유외화예금의 금리상한을 높이고 국내거주자 외환계좌에 예치된 달러의 절반을 루피화로 환전을 의무화하며 국내 정유사들에 직접 보유외환을 할당하는 등 달러 수요를 줄이고 공급을 늘리는 조치를 확대해 오고 있다.

□ 무역정책

인도 상공부는 20% 수출확대를 목표로 투자,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둔 120억 루피가 소요될 수출진흥지원정책을 2012년 6월 5일에 발표하였다.

노동집약 수출부문에 2% 이자율 보조, 수출진흥자본재(Export Promotion Capital Goods, EPCG)에 대한 영세율을 1년간 연장하고 적용범위도 확대해 수출을 촉진할 계획이다.

최근 수년간 특별경제구역(Special Economic Zones, SEZs)에 대한 기업의 관심이 줄어들고 수출액도 감소하자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최저대체세(Minimum Alternate Tax)와 배당세를 새로 부과하였다. 또한 무역적자 축소를 위한 금 등 사치품 수입억제, 반덤핑과 보조금 조사 확대, 불요불급품목의 수입관세율 인상이 예상된다.

□ 인프라정책

인도 정부는 12차 경제개발계획(2013~2017년)을 ① 강한 내생적 성장(Strong Inclusive Growth) ② 부분적 개혁 성공(Insufficient action) ③ 개혁부진(Policy Logjam) 등 3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초기에 경제성장률 목표를 9.0-9.5%로 설정했다. 그러나 인도경제가 최근에 급격히 하락하면서 지난 10월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8.2% 로 하향조정하였으며 최종 목표설정을 하는 국가개발위원회에서 8.0%로 재차 하향 조정하여 최종 결정하였다.

우선 인도경제성장에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전력공급문제의 해결이다. 현재 인도정부는 입찰 및 공급할당 비리와 환경조사 문제로 인하여 전력공급업체에 석탄을 적절하게 공급하지 못하고 있어 전력공급에 상당한 차질을 일으키고 있다. 그 외 인프라 사업도 토지획득, 환경심사 등 상당한 지연 및 사업 취소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인프라 개선이 경제성장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인도정부는 인프라 개발을 위한 자금이 부족하여 민관협력사업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PPP취지를 가지고 있으나 여전히 사업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인도 정부, 제12차 경제개발계획에 50조 루피(US$8,200억) 규모의 인프라 투자계획 수립을 통해 인프라 개선 추진 중이며 12차 경제개발계획 기간중 인프라 투자 규모는 GDP의 10% 수준이다. GDP 대비 인프라 투자규모는 5.2%(10차경제개발계획), 7.5%(11차경제개발계획)의 규모였다. 인프라 부문별 투자비율: 전력(31%), 통신(25%), 도로(12%), 관개(10%), 철도(7%)를 차지한다. 최근 '인도 전체가 공사판'이라고 불릴 만큼 전력, 도로, 철도, 항구, 공항 등 인프라 건설에 대한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 인프라투자 규모: 2006년 24,449억루피 (GDP대비 5.71%)에서 2012년 52,832억루피 (GDP대비 8.37%)로 증가하였다. 인도정부는 인프라투자예산 확보를 위해 2013-14 회계연도 예산안을 통해 5,000억루피(US$82억) 규모의 비과세채권 발행을 추진했다.

2013-14회계년도 예산중 인프라 관련 주요내용

(산업회랑) 첸나이-방갈로르 구간 건설, 방갈로르-뭄바이 구간 개발 준비작업 착수
(도 로) 인도 북동부-미얀마를 잇는 도로 건설
(신 항 만) 웨스트벵갈 및 안드라프라데시주 신항만 구축
(운 하) 인도 6번째 운하 구축 추진□

3. 주요산업동향

가. 주요 산업 동향 및 정책

수년간 인도의 성장은 제조업과 건설, 서비스 분야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지속될 전망이다.

인도 경제는 세계 경제위기로 인한 영향이 본격화된 2008-09 회계연도에 6.7%로 성장이 둔화되기는 하였으나 2009-10 회계연도에는 다시금 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서면서 8.4%의 성장을 보였다. 2010-11 회계연도에도 8~9%대 성장세를 회복하였으나 루피화 약세 및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증가로 인한 외국인 투자 감소 등으로 인해 2013-14회계연도 인도 경제성장률은 4.9%를 기록하여,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2008년 성장률보다 낮은 수준이다.

인도 정부는 2012년 상반기에 경제 성장률을 7.6%로 전망하였으나, 유로존 글로벌 경제위기와 인플레이션 등을 이유로 2012년 7월 31일 인도중앙은행에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6.5%로 하향 조정하였다. 인도 최대 신용평가사인 Crisil Research사에서도 2012년 8월 7일, 유럽발 경제 위기와 강우량 부족으로 인한 인도 경제 전반적인 위축을 이유로 2012-13회계연도 경제 성장률을 기존 6.5%에서 5.5%로 재조정하였고 2013-14년 회계연도 인도 경제성장률은 4.9% 기록하였다.

이에 더해 모건 스탠리는 인도의 2013년도 경제 성장률을 기존 예상했던 7.5%보다 낮은 수치인 6.8%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S&P, Fitch사에서는 인도 신용등급을 BBB-로 하향 조정하는 등 시장전망이 부정적인 상황에서, 인도 총리실에서는 2012년 8월 17일 2012-13회계연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제조업, 광업, 건설업, 통신, 금융, 개인 서비스 등이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경제성장률을 6.7%로 예상하며 글로벌 신용평가기관 및 주요기관에서 앞다퉈 하향조정하던 것과 달리 2011년보다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이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친 바 있다.

하지만 2013년 인도 정부가 발표한 2012-13회계연도 경제성장률은 인도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5.0%를 기록하며 목표보다 1.7%하락한 수치를 보였으나 타국과 비교하였을 때 여전히 높은 수치로, 외부여건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높은 성장세를 이어나가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도 많다.

2013년 2월 인도 정부가 발표한 2013-14회계연도 거시경제 조사 보고서에서 2013-14회계연도 인도 경제성장률은 6.1-6.7%를 기록하며 경기 침체 국면이 해소되고 경기가 반등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2013년도 초 각종 거시경제지표에 청신호가 켜지며 경기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았으나 2013년 5월부터 시작된 미 달러대비 루피화의 급락으로 인해 최근 사상 최저치인 59.7을 기록하는 등 이에 대한 여파로 인도 정부가 목표로 한 6%대의 경제성장률 회복이 가능할 것인지는 지켜보아야 한다.

인도의 산업구조는 농업 중심에서 광공업, 특히 서비스업 중심의 선진적인 구조로 빠르게 변화함으로써 농업 부문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경제성장의 진폭도 완화되고 있다. 인도의 산업 부문별 성장률을 살펴보면, 농업 부문은 몬순 기후의 변화에 따라 연도별 성장률 진폭이 너무 커서 인도 경제의 안정적 성장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한 반면, 제조업과 서비스업 부문은 지난 5년동안 평균 9~10%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11-12 회계연도의 농업 생산은 밀, 쌀 등의 주요 작물의 생산량 증가에 힘입어 성장세를 보였으며, 약 2억 3700여톤이 생산된 것으로 추정된다. 근래 들어 1970년에 46.3%에 달했던 과도한 농업부문 의존도가 17%로 줄어드는 한편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인도는 근본적인 산업 구조 재편을 경험하고 있다.

인도의 산업 구조

(단위: %)

회계연도	2007-08	2008-09	2009-10	2010-11	2011-12	2012-13	2013-14
1차 산업	16.8	15.8	13	14.6	14.4	13.9	13.9
2차 산업	28.7	28.1	28.3	27.9	28.2	27.3	26.1
3차 산업	59.9	58.8	57.4	57.5	57.1	56.1	54.4

주: 원 자료에서 건설업은 3차 산업으로 분류되었으나 2차산업으로 재분류하여 생산한 자료임
자료: 인도중앙은행(RBI)

광업 분야는 석탄, 천연가스, 철광석의 생산량 감축정책으로 인하여 2011-12년 미미한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2012-13년에는 상황이 호전될 것으로 보인다. 채굴기술 개선으로 석탄 생산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철광석 생산량의 감소 폭도 점차 줄어들 것이며 천연가스의 생산량은 ONGC의 가스 생산이 시작되면서 앞으로 높은 생산량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 정부는 제조업 육성을 위해 인도 정통부, 재무부 주도로 해외 제조기업의 인도 진출을 유도하는 정부 개혁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3-15년간 해외기업의 공장 및 기계류에 대한 투자가 약 1700 달러를 넘을 경우 해외기업 투자액의 15% 세제 혜택 제공을 결정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마드야 프라데시, 구자라트, 라자스탄 등에 전용공단을 건설하고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주(州)정부 차원의 해외 제조기업 유치에 전력 투구하는 등 제조업 육성을 통한 인도 정부의 핵심 과제인 고용창출, 수출제품의 경쟁력 확보를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추가 지원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지에서는 건설 및 인프라부문의 수요 증가로 기계, 금속, 시멘트, 페인트의 생산량이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및 기계의 수요가 점차 증가하여 금속부문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력 생산은 지난 11차 5개년 경제개발 계획 기간에 62GW의 전력을 추가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나 55GW의 전력을 추가하는데 그쳤다. 이는 기존 목표의 71%만을 달성한 것이지만 인도는 전력 시설 추가 목표를 높게 설정하는 경향이 있었고 평균적으로 목표의 50% 정도만 달성해 왔던 것을 감안하여 인도 정부는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번 71% 달성에는 발전 산업에 호의적인 정책 구성과 전력 생산에 민간 사업자 진입을 적극 허용하고 연료의 풍부한 공급 및 효율 향상이 주요 요인이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11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이 끝날 무렵 자국의 석탄 공급 부족, 수입 석탄의 가격 인상 등에 기인한 열원 공급 부족 현상을 겪으며 전력 상황이 열악해졌다.

인도 정부는 2012-17년 기간에 진행되는 제 12차 경제개발계획 중 전력 부분에서 83GW의 발전 용량을 추가하고 이 중 69GW는 화력발전으로 추가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여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석탄 채굴 및 공급량, 송배전 시설 추가 구축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의 화력발전소는 인도 전체 전력 생산의 80-8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석탄 수급 및 시설 증설과 화력발전소를 꾸준히 늘리고 있다.

2011-12년 건설 분야는 그 동안 수많은 프로젝트의 지체로 인하여 진행중인 프로젝트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2012-13년에는 건설 분야의 빠른 성장이 기대되면서 프로젝트 건설이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비스 분야의 성장 추세는 2005-06년부터 2009-10년 10%를 웃도는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2010-11년 이래 9% 대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비슷한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제조업분야의 성장으로 도매 및 소매 산업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조업 분야는 지난 40여 년 동안 자동차, 철강 및 비철금속, 섬유산업, 석유화학산업 등에서 성장세를 지속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동 기간 중 약 7%가 증가해 28%가 되었다.

2011-12년엔 수출의 전반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기침체로 주문증가 폭이 감소하여 인도 제조업 구매관리지수(PMI)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나, 건설 및 인프라부문의 수요 증가로 기계, 금속, 시멘트, 페인트의 생산량이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및 기계의 수요가 점차 증가하여 금속부문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별 실질 GDP 성장률

(단위: %)

산업 구분	2010-11	2011-12	2012-13	2013-14 (1-3월)
농수산업(Agriculture, Forestry, Fishing)	7.9	3.6	1.9	6.3
광업(Mining)	4.9	-0.6	-0.6	-0.4
제조업(Manufacturing)	9.7	2.7	1.0	-1.4
전기, 가스, 상수도 공급 (Electricity, Gas, Water Supply)	5.2	6.5	4.2	7.2
건설업(Construction)	10.2	5.6	4.3	0.4
무역, 호텔, 교통, 창고업, 통신 (Trade, Hotel, Transp, Storage & Communication)	12.3	7.0	6.4	3.9
금융, 보험, 부동산, 비즈니스 서비스	10.1	11.7	8.6	12.4
지역사회 서비스, 사회 및 개인 서비스 (Community, Social & Personal Services)	4.3	6.0	6.6	3.3
전체 GDP 성장률	9.3	6.2	5.0	4.6

자료: 인도 통계청, 인도 재무부

나. 농수산업 특징 및 동향

과거 가장 중요한 산업의 한 축이었던 1차 산업은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떨어져 전체 경제의 15% 수준에 불과한 비중을 차지하게 됐다. 그러나 아직도 인도 전체 노동력의 60% 정도가 농촌에 거주하고 있어, 농업 부문의 침체는 빈부격차 확대와 사회 불안정성 증대 등 부정적인 결과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중요한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농업 기후 조건이 좋고 풍부한 천연자원을 가진 인도는 코코넛, 망고, 바나나, 밀크, 낙농 제품, 캐슈넛, 콩, 생강, 심황과 후추가루의 최대 생산국이다. 또한 쌀, 밀, 설탕, 면화, 과일, 야채의 두 번째 큰 생산국이며, 향후 몇 년 내 커피도 10대 생산국 반열에 등극할 것으로 분석된다.

1) 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농업 부문의 축소

인도의 농업부문은 곡물 생산과 축산업으로 크게 구분되며 곡물이 70%, 축산업이 30%를 차지하고 있다. 농업부문은 산업 구조의 고도화에 따라 비중과 경제적 중요성이 하락하여 인도 GDP의 15%를 담당하는데 불과하나, 전체 인구의 60% 이상이 농업 부문에 종사하면서 극빈층을 형성하고 있어 국가 균형 발전에 결정적인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인도의 전 국토 가운데 농경지는 57.1%, 삼림이 23%, 목초지 3.8%, 기타 16.1%로 구성되어 있으나, 강수량이 우기에 집중되어 있고 관개지가 적어 총 경작 면적의 70%는 비(非)관개지이다.

이에 인도 정부는 농업부문 발전을 위해 1966년부터 1999년간 두 차례의 녹색 혁명(Green Revolution)을 실시하여, 1960년대 중반까지 연간 1.87%의 낮은 성장률을 보이던 농업부문 성장률을 1999년 3.35%까지 증가시켰다. 녹색 혁명 이후 개간과 관개 시설 확충, 비료의 투입 등 기술의 발전과 투입요소의 효율적인 결합으로 총 요소 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이 증가함으로써 질적 성장을 이룩한 것이다.

마하라수트라, 펀잡, 안드라프라데쉬, 그리고 라자스탄 지역을 포함한 14개 주는 최상의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농민들이 바이어에게 직접 생산품을 팔 수 있게 올해 농업 생산 마케팅 위원회(APMC) 법안을 수정했다. 그리고 농업 및 관련 분야의 서비스와 원예 농업과 화훼원예, 종자의 개발, 동물 농장, 수산 양식, 양식, 야채 경작, 버섯 재배 등에서의 자동 승인으로 100%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였다.

일부 업체들은 인도 농업의 잠재성을 개발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로 농민들과의 협력을 통해 농업 분야로 진출하고 있다.

○ SABMiller India 사의 100% 자회사인 Skol Breweries India Ltd사는 하리야나(Haryana) 지역에서 보리 재배 농부들과 계약 농업 산업에 진출하였다.

○ Adani Agrifresh 사는 향후 3년 내에 농장으로부터 신선한 과일과 야채들을 소매업자들에게 공급하기 위한 공급체인을 만드는 데 2억 5,100만 달러를 투자했다.

○ Cadbury India Ltd 사는 5만 에이커의 부지에 코코아 농업을 진흥시키기 위해 타밀나 두 원예 농업부와 협력을 통해 시장에 진입했다.

○ 히말라야 제약(Himalaya Drugs)사는 자사의 제약에 쓰이는 식용 식물의 70%를 조달하기 위해 인도 남부지역 주와 협력할 계획이다.

○ 펩시코(PepsiCo)사는 자사의 frito-Lay 스넥을 위한 바스마티 쌀과 망고, 감자, 고추, 땅콩, 보리를 농부들에게 소개한 이후 자사의 트로피카나 주스를 위한 400만 Sweet-Orange 나무를 수백여 농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해 펀잡 주 정부와 함께 5개년 계획을 추진한 바 있다.

○ 릴라이언스 Retail 사는 펀잡, 웨스트벵갈, 마하라수트라 지역에 56억 달러를 투자하여 농장들과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2) 유기 농업

인도는 유기농 경작에 있어서 전체 토지 면에서 전세계에서 33위이며, 전체 경작지에서의 유기 농작물의 농경지 비율 면에서는 88위를 차지한다. 하리야나, 마하라수트라, 타밀나두를 포함한 9개 주 지역에서 농부들의 생산물이 유기 농작물임을 인증하는 APEDA에 대해 인가 제안을 제출했다. 께랄라는 매년 유기 농업을 위해 농경지의 20%를 변경할 계획이며, 향후 유기 농업을 위한 농경지로 전체를 변경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도에서 유기 농업으로 인증 받은 토지는 31만 2,000헥타르이고, 유기 농산물 수출은 2005-06연도 2,640만 달러에서 2006-07연도 8,308만 달러로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2007-08연도 1억 2,588만 달러를 넘어섰다. 세계 경제위기로 인한 수출 시장 위축으로 인해 유기농 제품의 수출도 감소했으나 2009-10 회계연도에 135개의 유기농 제품 44만 5000톤을 수출해 1억 2500만 달러 상당의 수익을 올려 전년 동기 대비 50%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인도는 매년 1만 365톤의 유기농 생산물로 전세계 두 번째로 큰 유기농 면화 생산국이다. 유기농 면화를 사용하는 나이키, 아디다스와 같은 스포츠 의류의 성장에 따른 수요가 증가해 향후 성장의 여지는 충분하다.

3) 쌀 산업

인도의 쌀과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전 품종에 걸쳐 인도 산 쌀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벼는 중국의 수출단가가 1,154달러인데 비하여 인도는 221달러, 쇄미는 중국의 수출단가가 223달러이나 인도는 96달러, 그리고 쌀가루의 경우 중국은 447달러이나 인도는 387달러에 불과하다.

한국과 인도의 교역에서 임산물, 수산물과 축산물을 포함한 인도의 농업 생산물이 차 지하는 비중은 5% 미만이나, 인도는 세계 2위의 쌀 생산국으로서 한국 시장에 큰 관 심을 보이고 있다. 인도는 2004년 1월 한국의 DDA 쌀 관세화 유예 협상에 참여 의사를 표명하여 6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협상을 진행했다.

올해 8월 인도 농업부 발표 자료에 의하면 2011-12회계연도 쌀 전체 생산량은 전년대비 9.7% 증가한 1억 530만 톤에 달한 것으로 파악된다.

4) 농업 부문에 대한 정부의 정책

□ 농업지원

민간회사들이 FCI(food corporation of India)를 대신해서 조달 부문에서 식료품의 수송이나 창고 비즈니스 사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최종 소비자에게 저가로 공급하기 위해 중간 상인을 배제하고 농부들에게 최대한의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신 인프라 설비와 7개소의 현대식 터미널 시장을 건설했다.
60개 농업 수출 지역(AEZs: Agricultural Export Zones)을 승인하였으며, 2007년 5월까지 2억 1,814만 달러를 이 지역에 투자하였다. 게다가 웨스트벵갈, 아쌈, 안드라 프라데쉬, 시킴 등 4개 지역에 수출 인프라스트락쳐를 위해 1,210만 달러의 자금 원조를 지원했다.

인도 정부는 11차년도 계획 기간에 4%의 농업 증가율을 두배로 끌어올리기 위한 새 농가 법안으로 61억 7,000만 달러의 추가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며, 2011-12 예산안 발표 시에도 농업 분야 서민층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늘리고, 식료품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농업 개혁의 의지를 밝힌바 있다. 더불어 농촌지역 주택자금 300억 루피(약 6억7000만 달러)로 확대, 농촌지역 인프라개발 위한 Bharat Nirman 프로그램 예산 확대를 계획했다.

□ 규제

농업 부문에 대한 인도의 정책은 수출입뿐만 아니라 생산과 소비, 그리고 이동 자체를 정부가 통제하는 형식을 띠고 있다. FCI(Food Corporation on India)를 통해 곡물 상품에 대한 가격 통제 및 수출과 지역 간 이동 제한을 두었으나, 설탕, 쌀, 면섬유 등을 대상으로 한 동 조치는 1990년대 들어 폐지되었다. 그러나 정부가 쌀과 설탕 생산량의 25%에서 75%까지 주 별로 다양한 의무구매 비율을 설정함으로써 농업부문 종사자들의 이윤 동기 및 생산성이 저하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물가안정펀드를 조성하고, 단일한 국가농업시장을 형성하는 한편, FCI의 분리를 통하여 조달, 저장, 유통과정을 효율적으로 개선시킬 것을 발표했다.

또한 인도 정부는 국제 가격의 변동으로부터 국내시장을 보호하는 한편 국내 가격을 낮게 유지하여 곡물 수매와 공급에 따른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농업 생 산물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실시하고 있다

다. 제조업 특징 및 동향

인도의 제조업 부문은 GDP에서 27%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요도와 규모에 따라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섬유 등의 주요 산업이 있다.

1) 자동차 산업

과거 인도의 빠른 경제 성장의 가장 큰 수혜분야 중 하나로 고공행진을 하던 자동차 시장이 최근 고금리 정책과 인플레이션을 동반한 경기 침체, 유가 폭등, 소비세 인상 등으로 저조한 판매율을 기록하면서 자동차 산업 성장이 둔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인도의 주력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총괄적 동향

인도 자동차산업의 총괄적 성장세를 살펴보면 해당 규모는 2016년까지 약 1,200억 달러에서 1,551억 달러 정도 수준으로 성장할 것이 전망되며, 특히 상용차량 분야의 성장이 예상된다.

인도 자동차 산업은 산업 전문가들이 2010년까지 130억대의 차량 생산과 9.5%의 성장을 보일 것이라고 예측한 수준을 넘어서 성장해 140억대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했다.

2011-12 회계연도 예산안에 따라 하이브리드 차량의 제조세(Excise duty)가 기존 10%에서 5%로 인하되고, 필요한 부품 수입에 대한 관세가 전액 면제 됐으며, 2006년에 인도 정부가 추진한 소형차에 대한 세금 감면 정책으로 인도가 전 세계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의 소형차 제조 허브로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2008, 2009년에 발표한 경기부양책에서는 세금과 은행 이자율을 인하시켜 경기불황으로 침체된 자동차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2010년 들어 시행된 출구전략에서 물품세를 일부 인상하였으나, 인도의 대규모 모터라이제이션에도 서서히 시동이 걸리며 시장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2-13회계연도의 경우 인도 정부가 예산안 발표 시 자동차의 소비세를 인상하여 승용차 판매량이 급감하는 계기가 되었으나 상대적으로 보조금이 지급되는 디젤 차량의 경우 판매량이 급증하고 특히 SUV 차량이 가장 큰 수혜를 입었다.

최근 발표된 승용차 판매실적에 의하면 인도의 2013년 2월 및 3월 승용차 판매실적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25.7%, 20% 하락하는 등 2012-13회계연도 인도 자동차 판매대수가 10년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도의 승용차 시장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은 2002-03회계연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포드의 야심작인 Fiesta, 닛산의 에발리아, 타타의 아리아 등 글로벌 기업들이 출시한 신차가 기대와는 달리 출시된 후 크게 저조한 성적을 기록하며 소비자들에게 철저하게 외면당하는 등 일부 기업들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부진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지속되는 경제침체와 높은 금리로 소비자들의 구매심리가 위축된 것이 주된 요인인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지난 회계연도 내내 구매심리가 얼어붙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진한 상황 속에서도 중형차 제품들의 판매는 지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불황 속에서도 자동차 기업들이 이를 통해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등 자동차 기업들은 지속적인 내수 시장의 수요부진을 극복하고자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특히 인도를 수출 거점으로 삼고 수출을 통해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인도 자동차 시장이 이러한 부진한 성장세를 기록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개척되지 않은 시장과 소비자들의 구매력 증가 등 거대한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곧 회복세 및 높은 성장률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인도 자동차공업협회는 2016년 인도 자동차 산업의 위치를 승용차 부문 세계 7위, 상용차부문 세계 4위, 삼륜차 부문 세계 1위, 이륜차 부문 세계 2위 등으로 전망한 바 있다.

자동차 산업 GDP 비중 전망

구분	단위	2006	2010	2016
GDP 규모	10억 달러	650	950	1,390
자동차 산업 규모	10억 달러	34	69	145
비중	%	5.2	7.3	10.4

자료: Automotive Mission Plan 2006~2016

인도 자동차 산업 생산 동향

(단위: 대 수)

구분	2007-08	2008-09	2009-10	2010-11	2011-12	2012-13
승용차	1,777,583	1,838,593	2,357,411	2,987,296	3,146,069	3,233,561
상용차	549,006	416,870	567,556	752,735	929,136	831,744
삼륜차	500,660	497,020	619,194	799,553	879,289	839,742
이륜차	8,026,681	8,419,792	10,512,903	13,376,451	15,427,532	15,721,180
총계	10,853,930	11,172,275	14,057,064	17,916,035	20,382,026	20,626,227

자료: 인도 자동차 제조자 협회(SIAM)

이륜차와 삼륜차 생산의 감소로 전체 생산이 다소 감소한 2007-08 회계연도를 제외하고는 2008-09 회계연도부터 2011-12 회계연도까지 자동차 생산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승용차 시장은 2008-09 회계연도 경기침체 시기에도 꾸준히 증가하고, 2009-10 회계연도에는 30%에 가까운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음을 알 수 있다. 2012-13 회계연도는 상용차, 삼륜차 생산이 다소 감소했지만 자동차 산업의 총 생산량은 증가하며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2011년 이륜차 시장은 전체 자동차 산업 성장률보다 높은 15%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인도 자동차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였으며 현재는 세계 2위 이륜차 생산국가에서 수출국가로 발돋움하고 있다. 스쿠터의 경우 최근 2년간 20%이상의 판매량 증가치를 기록하며 이륜차 시장의 신 성장 품목으로 주목 받고 있다. 향후 지속적으로 고성장 모멘텀을 유지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으나 이륜차는 전체 가구수의 35%만을 차지, 인도 이륜차 내수시장의 침투율이 여전히 낮은 편임을 고려해 성장 잠재력은 충분한 것으로 평가된다.

2012-13 회계연도 인도 자동차 시장 차종 별 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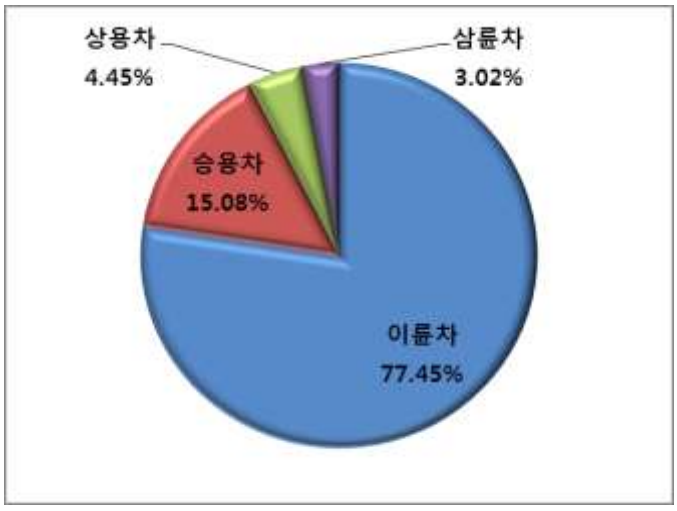

자료: 인도 자동차 제조자 협회(SIAM)

인도 경제 전반에 걸쳐 하강국면에 접어들면서 소비심리 위축 및 경기 위축에 따라 2012-13 회계연도의 인도 내 자동차 판매 증가율은 2.53%에 그쳤으며 이는 2011-12 회계연도에 12.24%의 증가율을 보였던 2011-12 회계연도에 비해 상당히 하락하였다. 이 중에서 삼륜차 판매는 4.88%, 이륜차는 2.69% 증가, 승용차는 2.61%를 기록하였다. 반면, 상용차는 -8.69% 감소하였다

인도 자동차산업 국내 판매 추세

(단위: 대수)

구분	2006-07	2007-08	2008-09	2009-10	2010-11	2011-12	2012-13
승용차	1,379,979	1,549,882	1,552,703	1,951,333	2,501,542	2,618,072	2,686,429
상용차	467,765	490,494	384,194	532,721	684,905	809,532	739,150
삼륜차	403,910	364,781	349,727	440,392	526,024	513,251	538,291
이륜차	7,872,334	7,249,278	7,437,619	9,370,951	11,768,910	13,435,769	13,797,748
총계	10,123,988	9,654,435	9,724,243	12,295,397	15,481,381	17,376,624	17,815,618

자료: 인도 자동차 제조자 협회(SIAM)

수출 측면에서 보면 인도는 자동차 수출을 위한 제조기지로서 새롭게 대두되면서 전년 대비 24.4%의 자동차 수출 증가율을 보였던 2011-12 회계연도와는 반대로, 2012-13 회계연도는 -3.9%로 다소 감소했다. 이 중에서 승용차는 9.34%, 이륜차는 0.71% 증가를 기록한 반면에 삼륜차는 16.48%, 상용차 -13.73% 감소를 기록했다.

인도 자동차산업 수출 추세

(단위: 대)

구분	2006-07	2007-08	2008-09	2009-10	2010-11	2011-12	2012-13
승용차	198,452	218,401	335,729	446,145	453,479	507,318	554,686
상용차	49,537	141,225	42,625	45,009	76,297	92,663	79,944
삼륜차	143,896	141,225	1,004,174	173,214	269,967	362,876	303,088
이륜차	619,644	819,713	1,004,174	1,140,058	1,539,590	1,947,198	1,960,941
총계	1,011,529	1,238,333	1,530,594	1,804,426	2,319,956	2,910,055	2,898,659

자료: 인도 자동차 제조자 협회(SIAM)

자동차 부분 투자 추세를 보자면 인도 자동차 산업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10% 가량씩 성장해 왔으나,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여파가 서서히 인도 자동차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2007-08 회계연도에는 7.2%, 2008-09회계연도에는 2.6%의 성장세에 머물렀다. 2009-10 회계연도에는 경기 회복세로 인해 선진국의 소형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다시 성장세를 보였으며 2012년에는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연 300만대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세계 주요 메이저 자동차사는 모두 인도에 생산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투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높은 수입관세로 인하여 자동차 완제품 수출이 어려우므로 인도 현지 생산을 통해 미래의 거대시장인 인도 시장에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한편으로 중동, 아프리카, 유럽으로의 수출도 노린다는 것이 일반적인 전략이다. 인도 자동차 산업 중 배기량 1,200cc이하의 소형차 부문은 특히 투자가 활발한 편이다. 주요기업은 다음과 같은 기업이 있다.

○ Maruti

마루티사(Maruti Udyog)는 1984년 인도 정부의 주도로 스즈키사와 지분합작을 시작하여, 현재는 스즈키 지분 54.2%, 보험회사들 9.14%, 금융기관 및 은행 1.68%, 기타 공공부문으로 구성되어 점차 일본 기업화되고 있다. 2009년 중 마루티사는 새로운 국가 환경 기준에 맞추어 에너지 효율적인 엔진 생산을 위해 120억 루피를 투자했으며, 향후 론칭할 신규 모델들은 모두 새로운 엔진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모든 모델에 동 엔진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밖에 마루티사는 테스트용 트랙을 포함한 승용차 R&D 시설과 벤더 기업들을 위한 연구단지 조성을 위해 100~150억 루피를 투자할 계획이며, 총 700 에이커에 달하는 동 센터의 완공은 2012년에 이뤄질 전망이다. 각종 충돌 테스트, 배기량 테스트, 윈드 터널을 포함한 각종 내구성 시험, 부품 평가 시설 등이 모두 갖춰질 예정이며, 벤더 기업들을 위한 연구단지에 입주할 기업들로 인해 하리아나주에 100억 루피의 추가적인 투자가 유발될 것이다.

마루티사는 2012년 6월, 디젤 엔진 제조사인 Suzuki Powertrain India Ltd(SPIL) 인수를 발표를 통해 디젤 차 수요 증가에 부응하기 위해 디젤카 부문 생산에 집중 할 것이라고 발표 했으며, 이는 인도 디젤 자동차 생산 확대 동향을 주도한다는 의의를 가진다.

구르가온에 소재한 제조 공장의 디젤 엔진 생산시설에 대한 170억 루피 투자 계획을 발표해 이 소재 공장에서만 2014년도까지 30만대 생각 목표를 발표 한 바 있으며, 2011년 회계연도 판매량은 100만 대를 넘어서며 여전히 시장 점유율 위를 차지하나 전년 대비 11.2%가 감소하는 판매 둔화를 기록하고 이로 인해 휘발유 차량 생산은 최고 인기 모델인 Alto를 포함해 고유가에 따른 수요 감소에 의해 생산량을 감축하였으며 현재 휘발유 엔진 제조 시설은 일일 70%만 가동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마루티 스즈키사에 따르면 휘발유 차량과 디젤 차량의 판매량 간격은 점점 벌어지고 있으며 인도 자동차 시장에서 디젤 차량의 시장 점유율은 2011년도 47%까지 증가하였고 마루티 스즈키사의 2012년 5월 판매량 중 디젤 차량 판매 비중은 55%를 넘어섰다.

이와 더불어 최근 계속되는 자동차 산업 불황에 따라, 하리야나주 구르가온, 마네사 공장의 일일 생산량을 25% 감축하여 2012년 일평균 생산량 3,300대에서 2013년 일평균 생산량은 2,466대로 줄었고 생산량 감축에 따라 마네사 공장 디젤 엔진 생산 공장 임시직 노동자 200명에게 휴가를 실시하였다. 마루티 스즈키는 100,925 대를 2014년 5월에 판매했다.

○ Honda

지난 2007년 7월 1일 소형차 시장에 진입을 선언한 HSCI(Honda Siel Cars India Ltd.)는 델리인근 그레이터노이다에 위치한 기존 공장에서 120㎞ 떨어진 타푸카라(Tapukara) 공업 단지에 제2공장을 착공한다고 발표했다. 제2공장의 규모는 600에이커 (242만 7,600㎡)로서 초기 투자금액은 100억 루피(2,287억 원, 1루피=22.87원), 연 생산규모는 6만대이며 2009년부터 생산을 시작할 계획이었으나,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인한 자동차 산업의 동반 위축으로 인하여 2010년 또는 2011년 중에나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제1공장의 생산설비를 연 5만대 수준에서 연 10만대로 늘리기 위해 2008년 162억 루피를 투자한 바 있다. 혼다는 2011년 소형차 브리오(Brio)를 5렉루피(약 1250만원)에 출시할 예정이며 브리오의 부품은 80%가 로컬화 될 전망이다. 혼다는 2014년 5월 13,362대의 차량을 판매하였으며 작년 대비 18%의 증가를 보였다.

○ 포드 인디아

소형차 피고(Fogo)가 출시 1년만에 큰 성공을 거두면서 포드는 인도 소형 자동차 시장에서 마루티, 현대자동차, 타타에 이어 4번째로 우뚝서고 있다. 2010년 출시된 피고는 100점 만점에 83점을 얻으며 폭스바겐을 제치고 '2011 인도 카 오브 더 이어'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룩하기도 했다. 인도가 중남미 및 북아프리카 진출의 중요한 허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포드틀 국내외 자동차 수요를 맞추기 위해 첸나이 공장을 생산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첸나이 공장에 5억 달러를 투자, 새로운 엔진 공장을 설립했다.

최근 포드사는 구자라트주의 사난드 공장을 2014년까지 완공하고 본격 가동하여 글로벌 자동차 생산기지로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오는 2016년까지 사난드 공장의 생산 규모를 연 20만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이 중 30~50%는 수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코드명 'B562' 프로젝트를 가동하여 2-3년 내에 소형 해치백 및 중소형 세단(전장 4미터 이하 포함)을 출시할 계획을 세우는 등 인도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포드 인디아는 2014년 5월에 12,288 대의 차량을 판매했다.

○ 폭스바겐

유럽 최대의 자동차 제조회사인 폭스바겐사는 5억 3,000만 달러를 투자하여 마하라쉬트라 주 뿌네 지역에 역시 제조공장을 설립하기로 결정하고 2009년 3월 폭스바겐의 그룹 생산 공장이 공식적으로 가동을 시작하였다. 뿌네 공장에서는 폭스바겐의 체코 계열사인 Skoda의 Fabia 컴팩트 자동차를 2009년 5월부터 생산하기 시작했으며, 인도시장을 겨냥해 특별히 개발된 폭스바겐 폴로의 해치백 모델 생산이 2010년부터 시작됐다. 한편, 아우랑 가바드 공장에서는 중형승용차인 Passat를 2007년 상반기부터 조립 생산하고 있었으며, Skoda 모델과 아우디 모델을 2001년부터 조립생산하고 있었다. 폭스바겐의 인도 투자는 독일기업 단독으로 투자한 금액 중 최다액을 기록하고 있다. 폭스바겐은 2009-10 회계연도에 4,094대에 불과하던 판매량이 2010-11회계연도에는 51,608대로 10배 이상 증가하며 시장 점유율 역시 0.27%에서 2.6%로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2012년도 1-8월까지 총 판매량은 7만 7천대로 높은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으며 2012년 말까지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 GM

GM 인도법인은 연산 22만 5천 대의 생산 용량을 갖추기 위해 지난 14년간 500억루피 이상을 투자해 왔다. GM사는 2011년 기준 향후 2년간 6개의 새 모델을 출시 예정이며, 환경 친화적인 시보레 비트 LPG와 스마테크 엔진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구자라트 공장의 85,000대의 생산 용량은 몇 달 내 100,000대로 증가할 전망이다.

그러나 2013년 7월 24일 2005-13년 생산된 Chevrolet Tavera(BS3, BS4) 모델 114,000대를 배기가스 규정 준수를 위한 정비 목적으로 리콜을 단행했다. 동 모델은 같은 해 7월 2일(BS4)과 7월 4일(BS3) 각각 배기가스 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유로 생산 및 판매 조치에 처해졌으며 GM사는 결함 정비 후 재승인 대기 중이다.

□ 정책

인도 정부도 내수뿐만 아니라 수출 상품으로 자동차 산업을 적극 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민영화 등 경쟁을 도입하여 동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면세 혜택과 같은 다양한 외국인 투자유인책을 도입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 회사들의 수출을 위해 Jamshedpur와 캘커타, 뿌네와 뭄바이 그리고 구르가온과 뭄바이 항구 간의 전용 철도와 구르가온과 델리 간의 전용 고속도로 그리고 모든 4개의 항구에서 도로와 항구를 연결하는 도로 등 3가지 전용로 설치를 계획 중이다.

□ 향후 전망

인도 자동차 시장에서 지난 몇 년간 휘발유 가격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는 등 계속 상승하자 디젤 차량의 인기가 급증했으며 현재 인도 휘발유 가격은 디젤 가격 대비 74% 높다. 디젤 차량은 30%이상 연비 효율이 놓고, 1년 이상의 디젤 가격 동결로 인해 휘발유 대비 74% 저렴해져 소비자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디젤 차량 판매는 작년 회계연도에 35% 증가한 반면, 휘발유 차량은 15% 감소했다.

인도 정부의 예산 발표 시 디젤 차량에 대한 물품세 인상이 면제되자 인도 자동차 제조기업들은 즉각적으로 각 디젤 차량 생산 확대 움직임을 보였다. 포드사는 디젤차량 8만 대 생산 증가를 위해 7200만 달러를 투자, 현대 자동차는 디젤 생산 시설 50% 증설 계획 발표, 마루티 스즈키사는 디젤 생산 라인을 위해 피아트 엔진 10만 대를 추가한 바 있다.

차종 별 성장세 전망을 보자면 중산층 및 실질 소득증가로 인한 구매가능 계층의 확대, 도로망 개선, 대중교통수단 미비, 다양한 지불방식의 도입 등으로 승용차, 상용차, 이륜차에 대한 수요증가 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또한 인도 기업인 TATA 자동차는 10만 루피(260만원) 차를 2009년 3월에 출시함으로써 향후 소형승용차에 대한 구매욕구 확대 및 인도 소형차 보유자의 중·대형차 대체 구매가 확대되고 있다.

소득수준이 향상되면 이륜차에서 자동차로 수요이동이 이루어지나 승용차는 도로망 확충이라는 선결 과제를 해결해야 하므로 보급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인도는 연비가 뛰어나고 통근, 통학 시 기동성이 높은 이륜차의 비중이 높다. 특히 인도 도심부의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배기가스 규제가 시행되고 있어 연비가 뛰어난 4기통 모터사이클의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이다.

또한 최근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추진에 따라 도로 건설용 트럭을 비롯한 중· 대형 상용차 시장이 보다 빠른 성장세를 보일 전망이다.

자동차 부품사업 측면에서 보자면 현재 인도 자동차부품 업계는 비교적 저렴한 노동력과 원자재 등의 유리한 여건 덕분에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들인 다임러크라이슬러, 크라이슬러, 폭스바겐, GM, 르노, 닛산, 볼보, JCB, Caterpillar 등 주요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인도에서의 부품 아웃 소싱에 참여한 덕분으로 호황을 맞고 있다. 인도 자동차 부품시장은 경제 탄력성의 주요 지표로 이용돼 인도 경제 핵심산업 중 하나이다.

자동차 바퀴시장 세계 3위, 2륜차 바퀴시장 세계 2위, 트랙터 시장 세계 4위, 상용차·버스·트럭시장 세계 5위 그리고 아시아에서 7번째로 크고 세계에서 10번째로 큰 차량 이용객 수 등 규모 및 잠재력도 크며 2012년도에는 전년 대비 17.7% 성장한 순매출 424억 달러, 수출 70억 달러를 기록했다.

인도의 자동차 부품 시장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연 12%의 꾸준한 고성장세를 보여왔으며 2021년까지 연 14%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100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생산 및 수출 동향

20012-13 회계연도 자동차 부품 생산액은 406억 달러로 전년대비 4% 감소했다. 이중 수출은 93억 달러 규모이며,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은 23%로 나타났다.

부품별 생산규모 비중은 엔진부품 31%, 트랜스미션 및 스티어링 19%, 차체 및 섀시 12%, 서스펜션 및 브레이크 12%, 전기부품 9%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수출 시장 별 비중은 유럽 35%, 북미 26%, 아시아 25%, 아프리카 9%, 남미 4%, 오세아니아 1% 순이며, OEM 및 1차 벤더 공급이 80%, AS 시장 공급이 20%를 차지한다.

인도 자동차 부품 산업 동향

(단위: 십억 달러)

구분	2007-08	2008-09	2009-10	2010-11	2011-12	2012-13	2015-16(예상)
생산	26.5	23.0	30.1	39.9	42.4	40.6	66
수출	3.8	4.0	3.4	5.2	8.5	9.3	12
수입	6.2	6.8	6.5	8.5	13.2	13.1	19
수출비중(%)	14	17	11	13	20	23	18

자료: ACMA

자동차 부품시장에 대한 투자는 2006년부터 2011년 사이 연 28.4% 성장하며 23억 달러를 달성하였고 앞으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자동차 부품시장에 대한투자

(단위: 십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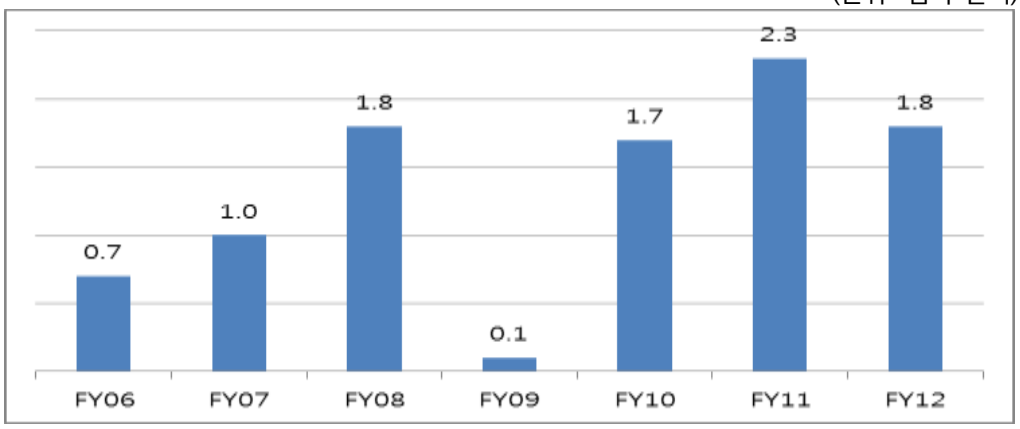

자료: IBEF

인도 자동차산업 클러스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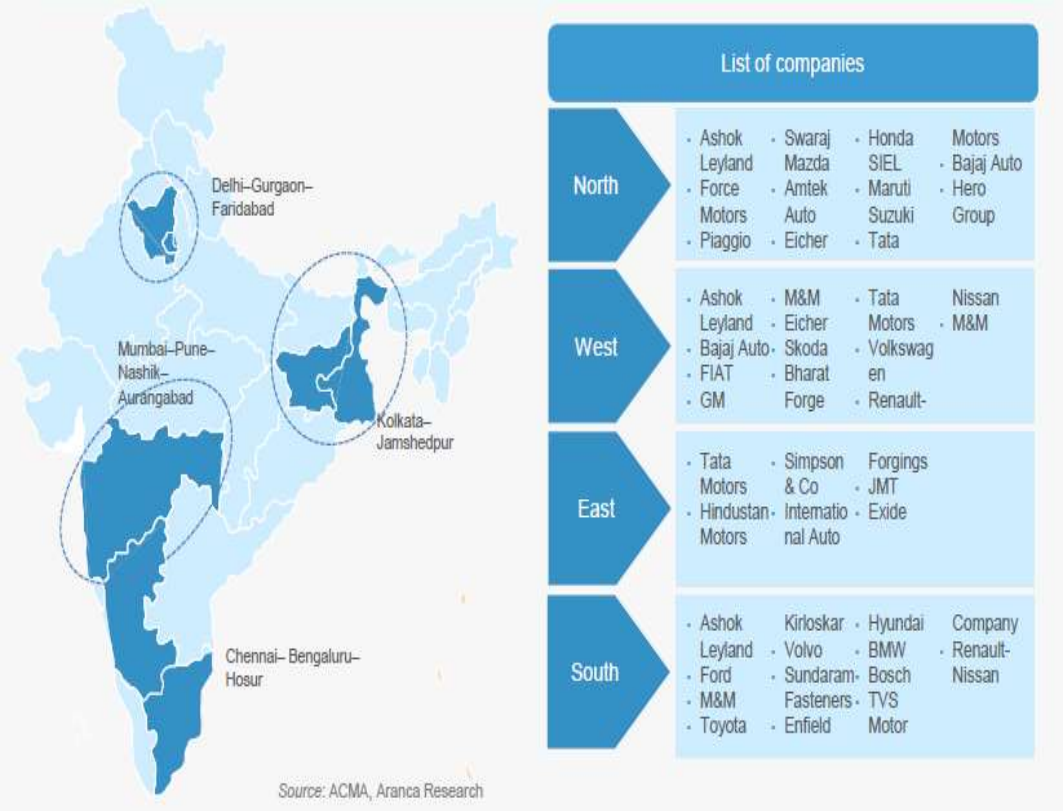

자료: IBEP,2014년 4월 자동차 보고서(Automobiles Report 재인용

인도 내 주요 자동차 부품 산업클러스터는 뭄바이, 푸네, 첸나이, 방갈로르가 있다.

향후 인도의 자동차 생산량은 승용차 기준 2015년까지 연 15.0%, 2020년까지 연 7.5%씩 증가할 전망이며, 이륜 및 삼륜차는 2020년까지 세계 5위권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자동차 부품 생산은 OEM업체에 의한 생산 외 수출도 강세를 보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 부품 생산 추이

(단위: USD Bn)

자료: SIAM, Crisil, Tata strategic Research(2012)

세계 자동차 부품시장에서 인도의 시장점유율은 2016년까지 3% 이상으로 성장할 것이며, 2020년까지 11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주요 글로벌 기업들의 인도산 부품 조달 현황

인도에서 자동차를 생산하지 않고 있는 크라이슬러사는 첸나이에 자동차부품 조달 사무소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부품조달을 하고 있다. 폭스바겐은 전방위 부품소싱을 실시, 10억 달러에 달하는 부품을 소싱할 계획이고 GM의 소싱규모 역시 10억 달러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르노-닛산도 1억 4,000만 달러 규모의 부품을 인도에서 조달할 것으로 밝혔으며 마힌드라(Mahindra), 아쇽 레이랜드(Ashok Leyland), 바자지 오토(Bajaj Auto) 등 인도기업과 전략적 제휴 관계에 있어 벤더 발굴이 손쉬울 것으로 보인다.

완성차 시장의 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인도 자동차 부품 산업도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인도 정부도 자동차 부품 산업이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산업으로 성장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라. 철강

1) 총괄적 동향

인도의 철강산업 성장세를 보면 1907년 TISCO에 의해 잠세드푸르에 최초의 제철소가 설립된 이래 풍부한 철광석과 석탄 부존, 저임 노동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했다.

경제 성장에 기민한 영향을 받는 철강 산업은, 세계 경제위기에 영향을 받아 2008~2009년 다소 침체기를 맞았으나, 국내외의 인프라 건설, 부동산 개발, 자동차 산업 등 철강 사용이 큰 건설업 및 제조업 분야가 빠르게 성장하여 수요가 증대되면서 큰 폭의 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IBEF에서 올해 8월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2011년 기준 인도 철강 산업의 전체 시장 규모는 578억 달러이며 인프라, 오일, 가스, 자동차 등의 산업 성장에 따라 2016년에는 시장규모가 953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인도 철강산업규모 추이

(단위: 십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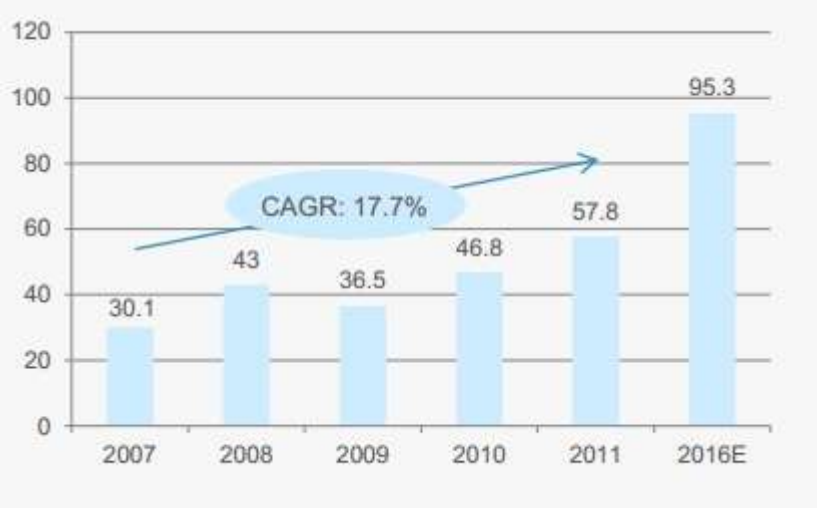

자료: IBEF, 2014년 4월 철강산업 보고서

인도 철강 산업의 걸림돌로 지적되는 사항에는 지나친 규제, 환경 문제, 부지 획득의 지연, 사회적 반대 등이 있다. 또한 생산 측면에서 보면 최근 수년간 급성장하고 있는 건설 등 내구 산업을 기반으로 철강수요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생산능력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인도의 철강 생산능력 및 생산량의 추이는 다음과 같다.

인도 조강생산능력 및 가동률

(단위: 천 톤, %)

구분	2007-08	2008-09	2009-10	2010-11	2011-12
생산능력	59,845	66,343	75,001	78,001	84,461
생산량	53,857	58,437	65,839	69,575	53,357
가동률	90	88	88	89	84

자료: Joint Plant Committee, 철강부, KEIC '세계 및 인도 철강산업의 미래' 재인용

인도의 주요 철강업계는 국내외 철강 수요 증가 및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향상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TISCO, RINL 등 대형 철강업체를 중심으로 경쟁력 상화를 위한 생산 설비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

인도 철강 생산능력 확대계획

(단위: 백만 톤)

구분	기존 + 확장	신규	합계
인도 주요회사	97	88	185
외국회사	-	36	36
2차 섹터	25	31	56
계	122	155	277

주: 조강 기준, 발표자료 기준
자료: Joint Planning Committee, 산은경제연구소 '인도철강산업의 부상과 전망'에서 재인용

인도 철강부 산하 기관인 JPC에서는 인도 철강회사들의 투자 계획에 근거하여 생산 능력이 2009년의 6천5만 톤에서 2020년 2억 7700만 톤까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며 과잉 설비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였다. 그러나 철광석 확보 문제 및 2008년 금융위기를 시점으로 상당수의 제철소 프로젝트가 연기되거나 취소되어 그러한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인도의 주요 철강산업 회사들의 현재 생산용량 및 계획은 다음과 같다.

인도 주요 철강회사의 생산 용량: 현재, 미래 트렌드 분석

회사명	현 생산량	재개발(Brownfield)	신규개발(Greenfield)
SAIL	12.84	21.4	5.6
Tata Steel	6.8	9.7	23.5
JSW	11	12	0
Jindal	3.5	4.25	7
Essar	10	10	0

자료: Ministry of Steel, India(2012-13) / 단위: 100만톤

인도 주요 철강사 전체 생산 대비 생산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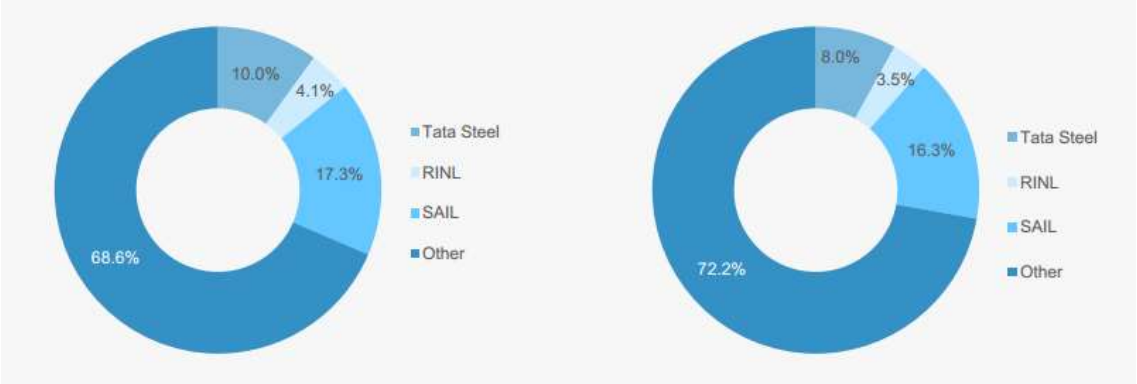

주: 조강생산(좌)와 철강생산(우) (2013회계연도 4-12월 기준)
자료: IBEF, 2014년 3월 철강산업 보고서

인도의 철강 소비는 건설분야의 수요가 전체 소비의 49%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계 제조와 자동차기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품종별로 보면 봉형강류 44%, 판재류 49%로 판재류 비중이 조금 더 높다. 봉형강류 생산 비중은 40% 미만을 유지해 왔으나 주택 및 인프라 등 건설경기 활황에 따라 봉형강류 비중이 크게 확대되었으며, 이는 앞으로도 지속 확대될 전망이다.

2007-08 회계연도 처음으로 철강 순수입국이 된 인도는 빠른 제조업 성장 및 인프라 등 부동산 개발 붐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순수입국 입지를 유지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의 여파로 인한 수요의 감소는 수입의 감소로 이어져 2009년 철강 수입액은 2009년보다 20억 달러 감소한 83억 달러에 그쳤다. 그러나 2010년부터 회복세를 보이며 수입량이 늘어나기 시작하여 2010, 2011년 모두 20억 달러의 증가세를 보여 2011년 기준 128억 7,860만 달러의 수입액을 기록했다.

인도 철강업체는 고로를 갖추고 철광석과 석탄/코크를 사용하여 철강을 생산하는 주 생산자(SAIL, TISCO, RINL사)와 전기로에서 sponge iron, 스크랩을 원료로 철강을 생산하거나 COREX 설비를 갖추고 있는 기타 주요 생산자(ESSAR, ISPAT, JVSL), 2차 생 산자 등 세 부류로 분류할 수 있다. 주 생산자들은 철광석 주산지와 인접한 자르칸드, 차티스가르, 오리사, 웨스트벵갈 등에 위치해 있으며, 2차 생산자들은 마하라수트라 등에 위치하고 있다.

인도 철강 산업의 구조

구 분	업 체 명	비 고
주 생산자	SAIL	국영기업. 강판 및 일부 봉형강류 생산
	RINL	국영기업. 선재류 전문
	TISCO	강판 및 일부 봉형강류 생산
기타 주요 생산자	ISPAT	전기로업체
	ESSAR	전기로업체
	JISCO	세계 최대 COREX설비 보유
2차 생산자	sponge iron 생산업체(120개)	철광석과 coking coal 사용하여 강원료인 sponge iron 생산. 가동률 75%
	미니高爐, 전기로, 유도로, EOF 업체(650개)	철광석, sponge iron, 스크랩을 사용하여 강 생산. 가동률 58%
	재압연업체 (1,200개)	반제품을 이용 최종제품 생산. 가동률 55%

인도 제철소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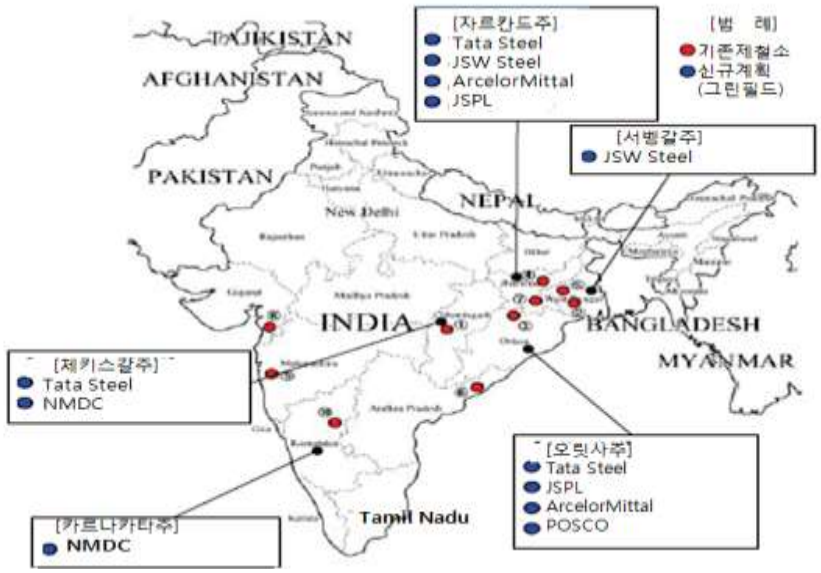

자료: 산은경제연구소 '인도 철강산업의 부상과 전망'

인도 철강산업은 풍부한 철광석 및 저렴한 임금에도 불구하고 비과학적 채굴과 낮은 생산성, coking coal의 해외 의존, 높은 금융 비용, 인프라 부족 등 많은 취약점을 가 지고 있어 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이 과제이다.

인도의 철광석 현황을 살펴보면 브라질, 중국, 호주에 이어 세계 제 4위 철광석 생산국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확인된 철광석 매장량이 86억 톤, 추정 매장량이 91억 톤으로 약 170억 톤의 철광석을 보유하고 있다. 이 중 상당량이 철 함유량 63% 이상의 적철광(Hematite) 이다. 철광석은 주로 오리사, 자르칸드, 차티스가르 등 동부 지역에 집중 매장되어 있으며, 인도의 철광석은 철 함유량은 양호하나 불순물이 많고 잘 깨지는 성질이 있는 등 품질이 열악하다. 또한 다수의 소규모 광산업체가 난립하여 원시적, 노동 집약적 채광을 하고 있어 규모의 경제가 없고, 생산 및 운송 인프라가 부족하고 관료들의 부패로 행정절차가 까다롭고 지연되는 사례가 많아 개발 경제성이 높지 않은 상황이다.

기업별 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포스코

2011년 1월 말 포스코가 인도의 SAIL과 합작으로 오리사 주에 1200만톤을 생산할 수 있는 제철소의 최종 조건부 승인을 획득하였다. 이와 더불어 철광석이 풍부한 인도 남부 카르나타카주 가다그 지역 내 3,000억 루피 규모의 연간 생산량 600만톤 제철소 건설을 위해 2010년 6월 카르나타카 주정부와 MOU를 체결하였었으나 지역주민과 종교단체의 반발로 인해 제철소 공장부지 토지 매입이 어려워졌다.

이에 포스코는 프로젝트 진행 4년만에 제철소 건설 계획을 철회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토지 매입을 위해 카르나타카 산업지역 개발위원회에 제출하였던 6억 루피의 은행보증금을 최근 되돌려 받았다.

박근혜 대통령의 2014년 1월 인도 방문으로 POSCO 관련 문제가 논의됐고 싱 이전 총리는 POSCO의 채굴권 및 탐사권 획득이 승인 직전 단계임을 언급했다. 오디샤 정부는 당초 계획된 4,004 에이커의 부지 대신 2,700 에이커의 부지를 우선 공급했고 포스코는 정부의 승인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 아르셀로미탈

자르칸트와 오리사, 카르나타카 중에 공장 설립 계획을 밝혔다.

□ Tata 그룹

잠세드푸르의 제철소 설비를 현 400만 톤 규모에서 2008년 말까지 740만 톤으로 확대하는 한편, 오리사주(600만 톤), 차티스가르주(500만 톤), 자르칸드주 (1,200만 톤)에서 대규모 신규 제철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2003년 싱가포르의 NatSteel(2.8억 달러 규모)과 2005년 태국의 Millennium Steel을 인수한 데 이어 2007년 영국의 Corus Steel(조강 능력 1,800만 톤)을 인수했다. 2009년에는 일본의 Nippon Steel과 합작투자를 통해 잠세드뿌르 지역에 자동차용 냉연강판 생산을 위한 설비를 확보했으며, Tata 그룹은 일련의 생산능력 확대를 통해 2015년까지 연간 3,300~3,400만 톤으로 생산 능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 SAIL

현 조강능력 1,200 만 톤을 2012 년까지 년간 2,400 만 톤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설비확장을 추진 중이며, 자르칸드주에 1,200 만톤 규모의 신규 제철소 건설을 계획 중이다.

□ 미탈

2006년 초 영국주재의 미탈(대표: 인도계 락시미 미탈)사는 유럽의 아르셀로 사를 인수하여 세계 최대 철강사가 되었으며 오리사 주에 1,200만 톤 규모의 제철소(90억 달러 투자)를 설립하기로 2006년 7월 발표하고 자르칸드 지역에 연간 1,200만 톤 생산 공장 설립을 발표했다.

□ Larsen & Toubro

인도의 최대 엔지니어링 기업인 Larsen & Toubro사는 2009년 12월 국영기업인 NPCIL(Nuclear Power Corporation of India Limited)과 3억 7320만 달러 규모의 합작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동 제철소는 핵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특수 철강 및 단조제품 생산을 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니폰 스틸은 인도의 타타 스틸과, 고베 스틸은 SAIL과, JFE는 SAIL과, 러시아의 세버스탈(Severstal)은 인도의 NMDC와 합작 제철소 설립을 위해 논의 중이다.

2) 향후 전망

2012년부터, 인도 철강 산업체는 인도표준국(BIS, Bureau of India Standard)에서 발급하는 품질보증 마크를 받아야 하며, 엄격한 심사를 통해 품질보증 마크를 받은 물품만 제조, 판매, 유통, 보관 할 수 있고, 표준 미달 판정을 받은 제품은 파쇠로 분류되어 폐기된다. 인도의 경제 학자들은 품질보증 마크 제도가 수요자들에게 안전하고 합리적인 상품을 제공하고, 인도의 철강 관련 산업과 상품의 품질을 높임으로써 산업 효율성을 가져 올 것이라 전망했다. 하지만, 철강 산업 관계자들은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불필요한 규제가 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철 스크랩 등 품질은 낮지만 저렴한 가격으로 시장을 점유했던 2차 가공 제철들은 대부분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2년도에 추가된 BIS 표준 인증 의무 철강 제품

No.	BIS 인증번호	HS Code	구 분	
			적용품목	발효일
1	2002	720851 720852 721113 721114 721190	- 초음파 탐상 테스트를 거친 80mm두게 이상의 플레이트 - 두께가 16mm 이하이며 너비가 3500mm 이상인 플레이트	2013.10.01
			- 상기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	2012.09.12
2	2041	720851 720852 721113 721114 721190	- 초음파 탐상 테스트를 거친 80mm두게 이상의 플레이트 - 두께가 16mm 이하이며 너비가 3500mm 이상인 플레이트	2013.10.01
			- 상기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	2012.09.12
3	2830	720610 720711 720712 720719	- 모든 품목	2012.03.12

No.	BIS 인증번호	HS Code	구 분	
			적용품목	발효일
4	1786	721310 721420	- 와이어 지름이 12mm 이하인 고강도 이형 철근	2013.10..1
			- 와이어 지름이 12-16mm 사이인 고강도 이형 철근	2013.03.31
			- 상기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	2012.09.12
5	648	722519 722619	- 소비 전력이 5.3 Watt/Kg이 초과하지 않는 냉간압연 무 방향성 규소전기강	2013.10.01
			- 상기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	2012.09.12
6	15391	722519 722619 720917 720927	- 모든 품목	2012.09.12
7	2062	721391 721399 721499 721610 721621 721622 721631 721632 721633 721640 721650 721113 721114 721190 721391 721399 721491 721499 720825 720826 720827 720836 720837 720838 720839 720851 720852 720853 720890	- 두께가 6mm 이하인 열간 압연 평판 제품 (박판/코일 등) - 평강, 원형강, 사각강, 육각강, 팔각 강의 두께/지름이 12mm 또는 그 이상	2013.03.31
			- 평강, 원형강, 사각강, 육각강, 팔각 강의 두께/지름이 12mm 이하 - 초음파 탐상 테스트를 거친 80mm두께 이상의 플레이트 - 두께가 16mm 이하이며 너비가 3500mm 이상인 플레이트	2013.10.01
			- 높이가 590-1016mm 이내인 유/아이/에이치 형강 - 높이가 305-356mm 이내인 유/아이/에이치 형강 - 두께가 10-80mm 이내이며 너비가 2500mm 이상인 플레이트 - 사이즈가 50x50x4-100x100x8 이내인 엘 형강	2013.03.31
			- 상기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	2012.09.12

자료: 인도 표준국(BIS, Bureau of Indian Standards)

인도의 철강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이러한 현상은 인프라 부문에서 가장 큰 수요 증가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자국 내 철강 생산량이 소비량을 따라가지 못하여 풍부한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철강 소비 추이(좌) 및 주요 철강 소비 산업별 소비 비중(우)

(단위: 백만 톤)

자료: IBEF, 2014년 4월 철강산업 보고서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인도 정부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는 철강 부문에 대한 철강 시설 구축 및 기술 도입을 통한 자국 내 생산 증가를 꾀하고 있다.

인도 철강 수출입 추이

(단위: 백만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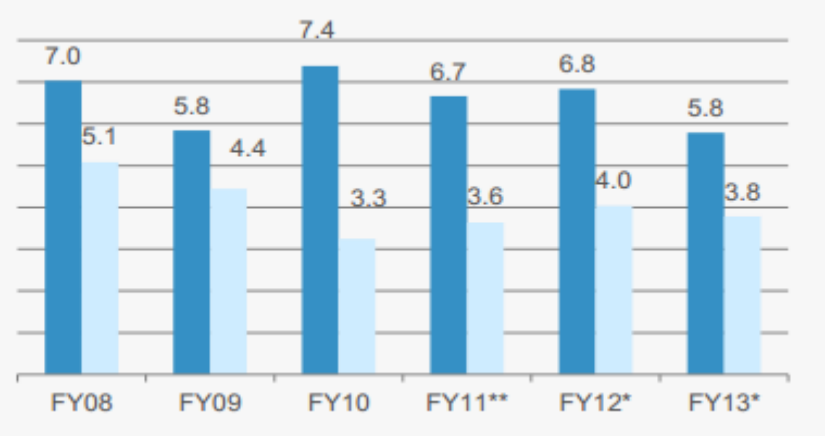

자료: IBEF, 2014년 4월 철강산업 보고서

마. 석유 화학

인도 석유화학 산업은 GDP의 2.8%를 차지하는 주요 산업이며, 이 산업관련 수요 증가세는 연간 8%이다. 인도의 5대 주력 수출 품목으로 2020년 미국, 유럽연합, 중국과 함께 세계 4강 진입이 예상된다.

인도의 석유화학 산업은 1991년 개혁을 기점으로 하여 수입대체 및 자급도 제고를 위한 활발한 신· 증설을 실시함에 따라, 높은 내수 증가와 더불어 생산 규모 면에서 본격적인 성장단계로 진입하게 됐다. 이후 인도 정부의 규제 완화와 무역 정책의 변화로 석유화학 제품의 수요 확대와 투자 증가가 가속화되는 한편 외자합작 사업과 기술이전도 촉진되고 있다. 원자재 획득 및 규모의 경제 상 석유화학산업은 구자라트, 마하라수트라, 웨스트 벵갈 주 등이 3개 주 지역에 87.64%가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다.

현재 인도는 하류제품으로 LDPE, PP, PVC 등 합성수지로부터 AN, DMT, MEG 등의 합성원료, PBR 등의 합성고무, LAB와 EO 등의 계면활성제, 용제, 아크릴 섬유에 이르기까지 광대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인도의 석유화학산업은 적절한 방향과 지원이 있으면 급성장하여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산업 분야로 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생산구조

현재 인도 석유화학제품의 생산 구조는 기초 원료(raw materials), 중간재(intermediates), 하류제품 또는 최종 소비재까지를 모두 생산하는 거의 완전한 수직계열화를 이루고 있다. 여타 동남아 국가와는 달리, 인도는 기초 원료의 생산을 시작으로 수요가 직접 발생하는 최종 단계(컴파운드, 성형가공)와 하류 제품(합성수지 등의 polymer 제품)으로 확대하는 선진국형 성장모델을 따르고 있다. 따라서 인도의 석유화학 산업은 비교 적 늦은 출발에도 불구하고 풍부한 설비와 노동력, 일부 분야에서 고급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 성장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 수출 및 투자

석유화학 제품은 현재 인도의 5대 수출 품목이며 1위를 차지한 섬유 제품 중 합성섬유의 원료로서 주력 수출 분야이다. 게다가 이전에는 대부분의 생산량을 국내소비 또는 재생산에 투입하였으나, 최근에는 국내 초과되는 공급량을 해외로 수출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최근 대부분의 다국적 기업은 종래 개도국 자급화의 협력이나 원료의 안정적 확보보다는 지역별 생산 거점의 구축을 목표로 해외 전개를 추진하고 있는 추세다. 이와 같은 추세에 따라 서구와 일본 대기업들의 적극적인 현지진출도 인도 석유화학산업 성장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소비

인도 국내에서의 석유화학제품 소비도 향후 높은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급속하게 시장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1인당 석유화학제품의 소 비량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서 아직 미미한 수준(전세계 소비량의 1/5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수요 증가에 맞춰 생산 설비의 확장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인도의 석유화학시장은 두 자릿수의 고성장이 계속될 전망이다.

인도는 우선 내수시장의 성장성 측면에서 아직까지 1인당 GDP 대비 석유화학제품의 소비량이 세계 평균보다 낮아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다. 중국과 함께 거대 규모의 인구와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데다 자동차, 전기전자 등 전방위 산업의 발달로 인도는 세계 석유화학제품의 수요증가율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플라스틱산업이 인도의 주요 수출산업으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이의 원료인 PE, PP, PVC는 연간 10% 이상의 수요성장을 기록할 전망이다. 이에 인도 정부는 2010년에는 인도가 전세계 플라스틱과 합섬 원료의 3번째 소비국 안에 들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바. 섬유산업

□ 총괄적 동향

섬유산업은 인도에서 가장 큰 산업이며, 인도 경제에서 생산과 외화 획득 그리고 고 용이란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이다. 섬유산업은 전체 산업생산에 있어서 14%를 담당하고 있고, 고용 측면에서는 농업 다음으로 가장 많은 고용효과를 가졌으며 인도 전체 수출의 10.63%, 전체 GDP의 4%를 담당하고 있는 중요 산업이다.

인도 정부는 섬유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최근 인도 섬유 시장의 수요 동향은 합성직물 중심의 의류용 원단수요에서 면직물, 비스코스, 혼방 직물 등으로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2011-12회계연도 섬유산업의 시장규모는 870억 달러, 2012-13회계연도는 16% 성장한 1,05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 섬유의 수출은 출렁임이 다소 있기는 하나 지속적으로 증가를 해왔으며,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2008-09회계연도부터 수출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나 이는 인도의 전체 수출액의 증가로 인한 것이며 실제 섬유 수출액은 매년 20~30%가 넘는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의류 다음으로 가정용 비품 가구 등이 섬유사업자들에게 매력적인 부문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주택 붐이 가정용 섬유의 소비를 부추기고 있는 상황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섬유 수출 현황

(단위: 백만 달러)

HS	품목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50	견, 견사, 견직물	271.56	335.71	255.42	164.30	150.73	35.61
51	양모, 수모	111.56	142.53	211.07	188.83	149.29	49.61
52	면, 면사, 면직물	3,427.83	6,923.83	7,485.68	8,676.32	10,042.73	3,227.29
53	마류의사와 직물	166.35	349.09	375.62	341.49	318.12	91.69
54	인조필라멘트 섬유	1,798.89	2,187.77	2,648.21	2,270.29	2,459.45	691.10
55	인조스테이플 섬유	1,244.18	1,625.70	2,250.77	2,012.09	2,027.84	555.70
56	워딩, 부직포	157.06	239.79	297.81	310.89	320.20	86.17
57	양탄자	985.82	1,334.32	1,218.37	1,351.08	1,566.57	393.75
58	특수직물	192.39	240.39	240.03	257.96	365.57	98.81
59	침투, 도포한 직물	83.85	146.62	152.99	182.40	220.20	102.63
60	편물	110.17	143.83	254.20	208.87	234.02	63.40
61	의류(편물제)	4,883.66	4,569.71	5,673.06	5473.23	6,371.93	1,856.79
62	의류(편물제 이외)	6,060.85	6,044.09	7,793.47	7477.96	8,103.90	2,545.23
63	기타섬유제품, 넝마	2,292.99	2,904.95	3,785.45	3,971.84	4,364.80	1,146.03
섬유 수출액 총계		21,787.16	27,188.33	32,642.15	32,887.55	36,695.35	10,943.83
증가율		-5.54%	24.79%	20.06%	0.75%	10.37%	-
인도 총 수출액		165,201.64	222,922.22	307,086.50	297,261.35	315,147.13	81,803.229
섬유수출액 점유율		13.19%	12201%	10.63%	11.06%	11.39	-

주: 2014년은 1-3월까지의 누계액

자료: WTA(World Trade Atlas)

900만 헥타르에 달하는 세계 최대 면화 생산지를 확보하고 있는 인도 섬유산업은 국내 총 상품수출의 13%(2349억 달러)를 차지하고 약 3,500만 명(농업 다음으로 많은 수)의 인력 고용을 창출하는 인도 경제의 중추적인 산업이다. 인도는 저임의 숙련 노동력이 풍부하고 국내에서 생산되는 섬유량이 많으며 다양한 품목의 생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특히 인도를 상대로 하는 수출 업자들에게 단순한 주문 생산에 따른 공급뿐만 아니라 디자인과 기능면에서 혁신적인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 받고 있으며 세계 총 섬유 수출의 3%를 차지하고 있다.

□ 정부의 정책 및 지원

인도 정부는 단일 품목으로 최대 수출 산업인 섬유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업 계에 대한 다각적인 정책 지원과 자구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인도 정부는 2005년 1월 1일 부로 다자섬유협정(MFA: Multifiber Agreement)에 따른 섬유쿼터제가 폐지됨에 따라 이후 인도 섬유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 확대를 위한 'Vision 2010'을 발표했다.

인도 섬유산업의 발전과 수출 촉진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전략을 담고 있는 'Vision 2010'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인도의 면 생산은 57% 증가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또한 2005년 MFA 폐지 이후 섬유산업에만 1조 4,000억 루피에 달하는 신규 투자가 발생함으로써 인도의 섬유산업은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외국인 투자

미국 의류 기업 및 유통업체들은 섬유 아웃소싱 대상국가 결정에 있어 기업 환경, 인프라 여건, 세계 주요 시장에 대한 인접성 및 접근성, 저임의 숙련 노동력 및 효과적인 경영 능력(management)의 이용 가능성, 가격경쟁력 있는 원자재(직물, 장식품 재료, 부속품 등) 공급, 공급자의 서비스 및 신뢰도 수준 등을 주요 요인으로 꼽고 있다. 세계 섬유교역의 자유화에 따라 인도에 대한 선진국의 섬유 주문 및 생산 기지 이전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인도는 원자재와 부자재의 현지조달이 용이하고 저임의 노동력과 디자인 부문에서 강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미국과 EU를 비롯한 대다수 선진국 기업을 중심으로 섬유 및 의복 생산을 위한 대규모 제조업 기반과 풍부한 저임의 숙련 노동력 공급 기반을 갖춘 인도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사례가 증가할 전망이나 열악한 인프라와 비효율적인 관료주의, 복잡하고 불투명한 법 체제와 이행에 따른 비용 상승 등의 문제가 장애물로 지적되고 있다.

사. 서비스업

인도의 서비스산업 부문은 2009년과 2010년에 전년대비 각각 10.1%, 7.7% 성장하였으며, 2001-10년도까지 9.4%의 연평균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인도 경제의 대표적인 신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2010-11년도 전체 인도 GDP 대비 서비스부문 점유율은 63.3%(건축 부문 포함)로 동기간 전체 GDP 성장률 추세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등 동 산업의 중요성과 성장 잠재력이 높이 평가되고 있다.

인도의 서비스업 부문의 성장은 경제 개혁의 대표적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 공적 영역에 포섭되어 있거나 강력한 정부의 인허가 제도에 의하여 자율적인 발전에 한계를 갖고 있었던 제조업과 달리 서비스업 부문은 산업의 태동기부터 민간 중심의 자발적인 사업 추진이 허용되었다. 세계적인 수준의 IT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생명공학 등이 인도 서비스업의 대표적인 성장산업이다.

아. IT산업

인도의 IT산업은 지난 10여 년간 IT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분야에서 고성장을 거듭 하며 인도 경제발전을 주도하는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인도 경제에서 IT 산업의 비중은 GDP의 8%, 인도 전체 수출량의 25%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용 시장에서는 직접고용규모 약 300만 명, 간접고용 규모 약 950만 명 규모로 추산되고 있다.

2009년 인도 IT 시장 규모는 전년대비 4.7% 성장한 224.5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013년까지 연평균 13.9%의 성장률을 보이며 373.6억 달러 규모의 시장으로 발전할 전망이다. 그 중 하드웨어 시장은 전체 IT 시장의 59.5%를 점유하고 있으며 IT 서비스가 28.3%, 소프트웨어가 12.2%를 점유하고 있다. (NASSCOM, National Association of Software and Service Companies)

□ 성장 동력

- ○ ADM과 같은 전통적인 서비스에 대한 강력한 수요와 증가된 영향력
- ○ EAI와 패키지 이행과 같은 새로운 서비스 개척
- ○ 엔지니어링 서비스와 같은 새로운 분야 개척
- ○ 인도 회사들은 지역 사업자들과 함께 연합하거나 파트너십, 또는 국제적인 M&A 등을 통하여 글로벌 서비스를 강화
- ○ 마이크로 소프트, 오라클 그리고 SAP과 같은 글로벌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인도에 개발 센터 설립

□ 강점

글로벌 IT 전문 인력의 공급처로 인도 정부의 집중적인 육성정책 하에 유창한 외국어(영어)구사력, 대학에서 이뤄지는 문제해결 중심의 IT 교육 등의 혜택을 받으며 세계시장에 바로 투입 가능한 IT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글로벌 기업들의 인도 IT인력수요가 상당하다.

IT 인력은 인도공과대학(Indian Institute of Technology)을 비롯한 230여개의 종합대학 내 2,100여 개의 컴퓨터 관련 학과와 각종 교육기관을 통해 매년 12만 명의 IT 관련 인력이 배출되고 있으며 이들 중 매년 4~5만 명 이상이 해외로 진출할 정도로 기술력을 인정 받고 있다. 특히, IT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산업을 이끌고 있는 IT 소프트웨어 전문 기술 인력만 해도 50만 명이 넘으며 이 중 과반수가 경력 5년 이상의 숙련 인력이다.

□ R&D

인도는 전 세계 글로벌 IT 기업들의 연구와 개발 허브로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R&D 센터에서 새로운 글로벌 투자의 25%를 이끌어 내고 있다.

오라클, 인텔, 어도비, STM, SAP 등 인도 R&D 센터 규모는 미국이나 유럽 다음으로 크다. 또한 IBM, 텍사 스인스트루먼트, 델파이, HP,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그리고 시스코 등이 최신의 기술 개발을 위해 인도인의 재능을 구하고 있다.

자. 통신 산업

인도의 통신부문은 경쟁 원리 도입을 통하여 더욱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다. 인도는 2012년부터 시작되는 12차 5개년 계획(2012-2017) 일환으로 통신부문에 5조 루피를 투자할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인도 정부는 국영 통신사업자인 BSNL과 MTNL주도로 통신부문 인프라 구축 등에 1조 루피를 투자할 계획이며 민간 통신업자는 약 4조 루피를 투자할 계획이다. 인도는 현재 매월 휴대폰 가입자가 1,500만 명씩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 구축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이다.

12차 5개년 계획은 2012년 4월부터 시작하는데, 국영 사업자와 민간 사업자의 지속적인 투자로 가입자를 현재 7억 8,000만 명에서 12억 명으로 증가하는 것을 목표로 세우고 있다.

12억명 중 3억 명(25%)은 3G/4G 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기반시설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전망된다. 추진 예산 중2조8500억 루피는 2G, 3G/4G, WiMax 네트워크 등의 신모델 개발에 활용될 예정이고, 1조 루피는 전국 20만 개 가량의 통신탑 설치에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범-인도 광대역 서비스 개발에 7500억 루피, 전송 네트워크 보강을 위해 4000억 루피가 투자될 예정이다. 이 같은 투자 계획은 인도가 11차 5개년 계획에서 통신부문 목표치로 설정한 이동통신 가입자 6억 명을 목표를 2010년 2월에 이미 달성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동통신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인도정부의 적극적인 통신인프라 구축 확대 계획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인도통신규제기구인 TRAI(Telecom Regulatory Authority of India)의 가장 최신 연간 보고서인 2010년 11월 발표에 따르면, 2010년 8월 기준 인도의 휴대폰 누적 가입자 수가 6억7060만 명을 기록했다고 한다. 이 기록은 2010년 7월 6억5242만 명보다 2.71% 상승한 수치로, 인도는 매월 평균 적으로 2.5%가 넘는 가입자 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2010년 6월 인도의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6억 3,551만 명 이었으며, 7월에 2.66%의 상승률을 기록한 바 있다.

TRAI조사결과 유무선을 합한 통신 가입자의 수는 7억 명이 넘는데, 이 같은 흐름의 선두에는 선두 이통업체들의 고객확보 경쟁이 큰 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동통신 가입자 수 관련, 현재 인도 통신시장에서 바르티 에어텔이 가장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며, 그 뒤를 BSNL, 릴라이언스, 보다폰 등이 비슷한 점유율을 확보 중이다. Bharti Airtel은 2010년 8월 260만 명의 고객을 추가 확보해 2010년 11월 기준 1억3920만 명의 고객을, Reliance는 250만 명의 고객을 추가해 총 1억 1,330만 명의 고객을, Vodafone은 240만 명 고객 추가 확보로 1억 1,140만 명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다.

인도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 중 약 77%에 해당하는 3억3000만 명이 GSM 서비스를 이용하며 약 1억 명의 가입자가 CDMA 방식을 이용하는데 GSM 서비스 업체 중 바르티 에어텔이 시장점유율 31%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에어텔은 최근 인도 정부의 3G 주파수 경매에서 인도 통신업계의 빅3로 불리는 보다폰, 릴라이언스와 함께 뉴델리와 뭄바이를 포함한 13개 권역의 주파수를 할당 받은 바 있는데, 인도 3G 주파수 경매의 총 낙찰가 규모는 150억 달러로 애초 정부 예상액의 2배에 육박함으로써, 인도 정부 재정적자 해소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인도 3G시장은 주파수 경매 이후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동전화 서비스의 경우 1994년 이후 자유화된 후, 가입자 수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2007년 5월 23일 인도의 제 1 위의 통신 회사인 바라티 사는 4,000만 명의 모바일 유저를 확보했다고 발표하였다.

이 수치는 2,000만 가입자를 확보하는데 11년의 시간이 걸렸지만, 13개월 만에 2,000만 가입자를 추가한 수치이다. 이로 인해 현재 바라티의 전체 시장점유율은 23.2%를 기록하고 있다. 이로부터 1년 반만인 2009년 2월,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 수가 3억 명을 넘는 등 인도의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향후 통신, 정보,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인가 및 규제를 담당할 강력한 기구로서 인도통신 규제기구(TRAI)가 대체하고 각종 인·허가에 있어 단일 창구를 운영함으로써 통신, 방송, 인터넷 부문의 융합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인도의 주요 이동 통신 사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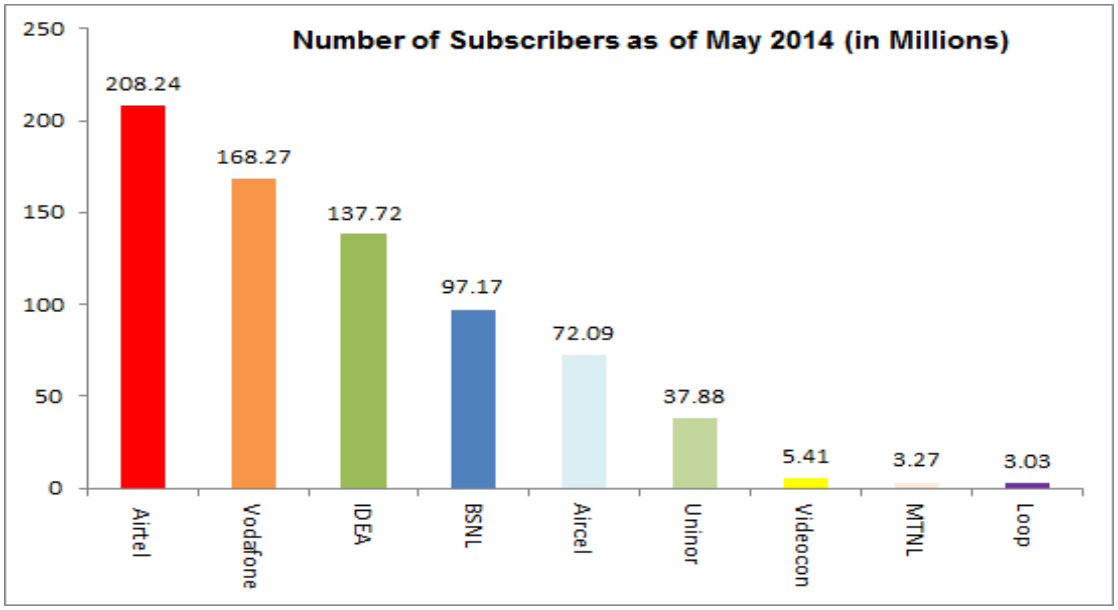

자료: http://www.coai.in

국영 통신기업인 BSNL은 독점력을 상실하였으며 2002년 민영화되었다. 장거리 전화 서비스는 2000년부터 민간에 개방되었으며 장거리 및 국제전화 요금은 낮아지는 추세이나 국제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높다.

현재 인도의 인터넷 사용 인구는 10억 인구와 IT 국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인구 20명 중에 1명 수준인 5,000만 명을 기록하고 있으나, 점차 인도 정부의 인터넷 브로드밴드 확장 계획 발표 및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의 인프라 확장으로 인해 브로드밴드의 사용이 확대되고 있다.

인도의 이동통신 시장의 성장을 이끌었던 대도시 지역의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75~80%를 차지할 정도로 포화 상태에 가깝지만 농촌 지역은 가입률이 38% 밖에 미치지 못해 더욱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동통신 기업들은 보급률이 높지 않은 농촌 지역으로 서비스 확대 및 진출을 하고 있으며 도시 지역에 비해 낮은 농촌 수준의 소득을 감안하여 요금을 인하하는 정책을 사용하여 이용자를 유치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동 통신 서비스 점유율은 Airtel(25%)로 가장 높으며 그 뒤를 이어 Vodafone(20%), Reliance(16%), IDEA(16%) 등 순으로 치열한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고 통신 시장을 점유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중이며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은 점차 매월 숫자가 달라질 정도로 크게 성장하고 있다.

□ 전화

2003~2005년간 유선통신 시장은 약간의 성장세를 보였으나 2006년 이후 가입자 수가 다시 하락하고 있다. 2012년 3월 기준으로 유선통신 가입자 수는 3,217만 명, 보급률은 2.7% 수준으로 무선통신 서비스에 비해 정부의 지원이 미약하다. 인도는 국토가 광활하고 주요 도시간 거리가 매우 먼데다가 정부 재정적자가 심해 모든 국토에 작용될 유선통신 분야에는 장기적으로 큰 투자가 이뤄지기 어렵고, 바로 무선통신 시대로 넘어갈 전망이다.

인도는 도시와 지방 통신서비스 보급률 차이가 크다. 2012년 3월 유선통신의 보급 중 도시 거주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76.5%였다.

인도의 유선통신 현황

(단위: 천 명,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3월)
유선통신가입자	40,770	39,413	37,900	37,250	35,090	32,685	32,170
보급률	3.6	3.4	3.2	3.1	2.9	2.6	2.7

자료: ITU, TRAI (2012년 9월 기준)

인도의 유선통신 현황

(단위: 백만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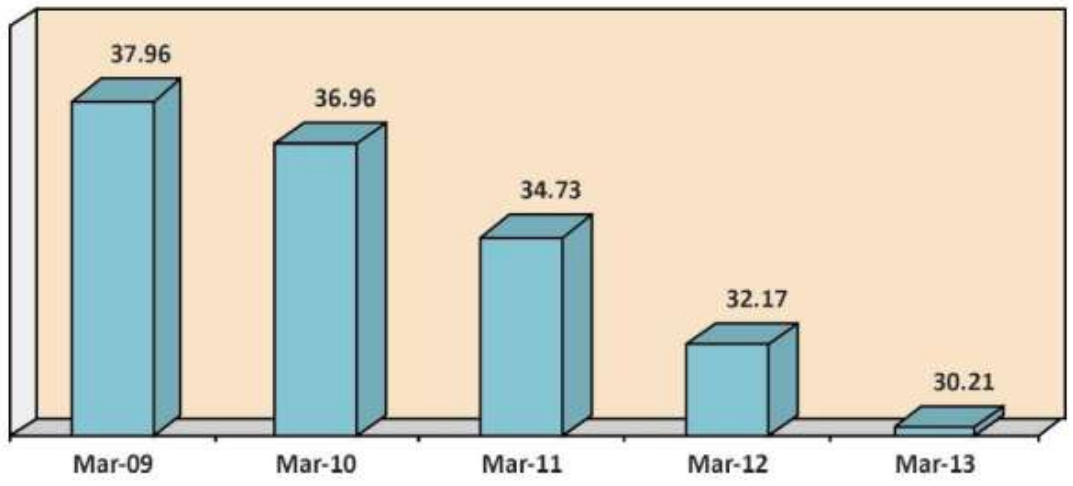

자료: TRAI 2012-13 연간 리포트

무선통신 시장 시점에서 보자면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신흥 무선시장이다. 인도는 2012년 3월 기준 9억 1917만 명으로 세계 제 2위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1997년 이후 인도 무선 통신시장에 WLL 서비스와 신규 사업자의 등장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였고 세계적인 무선통신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최근 인도 시장에서의 스마트폰의 보급과 더불어 3G, Wimax 등 무선 인터넷 인프라가 확대되면서 빠르고 간편한 모바일 인터넷 사용이 급부상하고 있는 추세다.

인도 정부의 12차 5개년 계획(2012-17)으로 2012년 7억 8000만 명 무선통신 가입자가 5년 후에는 12억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중 약 25%는 3G 혹은 4G 가입자가 될 것이다.

인도의 무선통신 현황

(단위: 천 명,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3월)
무선통신가입자	233,620	346,890	525,090	752,190	893,860	919,170
보급률	19.9	29.13	43.48	61.42	72	76

자료: ITU, TRAI (2012년 9월 기준)

무선통신가입자 수

(단위: 백만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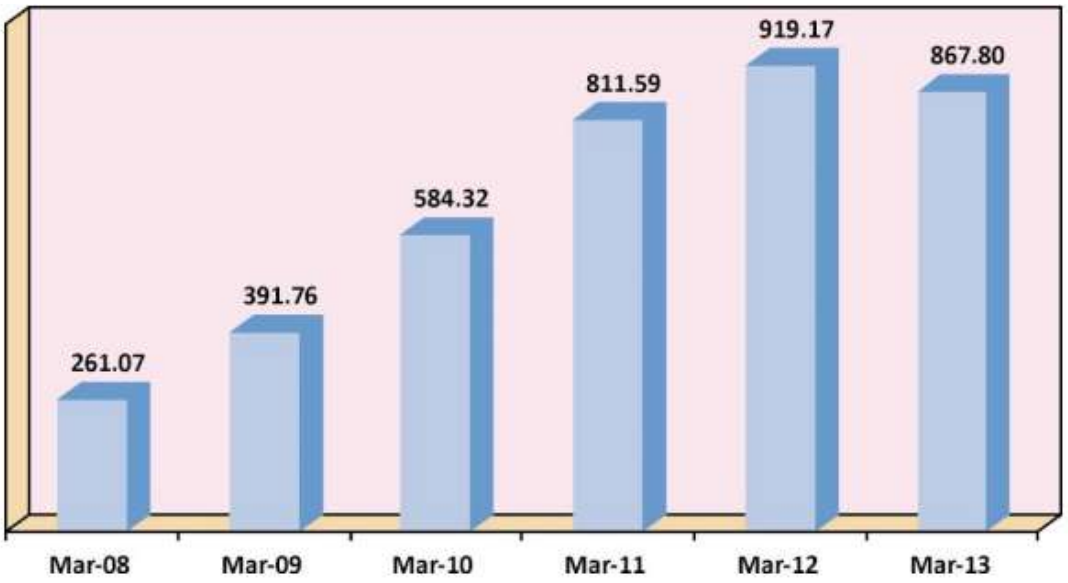

자료: TRAI 2012-13 연간 리포트

□ 인터넷

유선 인터넷 보급 상황은 미국의 가장 큰 벤처 캐피탈 회사 중 하나인 KPCB(Kleiner Perkins Caufield & Byers)에서 최근 발표한 인터넷 트렌드 보고서를 보면 알 수 있다. 인도의 전체 인터넷 이용자는 2011년 1억 명을 돌파했고 2012년 5월 기준 1억2100만 명에 달했다.

인도의 인터넷 이용자 수는 2008~2011년간 약 6900만 명 늘어났으며 연평균 성장률 38%의 높은 증가세를 기록했다. 이는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에 해당하는 인터넷 성장률과 이용자 수를 기록한 것이며 이러한 고 성장세에 힘입어 인도 전체 인터넷 보급률은 10%를 돌파했다.

전세계 인터넷 시장 성장률 순위

(단위: 백만 명, %)

순위	국가	2008-2011 인터넷이용자 증가 수	2011년 인터넷 이용자	증감률	인구 당 비율
1	중국	215	513	12	38
2	인도	69	121	38	10
3	인도네시아	37	55	22	23
4	필리핀	28	34	44	35
5	나이지리아	21	45		28
6	멕시코	19	42	19	37
7	러시아	16	61	3	43
8	미국	15	245	1	79
9	이란	14	37		48
10	터키	11	36	26	46
	상위 10개국	444	1,189	12	32
	세계	663	2,250	8	32

자료: KPCB, Internet Trends 2012

그러나 인터넷 보급률의 대부분(90%)이 도시 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고속 인터넷 접속은 도심 위주의 몇몇 지역만 가능하다. 한국보다 5배나 비싼 요금과 느린 인터넷 회선 등이 인터넷 성장의 발목을 잡고있는 요인이며 또한 넓은 국토로 인해 유선 인터넷 인프라 구축에 한계가 있어, 최근 Wi-Fi, 와이맥스(와이브로) 등을 통한 무선 인터넷 인프라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인도의 인터넷 이용 현황

(단위: 천명,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인터넷이용자	32,200	46,000	51,750	61,338	88,000	1,21,1000
인터넷이용률	2.8	4.0	4.4	5.12	7.5	10.07

인터넷 이용자 수

(단위: 백만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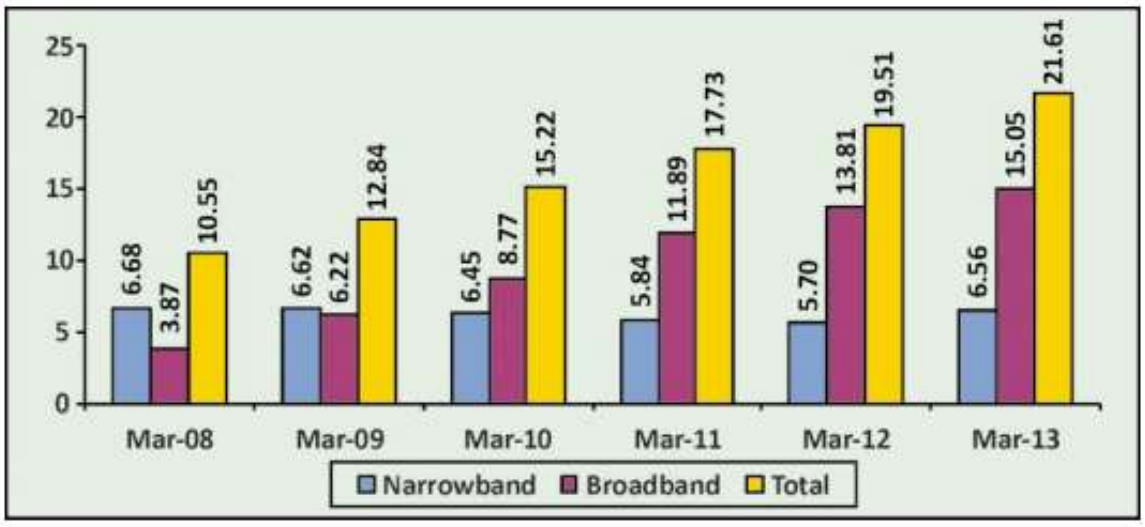

자료: TRAI 2012-13 연간 리포트

인도의 와이맥스 사업은 2009년 1월부터 국영통신사 BSNL이 와이맥스 무선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시작되었다. BSNL은 2007년 인도 8개 도시를 대상으로 테스트 서비스를 실시하여 와이맥스 서비스를 준비해오고 있으며 이를 위해 3억 2,800만 달러를 투자한 바 있다. 현재 상용화된 BSNL의 와이맥스 서비스는 국제규격이 아닌 FDD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외 Airtel, Reliance, Vodafone, Tata 등의 통신 사업자들도 와이맥스 서비스를 위해 관련 기술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 관련 기기와 모듈 수요가 크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차. 생명공학(BT: Biotechnology)

IT산업에 이어 인도의 미래를 선도할 지식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 인도의 BT (바이오테크) 산업이다. Ernst & Young에서는 중국, 한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를 제외한 아시아-태평양 국가들 중에서 바이오 기술의 리더로서 떠오르는 5개국 중의 하나로 인도를 꼽았다. 5개국 중 자국에 기반을 둔 BT 회사의 수로는 오스트레일리아(228개사), 중국(136개사)에 이어 96개로 3위를 기록했다.

인도 바이오테크 산업은 2006-07 회계연도에 854억 1000만 루피(약 2조원) 규모로 전년 대비 30.9% 성장하였으며 같은 기간 수출규모는 47% 늘어 439억 7000만 루피(약 1조원)를 기록했다.

매출은 2006-07년 20억 달러에 달해 연평균 35% 이상의 성장을 보였고 인도정부는 바이오테크 분야의 규모를 2015년 25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인도에는 약 350개의 바이오테크 기업이 있으며, 주로 카르나타카 주의 방갈로르에 위치하고 있고 전체 바이오테크 기업 중 40%가 제약업체에 해당한다.

인도의 BT 산업 발전의 원동력은 영어 구사 및 전문지식이 풍부한 저임 노동인력 (매년 70만 명의 학사 및 3,000명의 박사 배출), 축적된 기초 과학지식, 샘플 접근의 용이성(전 세계 포유동물 종의 7.6%, 조류 종의 12.6%, 어종의 11.7%, 꽃식물 종의 6% 등 풍부한 생물 다양성), 제약·종자 등 관련 산업의 발달, 임상 실험 및 조사 연구 풍부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 정책 등이다.

인도는 인슐린, 바이러스 억제물질, 적혈구 생성 물질, 혈액 응고 물질, 소화제 등을 중심으로 고품질에 저렴한 가격의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다. 유전자 조작 작물을 통한 연료, 섬유, 식량, 의약품 개발 및 바이오 정보 등도 세계적인 수준이다. 또한 인도의 고난이도의 의료시술 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이나 가격은 선진국의 1/10 수준으로 매우 저렴하다. 특히 BT 산업의 소득의 원천은 주로 매년 8%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30억 달러 규모의 인도 제약산업들로부터 발생된다. 임상 시험 수탁기관인 CRO(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의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매년 30~40% 성장률을 기록하고 이는 양적으로는 전 세계 4위의 규모이고 가치로는 12위의 규모이다. 또 미국 USFDA에 의해 인증된 의약품 제조 공장 수는 세계 최대이다. 인도는 앞으로 세계 생물 약제학 시장의 3~5%를 점유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정부의 정책적 지원

최근 인도 정부는 의약품 개발에 15억 루피(미화 약 3,000만 달러)의 R&D 기금 지원 과 국가 차원의 바이오테크 정책 수립을 위한 과학자문위원회(Scientific Advisory Committee) 설치를 추진하는 등 바이오테크를 중점 산업으로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내수보다는 해외진출을 겨냥한 전략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인도정부는 중소기업개발 은행을 통한 6000만 달러 규모의 벤처자금 육성과 함께 R&D 지출 비용 100% 환불, 인명구조 장비에 대한 관세 인하(25%에서 5%로), 제약, 바이오테크, 정보기술 분야 소득세 양허 등과 같은 조세 우대 정책도 실시하고 있다. 이 외에 바이오테크 산업과 관련된 제도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재 조합형 DNA 제품과 세포치료 제품을 제외한 모든 약의 제조에 있어서 100% FDI 를 이용
- ○ 공장과 기계류에 대한 감가상각 허용
- ○ 몇 명 경우에 있어서 수입된 상품에 대한 관세 면제
- ○ R&D 비용에 대한 150% 세금 공제
- ○ 특허 제품에 대한 3년간 소비세 면제
- ○ 자신의 R&D 비용에 대한 100 % 환불
- ○ 만일 조사가 R&D 연구소에 공공자금으로 계약되었다면 125% 환불

□ 원동력

인도의 BT 산업 발전의 원동력은 영어 구사 및 전문지식이 풍부한 저임 노동인력 (매년 70만 명의 학사 및 3,000명의 박사 배출), 축적된 기초 과학지식, 샘플 접근의 용이성(전 세계 포유동물 종의 7.6%, 조류 종의 12.6%, 어종의 11.7%, 꽃식물 종의 6% 등 풍부한 생물 다양성), 제약· 종자 등 관련 산업의 발달, 임상 실험 및 조사 연구 풍부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 정책 등이다.

□ 해결 과제

조사· 연구 결과의 상품화 및 마케팅 역량 강화, 벤처 자금 확대, 관련 산업의 R&D 지출 증가, 인도 브랜드의 제품 생산능력에 대한 국제 신인도 제고 등은 동 산업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Ernst & Young, 인도 CII 및 예스은행 보고서)

카. 건설 인프라

인도의 건설산업은 인도 정부가 철강, 시멘트 등 다른 산업 발전의 시동을 걸기 위해 집중적인 투자를 해온 분야이다. 건설·인프라 부문은 1천억 달러 규모의 시장으로 인도 경제에서 총 생산의 8%에 달하고 있다. 이는 경제개방 이후 빠른 외국인 투자유입과 제조업 성장, 정부의 개발정책 추진 등에 기인한다.

인도의 경제 성장률이 5%대로 하락하는 등 경제 성장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었지만 2013년 상반기에 518개 프로젝트(3,810 억루피)가 완공되었을 뿐만 아니라, 1,391개의 프로젝트(15,030 억루피)가 승인이 되는 등 '인도 전체가 공사판'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인프라 건설에 대한 투자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2013년 하반기에 승인 완료 단계인 프로젝트는 1,631개(19,357억 루피)에 달한다.

최근 전체 건설 투자의 절반을 상회하고 있는 인프라 부문은 그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과거에는 공공 기관과 정부 부처가 인프라 개발을 주도해 왔으나, 재원 부족으로 인해 정부가 민관합동 형태의 발주를 늘림에 따라 최근에는 민관합동 또는 민간 프로젝트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2000년을 기점으로 국제금융기관들이 중단하였던 차관 지원을 재개하고, 도로공사(NHAI), 석유공사(IOC) 및 수력발전 공사 (NHPC) 등 정부 산하 공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프로젝트를 발주하고 아울러 민간의 개발 형 사업 참여가 늘어남에 따라 인프라와 각종 플랜트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

향후 전력사업도 건설의 주력 분야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현재 인도는 10만 메가 와트가 넘는 방대한 발전 설비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수요 증가로 전력공급이 여전히 30% 정도 부족하다.

이에 인도 정부는 12차(2012-17) 경제 개발 계획 기간 1조 달러에 달하는 인프라 투자 중 전력사업에 30%를 투자하여 7만5000 MW의 추가 전력을 생산 할 예정이다. 인도 정부는 최대 도시인 Utter Pradesh 주를 비롯하여 북부 인도를 중심으로 주요 도시의 전력 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2008년 미국과 체결한 민간핵협력협정을 계기로 인도의 핵발전에 대한 관심이 지대해지고 있으며,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인도 핵발전 시장에 참가하기 위해 물밑 작업을 진행 중이다.

12차 경제개발계획 인프라 투자 규모

단위: 억 루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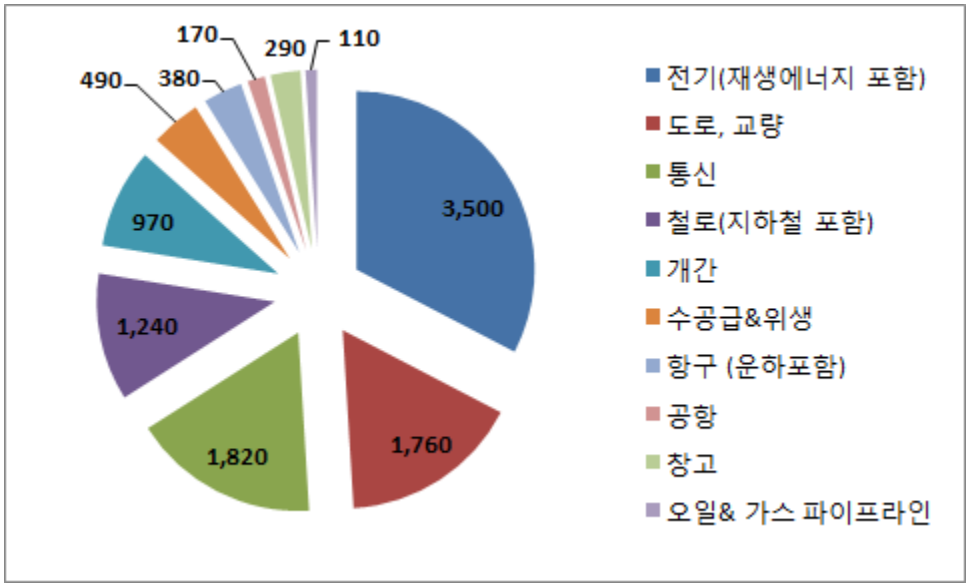

자료: 12차 경제개발계획서

□ 정부 정책

인도 정부는 사회간접자본의 미비가 인도에 대한 투자 유인을 감소시키고 있다는 점을 자각하고 전력, 통신 등 인프라 구축에 막대한 자본을 투자할 계획이다.

인도 정부가 발표한 2012-13년 예산안에서 제 12차 개발계획 인프라 개발 부문에 투입될 비용은 500만 크로아(약 1조204억 달러) 가치에 달하며 인도 인프라 시장은 2011년 동안 발주 감소, 고이자율, 프로젝트 지연, 대부분의 인프라 기업들의 재무 상태 고전 등 여건 악화 일로에 있었으나 이번 예산안 발표를 통해 주요 정책 의제로 재확인, 많은 비중의 예산이 할애되자 고무적 분위기로 전환됐다.

정부는 이 500만 크로아 예산 중 절반을 PPP(공공 민간 파트너 십) 방식으로 조달하고

전년보다 2배 증액된 6만 크로아(122억 달러) 규모 면세 채권 발행으로 자금을 일으킬 계획이며 인프라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2개 분야는 메트로(철도) 네트워크, 고속도로 분야다.

또한 인도 정부는 델리 방갈로, 콜카타, 첸나이, 뭄바이, 자이푸르, 코치 지역을 위주로 한 메트로 네트워크 건설을 위해 874크로아(약 1억8000만 달러) 추가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며, 총 3164크로아(약 6억4000만 달러)의 정부 지분을 기업에 투입할 계획이다.

메트로 프로젝트 명	정부 투입 예산
델리 메트로(Delhi Metro)	1112.57크로아(약 2억2700만 달러)
델리 메트로 중 Faridabad Phase-III 프로젝트	100크로아(2000만 달러)
방갈로르 메트로	900크로아(약 1억8000만 달러)
첸나이 메트로	990크로아(약 2억 달러

PPP 방식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행 자금(VGF: Viability Gap Funding) 대상 분야를 확장하여 관개 사업(댐, 수로, 제방 포함), 터미널 시장, 농업시장에 필요한 인프라개발, 토질 시험 연구소와 비료산업 자본 투자 등이 추가 대상분야로 선정되었으며 이외 석유·가스·LNG 저장 시설, 석유·가스 파이프라인, 통신망을 위한 고정 시설·통신 탑 등이 새로 추가됐다.

도로, 발전, 광산, 항만, 상공, 냉동 유통, 농업 등에 적용되는 몇몇 설비의 장비 관세 인하조치는 인도 인프라 개발에 간접효과를 가져올 것이며 특히 LNG, 석탄·터널 시추용 중장비에 대한 관세 인하가 적용, 관련 사업 추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국제기구 등의 인프라 개발 지원이 확대되고 있어 동 분야 전망을 더욱 밝게 하고 있다. 2009년 9월 도로교통부 장관인 Kamal Nath는 5,937km에 달하는 국도의 건설을 위하여 세계은행 으로부터 30억 달러에 달하는 차관을 추진, 최근 아시아개발은행과도 동북부 지방의 열악한 지방 도로 개선 작업을 위해 1억 8500만 달러의 차관계약에 서명했다.

□ 문제점

인프라 투자 증대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도로, 전력, 통신은 세계 최저 수준이다. 인도의 총 도로 길이는 334만 km로 길이만으로는 세계 2위의 도로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나, 전체 물동량의 40% 이상을 책임지고 있는 National Highway는 왕복 4차선 중심의 도로로 길이 기준으로 전체 도로의 2%에 불과하며, 파손 정도도 심하다.

전력 부족률은 평시 기준 9.6%, 피크타임 기준 13.8%에 이를 만큼 부족상황이 심각하며, 최근 빠른 제조업 성장과 소득수준 향상으로 인한 가구당 전력수요량 급증으로 인해 전력 부족상황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한여름의 경우 수도인 뉴델리에서도 지역에 따라 일일 단전시간이 8시간이 넘는 경우도 발생하는 등 그 상황은 매우 열악하다.

타. 광물자원 개발 (철광석 제외)

인도는 세계에서 부존자원이 가장 풍부한 국가 중 하나로 운모류(mica blocks, mica splittings)는 1위, 철광석 4위, 보크사이트 및 망간광 각 6위, 알루미늄 10위, 조강 11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금속류 광물로는 철광석, 구리광, 크롬 및 아연, 금 등 이 풍부하며 비금속류 광물로는 석회석, 마그네사이트, 돌로마이트(dolomite), 인회 암(apatite, phosphorite), 플루오라이트(fluorite) 등이 있다.

2002년 이전까지 인도의 광산업은 국영화 원칙에 따라 운영되었으나 2002년 2월 귀금속 및 다이아몬드를 제외한 모든 비연료 및 비핵 광물자원의 탐사와 광구 개발에 100% 외국인 지분 투자가 허용되었다. 그러나 채광 허가, 탐사 활동, 광역권 탐사 허 가 등 광산개발과 관련된 주요 권한이 주정부에 이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광물자원 이 풍부한 대다수의 주정부들은 중앙정부의 개혁 조치에 순응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인도의 광물자원 개발 사업은 극히 부진한 상태이며 민간 및 외국 기업의 참여에 의한 광물개발 사업 추진 사례도 매우 드물다.

인도 경제에서 광물산업은 최근 10여 년간 매년 6% 정도의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해 왔다. 2005년도 기준 인도 광물산업은 인도 GDP의 2.5%를 차지하는 한편 수출액도 인도 총 수출액의 10% 가량을 차지했다. 특히 석탄(coal)은 인도에서 사용하는 전체 에너지 중 약 50%를 제공하는 핵심 에너지원이기도 하다. 지난 10년간 인도의 에너지 소비량이 매년 7.2%씩 증가(세계 증가율은 2.5%)하면서 석탄 소비량도 동반 증가함에 따라 매장량이 풍부한 석탄 채광의 중요성이 보다 높아지고 있다.

인도정부는 광물자원 개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외국인 투자를 유인하고 있다. 1993년 발표한 광업정책(National Mineral Policy)에서 철광석, 망간광, 크롬광, 유황, 금, 다이아몬드, 주석, 납, 아연, 몰리브덴, 텅스텐, 니켈, 백금 등 13개 핵심 광물의 민간 개발을 허용하고 고부가가치 광물이나 희귀 광물의 탐사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외국기술 및 외국지분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2000년 2월부터는 금, 은, 다이아몬드 (FDI 한도74%) 등 일부 귀금속을 제외한 모든 비 연료 및 비 핵 광물 자원(all non-fuel and non-atomic minerals)의 탐사·광구 개발에 관한 FDI를 100% 허용하고 자동 승인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광물자원이 풍부한 대다수 주정부들은 중앙정부의 개혁조치 이행에 소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어 민간업자 및 외국기업이 광물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사례는 찾아 보기 힘들다. 따라서 아직까지 80% 이상을 인도석탄공사(CIL)와 같은 국영기업의 개발에 의존하는 인도 광물 생산은 생산성 및 품질 수준이 현저히 낮은 등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심지어 인도의 철광업계 조차도 외국의 고품질 광자원의 수입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외국기업과의 기술협력을 통한 생존력 강화가 필요하다.

4.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가. 인도 FTA 정책의 변화와 추진 현황

인도 정부는 1991년부터 경제개혁을 추진함으로써 시장의 점진적 개방을 통해 성장의 잠재력을 시현하는 한편 국제사회와의 연대 강화에 나서면서 FTA에 주목하고 있다. 인도는 세계적인 지역경제통합으로 인해 블록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여기서 소외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오히려 적극적인 통합의 주체가 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인도 경제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주변국뿐만 아니라 주요 파트너 국가 및 지역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특히 중국이 개방을 통해 이룩한 정치, 경제적 발전과 파트너 국가 및 지역과의 경제협력과 투자유치 등의 레버리지 효과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인도의 FTA 정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존의 소극적·정치적 고려에서 적극적·경 제적 고려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인도는 FTA 체결에 대하여 적극적이지 않았으나, 2000년 이후 FTA에 대한 입장을 수정하였다.

2000년 이전 인도의 자유무역협정은 스리랑카와의 FTA가 유일하며 방글라데시, 네팔, 부탄 등 주변 최빈국에 대한 특혜무역협정이 경제협력의 중요한 부분이었다. 그러나 각국이 FTA 확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다, 특히 중국이 아세안과의 FTA체결을 통해 이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키우고 있는데 중국의 동남아시아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이 급속하게 확장 됨으로써 이를 견제할 수단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한편 ASEAN 과 한, 중, 일, 호주, 뉴질랜드를 포함하는 FTA 가 논의되면서 인도가 소외 당할 위험이 커짐에 따라 인도는 태국, 싱가포르와 개별적으로 FTA 를 체결했고, 2009년 UPA 2기 정부가 들어서면서 2009년 8월에 한국과의 CEPA(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를, 2010년 1월에는 ASEAN 과의 상품분야 FTA 를 각각 체결 한데 이어 2011년 2월에는 일본 및 말레이시아와 각각 CEPA, CECA(포괄적 경제협력 협정)을 체결했다.

인도 정부가 FTA 체결에 주목하는 또 다른 이유는 WTO로 대표되는 다자차원의 협상에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제한적이라는 인식에 있다. 인도는 WTO DDA협상에서 개도국(G-20) 의 이해를 반영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도하 아젠다 협상이 다수 국가의 이해로 인해 지지부진하며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되지 않자 경제적 실리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인도 정부는 WTO 협정에 의거하여 상호주의에 입각한 FTA 를 추진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FTA 체결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GATT/WTO 규정에 따라 개방적인 지역경제 협력체를 설립하는 동시에 참여 당사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윈-윈(win-win) 형태 실현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다.

나. 남아시아 자유무역지대(SAFTA)

남아시아 7개국은 빈곤 퇴치와 더불어 역내 빈곤국들의 권익옹호를 위하여 1985년 남아시아 지역 협력체인 SAARC를 창설하고 경제협력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국가별 시장개방에 따른 혜택에 한계를 발견하는 한편 전 세계적으로 지역 무역 블록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자, 1995년 SAARC는 EU와 같은 형태의 경제 통합을 목표로 삼고 그 전 단계로 남아시아 특혜무역협정(SAPTA) 및 SAFTA 추진에 합의했다.

SAARC 회원국은 2005년 11월 13일 정상회담(방글라데시 다카 개최)에서 2016년까지 역내 관세를 0~5%로 인하하는데 합의하고, 역내 개발 및 빈곤 퇴치를 위한 기금 창설, 對 테러 공동 대응 등을 포함한 '다카선언'을 채택했다.

SAARC 정상들은 2007년 1월 인도, 파키스탄 등 회원국 7개국에 의한 '남아시아 자유무역지대(SAFTA)'를 발족하고, 2016년까지 관세를 0~5% 수준으로 인하함으로써 단계적으로 남아시아 경제공동체를 창설한다는 목표에 합의했다.

또한 SAARC 사업과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SAARC개발기금'을 설립하고, 사회, 인프라, 경제 문제 전반을 다루는 영구 사무국을 설치하기로 하였으며, 2006~2015년을 SAARC '빈곤 경감의 10년'으로 선언하고 국가 및 지역 차원에서 이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또한 아프가니스탄의 회원국 가입 요청을 환영하고 적합한 절차를 거친 후 회원국 활동을 허락하였으며, 중국과 일본이 옵서버 자격으로 SAARC 활동에 참여하는데 원칙적으로 동 의하고 2006년 1월 27일 운영방안을 결정하기로 함으로써 회원국 및 협력 사업의 범위도 확대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정상들은 관세협력, SAARC 중재위원회 설립, 이중과세방지 등 3개 협정에 서명하여 실질적인 협력의 기반을 다졌다.

2006년 발효된 동 협정에 따라 인도와 파키스탄은 향후 5년 내, 스리랑카는 6년 내에 LDCS국가(최저개발국가: 방글라데시, 부탄, 몰디브, 네팔)는 향후 8년 내 관세율을 0~5% 로 낮추기로 했다.

인도는 주변국에 대한 패권을 잃었고, 주변국을 등한시하는 정책을 펼쳤으나 2014년 5월 26일 모디 총리 취임식 당일 주변국 인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AACR) 국가의 지도자들에게 초청장을 보냈으며 지도자들이 참석을 하였고 이는 인도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외교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기대감을 안겨주었다. 또한 모디 총리의 첫 순방지가 SAACR국가 중 하나인 부탄으로 정하여 6월 15~16일 2일간 최근 방문하였다. 모디 총리는 부탄을 방문하여 인도의 최대 우방국인 부탄에게 테러 안보에 관한 협력 및 경제적인 지원을 약속하였으며 더욱 양국간의 경제적이고 안보적인 협력 관계를 지속해나갈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주변국에 대한 포섭 의지 또한 널리 알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 인도-일본 CEPA 체결

인도와 일본이 2011년 2월 16일 상품 및 서비스 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전반에 걸친 경제적 교류를 위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을 체결했다. 인도 상공부 장관 아난드 샤르마 와 일본 외무장관 마에하라 세이지는 이날 도쿄에서 CEPA에 서명했으며, 2011년 8월 1일 정식 발효됐다.

양국은 이번 CEPA 체결로 10년에 걸쳐 94%의 관세를 철폐하게 되며, 무역거래 규모가 2014년까지 250억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서명으로 인도는 자동차 부품, 전자제품 등 일본산 제품에 대해 90%의 관세를 철폐하고, 일본은 농수산물 등 인도산 제품에 대해 97%의 관세를 철폐한다. 또한, 일본산 휴대폰, 계산기, 배터리 충전기, CD 및 DVD 등과 인도산 섬유 등은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며 석유화학, 화학제품, 귀금속, 시멘트 등에 대한 관세를 낮출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 부문에서는 회계사, 연구원, 관광 가이드, 경영컨설턴트 등 계약 공급업체, 전문인력의 상호 이동을 허용하고 비자 발급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일본이 추가로 지원할 공적기금 중 약 4억 달러는 델리의 야무나 강 수질 개선 프로젝트 'Yamuna Action Plan Project-III'에 사용될 예정이며, 그밖에 히마찰 프라데쉬 주의 작물 다양화 등 농촌개발 프로그램에 약 6100만 달러, 타밀나두 주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녹색 프로젝트에 약 1억1000만 달러를 각각 지원할 계획이다.

일본은 인도의 열세 번째 무역파트너로 양국의 무역거래는 2010-11회계연도 137억 달러, 2011-12년도('11년 12월까지 누계)에는 131억 달러 규모에 이르렀으며 2011-12년도 인도의 대 일본 수입규모는 89억 달러로 양국 전체 교역량의 약 68%를 차지하였다.

일본은 CEPA 협정과 별도로 인도와의 경제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인도의 농업, 산림 및 환경 등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에 연간 2000억엔 이상의 ODA(공적원조개발) 자금을 지원해 오고 있다. 특히 2011년에 델리-뭄바이 산업회랑(DMIC)프로젝트와 화물전용철도(DFC) 프로젝트에 각각 45억 달러, 65억 달러 규모의 ODA자금을 지원키로 약속한 것이 대표적이다. 일본 외무성의 2011년 6월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2010년까지 인도에 약 386억 달러를 지원해온 인도 최대의 공적기금 원조국이다.

구자라트 주총리 시절 때부터 모디 총리와 친분이 있던 일본의 아베 총리는 모디 총리가 총리에 당선되자마자 축하한다는 메시지와 2014년 5월 31일에 열린 제13차 아시아안보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모디 총리의 일본 방문에 적극적인 공세를 펼치고 있다. 일본은 현재 인도의 다양한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으며 인도 ODA 최대 공여국가임을 감안하였을 때 모디 총리와 아베 총리의 친밀함은 양국 간의 관계를 더욱 긴밀히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현재 일본과 인도는 중국의 패권주의를 견제하고 있으며 일본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아시아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이며 인도도 경제적 발전을 하기 위해 일본의 자금과 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해 일본이 필요한 만큼 양국은 서로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중이다.

라. 인도-싱가포르 FTA

인도와 싱가포르는 2003년 2월 아드바니 인도 부총리의 싱가포르 방문 시 FTA논의를 발의, 2004년 말까지 경제협력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양국은 FTA보다 한 단계 높은 '포괄적경제협력협정(CECA: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을 목표로 8차에 걸친 협상 끝에 2005년 10월 CECA가 출범됐다.

협정의 주요 내용은 양국간 자유무역협정 추진, 상품과 서비스 교역증진 및 투자진흥을 위한 협조 방안 모색, 이중과세 방지협정 수정보완, 투자촉진을 위한 인도-싱가포르 펀드 조성 제안 등이다.

무역 자유화를 포함한 포괄적인 경제협력을 추구하는 CECA 체결을 통해 양국 교역은 다양한 분야에서 혜택을 입었다. 인도의 대 싱가포르 수출은 CECA 발효전인 2004-05 회계연도에 21억 2,483만 달러였으나, 2010-11 회계연도에는 98억 2,544만 달러에 달했으며, 대 싱가포르 수입의 경우도 동기간 대비 20억 8,537만 달러에서 71억 3,931만 달러로 빠르게 증가했다.

인도의 對 싱가포르 수입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인도 전체 수입액	172,876	217,543	321,410	257,658	350,783	465,076	490,413	358,480
대 싱가포르 수입액	5,073	6,892	8,747	6,047	7,270	8,230	7,603	5,271
인도 수입시장 점유율	2.93	3.17	2.72	2.35	2.07	1.77	1.55	1.47

주: 2013년 내역은 1월부터 9월까지 누계액

자료: GTA(Global Trade Atlas)

인도의 對 싱가포르 수출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인도 전체 수출액	121,259	147,564	195,070	165,202	222,922	307,087	297,261	235,099
대 싱가포르 수출액	6,135	6,369	9,112	6,721	9,094	16,147	14,692	11,229
인도 수출시장 점유율	5.06	4.32	4.67	4.07	4.08	5.26	4.94	4.78

주: 2013년 내역은 1월부터 9월까지 누계액

자료: GTA(Global Trade Atlas)

마. 인도-아세안 FTA

인도는 지난 10여 년간 아세안과의 경제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했으며 인도와 아세안 10개국(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브루나이,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간의 경제협력은 좁은 의미의 FTA에 투자와 제반 경제협력까지 포괄하는 India-ASEAN Regional Trade and Investment Area(RTIA)의 구축을 지향한다.

RTIA 협상은 관세 인하 및 철폐 등에 관한 modalities, 원산지 규정, 수량 제한, 위생 및 검역과 같은 비관세 장벽, 세이프가드, 보조금, 상계관세 및 반덤핑 관련, 지적 재산권 보호 등의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인도-아세안 FTA을 통해 인도는 동북아 3국(한국, 일본,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한 편, 동아시아와의 연계를 강화시킬 수 있는 동방정책을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협상이 아세안과 인도에 진출해 있는 다국적기업의 투자환경을 고려하지 않거나 인도의 대중국 산업 분업이 아세안에 비해 빠르게 증가한다면 인도-아세안 FTA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인도는 동북아시아와 동남아를 연결시킬 수 있는 허브로서 거듭나야 한다. 인도-아세안간 상품분야FTA는 2011년 8월 발효되었으며 투자 및 서비스분야의 추가개방을 위해 협상 중이다.

바. 인도-스리랑카 FTA

제일 먼저 체결된 인도-스리랑카 FTA 는 2000년 3월에 발효되었으며, 인도는 1,351개 품목에 대하여 기본 관세를 면제하고 2,799 품목은 기본 관세의 50% 인하한 후 협정 발효 후 3년 내에 100%를 양허하기로 결정했다. 스리랑카는 319개 품목은 관세 철폐, 889개 품목은 3년 내 무관세를 목표로 관세를 50%에서부터 단계적으로 인하, 2,744개 품목은 8년 내 무관세, 식료품을 중심으로 한 1,180개 품목은 제외키로 하는 등 자유화 품목은 극히 제한적이다.

인도의 대(對) 스리랑카 수입은 2010-11회계연도에 5억 173만 달러로 전체 수입 금액의 0.14%, 2011-12회계연도(*2011년 12월까지의 누계기준)에는 5억 8,701만 달러로 전체 수입 금액의 0.16%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對) 스리랑카 수출은 동 기간 각각 35억 1,005만 달러와 32억 4,429만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1.40%, 1.43%를 차지했다. 인도는 2012년 기준 스리랑카의 최대 수입 대상국이자 3위의 수출 대상국이다.

사. 한국-인도 CEPA협정

2006년 2월 압둘 칼람(Abdul Kalam) 인도 대통령의 국빈 방문 시 노무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기존 경제협력관계를 긴밀한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본틀로서 추진키로 합의했다. CEPA는 상품 교역, 서비스 교역, 투자, 경제 협력 등 경제 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채택된 용어로서 실질적으로 FTA와 동일한 성격을 지닌다.

2008년 9월 12차 협상에서 양국은 핵심 쟁점을 모두 합의해서 실질적인 타결을 하였으며, 2009년 7월 2일 인도 각료회의에서 한-인도 CEPA의 서명을 승인함에 따라, 2009년 8월 7일 양국간 서명이 시행됐다. 협정은 협정문의 내용 및 양국 국내 절차 종료후인 2010년 1월 1일부로 정식 발효됐다.

2010년 한-인도 CEPA 발효 이후 양국 간 무역량은 2009년 122억 달러에서 2010년 171억 달러로 약 40%가 증가하였지만 한국의 CEPA 활용률은 약 40%에 불과하며 관세 철폐율도 70%에 그쳐 CEPA 활용을 그리 잘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2014년 1월 박근혜 대통령의 인도 국빈 방문으로 현행 CEPA 개정 필요성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었으며 교역, 투자, ICT, 인프라 등 경제 분야에서 협력 관계 강화가 CEPA의 개정의 핵심 내용이 될 것임을 드러냈다. 한국 측은 현행 인도 측의 관세철폐율을 일본-인도 CEPA 수준인 90%까지 높일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 철강 제품에 관해 무관세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인도 상공부의 대변인은 기존에 체결됐던 FTA 사항을 조사하고 있는 중이며 2009년 체결된 한-인도 CEPA의 즉각적인 개정에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대변인은 인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400개가 넘지만 한국에 진출한 인도 기업은 극소수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인도 방문으로 그 동안 약 8년 동안 연기되어 왔던 POSCO 제철소 관련 프로젝트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양국은 경제뿐만 아니라 외교, 안보, 문화에 대해서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할 것을 협의하였다는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인도 방문은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아. 인도-태국 FTA

인도-태국 간 FTA는 2003년 11월에 추진을 합의하였고 2004년 9월에 타결됐다. 협정 안에 따라 조기 자유화 프로그램(EHP: Early Harvest Program)에 속한 82개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를 시작으로 2010년까지는 모든 품목에 대한 관세를 완전히 면제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런데 조기 자유화 프로그램 조치 이후 상당수의 일본 기업이 인도에서 투자 자금을 회수, 태국으로 제조기지를 이전하여 생산, 인도로 수출하는 예상치 못한 현상이 발생하여 FTA에 대한 자국 내 부정적 여론이 촉발됐다.

조기 자유화 품목 82개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됐지만, 양국의 완전한 FTA협상은 끝나지 않아 조기 자유화 품목 외 다른 품목에 대해서는 큰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그러나 마잉주 태국 총통이 2012년 4월 인도를 방문하는 등 양국의 상호개방 의지가 높아 인도-태국 FTA 완전타결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FTA체결 이후 양국의 교역량을 살펴보면, 태국의 대인도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인도의 對 태국 수입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인도 전체 수입액	172,876	217,543	321,410	257,658	350,783	465,076	490,413	358,480
대 태국 수입액	1,539	2,218	2,759	2,684	3,949	5,068	5,464	4,031
인도 수입시장 점유율	0.89	1.02	0.86	1.04	1.13	1.09	1.11	1.12

주: 2013년 내역은 1월부터 9월까지 누계액

자료: GTA(Global Trade Atlas)

인도의 對 태국 수출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인도 전체 수출액	121,259	147,564	195,070	165,202	222,922	307,087	297,261	235,099
대 태국 수출액	1,352	1,677	2,169	1,592	2,145	3,224	3,455	2,916
인도 수출시장 점유율	1.11	1.14	1.11	0.96	0.96	1.05	1.16	1.24

주: 2013년 내역은 1월부터 9월까지 누계액

자료: GTA(Global Trade Atlas)

자유화 품목

연번	HS code	품목명
1	080450	망고
2	080610	포도(신선한 것)
3	080810	사과(신선한 것)
4	081060	두리언(상록교목)
5	081090	기타 과실(신선한 것)
6	100110	기타 과실(신선한 것)
7	100190	기타 밀, 메슬린
8	160411	연어(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것)
9	160413	정어리(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것)

연번	HS code	품목명
10	160415	고등어(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것)
11	160510	게(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것)
12	250100	소금, 순염화나트륨, 해수
13	261000	크롬광과 그 정광
14	281119	기타 무기산
15	281820	기타 산화알루미늄
16	281830	수산화알루미늄
17	291739	과산화물, 과산화산
18	390690	기타 아크릴 중합체
19	390710	아세탈수지
20	390730	에폭시수지
21	390740	폴리카보네이트
22	390799	기타 폴리에스테르
23	390810	폴리아미드 (1차 제품의 것)
24	390890	기타 폴리아미드
25	390950	폴리우레탄
26	391990	플라스틱제의 접착성 판, 필름 등
27	441219	기타 합판
28	710310	귀석, 반귀석 (원석, 단순히 톱질 한 것, 거칠게 성형한 것)
29	710490	기타 합성, 재생의 귀석, 반귀석
30	710510	다이아몬드의 분
31	711319	귀금속제의 신변장식용품과 그 부분품
32	720150	합금선철
33	720711	탄소함유량 0.25% 미만인 철, 비합금강 반제품
34	720719	철·비합금강의 기타 반제품
35	722619	합금강의 평판압연 제품
36	722990	기타 합금강의 기타 선
37	730792	철강제의 관연결구
38	732020	철강제 나선형 스프링
39	732690	철강제의 기타 제품
40	760110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
41	760120	알루미늄 합금
42	840490	보일러용 부속기기와 증기원동기용 응축기의 부분품
43	840991	불꽃 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 전용의 부분품
44	841360	용적형 회전펌프
45	841381	기타 액체펌프
46	841451	테이블, 바닥, 벽, 창문, 천장 또는 지붕용의 팬
47	841459	기타 팬

연번	HS code	품목명
48	841490	기체 또는 진공 펌프, 기체압축기, 팬, 송풍기 등의 부분품
49	841510	창문형 또는 벽형의 공기조절기
50	841821	압축식의 가정형 냉장고
51	841990	열처리 기기류의 부분품
52	842199	액체, 기체용 여과기와 청정기의 부분품
53	842390	각종의 저울추와 저울 부분품
54	842549	잭과 차량을 들어올리는 데 사용하는 호이스트
55	843221	쇄토기
56	843780	제분업용 기계, 곡물 가공기계
57	844820	인조섬유의 방사기
58	844833	방적기와 부분품
59	847141	자동 자료 처리 기계
60	847190	기타 자동 자료 처리기계
61	847290	등사기, 주소 인쇄기, 우편물 분류기를 제외한 사무용 기계
62	847751	공기를 넣는 타이어 성형기 또는 재생기
63	847989	금속 처리용의 것과 혼합기, 반죽기, 파쇄기 등
64	847990	금속 처리 기기의 부분품
65	848079	고무 또는 플라스틱 성형용의 기타 주형
66	848180	파이프, 보일러
67	848210	보올 베어링
68	848350	전동축, 플라이휠
69	850431	용량 1 KVA 이하의 변압기
70	851220	조명용 또는 시각 신호용 기구
71	851711	유선전화기 (코드리스, 핸드 세트가 있는 것)
72	851790	유선전화용 또는 그것의 부분품
73	852390	음성 기록용 또는 이와 유사한 현상 기록용의 매체
74	852812	천연색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
75	852910	각종의 안테나와 반사식 안테나 및 동 부분품
76	853400	인쇄회로
77	854011	천연색 텔레비전용 음극선관
78	870840	기어박스
79	903289	자동 조절용 또는 자동 제어용의 기타 기기
80	903290	자동 조절용 또는 자동 제어용 기기의 부분품
81	910211	기계식 표시부만 갖춘 손목시계
82	910211	기계식 표시부만 갖춘 손목시계

주: 최초 협정안에는 84개 품목에 대한 양허를 규정하였으나, 이후 양국합의에 의하여 폴리 프로필렌(HS 390210)과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HS 390760)가 제외되었음
자료: DGCI&S, Ministry of Commerce

자. 인도-말레이시아 CECA 체결

인도는 일본과 CEPA 협정을 맺은 지 이튿날인 2011년 2월 18일, 콸라룸푸르에서 인도 상공부 장관 아난드 샤르마와 말레이시아 무역장관 무스타파 모하메드가 CECA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협정서에 서명함으로써 말레이시아와 '포괄적 경제협력 협정'을 체결했다.

CECA는 경제적 협력을 포함해 서비스와 투자 등의 영역까지 포괄하는 협정으로 이번 협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발효됐다. 인도와 말레이시아의 이번 협정은 작년 1월에 발효된 인도-아세안(ASEAN) 간의 기존 무역협정에서는 제외됐던 서비스와 투자 등을 포괄하면서 더 확대된 성격을 지닌다.

협정에 따라 양국은 보건·통신·소매·환경 서비스 등을 포함한 80여 개 영역에서 상대국 개인 및 법인의 100% 지분 투자를 허용하게 되고, 양국의 엔지니어와 회계사 등 전문 인력에 대해서도 상대국에서 단기 업무계약을 할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인도산 제품의 90%와 말레이시아산 제품의 92%의 관세가 낮춰질 것으로 예상되며 양국은 이 협정을 통해 2015년까지 교역규모를 150억 달러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말레이시아는 아세안 10개국 중 인도의 세 번째 무역파트너로 양국 교역량은 2012년 176억 달러, 2013년도(2013년 1월부터 9월까지 누계) 125억 달러를 기록했다.

차. 기타 추진 중이거나 검토 중인 FTA

1) 인도-캐나다

인도- 캐나다는 2014년 5월 30일에 캐나다 국제 무역(International Trade) 장관이 인도 상공업 장관에게 전화 연락을 하였다. 캐나다 국제무역 장관 Ed Fast는 인도 상공업 장관 Smt. Nirmala Sitharaman에게 취임 축하 인사를 전한 후, 양국 간 통상 문제(bilateral trade issues)에 대해 논의했으며 캐나다의 인도 투자가 적은 점을 지적하며 캐나다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시행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인도-캐나다 양국 모두 현재 협상중인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CECA)을 한 단계 진전시키는데 관심을 보였다.

2) 인도-사우디아라비아

인도-사우디아라비아는 2014년 2월 27일 인도 상공부장관 Shri Anand Sharma와 사우디아라비아 상공부장관인 Dr. Tawfiq bin Fawzan Al Rabiah는 걸프 협력 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 (GCC)) * 국가와 인도는 무역 확대를 위해 FTA에 서명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서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인도와 사우디아라비아는 구매자와 판매자의 관계에서 벗어나 석유 화학 단지(petro-chemical complexes)의 투자와 정제공장의 현대화 및 합작 투자의 확대를 통한 견고한 에너지 파트너십 강조하였다. 그리고 인도 상공부 장관은 인도의 사우디 아리비아 수출 품목으로 제약, 자동차, 면직물, 설탕, 밀을 강조한 반면, 사우디아라비아 상공부 장관은 물류와 교통 수단 서비스 분야를 언급했다. 양국 장관들은 조만간 Riyadh에서 열리는 인도 쇼(India Show)에서 중점을 둘 우선 분야에 대해 논의했으며 인도는 사우디아라비아 투자자들이 인도 인프라 분야에 활발히 투자할 수 있도록 초대하기로 했다. 인도와 사우디아라비아 양국 간 교역은 2012년 USD 420억 달러에서 2013년 481억 달러로 증가했다.

3) 인도-나미비아

인도-나미비아는 2014년 2월 6일 인도 상공부 장관 Shri Anand Sharma,나미비아 무역산업 장관 Carl H.G. Schlettwein은 인도 상공부 장관의 나미비아 방문 당시 만남을 통하여 인도-남아프리카공화국관세동맹(SACU:South African Customs Union)*의 FTA의 사전단계인 PTA(Preferential Trade Agreement. 민감 품목 제외) 체결의 진행 과정에 대해 논의하고 빨리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양측의 동의가 있었다.

○ SACU(남아프리카관세동맹): 스와질란드, 보츠와나, 나미비아, 레소토, 남아프리카공화국 5개국

인도의 자유무역협정 및 경제 협력 강화

기체결된 FTA	협상중인 FTA	검토중인 FTA
○ 인도-네팔 Agreement of Cooperation, Trade Treaty, Treaty of Transit ○ 인도-핀란드 Agreement on Economic Cooperation ○ SAFTA(South Asian Free Trade Area) ○ APTA(Asia Pacific Trade Agreement) ○ 인도-싱가포르 CECA ○ 인도-말레이시아 CECA ○ GSTP(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s 77개국) ○ 인도-아프리카 TA ○ 인도-칠레 PTA ○ 인도-아프가니스탄 PTA	○ 인도-태국 CECA ○ 벵골만포괄협력체(BIMSTEC)* FTA ○ 인도-걸프협력회의(GCC)* FTA ○ 인도-SACU* PTA ○ 인도-모리셔스(Mauritius) CECPA ○ 인도-파키스탄 Trading Arrangement ○ 인도-EU (Board Based Trade and Investment Agreement negotiations) ○ 인도-EFTA TIA ○ 인도-뉴질랜드 CECA ○ 인도-캐나다 CEPA ○ 인도-호주 CECA	○ 인도-미국 Trade Policy Foru Join Statement, Commercial Dialogue ○ 인도-방글라데시 TA ○ 인도-실론 TA ○ 인도-북한 TA ○ 인도-몽골 TA ○ 인도-몰디브 TA ○ 인도-러시아 Joint Task Force ○ 인도-방글라데시 MOU ○ 인도-베트남 MOU

기체결된 FTA	협상중인 FTA	검토중인 FTA
○ 인도-ASEAN* ○ 인도-부탄 TA ○ 인도-일본 CEPA ○ 인도-한국 CEPA ○ 인도-메르코수르(MERCOSUR)* PTA ○ 인도-스리랑카 CEPA ○ SATIS (SAARC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 인도-인도네시아 CECA	

자료: 인도상공부

○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지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10개국
○ MERCOSUR(남미공동시장):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베네수엘라, 칠레, 볼리비아, 페루, 에콰도르, 콜롬비아, 가이나아, 수리남 12개국
○ SAARC(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 인도,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아프가니부탄, 부탄, 몰디브 8개국
○ BIMSTEC(벵골만포괄협력체): 인도, 방글라데시, 미얀마 3개국
○ GCC(걸프협력회의): 오만,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쿠웨이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 6개국
○ SACU(남아프리카관세동맹): 스와질란드, 보츠와나, 나미비아, 레소토, 남아프리카공화국 5개국

Ⅲ. 무역

1. 수출입동향

가. 개요

인도 수출입 동향을 살펴보면 전체 교역액은 세계경제위기 여파를 받은 2009-10 회계연도를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다. 또한 무역수지 적자폭은 2009-10년도를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2011-12년에는 1833억 달러, 2012-13년에는 무려 1,903억 달러에 달하며 무역적자가 극에 달했다. 이러한 영향으로 2013-14년에는 루피화의 가치가 점점 하락함에 따른 루피화의 환율 상승이 인도의 수출증가, 수입감소로 이어지며 무역 적자폭이 1,307억 달러로 전년대비 대폭 감소했다. 루피화 가치의 급격한 감소로 인도정부는 금 수입량 억제를 위해 금 수입관세를 인상했다. 또한 루피화 가치의 하락은 미국의 양적완화의 축소를 적게 받은 이유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전년도에 이어 2012-13년도에도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은 전체 수입 중 34.4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국제 원유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입액 증대는 동년도 무역수지를 악화시킨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인도의 수출에 있어서는 엔지니어링 제품, 보석류 등 기타공산품, 원유 및 석유 제품, 농수산물이 각각 21.6%, 19.00%, 20.04%, 13.52%를 차지해 고른 비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인도상공부가 발표한 수출 진행 절차에 따르면, 인도의 수출입 절차는 정책이나 제품 카테고리에 따라 다수의 서류 증명이 필요하고 복잡한 경우가 많아 수출확대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에 인도정부는 수출 인센티브 제도 등 수출 부문을 집중 육성, 2014년까지 25%의 성장을 이뤄 무역수지 개선에 힘쓴다는 입장이다.

나. 품목별 교역 동향

주요 품목별 수출입 현황(2012-2013)

(단위: 백만 달러, %)

수출			
품목	금액	증가율	비중
농수산물	40,611.6	8.44	13.52
광석 및 광물	5,554.4	-34.23	1.85
- 철광석	1,599.1	-65.44	0.53
피혁	4,866.6	1.58	1.62
화학제품	29,482.4	9.25	9.82

수출			
품목	금액	증가율	비중
엔지니어링제품	64,853.5	-3.58	21.60
- 기계및기구	15,204.4	6.30	5.06
- 금속제품	10,026.9	4.70	3.33
- 1차및반가공철강	5,085.4	-1.62	1.69
- 수송기계	18,395.7	-12.93	6.12
섬유(의류제외)	14,406.7	0.55	4.79
의류	12,916.1	-5.61	4.30
기타공산품	57,058.1	19.00	19.00
- 보석류	43,425.4	14.46	14.46
- 플라스틱제품	6,306.5	2.10	2.10
원유 및 석유 제품	60,179.8	20.04	20.04
기타	10,286.3	3.42	3.42
계	300,215.4	-1.80	100
수입			
품목	금액	증가율	비중
원유 및 석유제품	169,046.0	9.08	34.47
식품류	15,851.8	18.84	3.23
섬유사 직물 및 의류	3,999.8	1.84	0.81
화학제품	35,373.1	-3.26	7.21
- 유기화학제품	14,444.0	8.29	2.94
자본재	60,452.5	-8.37	12.32
- 전기기계	4,450.9	-6.80	0.90
- 비전기기계	27,622.4	-8.21	5.63
- 수송기계	13,703.2	-2.62	2.79
기타	19,368.6	39.39	3.95
- 석탄 코우크 연탄	15,426.7	-11.51	3.14
- 전자제품	31,434,2	-3.69	0.90
- 금· 은	55,633.1	-9.34	11.34
- 철강	9,784.1	-10.77	1.99
- 금속광물및스크랩	14,971.2	11.95	3.05
- 비철금속	5,120.0	4.79	1.04
- 진주· 귀석	22,602.5	-19.28	4.60
계	490,328.7	0.24	100

자료: CMIE

인도의 주요 수출 품목은 엔지니어링 제품을 비롯한 원유 및 석유 제품, 기타공산품, 농수산물 등이며 주요 수입 품목은 원유 및 석유제품, 자본재, 금· 은, 화학제품 등이 차지하고 있다.

다. 연도별 교역 동향

인도의 2011-12 회계연도수입액은 원유수입과 식물성 기름 수입가격 인상으로 전년대비 60% 증가한 4,893억 달러를 기록한 반면, 수출액은 전년 대비 46% 증가하는데 그쳐 동 회계연도 무역적자는 1,833억 달러에 달하였고 2012-13 회계연도에 무역적자는 1,903억 달러까지 상승하게 되었다. 하지만 2013-14 회계연도에는 미국 양적완화의 영향으로 무역적자가 1,370억 달러까지 전년대비 대폭 감소했다.

인도의 연도별 교역 현황

(단위: 억 달러)

구분	2006-07	2007-08	2008-09	2009-10	2010-11	2011-2012	2012-13	2013-14
교역액	3,121	4,147	4,888	4,670	6,208	7,952	7,911	7,641
수 출	1,264	1,631	1,852	1,787	2,511	3,059	3,004	3,135
수 입	1,857	2,516	3,036	2,883	3,697	4,893	4,907	4,505
무역수지	△593	△885	△1,184	△1,096	△1,186	△1,833	△1,903	△1,370

주: 회계연도는 4월부터 익년 3월까지임.
자료: http://commerce.nic.in, CMIE

라. 국가별 교역 동향

인도의 2013년 1월-12월의 주요 10대 수입대상국은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UAE, 스위스, 미국, 이라크, 쿠웨이트, 인도네시아, 베네수엘라, 카타르 순이다. 우리나라는 인도의 24위 수출대상국, 13위 수입대상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13년 1월-2013년 12월 주요 국가별 수출입 현황

(단위: 억 달러, %)

수 출					수 입				
순위	국가	금액	증가율	비중	순위	국가	금액	증가율	비중
1	미국	386.1	7	12.25	1	중국	514.5	-1.81	10.69
2	UAE	319.5	-12.53	10.14	2	사우디아라비아	360.8	8.74	6.77
3	중국	145.1	-2.6	4.61	3	UAE	332.1	-13.18	7.8
4	싱가폴	134.8	-8.26	4.28	4	스위스	257.9	-15.68	6.24
5	홍콩	130.2	7.21	4.13	5	미국	234.5	-6.6	5.12
6	사우디아라비아	117.9	36.75	3.74	6	이라크	196.6	4.48	3.84
7	영국	962.4	16.38	3.05	7	쿠웨이트	175.3	-1.81	3.64
8	네덜란드	859.0	-14.21	2.73	8	인도네시아	152.3	6.7	2.91
9	독일	742.6	2.33	2.36	9	베네수엘라	149.2	23.74	2.46
10	일본	676.3	0.99	2.15	10	카타르	144.7	-10.76	3.3

자료: WTA (World Trade Atlas)

인도 수입시장에서는 중국의 시장점유율이 매년 큰 폭으로 커지다가 2009년 인도의 대중 수입제재로 소폭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수입 제재가 풀리면서 2009년 이후 중국산의 점유율은 다시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으며 2013년에는 1.81%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전체 수입 중 10.6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03년 까지 6.8%로 인도 수입시장 1위를 차지하던 미국 제품의 점유율은 2013년 기준 5위로 하락했으며, 전통적으로 인도 수입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 유럽 제품들은 꾸준히 일정한 수준의 입지를 유지 하고 있다. 고유가의 여파 및 화력발전, 차량 연료 사용 목적을 위한 원유 수입 증가로 산유국이 10대 수입 대상국 중 3개 이상은 꾸준히 자리잡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UAE 및 미국으로의 주요 수출품목은 보석류 및 의류, 광물류가 차지하고 있다. 한편 중국에는 주로 면화를, 영국에는 주로 섬유류를 수출하고 있다.

마. 수출 장려 정책

□ Special Focus Market Scheme(SFMS)

Special Focus Market Scheme(SFMS)란, 지정된 국가(총 49개국)로 수출하는 기업의 경우 수출금액의 4%를 Credit으로 적립해주는 제도이다. 지정된 지역은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CIS이며 인도 정부는 유럽, 미국, 일본 등 한정된 수출 대상국의 의존도를 줄이고 다양한 수출 시장을 위해 이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 Focus Product Scheme

Focus Product Scheme이란 성장 잠재력이 큰 엔지니어링 제품, 화학, 제약분야, 의류 등 지정된 약 200여개의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에게 FOB 금액 산정기준 2%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특별 세금공제를 제공하는 제도다. 한편 인도 정부는 매년 해당 품목을 신규 고지 하고 있으며 의류 부문 등 수출 기업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2.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가. 한-인도 교역 현황

1) 최신동향

2014년 11월 기준 우리나라에게 있어 인도는 9위의 수출 대상국이자 22위의 수입 대상국이다. 양국간 무역규모는 2002년 26억 달러에서 2012년 188억 달러로 10년 사이에 7배 이상 성장하였다. 2013년도 우리나라의 대인도 교역액은 175억 5천만 달러로 2012년도 188억 4천만 달러보다 6.9%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으나 무역수지 흑자는 3.8% 높은 51.9억 달러를 기록했다.

2) 한-인도 교역 추이

우리나라의 대인도 교역은 2002년까지는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2003년부터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8년까지 무역수지와 교역량 모두 빠르게 증가했다.

세계적 경기 침체로 인해 2009년 양국간 교역량이 감소하였으나, 이후 진전세를 보이며 대인도 교역량은 꾸준히 증가해 2012년과 2013년에는 각각 50억 달러, 51.9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2013년 교역량 은 수출입 모두 각각 -4.6%, -10.7%로 다소 감소세를 기록하였지만 2014년에는 신정부의 경제회복 위주의 정책기조에 따라 대한수입의 증가가 예상된다.

최근 10년간 교역 추이

(단위: 천 달러, %)

연도	수출액	수출 증가율	수입액	수입 증가율	총 교역량	교역량 증가율	무역수지
2004	3,631,978	27.3	1,849,982	50.1	5,481,960	34.2	1,781,995
2005	4,597,837	26.6	2,112,076	14.2	6,709,913	22.4	2,485,761
2006	5,532,797	20.3	3,640,789	72.4	9,173,586	36.7	1,892,008
2007	6,600,039	19.3	4,624,421	27.0	11,224,460	22.4	1,975,618
2008	8,977,063	36.0	6,581,241	42.3	15,558,304	38.6	2,395,822
2009	8,013,290	-10.7	4,141,622	-37.1	12,154,912	-21.9	3,871,669
2010	11,434,596	42.7	5,674,456	37.0	17,109,052	40.8	5,760,140
2011	12,654,078	10.7	7,893,573	39.1	20,547,651	20.0	4,760,505
2012	11,922,037	-5.8	6,920,826	-12.3	18,842,863	-8.3	5,001,210
2013	11,375,792	-4.6	6,180,172	-10.7	17,555,964	-6.9	5,195,620
2014	4,160,454	7.0	1,923,906	-14.1	6,084,360	-	2,236,548

자료: 무역협회(2014 년은 1-4 월까지 누계액)

3) 전망

양국의 교역규모는 2011년 200억 달러를 돌파한 이후 감소추세에 있으나, 앞으로 한-인도 CEPA의 혜택으로 기본관세율이 단계적으로 인하될 계획이어서 우리기업들의 가격 경쟁력 확보 및 교역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기업들의 공격적인 인도 시장 진출과 홍보로 인한 인지도 상승, 인도에서의 한국 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인한 수요 증가, 아직까지 고급 기술 및 제조기반이 취약한 인도의 특성으로 인한 수입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산업구조 및 신정부의 경제우선의 정책기조 등을 고려할 때, 한국의 對인도 수출규모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인도 역시 산업화가 진행해감에 따라 풍부한 인력 및 자원을 바탕으로 한 여러 제품들을 향후 한국으로 대량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등 양국간의 교역규모는 중장기적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나.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

품목별 대인도 수출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품목별	2013		2014(1 월~4 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계		11,376	-4.6	4,160	7.0
1	철강판	1,127	-16.3	469	14.0
2	자동차부품	1,252	-21.5	377	-24.9
3	합성수지	916	4.9	350	4.3
4	무선통신기기	396	43.2	282	173.5
5	석유제품	615	-15.2	255	34.9
6	석유화학합섭원료	633	72.4	198	48.2
7	기타석유화학제품	413	19.9	193	62.4
8	합성고무	383	5.4	138	-5.1
9	반도체	219	2.4	130	131.2
10	금형	223	30.6	121	29.7

주: 순위는 2014 년(1 월~4 월) 기준

자료: 무역협회, MTI3 단위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은 철강판, 자동차부품, 합성수지 등이다.

2012년 급락하였던 무선통신기기의 對인도 수출은 반등효과 및 프리미엄폰의 인도 내수 수요증가로 2013년 43.2%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2014년 4월, 전년 수출액의 71.2%에 해당하는 무선통신기기의 수출실적을 보였다. 한편 현대자동차의 활발한 현지영업과 현지 자동차 수요 급증에 따라 최근 몇 년간 자동차부품이 대인도 수출을 주도 하고 있다.
한-인도 CEPA 발효에 따라 점차 관세 수혜품이 커질 예정이어서 중장기적으로 자동차 부품의

대인도 수출은 호조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더불어 인도의 산업화와 인프라시설확충 및 건설시장의 활성화로 합성수지 등 석유화학제품의 수요는 전반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4년도에도 전년동기대비 꾸준히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한편,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의 경우 2011년 대인도 수출대상 5위에 해당하는 주력 품목이었으나 계속되는 수출 하락 추세로 2013년도에는 전년대비 -95.7%로 감소하는 등 수출량이 급감하고 있다.

석유화학합섬원료의 수출은 인도 시장에서의 수요증가와 한-인도 CEPA의 수혜로 인해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어 2013년 72..4%의 증가세를 보이며 빠른 속도로 성장 중이다. 이외 반도체, 금형 등의 품목에서 대인도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다. 대(對)인도 주요 수입 품목

품목별 대인도 수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품목별	2013		2013(1 월~10 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계		6,180	-10.7	1,924	-14.1
1	석유제품	2,495	-34.0	632	-26.3
2	식물성물질	771	66.6	181	-57.1
3	합금철선철및고철	345	16.6	167	42.1
4	알루미늄	327	31.2	111	8.3
5	정밀화학원료	184	8.6	67	1.8
6	농약및의약품	152	9.2	67	25.0
7	천연섬유사	219	15.7	56	-40.7
8	연제품	73	38.3	41	83.7
9	곡실류	101	7.8	37	29.2
10	아연제품	100	13.2	29	9.0

주: 순위는 2014 년(1 월~4 월) 기준

자료: 무역협회, MTI3 단위

인도로부터의 주요 수입품목은 석유제품, 식물성물질, 합금철 선철 및 고철, 알루미늄 등이며 특히 식물성물질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 식물성 물질은 2012년 83.7% 급증하였으며 2013년에도 66.6% 증가하여 급증세를 이어가고 있다. 석유제품의 경우 2012년 및 2013년에도 수입이 위축된 바 있으나 여전히 압도적인 대인도 수입 1위 품목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경기침체로 인해 2012년부터 대인도 수입이 감소하고 있지만, 2010년 한-인도 CEPA가 발효되면서 인도와의 경제협력관계가 점차 긴밀해져 대인도 수입은 중장기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주요 수입제품은 기초원자재 쪽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는 자원 및 원자재 확보 차원에서 인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3. 수입규제제도

가. 수입 규제

인도는 2001년 기존의 수입 수량규제를 전면 철폐한 이후 수입에 있어 별다른 제한을 가하지 않고 있다. 즉 대부분의 품목이 OGL(Open General License) 대상으로 소정의 절차를 마치면 누구나 쉽게 수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여타국과 달리 수입에 있어 특별한 제한 조치는 없다고 보면 된다.

그 외에 국제적으로 수출입이 제한되고 있는 일부 품목이나, 마약류, 총기류 등 일부 품목과 식품/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승인 및 인증을 받도록 하는 등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나. 비관세 장벽

1) 식품에 대한 유효 기간 규정 및 부실한 통관 검사 절차

□ 식품에 대한 까다로운 유효기간 기준

수입 당시 식품의 유효 기간은 본래 제품 수명의 60% 이상이 남아있어야 하며, 제품 수명은 제조일과 유효기간 만료일을 토대로 산출하는데 이러한 규정은 인도 국내산 제품과 비교하여 수입산 제품에 대한 차별적인 장애요소로 작용한다.

□ 부실한 항만보건소(PHO:Port Health Officer)의 검사 절차

모든 식품 화물은 통관 전에 PHO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결과 전까지 화물창고에 보관되며, 검사 통과에 실패하면 화물은 반송되거나 폐기 처분된다. 대부분의 식품 통관은 인증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샘플링 테스트를 위한 실험 시설이 부족해 검사 대기중인 제품은 유료 보관 창고에 장시간 방치되는 경우도 많으며, 일부 창고는 식품 보관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다. 검사는 제품 운송 보관의 상태(제품 특성에 따른 보관 요건 충족 여부, 부패와 오염방지 여부 확인)와 제품의 시각적, 물리적 상태(팽창, 돌출 등 식품 변질여부를 가시적으로 판단하며 해충, 먼지 등에 의한 식품 손상을 확인) 등을 확인한다.

샘플 검사 시 운반 포장물을 개봉 후 부착하는 인증 스티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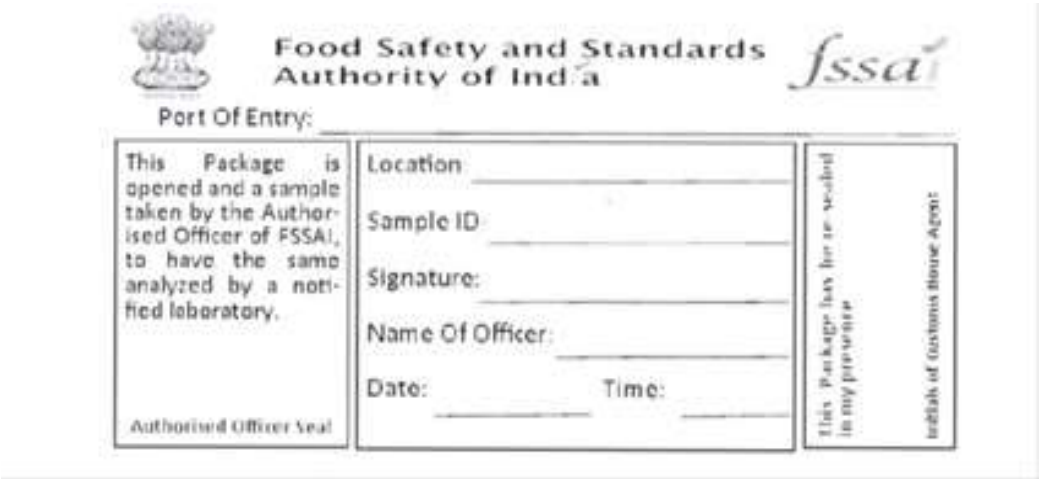

자료: FSSAI (Food Safety Standard Authority India)

□ 샘플검사 절차

PHO 검사를 받지 못하는 항만은 해당 항만에서 가까운 중앙식품실험실 또는 보건당국(Directorate General of Health Service)에서 인가한 실험실에 샘플을 보내 검사를 받아야 한다.

샘플 테스트 결과가 나오기까지 1일에서 1개월까지 소요돼 식품 유효기간이 짧아지고 샘플 테스트 비용이 발생하여 수입자에게 이중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험실의 검사 결과에 대해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나, 검사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고, 제품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아 잘못된 기준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식용유와 유지, 콩류, 시리얼 제품, 분유, 연유, 색소성분 및 첨가물은 필수적으로 샘플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

2011년 8월 FSSA의 시행 후 기존보다 1개 추가된 4개 샘플로 변경하여 수집하고 있으며, 1개 샘플은 식품 분석가에게 전달되고, 2개 샘플은 FSSAI가 지정한 관리자, 나머지 1개는 업체 요청 시 정부가 승인한 샘플 실험실로 전달된다. 이 때, 식품 분석가와 실험실의 테스트 결과가 상이할 경우 최종 심사를 위해 제 3의 실험실로 전달 후 분석된 결과로 판정된다.

FSSA의 시행으로 새로운 조정 절차가 추가되었는데, 분석 결과가 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검사 판정에 대한 조정 신청이 가능하며, 주정부에 의해 임명된 관리자가 조정 절차를 주재한다. 식품 안전 항소 재판소는 법원과 동등한 권한이 부여되므로 심각한 위반 사례에 한해 실제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로 인해 법정 분쟁 사례가 현저히 줄어들고 판결 절차가 간소화됐다.

샘플검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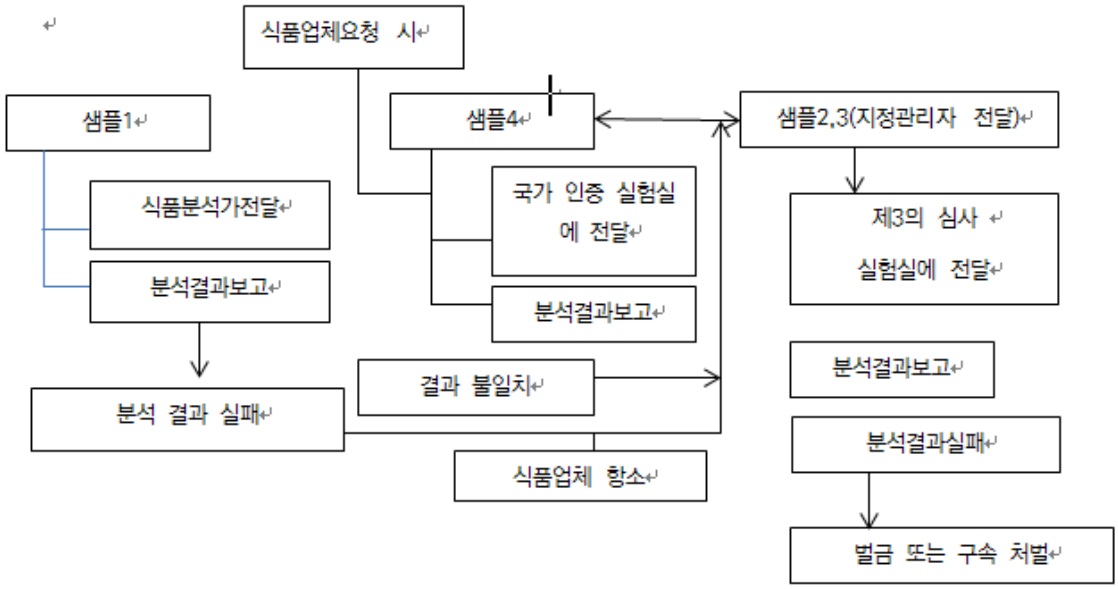

2) BIS 인증과정 의무화

90개의 인증 항목은 BIS(Bureau of Indian Standards)의 인증 과정을 거쳐야만 수입이 허가되며 기타 BIS 인증 품목은 BIS 웹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다.

○ http://nicdc.nic.in/CMMS/InternetRep/Internetreportview.aspx?Report=23

BIS 인가 신청자들은 신청 수수료, 수속료, 현장 방문 관련 경비, 테스트 비용, 인가서 관련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입 절차 및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대인도 수출을 저해하는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해외 기업이 BIS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인도에 법인, 지사, 연락사무소 등을 설립하는 등 인도 시장에 진출한 후 가능하다.

이 외 BIS 인증을 받는 방법은 현지 수입업자를 통해 인증을 받는 것인데, 이는 해당 현지 업체가 정식으로 인도 정부에 등록이 되어 있고 해당 업체와의 법적 계약 관계가 계약서 등을 통해 명확히 증명되었을 경우에 등록이 가능하며, 향후 에이전트를 변경할 경우 기존에 등록된 BIS 인증은 인정되지 않고 새로 BIS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BIS 등록을 위해서는 제품의 생산과정, 제조기계, 원자재, 이전 인증 획득 관련 자세한 정보 등 BIS에서 요구하는 신청서 및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라벨링 규정의 확대 적용

소매를 목적으로 인도에 수입되는 모든 제품들은 Standard of Weights and Measures Rules의 조항들을 준수해야 하며, 다음 사항들을 명시해야 한다.

- ○ 수입자명과 주소
- ○ 포장된 제품의 일반적인 명칭
- ○ 표준 단위로 표기된 총수량
- ○ 제품의 포장연월
- ○ 포장된 형태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최고 소매가(세금, 운송비, 수수료, 광고비, 운송비 등 모두 포함)
- ○ 수입국(Source of Import)
- ○ (식품이나 화장품의 경우) 유효 기간

통관 전 루피화로 표시된 최고 소매가(Maximum Retail Price, MRP)를 라벨에 명시하는 것은 對 인도 수출업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 하는데 라벨에 명시된 제품 가격은 세금 산출 근거로 활용된다. 대부분의 경우 판매업자들은 최고가를 실판매가로 간주하기 때문에 정확한 최고가 예측이 중요하다. 한번 정해진 MRP는 수정할 수 없으며, 가격을 인상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통관 물량부터 인상이 가능하다.

4) 세관에서의 수출품 재 반출 거부

바이어의 구매 거부로 인한 수출품 재 반출을 세관에서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 한다. 운송된 제품에 대해 바이어가 이런저런 사유로 구매를 거부할 경우, 수출자는 제3의 바이어에게 판매하거나 아니면 수출지로 재 반출해야 하나, 이 경우 인도 세관에서는 원래 계약자(바이어)의 NOC(Non Objection Certification)을 요구하게 된다.

하지만 바이어가 이러한 점을 악용해 NOC를 써 주지 않을 경우 재 반출이 불가하게 된다. 현지 바이어가 이런 현실을 악용해 시황이 안 거나 시장 상황이 불리한 경우 구매를 거부한 후, 수출자의 재 반출이 곤란해진 틈을 이용해 재협상을 시도하여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물품을 인도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5) Prevention of Food Adulteration Act

수입 식품들에 대하여 인도 관세청은 샘플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지만 인증 받는 시간이 오래 걸리며, 샘플링 테스트를 실시할 만한 실험실도 부족하고 추가적인 비용도 발생한다.

인도 관세청은 샘플 테스트와 더불어 다음 사항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 제품을 운송한 화물창의 상태
○ 제품에 대한 시각적/물리적 상태
○ 제품의 라벨링 조건 충족 여부

모든 수입 식품들은 통관 전에 PHO(Port Health Officer)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러지 못하는 경우는 가까운 Central Food Laboratory나 Directorate General of Health Services에서 인가 받은 실험실에서 샘플테스트를 받아야 한다.

현재 인도 수입자와 대인도 수출업자들이 식품 통관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불편을 호소하는데 이는 인증을 받는 시간이 오래 걸리며, 샘플링 테스트를 실시할 만한 실험실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제품들은 검사를 받기 위해 유료 보관 창고에 장시간 방치되어 있으며, 일부 창고는 식품 보관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이다.

실험실의 검사 결과에는 이견을 제시할 수 없으며, 검사 기간에 대한 규정도 없다. 게다가 제품 구분을 정확히 하지 못해 잘못된 기준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6) 인도 정부의 통합적인 식품안전표준법 시행

인도 정부는 통합적인 식품안전표준법(FSSA: Food Safety and Standards Act, 2006)을 2011년 8월부터 시행하기로 선포하였으며, 국제 표준에 맞는 위생안전 조항들로 구성된 이 법은 인도 식품안전표준국(FSSAI: Food Safety and Standards Authority of India)이 관리하며, 식품 분석을 위한 과학적 기준과 식품 제조, 보관, 유통, 판매와 수입에 관련된 규제 조항을 명시한다.

식품안전표준법으로 통합되어 점차적으로 폐지될 기존의 식품 위생 관련 9개 법규

법령	내용
불량식품 방지법 (PFA: Prevention of Food Adulteration Act)	식품 색상, 보존, 인공 감미료, 잔류 농약, 포장, 라벨 기준을 규정. 식품 가공, 유통과 판매 규제함.
우유 및 유제품 법 (Milk and Milk Products Order 1992)	농산부 산하 축산 낙농 및 수산물 부서에서 관할. 품질 인증과 포장, 마크와 라벨 기준을 규정
과일 제품법 (Fruit Product Order, 1973)	식품가공산업부(Department of Food Processing Industries) 관할. 가공된 과일 야채, 가당 탄산 음료, 식초, 합성 시럽의 세부 사항, 품질 요건이 포함됨. 모든 가공식품 업체는 FPO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하며 정기적인 검사가 요구됨.

법령	내용
육류 제품법 (Meat Product Order, 1973)	도축장과 제조업자의 환경 위생 요건, 포장, 마크, 라벨 관련 조항과 식품 내 중금속, 방부제, 방충제의 허용 함유량 수준을 규정함.
도량형법 (weight and measure, 1976)	정부 소비식품과 공공유통부(Ministry of Consumer Affairs, Food and public Distribution)의 식품 중량과 무게측정 규정에 따라에 미터법 계량단위가 적용되며, 특정단위로 계량되는 제품은 유아용식품 및 이유식, 비스킷, 빵, 버터, 커피, 차, 식물성 오일, 분유, 밀, 쌀가루 등
식용유 제품 관련 3개 법	식물성유지(Vegetable Oil Products Order, 1998), 식용유 포장(Edible Oils Packaging Order, 1998), 용매추출유, 탈유 및 식용분말 법(Solvent Extracted Oil, Deoiled Meal and Edible Flour Order, 1967)
생필품법 (Essential Commodities Act 1955)	생필품법 중 식품 관련 법조항

신규 법은 기존 법 조항을 총괄하며, 건강보조식품 부문 조항을 신설하였다. 특수목적 식이요법 음식 또는 신개발 식품(novel food)이 이 부문에 해당되며 현재 포괄적으로 정의되어 있다.

2008년 설립된 FSSAI는 델리에 소재하며, 주별 식품안전 위원과 관리자가 배치돼 안전인증 업무를 관할한다. 현재까지 4개 식품 테스트 실험실이 FSSAI 산하로 운영되고 2개 실험실이 추가될 예정이나 주별 72개 식품 실험연구실이 수준 미달로 운영되고 있어 당국은 5,000만 루피의 예산을 투입, 실험 시설 개선을 추진 중이다.

□ 라벨에 대한 규정

라벨 신고는 운반물 외부 포장에 첨부되거나 기재 사항이 인쇄된 카드나 테이프로 화물에 부착해야 한다. 라벨 내역은 제조자의 이름, 주소, 포장업체, 수입자, 공급자, 함유량 순으로 주요 성분 표시, 순중량, 제조·포장의 월·년, 유통기한의 월·년 표시, 원산지, 제품번호, 시장가격(세금 포함), 사용 설명과 영양성분 표시가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합성 감미료는 반드시 라벨에 표시해야 한다.

□ 자발적 표준 인증제도

인도 표준국(BIS: Bureau of Indian Standard)은 가공식품부문 표준 설정과 제 3 자 인증제 또는 자발적 표준 인증제를 실행하며, 이 표준은 허용된 식품 원료, 품질 한도, 제품의 제조 위생 건 및 포장, 라벨 요건 등을 포함한다.

제조업체들은 BIS 표준에 부합되면 "ISI"마크를 획득해 제품에 표시할 수 있다. 또한 BIS의 강제 인증이 필요한 아이템은 식품 색상/첨가물, 바나스파티(인도 버터 대용식품), 포장 용기, 분유, 연유 등이다.

마케팅 검사국(DMI: Directorate of Marketing and Inspection)은 자발적인 인증제로 농산물 관련 표준등급 획득 시 'Agmark'인증을 부여해 제품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FSSA 시행 이후에도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

□ 산업 라이선스

낙농업 프로젝트 설립 시 라이선스가 필요 없으며, SIA(Secretariat for Industrial Approvals)에 사업 각서를 제출해 공식 인정을 받고 우유와 유제품 관리법(1992)에 따른 등록증을 취득해야 한다.

인도 정부는 농촌지역 발전을 위한 식품산업, 공급망 조성 등 인프라 발전을 위해 외국인 직접투자(FDI)를 통한 현지 생산을 지원하고 있다.

인도 가공식품산업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는 농산물 제품, 우유와 유제품, 수산물과 육류 제품에 대해 자동 승인제로 허용되나, 해당 산업 라이선스가 필요하거나 24%이상 주식을 보유한 외국인 투자의 경우, 해당 투자 외국인이 2005년도 이전에 인도 국내 법인을 소유했거나 인도 협력 업체였던 경우에는 제외됐다.

수익, 자본의 환국 허용 및 대부분의 외국인 투자(FDI)와 기술 이전 관련 사항의 자동적 승인이 되며, 100% 수출 위주 농축산 제품의 경우 국내 시장에 생산량의 50%까지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자본상품과 원재료 수입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며, 수출로 인한 매출 발생시 법인세를 감면한다.

인도는 2011년 4월, 면사 수출제한 항목을 제거하며 면사 수출을 장려하는 모습을 보인다.

인도 수출입 제한/금지 품목

분류	제한/금지 품목	비고
수입전매품목	대두, 요소(비료), 밀, 메슬린, 팜 스테아린 등	인도 식품 공사 등 특정 기관을 통해서만 수입 가능
수입제한품목		수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수입 허가 등 제한적으로 가능한 품목
수입금지품목	주로 동물의 고기, 유지 등	
수출세부과품목	커피, 오일 케이크, 제조하지 않은 담배,	품목별로 일정한 종가세 또는

분류	제한/금지 품목	비고
	원면, 원면 웨이스트 등	종량세 부과
수출허가품목	말, 소, 병어, 사료, 탈지한 땅콩, 케이크 등	
수출금지품목	야생동물, 인체의 뼈 등 일부 품목	

수입 금지 품목 리스트(52개 항목)

연번	HS 코드	품목
1	02089010	Of Wild Animals
2	02090000	Pig fate, free to lean meat and poultry fat, not rendered or otherwise extracted, fresh, chilled, frozen, salted, in brine, dried or smoked.
3	04100010	Of Wild animals
4	05040031	Of Wild animals
5	05040041	Of Wild animals
6	05040051	Of Wild animals
7	05051010	Of Wild birds
8	05059021	Of Wild birds
9	05059031	Of Wild birds
10	05059091	Of Wild birds
11	05061011	Of Wild animals
12	05061021	Of Wild animals
13	05061031	Of Wild animals
14	05061041	Of Wild animals
15	05069011	Of Wild animals
16	05069091	Of Wild animals
17	05071010	Ivory
18	05071020	Ivory powder and waste
19	05100091	Of Wild animals
20	05119110	Fish nails
21	05119120	Fish tails
22	05119130	Other fish water
23	05119921	Of Wild life
24	05119992	Of Wild life
25	15010000	Pig Fats(including Lard) and Poultry fat, other than that of Heading 0209 or 1503.
26	15020010	Mutton Tallow
27	15020020	Fats, unrendered(excluding Mutton Tallow)
28	15020030	Rendered or solvent extraction fats

연번	HS 코드	품목
29	15020090	Other Fats of Bovine animals, Sheep or Goats, other than those of Heading 1503
30	15030000	Lard Stearin, Lard Oil, Oleostearin, Oleo Oil and Tallow Oil, not emulsified or mixed or otherwise prepared.
31	15041099	Other Fats and Oils and their fractions, of fish or marine mammals, whether or not refined, but not chemically modified.
32	15042030	Sperm Oil
33	15042090	Other Fats and oils and their fractions of fish, other than liver oils.
34	15043000	Fats and Oils and their fractions of marine mammals
35	15060010	Neats Foot Oil and fats from bone or waste
36	15060090	Other animal fats and oils and their fractions, whether or not refined, but not chemically modified.
37	15161000	Animal fats and oils and their fractions
38	15171010	Of animal origin margarine
39	15179030	Imitation lard of animal origin
40	15180040	Other
41	15220010	Degras
42	15220020	Soap Stocks
43	15220090	Other
44	35071011	Animal rennet
45	35071019	Other enzymes; prepared enzymes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46	35071091	Animal rennet
47	35071099	Other animal rennet
48	43021940	Tiger-Cat skins
49	43031010	Of wild animals covered under Wild Life Protection Act, 1972
50	43039010	Of wild animals covered under Wild Life Protection Act, 1972
51	8517	Telephone sets, including telephones for cellular networks or for other wireless networks
52	96011000	Worked ivory and articles of ivory

자료: 인도 상공부 대외무역국(DGFT)

수입전매품목 리스트(총 33개 품목)

연번	HS 코드	품목	비고
1	10011090	Durum Wheat, Other	Import allowed through FCI subject to para 2.11 of Foreign Trade Policy.
2	10019020	Wheat(not seed) for human consumption	
3	10019039	Meslin, Other	
4	10020090	Rye other	
5	10040090	Oats, other	
6	10059000	Maize(corn), other	(i) Import allowed through FCI subject to para 2.11 of Foreign Trade Policy. (ii) Import of maize for use for poultry or animal feed will be permitted to the manufacturers of poultry or animal feed without a licence subject to actual user condition and registration of import contract/letter of credit with NAFED. NAFED shall also monitor actual imports.
7	10061090	Rice in husk(paddy or rough) other	Import allowed through FCI subject to para 2.11 of Foreign Trade Policy.
8	10062000	Husked(Brown) Rice	
9	10063010	Rice, parboiled	
10	10063020	Basmati Rice	
11	10063090	Other semi milled or wholly milled rice, whether or not polished or glazed	
12	10064000	Broken Rice	
13	10070090	Grain sorghum, other	
14	10081090	Buck wheat, other	
15	10082019	Jawar, other	
16	10082029	Bajra, other	
17	10082039	Ragi(Finger Millet) other	
18	10083090	Canary Seed, other	
19	10089090	Other Cereals, other	
20	12030000	Copra	
21	15131100	Coconut(copra) oil and its fractions, Crude oil	
22	15131900	Coconut(copra) oil and its fractions: Other	

연번	HS 코드	품목	비고
23	27101111	Special boiling point spirits (other than Benzene Toluol) with nominal boiling point range 55-115°C	Import allowed through IOC subject to para 2.11 of Foreign Trade Policy, except for the companies who have been granted rights for marketing of transportation fuels in terms of Ministry of P&NG's Resolution No. P-23015 /1/2001-MKT. Dated 8.3.2002 including HPCL, BPCL & IBP who have been marketing transportation fuels before the date.
24	27101112	Special boiling point spirits (other than Benzene, Benzol, Toluene and Toluol) with nominal boiling point range 63-70° C	
25	27101113	Other special boiling point spirits (other than Benzene, Benzol, Toluene and Toluol)	
26	27101119	Other motor spirit	
27	27101120	Natural gasoline liquid (NGL)	Import allowed through IOC subject to para 2.11 of Foreign Trade Policy.
28	27101190	Other natural gasoline liquid	
29	27101910	Superior Oil(SKO)	Import subject to para 2.11 of Foreign Trade Policy and condition No.2 at import licencing note.
30	27101920	Aviation turbine fuel(ATF)	Import allowed through IOC subject to para 2.11 of Foreign Trade Policy, except for the companies who have been granted rights for marketing of transportation fuels in terms of Ministry of P&NG's Resolution No. P-23015/ 1/2001-MKT. Dated 8.3.2002 including HPCL, BPCL & IBP who have been marketing transportation fuels before this date.
31	27101930	High Speed Diesel(HSD)	
32	27101940	Light Diesel Oil(LDO)	Import allowed through IOC subject to para 2.11 of Foreign Trade Policy.
33	31021000	Urea, whether or not in aqueous solution	Import allowed through STC, MMTC and India Potash Limited subject to para 2.11 of Foreign Trade Policy.

자료: 인도 상공부 대외무역국(DGFT)

인도 상공부 대외무역국(DGFT)에서는 동식물, 육류, 일부 섬유, 무기, 폭죽 등 일부 품목에 대해 수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특정 조건을 충족 및 특정 허가를 받는 등의 제한을 두었다. 수입 제한(Restricted) 품목은 총 428개로, 자세한 리스트는 인도 상공부 대외무역국 홈페이지(http://dgft.gov.in/)의 상위 항목 'Downloads'에서 확인할 수 있다.

7) 화장품 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

인도 정부는 수입되는 화장품에 대하여 무차별적인 화장품 수입을 관리하고 유해물질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존의 의약품과 화장품법(Drugs and Cosmetics Rules, 1945)을 수정하여 2007년 2월 첫 수정안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이에 대한 재검토 및 시행 연기를 결정하고 2010년 5월 19일 4번째 개정안을 최종안으로 발표하였으나 동 법에 대한 시행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현재 시행 중이다.

동 법안에 의해 인도로 수입되는 모든 화장품 제품들은 중앙 의약품 표준 규제 기관(CDSCO, Central Drugs Standard Control Organization)에 의무적으로 등록이 필요하며 동 규제로 인해 기존 법의 부재로 유해 물질 포함, 낮은 품질 등으로 소비자들의 불만을 샀던 제품에 대한 통제가 용이해졌다.

적용대상으로는 중앙 의약품 표준 규제 기관에서 발표한 'Guidelines on Registration of Import of Cosmetics'에 명시되어 있는 약 80여개의 카테고리에 포함되는 모든 수입 화장품과 제품을 수입하여 재포장 또는 재가공하여 현지 시장에 판매하는 모든 제품이 대상이다. 단, 수입되는 제품이 인도 현지에서 재포장 또는 재 가공 되어 해외로 100% 재수출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의무 등록 절차로부터 면제된다.

현지에 법인, 연락사무소, 지사 등이 있는 해외업체의 경우 직접 CDSCO에 등록이 가능하나 인도 내 사무소를 두고 있지 않은 해외업체의 경우 수입업자 또는 에이전트를 통해 이를 등록해야 한다.

등록은 품목별로 따로 신청하여야 하며 1회 등록 시 250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되고 승인 발급 기간은 약 30일 정도가 소요된다. 수입업자나 에이전트를 교체할 경우 새로운 수입업자 또는 에이전트가 CDSCO에 신고를 해야 한다.

8) 중고 자동차 수입규제

인도 정부는 중고 차량 수입 시, 중고 차량의 연수가 제조일로부터 3년이 넘지 않고, 이륜차 및 삼륜차를 제외하고 모든 중고 차량의 운전자석은 오른쪽에 위치해 있는 차량만 수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자동차 내 미터기는 킬로미터로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중고차량 수입은 모두 뭄바이 세관(Customs Port at Mumbai)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중고 차량은 인도로 수출할 경우 별도의 테스트도 거쳐야 하며 이는 수출 및 선적전에 완료해야 한다. 테스트는 중앙정부에서 고시하는 시험 인증기관을 통해 받을 수 있는데, the Vehicle Research and Development Establishment, Ahmednagar of the Ministry of Defence of the Government of India, Automotive Research Association of India, Pune or Central Farm Machinery Training and Testing Institute(트렉터) 등이 속한다.

이 외 배기량 제한도 있는데, 수입하는 중고 자동차 배기량은 3,000cc를 넘어야 하며 1000cc-2500cc의 중고 차량은 전면 수입이 금지되어 있다. 이륜차의 경우 스쿠터는 50cc-500cc 사이의 모델은 수입 가능하며, 모터사이클은 250cc 이상의 모델에 대해 수입이 가능하나 800cc를 넘길 수 없다.

9) 의료기기 수입규제

의료기기의 대인도 수출을 위해서는 인도 중앙약품 표준통제국(CDSCO)에 제품을 등록해야 하며 인도 내 도매· 제조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및 개인사업자만이 제품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모든 의료기기 제품을 의무등록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국이 명시한 14개 항목에 포함되는 제품에 대해서만 시행하고 있다.

기기명	공시일
Disposable Hypodermic Syringes	1989.03.17
Disposable Hypodermic Needles	
Disposable Perfusion Sets	
In-vitro Diagnostic Devices for HIV, HbsAg and HCV	2002.08.27
Cardiac Stents	2005.10.06
Drug Eluting Stents	
Catheters	
Intra Ocular Lenses	
I.V. Cannulae	
Bone Cements	
Heart Valves	
Scalp Vein Set	
Orthopaedic Implants	
Internal Prosthetic Replacements	

상기 명시된 의무 등록 대상 의료기기의 부품을 수입할 경우 역시 등록이 필요하다. 단, 미국, 유럽, 일본, 캐나다, 호주에서 판매 중인 제품이 아닌 경우 등록증 발급 신청이 제한되는데 해당 국가들에서 판매되고 있지는 않으나 제품 등록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해당 국가에 판매 및 등록이 모두 되어있지 않은 경우 CDSCO에서 시행하고 있는 임상실험을 통해 검증을 받은 후 등록증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등록증 발급 기간은 신청서 접수일 기준 9개월이며, 등록증 발급 중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재신청 및 등록비를 재납부 해야 한다. 등록증 신청에 필요한 기타 서류의 유효기간은 최소 6개월이 남아있어야 하며, 등록증 발급 과정 중에 만료된 경우 재발급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등록증 신청비용은 1,000달러이며 각 제품별로 따로 신청 및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등록증 발급 이후 제품 사용 용도 변경 및 확대, 에이전트, 수입 및 공급업체 주소 등의 변동사항 발생 시 3개월 내 동 기관에 통지 또는 재등록이 필요하나 품질보증기간, 테스트 방식의 변화, 최종 제품 사양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생산 공정 변화 등의 경우 재등록 없이 단순 통지가 가능하다.

발행된 등록증의 효력은 발행일로부터 3년간 지속되며 재등록의 경우 최소 등록증의 만료 9개월 전에 신청해야 한다. 등록비 납부 및 재등록 절차는 기존 등록증 발급과 동일하다.

4. 대한수입규제동향

가. 대한수입규제 현황

규제 중인 인도의 대한 수입규제

연번	품목명	제소 근거	최종판정일	반덤핑 관세	관련기업
1	NBR고무	반덤핑	반덤핑관세 ('97.7)	US$38.73/MT (LG, 금호 직수출건) US$362.75/MT (LG, 금호 이외 수출기업)	LG화학, 금호석유화학 (비고: LG, 금호는 조사에 협조, 덤핑관세 경감)
2	아크릴단섬유	반덤핑	반덤핑관세 ('97.10)	Rs.22.27/Kg	전체
3	SBR (합성고무)	반덤핑	반덤핑관세 ('99.6)	0.0689 US$/Kg	전체
4	탄산칼륨	반덤핑	반덤핑관세 ('03.7)	- 9.45달러/MT (UNID 생산, OCI Corp 또는 UNID수출) - 123.86달러/MT(상기 외 케이스)	UNID, OCI Corp.
5	가성소다 (Caustic Soda)	반덤핑	반덤핑관세 ('03.8)	- 미국의 트리스타가 한화케미칼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는 면제 - 위의 조합 외에는 모두 US$366/DMT 적용	한화석유화학, Tricon Energy (비고: 한화, Tricon 조사 협조, 반덤핑 관세 경감)
6	수황화나트륨	반덤핑	반덤핑관세 ('03.10)	1,034.76US$/MT	전체
7	유연성 고분자 판재 폴리올(Flexible Slabstock Polyol:분자중량 3000-4000)	반덤핑	반덤핑관세 ('04.11)	- 한국 : 65.31%(2601USD/MT)	전체

연번	품목명	제소 근거	최종판정일	반덤핑 관세	관련기업
8	폴리에스터사 (FDY)	반덤핑	반덤핑관세 ('06.12)	1. FDY 75/36 SBR : FOB Price Korea RP : US$ 1.40 per Kg 2. FDY 75/36 SD : FOB Price Korea RP : US$ 1.46 per Kg 3. FDY 75/72 SD : FOB Price Korea RP : US$ 1.46 per Kg	HK 코퍼레이션, 효성, 웅진케미컬, 휴비스
9	아세톤(Acetone)	반덤핑	반덤핑관세('08.5)	67.33 US$/MT	전체
10	과산화수소 (Hydrogen Peroxide)	반덤핑	반덤핑관세 ('08.7)	Rs.23,082/MT	전체
11	Rubber Chemicals [MBT CBS TDQ PVI TMT PX 13 6PPD] (석유화학 첨가제류)	반덤핑	반덤핑관세('08.10)	금호석유화학: 1.33달러/ Kg 이외 다른 제조/수출자 : 1.63 US$/Kg	금호석유화학
12	TV음극선관	반덤핑	반덤핑관세('09.2)	Rs.1,148/pc(15") Rs.1,822/pc(21") Rs.3,858/pc(29" 이상)(LG필립스 생산 및 수출), Rs.1,422/pc(14") Rs.1,953/pc(15") Rs.2,282/pc(21") Rs.4,369/pc(29" 이상)(LG필립스외 한국산 수출)	LG 필립스 디스플레이 (비고:LG는 조사 협조, 반덤핑관세 경감)
13	CD-R	반덤핑	반덤핑관세 ('09.3)	53.38 US$/pc	전체
14	인산 (Phosphoric Acid all grades and all concentrations)	반덤핑	반덤핑관세 ('09.11)	221.64US$/MT	전체
15	Poly Vinyl Chloride Paste Resin PVC Paste (PVC 페이스트)	반덤핑	반덤핑관세 ('11.5)	US$ 1,706/MT	한화 및 LG화학 이외의 경우에 모두 적용

연번	품목명	제소 근거	최종판정일	반덤핑 관세	관련기업
16	스테인레스 냉연강판 Cold Rolled Flat Products of Stainless Steel	반덤핑	반덤핑관세 ('11.6)	US$148.05/MT (Posco생산-Posteel수출), US$96.70/MT (Posco생산-삼성물산 수출), US$210.93/MT (Posco생산-현대상사 수출), US$234.98/MT (Posco생산-SK네트웍스 수출), US$74.88/MT (Posco생산- LG상사 수출), US$62.61/MT (Posco생산-대우인터 수출), US$922.34~1364.00/MT (Posco이외생산-기타기업 수출)	POSCO, POSTEEL, 삼성물산, 현대종합상사, SK네트웍스, LG상사, 대우인터내셔널
17	나일론필라멘트사 (Nylon Filament Yarn)	반덤핑	반덤핑관세 ('11.11)	US$1.14/kg	전체
18	폭 600mm 미만 스테인레스 냉연강판 400 series (Stainless Steel Cold Rolled Flat Products of 400 series having width below 600 mm)	반덤핑	반덤핑관세 ('11.11)	US$1,491/MT	전체
19	고무노화 방지제(6-PPD, PX-13)	세이프가드	세이프가드 관세 ('11.6)	- 초회연도: 30% minus Anti-dumping duty payable - 2차 연도: 25% minus Anti-dumping duty payable	금호석유화학
20	디옥틸 프탈레이트(DOP, Dioctyl Phthalate)	세이프가드	세이프가드 관세 ('12.11)	- 초회연도: 15%의 종가세 - 2차연도: 10%의 종가세	전체

연번	품목명	제소 근거	최종판정일	반덤핑 관세	관련기업
21	무수프탈산(Phthalic Anhydride)	반덤핑	반덤핑관세 ('12.12)	- 애경유화 : 무혐의, 기타: 91.12USD/MT	전체
22	아질산염 (Sodium Nitrates)	세이프가드	세이프가드 관세 ('13.9)	- 1년: 30% 종가세, 2년째 (3개월 동안만): 28% 종가세	전체
23	무용접강관 (Seamless Pipes, Tubes and Hollow Profiles of Iron or Non-alloy steel)	세이프가드	세이프가드 관세 ('14.3.11)	- 1년차 25%, 2년차 15%, 3년차(6개월간) 5%	전체
24	알루미늄 휠 (cast aluminum alloy wheels)	반덤핑 예비판정	반덤핑 잠정관세 ('14.1.13)	- 1US$ / 1.18kg	전체
25	염화메틸렌 (Methylene Chloride)	반덤핑	반덤핑 관세 ('14.4.2)	- 0.21 US$/ 1kg	전체
26	PTA	반덤핑 예비판정	반덤핑 잠정관세 (14.6.19)	태광산업 : US$19.05 삼성석유화학 : US$29.86 이외 : 117.09/MT	전체

주: 2014. 8월 기준

자료: 무역협회, Ministry of Commerce & Industry, Government of India

나. 한-인도 CEPA로 인한 대한 수입규제 관련 기대 사항

2010년 1월 1일 발효된 CEPA에서 반덤핑 및 세이프가드 조치로 인한 피해 보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최근 세이프가드 조치 부과의 특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인도의 전반적인 보호무역주의 동향에도 불구하고 보호무역주의 조치와 관련해서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인도 정부가 그간, 실제 국내 산업의 피해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불충분한 경우에도 국내 산업의 신청에 근거하여 조사에 착수 및 잠정 관세를 부과하는 등 수입 규제 대국다운 면모를 보인 바 있으나, CEPA 체결로 인해 보호무역조치 발동 시 이로 인한 피해액에 상응하는 보상책을 제공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대한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서는 다소 엄정한 절차를 걸쳐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 최근 6개월 내 반덤핑 조사개시 품목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반덤핑 제재 건수는 2007년 8건을 정점으로 해서 감소추이를 보이고 있다.

2014년 2월부터 8월 중 6개월 동안,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인1건의 한국제품 반덤핑 조사가 개시되었으며, 품목은 2014년 3월에 시작된 한국산 스테인레스 열연강제품이다. 또한, 동년 1월 한국산 알루미늄 휠에 반덤핑 예비판정, 4월에는 염화메틸렌에 반덤핑 판정이 내려졌다. 최근에는 반덤핑관세 대신 세이프가드를 활용하여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2014년도 들어 5건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1건의 세이프가드 시행이 확정되었다.

2014년 8월까지 현재 총 20개 품목에 대한 반덤핑 제재가 시행 중이며, PTA와 알루미늄휠에는 반덤핑 예비판정을 내린 상황이다. 반면, 동년 4월, 한국산 폴리염화비닐 품목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철회하기로 발표하였다.

라. 향후 전망

인도의 반덤핑 제재는 일반적으로 단순 수입 급증이 아닌, 화학, 석유화학제품 및 철강 등 원부자재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석유화학과 철강 등 인도 대기업이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우리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은 분야는 지속적인 반덤핑 제재 확대가 예상된다.

예를 들어, 대한 반덤핑 품목 중 전자제품의 경우에는 CRT 모니터, CD-R 이외에는 제재 받는 품목이 없고, 전세계 대상으로도 CRT 모니터, CD-R, DVD-R 등의 일부 제품군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제재 품목이 없다. 그러나 이는 인도 전자산업의 성장 단계가 낮은 수준에 있고, 인도 로컬 기업과 경쟁하는 품목들은 외국 기업들도 국내 생산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나타난 현상으로, 인도 기업들의 생산 기술이 향상되어 수입품과의 경쟁군이 다변화되면 전자제품군에서도 다양한 반덤핑 제재가 예상된다.

특히, 인도 국내 전자기업들이 각종 백색가전제품 분야로 실제 사업 영역을 치열하게 넓혀가고 있어, 향후 반덤핑 제재 가능성이 높아지는 품목이다.

최근 한 제소자가 현지의 합금 휠 또는 합금 로드 휠 시장이 크지 않고 현지 시장에서 새로운 품목으로 인도 기업들이 타국의 기술력이 높은 업체들과 경쟁할 경우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인도 정부에 동 품목에 대한 반덤핑 조사 제소를 하였으며 이로 인해 자동차에 사용되는 12인치에서 24인치까지의 알루미늄 합금 휠 또는 합금 로드 휠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여 진행 중에 있다.

이 외 꾸준한 수입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석유화학 관련 제품은 지속적으로 인도 정부에서 주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추가 수입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는 등 향후 인도 정부의 반덤핑 규제에 대한 동향을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5. 관세제도

가. 관세의 종류 및 산정 방식

인도의 관세 체계는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잡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인도의 총 관세는 기본 관세(Basic Duty)와 상계 관세(Countervailing Duty), 특별 부가 관세 (Special Additional Duty) 그리고 교육세(Educational Cess)를 합산하여 산정되며, 이 또한 단순 합산이 아니라 복리 계산하는 방식처럼 복잡한 산식에 의해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

나. 인도의 총 관세 산정 방식

기본 관세는 일반적인 관세의 의미이며 2007년 4월을 기해 기본 관세를 12.5%에서 10%로 인하한 바 있다. 상계 관세(혹은 부가 관세라고도 함)는 내국 물품세(excise duty)와 동일한 명목으로 부과되며 2013-14 회계연도에 10%로 조정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2008년 4월 이후 물품세(excise duty) 변화 추이

2008년 4월	16% → 14%
2009년 2월	14% → 8%
2010-11 회계연도	8% → 10%
2012-13 회계연도	10% → 12%
2013-14 회계연도	12% → 10%

2008년 4월을 기해 기존 16%에서 14%로 세율이 축소되었다가 국내 소비 진작을 위해 내국 소비세를 인하함에 따라 2009년 2월을 기해 8%로 다시 인하된 바 있으며, 2010-11회계연도 출구전략 시행의 일환으로 다시 10%로 인상조치 되었다. 이후 2012-13 회계연도에 12%로 인상되었지만, 2013-14 회계연도에 다시 10%로 조정되었다.

특별 상계 관세는 2006년 4월에 특별한 품목을 제외한 모든 수입품에 부과 되도록 확대 적용된 세목인데 2007년 10월 인도 정부가 특별 상계 관세(보통의 경우 4%)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항이 실행되지 않아 실제 철폐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부가세를 납부하고 있는 수입업자에 대해 특별 상계 관세를 공제해 주고 있다.

일반적인 품목의 경우 기본 관세는 10%, 상계 관세는 12%, 특별 상계 관세는 4% 또한 교육 특별세는 3%이다. 이 경우 총 관세는 이들의 단순 합산인 29%(=10%+12%+4%+3%)가 아니라 아래의 산식에 따라 산정된다.

2013년 기준 인도 관세 산정 방식

1. CIF 가격 – 물품 가격, 보험, 운임 포함 (실제 부과기준은 1%의 하역비를 추가한 금액)
2. BCD(Basic Custom Duty), 기본관세 – (현재기준 10%)
3. Additional Duty(CVD), 상계관세 – (현재기준 12%)
4. Customs Education Cess(EC), 교육세 – (현재기준 3%)
5. Special Additional Duty(SAD), 특별상계관세 – (현재기준 4%)
6. ADC – BCD와 CIF의 합에 상계관세를 적용

※ 최종 관세율 합
=BCD + ADC + ECx(BCD+ADC) + SADx{BCD+CIF+ADC+3%x(BCD+ADC)}

관세율 적용 예

항목	세 율	적용 관세율	비 고
CIF	–	100	
BCD	10%	10(A)	기본관세
ADC	12%	13.2(B)	기본관세(A)에 상계관세 적용 (BCD+ CIF)x ADC
EC	3%	0.696(C)	교육세 3%적용 EC x (BCD+(B))
SAD	4%	4.95584(D)	특별상계관세 적용 SAD x {BCD+CIF+(B)+ECx(BCD+(B))}
총계		28.85184	(A) + (B) + (C) + (D)

자주 사용되는 관세율 예시

기본관세 (A)	상계관세	기본관세에 상계관세 적용 (B)	교육세 3% 적용 (C)	특별상계관세 4% 적용 (D)	최종관세율 (A+B+C+D)
10	12	13.2	0.696	4.95584	28.85184

기본관세 (A)	상계관세	기본관세에 상계관세 적용 (B)	교육세 3% 적용 (C)	특별상계관세 4% 적용 (D)	최종관세율 (A+B+C+D)
7.5	12	12.9	0.612	4.84048	25.85248

기본관세 (A)	상계관세	기본관세에 상계관세 적용 (B)	교육세 3% 적용 (C)	특별상계관세 4% 적용 (D)	최종관세율 (A+B+C+D)
10	6	6.6	0.498	4.68392	21.78192

기본관세 (A)	상계관세	기본관세에 상계관세 적용 (B)	교육세 3% 적용 (C)	특별상계관세 4% 적용 (D)	최종관세율 (A+B+C+D)
0	12	12	0.36	4.4944	16.8544

CEPA 통관 시, 통관 전 주요 세부사항 확인이 필요하며, 인도의 특혜무역 협정 내용과 대상 품목, 원산지 기준 등 구체적인 내용은 FTA 포털 한-인도 CEPA 홈페이지 (http://www.fta.go.kr/user/fta_korea/kor_india.asp?country_idx=18)에서 전문 확인이 가능하다. 원산지 일반 규정은 HS 6단위 세부번호 변경과 역내부가가치 35% 기준으로, 939개의 품목별 원산지규정 (PSR)이 도입되었으며, 기타 미소기준 도입 등으로 인도의 여타 FTA에 비해 전반적으로 완화된 원산지 기준이 도입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역외가공지로 개성공단이 인정되어 108개의 품목을 대상으로 한국 원산지 조달비중이 60%가 넘는 제품에 대해서는 한국산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다. 주요 관세 특혜 제도

□ 특별 경제 구역(SEZ: Special Economic Zone) 입주 기업

가장 대표적인 관세 특혜 제도로 특별경제구역에 입주 요건(외화 수취액 〉 외화 지출액)을 갖추고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는 자본재나 부품 수입에 대해 관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 수출 촉진용 자본재(EPCG: Export Promotion Capital Goods) 도입 기업

수출 촉진용 자본재를 도입할 경우에도 해당 자본재에 대해 관세가 면제된다. 이 경우 관세 면제 조건은 해당 제품의 정상 관세액의 8배를 8년 내에 수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인도에서 생산하여 제3국으로 일정부분 이상 수출을 할 경우 그 자본재에 대 해서는 관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 관세율의 확인

기본 관세율은 CBEC(Central Board of Excise and Customs)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cbec.gov.in) 상계 관세 역시 CBEC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상계 관세는 국내 제조 물품에 부과 되는 국내 물품세(Excise Tax)와 동일한 개념이다. (http://www.cbec.gov.in)

라. 특혜 관세

인도는 각종 특혜 무역 협정 체결을 통해 특정 지역 혹은 국가와 무역을 활성화시키고 있으며, 이 경우 일반 정상 관세보다 낮은 특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예를 들어 주변국인 파키스탄, 스리랑카, 네팔, 방글라데시 등 서남아 국가 연합(SAARC) 국가 들과 특혜관세 협정을 맺고 있는데 이를 근거로 이들 국가에 대해서는 품목에 따라 관세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그 외에 인도는 태국과 FTA 협상을 타결하고 2004년 11월부터 82개 품목에 대해 조기 인하 조치(Early Harvest)를 시행하였으며, 2005년 8월부터 싱가포르와 자유무역협정 (CECA)을 전면적으로 발효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들 외에 다른 FTA 체결 국가에 대해서도 관세 인하 계획에 따라 관세를 면제 또는 인하해서 적용하고 있다.

중국과는 자유무역(FTA)을 추진한다는 기본원칙에 합의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양국의 공동연구 그룹이 현재 구체적인 일정을 포함한 실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이며 한국과는 CEPA(포괄적 경제협력 협정)를 체결하고 2010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말레이시아와는 2011년 7월 1일부터 CECA가, 일본과는 2011년 8월 1일부터 CEPA(포괄적 경제협력 협정)이 발효되었다. 협정이 발효된 후, 특혜관세가 적용되는 관세는 기본관세로 감축 스케줄에 따라 매년 균등 하게 인하혜택을 보게 된다.

우리나라와 인도가 개별 특혜 무역 협정에 동시에 가입하여 상호 특혜 관세를 제공하고 있는 협정은 GSTP 협정과 APTA 협정(舊 방콕협정)의 두 개이다. 이들 협정의 대상 품목과 특혜 관세율은 우리나라 수출입 총람이나 관세율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발효되고 있는 인도의 주요 특혜무역 협정과 원산지 규정은 아래와 같다.

□ GSTP(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s)

동 협정은 77그룹 국가 내 48개국이 31개 품목에 대해 상호 10~ 50% 관세 특혜를 제공하며, 1989년 4월 19일부터 발효되었다. 우리나라와 인도는 회원국으로 상호 특혜 관세를 제공하고 있다.

원산지 기준은 50% 부가가치 기준을 적용하며, 비회원국산 투입물(원재료, 부품 등)의 가액이 해당 수출품 FOB 가액의 50%를 초과 하지 않아야 한다. 회원국 간 누적 원산지(cumulative rules of origin)를 인정하되, 이 경우 회원국산 투입 물의 합산 가액이 해당 수출품 FOB 가액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저개발 회원국(방글라데시, 수단 등 7개국)에 대해서는 위 항의 원산지 기준에 대해 각각 10%의 favor를 부여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GSTP의 의한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다.

□ 남아시아 특혜무역협정(SAPTA: South Asia Preferential Trade Arrangement)

동 협정은 남아시아 6개국(방글라데시, 부탄, 몰디브,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 간 품목별 일정한 관세특혜를 제공하며, 1995년 12월 7일부터 발효됐다.

원산지 기준은 40% 부가가치 기준을 적용하며, 비회원국산 투입물(원재료, 부품 등)의 가액이 해당 수출품 FOB 가액의 60%를 초과 하지 않아야 한다. 회원국 간 누적 원산지(cumulative rules of origin)를 인정하되, 이 경우 회원국산 투입물의 합산 가액이 해당 수출품 FOB 가액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저개발 회원국(방글라데시, 부탄, 몰디브, 네팔)에 대해서는 위 항의 원산지 기준에 대해 각각 10%의 favor를 부여하고 있다.

□ 인도-스리랑카 자유무역협정(India-Sri Lanka Free Trade Agreement)

동 협정은 인도-스리랑카 간 자유무역협정으로 민간 품목을 제외한 1,000여 품목에 대해 무관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1998년 12월 28일 협정이 체결되었다.

원산지 기준은 35% 부가가치 기준과 HS 헤딩(4단위) 변경 기준을 동시에 적용하고 있으나, 양국 간 원산지의 누적을 인정하되, 이 경우 25% 이상의 부가가치가 수출국에서 이루어지도록 명시되어야 한다.

□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구 방콕협정)

동 협정은 아시아-태평양 협정 회원국(한국,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파푸아뉴기니) 간 56개 특정 품목에 대해 관세 특혜를 제공하고 있으며, 1975년 7월 31일 협정이 체결됐다.

원산지 기준 45%(방글라데시, 라오스 35%) 부가가치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해당 수출품의 생산 비용 및 노동 비용이 해당 제품 공장도 가격(ex-works)의 50% 이상이다.

□ 인도-태국 자유무역협정(India-Thailand Free Trade Agreement)

동 협정은 인도-태국 간 자유무역협정으로, 현재 발효 중인 것은 '조기실행계획(EHP: Early Harvest Program)'의 82개 품목을 대상으로 3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상호 무관세를 제공하고 있으며, 2004년 11월 1일 갈등이 적은 품목부터 관세를 철폐하고 2010년 모든 품목에 대하여 관세를 철폐한다. 양 국은 2013년 12월 자유무역협정의 최종서명을 남겨두고 있다.

원산지 기준은 40% 부가가치 기준과 HS 헤딩(4단위) 변경 기준을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

□ 인도-싱가포르 포괄적 경제협력협정(CECA)

2005년 10월부터 발효된 동 협정으로 인해 인도-싱가포르 간 상품 무역 품목의 상당수가 즉시 관세 철폐되었으며 그 비중은 무역액 기준으로 80%에 달한다. 인도의 특혜 무역 협정의 내용과 대상 품목, 원산지 기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인도 상공부 웹사이트 (http:// commerce. nic.in)에서 'Trade Agreements / Transit Arrangements'란의 '각 개별 무역 협정'에 전문이 게재되어 있다.

□ 한-인도 포괄적 경제협력협정(CEPA)

2010년 1월 1일 발효된 동 협정으로 한국-인도간 상품 품목과 수입액 기준 85%의 제품 이 향후 8년 이내에 철폐 또는 감축되게 된다. 인도의 특혜무역 협정 내용과 대상 품목, 원산지 기준 등 구체적인 내용은 FTA 포털 한-인도 CEPA (http://www.fta.go.kr/ user/fta_korea/ kor_india.asp?country_idx=18)에서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원산지 일반 규정은 HS 6단위 세번 부호 변경과 역내부가가치 35% 기준으로, 939개의 품목별 원산지규정 (PSR)이 도입되었으며, 기타 미소기준 도입 등으로 인도의 여타 FTA에 비해 전반적으로 완화된 원 산지 기준이 도입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역외가공지로 개성공단이 인정 되어 108개의 품목을 대상으로 남한 조달비중이 60%가 넘는 제품에 대해서는 한국산으로 인정하도록 한 바 있다.

□ 인도-일본 포괄적 경제협력협정(CEPA)

2007년 1월 협상이 시작된 일본-인도간 포괄적경제협력협정(CEPA)은 2011년 2월 16일 최종 서명되었으며, 2011년 8월 1일부터 발효됐다. 인도와 일본간의 CEPA 체결을 통해 일본으로부터의 투자 확대가 예상되는데, 그 중에서도 델리-뭄바이 산업대동맥프로젝트(DMIC) 등 인프라 개발 협력확대가 기대된다. (상품) 수입액 기준, 인도는 90%, 일본은 97%의 시장을 개방하며 한-인도 CEPA의 개방수준(인도 74.5%, 한국 84.7%)에 비해 개방 폭은 넓으나 대부분의 품목이 10년간에 걸쳐 철폐되게 되어 개방 속도는 한-인도 CEPA보다 느리다. 일본측은 인도에 대해 복제약 시장을 개방하고 인력 이동에 대해서도 폭넓게 개방했는데, 예를 들면 독립전문가 10개분야, 계약서비스 공급자 14개 분야 등이 포함되었다. 한편 인도 측은 일본에 통신, 건설, 광고 등 86개 분야를 개방하였다. 일본이 추진해 온 전방위 인도진출 노력의 결정판으로 평가되며 이를 계기로 일-인 양국의 통상-투자 관계는 더욱 긴밀해 질 것으로 보인다.

□ 인도-EU 자유무역협정(FTA)

인도는 최대 무역 대상인 EU와 지난 2007년부터 수 차례에 걸친 협상에도 각종 관세와 비자 등 비관세 사안에 대한 양국의 견해차로 아직도 최종 타결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EU는 인도 최대의 교역 파트너로 거대 경제권 가운데 인도와 가장 인접하고 있어 경제적 활용도가 매우 높은 시장이며, 교역뿐만 아니라 투자 면에서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2012년 2월 10일 뉴델리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합동 발표가 이뤄졌으며, 당시 협상의 핵심 분야는 서비스 시장과 투자 자율화 정책, 회사 설립, 금융 & 보험 서비스, 유통, 법률 서비스, 통신, 해상 운송, 회계, 농산물 외 시장 개방(NAMA, Non-Agricultural Market Access)이며, 2011년도보다 구체적인 EU측 제안에 따른 조건 사항들이 명시되었다.

인도 측은 EU 의 교역 항목 가운데 95%의 관세를 장기적으로 철폐하는 반면, 인도는 90%의 관세를 철폐하는 비대칭적 관세 철폐를 주장하고 있다. 인도-일본 CEPA 협상에서 1040개 품목을 완전 제외한 반면, EU와의 FTA 협상 제외 품목은 400여개에 그칠 전망이다. 한편 EU가 인도와 FTA 협상을 개시하면서 가장 공들인 부분이 지적재산권 보호이다. 하지만 인도는 주력 산업인 복제약 산업이 FTA로 인해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적 재산권 부분에 대해 가장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다.

EU는 FTA협상의 조건으로 인도가 은행과 보험 등 금융부문의 추가개방과 자동차, 와인산업 등에 대한 관세 장벽을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인도는 자국에 대한 EU회원국의 비자 발급 확대와 함께 취업비자 조건을 대폭 완화해줄 것을 요청하는 등 양측이 핵심사안에 대하여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현재 인도는 완성 승용차에 대한 수입관세를 60%, 트럭과 버스는 10%, 부품에 대해서는 7.5~10%의 관세를 책정하고 있는데, EU는 관세율이 너무 높다고 판단하여 지속적으로 관세율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반면 인도는 관세를 낮출 경우,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도 관세를 인하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자국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훼손을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인도와 EU는 지지부진한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지난 2012년 11월 전체 타결보다는 부분 타결 형태로 협상을 진행 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으며, 우선 해결할 수 있는 부분만 서로 개방하고 민감한 부분들은 점차 해결해 나가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인도-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인도-ASEAN FTA는 2012년 12월 20일 뉴델리에서 인도와 ASEAN 정상이 모인 가운데 서비스와 투자까지 포함하여 체결 발표됐다. 이는 지난 2009년 상품에만 국한된 인도와 아세안 FTA 체결 이후 3년 만으로 현재 750억달러인 양자간 연간 교역액이 2020년에는 2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도-ASEAN FTA는 2003년 8월 기초협의문에 서명한 이후 총 23회의 협상을 거쳐 6년 만인 2009년 8월 상품 부문에 국한한 자유무역협정으로 우선 체결됐고, 2010년 1월 1일부로 발효됐다.

인도-ASEAN FTA의 양허 품목 중 일반 부문에 해당하는 품목은 대부분 빠르면 2013년, 늦어도 2016년까지 관세 철폐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전자제품과 화학제품, 기계류를 포함한 양 지역간 수출입 품목 가운데 80%에 해당하는 4,000여개 품목의 관세가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TV, 플라스틱 제품, 고무제품, 보석, 귀금속 등은 관세가 완전히 철폐되며, 자동차 부품이나 시멘트, 오토바이 등 350개 품목의 관세는 2016년까지 5% 이하로 인하된다.

마. 최근 관세 제도 동향

전자, IT 등 일부 분야에서 완제품의 수입관세가 부품의 수입관세보다 낮은 부품과 완제품 간의 관세역전이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일부 기업들은 인도 현지생산보다 제품수입을 선호하고 있다.

인도에 진출한 글로벌 주요 자동차업체들의 경우, 인도 정부가 2011년부터 CKD 차량에 부과되는 관세를 10%에서 30%로 인상하기로 한 조치가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

한편 2012년에는 비합금, Flat-rolled 철강재에 기본 관세를 5%에서 7.5%로 인상해 수입 견제와 자국 산업 보호 방침을 발표하는 한편, 철광의 선광과 펠렛화 생산시설에 대한 기계 장비 수입세는 2.5%로 인하하였다. 2013-14 회계연도의 경우, 인도 정부는 셋톱박스의 관세율을 5%에서 10%로 인상하였다. 이는 TV 방송통신사업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신규 셋톱박스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 철광석 수출관세 인상 여파

○ 2011년 12월 30일부로 20%에서 30%로 인상된 철광석 수출 관세로 인해 2012년 1분기부터 수출량과 철강업계가 타격을 입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 회계연도 2012-13에 인도 철광석은 1800만톤의 가장 낮은 수출량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69% 감소했다.
○ 장기계약을 통해 철광석 수출 계약을 체결한 호주, 브라질과는 달리 인도의 주요 공급국가인 중국의 경우, 주로 현물시장을 통해 철광석을 구입하고 있어 즉각적인 가격인상이 불가피한 바, 다른 나라에 비해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바. 관세 지원 제도

□ 수출목적 자본재 관세 감면 (ZERO EPCG, Export Promotion Capital Goods)

ZERO EPCG 제도에 따른 관세 감면을 신청한 제조 또는 수출기업은 자본재 수입 시 수입관세를 일부면세 또는 무관세이다. 2013-14회계연도 일반 상품의 수입관세가 10%인 점을 감안하면 일부면세 또는 무관세의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이 자본재를 이용하여 수출품목을 생산해야 하며 관세 감면금액의 최소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6년 내에 수출완료해야 한다.

이 제도와 관련하여 이행되지 않은 수출의무는 제도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관세 납부와 함께 종결될 수 있다. 관세는 관세 절감분의 2배가 넘지 않는다.

ZERO EPCG 신청은 인도 상공부 무역국(DGFT, Directorate General of Foreign Trade, www.delhi.nic.in)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Infodrive 웹사이트에서 조회 할 수 있다.

○ www.infodriveindia. com/tradelaw/exim/handbook/Forms/index.htm

□ 수출목적 자본재 관세 면제 (Duty Free Import Authorization Scheme, DFIA)

DFIA는 수출용 원자재의 면세수입을 가능케 하는 제도로서 수출기업에만 적용된다. 이 제도는 표준 원재료-완제품 규정(Standard Input and Output Norms, SION)에 따른 품목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매우 제한적인 제도이다. 즉 SION으로 미리 규정된 품목에만 면세 수입이 가능하며 규정되지 않은 품목은 설령 수출용 원재료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 SION 리스트는 DGFT(www.dgft.delhi.nic.in)에 명시되어 있다. 또한 수입 원재료 대비 최소20% 이상의 부가가치가 발생해야 한다. DFIA 신청을 위해서는 인도 상공 부를 통해 신청서를 교부 받아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 서비스분야 관세면제 (Served from India)

인도의 서비스문화 향상을 통해 서비스수출이 촉진되도록 기존의 서비스분야 관세면제 자격증명(DFEC) 제도를 개선하여 Served from India 제도로 변경했다. 이 제도에 의한 관세면제 혜택은 자영 식당업의 경우 20%, 호텔업의 경우 5%이며, 호텔 및 식당은 이러한 관세면제 혜택을 식품류 및 주류 수입 시 사용 가능하다.

□ 수출 간주 (Deemed Export Schemes)

수출전용기업(EOU, Export Oriented Units), 특별경제구역 (SEZ, Special Economic Zone) 혹은 소프트웨어 파크 (STP, Software Technology Park)등에 입주한 기업과 여타 인도 국내기업간의 거래는 수출입거래와 동등하게 취급되어 관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각종 수출 촉진전용공단에 위치해 있어도 외환 순취득 조건 등의 입주조건을 준수하면 수입관세가 면제된다.

□ 수출유공업체의 등급분류(Status Holder)

수출유공업체의 분류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최근 3년간의 수출실적에 따라 One star, Two star, Three star, Four star, Five star 등 5등급으로 구분한다. 우수수출업자로 선정되는 경우 관세면제, 통관절차의 신속화, 은행보증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 관세 환급 (Duty Drawback Scheme)

대부분의 관세 지원제도가 관세 면제 또는 관세 경감으로 되어있는데 비해 유일하게 관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이다. 관세 환급법에 의거 운송서류, 수출면장 등을 제출하면 수출품에 관련된 원재료 수입 시 지불한 관세 및 소비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환급신청서는 www.cbec.gov.in에서 받을 수 있으며 신청서를 CBEC(Central Board of Excise & Customs)에 제출한 후 환급에 걸리는 시간은 보통 6개월이다.

관세의 일종인 특별 부가관세 SAD(Special Additional Duty)는 수입자가 부가세 납부 기업이면 환급 가능하다. 하지만, 관세 환급절차의 복잡성으로 실제 환급 받는 사례가 거의 없다. 따라서 동 제도(SAD 부과)를 철폐해 달라는 요구가 많으며, 불가 시 환급절차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 관세 권리 장부 제도 (DEPS, Duty Entitlement Passbook Scheme)

신청한 수출기업에 대해 개별 장부를 부여하여 수출용 원자재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마이너스(-)로 기록하고 완제품 수출 시 발생한 부가가치를 플러스(+)로 기록하여 장부상에 잔고가 충분히 있다면 그 만큼 관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20달러의 원자재를 수입하고 관세를 6달러 납부하였다면 장부에 -6으로 기재하고 추후 국내 원자재를 포함 하여 가공 후 6달러의 부가가치가 발생한 30달러의 완제품을 수출하였다면 +6으로 기재하게 된다.

이로써 장부 상 잔고는 0이 되어 관세 납부가 면제된다. 이 예에서는 편의상 최소 발생 부가가치를 20%(수출액의 20%만 잔고로 누적)로 가정하였으나 실제로는 품목에 따라 다르다.

DEPS 역시 인도 상공부 무역국(DGFT, www.dgft.delhi.nic.in)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수출증가율이 20%이상인 기업에 대해 수입액의 5% 관세면제 혜택을 주는 Target Plus제도가 있다.

□ 수출용 자재 수입 시 관세 면제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업체나 그 업체의 협력업체는 EHTP허가를 받으면 제품 생산에 필요한 자재 수입 시 관세를 면제받는다.

EHTP는 SEZ와 비슷한 개념으로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서 준비된 정책이다. 신청업체는 수출전문 회사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즉, 해당업체가 SEZ지역 또는 수출전문지역에 위치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하며, 인도 내수를 위해서는 특별한 혜택이 없다.

담당부처는 Software Technology Parks of India, Noida이며 소요기간은 60일정도 걸린다. 담당부처인 Software Technology Parks of India는 제출한 서류를 검토 후 서류 심사가 통과하면 신청사의 책임자를 면접한다. 면접 시 향후 사업계획을 심사하며 이 면접에서 통과하면 최종 승인을 받는다.

최종 승인을 통과하면 Green card를 발급받는다. 이 그린카드를 발급받은 후 Excise Department에 Excise permission을 신청한 후 발급받는다. 그린카드와 Excise permission을 받으면 자재 수입 시 관세를 면제받는다.

6. 주요인증제도

가. 주요 인증 제도

인도의 품질인증 및 공업 표준규격을 부여하는 제도로는 BIS(Bureau of Indian Standard) 제도가 있다. 현재까지 표준이 의무화되어 있는 품목은 아래의 105개 품목이며 나머지는 임의 규격이다.

BIS의 의무인증 획득 품목 수는 2006년 109개에서 2007년 68개로 크게 감소된 바 있으나 이후 증감을 반복하여 현재에 이르렀다. 2008년 9월에도 지정고시에 의하여 도금 강판 등 일부 품목의 BIS 인증이 2009년 2월을 기해 강제화 되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2011년 4월 BIS 인증품목이 81개 품목으로 증가하였고, 2011년 8월에 2개, 2012년도에 7개 품목이 추가되어 총 90개 항목으로 늘어났다.

한편 2013년도 들어 인도 표준국(BIS)은 15개 전자제품 판매에 대해 등록을 의무화했다. 15개 항목은 비디오게임, 32인치 이상 플라즈마· 액정표시장치(LCD)· 발광다이오드(LED), 텔레비전, 증폭기 장착 광디스크플레이어, 전자레인지, 32인치 이상 영상출력장치 및 영상화면기, 프린터 및 플로터, 스캐너, 노트북 및 태블릿, 무선 키보드, 자동응답기, 증폭기, 전자악기, 전자시계, 셋톱박스, 컴퓨터 등이다.

인도와의 거래에서도 실제 완제품 메이커들이나 수입업체들이 일정한 국제 규격의 획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바이어에게 신뢰를 준다는 면에서도 국제적 규격을 획득한다는 것은 인도와의 거래에서도 당연히 필요하다. 또한 인도에서 규격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인도 정부의 품질인증기관인 STQC(Standardization, Testing and Quality Certification)는 인도 기업의 국제규격 획득을 지원하고 있다.

STQC는 전국 15여 개소에 실험실을 설치하고 ISO 9001 Quality Management System (QMS) Certification, Product Safety Certification based on IEC Standards (S mark), IECEE-CB Certification Based on IEC Standards, ISO 27001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ISMS) Certification 등의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BIS의 공인 기관이기도 하다.

인도에서 BIS 인증 획득이 의무화되는 품목(총 105 개)

연번	BIS 인증	품목
1	IS 1165	Milk powder
2	IS 1166	Condensed milk, partly skimmed and skimmed condensed milk
3	IS 1656	Milk-Cereal Based Complementary foods
4	IS 11536	Processed cereal based complementary foods for infants

연번	BIS 인증	품목
5	12176	Sweetened ultra-high temperature treated condensed milk
6	13334(Part 1)	Skimmed milk powder, standard grade
7	13334(Part 2)	Skimmed milk powder, extra grade
8	14542	Partly skimmed milk powder
9	14433 (Part 1)	Infant milk substitute, milk protein based
10	IS 13428	Packaged Natural Mineral Water
11	IS 14543	Packaged Drinking Water(Other than Packaged Natural Mineral Water)
12	IS 15757	Follow-up-formula-Complimentary Food-Specification
13	IS 269	Ordinary Portland cement 33 Grade
14	IS 455	Portland Slag cement
15	IS 1489(Pt1)	Portland pozzolana cement – Part 1 Fly Ash based
16	IS 1489(Pt2)	Portland pozzolana cement – Part 2 Calcined Clay based
17	IS 3466	SPECIFICATION FOR MASONRY CEMENT
18	IS 6452	High alumina cement for structural use
19	IS 6909	Super sulphated cement
20	IS 8041	Rapid hardening Portland cement
21	IS 8042	White Portland Cement
22	IS 8043	Hydrophobic Portland Cement
23	IS 8112	Ordinary Portland cement 43 Grade
24	IS 8229	Oil well cement
25	IS 12269	53 Grade Ordinary Portland cement
26	IS 12330	Sulphate resisting Portland cement
27	IS 12600	Low heat Portland Cement
28	IS 302 (Pt2/Sec 3)	Safety of household and similar electrical appliances –Electric Iron
29	IS 302 (Pt2/Sec 30)	Safety of household and similar electrical appliances– Room heater
30	IS 302 (Pt2/Sec 201)	Safety of household and similar electrical appliances – Electric immersion water heater
31	IS 302 (Pt2/Sec 202)	Safety of household and similar electrical appliances – Electric stove
32	IS 418	Tungsten Filament Lamp for Domestic and Similar General Lighting Purposes
33	IS 694	POLYVINYL CHLORIDE INSULATED UNSHEATHED AND SHEATHED CABLES/CORDS WITH RIGID AND FLEXIBLE CONDUCTOR FOR RATED VOLTAGES UP TO AND INCLUDING 450/750 V
34	IS 3854	Switches for domestic and similar purposes
35	IS 8828	Electrical Accessories – Circuit Breakers for over current protection for

연번	BIS 인증	품목
		household and similar installations
36	IS 9968 (Pt.1)	Elastomer insulated cables (Pt.1): For working voltages upto and including 1100 V
37	IS 12640 (Pt.1)	Residual current operated circuit breakers for household and similar uses – (Pt.1): Circuit breakers without integral overcurrent protection (RCCBs)
38	IS 12640 (Pt.2)	Residual current operated circuit breakers for household and similar uses – (Pt.2): Circuit breakers with integral overcurrent protection (RCVOs)
39	IS 13010	AC Watt-hour meters, class 0.5, 1 & 2
40	IS 13779	ac static watt-hour meters, class 1 & 2
41	IS 14697	ac static transformer operated watt-hour and VAR- hour meters, class 0.2S & 0.5S
42	IS 15111 (Pt 1&Pt 2)	Self-ballasted lamps for general lighting services Part 1 Safety requirements and Part 2 Performance requirements
43	IS 8144	Multipurpose dry batteries
44	IS 3055 (Part 1)	Clinical Thermometers : Part 1 Solid Stem Type
45	3055(Part 2)	Enclosed scale type-Specification
46	IS 1161	Steel tubes for structural purposes
47	IS 1239(Pt1)	Steel Tubes, Tubulars and Other Wrought Steel Fittings : Part 1 Steel Tubes (BI-LINGUAL)
48	IS 4270	Steel tubes used for water wells(upto 200 mm dia)
49	IS 1342	Oil pressure stoves
50	IS 2787	Oil Pressure Heaters
51	IS 10109	Oil pressure stove, offset burner type
52	IS 3470	Hexane, Food grade
53	IS 3196(Pt1)	Welded low carbon steel gas cylinder exceeding 5 litre water capacity for low pressure liquefiable gases: Pt1 Cylinders for liquefied petroleum gas (LPG)
54	IS 3196(Pt2)	Welded Low Carbon Steel Cylinders Exceeding 5 Litre Water Capacity for Low Pressure Liquefiable Gases – Part 2 : Cylinders for Liquefiable Non-Toxic Gases Other Than LPG
55	IS 3196 (Part 4)	Welded low carbon steel cylinders exceeding 5 litre Water capacity for low pressure liquefiable gases- Specification Part 4 Cylinders for toxic and corrosive gases
56	IS 3224	Valve fittings for compressed gas cylinder excluding LPG cylinders
57	IS 3745	Yoke type valve connections for small medical gas cylinders
58	IS 7142	Welded low carbon steel gas cylinder for low pressure liquefiable gases not

연번	BIS 인증	품목
		exceeding 5 litre water capacity
59	IS 7285 (Part 1)	Refillable Seamless steel gas cylinders – Specification – Part1: Normalized Steel Cylinders
60	IS 7285 (Part 2)	Refillable Seamless steel gas cylinders – Specification – Part2: Quenched and Tempered Steel Cylinders with Tensile strength less than 1 100 MPa(112 kgf/mm2)
61	IS 7302	Valve fittings for gas cylinder valves for use with breathing apparatus
62	IS 7312	Welded and seamless steel dissolved acetylene gas cylinders
63	IS 8737	Valve fittings for use with liquefied petroleum gas (LPG) cylinders of more than 5 litre water capacity
64	IS 8776	Valve fittings for use with liquefied petroleum gas cylinder up to and including 5 litre water capacity
65	IS 9798	Low pressure regulators for use with LPG mixtures
66	IS 14899	Liquefied petroleum gas containers for automotive use
67	IS 15100	Multifunction valve assembly for permanently fixed liquefied petroleum gas (LPG) containers for automotive use
68	IS 7620(Pt1)	Part 1~Diagnostic Medical X-ray Equipment – Part 1 : General and Safety Requirements
69	IS 14625	Plastic Feeding Bottles
70	IS 10001	Constant speed compression ignition (diesel) engines for general purposes (up to 19 KW) Performance requirements for constant speed compression ignition (diesel) engines for general purposes (up to 20 kW)
71	IS 1785 (Part 1)	Specification for plain hard-drawn steel wire for pre-stressed concrete; Part 1 Cold-drawn stress relieved wire.
72	1785(Part 2)	Specification for plain hard-drawn steel wire for pre-stressed concrete; Part 2 as drawn wire.
73	IS 6003	Specification for indented wire for pre-stressed concrete.
74	IS 6006	Specification for uncoated stress relieved strand for pre-stressed concrete.
75	IS 13620	Specification for fusion bonded epoxy coated reinforcing bars.
76	IS 14268	Specification for uncoated stress relieved low relaxation seven ply strand for pre-stressed concrete.
77	IS 277	Galvanized steel sheets (plain and corrugated)
78	IS 2002	Steel plates for pressure vessels for intermediate and high temperature service including boilers (other than plates of thickness more than 80 mm and weight more than 12 tonne in

연번	BIS 인증	품목
		ultrasonic tested condition; and plates of thickness less than 16 mm but width more than 4000 mm)
79	IS 2041	Steel plates for pressure vessels used at moderate and low temperature (other than plates of thickness more than 80 mm and weight more than 12 tonne in ultrasonic Tested condition; and plates of thickness less than 16 mm but width more than 4000 mm)
80	IS 2830	Carbon steel cast billet ingots, billets, blooms and slabs for re-rolling into steel for general structural purpose
81	IS 1786	High strength deformed steel bars and wires for concrete reinforcement
82	IS 648	Cold rolled non oriented electrical steel sheets and strip-fully processed type (CRNO)
83	IS 15391	Cold rolled non oriented electrical steel sheet and strip semi-processed type (CRNO)
84	IS 2062	Hot rolled medium and high tensile structural steel (excluding bars and rods of diameter or thickness less than 6 mm and structurals below 50 mm X 50 mm X 6 mm), other than flat rolled products (sheets/strips/ coils) less than 6 mm thickness; flat bars and rounds/squares/hexagons/octagon bars; plates of thickness more than 80 mm and weight more than 12 tonne in ultrasonic tested condition; and plates of thickness less than 16 mm but width more than 4000 mm
85	IS 8329	Centrifugally cast (Spun) Ductile Iron Pressure pipes for Water, Gas and Sewage
86	IS 9523	Ductile Iron Fittings for Pressure Pipes for Water, Gas and Sewage
87	IS 15627	Automotive Vehicles- Pneumatic Tyres for two and three-wheeled motor vehicles- Specification
88	IS 15633	Automotive Vehicles- Pneumatic Tyres for passenger car vehicles – Diagonal and radial ply- Specification
89	IS 15636	Automotive Vehicles- Pneumatic Tyres for commercial vehicles- Diagonal and radial ply- Specification
90	IS 13098	Automotive Vehicles- Tubes for Pneumatic Tyres
91	IS 616	Audio, Video and Similar Electronic Apparatus – Safety Requirements
92	IS 13252	Information Technology Equipment – Safety – General Requirements
93	IS 616	Audio, Video and Similar Electronic Apparatus – Safety Requirements
94	IS 616	Audio, Video and Similar Electronic Apparatus – Safety Requirements
95	IS 302-2-25	Safety of household and similar electrical appliances: Part 2 Particular requirements: Section 25 Microwave ovens

연번	BIS 인증	품목
96	IS 13252	Information Technology Equipment – Safety – General Requirements
97	IS 13252	Information Technology Equipment – Safety – General Requirements
98	IS 13252	Information Technology Equipment – Safety – General Requirements
99	IS 13252	Information Technology Equipment – Safety – General Requirements
100	IS 13252	Information Technology Equipment – Safety – General Requirements
101	IS 616	Audio, Video and Similar Electronic Apparatus – Safety Requirements
102	IS 616	Audio, Video and Similar Electronic Apparatus – Safety Requirements
103	IS 302-2-26	Safety of household and similar electrical appliances: Part 2 Particular requirements: Section 26 Clocks
104	IS 13252	Information Technology Equipment – Safety – General Requirements
105	IS 13252	Information Technology Equipment – Safety – General Requirements

자료: 인도표준국 BIS(Bureau of Indian Standards)

7. 지식재산권

가. 저작권(Copyrights)

저작권법은 1957년에 제정되어 최근 2012년도에 개정되었으며 예술 작품, 문학 작품, 영화, 비디오 게임, DVD 타이틀, S/W, 조각, 음악 작품, 미술 작품, 사진 작품 등이 보호 대상이다.

저작권법 위반 시에는 6개월에서 3년까지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5만 루피(약 90만원, 2013년 9월 기준 1루피=16.92원)에서 20만 루피(약 338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저작권법의 유효기간은 서적의 경우 저자 사후(死後) 60년까지이며 그 밖에 작품에 대해서는 첫 번째 출판(혹은 출시) 이후 60년까지다.

지적재산의 발달로 저작권과 관련된 S/W의 불법 복제가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데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연합(BSA, the Business Software Alliance)이 2012년 3월 발표한 "2011 Global Software Piracy Study"에 따르면, 인도의 2011년 S/W 불법 복제율은 전년대비 1% 하락한 63%를 기록하였다. 이는 2006년 기록했던 71%보다 7% 하락한 수치이나 여전히 전세계 S/W 불법 복제율인 42%(2011년)보다 현저히 높으며 인도는 불법 복제로 인해 2011년 29억 달러에 달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된다.

S/W 불법 복제의 가장 큰 피해 대상은 Microsoft, Adobe, Autodesk, Macromedia, Oracle과 같은 주요 S/W 대기업들이며 대표적 예로 Microsoft사의 Windows7의 경우 공식 제품이 버전에 따라 최소 4,500루피에서 최대 12,000루피에 판매되고 있는 반면 불법 복제물의 경우 단 200루피면 구입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Microsoft 등 주요 기업이나 NASSCOM(인도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기업 협회), BSA (Business Software Association) 같은 기관들은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의 유해성에 대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다.

저작권 등록은 뉴델리에 위치한 인도저작권청(Copyright Office in New Delhi Registration)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등록비용은 무료이다. 저작권 등록이 의무사항은 아니나 저작권 침해 발생시 법적 권리 주장 및 저작권 보호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저작권 등록을 하는 것이 좋다. 보다 자세한 관련 정보는 copyright.gov.in을 참고하면 된다.

나. 상표권(Trademark)

기존의 상표법을 대체하는 1999년에 제정된 'New Trademarks Act'는 2002년에 개정되었으며 보호 대상으로는 브랜드 이름, 로고, 디자인 등이 포함된다.
새 상표법을 통해 상표는 상품과 서비스에 공히 적용되며, 상품의 모양, 포장 방법, 색상 조합 등도 상표의 범주로 간주된다.

상표 등록을 위해서는 상표가 특유성을 가져야 하며, 법에 위배되거나 기만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지 않아야 한다. 등록된 상표의 최초 사용자가 상표 사용의 독점권을 부여 받으며 상표의 유효기간은 등록 후 10년까지이나 갱신하게 되면 추가로 10년의 유효 기간이 더 부여된다.

상표법 위반 시에는 6개월에서 3년까지의 징역 및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상표 등록은 아마다바드에 위치한 상표 등록국(Trade Marks Registry) 또는 델리, 뭄바이, 첸나이, 콜카타에 위치한 지점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상표권 변리사가 상표 소유권자를 대신해 상표등록을 접수해야 한다. 등록비용은 신청 및 의의제기 시 드는 비용은 2,500루피이며 상표등록 갱신의 경우 수수료는 5,000루피 이다. 보다 자세한 관련 정보는 www.ipindia.nic.in을 참고하면 된다.

인도지점별 상표 등록국 주소(Trade Marks Registry)

아마다바드	Government of India, IP Bhawan, Trade Marks Registry, near Chankyapuri overbridge, Besides AMC City Civic Centre, GHATLODIA, AHMEDABAD-380061.
뭄바이	Boudhik Sampada Bhawan, Antop Hill, S. M. Road, Mumbail - 400 037.
뉴델리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Building, Plot No. 32, Sector 14, Dwarka, New Delhi-110075
첸나이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Building, G.S.T. Road, Guindy, Chennai-600032
콜카타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Building, CP-2 Sector V, Salt Lake City, Kolkata-700091

자료: www.ipindia.nic.in

다. 디자인 관련 권리

디자인 법은 2000년에 제정되었으며 2008년 개정된 법률이 현재 적용되는데, 보석류 등을 포함한 산업 디자인에 주로 적용된다. 등록된 디자인의 유효기간은 등록 후 10년까지이며, 갱신하게 되면 추가로 5년의 유효 기간이 부여된다. 등록 비용은 최초 신청 시에 1,000루피이며 갱신을 원할 경우 2,000루피를 추가 지불하면 된다. 디자인 등록은 디자인 국에서 진행되며 관련 정보는 www.ipindia.nic.in을 참고하면 된다.

라. 특허권(Patent)

특허법은 1970년에 제정, 2005년에 최종 개정되었으며 새로운 발명품이나 발명품의 제조를 위한 절차를 보호한다. 특허권의 유형으로는 일반특허권(ordinary patents), 우선특허권(priority patents), 부가특허권(patents of addition)이 있으며 유효기간은 일반특허권의 경우 등록 후 20년까지, 부가특허권의 경우 이미 등록되어 있는 기존 특허권의 유효기간에 귀속된다.

2005년 특허권법 개정 이후 제조 및 제품 특허권은 화학제품, 음식, 약물 등 대부분의 영역에서 인정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특허권 등록이 불가능한 상품은 다음과 같다.

- ○ 원자력개발, 공공 질서에 반대되거나 인간과 동물의 건강, 환경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발명의 경우
- ○ 학리(mere discovery of scientific principle)의 단순발견, 추상적 이론의 공식화(formulation of an abstract theory), 생명체 또는 비생명체의 발견의 경우
- ○ 문예, 극, 음악 등 예술 작품과 영상저작물 등 미학적 창작물의 경우

특허권 등록비용은 기업의 경우 최초 30페이지까지는 4,000루피이나 이를 초과할 경우 1장당 400루피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특허권 심사 요청 비용은 10,000루피이며 기타 서비스이용(의무라이선스의 획득 및 종료 신청, 특허의 복구 및 철회 등)을 위한 비용은 6,000루피다.

특허권이 3년 이내에 충분히 실시되지 못할 시에는 강제 실시권(Compulsory licensing)을 행사할 수 있다. 강제 실시권은 특허로 등록된 음식, 의약품, 살충제, 살균제 등의 품목에 대하여 항시 신청이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라 특허권이 폐지될 수 있다.

- ○ 특허발명에 대한 공공의 합리적 요구가 충족되지 않은 경우
- ○ 특허발명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공에게 이용되지 못 하는 경우

특허법 위반 시에는 6개월에서 3년까지의 징역 및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허등록은 뭄바이에 위치한 특허청이나 뉴델리, 콜카타, 첸나이에 위치한 지점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www.ipindia.nic.in을 참고하면 된다.

인도지점별 특허청 주소

뭄바이	Controller General of Patents, Designs & Trade Marks Bhoudhik Sampada Bhavan, Antop Hill, S.M. Road, Mumbai-400037,
뉴델리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Building, Plot No. 32, Sector 14, Dwarka, New Delhi-110075
첸나이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Building, G.S.T. Road, Guindy, Chennai-600032
콜카타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Building, CP-2 Sector V, Salt Lake City, Kolkata-700091

자료: www.ipindia.nic.in

8. 통관절차 및 운송

가. 통관

인도의 통관 절차는 일반 선진국의 관행을 따르고 있어, 이 절차를 준수할 경우 큰 문제는 없다. 다만 2001년 3월부터 모든 섬유 제품 및 섬유 부속물을 수입· 통관할 경우 수출국 정부 공인 기관의 무해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2004년 11월부터 모든 목재 포장재에 대해서는 '식물 위생 검역서'를 요구하고 있다. 그 외에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위생· 안전 등의 이유로 BIS(BISBUREAU OF INDIAN STANDARDS)등 공인기관의 인증/증빙 서류를 요구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 BIS 홈페이지: www.bis.org.in

인도는 통관 인프라의 부족, 관료주의 등으로 통관 절차가 필요 이상 복잡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으나, 최근 정부가 통관 제도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서류 및 절차를 간소화해 가는 추세다.

일반적인 통관 절차 및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필요 서류

○ 신용장 개설 시 은행 제출 서류
- 수출입 허가 번호: IEC No. (Importer-Exporter Code No.)
- 구매 오더: Purchase order
- 송장: Invoice
- 공급 업체 이름: Suppliers name
- 공급자 거래 은행 명: Name of Suppliers Banker
- 인증서가 필요한 경우: 해당 인증서

○ 수입화물의 통관
- 공급업자가 바이어에게 보낼 서류
- 선하 증권(B/L 또는 Air-way Bill No.)
- 송장 사본(Invoice copy)
- 물품 명세서(Packing list)
- 보험 증권(Insurance policy)

○ 바이어가 통관 시 준비 서류
- 수입 코드 번호: Importers code no.
- 수입 신고: Import Declaration along with Bill of Entry
- GATT Declaration (일반적인 건의 경우 불필요, 택배(DHL 등) 이용 시, 제출하여야 함)
- 인증서가 필요한 경우: 인증서

2) 통관 절차

○ 모든 서류를 세관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 담당자는 Bill of Entry, 세관 창고 측의 Manifest copy 와 비교 확인
○ 컴퓨터에 입력하고 computer code no. 부여
○ 관세 평가: 모든 서류는 관세평가 담당관에게 넘겨져 적정 관세 등 평가
○ 관세율 등이 확정된 후 컴퓨터에 입력
○ 검사: 관련 서류 및 관세 등을 재점검
○ 모든 서류를 副관세관(Assistant Collector)이 확인 후 추가 서명
○ 관세 Challan 넘버 부여
○ 관세 납부 카운터: 관세를 납부하면 세관은 통관신고서(bill of entry) 사본을 1장 떼어 내고 물품 수령증을 발급

인도에서 일반적인 경우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은 해상 운송 수입은 약 3~4일(FCL), 5~7일(LCL), 항공 운송은 약 2~3 근무일이 소요된다. 일반 품목이 아닌 경우(SEZ, EPC물품 등)는 1~2일이 추가 소요되며 중고 기계류인 경우는 10일 이상 소요된다. CFS 및 Airport는 일반적으로 화물이 CFS 및 Airport 도착 후 3일 이후부터는 체화료 (demmurage charge)를 부과한다. (해상 및 항공 동일함)

통관시스템을 현대화하고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아직도 인도는 통관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통관 에이전트와 세관 공무원 간의 관계가 관세액 및 통관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유능한 통관 에이전트를 이용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이다. 즉, 바이어에게 수출을 하는 경우이건, 현지 상사에 대한 수출이건 통관 업무는 현지 통관사(Customs Clearing Agent)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최근 들어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원활한 통관을 위해서 세관에 뇌물을 제공하는 경우가 흔하며 사소한 서류 기재 오류 등을 이유로 통관이 장기간 지연되는 일이 다반사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인도 행정은 전반적으로 불투명하고 실무선의 재량권이 큰 편이며, 통관 역시 지나치게 융통성 없는 처리 관행으로 인해 기업들의 주요 애로사항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송장(Invoice)상의 가격과소평가(Under Value)를 문제 삼아 직권으로 상품 가치를 정하고 높은 관세를 매긴다거나 관세 혜택이 주어지는 상품의 경우 증빙이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통관을 거부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다. 그밖에 투자기업의 국내 모기업 제품 조달과 관련해서 이전가격의 조정을 이용한 법인세 과소 납부를 방지하기 위해 이전가격과 관련된 각종 증빙을 수시 및 임의적으로 세관에서 요구하는 등 통관에 많은 애로가 있다.

3) 식품 통관 시 주요 절차 및 규정내용

□ 세관에서의 상품 운송 상태 확인

기본적인 개별상품당 요구된 적재량이 충족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이며, 상품의 손상이나 오염을 유발하지는 않는다.

□ 상품의 손상가능성 확인을 위한 외관 검사

외관상 상품이 부풀거나 불룩하게 튀어나왔는지 여부와 설치류나 벌레 또는 오물, 먼지 등에 의한 오염 여부를 확인한다.

□ 라벨 규정 준수여부 확인

Prevention of Food Adulteration Rules and the Packaged Commodities Rules에 따른 라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라벨이 영어로도 표기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포함된다.

□ 기타 필수 규정

내림차순으로 나열된 원재료명, 제조날짜, 배치번호, 유통기한 등과 모든 상품의 겉포장에는 유통기한과 관련된 세부사항이 적혀 있어야 한다. 유통기한과 수입일자 사이의 기간이 제조일자로부터 유통기한까지 기간의 최소 60%가 남아있어야 한다.

나. 운송

인도는 국토가 광활하여 항공편 및 항만이 전국에 산재해 있다. 항공운송은 뉴델리, 뭄바이 (구 Bombay), 콜카타(구 캘커타), 첸나이(구 마드라스) 등 4대 거점도시는 물론이고 아메다바드(구자라트 주도), 방갈로르(중남부 카르나타카 주도) 등 주요 대도시에 국제공항이 위치하고 있다.

델리와 뭄바이의 경우 미주, 유럽, 중동, 아시아 각국과 직항편이 매일 운행되고 있으며, 한국과 직항은 아시아나 항공이 델리-서울 주3회 운행하고 있고, 대한항공은 뭄바이-서울 주3회 운항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항공사가 밤 늦은 시간에 도착한다는 불편한 점이 있다.

이외에 외국항공사 항공편정보는 다음과 같다

항공사별 운행구간 및 운항횟수

항공사	운행 구간	운항 횟수
에어인디아	뭄바이-델리-홍콩-서울	주 4회
타이항공	델리-방콕-서울	주12회
	뭄바이-방콕-서울	주7회
	첸나이-방콕-서울	주7회
싱가포르항공	뭄바이-상가폴-서울	주 14회
	첸나이-싱가폴-서울	주 10회
말레이시아항공	뉴델리-쿠알라룸푸-서울	주 14회
	첸나이-쿠알라룸푸-서울	주 14회
	뭄바이-쿠알라룸푸-서울	주 12회

자료: 항공사 홈페이지

인도의 공항시설은 매우 낙후되어 있었으나, 뉴델리 공항은 2010년 커먼웰스 게임을 대비해 국제입찰을 통해 공항시설 현대화 공사를 추진했으며, 현재는 인도4대도시인 델리, 뭄바이, 방갈로르, 첸나이는 현대적인 국제공항 시설을 완비했다.

인도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해안선이 길어 서해안의 칸들라, 뭄바이, 모르무가오, 뉴망갈로르, 투티코린, 코친과 동해안의 첸나이, 비사카, 파트 남, 파라디프, 할디아, 콜카 타 등 많은 항구가 산재해 있다. 가장 대표적인 항구는 뭄바이와 첸나이며, 우리나라 화물 대부분이 이들 두 항구를 이용하고 있다. 특히 뭄바이 항은 제1항구로 무역 화물 물동량의 60% 이상을 소화하고 있으나 항구시설의 노후로 화물의 적체가 심각하여 장비 현대화는 물론 추가 항구개발이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에서 델리까지의 운송은 주로 뭄바이를 이용해서 하게 되는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20피트 컨테이너 기준 해상운송 비용이 약 800달러, 육상운송(IHC) 비용이 약 800~1,000 달러, Port Charge(THC 등)가 약 400~500달러 가량이다.

○ 항구 사용료 관련 내용: http://mumbaiport.gov.in/

뭄바이에서 델리까지의 육상운송은 철도를 이용하게 되며 따라서 육상 운송비는 다른 항구에 비해 싼 편이다. 예를 들어 캘커타를 이용하게 되면 철도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해상 운송비는 비슷하나 육송 운송비는 훨씬 비싸지게 된다. 인도는 육상 운송여건이 열악 하여 한국에서의 해상운송 비용보다 인도 내 육상운송비용이 비슷하거나 더 비싸지게 된다. 한편 통관을 위해서는 통관 에이전트를 사용하게 되는데 수수료는 화물가치의 0.5~2% 가량이 보편적이다.

○ 철도 사용료 관련 내용: www.fois.indianrail.gov.in, www.indianrailways.gov.in

운송 기간은 한국에서 뭄바이까지 약 17~18 일 정도, 그리고 뭄바이에서 델리까지 3~4 일 정도 소요된다.

9. 수출유망품목

가. 자동차 부품

IBEF보고서에 따르면 자동차 사업은 인도의 대표적 성장산업으로 자동차(승용차, 상용차, 이륜차, 삼륜차를 종합) 판매량은 2007년 1100만대에서 2013년 2070만대로 두 배 가까이 성장했고 수출량은 2005년 약 70만 대에서 2013년 약 290만 대로 세 배 가까이 증가했다. 자동차 시장은 연평균 19.1%의 성장률을 보여 지속적인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그 중 이륜차 수출량은 200만 대를 기록해, 인도자동차 산업품목 중에서 주력으로 꼽히고 있다.

인도의 중산층 및 실질 소득증가로 인한 구매가능 계층의 확대, 도로망 개선, 대중교통수단 미비, 다양한 지불방식의 도입 등으로 승용차, 상용차, 이륜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소형승용차에 대한 구매욕구 확대를 비롯해 기존 소형차 보유자의 소득 증가로 중·대형차 대체 구매가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인도 전역에 걸친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추진에 따라 도로 건설용 트럭 및 중·대형 상용차 시장의 호황이 예상되고 있어 관련 부품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여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2012년~2013년 2년 간의 극심한 부진을 겪은 인도 자동차 시장은 2월 소비세 인하 조치에 가격 인하를 통해 판매 회복을 꾀했지만, 여전히 높은 이자율과 연료비, 루피화 가치 하락, 총선 전까지 결정을 미루는 소비심리 등이 맞물려 최근까지도 미약한 회복세를 기록하는 것에 그쳤으나, 최근 신정부에 대한 기대감과 투자심리 및 소비심리가 회복되는 경향과 함께 5월 인도 자동차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8%-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 기간 동안 인도 주요 자동차 판매기업들은 새로운 자동차 모델을 선보여 높은 판매고를 기록하였고, 인도 내 현지 이전 진출과 자동차 기업들의 제조 시설 대규모 증설 추진 등으로 인해 파생되는 향후 자동차 부품 산업의 전망은 긍정적이다. IBEF에 따르면 인도는 2016년까지 세계 3위 자동차 시장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고 세계점유율의 5%가량을 차지할 것이라고 나타나며 2020년까지 세계 4위 자동차 생산국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인도자동차제조협회(SIAM)에 의하면, 이러한 자동차 시장의 증가 추세에 힘입어 자동차 부품 시장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연 8.9%의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왔으며 2020년까지 14%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로 인해 2012-13회계연도의 약 406억 달러 규모에서 2015년 663억, 2021년에는 3배에 달하는 1,15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3년에는 전년 대비 17.7% 성장한 순 매출 424억 달러, 수출 93억 달러를 기록했다.

동 부문에 대한 투자는 2006회계연도기준 6.6억달러에서 매년 28.4%성장을기록해 2011년 23억 달러에 이르렀으나 2012년은 글로벌 경기 침체 여파로 18억 달러를 기록했다.

인도 자동차 부품 산업관련 업체들은 대부분 소규모 또는 영세업체로 중·대기업의 약 9배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전체 생산량의 약 85%를 중·대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자동차 부품 산업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는 엔진 관련 부품으로 전체 부품 시장의 약 3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뒤를 이어 트랜스미션, 조종 장치, 차체 등의 순으로 이어진다. 인도 자동차 부품 시장은 핵심부품에 대한 기술력 부족으로 해외 부품 수입 비중이 높은 상황이며, 인도 현지의 자동차 부품 생산 기업들도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부족한 인프라와 낮은 R&D 투자, 아직까지 극심한 가격 경쟁으로 인한 품질 저하 등의 문제로 인해 외국 기업들에 고전하고 있는 등 앞으로도 해외 자동차 부품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해외 기업들에게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도로포장 미비 및 노후화, 고온 다습한 기후, 저급연료 사용 등에 따라 부품 수명이 짧고 고장이 잦아 자동차부품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품질경쟁력이 우수한 한국기업들의 선전이 기대되는 품목이다.

특히 중대형 차량의 경우 아직도 인도 내 조달 비율이 매우 낮은 편이며, 현지 조달보다는 핵심 부품의 해외 조달을 통해 현지에서의 조립 생산 형태로의 작업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인도 자동차 부품 대기업의 시장 점유율은 43%이며 외국 기업이 15%, 나머지 42%는 현지 소규모 영세업체인 것으로 파악된다.

나. 통신/IT 산업

인도의 통신산업은 지난 10년간 인도 내 가장 빠르게 성장세를 보인 산업으로 여전히 꾸준한 성장을 기록 중이며 12억 명에 달하는 방대한 인구규모와 중산층의 구매력 향상, 가전제품 수요 증가 등이 주요 성장원인으로 분석된다.

글로벌 이동통신 장비 공급업체 Ericsson에 따르면, 중국 (1천9백만명), 인도네시아(7백만명) 등을 누르고 인도(2천8백만명)가 2014년 1분기 신규 휴대폰 가입자 수 전세계 1위를 기록하였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전체 신규가입자인 1억2천만명의 23%에 해당하는 수치다. 또한 영국의 통신회사 보다폰은 몇 년 내 인도에서의 수익이 영국에서의 수익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인도 핸드폰 시장은 중국 다음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그 중 스마트폰의 판매 증가세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리서치 업체 IDC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1620만 대가 판매됐던 스마트폰은 2013년 4400만 대 판매를 기록했고 특히 2013년 중 10-12월 3개월 동안 1400-1500만 대가 판매돼 전년동기대비 181% 성장한 수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피쳐폰은 전년대비 1100만대 증가한 총 판매량 2억 1200만 대를 기록했다.

동시에 IDC는 2017년에는 인도가 중국과 미국의 뒤를 이어 전 세계에서 3번째로 큰 스마트폰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했고, 실제로 스마트폰 보급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각종 전화부품과 애플리케이션 등 관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추세다.

글로벌 투자금융 기업 모건 스탠리가 발표한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 모바일 인터넷 사용자 수는 2013년 9월 기준 2억 1,000만 명에 그쳤으나, 매년 25% 성장률을 보이며 2016년 3억 3,000만명을 넘어서 2018년 5억 1,900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IT시장은 전반적인 IT분야에 대한 지출감소로 많은 IT기업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인 반면 기술적 부문에 있어서는 오히려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은 인터넷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인도는 지난 2년 간 사이버 위협이 증가하면서 인도 내 몇몇 기업들은 기술 보안(tech security)에 대한 투자를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35%까지 늘리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

IT 분야 리서치 기업인 Gartner에 의하면 인도 내 보안 인프라, 서비스 시장이 올해 9억 8,900만 달러에서 2017년 14억 달러로 증가할 것이라고 언급했으며 전자상거래, 금융, 통신과 같이 인터넷 의존성이 높은 산업, 그리고 주요 정보를 다수 보관하고 있는 정부. 특히, 컴퓨터를 통한 자동화로 인해 IT 보안 관련 투자가 매년 5% 정도씩 증가하고 있다.

또한 도시 인프라에 I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시티가 주목 받고 있는데, 스마트 시티는 첨단 IT기술을 기반으로 각종 도시 데이터를 수집, 분석,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모델로서, 교통, 건물, 사회기반시설, IT 통제소 등의 IT 투자 기회가 창출되고 있다.

현재 건설 진행 중인 스마트 시티로는 코치(Kochi) 스마트 시티, 구자라트 주, 국제 금융 기술 도시(Gujarat International Finance Tec-City), 나비-뭄바이 와이파이(Wi-fi) 시티, 난데드-와갈라(Nanded-Waghala) 스마트시티 등이 있으며 특히, 모디 총리의 주요 공략 중 하나가 '100개 스마트 시티 건설'로, 향후 관련 프로젝트는 인도 전역에서 진행될 전망이다.

다. 기계류

인도의 산업화가 본격 추진됨에 따라 산업 기계류, 일반 기계류, 섬유 기계류 및 관련 부품, 건설 기계 등 기계류 수출이 유망하다. 특히 이 중에서도 인도 섬유산업은 인도의 주요 성장 산업 중 하나로 인도 전체 공업 생산의 약 14%에 달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섬유기계 산업의 성장이 기대된다.

인도는 섬유기계 수요의 45%를 국내 제품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타밀나두주와 구자라트주에서 약 84%에 달하는 기계와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인도 섬유기계 생산 업체들의 기술 부족으로 인해 고기술을 요하는 기계와 최신 의복 생산 기계, 편물 기계는 상당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같이 높은 기술을 필요로 하는 고성능 제품의 경우 현지 생산율이 매우 낮은 편으로 현지 조달보다는 핵심 부품의 해외 조달을 통해 조립 생산 형태로의 작업이 많이 이루어지는 등 전반적으로 수출보다 수입량이 많은 인도 기계시장의 상황과 앞으로 인도 정부의 꾸준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 및 지원, 건축, 산업, 일반, 섬유 등과 같은 산업의 급속한 성장에 따른 고기술 제품에 대한 꾸준한 수요 증가 등 기계류 시장에 대한 진출 기회 및 발전 가능성이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라. 의료장비

IBEF(India Brand Equity Foundation) 의료산업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인도 의료시장 규모는 684억 달러로 추산했으며, 인도 의료 시장이 2013년부터 매년 15% 이상의 고성장을 거듭하여 2017년 1500억 달러, 2020년까지 28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추정했다.

인도인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및 인도 정부의 의료에 대한 투자 확대 및 적극적인 지원을 통한 의료 보급의 증가로 인도 국민들에게 의료 혜택의 기회가 점차 넓어지는 등 관련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상당히 클 것이며, 선진국들과 비교하였을 때 상당히 저렴하고 간편하게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한 의료관광도 급속하고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의 인도 의료 산업은 상당히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현지 제조업체들의 기술력 부족으로 인해 대부분의 고가 의료기기 제품들을 해외에서 수입해 오고 있어 의료비가 덩달아 함께 올라가고, 의료보험의 수준과 보급률도 높지 않아 의료비를 저소득층에서 감당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편이다. 여기에 더해 의료 혜택은 주로 중산층과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농촌과 저소득층은 의료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는 불균형적인 의료혜택의 구조가 높은 상황이다.

인도 의료부문의 비중은 전체 GDP 대비 4.10%로 국제 평균인 9.70%보다 크게 낮은 수치를 기록해 의료 보급 및 수준이 낮고 의료 장비 생산에 대한 기술력이 약해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점 등으로 인한 해외 기업들의 진출 기회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의료관광은 2006년 4억5000만 달러(약 4798억 원)에서 2013년 20억 달러(약 2조1324억 원)로 성장하며 지난 10년 간 연평균 성장률 30%를 기록했다. 또한 지난 2013년에는 의료관광객만 170만 명을 유치하는 성과를 올렸다.

인도 의료관광은 경비를 포함해 미국보다 33-50%의 비용절감 효과를 보이며, 뉴욕 보건국에 의하면 심장혈관우회수술(Cardiac Bypass)의 성공률은 인도가 98.7%로 미국(97.5%)을 상회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인도는 영어를 상용어로 사용하고 있어 의사와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기에 이질감을 완화할 수 있고 수술을 받기 위해 수개월 이상의 대기시간이 소요되는 선진국에 비해 인도에서는 동일한 수술을 대기시간 없이 바로 수술 가능하다는 점도 큰 매력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와 같은 장점으로 인한 인도 의료 관광의 성장으로 인도 의료 산업도 긍정적인 효과를 입고 있다.

마. 인프라 부문 장비

인도 정부는 제12차 경제개발계획에 GDP의 약 9.56%수준인 55.7조 루피(약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 수립을 통해 인프라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도 전체가 공사판이라고 불릴 정도로 전력, 도로, 철도, 항구, 공항 등 인프라 전반에 걸친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인프라 중 전기, 교통기반시설, 통신분야 등의 산업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도시의 경우, 최근 10년간 인도 도시인구 증가율이 31% 이상의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으며 인도 정부는 도시 인구가 2026년에는 전체 인구 대비 38.2%(5억 3500만 명), 2050년에는 50%까지 도시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는 도시 인구로 인해 인도 도시개발부에서는 '자와할랄 네루 국가 도시 재개발 미션' 계획을 수립하여 63개의 개발 도시를 선정하고 교통과 상하수도 등 기본 인프라 확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인도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로 전력과 더불어 최대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는 교통인프라 부족을 타개하기 위해 주정부가 주도하는 대도시 지하철 레일 설치비용의 30% 및 구상단계 프로젝트 금융 지원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인구 200만 명 이상 대도시 대중교통 통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등 매년 약 40% 이상의 교통 인프라 예산 증액에도 불구하고 주정부 차원에서의 부진한 실행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진행되고 있다.

인프라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는데, 인도 정부는 건설 및 주택 프로젝트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직접투자 규제 완화를 발표했으며 매일 2000만 명 이상의 인구와 280톤 이상의 화물이 운송되고 7500개의 역과 6만5000km 운송 구간을 가진 세계 최대 규모의 철도 네트워크를 보유하였으나 낮은 수준의 철도 시스템, 낙후된 철도 등으로 인해 손실이 늘어나는 등 자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도 철도산업의 활기와 장기 발전을 위해 철도화물분야 외국인직접투자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잠재력이 높은 인도의 건설 및 주택 프로젝트와 철도 산업에 여러 기업들이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으며 체코 최대의 철도 부품 제조기업인 Bonatrans가 인도 내 철도 산업 진출계획을 발표하는 등 외국기업들의 진출도 활발히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다.

바. 신재생 에너지 장비 및 부분품

약 12억이 넘는 인구와 빠른 도시화 및 산업화의 진행으로 세계 5위의 에너지 소비국으로 부상한 인도의 주요 전력 생산 시설은 화력 발전소이나 석탄 공급 부족과 원유가 상승 등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에너지 확보가 인도 정부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부상하며 급속하게 증가하는 에너지 소비량에 대응하기 위해 신재생 에너지 개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인도 신재생 및 에너지 효율 분야는 인도의 전체 녹색산업의 약 51%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태양력, 풍력, 수력, 스마트 그리드 등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인도는 최근 5년 동안 신재생 에너지 분야 투자 성장률 세계 5위,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비 8위를 기록하는 등 신재생 에너지 분야가 각광을 받고 있으며 친환경 장비 산업 역시 매년 10~12%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신정부를 이끄는 모디 총리는 구자라트 주총리 재임시절, 국가 전체의 태양광 에너지 동력 용량의 1/3 이상인 900MW를 구자라트주 내에서 생산했고 결과적으로 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최근에는 풍력 발전소까지 건설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새 정부가 태양광 에너지 분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란 전문가들의 기대가 나오고 있으며, 인도는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려 재생에너지 부문 30GW 규모의 추가 전력을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현재 인도의 신재생에너지 시장은 5억달러 규모에 달하며, 매년 18.4% 가량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다.

인도는 12차 경제개발계획기간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량을 29.8GW로 설정했으며, 2017년까지 55GW로 확대할 계획이다. 어니스트앤영 보고서에 의하면, 인도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기업들을 대상으로 전체 전력 가운데 15%를 신재생에너지원으로부터 조달하도록 강제할 계획을 세우는 등 정부 차원의 정책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10. 시장특성

가. 시장 규모가 광활한 시장

□ 인구 규모

인도의 인구는 2011년 4월 1일 보도된 3월 31일 인도정부가 발표한 1차 Census 2011 결과에 따르면, 12억 1천만 명이다. 이 같은 수치는 미국, 인도네시아, 브라질,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및 일본 인구를 합한 규모로 인도는 전세계 인구 중 중국(19.4%)에 이어 17.5%로 2위를 기록하였다.

CIA(Central intelligence Agency)에서 발표한 World Fact Book 2013에 의하면, 2013년 인도의 인구수는 약 12억 2천만 명 정도인 것으로 추산되며 인구 증가율은 1.18%로 인구수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중국(13억 5천만 명)의 0.46%를 훨씬 능가하며 인도가 중국을 매섭게 추격하고 있다. 인도의 인구수는 2030년까지 15억 3천만 명을 기록하며 중국 인구를 추월할 것으로 전망된다.

1960년대 후반, 인도 정부는 인구의 급속한 증가가 곧 경제력의 상승을 가져올 것이라고 판단하고 출산을 적극 권장하였으나 1970년대부터 급속한 인구 증가 상황을 조절하기 위해 고전 중이다. 1970년대 인디라 간디 정부는 불임 프로그램의 도입으로 인구 조절을 꾀하였으나 시행 과정에서 인권유린 등을 이유로 국민들의 강한 반발과 부작용으로 실패하였다.

크고 복잡한 사회구조를 가지고 있는 인도는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경우 다양한 각 단체 및 개인들의 이해관계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즉각적인 반발과 저항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인도 정부에서도 관련 문제에 대해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인도 정부는 지난번 실패 경험을 바탕으로 '가족계획 프로그램'을 '전국적인 인구조절 프로그램'으로 바꾸고 다방면에서 각 단체와 개인의 반발을 사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시간을 두고 접근하고 더 나은 방안을 모색하는 중이다.

2001년-2011년 기간 인구증가율은 17.64%를 기록해 1991년-2001년 기간 인구증가율 21.15%보다 낮았으며, 1921년도의 1차 조사를 제외하면 2001년까지 인구증가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2001년-2011년 기간에 처음 꺾인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인도 경제 전문가들은 인도 인구증가율 감소가 복지예산 감축, 생활수준 향상 등으로 이어져 인도경제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동 발표내용 기타사항으로는 7세 이상 인구 중 식자율 74% (2001년 의 64% 대비 10% 상승), 남성 식자율 82.14%, 여성 식자율 65.46%, 아동성비는 남자 1,000명당 여자 914명으로 독립 이후 최저비율을 기록했으며 델리가 1만1,297명/㎢로 최고 인구밀집도시로 조사됐고, 우타르프라데쉬주가 인구 1억9,900만 명으로 인구가 가장 많은 주로 조사되었다.

CIA World Fact Book에서 최근 발표한 2013년 기준 연령별 인구 비율은 15~64세의 인구가 전체의 65.5%, 65세 이상은 5.7%, 15세 이하의 연소자 인구 비율은 28.9%, 특히 35세 이하 인구가 인도 총 인구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보다는 제조업 부문의 노동력이 적은 편이나 저 연령층이 두터운 편이기에 2025년 경에는 경제 활동 인구가 중국과 비슷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그 이후에는 인도가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인도가 노동 집약적 제조업을 육성하는 데 장기적으로 중국보다 더 큰 잠재력이 있음을 뜻한다.

□ 국토 규모

인도의 국토 면적은 3,287Km^2로 세계에서 7번째로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남한의 약 33배에 해당한다. 남북으로는 3,214km, 동서로는 2,933km이며 총 해안선의 길이는 7,516km이고 서북으로는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북으로는 중국, 네팔, 부탄, 동으로는 미얀마, 방글라데시, 남으로는 스리랑카와 접경하고 있어 서남 아시아의 대표 시장으로 볼 수 있다.

나. 내수 소비의 폭발적 성장이 기대되는 시장

□ 구매력 증가

World Bank의 구매력평가(PPP) 기준 GDP에서 인도는 2012년 기준 6조 3,500억 달러를 달성하면서, 종전 세계 3위를 차지하고 있던 일본(4조 5천4백억 달러)을 제치고 3위에 등극했다. World Bank는 인도를 대표적인 가격 경쟁 시장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최근 인도는 국제 금융 자산의 유입과 부동산 및 증시 상승으로 인해 상당한 부를 축적했고, IT 서비스의 수출로도 역시 막대한 자본을 끌어들이고 있다.

□ 인도의 경제 계층 변화 전망

인도 매거진 비즈니스 월드에서는 2013년 12월, 인도의 중산층이 약 2억 5,000만 명에 달한다고 발표하였으며, 맥킨지(Mckinsey&Company)사는 2025년까지 중류층 이상의 비율이 현재의 5%에서 41%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맥킨지사에 의하면 하류층의 비율은 2025년까지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이며, 중류층 이상 (중류층, 중상류층, 상류층)의 인구 수는 5억 8천3백만 명으로 그 비율이 41%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류층은 2010년 이후 급성장세를 거듭하여 2025년경에는 인도 사회가 기존 중·하류층 및 하류층 위주에서 중산층 위주의 사회로 변모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계층 인구 피라미드 역시 피라미드 유형에서 점차 방추형으로 변할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몇 년 간 인도의 신흥 부유층 인구의 증가가 두드러졌으며, 이들의 소비 규모가 점차 늘어나고, 소비 행태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또한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 2014년 발표한 글로벌 백만장자 가구통계에 따르면, 인도의 백만장자 가구수는 2012년 1,370만 세대에서 2013년 1,630만 세대로 대폭 상승하였으며, 이는 전 세계 전체 백만장자 가구수 중 1.1%를 차지하며 2012년 16위에서 2013년 15위로 순위가 상승했다.

최근 여성의 경제, 정치 등 사회 전반적으로의 진출이 많아지고 과거 사회적 약자였던 여성을 위한 인도 정부의 보호정책 등으로 인해 여성들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인도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개인의 약 31.2% 정도가 여성(시골 지역 26.1%, 도시 지역 13.8%)이다. 직장여성 중 생산직에 종사하는 여성이 17.1%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근무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은 교사와 공무원을 선호하고 있다. 여성의 사회진출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결혼 후에도 일정 가계소득을 이루기 전까지는 직장을 그만두려 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인도 여성들의 경제관념의 변화와 맞물려 인도 정부의 여성을 위한 정책 시행 등을 통해 여성들의 의사 결정권 변화, 교육수준 상승 등과 이로 인한 경제적인 여유와 여가시간이 생겨 여성들의 소비지출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고위직 여성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2012년 14%에서 2013년 19%로 상승하였으며 특히 IT를 중심으로 금융, 부동산 등에 걸쳐 영향력 있는 여성들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다.

□ 무선전화 및 자동차 수요 폭발적 증가 전망

인도의 통신산업은 지난 10년 간 인도 내 가장 빠르게 성장세를 보인 산업으로 여전히 꾸준한 성장을 기록 중이며 12억 명에 달하는 방대한 인구 규모와 중산층의 구매력 향상, 가전제품 수요 증가 등이 성장동력으로 분석된다.

글로벌 이동통신 장비 공급업체 Ericsson은 인도(2천8백만명)가 2014년 1분기 신규 휴대폰 가입자 수 전세계 1위를 기록하였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전체 신규 가입자인 1억2,000만 명의 23%에 해당하는 수치를 기록했다.

인도의 핸드폰 시장은 중국 다음으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그 중 스마트폰의 판매 증가세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리서치전문사 IDC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인도 내에서 1,620만 대가 판매되었던 스마트폰은 2013년 4,400만 대의 판매고를 기록했다. 특히 2013년 10-12월 3개월 동안은 무려 1400-1500만대가 판매된 것으로 추산됐으며, 이는 전년 동기대비 181% 성장한 수치다. 2013년 피쳐폰은 전년대비 1100만 대 증가한 1억 1,200만 대를 기록하여 선전을 이어갔다.

또한 IDC는 인도 스마트폰 시장이 2017년까지 인도가 중국과 미국의 뒤를 이어 전 세계에서 3번째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고, 현재는 스마트폰 보급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각종 전화 부품과 애플리케이션 등 관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자동차 산업은 인도의 대표적 성장산업이다. IBEF는 인도가 2016년까지 세계 자동차 시장점유율의 5%가량을 차지하여 세계 3위의 자동차 시장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으며, 또한 2020년까지 세계 4위 자동차 생산국으로 부상할 것 이라고 언급했다. 인도 내 자동차(승용차, 상용차, 이륜차, 삼륜차를 종합) 판매량은 2007년 1,100만 대에서 2013년 2,070만 대로 두 배 가까이 성장했고 대외 수출량은 2005년 약 70만 대에서 2013년 약 290만 대로 세 배 가까이 증가했다. 자동차 시장은 연평균 19.1%의 성장률을 보여 지속적인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그 중 이륜차 수출량은 200만 대를 기록해, 주력 품목으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2012년과 2013년, 2년 간의 극심한 부진을 겪었던 인도 자동차 시장은 2014년 2월 정부의 자동차 산업 촉진을 위한 소비세 인하 조치를 통해 판매 회복을 꾀했으나 여전히 높은 이자율과 연료비, 루피화 가치 하락 등이 맞물려 최근까지도 회복세가 미약했다. 최근 신 정부에 대한 기대감과 기업인들의 투자사이클과 소비자의 소비심리가 회복되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5월 인도 자동차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8%-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동 기간 동안 인도 주요 자동차 판매 기업들은 새로운 자동차 모델을 선보여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다. 다양한 특성을 가진 시장

인도인의 주요 종족은 드라바다· 인도-아리안· 힌두스타니· 몽골로이드 족 등이며, 수많은 외래 민족의 유입으로 다양한 인종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 언어는 힌디어 및 영어 이외에 21개 의 공용어가 있다. 종교는 대략 힌두교, 이슬람교, 불교 및 기타 종교가 8:1:1의 비율을 이루고 있다. 또한 소득 양극화도 심각하여 다수의 빈곤층과 부유층이 공존하고 있다.

인도에서 엄연히 실재하고 있는 카스트 제도의 경우, 4개의 큰 계급 구조로 구분되지만 그 안에서 2,300여 개의 세부 계급으로 구분되며 100여 종류의 최하급 계급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인도 시장을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어려운 여러 가지 다양성이 공존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의 역사적, 정치적, 종교적 특성에 따라 진출 전략을 달리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인도의 상권 역시 델리, 뭄바이, 첸나이, 캘커타를 중심으로 하는 4대 권역으로 크게 나누어져 있고 권역별 특징이 틀려 균질화된 마케팅을 하기가 힘들다. 한편 일반적으로 인도 소비자들은 가격에 굉장히 민감하여 가격 위주로 시장이 편재되어 있으나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감성적인 고가 제품의 판매도 일부 늘어나고 있다.

라. 대규모 투자 자본이 유입되고 있는 시장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인도는 국가 중심의 중공업 정책과 폐쇄적 자급주의형의 사회주의적 특성을 담은 경제 체제를 운용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 체제가 저성장과 빈곤의 악순환을 거듭함에 따라 90년대에 외국인 투자를 자유화하고 무역에서 수량 제한을 줄이고 관세화를 도입하는 개방 정책으로 선회했다. 그 후 90년대 초에는 건실한 성장을 거듭했으며, 90년대 말 이후 점차 인도 경제가 세계 경제와 통합되면서 인도는 점차 높은 경제 성장률과 전세계적인 이목을 받는 시장으로 변모했다. 90년 말 이후 세계의 IT붐으로 IT 소프트웨어 분야가 미국의 IT 산업과 연계되면서, 인도는 IT 소프트웨어 및 관련 서비스의 아웃소싱 기지로 각광받게 된다.

동시에 미국의 저금리 기조에서 인도의 잠재성을 평가한 국제 금융 자본의 대인도 포트폴리오 투자가 증가하여 인도 경제의 유동성을 풍부하게 하고 있다. 인도 봄베이 증시 주가 지수는 2002년 말 3,337에서 2006년 2월 10,000을 돌파하는 수직 상승을 기록했다. (2007년 말 20,000을 돌파하기도 했던 인도 주가는 2011년 8월 기준 17,000선을 유지하고 있다) 제조업 투자도 꾸준히 증가하여 GM, Volkswagan, BMW, Nissan 등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첸나이와 구자라트 지역 등 인도 내 제조 기지를 설립하여 현지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월마트, 보다폰 등 서비스 분야, 유통 소매 분야, 통신 분야 등에 대한 투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에 인도 활발한 외국인 투자를 기대하고 있다.

2008년도 말부터 시작된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해 국내외적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인도 역시 2010-11 회계연도(2010년 4월부터 2011년 3월까지의 기간)의 투자유치금액이 194억 2,700만 달러를 기록, 2009-10 회계연도보다 25% 감소세를 보였다.

2011년에는 투자유치금액이 346억 2,1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도보다 높은 증가세로 회복세로 돌아서는 듯 보였으나 유럽 경제위기와 인도 정부의 역행적 과세정책, 불명확한 투자 정책 등으로 인한 불안정한 투자환경으로 인해 2012년도 투자유치금액은 다시 하락하여 227억 8,900만 달러에 머물렀다. 2013년에도 투자유치금액이 별다른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으며 최근 인도 산업정책진흥부에서 발표한 2013년 9월까지 투자유치금액은 총 168억 5,300만 달러로 전년동기 186억 8,900만 달러보다 18억 3,600만 달러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인도의 풍부하고 우수한 인적 자원, IT 서비스 산업 경쟁력, 정부의 제조업 육성 노력, 세계 최대의 민주주의 국가라는 점 등과 같은 인도의 잠재력과 인도에 진출 시 내수 및 수출을 동시에 지향하는 전략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향후 많은 투자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최근 적극적인 FDI 투자유치 활성화로 인프라 구축 및 경제 성장을 노리고 있다. 현재 인도는 대부분의 분야에서 자동승인 루트를 통한 외국인 직접 투자를 허용하고 있으며, 인도 정부는 항구, 공항, 고속도로 등의 인프라를 점검하고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 2017년 3월까지 외국인 투자 유치 1조 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마. 한국 제품에 대한 인지도

LG전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여러 대기업들이 인도에 진출하여 큰 성공을 거둔바 있기 때문에 한국 제품에 대한 평가는 나쁘지 않은 편이다. 다만 식자층이 아닌 일반 서민층의 경우는 이들 대기업의 제품이 한국산인지 인도 산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기는 하나 어느 정도의 수준 이상이면 한국 제품과 한국의 경제 성장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보편적인 인도 바이어들에게 한국 제품은 좋은 품질을 보유하고 있으나 가격이 비싼 제품으로 인식되고 있다.

바. 유통 채널

인도는 소매 유통 채널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소매업 판매상은 구멍가게 수준이다. 하지만 최근 월마트 등 글로벌 유통 기업들이 대거 진출함에 따라 점차 유통 구조의 현대화가 진행되고 있다. 인도의 1,200만 개에 달하는 소매점 중에 97%가 구멍 가게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신흥 중산층의 세련된 욕구를 채워주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인도는 2,800억 달러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유통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을뿐더러 인구 구조상 젊은 소비층이 지속 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하지만, 인도정부 및 신정부가 95%에 달하는 영세상인 보호를 목적으로 멀티브랜드기업의 소매/유통분야 진출을 전면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실정임에 따라, 동 분야에 관한 FDI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멀티브랜드 업체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월마트는 최근 금지된 소매업 대신 도매업 및 전자상거래로 진출분야를 변경하였고, 멀티브랜드 유통업체인 까르푸는 인도사업포기를 선언하고 판매점을 매각하는 등 여건이 좋지 않은 실정이다.

11. 바이어발굴

가. 업종 단체(협회, 조합 등)를 통한 바이어 발굴

인도는 경제 전반에 걸쳐 인프라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바이어를 발굴하는 것이 다른 나라에 비해 힘든 편이다. 인터넷이 보편화된 요즘에도 아직 바이어를 찾기 위해 업종별 전화번호부를 찾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을 정도다.

오프라인으로 바이어를 찾는 방법 중 우선 권장할 수 있는 것은 업종 단체를 접촉하는 것이다. 인도에도 해당 업체별로 단체나 협회가 있으며, 일부 지원 기반을 갖추고 있는 단체의 경우 바이어를 발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다만 많은 업종 단체들이 영세하고 상근 인원이 적어 별 도움이 되지 못하는 단체가 많다. 업종별로 어느 정도 지원 기반을 갖추고 있는 기관들을 보면 아래와 같다.

- Confederation of Indian Industry (CII): 인도 전경련 (http://www.cii.in)
- Federation of Indi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FICCI): 인도 중앙 상공회의소 (http://www.ficci.com)
- Associated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Assocham): 인도 상의연합 (http://www.assocham.org/)
- National Software Services Companies(NASSCOM): 인도 소프트웨어협회 (http://www.nasscom.in/)
- Indian Electrical & Electronics Manufacturers' Association(IEEMA): 인도 전기전자 제조업자협회 (http://www.ieema.org/)
- Electronic Component Industries Association(ELCINA): 인도 전자부품협회 (http://www.elcina.com/)
- Automotive Component Manufacturers Association of India (ACMA): 인도 자동차 부품 제조업자 협회 (http://www.acmainfo.com)
- Society of Indian Automobile Manufacturers(SIAM): 인도 완성차 제조업 협회 (http://www.siamindia.com)
- Internet & Mobile Association of India: 인도 인터넷 및 모바일 협회 (http://www.iamai.in)

나. 전문 전시회를 통한 바이어 발굴

인도는 국토가 넓고 주요 도시들이 동서남북으로 산재해 있다. 델리에서 남쪽의 거점도시인 첸나이까지도 비행기로 거의 세 시간이 걸릴 정도이다. 이들 지역을 모두 방문하여 바이어를 찾는다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다. 그러나 인도에도 중요 산업 분야에서 전문전시회가 개최되고 있어 전국적으로 바이어를 발굴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가 되고 있다.

특히 우리 수출업체의 경우 아직 인도 전시회에 대해 별다른 지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인지도도 낮아 전시회 활용도가 매우 낮은 편이다. 그러나 인도시장 개척에 있어서 전문 전시회를 통해 전국 각지의 바이어들을 만나고 자사 제품의 홍보를 통한 이미지 제고와 바이어 발굴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라는 것은 분명하며, 우리 수출업계의 보다 적극적인 인도 전시회 참가 노력이 요구된다.

인도 무역진흥기관이면서 뉴델리 내 유일한 전시장인 Pragati Maidan 전시장을 운영하고 있는 ITPO(India Trade Promotion Organization)의 웹사이트에서는 ITPO와 관련된 주요 전시회를 안내하고 있다. (ITPO 웹사이트 주소: http://www.indiatradefair.com) 한편 인도에서 개최되는 주요 전시회에 대한 정보는 www.biztradeshows.com에서 쉽게 검색할 수 있다.

다. 기타 바이어 발굴 방법

그 외에 오프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방법으로는 비즈니스 출장으로 현지를 방문하여 기업을 발굴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현지를 방문하기 위해서는 현지시장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유망 바이어에 대한 사전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인도 시장의 사전조사 및 초기 단계의 바이어 발굴을 위한 방법으로는 KOTRA의 '해외시장 조사대행 서비스'나 해외 세일즈 출장 지원' 서비스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KOTRA에서 지원하는 '해외시장 조사대행 서비스'는 코트라 홈페이지 (www.kotra.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수출 희망 품목의 잠재 바이어 5~6개사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바이어 찾기, 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조사하는 맞춤형 시장조사, 해외바이어의 실제 존재여부를 확인해주는 바이어 연락처 확인, 수입 희망 품목의 잠재 공급선 발굴을 지원하는 원부자재공급선 조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외 세일즈 출장 지원' 서비스는 직접 인도로 출장을 와서 바이어를 발굴하고자 할 경우에 활용할 수 있다. 해당 품목에 대한 정보와 방문 일시, 원하는 바이어의 유형 등 요구 사항을 신청하면 지역에 따라 KOTRA 현지 무역관(뉴델리, 뭄바이, 첸나이, 방갈로르)가 사전에 바이어를 발굴, 일정에 맞추어 상담을 할 수 있게 준비해 준다. 또한 필요할 경우 통역 알선, 호텔 예약 등 사전준비를 요청할 수 있고, 무역관에서 상담을 희망할 경우 무역관 상담장을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단편적인 서비스가 아니라 보다 체계적으로 인도시장을 개척하고자 할 때는 KOTRA의 '해외 무역관 지사화 사업'을 이용하는 것이 좋은 수단이 된다. 지사화 사업은 해당 제품의 시장조사에서부터 바이어 발굴, 바이어와의 협상 등 수출 계약 전 단계까지 신청 업체를 대신하여 활동하게 된다.

그 외에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시장조사 및 바이어 발굴 서비스를 하는 인도의 조사기관들도 많다. 그러나 AC Nielson 등 유명 조사기관의 조사 수수료는 보통 30,000달러 이상이며 아무리 작은 규모의 기관들이라 하더라도 최소 2,000달러에서 5,000달러 이상을 수수료로 요구하고 있어 이용하기 부담스러운 것이 단점이다.

라. 인터넷을 통한 바이어 발굴

흔히 인도를 IT강국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소프트웨어 부문에 국한된 것이며, 컴퓨터나 인터넷, 통신기반 등 하드웨어 부분은 아직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인도의 업체들 가운데 아직 홈페이지를 갖고 있지 않은 업체가 많다는 것을 고려하면 인도에서 온라인을 통해 바이어를 발굴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

온라인으로 바이어를 발굴하는 방법으로 가장 먼저 접근해야 할 것은 인도의 주요 업종 단체들이다. 이들 업종 단체의 홈페이지에서는 해당 산업에 대한 기본적인 통계와 뉴스, 회원 정보, 간행물 등 바이어 발굴을 위한 기초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인도자동차부품제조업자협회(ACMA, http://www.acmainfo.com)를 찾아보면 인도의 자동차부품 시장에 대한 정보와 통계 등과 함께 회원 업체 정보들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바이어 디렉터리나 특정 품목에 대한 업체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소정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인도의 주요 업종단체들의 웹사이트 주소는 전항의 '오프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부분'을 참조하기 바람).

인도에도 바이어 발굴을 온라인으로 유료 서비스하는 기관이 있다. 대표적으로 indiamart.com(www.indiamart.com), tradeindia.com(www.tradeindia.com) 등이 있으며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바이어 리스트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는 관심 있는 바이어를 선별해서 제공한다기 보다는 해당 품목의 바이어 리스트를 제공하는 것에 가깝다.

인디아마트는 인도 최대 B2B포털 사이트로, 인도 최대 홈쇼핑업체인 홈샵18과 GS홈쇼핑, KOTRA와 함께 인디아마트 내에 한국관(www.indiamart.com/korea)을 개관하고 유망 한국중소기업 제품들을 업로드하고 있어 인도 시장 진출에 관심이 있는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다.

바이어 발굴 이후 단계로서 바이어와 구체적으로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바이어의 신용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데 인도에서 개별 기업에 대한 신용 조사 서비스를 하는 기관으로는 Mira Inform(www.mirainform.com)과 Onicra(www.onicra.com)를 이용할 수 있다.

위 기관의 조사 비용은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나 해당 기업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서비스의 내용이 네트워크를 통한 현장 확인 수준에 그쳐 실질적인 신용도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 한편 수출보험공사(www.keic.or.kr)를 통해서 신용 조사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업체별 특징 및 제공정보

업체명	업체 특징	제공 정보	구매가격
Indiamart.com	인도의 120만 공급업체 및 650만 구입업체의 기업정보 수록	기업명, 주소, 대표전화, 홈페이지, 담당자 연락처	바이어 정보 확인 : 부분유료(바이어의 세부 수입 희망 사항 : 연 250 달러 이상으로 다양한 옵션이 존재) 제품 수출입관련 인콰이어리를 사이트에 등록하길 원할 경우 유료 서비스 이용 필요(등록: 연1,500달러, 카탈로그 등록 별도 : 500달러)
Tradeindia.com	인도 및 3-4개국의 250만개사 기업정보 수록	기업명, 대표전화, 홈페이지, 담당자 연락처	부분 유료(수입업체, 구매업체 정보: 연 13,500루피(약 25만 원))
Kompass India	64개국 280만개사 기업정보 수록	기업명, 대표번호, 담당자 개인 연락처	연 25,000루피(약 45만 원)

○ 12. 상관습 및 거래 시 유의사항

가. 상관습 관행

인도 비즈니스맨이 가지고 있는 사업관행과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 사업관행의 괴리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카스트 제도는 철폐됐지만 사회관행으로 남아있어 기업 내 엄격한 위계 문화로 반영되고 있기에 미팅은 가능한 의사결정자와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인도 바이어들을 직접 상담한 후 바로 거래에 성공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도 실제 오더 및 대금결제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 따라서 느긋한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

특히 정부 공무원과 업무를 할 때는 더욱 그러하다. 인도 정부기관은 느린 업무 처리로 악명 높으며, 의사소통은 일종의 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인내심을 가져야 하며 데드라인을 항상 여유있게 잡아야 무리가 없다.

비즈니스 환경항목 별 순위

비즈니스 환경 항목	인도 순위	비고
사업하기 좋은 국가(종합순위)	134위	총 189개 국가 중 1위는 싱가포르, 한국은 7위에 랭크. 일본은 27위 중국은 96위로 나타났으며 차드는 최저순위인 189위를 기록
사업 설립 용이성	179위	사업 설립을 위한 시간, 비용, 초기 투자 자본 기준
신용 가용성(credit availability)	28위	법적 권리의 실효성, 신용 정보의 충실도의 지표 기준
투자자 보호 환경	34위	투자 보호제도 실효성, 정보 공개, 이사의 책임성, 주주의 탄원 실행도 등의 지표 기준
폐업의 용이성	121위	파산 회수율 기준. 파산 절차 평균 4.3년 소요
계약 이행의 강제성	186위	계약 분쟁 시 소요 시간, 비용, 절차의 복잡성을 종합한 순위. 인도의 계약 분쟁 시 평균 소요시간은 1420일로 조사됨.

자료: World Bank 2014년도『Doing Business Rankings』

나. 수출 거래시 주의사항

□ 가격 전략

인도는 대표적인 가격시장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품질만을 강조해서는 결 코 성공하기 어렵다. 가능하다면 제품의 기능을 옵션으로 두어 기능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가격에 융통성을 줄 수 있는 것이 좋다. 가격 협상은 최소한 몇 차례를 각오해야 한다. 오늘 가격 협상을 끝냈다고 생각한 경우도 다음날 다시 가격 인하를 요구해오는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마지막까지 가격의 마지노선을 제시하지 않는 것이 좋다.

□ 대금 결제는 처음부터 L/C 나 T/T 로

대금 결제는 처음부터 L/C나 T/T로 해야 한다. 인도인들 사이의 거래에서도 대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물건을 주지 않는다고 할 정도이다. 대금 결제에서 신용을 제공하는 것은 문제의 불씨를 만드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야 한다. 특히 거래 규모가 클수록 신용 위험이 더 높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인도에 진출한 역사가 오래된 기업들도 인도 대기업에 납품 시 신용을 제공했다가 대금을 떼이는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 선적 전 제품 품질 검사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는 선적 시 바이어로 하여금 선적 전에 제품을 검사하거나 그에 준하는 동의를 얻어 내는 것이 좋다. 단순히 샘플로만 합의하고 선적한 경우 나중에 제품의 불량이나 하자를 이유로 제품 도착 후 제품 수령을 거절하는 사례를 종종 보게 된다. 또한 이를 빌미로 가격 인하를 요구하면서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 계약시 주의사항

□ 계약서 조항 검토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하는 것은 기본이다. 제품 검사에 대해서도 특정한 경우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이나 비용을 미리 확인하여 비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의외로 까다로운 조건과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고, 검사기준 역시 매우 까다로운 경우도 많다. 이는 첫 거래인 경우 더욱 유의해야 할 사항이다.

□ 제품 성능에 대한 정확한 기준 설명

제품의 성능 등에 대해서는 그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애매한 표현은 화를 자초하거나 제품 수령을 거절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 예를 들어 농산물 선별 기계의 성능을 99% 선별력을 갖는다고 설명하였는데, 나중에 바이어가 기계를 이용하여 곡물을 선별한 결과를 손으로 확인하여 세어보고 실제 98%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여 제값을 받지 못한 사례를 들 수 있다.

□ 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인도 업체는 강력한 상인 카스트 커뮤니티를 구성하며 구전 마케팅의 대표적 시장이다. 이는 소개 영업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단순히 선언적인 내용을 말로 약속한 것은 인도와의 거래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오히려 나중에 분쟁의 불씨로 작용하게 되기에 모든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남겨야 한다. 인도에서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인도와의 거래에서 신사도(gentleman ship)는 없다고 잘라 말한다.

13. 주요 전시회 개최일정

가. 2014년 하반기 인도 주요전시회

Medicall

개최국가/도시	인도 / 첸나이		
개최주기	1년	**최초 개최년도**	1990
개최기간	2014.08.01-2014.08.03	**개최규모**	N/A
전시장	Chennai Trade Centre, Chennai, India		
참가국수	18+	**개최국 참가업체 수**	367+
외국참가업체 수	83+	**개최국 참관객수**	전체 참관객수에 포함
주요참가국	중국, 대만, 독일, 한국 등		
한국업체참가여부	참가	**한국참가업체 수**	1개업체
전체참관객수	10500+	**외국참관객수**	전체 참관객수에 포함
전시회지명도	★★★★★★	**부스배정난이도**	★★★★
전시분야	엔지니어링 및 전력		
부스당임차료(㎡ 당)	N/A		
임차료수준	N/A		
주최기관	Medexpert Business Consultants Pvt. Ltd.		
주최기관 담당자	Mr.Sundararajan		
주최기관 주소	Centre Point, 7th Floor Junction of S. V. Road & Juhu Tara Road Santacruz (W), Mumbai 400 054, India		
주최기관 TEL	+91 44- 24718987		
주최기관 팩스	N/A		
주최기관 URL	http://medicall.in		
주최기관 이메일	info@medicall.in		
전시품목	의료기기, 약품, 위생		
비고	○ 방문 가능 시간: 10:00-19:00		
출처	박람회 홈페이지(http://medicall.in/)		

Home deco, Gifts & Houseware India

개최국가/도시	인도/뭄바이		
개최주기	1년	**최초 개최년도**	2012
개최기간	2014.08.05-2014.08.07	**개최규모**	20,000 sqm
전시장	Bombay Exhibition Centre		
참가국수	11+	**개최국 참가업체 수**	220+
외국참가업체 수	45+	**개최국 참관객수**	10400
주요참가국	중국, 태국, 대만, 말레이시아, 영국 등		
한국업체참가여부	참가	**한국참가업체 수**	2개 업체
전체참관객수	10,900+	**외국참관객수**	전체 참관객수에 포함
전시회지명도	★★★★	**부스배정난이도**	★★★★
전시분야	가정용품, 실내.외장식.인테리어		
부스당임차료(㎡ 당)	N/A		
임차료수준	N/A		
주최기관	TEXZONE INFORMATION SERVICES PVT.LTD		
주최기관 담당자	Mr. Mukesh Agarwal, Head Business Development		
주최기관 주소	431, Kaliandas Udyog Bhavan, Near Century Bazaar, Prabhadevi, Mumbai - 400 025		
주최기관 TEL	+ 91 22 2421 4111		
주최기관 팩스	+ 91 22 2421 4116		
주최기관 URL	http://www.hghindia.com/content/trade-show-facts		
주최기관 이메일	mukesh.agarwal@hghindia.com		
전시품목	가정용품, 실내.외장식.인테리어		
비고	N/A		
출처	박람회 홈페이지 (http://www.hghindia.com/content/trade-show-facts)		

Big 5 Contruction India

개최국가/도시	인도 / 뭄바이		
개최주기	1년	**최초개최년도**	2013
개최기간	2014.09.11-2014.09.13	**개최규모**	22000sqm
전시장	Bombay Exhibition Centre		
참가국수	10개국	**개최국 참가업체 수**	140+ (외국 참가 업체 포함)
외국참가업체 수	60개 업체	**개최국 참관객수**	7500명
주요참가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이란 등		
한국업체참가여부	참가	**한국참가업체 수**	6개사
전체참관객수	9,000+	**외국참관객수**	1500+
전시회지명도	★★★★	**부스배정난이도**	★★
전시분야	건축, 건설, 빌딩		
부스당임차료 (㎡ 당)	N/A		
임차료수준	조립식 부스(275$), 독립식 부스(300$)		
주최기관	FICCI		
주최기관 담당자	Mr. Shaurav Pandey, Research Associates		
주최기관 주소	Federation House, New Delhi-110 001		
주최기관 TEL	+91-11-23738760		
주최기관 팩스	+91-11-23738760		
주최기관 URL	http://www.thebig5constructindia.com/		
주최기관 이메일	info@thebig5constructindia.com		
전시품목	건축, 건설, 빌딩		
비고	N/A		
출처	박람회 홈페이지(http://www.thebig5constructindia.com/		

India International Jewellery Show

개최국가/도시	인도 / 뭄바이		
개최주기	매년	**최초 개최년도**	1983
개최기간	2014.07.17-2014.07.21	**개최규모**	46,000sqm
전시장	Bombay Exhibition Centre		
참가국수	85개 국	**개최국 참가업체 수**	780+
외국참가업체수	80개 업체	**개최국 참관객수**	9,000명
주요참가국	중국,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미국 등		
한국업체참가여부	참가	**한국참가업체 수**	12개 사
전체참관객수	10,000+	**외국참관객수**	1,000명
전시회지명도	★★★★	**부스배정난이도**	★★★★
전시분야	시계, 귀금속, 의류, 패션, 액세서리		
부스당임차료(㎡ 당)	N/A		
임차료수준	N/A		
주최기관	The Gem & Jewellery Export Promotion Council		
주최기관 담당자	Aanurag Dhoot Director – Exhibitions & Trade Promotions		
주최기관 주소	G2-A, Trade Center,Bandra Kurla Complex, Bandra (E), Mumbai – 400 051, India		
주최기관 TEL	+ 91 22 4354 1800		
주최기관 팩스	+ 91 22 2652 4769		
주최기관 URL	www.iijs.org/		
주최기관 이메일	anurag@gjepcindia.com		
전시품목	시계, 귀금속, 의류, 패션, 액세서리		
비고	○방문가능 시간 – 7월17일 – 20일 : 10.00 am – 06.00 pm – 7월 21일 : 10.00 am – 05.30 pm		
출처	박람회 홈페이지 (http://www.garmentechnologyexpo.com)		

SOLAR SOUTH 2014

개최국가/도시	인도 / 첸나이		
개최주기	매년	**최초 개최년도**	2014
개최기간	2014.07.18-2014.07.20	**개최규모**	20,000sq.ft
전시장	Chennai Trade Center		
참가국수	N/A	**개최국 참가업체 수**	N/A
외국참가업체 수	N/A	**개최국 참관객수**	N/A
주요참가국	인도		
한국업체참가여부	불참	**한국참가업체 수**	N/A
전체참관객수	N/A	**외국참관객수**	N/A
전시회지명도	★★★★	**부스배정난이도**	★★★★
전시분야	냉난방, 에너지, 환경, 생태		
부스당임차료(㎡ 당)	Shell Scheme (9 sqm): US$ 225 Bare Space (24sqm): US$215		
임차료수준	N/A		
주최기관	Smart Expos & Fairs India Private Limited		
주최기관 담당자	Mr. Balasubramanian		
주최기관 주소	New No.116, Old No.81, Manickam Lane, (Near Hotel Zen Garden) Mount Road, Guindy, Chennai - 600 032, India		
주최기관 TEL	+91-044 2250 1985 / 86 / 87 /		
주최기관 팩스	N/A		
주최기관 URL	http://www.solarsouth.in/		
주최기관 이메일	info@smartexpos.in		
전시품목	냉난방, 에너지, 환경, 생태		
비고	N/A		
출처	박람회 홈페이지 (http://www.solarsouth.in)		

ELECTRONICA INDIA

개최국가/도시	인도 / 방갈로르		
개최주기	매년	**최초 개최년도**	2000
개최기간	2014.09.23-2014.09.25	**개최규모**	13,000sqm
전시장	BIEC(Bangalore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er)		
참가국수	13개 국	**개최국 참가업체 수**	525+
외국참가업체 수	N/A	**개최국 참관객수**	11589명
주요참가국	중국, 프랑스, 독일, 홍콩, 싱가폴 등		
한국업체참가여부	참가	**한국참가업체 수**	2+
전체참관객수	11,589명	**외국참관객수**	N/A
전시회지명도	★★★★	**부스배정난이도**	★★★★
전시분야	전기.전자, 하드웨어.공구, 인터넷.IT.텔레커뮤니케이션		
부스당임차료(㎡ 당)	N/A		
임차료수준	N/A		
주최기관	MMI India		
주최기관 담당자	MMI India pvt. Ltd.		
주최기관 주소	"INIZIO" 507&508, 5th floor, Cardinal gracias Road, Opp.P&G building Chakala, Andheri, Mumbai 400099 India		
주최기관 TEL	+91 22 4255 4700		
주최기관 팩스	+91 22 4255 4719		
주최기관 URL	http://electronica-india.com/en/home.html		
주최기관 이메일	info@mmi-india.in		
전시품목	전기.전자, 하드웨어.공구, 인터넷.IT.텔레커뮤니케이션		
비고	○ 방문가능시간 : 10:00-18:00		
출처	박람회 홈페이지 (http://electronica-india.com/en/home.html)		

Medical Fair India

개최국가/도시	인도 / 뭄바이		
개최주기	매년	**최초 개최년도**	1988
개최기간	2014.10.19-2014.10.12	**개최규모**	5,000sqm
전시장	MMRDA Exhibition Centre		
참가국수	15+	**개최국 참가업체 수**	200+
외국참가업체 수	250+	**개최국 참관객수**	25,000
주요참가국	중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이탈리아, 프랑스 등		
한국업체참가여부	참가	**한국참가업체 수**	10개 사
전체참관객수	26,292+	**외국참관객수**	1,292+
전시회지명도	★★★★	**부스배정난이도**	★★★★
전시분야	건축, 건설, 빌딩, 가구, 가구산업		
부스당임차료 (㎡ 당)	N/A		
임차료수준	N/A		
주최기관	UBM Trade Fairs		
주최기관 담당자	Mr. Anand		
주최기관 주소	401/402, Sanskriti Park, Commercial Block, 50B, Mahakali Caves Road, Andheri (E)Mumbai – 400 093		
주최기관 TEL	+91 22 2830 2870		
주최기관 팩스	+91 22 2821 6140		
주최기관 URL	http://ubmindexfairs.com/		
주최기관 이메일	marketing@ubmindexfairs.com		
전시품목	건축, 건설, 빌딩, 가구, 가구산업		
비고	○ 방문 가능시간 : 10:00-18:00		
출처	박람회 홈페이지 (http://ubmindexfairs.com/)		

Wire and Cable India 2014

개최국가/도시	인도 / 뭄바이		
개최주기	2년	**최초 개최년도**	2000
개최기간	2014.10.28-2014.10.30	**개최규모**	20,000sqm
전시장	Bombay Exhibition Centre		
참가국수	25+	**개최국 참가업체 수**	160+
외국참가업체 수	131+	**개최국 참관객수**	9,500
주요참가국	오스트리아, 중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한국업체참가여부	참가	**한국참가업체 수**	3개사
전체참관객수	10,500+	**외국참관객수**	1,000+
전시회지명도	★★★★	**부스배정난이도**	★★★★
전시분야	방송, 통신		
부스당임차료 (㎡ 당)	N/A		
임차료수준	N/A		
주최기관	Messe Düsseldorf India Pvt. Ltd		
주최기관 담당자	Ms. Leena Dugh		
주최기관 주소	1, Commercial Complex, 2 Floor, Pocket H & J, Sarita Vihar, New Delhi - 110 076, India		
주최기관 TEL	+91 11 2690 1600		
주최기관 팩스	+91 11 2697 1746		
주최기관 URL	www.wire-india.com/		
주최기관 이메일	DughL@md-india.com		
전시품목	방송, 통신		
비고	ㅇ방문가능 시간 -10월 28일 – 29일 : 10.00 am – 06.00 pm - 10월 30일 : 10.00 am – 05.00 pm		
출처	박람회 홈페이지 (www.wire-india.com/)		

14. 수출 성공실패사례

가. 수출 성공사례

□ A사 - 건설 제품

건설 관련 제품을 취급하는 A사는 인도에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인도의 여러 건설기업들을 방문하여 상담하였으나 해당 품목의 경우 건설 기업들이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사용하지 않고 대여업체들에게서 제품을 대여하여 사용하고 반납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을 확인하였다.

A사의 관계자는 다방면에 걸친 시장조사를 통해 인도 시장을 이해하고 타겟 바이어를 새로 설정하여 처음부터 다시 바이어를 발굴하기 시작하였으며 지속적인 바이어 발굴을 통해 인도 출장 중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을 취급하는 다수의 대여업체들과 상담을 하게 되었다.

바이어들과의 상담 시 완제품 수출은 높은 관세로 인해 가격경쟁력이 없고 제품을 부분 수출하여 현지에서 조립하는 것이 보다 유리함을 확인하고 수출 전략을 현지에 맡도록 재수정하여 바이어들과의 적절한 가격 조절 및 운송에 대한 협상을 통해 최종 수출에 성공하였다.

□ B사 - 기계류

B사가 취급하는 제품은 중국 및 대만제에 비해 50~200% 이상 비싼 반면 유럽산과는 품질이 비슷하고 다소 저렴한 편이었다. 인도의 바이어들은 가격 경쟁력을 이유로 중국 및 대만 제품을 선호하여 동 제품들의 수입량도 많았으며 세계적 브랜드들도 인도 시장에 진출해 있어 경쟁이 심해 인도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B사는 인도 시장 진출을 위해 현지 생산업체들을 접촉하여 신규 투자 의향 및 증설 계획을 조사하고 기술 수요를 철저히 분석하기 시작하였으며, 인도에서 개최되는 관련 유망 전시회를 지속 참가하여 자체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갔다.

중국과 대만 제품들의 낮은 가격 때문에 바이어들에게 접근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것에 한계가 많았으며 최근 인도의 경제위기 영향으로 기업들의 투자와 신규 수요가 줄어들어 활발한 조사와 마케팅 활동에도 초기에 성과가 거의 없었다.

그러나 바이어들과의 지속적인 연락과 제품의 품질 등 타 업체들과의 차별화를 통해 가격요인을 극복하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의 꾸준한 설득을 하였으며, 바이어가 한국을 방문하여 관련 시설을 견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등 현지시장을 바닥부터 철저히 조사하고 자사의 기술을 지속적으로 바이어들에게 어필하는 이러한 장기간에 걸친 노력을 통해 결국 수출에 성공하였고 관심을 보이는 바이어들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추가 성과도 기대하고 있다.

ㅁ C사 - 기계류

C사의 취급 품목은 인도 내 제조회사들이 매우 영세하고 소규모인 관계로 비싼 기계 구입을 주저하며 품질보다는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 및 인도산 기계를 선호하는데 가격 차이가 거의 2~2.5배 정도였다.

C사는 주로 전시회를 통해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노력하였는데 전시회에서 전시된 기계를 구매한 바이어가 운송 과정의 부주의로 기계가 고장 나서 쓸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C사는 전시품을 현장에서 판매함으로써 법적인 책임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판매한 기계 가격에 육박하는 운송료를 부담하고 새로운 기계를 운송하여 교체해 줌으로써 바이어의 신뢰를 얻었고 이후 동 바이어가 라인을 증설할 때 대량의 주문을 받게 되었다.

최근 인도 경기의 하락세와 루피화 절하로 신규 오더를 받지는 못하고 있으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바이어 관리를 통해 A/S를 위한 부품 오더를 받았으며 초기 과감한 투자와 원활한 사후 관리를 통해 바이어의 두터운 신뢰를 받고 있어 향후 대량 오더를 기대하고 있다.

15. 수출 시 애로사항

가. 무역 거래 시 애로 사항

□ 바이어 의도 파악의 어려움

인도 바이어는 당장 구매를 할 것처럼 관심을 표현하다가도 막상 가격 협상이나 구매를 위한 상담은 좀처럼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는 인도상인의 특징 상 뭐든지 일단 관심을 보인 후 가능성을 타진해 보기 때문이며 이러한 경우 인도 상인은 상대방이 치르게 되는 금전적·시간적 손해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무역 상담 초기부터 인도 바이어의 의도나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도 바이어들은 자신들이 다급한 상황에 처하거나 제품 구입이 정말로 필요한 상황이 아닐 경우 거래에 대해 별로 빠르게 반응하지 않으며 간단한 업무에 대한 처리도 오래 걸리는데, 예를 들어 처음에 거래를 원하는 인도 업체의 구매 담당자에게 연락을 하거나 협의를 진행할 때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거나 연락에 대한 반응이 없다가 3~6개월 뒤에 갑작스레 연락을 하여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관련 사항을 재개하는 등의 경우가 많다.

이 외 서류 및 계약서를 중요시 하는 인도 바이어들은 수출 서류 미비나 사소한 서류상의 실수를 빌미로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우리 기업들은 대인도 수출 시 계약서상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선 대금 지불보다는 정식 루트를 통해 제품을 수출하는 것이 안전하다.

□ 복잡한 정책 및 서류절차

외국 업체들이 인도 바이어들에게 제품을 수출할 경우 많은 업체들이 호소하는 수출 애로사항 중 하나가 인도의 복잡한 정책과 느린 행정 절차이다. 인도의 행정 절차는 세계에서도 느리고 불투명하기로 유명한데, 예를 들어 인도 법 규정에 신청한 서류 처리 절차가 15일 이라고 명시되어 있어도 보통 정확히 명시된 기한 내에 서류가 처리되는 경우는 드물어 제품 운송 및 기타 사항에 대해 시간과 비용을 많이 낭비하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정상적으로 제품을 수출한다 하더라도 통관 시 통관 지연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기타 미비한 점들이 확인이 되면 이를 해결하는데 절차가 복잡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기업들이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 기관도 어떠한 한 건에 대해 명확하게 분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필요 서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약 5~6개의 정부 기관 담당자들을 접촉하여도 해당 담당자들이 관련 건을 잘 모르거나 다른 기관에 떠넘기는 등 쉽게 결론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배를 받은 영향으로 인해 계약에 관한 문화가 비교적 잘 발달되어 있어 서류를 작성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계약의 주요 내용이 아닌 사안에 대한 통보나 요청도 반드시 문서화 하는 것이 좋다. 특히 인도에서 계약서는 분쟁 해결에 유일한 근거가 되는 서류이기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한국인은 문서화에 익숙지 않아 막연히 상대방의 호의를 믿고 구두상으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인도인들은 문제 발생 시 태연히 말을 바꾸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어 후일 큰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

□ 메일 송수신 시 주의사항

한국 업체들이 인도 바이어들과 연락을 시도할 때 바이어들에게서 회신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러나 이 중 약 50~60%는 바이어들이 메일을 아예 받아보지도 못한 경우가 많은데, 인도는 한국에 비해 인터넷 환경이 좋지 않아, 한국에서 대용량 첨부파일을 함께 보낼 경우 메일을 받지 못하거나, 메일에 많은 링크를 걸어 놓았을 경우 스팸으로 분류되어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현지 사정을 고려하여 메일을 송부하는 것이 좋으며, 메일을 보내고 난 뒤에는 메일을 수신하였는지 담당자에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KOTRA 해외시장조사 서비스 중 바이어 찾기 서비스 조사를 신청하여 바이어를 연결해 주었으나 바이어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문의가 오는 업체들이 많은데 바이어들에게 이를 확인할 시 약 70%에 달하는 바이어들이 메일을 수령한 적이 없다고 답변한다.

□ 서류 정리의 중요성

인도 기업과 사업을 진행 할 경우에는 구두로 확인을 받는 것보다 중요한 내용은 모두 메일 또는 서류로 처리하여 증거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좋다. 많은 한국 기업들이 인도 기업과 약속 또는 거래를 할 경우 구두로만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인도 기업들은 서류상 남아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미적지근한 대응 또는 그러한 사실은 모른다고 하는 기업들이 많고 실제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였을 시 항의 또는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해진다.

□ 수출 희망 품목에 대한 비관세 장벽 존재 여부 확인

인도 정부는 제조 기반이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인도 시장 및 국내 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외국 기업에 의한 자본 잠식 등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비관세 장벽을 시행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철강 등의 제품이 이에 속한다.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 사항으로는 반덤핑, 세이프가드, 인도 표준국 의무인증 등이 있으며 대표적인 기관으로는 인도 상무부(반덤핑, 세이프가드), 인도 표준국(BIS, 의무인증), 인도 중앙 의약품 표준 규제 기관(CDSCO, 화장품), 인도 통신부(DoT, 텔레콤 네트워크 관련 제품 및 장비) 등이 있으며, 각 세부사항은 해당 기관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Ⅳ. 투자

1. 투자환경

가. 투자 매력도

1) 전반적인 투자 환경의 긍정적 요인

인도는 최근 경제가 안정되고 고도성장이 몇 년째 계속되면서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먼저 IT, BT 등 지식 산업 분야의 아웃소싱 기지로 부상하였고 2008~2011년 사이 4년 연속 7%~9%의 성장을 거듭해 오면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고도성장으로 이어져 왔으며 인도 시장을 노린 세계적인 기업들의 투자 또한 이어지고 있다. 인도 기업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면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으며 구매력을 갖춘 젊은 신흥 중산층도 급속히 늘어나는 추세이다.

최근 인도 경제가 고도 성장 궤도에 진입했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평가이다. 지난 몇 년간 지속적으로 평균 8%대의 안정된 성장을 기록하고 있고, 현재 금융위기로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국가가 많은 가운데 인도는 2012-13 회계연도에도 5%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와 함께 많은 전문가들이 인도 경제가 중장기적으로 연평균 4~5%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 무역 자유화 노력

관세 인하 등을 통한 무역 자유화에도 적극적이어서 최근 몇 년간 기본 관세를 매년 5%씩 인하한 바 있고 2006-07회계년도와 2007-08회계년도에도 각각 2.5%씩 인하한 바 있다. 2011-12 회계연도에는 대부분 품목의 기준 기본관세율이 10%였으며 현재까지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관세 인하를 통한 무역 자유화 이외에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도 적극적이어서 이미 싱가포르, 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발효시킨 바 있다. 아세안 및 우리나라의 FTA도 2009년 8월 서명하였으며 한-인도 CEPA는 2010년 1월 1일 발효되었다. 일본 및 말레이시아와도 2011년 2월 CEPA를 체결하는 등 동시다발적 FTA 체결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유럽과 FTA 협정 체결을 위해 논의 중이다.

3) 12억의 인구를 바탕으로 한 성장 잠재력

인도의 성장 잠재력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인력 분야이다. 미국 중앙정보국 월드 팩트북 (CIA The World Fact Book)에 따르면, 2013년 인도인구는 12억 7,000만 명이다.

2011년 4월 1일 보도된 3월 31일 인도정부가 발표한 1차 Census 2011 결과에 따르면, 인도는 전세계 인구비율 중 중국(19.4%)에 이어 17.5%로 2위를 기록하였으며, 2025년에는 중국 인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단, 인구증가율은 2001년의 21.15%보다 낮은 17.64%로 1921년도의 1차 조사를 제외하면 2000년까지의 계속적인 증가세가 처음으로 꺾인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에 대해 인도 경제 전문가들은 인도 인구증가율 감소가 복지예산 감축, 생활수준 향상 등으로 이어져 인도경제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발표내용 기타사항으로는 7세 이상 인구 중 식자율 74% (2001 년의 64% 대비 10% 상승), 남성 식자율 82.14%, 여성 식자율 65.46%, 아동성비는 남자 1,000명당 여자 914명으로 독립 이후 최저비율을 기록하였다. 도시 중 델리가 1만 1,297명/㎢로 최고 인구 밀집 도시로 조사 되었고, 우타르 프라데시주가 1억 9,900만 명으로 가장 인구가 많은 주로 조사 되었다.

인구의 연령별 구조를 보면 인도는 상대적으로 중국보다 저 연령층이 많은 편으로 유엔 경제사회국(UN DESA,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이 2013년 6월 13일 발표한 '2012 세계 인구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는 2028년 중국을 제치고 세계 최다 인구 국으로 부상하며, 중국은 2030년부터 인구 감소가 시작되어 2100년에는 11억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인도는 고급 인력도 풍부한 편으로 인도가 IT 소프트웨어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었던 이유도 고급 인력이 질적, 양적으로 풍부했기 때문이다.

매년 약 300만 명이 대학을 졸업 하며 이들은 영어를 구사할 수 있고 몇몇 대학은 교육수준도 매우 높다. 예컨대 IIT(Indian Institute of Technology)같은 경우 세계 유수의 공과대학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졸업생들은 국내외에서 폭넓게 활동하고 있다.

2013년 11월 인도 인적자원개발부가 발표한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인도 내에는 약 700개의 대학교(University), 35,539개의 단과대학(College)이 존재한다. 주정부 대학 306개(44%), 사립대학 154개(22%) 및 연방중앙정부 운영 대학 및 대학에 준하는 교육기관 240개(34%)가 운영 중이며, 특히 총입학생수(GER)는 2011-12 회계연도에 15%를 뛰어 넘어 이듬해 19.4%를 기록하며 인도 교육수준 향상률을 대변하고 있다.

또한 인도 인적자원개발부 2012-17 12차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전공분야별 입학생 수는 인문학이 7,519,495명으로 37.1%를 차지하고 뒤를 이어 과학분야가 3,789,967명으로 18.7%, 상경계열이 3,571,083명으로 17.6%, 공학기술분야가 3,261,500명으로 16.1%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도 분야별 대학 입학생 수

(단위: 명)

연도	공과대학	약학대학	건축대학	호텔경영	합계	증가수
2006-07	659,717	76,030	5,085	5,840	746,672	30,432
2007-08	701,214	77,582	5,189	5,959	789,944	43,272
2008-09	753,910	78,763	5,268	6,050	843,991	54,047
2009-10	1,093,380	80,370	5,375	6,174	1,185,299	341,308
2010-11	1,219,347	81,594	5,457	6,268	1,312,666	127,367
2011-12	1,386,083	83,041	6,894	6,295	1,482,313	169,647
2012-13	1,565,722	85,461	8,874	6,355	1,666,412	184,099
2013-14	1,634,596	86,444	8,614	6,520	1,736,174	69,762

주: 2014년 6월 확인기준 정보

자료: All India Council for Technical Education(AICTE), Government of India

2010-11 기타 전공 분야 졸업생 수

(단위: 명)

구분	대학	대학원
예 술	7,078,570	1,018,331
무 역	2,755,285	202,151
과 학	2,604,850	459,830
합 계	12,438,705	1,680,312

주: 2013년 12월 확인기준 정보

자료: 인도 인적자원개발부(Ministry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Government of India

맥킨지 컨설팅의 대표였던 라자 굽타(Rajat Gupta)회장, 씨티 그룹 수석 부회장이었던 빅터 메네제스, 선마이크로시스템즈의 공동 창업자인 비노드 코슬라(Vinod Khosla) 등이 IIT출신이고 포춘 500대기업 중 IIT 출신이 중역으로 근무하지 않는 기업이 거의 없을 정도다.

인도 IIT는 인도에서 공학 및 기술 교육을 담당하는 대표적인 교육기관으로 인도 내에 7개의 독립된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다. 16개 캠퍼스를 통틀었을 때 학생 수는 학부과정의 1만 5,500명, 대학원과정의 1만 2,000명 수준이다.

4) 인도 소비 시장의 부상

골드만 삭스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 경제는 2020년까지 8%대의 고도성장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2042년에는 세계경제 2강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는 기존 보고서보다 더욱 낙관적인 내용으로, 인도 경제가 2025년경에 일본을 추월하고, 2042년에는 미국마저 추월하여 중국과 함께 경제 2강이 된다는 전망이다.

인도는 경제성장에 따른 가처분 소득 증가와 향후 경제에 대한 자신감의 증가로 인해 소비계층이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 이 중 중산층이 인도의 소비계층을 주도하고 있는데, 인도국가응용경제연구소(NCAER)는 인도 중산층 인구가 2012년 1억 6,000만 명에서 2025년에는 인도 전체인구의 37.0%인 5억 4,700만 명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동 조사의 중산층 정의는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2000년도에 가구연소득 4,444~22,222불, 2010년에는 7,555~37,777불에 해당하며, 전체 인구의 불과 13.1%밖에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인도 중산층은 인도 전체 차량의 49%, TV 21%, 컴퓨터 53.2%, 에어컨 52.9%, 전자레인지 37.8% 및 신용카드 45.7%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체 소득의 50%를 각종 지출로 소비하는 등 인도 경제에 중요한 소비층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중산층이 두터워지고 고소득 전문직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전반적으로 인도소비자의 구매력이 커지고 있다. 맥킨지 사(McKinsey & Company)에서는 인도 소비시장의 중산층 비율이 2005년의 5%에서 2025년에는 43%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동 조사에서는 인도의 경제 계층을 상류층, 중상류층, 중류층, 중·하류층, 하류층의 5개로 구분하였으며 중류층 이상(중류층, 중상류층, 상류층)의 비율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였다.

맥킨지 사의 계층 구분

구분	1985	1995	2005	2015	2025
상류층	0%	0%	0%	1%	2%
중상류층	0%	0%	1%	1%	9%
중류층	1%	2%	4%	19%	32%
중 하류층	6%	18%	41%	43%	36%
하류층	93%	80%	54%	35%	22%
총인구 수 (백만 명)	755	928	1,107	1,278	1,429

주1: 2005, 2015, 2025년은 예상치
주2: 상류층 (가구당 연 수입 100만 루피 이상), 중상류층 (가구당 연 수입 50만~100만 루피), 중류층 (가구당 수입 20만~50만 루피), 중 하류층 (가구당 수입 9만~20만 루피), 하류층 (가구당 수입 9만 루피 미만), 1루피=17원(2014년 6월 20일 기준)
자료: The Rise of India's Consumer Market 2007, Mckinsey&Company

하류층의 비율은 2025년까지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이며, 중류층 이상 (중류층, 중상류층, 상류층)의 비율이 43%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중 하류층은 2010년까지 급속도로 증가하다 2010년 이후부터는 하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중류층의 경우, 2010년 이후 급 성장세를 거듭하여 2025년경에는 인도 사회가 중산층 위주의 사회로 변모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 계층 역시 현재의 중 하류층 및 하류층 위주에서 각 계층별로 균형 있게 변모할 것으로 보인다.

인도는 급속한 경제발전에 따른 낙관적 분위기에다 최근 인건비가 급속히 상승하고 고소득 전문직이 늘어나면서 핸드폰, 승용차 등 소비재의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소비 증가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5) 지식 기반 산업의 발전

IT, BT등 지식기반 산업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해당 부문의 對 인도 아웃 소싱이 활발하며 R&D센터 등의 설립을 통한 연구개발 단지로서의 활용도도 높다. 한국기업이 인도에 개발센터, 엔지니어링 센터, R&D 센터 등을 설립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기업의 경우, 방갈로르에 LG, 삼성이 R&D센터를 설립해 운영 중이다. 삼성의 경우, 서남아 지역에 4개의 R&D 센터를 운영 중이며, 이 중 방갈로르 센터는 엔지니어수만 3천 명으로 삼성전자 해외연구소 중 최대규모이다.

6) 방대한 내수 시장

인도는 다른 투자 대상국과 비교할 때 방대한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다. 소비재, 완성품은 물론, 중간재, 자본재까지도 대부분 30% 상당의 고관세 규제를 받고 있어 직수출을 통한 시장 진출 경로가 제한되어 있는 것도 투자진출의 한 동기라고 할 수 있다.

1991년 이후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인도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자동차, 가전, 화학, 음료 등에 대한 서방 다국적 기업의 진출 급증세는 이러한 측면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자동차, 가전 부문에서 대우, 현대, LG, 삼성 등이 진출한 것도 현재의 내수 시장은 물론 21세기 시장 성장가능성을 고려한 투자이자 시장 선점 전략에 기초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인근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진출 한국기업에서 보는 바와 같은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한 제3국 우회수출기지로서의 인도의 투자여건은 그다지 좋지 못하다는 것이 진출 경험을 가진 한국 기업이나 여타 전문가의 공통된 의견이다.

정부의 행정 규제, 임금 대비 낮은 생산성, 물류비 등의 측면에서 인도는 ONE-STOP SERVICE 및 임금 대비 높은 생산성 등 양호한 투자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스리랑카 등에 비해 여건이 상대적으로 뒤쳐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인도에 대한 투자가 고도화되면서 제3국 수출 전략 역시 활발해 지고 있는 추세로, 예를 들어 LG전자의 푸네 공장 (제2공장)이나 삼성전자의 첸나이 공장 (제2공장)은 모두 제3국 수출을 염두에 둔 제조기지로, 인도를 활용하여 서남아 및 유럽, 중동, 아프리카 공급기지로 활용하겠다는 전략이 점차 일반화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첸나이 공장을 활용하여 인도 제1의 승용차 수출기업의 자리를 공고히 하고 있으며 Honda, 폭스바겐 등 다른 승용차기업들도 제3국 수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7) 정치, 경제, 사회적 안정성

정치적으로 인도는 문자 그대로 세계 최대 민주주의 국가이며 높은 문맹률과 극심한 빈부 격차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의식이 일반화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인내와 관용의 국민성을 갖추고 있으며, 이러한 국민성도 민주주의 확립에 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치적 안정과 함께 풍부한 자원, 광범위한 산업 기반, 증가 일로에 있는 양질의 기술 인력, 경제 개방과 자유화 정책 등에 힘입어 최근 경제적인 안정성이 강화되고 있다. 인도중앙은행에서 발표한 최신 자료에 의하면, 인도의 외환보유고는 2014년 6월 기준 3,123억 8,250만 달러이다.

사회적으로는 카스트 갈등, 종교 갈등, 각종 분쟁 등으로 인해 많은 문제가 야기되나 심각한 충돌 없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S&P, Moody's, Fitch 등 주요 신용 평가기관들은 인도의 신용등급을 투자적격등급으로 평가 하였으나, 2012년도 상반기에 인도정부의 반기업적 정책 및 세계경제 위기, 유가와 물가 불안 등으로 인해 Moody's를 제외한 S&P와 Fitch에서 인도 신용등급을 투자적격 평가의 마지막 단계인 BBB-(잠재적 불안정상태)로 하향 평가하였다. Moody's는 2014년 상반기에 인도 신정부 출범에 따른 경기회복 기대감을 반영하여 Baa3 단계(신용상태 적절)로 다소 상향 평가하였다. 반면 S&P와 Fitch는 신용평가를 보류중이지만, 2014-15 회계연도 인도의 경제성장률을 6.4%로 전망하며 향후 신용등급 조정에 다소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인도정부는 만성적인 무역적자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S&P는 인도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를 고려하여 2009년 2월 인도의 장기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도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즉, 투자 등급이 적격에서 부적격으로 하향조정이 될 수도 있는 점 또한 참고할 사항이라는 것이다.

8) 원부자재, 자원 확보 용이

인도는 광활한 국토 면적을 보유하고 있어 세계적으로 부존자원이 풍부한 국가 중 하나로, 생산 규모 면에서는 운모류(mica blocks 및 mica splittings) 1위, 크롬 3위, 석탄 및 갈탄 3위, 철광석 4위, 보크사이트 및 망간광 각 6위, 알루미늄 10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도의 풍부한 천연자원을 활용키 위한 자원 확보 형 투자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도의 대리석과 화강암을 겨냥한 우리나라의 동인석재 투자사례, 풍부한 철광석을 고려한 포스코의 오리사주 투자 사례가 이의 한 전형이 될 수 있다. 다만, 천연광물의 경우 많은 부분이 정부 또는 국영 부문에 유보되어 있어 진출 시 정책적 사항에 대한 사전 점검이 요구된다.

9)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자세

1947년 독립 이후, 자급자족적 폐쇄주의 경제정책의 영향으로 외국 자본에 대한 인도 정책당국 및 일반의 시선은 91년 이전까지 우호적이지 못한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91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세계화(Globalization) 추세에 동참하기 위해 개방, 개혁 정책을 취해오고 있으며, 현재는 전반적으로 전 산업(각 산업별 외국인 지분 참여에 상한이 일부 존재)에 대한 외국인 투자 문호가 개방되어 있다. 각 주정부에서는 주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대규모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 건이 있을 때마다 나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정부간의 유치경쟁이 치열하다.

나. 사회 인프라 현황

1) 개요

인도정부는 인프라 부문의 중요성을 인식하 지난 10여 년간 전력, 통신, 항만, 철도, 도로 등의 인프라 부문 투자를 정책의 우선순위에 두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성과를 거둔 부분은 통신과 도로 부문에 그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재정 적자 부담과 인프라 확충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집단 간의 갈등에서 기인하고 있으며 정부는 재원 조달을 위해 외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나 직접투자 실적은 정부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각종 인프라개발사업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2013년 1월 투자 각료 회의(Cabinet Committee on Investment, CCI)를 설립하였으며, 이 회의는 총리 만모한 싱을 포함하여 재무부, 석유부, 고속도로 건설부, 환경부, 전력부 등이 참여하여 프로젝트 승인 등을 촉진하고 있다.

지난 UPA정권에서 12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던 각료 회의는 BJP가 집권하며 최근 6개로 그 규모가 축소되었다. 정치, 경제, 안보, 인사 각료 회의의 의장으로 임명된 신임 총리 나렌드라 모디는 특히 지난 정권에서 부각되었던 투자 각료 회의(Cabinet Committee on Investment, CCI) 재구성을 두고 별 다른 언급이 없어 향후 자취를 감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 3~4년 사이 에너지부문에서도 개혁이 시작되었으며, 항만 부문(특히 컨테이너 터미널)에 있어서의 경쟁도입은 항만 이용요금 체계에 변화를 가져왔고, 철도 승객 요금이 비록 일부 구간이긴 하나 할인이 되기도 했다. 화물운송 비용은 과거와 비교하여 뚜렷한 하락세를 보였으며, 복합운송의 출현과 더불어 서로 다른 유형의 운송수단 간의 경쟁으로 운송부문에 있어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최근 해외 저가항공사의 인도 국내선 항공시장 진출로 항공사간 경쟁이 심화되어 항공요금이 낮아지고 중소도시간 항공 연결이 확대될 전망이다. 공정거래 문제가 해소됨에 따라 GSM, CDMA부분을 위시한 이동 통신 인프라는 더욱 급속한 발전을 이룩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각 주간의 경쟁은 인프라 개발에 더욱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2) 2012/2020년 예산안, 인프라 개발 부문 투입 비용 증대

열악한 인프라 개선을 위해 인도 정부는 이번 2012년 3월 16일 발표된 2012/2020년 예산안에서 인프라 개발 부문에 약 500만 크로르(약 1조 204억 달러)의 가치에 해당하는 비용을 투입할 것이라며 인프라 개발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였다. 이번 예산안 발표를 통해 2011년 동안 발주 감소, 고 이자율, 프로젝트 지연, 대부분의 인프라 기업들의 재무 상태 고전 등 여건 악화 일로에 있던 인프라 부분이 주요 정책 의제로 재확인되어 많은 비중의 예산이 할애되고 있어 전반적으로 고무적인 분위기로 전환되었다.

인도정부는 이 500만 Crore 예산 중 절반을 PPP(공공 민간 파트너십)방식으로 조달하고 전년보다 2배 증액된 6만 Crore(122억 달러) 규모 면세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대규모 면세 채권을 발행하여 NHAI(고속도로국), IRFC, IIFCL, 전력 분야에 각 1만 Crore(약 20억 달러)씩 투자하고, HUDCO, Naional Housing Bank, SIDBI, 항만 분야에 각 5,000 Crore(약 10억 달러)씩 투자할 예정이다.

이번 인프라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2개 분야는 메트로(철도) 네트워크와 고속도로 분야로써, 인도 도시개발부(Urban Development Ministry)에 책정된 인도 전역 메트로·철도 분야 예산 중 DMRC(Delhi Metro Rail Corporation)에 가장 많은 예산이 부여되었다.

인도 정부는 델리, 방갈로르, 콜카타, 첸나이, 뭄바이, 자이푸르, 코친 지역을 위주로 한 메트로 네트워크 건설을 위해 874 Crore(약 1억 8,000만 달러)에 해당하는 추가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며, 총 3,164 Crore(약 6억 4,000만 달러)의 정부 지분을 기업에 투입할 계획이다.

메트로 네트워크 건설 계획

메트로 프로젝트 명	정부 투입 예산
델리 메트로(Delhi Metro)	111 억 2,570 만 루피 (약 2 억 2,700 만 달러)
델리 메트로 중 Faridabad Phase-III 프로젝트	10 억 루피 (2,000 만 달러)
방갈로르 메트로	90 억 루피 (약 1 억 8,000 만 달러)
첸나이 메트로	99 억 루피 (약 2 억 달러)

자료: Delhi Metro Rail Corporation (DMRC), Bangalore Metro Rail Corporation (BMRC), Chennai Metro Rail Ltd (CMRL)

원활한 PPP방식 추진을 위해 사업이행 자금(VGF: Viability Gap Funding) 대상 분야를 확장하여, 관개 사업(댐, 수로, 제방 포함), 터미널 시장, 농업시장에 필요한 인프라개발, 토질 시험 연구소와 비료산업 자본 투자 등이 추가 대상분야로 선정되고, 이 외 석유·가스 ·LNG 저장 시설, 석유·가스 파이프라인, 통신망을 위한 고정 시설·통신 탑 등이 새로 추가되었다. 이 외 인프라 개발 분야별 통일 분류표(Harmonized master list)를 승인 후 발표하여, 인프라 개발분야 정책과 규제 영역, 그리고 투자 촉진을 저해하는 모호한 영역을 없애고,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의 크레딧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IIFCL(India Infrastructure Finance Company)에 구조적인 신용 제고와 자금 대출체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인프라 정책 발표에서 해외상업차입(ECB, External Commercial Borrowing)의 중요성을 인식해 도로, 발전, 주택, 광산 분야의 비중을 높였다. 최근 인도연방준비은행(Reserve Bank of India, RBI)은 해외상업차입 절차 간소화를 실행하였다. 간접지분소유자 혹은 그 그룹사의 제조업, 인프라, 호텔, 병원 및 소프트웨어 분야에 속하는 기업들이 해외상업차입 증액을 신청할 경우, 직간접지분소유자 혹은 그 그룹사로부터 기타 서비스 관련 기업에 대한 증액 신청의 경우 등이 그에 해당되며, 이는 2014년 5월 16일 부로 효력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직접적 자금 융자를 제공하는 컨소시엄과 PPP 프로젝트를 위한 입찰 제출 전에 시행하는 원칙적 승인 허용 방안을 결정하고 공인된 인프라 부채 펀드에서 지급받은 이자 수입은 총액에 대해서 세율을 5% 감소하여 적용한다. 또한 2012년 7월~2015년 7월 1일의 기간 동안 댐, 도로 건설, 발전·배전 등의 사업분야에서 인도 비 거주인 (Non-resident)으로부터 외화 차입을 할 경우 이자 지급액에 부과되는 5% 세금 조항이 개정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도로, 발전, 광산, 항만, 상공, 냉동 유통, 농업 등에 적용되는 몇몇 설비의 장비 관세 인하조치도 인도 인프라 개발에 간접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LNG, 석탄·터널 시추용 중장비에 대해서도 인하된 관세가 적용되어 관련 사업 추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4년 7월로 예정되어 있는 2014-15 회계연도 예산안 발표를 준비하며 나렌드라 모디 신임 총리는 인프라 개발 및 확충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가 공약에서 내걸었던 타밀나두-마하라스트라-하리야나-벵갈을 잇는 다이아몬드 지역 고속철도 프로젝트, 全인도 전기인프라 확충 및 스마트시티 100개 건설 등 주요 사안에 대해 방산, 철도 및 건설 분야 FDI 100% 허용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이 밖에도 도로와 항만 등 국가 주요 기반시설 투자에 적극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3) 철도

인도는 65,000km에 달하는 아시아 최장의 철도망을 보유하고 있으며 철도 관련 종사자가 140만 명에 달한다. 그러나 높은 화물운임이 승객 운임을 보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도로운송으로 수요가 지속 이동하고 있다. 유료 물동량은 9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오고 있으나, 낮은 노동생산성으로 인해 그 발전 속도는 매우 지체되고 있다. 또한 빈번한 철도 사고로 인해 안전성 문제가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인도의 철도 운송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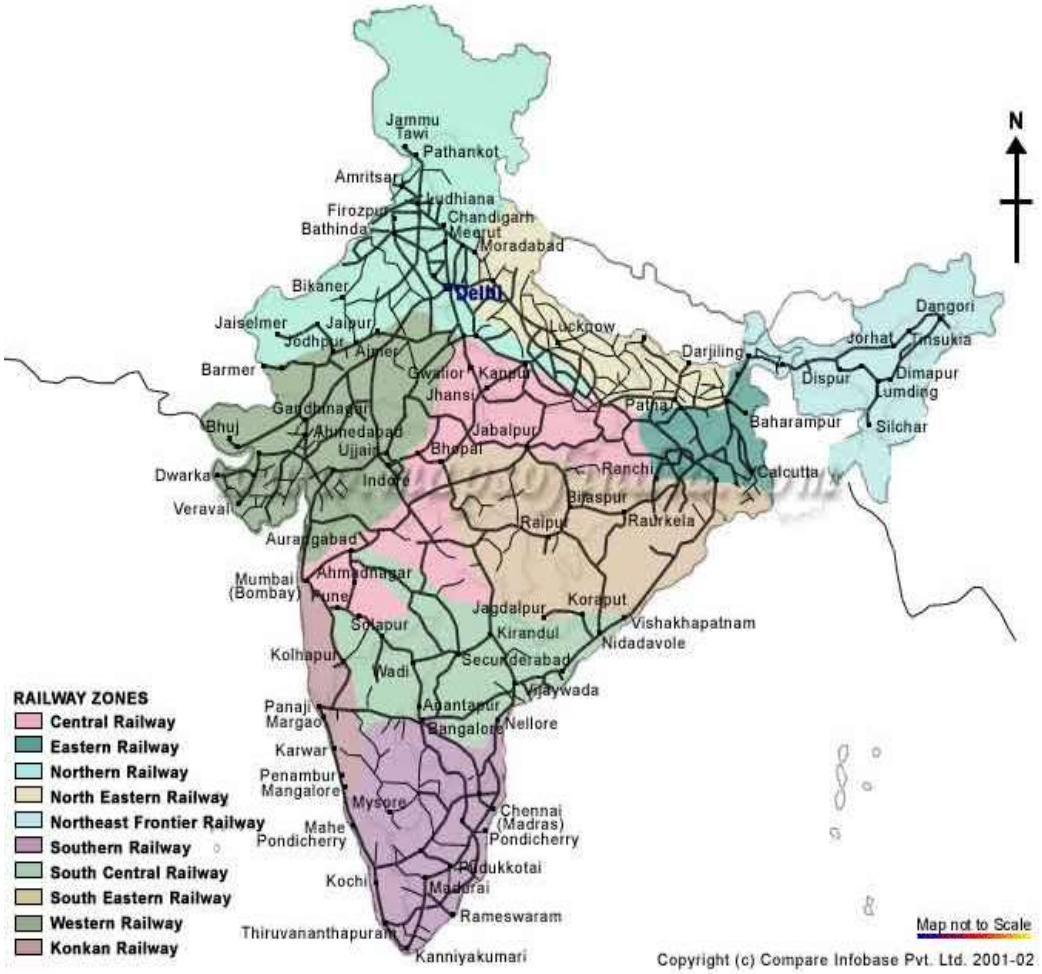

자료: http://mapsofindia.com/maps/india/india-railway-map.htm

□ 델리-뭄바이 화물 전용 열차 개발과 연계한 초대형 산업벨트 조성 프로젝트

인도정부는 40만㎢에 달하는 초대형 산업 벨트를 건설하고 세계적인 인프라 시설을 구비 하여 제조업 및 상공업 중심지를 육성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동 프로젝트의 공식 명칭은 델리-뭄바이 산업회랑 프로젝트(DMIC, Delhi-Mumbai Industrial Corridor)이다.

이 프로젝트의 해당 면적은 한반도 면적의 약 2배로 델리-뭄바이 화물 전용 철도 (1,483㎞)를 중심으로 전후방 300㎞의 면적이 포함되어 있다. 이 지역에는 도로, 항구, 공항, 전력, 복합 교통 시설 등이 건설되며 특별경제구역, 산업단지, 지식도시 등이 설립될 예정이다.

델리-뭄바이 산업벨트는 델리-뭄바이 화물 전용 철도(1,483㎞의 구간)를 따라서 개발되며 6개 주를 연결하게 되는데, 프로젝트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900억 달러로 일본 정부와 인도정부 및 관련 기업이 투자하기로 되어 있다. 이 프로젝트는 지난 2007년 11월 말에 인도 경제 각료 회의에서 최종 승인되었다. 주요 사업지역인 7개 지역의 사업은 현재 1단계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각 지역별로 개발 계획이 완료되어 부지 획득 과정에 있으며 각 사업지역의 환경영향평가 승인을 받은 상태이다. 현재는 마하라스트라, 하리야나, 라자스탄, 구자라트 등 4개 주에서 토지획득이 완료 혹은 마무리 단계에 있어 향후 프로젝트 가속화가 기대된다. 지난 UPA 정부는 7개 지역에 대해 각각 250억 루피를 투자하였으며, 일본 국제협력기구에서 DMIC 1단계 사업에 45억 달러를 투자하였다.

○ 델리 뭄바이 산업회랑: Delhi-Mumbai Industrial Corridor (DMIC)
- 1,483km의 DFC 프로젝트는 2013년 완공을 목표로 하였으나 2017년으로 재조정
- DFC 노선의 양쪽 150km 내에 개발 프로젝트에 중점
- 프로젝트 영향권 내에 있는 지역은 전체 인도 면적의 14%이며, 영향권 내의 인구수는 1억 7,340만명으로 전체비율의 17%이다.
- 프로젝트 관련 영향권 지역에서의 전체 노동자 수는 6,836만 명
- 향후 7년간 두 배의 고용 증가, 9년간 3배의 산업생산 증가 및 8~9년간 4배의 수출 증가가 예상된다.

서부 지역 DFC 프로젝트

1단계 프로젝트(2008-2012년)			
번호	**주 이름**	**제안된 장소**	**지역 분류**
1	우따르 프라데쉬(Uttar Pradesh)	Dadri-Noida-Ghaziabad	투자 지역
2	하리야나(Haryana)	Manesar-Bawal	투자 지역
3	라자스탄(Rajasthan)	Khushkhera-Biwadi-Neermrana	산업 지역
4	라자스탄(Rajasthan)	Jodhpur-Pali-Marwar	산업 지역
5	마디야 프라데쉬(Madhya Pradesh)	Pithampur-Dhar-Mhow	투자 지역
6	구자라트(Gujarat)	Ahmedabad-Dholera	투자 지역
7	마하라스트라(Maharashtra)	Shendra-Bidkin	산업 지역
8	마하라스트라(Maharashtra)	Dighi Port	산업 지역

2 단계 프로젝트(2012-2018 년)			
1	하리야나(Haryana)	Rewari-Hissar	산업 지역
2	하리야나(Haryana)	Kundli-Sonepat	투자 지역
3	라자스탄(Rajasthan)	Ajmer-Kishangarh	투자 지역
4	라자스탄(Rajasthan)	Rajsamand-Bhilwara	산업 지역
5	라자스탄(Rajasthan)	Pali-Marwar	산업 지역
6	구자라트(Gujarat)	Ahemdabad-Dholera	투자 지역
7	구자라트(Gujarat)	Surat-Navsari	산업 지역
8	구자라트(Gujarat)	Valsad-Umbergaon	산업 지역
9	마하라슈트라(Maharashtra)	Dhule-Nardhana	투자 지역
10	마하라슈트라(Maharashtra)	Pune-Khed	산업 지역
11	마드야프라데쉬(Madhya Pradesh)	Shahjapur-Dewas	산업 지역
12	마드야프라데쉬(Madhya Pradesh)	Ratlam-Nagda	투자 지역

자료: 인도 산업정책진흥위원회(DIPP)

델리-뭄바이 산업회랑(DMIC) 지역에서 제기된 투자 지역과 산업 단지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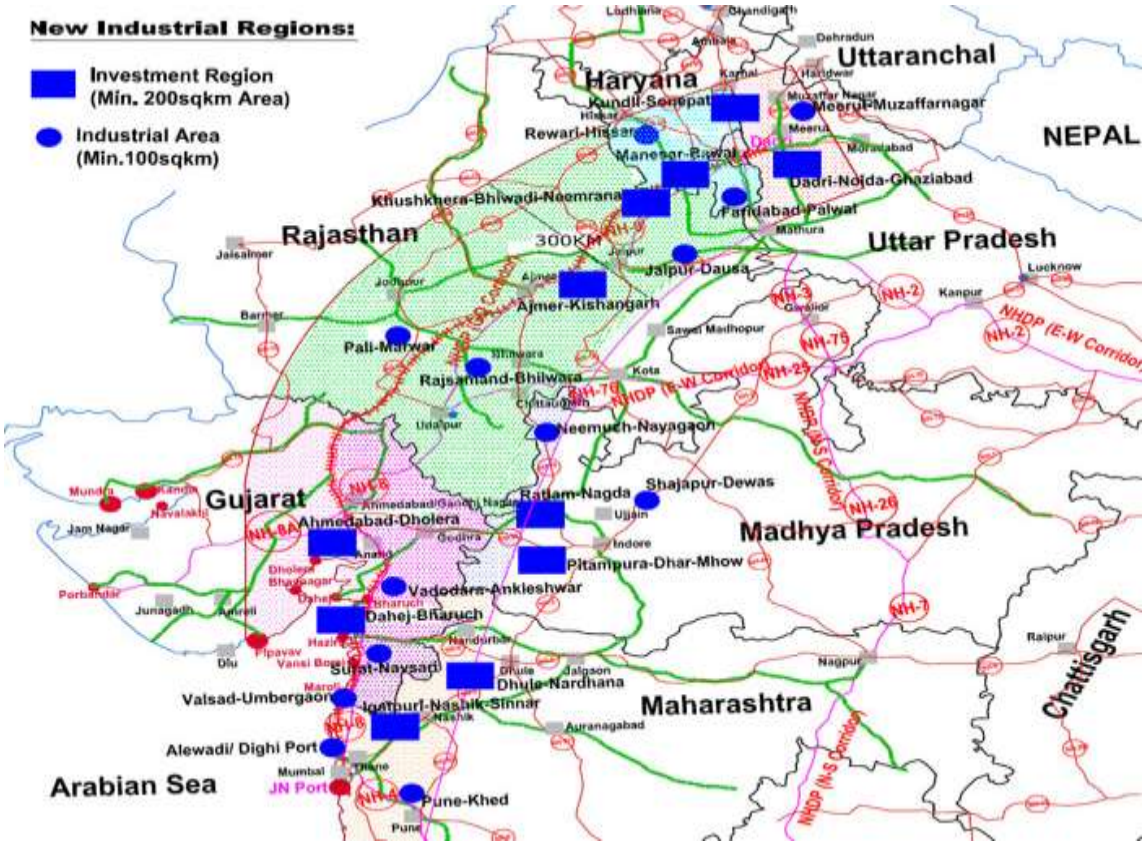

○ DFC 루트내의 기존 산업벨트 현황
- 우따르 프라데쉬(Noida/greater Noida, Ghaziabad) : 일반 제조
- 하리야나(Gurgaon, Faridabad, Sonepat): 자동차, 전자, 베틀
- 라자스탄(Jaipur, Alwar, Kota, Bhilwara, Jodhpur): 대리석, 가죽, 텍스타일
- 구자라트(Ahemedabad, Vadodara, Anand, Bharuch, Surat): 엔지니어링, 보석, 화학
- 마하라슈트라(Mumbai, Pune, Nashik): 자동차, 자동차부품, 텍스타일, 제약, 알루미늄

○ 동부 루트의 경우 Ludhiana 에서 시작하여 Allahabad, Khurja, Saharanpur, Ambala를 경유하여 sonnagar에서 끝나는 노선이다.

DFC 프로젝트의 동부지역 루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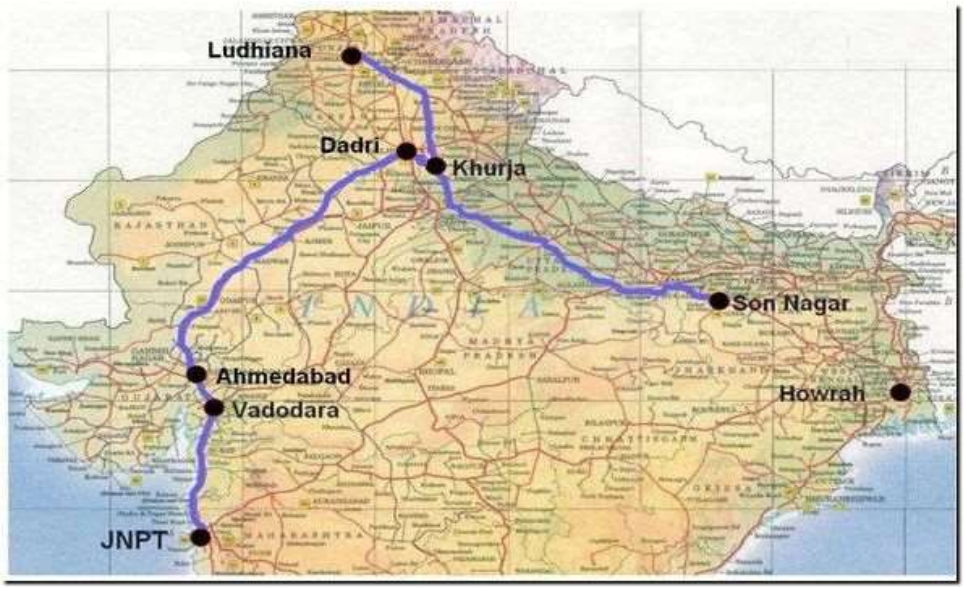

4) 도로

인도의 낙후된 도로망은 최근 끊임없이 개선 대상으로 강조되고 있는데 330만 ㎞에 달하는 도로망의 대부분은 매우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 미(美)상무성은 인도의 공공 교통, 도시 도로망, 도시 외 지역 도로망을 모두 “Poor”로, 도로에서 운전하는 것을 “매우 위험하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실제로 대부분의 외국인은 별도로 운전사를 고용하고 있다. 1장에서 다룬바 있듯이, 7만 9,243㎞에 불과한 국가 국도 망(National Highway)이 도로 운송의 40%를 담당하고 있다. 이 국도망은 우리나라의 국도에 해당하는 도로로 오토바이나 자전거 등도 이용이 가능하고, 이마저도 대부분 1~2차선 도로이고 4차선 이상은 12%에 불과하다.

주 국도는 13만 1,899㎞의 규모로 전 도로의 4%를 차지하고 있으나, 절반이 비포장 도로이며 포장된 구간도 상태가 극히 열악하다. 도로망의 부족과 개보수의 소홀로 도로 상태가 좋지 않으며, 급증하는 화물과 과적으로 인한 도로 손상, 차량 손상, 사고 발생 등으로 야기되는 비용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시행되는 고속도로 개발 프로젝트(National Highways Development Project)에 따르면, 13,000Km에 이르는 4~6차선 고속도로가 ①델리, 뭄바이, 첸나이, 콜카타 4대도시 연계(황금 사각 지대; Golden Quadrilateral) ② 남-북, 동-서를 연계(카슈미르-카냐쿠마리, 실차르-사우라슈트라)하는 두 가지 형태로 증설될 계획이다.

프로젝트의 1단계는 2004년 말 완공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실제로 2007년 후반기에 완료되었다. 2단계 프로젝트는 인도 북쪽 끝과 남쪽 끝 그리고 동쪽 끝과 서쪽 끝을 서로 연결하는 프로젝트로 총 연장길이는 7,300km에 달한다. 3단계부터는 BOT 방식으로 발주되며,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는데 3-5단계 프로젝트는 기존 도로들을 확장하고 현대화하는데 주안 점을 두고 있다.

3단계 프로젝트는 기존 도로망 10,000㎞를 4차선으로 확장하여 1단계 및 2단계 도로와 연결하는 프로젝트이다. 4단계 프로젝트는 기존도로를 대폭 개량하기 위한 프로젝트이며, 5단계 프로젝트는 5,600㎞의 구간을 4차선~6차선화하는 프로젝트이다.

6단계 프로젝트는 뭄바이와 아메다바드를 연결하는 1,000㎞의 고속도로(expressway)를 건설하는 프로젝트이며, 7단계는 주요도시들의 순환 및 우회도로 등을 건설하는 프로젝트이다. 이 외에도, 낙후 지역인 동북부 지역의 도로 개선 프로젝트도 별도로 추진 중이어서 인도의 열악한 도로 인프라는 2011년 이후에는 대폭 개선되었다.

이번 2012/2020 정부 예산안에서 도로 분야에 2만 5,360 Crore(약 51억 7,000만 달러)를 책정하고 국가 고속도로 개발 프로젝트(NHPD)를 위한 8,800km 구간 도로 신설을 확정해 도로 건설 발주가 활성화될 전망이며, IRB(Infrastructure, Reliance Infrastructure, Hindustan Construction)과 같은 도로 건설 기업들 등이 혜택 대상에 포함되었다.

정부는 고속도로·도로의 톨게이트 시스템 운영 관리 비용에 대해 ECB를 허용하여 도로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PPP 방식 참여를 권장하였으나, 기존 PPP 방식을 중단하고 최근 EPC 모델을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기존 PPP 방식으로는 입찰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고 민간사가 고속도로 설계와 공사를 담당하는 모델로 변경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의 원천징수세 감소(20%->5%)결정은 인도 민간기업의 해외 차입금 도입을 용이하게 해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관련하여 Punj Lloyd Infrastructure사 는 1개의 프로젝트를 ECB를 통해 진행하며 C&C Construction사는 현재 해외상업차입금을 찾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NHAI의 경우에는, 이미 1만 Crore의 자금을 면세 채권을 통해 조달하여 ECB 세율 감소 혜택 효과는 미흡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4년 5월 기준, 고속도로 개발 프로젝트 중 남-북, 동-서를 연계하는 프로젝트는 총 7단계 중 5단계까지 진행이 실시된 상태이며, 황금 사각지대 프로젝트의 경우 현재 건설이 모두 완료되었다.

인도의 도로 건설 추진 계획

	구분	발주 방식	예상 투자비	
			천만 루피	백만 달러
1,2 단계	황금사변형국도, 남-북/동-서 횡단국도	Contract	42,000	10,000
3단계	4차선 1만 ㎞	BOT	55,000	13,095
4단계	2차선 이상 2만㎞	BOT	25,000	5,952
5단계	4~6차선 5,600㎞	BOT	17,500	4,167
6단계	1,000㎞ 고속도로	BOT	15,000	3,571
7단계	순환도로, 우회도로 등	BOT	15,000	3,571
동북부	국도 4,388㎞확장 등	BOT	2,500	595
소 계			172,000	40,952

자료: NHAI, 쌍용 건설 등 자료 종합, 친디아 저널 2013년 5월호에서 재인용

고속도로 개발 프로젝트(NHDP) 계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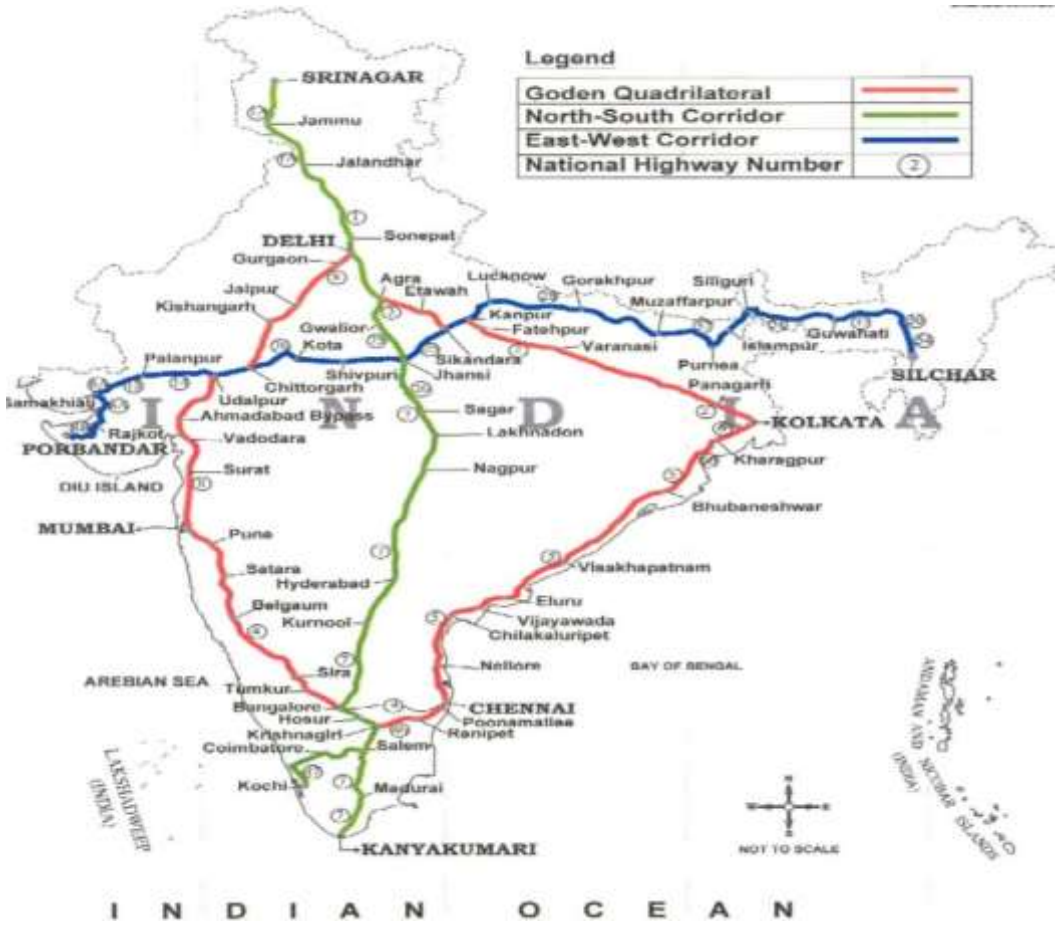

자료: http://morth.nic.in

5) 항만

인도는 동해안에 5개, 서해안에 7개의 주요 항구가 있으며, 항만트러스트(Port Trust of India)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이 중 뭄바이항과 첸나이항이 가장 선진화된 항만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주정부에 의해 운영되는 187개의 소규모 항구는 전체 물동량의 18%를 담당 하고 있으나, 주요 항구의 경우 물동량이 처리 가능한 양을 초과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 외에도 인도 항만이 가지는 큰 문제점은 선적 및 하역의 비효율성으로 접안 전 대기 시간(Pre-Berth waiting time)이 평균 0.9일인데 반하여 재항 시간(turnaround time)은 4.7일에 달한다. 항구이용 비용 또한 주변국에 비해 월등히 높은 편으로 컨테이너 하나를 터미널까지 운송하는 데 드는 비용은 미국, 일본보다 평균 70~80% 가량 높다.

민간의 항만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는 항만건설 사업에 대한 100% 외국인 지분 참여에 대한 자동승인(Automatic Route) 시행, TAMP(Tariff Authority for Major Ports)의 설치를 통해 하역 비용의 표준화하였다. 또한 MSDC(Maritime States Development Council)의 설치를 통해 종합 항만 개발 정책을 설계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2012-13 회계연도에는 총 32개의 항만 인프라 개발사업이 진행되었으며 연간 하역량이 1억 3,675톤 규모에 달하였다. 특히 이 중 구자라트, 마하라쉬트라와 안드라 프라데시 주가 민자 유치에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12/2020년 예산안에서 타 인프라 분야와 동일하게 ECB 원천징수세가 20%에서 5%로 인하됨에 따라 저비용 외채 조달이 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예산 발표에서는 항만 분야에 5,000 Crore(약 10억 달러)의 면세 채권을 허용하였으나, PPP 방식을 통해 전체 투자액의 80%인 12만 3,000 Crore(약 251억 달러)를 조달할 수 있을 지가 과제로 남아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렌드라 모디는 지금껏 지연되어 왔던 차바하르 항구(이란)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550억 루피 규모의 이 프로젝트는 2003년 협정이 체결되었지만, 미국의 대이란 제재로 인해 주춤했었다. 차바하르 항구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완료된다면 인도는 파키스탄 카라치를 거치지 않고서도 아프가니스탄 및 중앙아시아와 교역할 수 있게 되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인도의 주요 항구

자료: Investindia.gov.in 인용, 그림 제작

□ 항구 건설 및 확장 현황

신 항구 건설

항구명	도시명	비고
Gangavaram	Vishkapatnam	석탄과 철광석
Krishnapatnam	Nellore	석탄과 철광석
Dharma	Orissa	L&T 와 Tata 사에 의해 개발
Pondicherry, Karaikal	Pondicherry	타밀 나두 주 지역
Gopalpur	Orissa	Orissa Stevedores Ltd

자료: Indian Ports Association

항구 확장

단위: US 백만 달러

항구명	프로젝트 내용	투입 예산
Jawaharlal Nehru Port	Container Terminal, NSICT	6,000
Mumbai Port	Construction of two new off Shore container berths and Development of container terminal on BOT basis in Mumbai Harbour	14,600
Mormugao Port	Ik Cargo Berths No. 5A & 6A	2,500
Kandla Port	Fifth Oil Jetty (IFFCO)	215
Tuticorin Port	Container Terminal (Berth No. 7)	1,000
Visakhapatnam Port	Container Terminal, Outer Harbour	1,080
Paradip Port	Captive Fertilizer Berth	261
Chennai Port	Container Terminal	4,690
Ennore Port	Marine Liquid Terminal	2,490
Kolkata (HDC)	Multipurpose Berth No. 4A	1,500
Cochin Port	Crude Oil handling facility	7,200
New Mangalore Port	Construction of Captive Jetty for handling Coal by M/s NPCL	2,300

자료: Indian Ports Association

6) 항공

항공 운수업이 민간에 개방된 이후, 인도의 저가항공사인 IndiGo, SpiceJet, Go Air를 포함하여 일반항공사인 Jet Airways의 시장점유율이 확대되고 있다. 이 중 IndiGo는 약 30%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어서 SpiceJet가 19.6%, Jet Airways가 17%, Go Air가 8.9%를 차지하고 있다. 국영기업인 Air India 또한 약 20%의 높은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적자에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정부는 총 부채가 9,000억 루피에 달하고 누적 손실이 4,270억 루피에 달하는 자국 항공산업의 자금 문제를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2012년 9월 14일 외국 항공사의 자국 수송기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고, 국내선 수송기에 한해 49% 의 FDI를 승인하였다. 그러나 인도정부는 합작투자 시 소유주는 인도기업일 것, 회장 및 이사진의 2/3는 인도 국민으로 구성할 것, 소유권 및 유효 지배는 인도 국민에 의해 이뤄질 것 등의 조건을 명시하여 항공 산업에 대한 자국 보호 정책은 유지하였다.

이후, 2013년 2월 동남아시아 최대 저가항공사인 말레이시아의 에어아시아(Air Asia)가 인도 타타그룹과의 제휴를 통해 인도 항공시장에 진출하였다. 최근 Jet Airways는 비행기를 추가 구입하였으며, 이는 인도 내 항공사간의 경쟁을 야기하여 전체적인 항공요금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3년 4월 민간항공부는 5개의 국내항공사 (Air India, Jet Airways, IndiGo, SpiceJet, Go

Air)에 대해 승객에게 제공하는 시설 및 서비스에 따른 요금책정을 승인하였다. 이에 따라 항공사들은 인도 국내선을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기내식, 스낵 및 음료, 체크인 수하물, 스포츠 기구 및 악기 기내 반입, 항공사 라운지 사용, 선호좌석 지정예약에 대한 요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승객은 자신이 원하는 편의시설에 대해서만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이는 에어아시아의 인도 진출을 앞두고 국내 저가항공사들의 경쟁력을 확보하게 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현재 뭄바이, 델리, 첸나이, 콜카타 4개의 국제공항을 임대하려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방갈로르와 하이데라바드, 고아주 등에 민자를 도입한 국제공항이 신설될 예정이다.

인도 내 항공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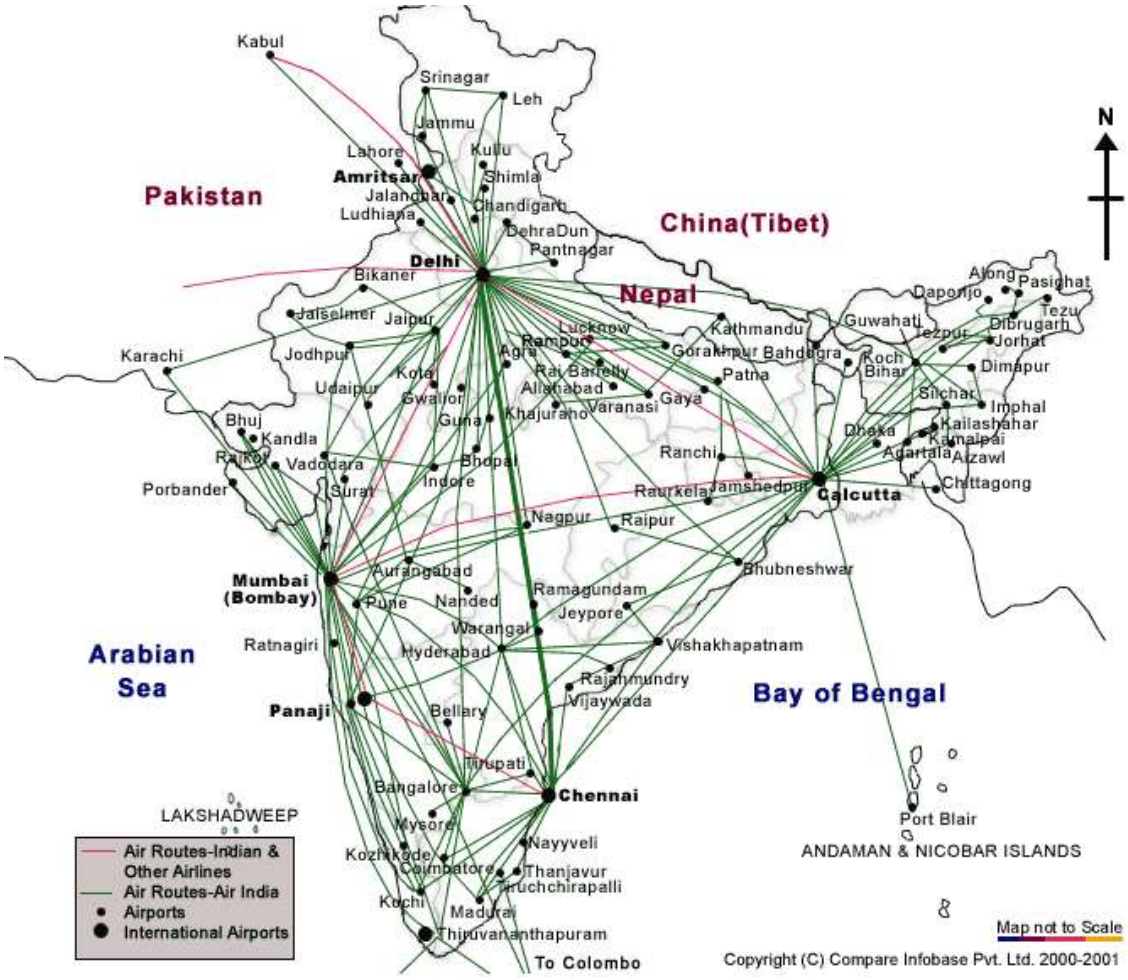

자료: http://www.mapsofindia.com/

7) 전력

2013년을 기준으로, 인도 전체 설비용량은 22만 8,721MW(2013년 9월 30일 기준, Ministry of Power)로 발전설비 규모만으로는 세계적인 발전 대국이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공식적인 전력생산 목표량은 여전히 실제 수요에 못 미치고 있다. 대부분의 전력은 주로 화력발전으로 생산되며, 수력발전은 19%의 전력 정도이다. 인도의 현재 전력수급상황은 높은 경제성장과 인구 증가 및 각종 전력사용량이 높은 기기의 사용 증가 등의 이유로 전력수요가 급증함에도, 공급이 이를 따라잡지 못해 만성적인 적자 상황이다. 소비량의 경우, 아시아에서 중국과 일본의 뒤를 이어 3대 전력소비국이다.

투자 부문별 발전설비용량

구분	발전용량(MW)	비율(%)
주정부	85,256.6	40.0
중앙정부	70,941.6	33.3
민간	57,025.5	26.7
합계	213,223.7	100.0

주: 2014년 5월 29일 기준
자료: Ministry of Power, Government of India

에너지 생산 점유율

항목	발전용량(MW)	비율(%)
화력	167,937.9	78.8
수력	40,505.7	19.0
원자력	4,780.0	2.2
합계	213,223.7	100.0

주: 2014년 5월 29일 기준
자료: Ministry of Power, Government of India

12 차 경제개발계획 발전설비 확장계획 (2012~2017)

(단위: MW)

소유	수력	화력	원자력	총계
주정부	1,608	13,922	0	15,530.0
민간	3,285	43,540	0	46,825.0
중앙정부	6,004	14,878	5,300	26,181.6
총계(재생가능에너지 미포함)	10,897	72,340	5,300	88,536.6
재생가능에너지				30,000
총계(재생가능에너지 포함)	10,897	72,340	5,300	118,536.6

자료: Central Electricity Authority, Ministry of Power, Government of India

지역별 개요

구분	화력	원자력	수력	합계
북부	37,894.3	1,620.0	16,335.6	55,849.9
서부	69,165.8	1,840.0	7,392.0	78,397.8
남부	30,652.8	1,320.0	11,457.5	43,430.3
동부	28,945.1	0.0	4,078.7	33,023.8
동북부	1,280.0	0.0	1,242.0	2,552.0
도서지역	0.0	0.0	0.0	0.0
전체	167,937.9	4,780.0	40,505.7	213,223.7

주: 2014년 5월 29일 기준
자료: central Electricity Authority, Ministry of Power, Government of India

인도정부는 2011-12 회계연도 기준, 인도 전체 전력발전총량의 18%를 차지하는 수력발전부문을 향후 8년에 걸쳐 전체의 4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수립하여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현재 실제 성과는 미미한 편이다. 2003년 162개의 수력발전 프로젝트를 통해 50,000MW를 생산하겠다는 목표 중 실제로 77개 프로젝트만이 실행되었다.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수력발전의 특성상, 10차 경제개발계획 당시 목표인 14,393MW 역시 자금압박, 입찰지연, 법정공방 등의 이유로 전체의 55%에 해당하는 7,886MW만이 실행되었다. 이에 정부는 12차 경제개발계획기간(2012~17) 동안 10,897MW 규모를 추가로 발전할 계획이다.

인도정부는 수력발전의 단점인 높은 초기건설비용, 소요기간의 장기성 등을 극복하기 위해 기존 수력발전시설의 업그레이드 작업인 RM&U Initiative (Renovation, Modernization & Upgrading)를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이니셔티브는 신규 발전설비 건설비용의 20%만으로 보다 높은 품질의 전력을 빠른 시간 내에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현재 10,134MW을 생산해내는 61개 프로젝트가 RM&U 이니셔티브를 통해 개선작업을 마쳤고, 이를 통해 약 2,246M의 발전용량이 추가되었다.

인도의 방대한 국토는 수력발전에 매우 적합한 지형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인도는 전세계 5위의 수력발전 잠재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인도의 전력을 총괄하는 중앙전력위원회(CEA; Central Electricity Agemgy)는 이 같은 지형의 이점을 충분히 활용한다면 148,700MW의 추가 발전이 가능하고, 펌프식 저장방식 및 소수력을 더할 경우, 100,783MW를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인도의 수력발전은 수력발전만의 특성(오랜 시간 소요, 높은 초기건설비용, 사회경제적 문제 해결 필요)으로 인해 민간기업의 참여는 극히 저조하며 주로 정부의 주도 하에 진행된다. 이에 인도정부는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소수력부문과 관련하여 각종 재정적 인센티브 및 설비비용 감축 등의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원자력의 경우, 과거 핵실험과 관련된 제재로 인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었으나, 2008년 미국과의 핵 협상이 타결되면서 민간의 핵 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원전 20기를 보유 중인 인도는 2020년까지 20기 이상을 추가로 증설할 계획으로, 향후 20년 뒤에는 인도 원전 시장이 약 1,500억달러(약 186조원)의 규모로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돼 세계 각국의 인도 원전 수주전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는 양상이다. 한국과 인도는 2011년 7월 25일 한국을 방문한 인도 프라티바 파틸 인도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이 양국간 원자력 협력 협정에 서명하였다. 이 협정에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함께 원전설비·부품 등의 교역 촉진, 원자력 안전에 대한 협력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향후 양국간 원자력 부문 관련 교역이 촉진될 전망이다.

2014-15 회계연도 인도 전력발전 및 전력수요 예측보고서에 따르면 2013-14 회계연도에는 평시 전력 부족률이 4.2, 피크타임에는 4.5에 달하며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4-15 회계연도에도 평시에는 5.1%, 피크타임에는 2.0%로 크게 개선될 전망이긴 하지만 여전히 중소도시, 농촌지역의 고질적 전력부족 현상이 이어질 전망이다.

인도 전력 수요/공급 전력 상황

구분	회계연도	수요(MW)	공급(MW)	잉여/부족(%)
Energy	2013-14	1,002,257	959,829	-4.2
	2014-15	1,048,672	995,157	-5.1
Peak Demand	2013-14	135,918	129,815	-4.5
	2014-15	147,815	144,788	-2.0

주1: MW(Mega Watt), 2014-15 회계연도 내역은 예상치 임

주2: 2014년 5월 기준

자료: Ministry of Power

인도의 전력 공급률은 도시의 경우 79%, 농촌지역의 경우 44%에 불과하여 아직도 다수의 인도인이 전기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인도에서는 정전이 일상으로 한여름에는 하루에도 10여 회 이상 정전이 되는 경우가 발생된다. 따라서 인도에서 제조업을 할 경우 자가발전 시설을 갖춰야 하며, 가정에서도 자가발전 시설이나 인버터(평시에 전기를 충전했다가 정전 시 전기 공급해 주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전력 공급의 부족 이외에도 공급되는 전기의 질이 매우 낮다는 점은 인도 전력 인프라의 또 다른 문제점이다. 미국에서 공급되는 전기의 질을 100이라고 할 때, 인도 전기의 질은 44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가정이나 산업체에서는 공급되는 전기를 그대로 쓰지 못하고 안정기(stabilizer)에 연결한 뒤 사용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도정부는 발전분야로의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으며, 발전, 배전, 송전 부문의 외국인 지분 100% 투자는 30억 달러까지 자동으로 승인한다. 메가프로젝트(최소 1,500MW 규모 이상의 화력발전 또는 500MW 이상의 수력 발전 시설)의 경우, 관세 등 그에 상응하는 부담이 감소된다.

송전(Power Transmission)사업의 경우, 민간에 개방되어 있으나 현재 전체 전력생산의 20% 미만을 생산하는 데 그치고 있다. 그러나 막대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수력발전 시스템 확충을 목적으로 한 자금 모집 (funding)도 가능하다. 그러나 SEBs의 배전 독점, 역대 가장 큰 규모의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였던 Dabhol Power Project의 백지화, 발전 프로젝트 부문의 외국기업들의 철수 등은 외국인들이 투자를 주저하게 만들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2012/2020 정부 예산안의 인프라 분야 중에서도 인도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전력분야에 가장 많이 투입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발전·배전 사업의 신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규 발전소나 기계장비의 실제 비용에서 추가로 20%를 감가상각비로 처리하도록 하였다.

ECB 접근성 제고를 통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며, 가동 예정인 발전소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이 2013년 3월 31일까지 연장되고, DDT(Dividend Distribution Tax)에 의한 연쇄 효과가 제거되면서 SPV 방식으로 운영되는 인프라 기업들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DTC(Direct Tax Code) 시행 연기와 특별경제구역(SEZ)에 대한 명확한 목표 제시가 이뤄지지 않은 점은 업계의 실망을 자아내었으며, 전력 인프라 기업 BHEL(Bharat Heavy Engineering Ltd)과 L&T가 요구했던 100MW 이상 발전기어 수입장비의 관세 부과에 대해서도 별도로 명시된 바가 없었다. 그러나 정부가 화력 발전용 석탄 수입에 대해서는 2년간 면세조치를 허용하여 NTPC, Tata Power, Adani Power, Reliance Power와 같은 전력 기업들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2. 투자인센티브제도

가. 산업별 투자유치 인센티브

□ 인프라/전력/주택 개발업

지정된 인프라개발사업에 종사하는 기업은 아래와 관련된 사업수행 시 감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도로, 고속도로, 교량, 철도, 용수 공급 및 처리 시스템, 관개시설, 위생시설, 하수 처리 시스템, 고체 폐기물 관리시스템 등의 시설 개발, 운영 및 관리에 종사하는 기업에 대하여 총 20년 한도 내에서 10년 연속 100%의 세금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내륙 항구 또는 수로, 공항, 항구의 개발, 운영 및 관리 등과 관련된 기업에게도 총 15년 기간의 한도 내에서 10년간 100%의 세금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재정법(Finance Act, 2007)을 통해, 인도 전역에 걸쳐 파이프라인과 저장시설 등을 포함한 천연가스의 배급망을 운영 및 설치하는 회사 또한 10년간 면세혜택을 제공한다.

□ 자동차산업

인도정부는 신 통합세제인 GST(Good & Service Tax)를 2010-11회계연도 중 시행해 자동차관련 중앙판매세(Central Sales Tax)를 0%로 인하할 계획을 세웠으나 현재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실제로는 정책검토 후 차종에 따라 차등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 정부는 2013년 발생한 극심한 판매 부진 사태에 대한 대응으로 2014년 2월 17일 준예산발표에서 소형차, 이륜차, 상용차와 중형차는 4%, 대형차는 3%, SUV는 무려 6%의 소비세(Excise duty)를 인하하였으며, 그에 따라 인도 내 주요 자동차기업들이 자동차 가격을 차례로 인하하였다.

□ 식품 가공업

2001년 4월 1일 사업을 개시한 과일, 야채의 포장·저장·가공과 식품·곡류의 운송·저장 종사 기업에게는 최초 5년간의 면세혜택과 추가 5년간 수익에 대한 30% 세금 공제혜택을 제공한다.

□ R&D

2012년 3월 31일부터 바이오 기술 및 관련 제품 개발에 대해서 연구 비용에 200%에 해당하는 세금 공제 혜택을 부여하며 사업 관련 R&D 분야에 100%, 대학, 연구기관의 R&D에 대해서 125%-175%의 세금 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 호텔

2012년 개정된 재정법(Finance Act)에 따르면, 인도 정부에 의해 2성급 이상의 호텔로 인정된 호텔의 소유주 또는 호텔 인수자의 경우 동 산업에 투자의 목적으로 한 자본지출에 대해 100%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3. 외국인 투자동향

가. 외국인 직접 투자 현황

□ 선진국의 대기업 위주 투자

인도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가 크게 증가한 것은 1990년대 중반 이후로, LG전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우리나라의 주요 기업들이 인도 진출을 시작한 것도 이 시기이다. 특히 1990년대 후반부터 인도의 IT산업이 부각되면서 인도에 대한 선진국들의 IT투자가 증가한 것이 인도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증가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주로 각국의 주요 기업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반 중소기업들의 본격적인 투자는 인프라 부족 등으로 크게 증가하지 못하고 있다.

인도의 외국인투자는 2006-07회계연도부터 100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다, 2009-10회계연도와 2010-11회계연도에 경기침체로 인해 하락세를 보였다. 이는 미국 및 유럽의 경제위기, 인도 주식시장의 침체, 인도경제의 불확실성으로 간접 투자 자본이 빠져나가는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들의 위험자산에 대한 회피 심리로 인하여 FDI의 유입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하락세는 2011-12회계연도에 다시 회복되면서, 외국인 투자 유치금액은 465억 5,300만 달러로 가장 높은 외국인투자 금액을 기록하였다. 또한 2012년 인도정부가 소매업 및 국내 항공산업의 외국인 직접투자 개방 및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투자자들의 투자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면서 투자유입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2012-13 회계연도까지 대인도 외국인 투자는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2013-14 회계연도에 다시 회복세로 접어들었으며, 신 정부 출범 후 투자 친화적 환경이 조성된다면 향후 대인도 외국인 투자 추세는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 총선 후 결성된 신 정부의 기업친화 정책으로 FDI 유입 가속화 전망

달러 등 주요 통화대비 인도 루피의 가치가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여 2013년 8월 20일에는 사상 최저치인 달러당 64루피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2014년 들어 루피는 달러당 60루피를 기록하면서 주요 통화대비 가치가 상승세로 접어들었다. 또한 신정부 집권 이후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로 인도중앙은행(RBI)이 기준 금리를 8%로 동결시키는 등 향후 인도 경제를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2012-13 회계연도 5% 이하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인도에 대해 향후 수년 간의 경제 성장에 대해 부정적인 전망이 팽배했으나, 인도 중앙은행을 비롯한 국내외 주요 기관에서는 신정부가 제조업 부문 및 투자유치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간다면 2014-15 회계연도 이후에는 5.5에서 6.5%대의 경제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신정부의 제조업 부문 육성책과 관련 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침체되었던 인도 내 제조업 부문 경기가 되살아날 것이며 실제로 제조업 부흥을 위해 방산 분야 FDI 한도를 100%까지 늘리려는 움직임이 정부로부터 감지되고 있다. 인도는 원칙적으로 방산 분야 FDI를 49% 이상 허용하지 않지만, 자국기업에 최첨단 기술도입 가능여부 등의 조건이 부합한다면 100%까지 투자를 가능케 하자는 건의안이 산업정책진흥부서(DIPP)로부터 제출되기도 하였다.

□ 높은 수준의 투자인센티브 등 별도의 투자유치정책을 갖고 있지 않아

인도 정부는 다른 나라와 달리 외국인 투자 유치정책을 별도로 갖고 있지 않은 나라이다. 인도 정부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시각은 다소 복잡하다. 대외개방을 통해 투자 개방을 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직접 목도하고 긍정적인 면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는 하나, 소위 말해 사업이 되기 때문에 들어오는 외국기업들에게 굳이 별도의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없다는 인식과 외국인투자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야당 등의 반대 시각이 여전히 존재한다.

다만, 외국기업이 정상적인 방식으로 투자를 해 법인을 설립하고 기업활동을 할 경우 인도 기업과 차별 없이 내국기업으로 대우한다는 점과 투자 매력도가 높은 업종의 개방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실제로 통신, 은행, 보험 등 주요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한도가 확대되고, 외국인 투자가 금지되었던 소매업 및 부동산 등에 대해서도 일부 투자 개방이 이루어지고 있다.

□ 한국기업은 단독법인 설립이 주요 투자방식으로 자리 잡아

주요 글로벌기업들은 단독법인설립, 합작법인설립, 기술제휴, M&A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인도에 투자하고 있으며 단독투자에 대한 제한이 많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는 대부분의 품목에서 100% 단독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단독법인설립이 주요한 투자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즉, 단독법인 설립 후 필요 시에는 인도 기업들과 전략적 제휴를 맺는 경우가 많으며 경영권의 제약을 받지 않는 한에서 합작법인설립을 통한 투자도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기업들의 경우 소수의 예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단독법인설립을 통한 투자가 이루어 지고 있는데 이에 비해 글로벌기업들은 M&A나 합작법인설립을 더 많이 진행하고 있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통신, 보험, 신용정보회사 등 주요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 한도를 확대하고, 기존에 외국인투자가 금지되고 있는 소매업, 부동산 등에 대해서도 투자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2012년 9월, 정부는 소매 단일브랜드에 대해 100% 외국인직접투자를 허용하였으며, 복합 브랜드에 대해서도 49%까지 허용하였다. 인도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최근 인도의 급속한 경제성장을 배경으로 인도시장의 구매력이 한층 높아지고, 산업 인프라가 다소 개선될 조짐을 보이며 향후 크게 증가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또한 신정부 출범 이후 온라인 쇼핑몰(B2C)분야 FDI 규정 완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2000~2013 인도의 외국인투자 유치 추이

(단위 : US$ 억)

구분	금액
2000 ~ 01	40.29
2001 ~ 02	61.30
2002 ~ 03	50.35
2003 ~ 04	43.22
2004 ~ 05	60.51
2005 ~ 06	89.61
2006 ~ 07	228.26
2007 ~ 08	348.43
2008 ~ 09	418.73
2009 ~ 10	377.45
2010 ~ 11	348.47
2011 ~ 12	465.56
2012 ~ 13	342.98
2013 ~ 14	363.96
2014 ~ 15(2014.4)	25.97
누계	3265.09

주1: 금액은 인도의 회계연도에 따라 당해년도 4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의 통계임

주2: 2014-15 회계연도 기간은 2014년 4월에만 해당

주3: 누계는 2000년 4월에서 2014년 4월에 해당

자료: Ministry of Commerce & Industry, Department of Industrial Policy & Promotion

□ FDI 유입증가세 지속되고 있으나, 속단은 금물

2008년, 세계경기회복과 함께 인도 FDI 증가세는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으며 세계 은행에서 발표한 FDI 전망조사에서 2009~11년 인도에 대한 잠재 투자자들의 FDI는 상당히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더욱이 2013년 사상 최악의 루피화 가치하락을 경험한 뒤, 올해 신정부가 집권하며 특히 외국인 투자 증가에 대한 조심스러운 낙관론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상공부(MCI) 및 산업정책진흥부(DIPP)의 발표에 따르면, FDI 유입액이 2012-13 회계연도에 약 220억 달러(US)에서 2013-14 회계연도에는 약 240억 달러로 약 8% 증가하였다. 2012년 7월 5일 UN이 발표한 "2012 세계투자보고서"에 따르면 인도의 2011년 FDI 유입금액은 2010년의 250억 달러보다 70억 달러 가량 증가한 320억 달러로 2010년 순위 14위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또한 2014년 동 보고서 발표에서도 인도는 14위를 유지하였으나, 2009년 유입액 360달러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 지나친 낙관에 대한 경계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13-15 회계연도 월별 FDI 유입액

월	FDI 유입액	
	(단위: 천만 루피)	(단위: 백만 달러)
2013년 4월	12,623	2,321
2013년 5월	8,974	1,631
2013년 6월	8,432	1,444
2013년 7월	9,903	1,657
2013년 8월	8,899	1,408
2013년 9월	26,351	4,132
2013년 10월	7,556	1,227
2013년 11월	10,257	1,638
2013년 12월	6,819	1,101
2014년 1월	13,589	2,189
2014년 2월	12,557	2,017
2014년 3월	21,558	3,533
2014년 4월	10,290	1,705
2012-13 회계연도	121,907	22,424
2013-14 회계연도	147,518	24,299
전년 동기대비 증감	+ 21%	+ 8%

자료: Ministry of Commerce & Industry, Department of Industrial Policy & Promotion

□ 금융도시 뭄바이가 인도 최대 투자지역

2000년 4월부터 2014년 4월까지를 기준으로 인도에서 외국인 투자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지역은 뭄바이 인근 지역으로 전체 투자의 31%를 차지하고 있다. 뭄바이는 인도의 금융 도시로 주식거래소 (Bombay Stock Exchange)가 위치하고 있으며, 인도에 진출한 세계 유수의 금융기관은 모두 뭄바이에 소재하고 있을 만큼의 인도 최대 금융 중심지이다. 이와 동시에 최대의 상업 중심지로 소매업 분야의 진출이 활발하고, 푸네 등 인근 공업지역에서의 제조업투자가 활발하다. 또한 뭄바이는 항구를 끼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 투자를 통해 내수공급 및 제3국 수출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두 번째로 많은 투자가 이뤄지는 지역은 델리 인근으로 전체 투자의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지역은 델리와 서쪽 인근지역(구르가온 등의 공업 및 상업단지), 그리고 동쪽 인근지역(노이다 및 그레이터 노이다 등) 등의 수도권 지역(NCR)을 포함한다. 델리는 중앙정부의 소재지이면서 북인도 상권의 중심지라는 점 때문에 자동차, 전자 등 다양한 제조업분야와 건설업, 금융, 서비스, 화학, IT 등 다양한 분야에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첸나이 지역이 전체 투자의 6%로 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방갈로르 지역은 IT중심지로 전체 투자의 6% 를 차지하며 그 뒤를 잇고 있다.

□ 적자해소를 위한 인도정부의 공격적인 세무조사

인도정부는 재정적자 축소 대책의 일환으로 인도 내 다국적기업들로부터 적극적으로 세금을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이전가격 조작을 집중 조사하기로 하였다. 대표적인 예로 쉘 인도법인(Shell India)에서 모기업으로 8억 7,000만 주를 주당 10루피로 발행한 것에 대해 인도 세무당국은 해당 주의 가치가 주당 183루피로 평가된다고 하며 인도법인이 28억 달러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모기업에 이전시켰다고 보고 있어 인도진출 기업들은 인도정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쉘 인도법인의 야스민 힐튼 회장은 주식 발행을 통한 자회사의 자금조달은 국제적으로 일반적인 일로 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님에도 인도정부가 이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언급하며 쉘 모기업이 인도법인으로부터 받은 돈에 과세하는 것은 사실상 외국인 직접투자(FDI)에 대한 과세로 더 많은 FDI를 유치하려는 재무장관의 의도와 법에 모두 어긋난다고 비판하였다.

최근 인도 당국에서의 노키아 첸나이 공장에 대한 이전가격 규정 위반혐의로 인한 압수수색과 영국의 Cadbury, 싱가포르의 부동산기업 Ascendas, 프랑스 IT 서비스기업 Capgemini 등의 이전가격 규정 위반 논란 및 조사와 같은 공격적인 세무조사에 대해 Ernst & Young의 수디르 카파디아는 “재정적자를 줄이려는 재무장관의 의도는 칭찬할 만 하나, 세금정책 이동의 실제상황은 기업친화적 세금환경을 선도하겠다는 인도정부의 의도에 인도 국내외 회사들의 의심만 지속시킬 뿐”이라고 언급하며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인도 세무당국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른 합당한 조치라고 답변하였으며 의견을 좁히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인도 투자를 고려하는 해외기업들은 인도정부의 일관성 없는 이전가격정책과 예측 불가능하고 비효율적인 문제 해결법에 투자 심리가 흔들릴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나. 국가별 투자동향

대인도 주요 투자국은 모리셔스, 싱가포르, 일본, 미국, 영국, 네덜란드 등이 있다.

누계 기준으로, 인도에 대한 최대 투자국은 모리셔스로서 전체 인도 외국인투자 유치 총액의 36%를 차지했는데, 이는 모리셔스가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조세회피처(Tax Haven)로 사랑 받고 있기 때문이다. 모리셔스와 키프로스 등 조세회피처 국가들이 주요 투자 10대국에 2개나 있다는 점에서 특색을 보인다.

우리나라는 인도중앙은행이 2014년도 4월까지의 통계를 반영해 발표하는 FDI Fact sheet 기준, 2000년 4월 이후 누계기준 인도의 제 13위 투자국으로 대인도 외국인 직접투자에서 약 0.65%를 차지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조세 회피처를 경유하는 투자는 간접투자를 제외하고는 미미한 수준으로 파악된다.

인도의 국가별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순위	국가	2012-13	2013-14	2014-15 (2014.4)	2000년 4월-2014년 4월	총 유입액 대비 비중
1	모리셔스	51,654 (9,497)	29,360 (4,859)	2,953 (489)	373,438 (79,014)	36%
2	싱가포르	12,594 (2,308)	35,625 (5,985)	1,909 (316)	127,716 (25,762)	12%
3	영국	5,797 (1,080)	20,426 (3,215)	258 (43)	101,143 (20,806)	10%
4	일본	12,243 (2,237)	10,550 (1,718)	1,293 (214)	81,937 (16,482)	8%
5	미국	3,033 (557)	4,807 (806)	667 (111)	56,397 (12,038)	6%
6	네덜란드	10,054 (1,856)	13,920 (2,270)	611 (101)	56,909 (11,337)	5%
7	키프로스	2,658 (490)	3,401 (557)	413 (68)	36,142 (7,514)	3%
8	독일	4,684 (860)	6,093 (1,038)	256 (42)	31,861 (6,561)	3%
9	프랑스	3,487 (646)	1,842 (305)	301 (50)	19,007 (3,928)	2%
10	스위스	987 (180)	2,084 (341)	247 (41)	13,396 (2,749)	1%
총 FDI 유입액		121,907 (22,423)	147,518 (24,299)	10,290 (1,705)	105,4721 (219,407)	-

주 1: 총 FDI 유입액은 RBI의 NRI Scheme 하의 자본 유입, 주식 스왑 및 주식 발행을 위한 납입자본금 선송금분을 포함함.

주 2: 퍼센트 비중은 FIPB 승인을 통한 FDI 유입액, RBI의 자동승인 루트를 통한 유입액 및 기존 기업의 지분취득을 통한 유입액을 기준으로 함.

주 3: 금액은 인도의 회계연도에 따라 당해년도 4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의 통계임

자료: Ministry of Commerce & Industry, Department of Industrial Policy & Promotion

다. 산업별 투자동향

1) 개요

여러 가지 산업 및 인프라 제약조건과 시장 특성 등으로 인해 외국인 직접투자가 몰리는 투자분야는 일부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금융업을 포함한 각종 서비스업(주는 금융업), 전자산업(소프트웨어 포함), 통신업 등이 주요 분야이며, 기타 부동산 분야 및 건설업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나렌드라 모디가 이끄는 NDA(National Democratic Alliance, 전국민주연합)가 집권한 후 경제 성장을 위한 외국자본 유치 정책은 지속되고 있다. 소수 업종을 제외하고는 외국인 투자가 대부분 개방되었으며, 특히 최근에는 보험, 방산 분야 투자한도를 100%까지 전면 개방하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외국인직접투자는 최근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앞으로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본시장 개방 확대 및 경제성장 가속화를 배경으로 포트폴리오 투자도 급증하고 있으며 그 분야가 이미 매우 다변화되어 가장 많은 투자를 유발시킨 유통업, 통신업, 자동차 등 운송기기, 전자기기 등을 포함해 다양한 분야에서 투자가 늘고 있다.

금융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 확대로 인해 각종 서비스 분야에 대한 투자가 빠르게 증가하여, 2000년 4월부터 2014년 4월까지 398억 4,100만 달러의 누적 투자액을 기록하였다. 이 외에도 최근 경기침체기로 많은 시장이 고전을 거듭함에도 불구하고 제약, 화학, 통신 등의 부문은 세계 기업들의 관심으로 인해 투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인프라 개발과 관련된 부문도 인도정부의 적극적인 인프라 개발 의지와 정책 시행에 따라 활황세가 이어지고 있다. 인도의 외국인 직접투자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서비스, 컴퓨터 소프트 웨어/하드 웨어, 통신, 부동산개발, 인프라 건설 등이다.

인도의 업종별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현황

(단위: 천만 루피, 괄호 안 수치는 백만 달러)

순위	분야	2012-2013	2013-2014	2014-2015(2014.4)	2000년 4월-2014년 4월	총유입액 대비비중
1	서비스 (금융, 비금융 포괄)	26,306 (4,833)	13,294 (2,225)	2,303 (382)	187,872 (39,841)	18%
2	건설 (인프라, 부동산 등)	7,248 (1,332)	7,508 (1,226)	417 (69)	108,974 (23,375)	11%
3	통신(무선호출, 핸드폰, 일반 전화서비스)	1,654 (304)	7,987 (1,307)	63 (10)	66,782 (14,173)	6%
4	컴퓨터 SW 및 HW	2,656 (486)	6,896 (1,126)	279 (46)	59,949 (12,864)	6%
5	제약	6,011 (1,123)	7,191 (1,279)	6 (1)	56,076 (11,598)	5%
6	자동차	8,384	9,027	136	48,332	4%

순위	분야	2012-2013	2013-2014	2014-2015(2014.4)	2000년 4월-2014년 4월	총유입액 대비비중
		(1,537)	(1,517)	(23)	(9,835)	
7	화학	1,596 (292)	4,738 (878)	308 (51)	45,541 (9,719)	4 %
8	전력	2,923 (536)	6,519 (1,066)	309 (51)	42,964 (8,951)	4 %
9	야금업	7,878 (1,466)	3,436 (568)	433 (72)	38,683 (8,146)	4 %
10	호텔 및 관광 분야	17,777 (3,259)	2,949 (486)	660 (109)	36,869 (7,227)	3 %

주: 금액은 인도의 회계연도에 따라 당해년도 4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의 통계임

자료: Ministry of Commerce & Industry, Department of Industrial Policy & Promotion

2) ICT산업

외국인의 인도 IT전자산업(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텔레커뮤니케이션산업 전반 포함) 투자실적은 2000년 4월부터 2014년 4월까지의 누적유입량 기준 여전히 3위 (통신) 및 4위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의 높은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 IT 및 BPO분야 투자는 세계적인 경제침체로 잠시 급감하였으나, 이는 최우선으로 줄이게 되는 비용 중 하나가 IT 등 후선 서비스 비용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별 인도에 진출한 글로벌 주요 기업들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

지역별 글로벌기업 진출 현황

지 역	주 요 기 업
방갈로르	AOL, Borland, Capital One, Deutsche Bank, HP, Hewitt, Honeywell, Huawei, Infineon, LG, Motorola, Novell, Philips, Samsung, Sap, Siemens, Sun Microsystems, Texas Instruments, Volvo, Yahoo, Intel, IBM, Dell, Cisco, Oracle
뭄바이	Accenture, CA, Citigroup, eBay, Emerson, JP Morgan, KPMG, Lucent Technologies, Red Hat, Verizon
하이데라바드	Deloitte, GE, Google, HSBC, Microsoft
첸나이	Alcatel, NEC, Philips, Hyundai Motors
콜카타	PwC
뉴델리 인근	IBM, VeriSign, Alcatel, Canon, Fidelity, Flextronics, GE, KPMG, McKinsey, Microsoft, Oracle, Alstom, VeriSign, PwC, HP, LG, Samsung, Yahoo, Google, Barclays Bank

자료: Nasscom(기준년도 2012년)

글로벌 IT기업에 있어 인도는 점차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이에 따라 대인도 투자의

규모와 질도 개선되고 있다. 초창기에는 단순히 비용절감을 통한 하청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인도를 자사 R&D의 핵심기지로 활용하는 기업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 더 이상 인도는 저임금으로 서비스를 공급하는 단순 IT 서비스 공급기지가 아니다.

□ IBM

IBM의 경우 2003년에서 2006년까지 20억 달러를 투자해왔으며, 2006년에서 2009년까지 60억 달러를 투자하였다. 주요 투자 내용은 방갈로르에 서비스 딜리버리 센터 구축과 사내 시스템과 기술 개발과 혁신을 위한 최고경영자 브리핑 센터 구축, 델리에 위치한 IBM 인도 연구실에 통신 분야 기술 연구 및 혁신 센터 구축, IBM의 대표 서비스인 On Demand 서비스를 성과 개선을 위한 연구 시설 확충 및 인원 확충 등이다. 투자의 금액뿐 아니라 이러한 질적 중심의 투자 내용을 보면 인도가 IBM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어떤 것인지 짐작 가능하다. 더불어 지난 2014년 3월에는 1억 달러를 투자해 전 세계 곳곳에 위치한 컨설팅 서비스 센터를 확장하기로 결정하였는데, 방갈로르에 위치한 서비스 센터도 이 중 하나이다.

이와는 별개로 2011년 IBM은 인도 내 인프라 확장을 위해 약 500억 달러의 투자를 감행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투자의 50%는 전략적 아웃소싱 사이트를 인도에 구축하기 위함으로, 나머지는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그린테크놀로지를 시현하기 위한 에너지 효율적인 기술 개발을 하는 데에 투자되고 있다. IBM의 중요 업무가 On Demand 기반의 아웃소싱 업무인 만큼 인도의 중요성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투자와 함께 2008년 인도의 31개 데이터 센터는 매출 기준으로 두 자리수의 성장세를 시현했다.

IBM의 대인도 투자는 금액적인 투자 증가와 더불어 지형적인 확장도 겸하였는데, 2급 도시(부바네쉬와르, 보팔, 찬디가르, 코임바토르, 코친, 고아, 자이푸르, 잠세드푸르, 러크 나우, 낙뿌르, 나시크, 수랏, 비샤카파트남 등)에 13개의 사무실을 신규 개설하였으며, 펀잡 주의 루디아나와 타밀 나두주의 마두라이에도 신규로 사무소를 개설할 예정이다. IBM은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을 위한 연구 센터를 방갈로르에 개설하였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중소기업, 대학, 정부 등 대규모 사용자의 사용이 가능한 서버가 필요 하지만 이를 관리할 만한 충분한 인력을 갖추기 힘든 기업들이 효율적으로 서버관리를 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많은 매력을 갖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로,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핵심 기지로 인도를 낙점하였다.

IBM의 이러한 적극적인 투자는 글로벌 기업의 인도 IT산업 투자 금액 중 가장 큰 것으로, 인도의 저렴하면서도 풍부한 고급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 IBM은 인도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였다.

이미 인도에 7만 3,000명을 고용하며 인력 규모 기준으로 미국에 이어 최대 사업장을 인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IBM은 매번 투자가 거듭될 때마다 현지 채용을 크게 늘리고 있으며, 2008년 인도정부로부터 2008년의 최고 고용주 상을 받기도 했다.
1992년 인도에 진출한 IBM은 전 세계에 산재한 고객을 지원할 핵심지역으로 인도를 선택하고

2003년부터 과감한 인도 투자를 거듭해 왔다. 현재 IBM은 인도 진출 다국적기업 중 소프트웨어 서비스 수출에 있어 1위의 자리를 고수하고 있으며 인도에서의 사업매출 증가율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이다.

□ Microsoft

마이크로소프트사는 2005~2009년 사이 인도에 17억 달러를 투자하여 R&D센터 확충, 물류 및 소매망 확충 등의 분야에 투자하고, 3,000명을 새롭게 고용하여 직원수를 두배로 증가시켰다. 2008년에 동사는 2,000만 달러의 대인도 투자를 통해 쌍방향 교육이 가능하게 하는 Learning 2.0을 런칭하고 인도 교육분야 사업확장을 발표한 바 있다. 하이데라바드에 위치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개발센터(Microsoft India Development Center, MSIDC)는 지난 13년간 큰 성장을 보였으며, 2003년에 건설한 방갈로르 기술지원센터 (Microsoft India Global Technical Support Center, IGTSC)를 통해 전 세계로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성공적인 사업 진출을 위해 인도정부와의 파트너십을 통한 사업 전개를 꾀하고 있으며,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인도를 마이크로소프트의 연구개발, 상품개발, 고객지원 그리고 기술지원서비스의 핵심기지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2013년 9월에는 핀란드 휴대폰 업체인 노키아의 휴대전화 사업부 인수를 발표함으로써 통신부문에까지 사업영역을 확장하였다. 노키아 사의 인수 금액은 72억달러로 지난 2011년 인터넷 전화 업체인 Skype 인수 가격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며, 노키아의 모든 특허까지 넘겨받는 조건으로 인수가 진행되었다.

□ Intel

인텔은 현재 방갈로르에 R&D 센터를 운영 중으로 3,000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 인텔에서는 방갈로르 센터 고용규모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로, 누적 투자액이 17억 달러 에 달한다. 인텔의 투자는 단독투자에만 국한하지 않고, 일부 합작이 필요한 경우 지분 투자를 하는 형태로 투자를 다변화하였으며, 2008년에 5,000만 달러를 인도 기업 9개사에 투자한 바 있다.

최근 Intel사는 아시아 지역의 새로운 사업 기회 발굴을 목표로 전자상거래 및 인터넷서비스 업체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2012년 인도 내 IT벤처 기업 80개에 3억 2000만 달러를 투자했으며, 2013년에도 인도 시장 전자상거래 업체인 'Bright Lifecare'사와 'Snapdeal'사에 1,60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를 통해 인텔이 인도에 다방면에 걸친 투자를 심화해 대인도 시장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Cisco

세계 최대의 네트워크 장비 제조업체인 시스코 시스템즈는 2006년부터 3년간 연구 개발을 주목적으로 11억 달러를 인도에 투자하였으며, 이를 통해 인도 센터 단독으로 110개 이상의 특허를 획득하고, 미국 특허청에 500개의 특허를 출원 중이다.

방갈로르에 있는 글로벌개발센터는 2009년 4,700명 규모에서 2012년에는 10,000명 수준으로 고용을 지속 창출하고 있다. 또한 2014년까지 인도 TV방송의 디지털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인도 정부 및 기업들을 협력·지원하고 있다. 시스코는 이와 더불어 시스코가 지원하는 170개의 아카데미를 설립해 연간 8,600명의 학생들을 배출해 IT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을 지원하고 있다.

□ GE

GE는 인도에 진출한 최초의 글로벌기업으로 금융, 인프라, 기계 및 건설,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진행 중이며, BPO분야에도 활발히 진출하고 있다. GE의 BPO 사업 부문인 Genpact는 GE Capital의 인도 BPO사업을 통해 매년 3억 4,000만 달러를 절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Genpact는 IT 최첨단 캠퍼스를 지어 하이데라바드의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내용으로 최근 안드라 프라데시 정부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투자 비용은 12억 1,000만 달러에 달한다. 또한 향후 2년 동안 지방 중소도시에 3~4개의 새로운 BPO 서비스 센터를 개소할 계획으로, 개별 센터를 개소하는 데에는 300만~ 400만 달러의 신규 투자가 필요하며, 이와 관련된 자본지출이 매년 8,000만~1억 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동 센터 개소에 따라 매년 6~8,000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될 전망이다.

□ HP

인도 PC내수시장에서 부동의 1위로 군림하고 있는 HP는 인도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HP 역시 방갈로르에 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 Vodafone

영국의 세계적인 이동통신사인 보다폰(Vodafone)은 2007년 1월 인도 4위의 이동통신사인 허치슨에사르(Hutchison Essar)의 주식 67%를 현금 135억 달러(약 15조원)에 인수하였는데 이는 최대의 인도기업 인수사례로 최대의 단일 투자 사례이기도 하다. 인도 기업 인수 이후 2012년까지 인도 시장에서 91억 달러(약 10조원)의 금액을 투자하였으며, 이러한 대규모 투자에 힘입어 조만간 Vodafone India의 수익이 영국 보다폰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2013년 7월 인도정부가 통신부문의 외국인 투자 한도를 100%로 완화함에 따라, 보다폰 그룹은 인도 보다폰 인디아의 지분 100% 확보를 위한 사업확대를 진행하고 있다.

향후 보다폰은 정부의 통신분야 FDI 규제 완화로 외국인 지분 보유 한도가 종전 75%에서 100%까지 허용된 이후 최초의 수혜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다폰은 보다폰 인디아 지분의 64.38%를 보유하고 있으며, 피라말 그룹의 대표인 이제이 피라말이 지분 11%, 나머지 25%의 지분은 아날지트 싱 보다폰 인디아 회장 등 소수의 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밖에도 오라클, EDS, 삼성, 노키아 등 수 많은 글로벌 IT기업의 대규모 인도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3) 소매유통업

글로벌 컨설팅사인 A.T. Kearney는 매년 국가위험도, 시장매력도, 성숙도, 성장속도 등의 4대 요소를 가중 평균하여 세계 소매유통업 발전지수(GRDI)를 발표하는데, 인도는 아시아 국가 중 2005-2012년 사이 2008년 2위, 2010년 3위, 2012년 2위를 한 것을 제외하면 모두 1위를 차지하였으며, 2013년에는 동일 지수에서 아시아 내 중국,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말레이시아에 이어 5위를 차지하였다.

인도의 소매유통업 전문 연구기관인 Images Retail이 인도 전경련(CII), 인도 소매업협회, 인도쇼핑센터협회와의 협력 하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인도의 2008년 소매 유통업 시장 규모는 2,314억 달러, 2010년 규모는 3,530억 달러(전년 대비 12% 성장)로 계속해서 성장 중이며, 2014년에는 5,430억 달러로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고용 면에서도 인도 소매 유통 산업은 농업에 이은 2위 산업으로 3,506만 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소매유통산업의 경우 인도정부의 영세상인 보호를 위한 폐쇄적 정책으로 인해 94% 이상이 영세 소매상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97~98%에서 지지부진하게 유지되던 동 비율이 최근 2년 사이 기업형 소매유통산업의 성장에 따라 3%가량 축소되며 향후 기업형 소매 유통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가늠하게 한다.

특히 기업형(슈퍼마켓, 하이퍼마켓, 백화점, 쇼핑몰, 편의점 등) 소매유통매장이 최근 연평균 40~50%의 성장세를 보이며 최근 5년 사이 4배 이상 증가 하였다. 실제 2011년 말 기준, 기업형 유통시장이 전체 유통시장 규모의 16%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도 소비자의 가처분 소득 증가에 따른 빠른 시장형성, 기업형 소매 유통을 선호하는 소비문화 형성 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 향후 2년간 인도 7대 대도시에 신규 대형몰 94개 지점에 들어설 전망이다.

인도의 경제발전과 구매력 증가 그리고 현대적 유통망의 부재라는 이유 때문에 인도 소매유통업은 월마트를 비롯한 세계적 소매유통업 기업들에게 있어 놓칠 수 없는 기회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투자진출이 전면 허용되지 않았을 당시에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감행하던 글로벌 소매 유통 업체들이 2012년도에 인도가 소매업 외국인직접투자를 개방하여 본격적인 진출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30% 이상 현지 조달 조건 등 복잡한 규제 및 절차로 아직까지 대부분의 소매유통 업체들이 망설이고 있는 실정이다.

분야별 인도 소매업 진출 외국 기업

분 야	기 업 명
의 류	Tommy Hilfiger, Marks & Spencers, Mango, Lacoste, Lee Cooper, Benetton, Wrangler, Levi's, Versace, Esprit, Guess, Zara
소비재	Nestle, P&G, Lever's Cadburys
내구소비재	Sony, Nokia, Philips, Samsung, LG, Electrolux, Hitachi, Siemensm, Nokia
음식점	McDonald's, Domino's Pizza, Pizza Hut, Subway, TGIF, Ruby Tuesday, Movenpick, Cookieman, Baskin Robins, Nescafe, KFC, Starbucks
엔터테인먼트	Village Roadshow, IMAX
식료품점	Metro Cash-and-Carry, Shoprite, Wall-mart Cash-and-Carry, Tesco, Sainsbury
명품	Cartier, LVMH, Bvigari, Christian Dior, Mont Blanc, Rolex
스포츠용품	Nike, Adidas, Reebok, Royal Sporting House, Planet Sports

자료: India Retail Report 2011-KSA technopak, KOTRA 보유자료

□ 월마트

2007년 인도 시장에 진출한 월마트는 바르티 사와 합작회사로 사업을 운영해왔다. Cash & Carry 방식의 대형 할인매장 형태의 방식을 도입하여 월마트는 물류, 소싱 등의 지원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실제 매장 운영은 바르띠 그룹이 담당하였다. 월마트는 2012년 기준 20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단일 매장당 규모는 5만~10만feet^2(1,400~2,800평)이다.

2012년 인도 정부가 멀티브랜드에 대해 지분의 51% 외국인 직접 투자를 허용한 이후 월마트 직영점 운영을 계획하고 있으나, 현시점의 제도적 규제로 인해 바르띠 그룹과의 파트너십을 이용한 우회진출의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세계의 거대 유통기업들의 인도 진출 시도에 한발 앞선 진출을 통해 인도 소매 시장 개방에 대비, 마지막 남은 거대 소비 시장인 인도에서의 선점효과를 노리고 있다. 합작 투자로 인한 많은 제약에도 불구하고, 바르띠와의 합작을 결정한 것은 영세한 인도 소매 유통시장 구조에서 초기 독보적 유통 구조 장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2013년 10월 월마트는 6년 간 지속해온 바르띠와의 제휴계약을 철회하였다. 월마트는 지난 2007년부터 바르띠와 50%씩 지분을 투자해 만든 합작회사 형태로 인도 내 사업을 진행했으나 인도 내 까다로운 소매시장 규정 및 공무원 뇌물혐의 등으로 더 이상 소매산업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로 인해 월마트는 합작사의 바르티측 지분을 사들이기로 했으며 신정부 출범 이후 멀티브랜드 소매 분야와 관련한 긍정적인 투자 유치 정책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 Tata-Tesco

영국의 세계적인 유통기업인 테스코는 2013년 10월 Tata 그룹과 합작하여 Tesco Express를 모델로 한 편의점 형식의 매장을 오픈해 4,500억 달러 규모의 인도 소매유통 시장에 진입하였다. 2013년 10월 푸네에서 처음 영업을 시작한 Star Daily는 평방 1,800피트 규모로, 주로 신선식품, 야채, 생필품만을 취급하고 있다.

또한 테스코는 같은 해 12월 1억 달러를 투자해 인도 멀티브랜드 소매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것이라 발표하였다. 동 투자가 인도 정부의 최종승인을 받게 됨에 따라 테스코는 2012년 9월 멀티브랜드 소매시장 외국인직접투자가 제한적으로 허용된 이후 최초로 인도 시장에 진출한 기업이 되었다. 이로 인해 Tesco는 Tata그룹의 Trent Hypermarket Ltd 지분의 50%를 소유하게 되었으며, 마하라슈트라주와 카르나카타주에 첫 번째 매장이 들어섰다.

현재 테스코는 동일 지역에 12개 매장을 운영중이다. 더불어 2014년에는 같은 지역에 6~8개의 매장을 신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스타바자르(Star Bazar), 스타데일리(Star Daily)라는 이름으로 운영중인 매장의 지난 해 순이익은 약 78억 루피에 달한다.

□ Metro

Metro는 2003년 방갈로르에 2개의 유통매장을 세우며 인도에 최초로 Cash & Carry 개념을 도입한 기업이다. 도소매업자, 유통업자, 호텔, 식당 등의 회원에게 저렴한 도매가격으로 2만여 가지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현재 방갈로르에 2개, 하이데라바드에 1개, 뭄바이에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2007년부터 콜카타에 4개 신규 아울렛을 개설할 계획이었으나, 아직까지 실행에 옮겨지지 않고 있다. 2009년 2월 Metro는 펀잡주 정부와 양해각서에 사인을 하고, 향후 2~3년 내 루디아나 (2개), 암릿차르, 잘란다르, 지락푸르 등에 6개의 유통 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다. 동 센터 개설을 위해 최소 90억 루피의 투자자금이 필요하며 2,700명의 고용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 밖에도 eBay가 인도 진출에 성공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벨기에 맥주회사 InRev, 올림푸스, 미국 소매기업 Macy, H&M, 유니클로 등이 신규로 인도 소매유통시장에 뛰어들 전망이다.

4. 한국기업 투자동향

가. 우리 기업의 투자의 전반적 특징 - 기존 대기업 위주에서 중소기업 진출 늘어

한국수출입은행 신고기준으로 2013년도 우리기업의 대인도 투자는 총 163건, 5억 4,100만 달러(투자금액기준)로 우리나라 전체 해외투자건수 5,519 건의 약 3%, 투자금액 기준으로 전체 112억 5,200만 달러의 4.8%에 불과한 수준이다. 2014년 3월까지의 투자실적은 총 38건, 1억 2,500만 달러(투자금액기준)를 기록 중이다.

대인도 투자 업종 중 제조업이 전체 투자금액의 59.7%를 차지하고 있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두 배 이상 진출하였으나 투자금액 비중은 대기업이 54.3%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인도 투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진출이 가속화되어 대기업 위주의 투자에서 점화 변화해 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나. 연도별 투자동향

우리나라의 대인도 투자는 1980년도부터 개시가 되었으며, 본격적인 투자는 1996~7년부터 시작되었다. 이 시기에 LG전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의 투자가 개시되었으며, 이러한 대규모 추세가 1998년까지 이어졌다. 이로 인해 한국은 상당기간 인도의 주요 10대 투자국 안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으나 그 이후로 약 8년간 투자가 미미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2006년경 BRICs, Chindia라는 신조어와 함께 인도가 신시장 개척 대상지로 주목을 받게 되면서 대인도 투자는 다시금 전성기를 맞게 된다.

그러나 2008년 말 세계적인 경제위기의 여파가 우리나라에도 강한 충격을 주면서 해외 투자심리가 극도로 위축되었으며, 그 여파가 2008~2009년 기간에도 계속 영향을 미쳐 2011년도에 다시 회복세를 보이다가 2012년 상반기에 인도 정부의 반기업적 정책 추진으로 인한 외국 기업들의 우려 및 급격한 인건비의 상승, 불안한 경제 상황, 루피화의 하락 등으로 인해 외국인 투자유입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홈쇼핑 시장의 성공으로 포스트 차이나로 일컫는 인도시장에 진출하는 유통업체들의 러시가 거세지고 있다. 2011년 3월 홈쇼핑 업계 1위인 GS샵과 KOTRA가 국내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인도 시장 진출에 대한 MOU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GS샵과 KOTRA는 국내 우수 중기 상품을 적극 발굴해 HomeShop18을 통한 현지 판매를 지원하기로 하여, 상생(win-win)을 통해 국내기업들의 수출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한은행은 뭄바이 및 뉴델리 지점에 이어 첸나이 인근 벵갈로르 지역에 3번째 지점을 개설했으며, 우리은행도 2012년 4월 19일 첸나이에 지점을 개설하여 인도 시장 진출 거점을 마련하였다. 2012년 6월 19일에는 국민은행이 인도 내 두 번째로 큰 은행이자 최대 민영은행인 ICICI 은행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동월 20일 뭄바이에 사무소를 개소하였다. 기업은행도 2012년 11월 22일 노이다에 지점을 개소하였다.

우리의 대인도 연도별 투자 현황

연도	신고건수	신규법인 수	신고금액(백만$)	송금횟수	투자금액(천$)
2005	75	33	113	117	91
2006	154	68	153	228	100
2007	205	85	328	353	296
2008	215	64	288	323	189
2009	128	44	342	215	241
2010	168	53	199	234	198
2011	172	61	650	220	452
2012	177	50	440	239	286
2013	163	36	594	196	541
2014(1~3월)	34	8	62	44	124
누계	2,066	723	4,841	2,846	3,447

주 : 총계는 1980~2014년 3월 기준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2014년 3월 확인 가능 정보)

다. 대인도 투자의 특징

□ 제조업 위주의 투자

업종별로 구분할 때 제조업 투자가 대부분이며 2005년~2014년 3월까지 제조업 투자금액은 21억 8,966만 달러로 전체 투자금액의 86%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인도 산업구조가 서비스업 위주(53%)이고 인도로 들어오는 FDI도 상당부분을 서비스업에서 차지하고 있는 것과는 상반되는 점에서 특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의 대인도 업종별 투자 현황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 수	신고금액(백만 $)	송금횟수	투자금액(백만$)
총계	2,066	723	4,841	2,846	3,447
제조업	954	269	2,732	1,451	2,189
건설업	72	40	52	97	41
도·소매업	158	72	145	225	97
운수업	42	19	20	60	19
출판, 영상, 방송통신, 정보서비스	35	12	14	58	11

주: 2005~2014.3 실제투자기준 (총계는 1980~2014년 3월 기준)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우리나라 투자기업의 분포를 보면, 대기업 관련 기업, 대기업 협력업체(부품제조 및 납품업체) 그리고 기타(무역업, 개인사업, 제조업 등)가 전체 투자 건수를 삼분하고 있으며 대기업들의 진출 업종은 상사, 화학, 전자, 철강, 해운, 항공, 금융 등 다양하다. 기업규모 별로는 대기업이 약 19억 9,100만 달러, 중소기업이 약 4억 7,200만 달러로 대기업 위주의 투자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2014년 3월까지 투자금액기준) 중소기업 투자인 경우에도 대기업과 동반 진출한 경우가 많아 순수 독자진출은 많지 않은 편이다.

□ 대기업 위주의 투자

우리의 대인도 투자자 규모별 투자 현황

투자자규모	신고건수	신규법인 수	신고금액(백만$)	송금횟수	투자금액(백만$)
대기업	370	124	2,504	555	1,991
중소기업	773	225	558	1,154	472
총계	1,491	503	3,171	2,183	2,543

주: 2005~2014.3 실제투자기준(총계는 개인 및 비영리단체도 포함)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인도에는 인프라 개발을 위한 플랜트, 프로젝트에 대한 입찰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우리의 주요 건설업체들이 모두 진출해 있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다. 중소 협력업체들은 우리 대기업의 매출이 매년 급성장하는데 편승하여 안정적인 성장을 이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인도에 투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의 동향을 보면 주요 대기업들이 현지에서 거둔 성과를 바탕으로 재투자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LG전자는 1997년 인도 진출 이후 2012년 기준 뉴델리와 푸네에 각각 제1,2 생산공장 및 방갈로르에 연구소를 운영 중이며 제 3공장 증설을 계획 중이다. 또한 수위를 차지하고 있는 가전제품시장에서의 성과를 기반으로 인도 휴대폰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시키기 위해 2012년 말까지 현지에 휴대폰 대리점을 2,000개까지 늘린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현대자동차도 2012년 기준 인도 자동차 시장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지 수요에 대응하고자 2008년 2월 제2공장을 가동해 연간 생산량이 기존 30만대에서 60만대 수준으로 증대되었다.

삼성엔지니어링은 2006년 2월 뉴델리에 인도법인을 설립한 이래 2008년 인도 구자라티주에 에틸렌, 프로필렌 제조공장을 건설하였으며 동 프로젝트 후속공정으로 폴리에틸렌공장 건설을 진행 중이다.

□ 투자 업종의 다양화

우리의 대인도 투자의 또 다른 최근 동향은 투자업종의 다양화라고 말할 수 있다. 2012년 기준 중공업 및 제철업계(삼성중공업, 두산중공업, POSCO 등), 물류업계(한진해운, 현대글로비스 등), 금융업계(신한은행, 미래에셋 등)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인도에 진출해 있으며 동년 국내 홈쇼핑 1위 업체인 GS샵이 신규진출 하는 등 우리의 대인도 투자는 날이 갈수록 다양한 업종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포스코가 오리사주에 추진 중인 제철소는 총 투자액이 120억 달러에 이르는 대규모 투자로 2011년 1월 6년간의 우여곡절 끝에 인도 환경 부의 조건부 환경승인을 받았으나, 해당 지역정당,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착공되고 있지 못한 상태였다. 하지만 2012년 3월 한국에서 열린 양국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이 포스코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동년 6월 오리사 주정부가 프로젝트 1단계 추진을 위한 1,500에이커 부지 양도를 결정하여 프로젝트가 탄력을 받게 되었다. 또한 올해 1월 박근혜 대통령과 당시 인도 총리였던 만모한 싱의 정상회담에서 포스코의 인도 오리사주 제철소 건설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기로 합의하였다. 박 대통령이 인도 정부를 끈질기게 설득해 제철소 건설 관련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환경 인허가를 취득해 향후 제철소 건설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기대를 모았다. 이후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는 나렌드라 모디가 새로 집권을 하게 되면서 포스코의 인도 사업이 다시 시작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감돌았으나, 현재 오리사주 인도

국민당(BJP) 대표인 주알 아람이 포스코의 사업에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향후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동 프로젝트가 정식으로 착공되면 협력업체 약 150~200개사가 동반 진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우리나라의 대인도 투자 제 2의 전성기가 될 전망이다.

5. 한국기업진출현황

가. 인도진출 10대 한국기업

인도 진출 10 대 한국기업 리스트

회사명	투자연도	투자내역
LG전자	1997	디지털 가전 등
현대 자동차	1997	자동차 제조
삼성전자	1997	디지털 가전 및 반도체 등
포스코	2005	철강제품 제조
신한은행	2006	금융서비스
미래에셋	2007	금융서비스
스타리온	2001	가전 부품 등
나인코	2003	디지털 가전 등
코텍전자	2001	가전, PCB 등
라이페 콤텍	2006	휴대폰 부품 등

자료: KOTRA 2009/10 해외진출 한국기업 디렉토리

나. 지역별 진출동향

인도 진출 우리 기업체는 지역별로 델리 약 166개사, 첸나이 165개사, 뭄바이, 푸네 82개사, 구자라트 인근 81개사, 방갈로르 28개사, 부바네스와르 1개 사, 기타 지역 4개 사 등 약 443개 사(2013년 12월 기준)이다. 최근 진출업체는 주로 LG전자 및 삼성전자 공장이 있는 델리 인근과 현대자동차 공장이 있는 첸나이, 뭄바이 인근에 집중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정부 유관기관으로는 KOTRA 무역관이 뭄바이, 뉴델리, 첸나이, 방갈로르 등 4개 지역 등 3개 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며, 한국수출입은행이 2004년 5월 델리 사무소를 개설하였고, KOTRA(뉴델리무역관)내 수출인큐베이팅 센터(2006년 11월 개소), 무역보험공사(2007년 초 개설) 등이 있다.

지역별 진출기업 현황

지 역	기업수	주요 업종		주요 기업
델리 인근	166	전기·전자 건설·중공업 자동차·기계 무역·물류 금융 컨설팅 화학 기타	31 30 13 27 9 12 8 36	LG,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두산중공업, 쌍용건설, 삼성물산, POSCO, 수출입은행, 신한은행
첸나이	165	자동차 및 부품 건설 제과 전기전자 무역·물류 금융 기타	91 13 1 9 13 38	현대자동차, 롯데제과, 삼성전자, 한진해운, 두산 중공업, 롯데건설, 만도
뭄바이. 푸네	82	제조업 건설, 공사업 운송· 물류 도소매· 유통 서비스 금융보험 광산, 자원개발 기타	39 6 10 12 9 2 2 2	현대중공업, 신한은행, LG전자 뿌네 공장, CJ-STAR
방갈로르	28	제조업 통신업 건설업 농업, 임업 도매, 소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기타 서비스업	10 8 1 1 5 1 1 1	LG(소프트웨어, CNS), 삼성 연구소, 삼성전기, 두산 인프라코어, SK 하이닉스
부바네스와르(오리사)	1	제철	1	POSCO
기타 지역	4	화학, 제약, 발전 등	4	LG 화학, 한전기공. 대웅제약
계	443			

주: 델리, 첸나이, 부바네스와르, 기타지역 – 2013년 12월 기준
뭄바이, 방갈로르 – 2014년 3월 기준

자료: KOTRA 뉴델리, 뭄바이, 첸나이 무역관, 방갈로르무역관

□ 델리 지역의 한국기업 진출현황

델리 지역은 뉴델리와 노이다, 구르가온을 포함한 지역을 말하며 삼성전자, LG전자를 비롯한 각종 전자관련 기업들과 이 밖에 건설, 제조, 유통, 항공, 수송, 무역 등 다양한 기업들이 진출해 있다. 델리 동쪽 외곽에 위치한 노이다와 서쪽에 위치한 구르가온, 마네사르 등지가 제조업 투자지로서 각광받고 있다.

델리 지역 분야별 진출기업 현황

산업 분야	기 업 명
전자	삼성전자, LG전자, 인코텍, 무일정보통신, 삼미사운드, 삼화콘덴서, 유콤 테크놀로지, 세라젬의료기, 아진시스템, 엘리아킴, 연호전자, 이랜텍, 일진전자, 지레전자 등
상사	대우인터내셔널, 삼성물산, ㈜쌍용, LG상사, 현대종합상사 등
항공 및 수송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건설	현대건설, 삼성물산 건설부문, 대림산업, 두산중공업, 삼성엔지니어링, 쌍용건설, GS건설, 포스코건설, 삼호건영, SK건설, 대우건설, 한전기공
제조 (전자분야 제외)	현대자동차(영업본부), 포스코, 로템, 만도소프트텍, LS전선 등
제약 및 의료	LG생명과학, SD 등
화학	한화석유화학, LG화학 등
유통	CJ, GS홈쇼핑, 락앤락 등
금융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기업은행 등
연구소	포스코 경영연구소 등

자료: KOTRA 뉴델리 무역관

□ 첸나이 지역의 한국기업 진출현황

첸나이 지역은 현대자동차와 그 협력업체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1차 협력 업체뿐 아니라 2, 3차 협력업체가 같이 동반 진출하였으며 현대자동차의 증설과 관련 추가로 진출하는 업체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인도 진출 현대자동차 협력사 리스트 - 총 44개사

기업명	주요생산품	기업명	주요생산품
모비스	프론트샤시, A/S	삼송	시트벨트
다이모스	시트조립	에스엘	램프,트림/새시부품
씨와이뮤텍	스티어링 휠	NVHI	자동차내장재
대림	인에니폴더	우수기계	엔진부품등
대성	전장품, 다기능S/W	우진공업	점화플러그, 산소센서
대승	자동차엔진	유신정밀	엔진,샤시,프레스등
대원강업	자동차부품	이원정공	엔진,샤시 등
동아공업	가스킷류	인지	필터류

기업명	주요생산품	기업명	주요생산품
동아 인디아	고무부품	상신브레이크	브래이크 패드 및 라이닝
두원	에어컨시스템	일진	엔진&티엠부품
만도	브레이크부품	광진인디아	자동차부품
명화공업	휠디스크등	대원 인디아	자동차 스프링, 스테빌라이저 바
MS오토텍	차체부품	KFTI	연료부품
포레시아 인디아	자동차 머플러, 컨버터	코모스	스티어링 등
태양금속	자동차용볼트	화승	고무&PVC,저압호스
평화산업	방진호스류	원진	자동차 에어컨 부품
한국음향	스피커	경신	와이어링 하니스
한일오토	범퍼, 도어트림	광진	도어레귤레이터
한일튜브	브레이크튜브, 파이프	샤다세종	모터류
현담산업	연료부품	성우	차체대물부품
평화정공	도어랫치,소물프레스	INFAC INDIA	자동차 케이블류
현대 위아	자동차 부품(드라이브샤프트)	아사히글라스	자동차 유리

자료: KOTRA“주요국의 자동차 부품시장 현황 및 진출 방안”, 일부 업데이트

첸나이 지역에 위치한 투자진출 기업 중에서 자동차와 관련되지 않은 기업으로는 삼성전자, 시티은행, 우리은행, 롯데제과, 한진해운, 두산인프라코어 등이 있다. 첸나이가 위치한 타밀나두 주는 점차 제조업 투자기지로 각광받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으로의 투자가 계속 늘어날 전망이며, 이 지역에 진출한 외국기업으로는 노키아, 모토롤라, 도요타, 포드 제조공장 등이 위치하고 있다.

□ 뭄바이 지역의 한국기업 진출현황

뭄바이 지역의 한국기업으로는 현대중공업, 신한은행, LG전자 제2공장, 대한항공 등이 있으며 뭄바이에서 약간 떨어진 뿌네 지역에는 LG전자 제2공장을 비롯하여 여러 기업의 제조업투자가 계속되고 있다. 자동차 분야에서 뿌네 지역에 생산기지를 설립한 GM India를 대상으로 자동차 부품을 생산, 공급하는 협력업체의 진출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유통분야에서는 홈쇼핑 분야에 CJ사가 인도 Star와 합자한 StarCJ India가 2009년 10월부터 인도 전역의 가정집으로 홈쇼핑 채널을 방송하고 있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부터 홈쇼핑 전용 채널을 신설하고 인도 최초의 24시간 홈쇼핑 채널을 방영 중이다.

뭄바이, 뿌네 지역 분야별 진출기업 현황

산업 분야	기 업 명
전자	LG전자, 하나프로테크, 동일 알루미늄, 디지콘전자, 셀텍, 스타리온, 나인코, 오성전자, 에버전자 등
상사	삼성물산, SKC, OCI상사, 한화무역, 대우인터내셔널 등
항공 및 수송	고려해운, 대한항공, 한진해운 등
건설	두산중공업, 현대중공업 등
자동차	동신모텍, 동원테크, 디비아이, 성우하이텍, 에스엔티대우 등
기타 제조	포스코, 엘지화학, YG-1, 글로텍몰드 등
유통	StarCJ 등
금융	신한은행, 미래에셋 등

자료: KOTRA 해외진출 한국기업 디렉토리 및 일부 업데이트

□ 방갈로르 지역의 한국기업 진출현황

아직 방갈로르는 한국기업에게 생소한 지역으로써 진출한 한국기업의 수는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적은 편이나 최근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방갈로르 지역의 한국기업으로는 크게 연구개발소와 제조기업으로 나누어지는데 소프트웨어 연구개발소로는 LG SI, SRI-B, KIST, NIPA가 있으며 기타 연구소로는 두산인프라, 농우바이오가 있으며 제조분야으로는 이랜드(의류), 오토리브(자동차), 현대로템(철도) 등이 있다. 방갈로르에 진출한 외국기업으로는 IT분야의 HP, Yahoo, Dell, Intel, MS 사 등과 자동차분야의 도요타, 볼보 제조공장 등의 기업들이 진출해 있다. 안드라프라데쉬 주의 하이데라바드에서 제조 및 연구개발을 진행 중인 대응제약은 향후 방갈로르에 영업지점을 개설할 계획이다.

방갈로르 지역 분야별 진출기업 현황

산업 분야	기 업 명
연구·개발 (SW, 종자 등)	LG SI (soft India),SRI-B(Samsung Research Institute India-Bangalore), 두산 인프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국과학기술원(KIST) 등
제조(기계·의류 등)	오토리브, 이랜드, 창원정밀, YG-1 등
유통(소비재 등)	돌(Dole), 케네스어패럴, 인트라고 등
기타	LG CNS, 대웅제약 등

자료: KOTRA 해외진출 한국기업 디렉토리 및 일부 업데이트

6. 투자진출 성공실패사례

가. 진출 성공 사례

□ LG 전자

1997년에 인도에 진출한 LG전자는 뉴델리 인근 노이다 지역에서 TV, 냉장고, 전자레인지, 세탁기, 에어컨 등 주요 가전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뭄바이 근처 뿌네에서는 핸드폰 등을 생산하고 있다. 현재 LG는 인도소비자에게 가장 사랑 받는 가전, 디지털전자 메이커로 인식되고 있으며, 2008년 매출액이 INR 14,750 crore (24.52 억달러)에 달하는 등 매년 20~30%의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LG전자는 끊임없는 현지화 전략을 통해 부품의 현지조달 확대와 원가절감을 달성하고 현지화된 제품을 출시하고 있기 때문에 고성장을 이루어 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LG전자의 성공은 전사적인 차원에서 인도시장을 생산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집중적인 투자를 한 결과라고 분석되고 있다.

LG전자 인도법인의 진출과정 및 사업성과

97년 2월	LGEIL 설립 (LG Electronics India Ltd.)
98년 4월	컬러TV, 에어컨 생산 개시
98년 7월	세탁기 생산 개시
99년 8월	전자레인지 생산개시
01년 5월	모니터 생산개시 (에어컨 시장점유율 1위 달성)
03년 7월	컴프레서 생산개시 (냉장고 시장점유율 1위 달성)
03년 9월	LCD모니터 생산 개시
04년 1월	데스크톱 PC생산개시
04년 10	뿌네 (뭄바이 근처) 공장 건립
05년 4월	뿌네공장에서 핸드폰 (GSM) 생산
06년 6월	인도 최초로 광학드라이브 생산 공장 뿌네에서 건립
07년 1월	2006년 PC 모니터 100만대 판매 기록
07년 4월	뿌네 공장에서 LCD 텔레비전 생산개시
09년 1월	2008년 매출액 1070억 루피 달성 (약 22억 7,700만 달러)
13년 12월	150억 루피 투자 계획 발표 및 가전부문 830억 루피 매출액 달성 목표

자료: LG전자

기존 인도업체(오니다, 비디오콘 등)나 글로벌 기업(소니, 파나소닉)이 유통망과 AS서비스 망을 직접 구축하여 운영하는데 비해, LG 전자는 인도 현지 채널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전략을 통해 지방이나 농촌을 포함한 인도 전역에 제품 공급 및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었다.

LG전자의 지역거점은 46개소, 지역사무실은 124개소에 달하며 딜러는 3,200개, 간접 딜러(Sub Dealer)는 8,700개에 달한다. 또한 서비스 거점은 전국 2,700개소에 달해서 다른 경쟁기업들을 압도하고 있다.

끊임없는 현지화 전략을 통해 부품의 현지조달 확대와 원가절감을 달성하고 인도 소비자에게 맞게 바꾼 제품을 출시하여 인도인에게 친숙한 이미지를 심는데 성공하였으며, 한편으론 고급 이미지 구축과 전사적인 차원에서 인도시장을 생산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집중적인 투자를 한 LG 전자는 2013년 기준 인도 전자시장에서 LG전자 인도법인은 주요 생산품목에서 1-5위 수준을 기록하며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다. 현재 LG전자는 인도 전자제품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1, 2위 경쟁을 벌이고 있다.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LG전자는 글로벌 영업비용 절감을 위해 인도법인을 유럽 등의 수출거점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중동, 네팔, 부탄 등 외 추가로 유럽과 중앙아시아로까지의 수출 거점 역할을 하도록 하는 역할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LG 전자 인도 법인은 2013년 LG의 대인도 투자 규모가 2억 2988만 달러가 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향후 3년 이내에 38억 3126만 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할 것을 전망한다고 언급하였다.

□ 삼성전자

1995년에 인도에 진출한 삼성전자는 뉴델리 인근 노이다 지역에 TV, 냉장고 등 주요 가전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 뉴델리 서쪽 구르가온에 핸드폰공장을 설립(2006.3월)하여 가동 하고 있다. 삼성전자 역시 LG전자와 마찬가지로 인도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으나, 시장점유율이나 매출 면에서 LG전자보다 약간 뒤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LG 전자와는 달리 가전뿐만 아니라 반도체, 네트워크분야 등 다양한 사업영역을 확보하고 있고, 최근 그룹 차원의 인도 진출 확대전략을 모색하고 있어 인도에서의 고급브랜드 이미지를 유지하고 다양한 신규분야에서 시장 내 수위를 점하려는 다양한 신규전략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인도는 아직 이동통신시장에서 3G 서비스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인도 주요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3G 서비스 제공을 위한 네트워크 장비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중국과 인도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기반산업인 통신산업에 중국산 장비의 도입을 꺼리고 있는 인도 정부의 입장을 고려할 때 삼성은 와이브로(모바일 와이맥스) 시장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는 평가이다.

삼성전자는 서남아 총괄체제를 유지하여 인도뿐 아니라 네팔,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몰디브, 부탄 등 서남아 지역의 판매를 총괄하고 있으며 서남아 총괄은 인도 뉴델리에 위치해 있다. 뉴델리 서남아 총괄을 중심으로 19개의 지점오피스를 전국에 걸쳐 운영하고 있으며 2007년 10월부터 첸나이 제2공장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하였다.

삼성전자의 고용규모는 약 1,600명이며 이 중 18%정도가 연구 개발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삼성전자 인도법인은 SIEL(Samsung India Electronics India), STS(Samsung Telecom India), SISO(Samsung India Software Operation), SISC(Samsung India Software Center) 등의 개별 조직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상위개념으로 서남아 총괄(South West Asia Regional HQ)을 운영 중이다.

삼성전자는 인도 전자기기 주요 생산품목에서 1-5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프리미엄 TV 시장 점유율 48%를 기록하고, 2011년 9월부터 스마트폰 부문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였다.

□ 현대자동차

1997년 말 인도에 진출한 현대자동차(공장은 첸나이 인근 소재)는 진출 2년 만에 인도 소형차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등 인도시장에서 확고한 기반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06년 3월 생산 개시 8년 만에 100만 번째 차량을 생산하였는데 이는 인도의 최단기간 기록을 갱신한 것이다. 이러한 성공은 인도시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는 물론 여타 경쟁사의 진출과정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무엇보다도 열악한 도로 여건, 높은 기온, 저가 모델 선호 등 인도시장 특성을 고려한 모델을 개발하고 효과적인 마케팅 및 AS망 구축이 성공의 주된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현재 현대자동차는 소형차 부문에서 한국모델 아토스를 현지에 맞게 변형시킨 SANTRO, the Getz Prime, i10과 인도에서 해치백 부문에서 인기가 높은 i20, 준중형차 부분에서 Accent(한국 모델명 베르나), Verna, 엘란트라(한국 모델명 아반떼)와 소나타 트랜스폼 등 54개 차종을 생산하고 있으며, 인도 전역에 걸쳐 260개의 딜러 망을 갖추고 있다. 2008년 2월 첸나이에 생산능력을 60만대 수준으로 늘리기 위한 증설작업(제2공장)을 완료하였다.

현대자동차는 인도에서 2번째로 큰 자동차 조립업체이면서 최대의 승용차 수출기업이다. FY2013-14년 기준 현대자동차는 380,253대의 차량을 판매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0.9%감소한 수치이다. 하지만 2014년 자동차 소비세(Excise duty)완화 정책으로 인해 판매량 증가 하고 있다. 2014년 3월에는 전년동기 대비 3.38%증가한 35,003대를 판매하였다. 이는 2013년에 출시한 i10의 판매 호조가 영향을 미친것으로 분석된다.

□ SD제약

SD제약의 주력 제품은 값비싼 검사장비 없이 혈액 한 방울로 HIV, 말라리아, 간염 등의 질병 감염 여부를 15~20분 안에 간편하고 정확하게 검사할 수 있는 신속 진단 Kit이다. 이러한 진단 시약류는 국내에서는 시장규모가 작은 반면에 해외시장은 규모가 커서 창업 당시부터 해외 마케팅에 주력하였다. 각종 국제 전시회를 통하여 해외 많은 국가에 딜러 망을 구축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인도의 딜러가 초기에 높은 성과를 거두었다. 현지 딜러는 SD제약 제품을 판매하면서 얻은 이익을 SD제약 제품에 대한 영업에 투자하지 않고 다른 회사 제품의 판매 확대에 투자를 하였다.

인도는 판매단가가 낮은 반면에 관세와 운송비 비중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운송비와 관세만으로도 공장을 운용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여 현지에 공장을 설립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다. 거대한 인구, 만연한 질병, 고가의 검사 장비를 구매하고 운용하기 어려운 경제여건 및 전력 공급의 부족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한다면 SD제약에서 생산하는 전염성 질환 진단용 신속진단시약은 인도시장에서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객관적인 여건은 갖춘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여건이 SD제약제약에게 쉽지는 않았다. 우선 인도 현행 법규에 따라 진단용 시약 제조업 허가를 받고 품목 허가를 빠르게 받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그래서 인허가 절차는 인도 현지인 컨설턴트 2명과 계약을 하여, 한 사람은 공장 인허가, 다른 사람은 제품 인허가를 담당하였다. 제품 인허가 컨설턴트가 이쪽 분야의 전문가인데다가 인맥도 좋아서 SD제약제약이 예상한 시점에 모든 인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인허가가 복잡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이 문제를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영업 조직을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지방의 누구와 독점 판매권 계약을 해야 하는지도 문제였다. 우선 핵심인력을 헤드헌터를 통하여 스카우트하여 영업, 재무, 총무 조직을 인도인으로 갖추었고 한국에서 지사장과 생산 책임자로 2명의 직원을 파견하였다. 그리고 현지 영업 책임자를 통하여 지방 대리점을 구성하도록 하였다. 인도 현지 사정을 잘 아는 인도 사람이 영업 조직을 만들고 지방의 영업사원을 채용하기 시작하였고, 주요 구성원 3명에게는 특별한 대우를 해주었으며 한국으로 불러서 일정기간 반복 교육도 실시하였다.

HIV, 말라리아, 뎅기열, 매독, 간염 검사 Kit 등 SD제약의 주요 제품이 이미 WHO를 비롯한 권위 있는 기관들의 임상 평가에서 세계 최고의 품질을 인정받아 WHO, UNICEF, USAID, Clinton Foundation 등의 국제기구 및 아프리카 각국 정부 납품을 포함하여 전 세계 140여 개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원료에서 완제품까지 자체 생산하는, 세계에서 유일한 업체로서 인도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인도 시장은 현지 제조업체들이 국가기관과의 커넥션, 저가 공세 등으로 강력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배타적인 시장이며, 대리점을 통한 단순 판매에만 의존할 경우 고객 지원, 판매대금 회수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진 시장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SD제약은 현지 생산뿐 아니라, 영업망도 직접 구축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인도 지사에서 근무하는 한국 직원과 훈련된 인도 직원 그리고 한국에서 직접 파견된 마케팅 직원 등이 인도 전역에서 연평균 50~60여 차례의 제품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공공 및 민간 부문의 고객들과 직접 접촉하고, 인도 내의 권위 있는 병원 및 임상기관에 임상 평가를 의뢰하여 품질의 우수성을 객관적으로 검증 받고 영업활동 및 고객 지원, 불만 처리 등을 직접 수행하여 고객들의 신뢰를 쌓았다.

이런 적극적인 활동으로 SD제약 제품을 접한 고객들이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하면서 SD제약은 인도에서 2007년 250만 달러, 2008년 750만 달러, 그리고 2010년 2,000만 달러 매출을 기록하는 등 매년 60~70%의 빠른 성장세를 기록하며 짧은 기간에 인도 진단시약 업계 1위 업체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현재 인도에서 가장 만연한 질병인 말라리아의 경우 연간 약 2천만 Test를 생산, 판매하여 95% 이상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으며, 2009년에는 외국 업체로는 최초로 그 동안 현지 업체들이 독점하던 인도 중앙정부의 HIV 150만 Test 입찰을 수주하였기 때문에 향후 정부입찰 시장 에서도 시장을 크게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05년 200만 달러를 투자하여 델리 근교의 Manesar 공단에 제조 공장 건립을 시작한 SD제약은 2007년 인허가 절차를 마치고 제조 판매를 시작하였다. 현재 Manesar 공단에는 영업과 재무 회계를 각각 담당하는 2명의 한국인 직원 외에 100여명의 인도 현지 생산직 사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인도 전역에서 40여명의 영업사원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매출의 급격한 증가로 새로운 생산 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며 영업 인력도 100명 이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현재 인도에서는 지식재산권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많은 치료용 의약품 업체가 설립되고 있는데, 이런 회사들 중에서 SD제약의 현재 사업과 관련된 치료제 업체를 1-2년 내에 인수 합병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SD제약에서는 전염성 질환 진단시약에서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예방 백신, 치료제 사업으로 영역을 확대하여 질병의 예방, 진단, 치료 등 인류의 보건 향상에 기여할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로 발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 성화산업

성화산업은 발전소용 고온 고압의 배관 및 배관 지지대를 제작 수출하는 업체이다.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그 인지도가 높은 회사로, 세계 굴지의 발전소 건설업체인 SIEMENS, ALSTOM, TOSHIBA 등의 배관 주 공급자로 인정받고 있다. 중동, 유럽에 집중 되어 있는 시장의 다변화를 위해, 인도, 아프리카, 미국으로의 진출을 모색하던 중, 인도 진출의 중요한 발판을 맞이하였다.

현재 인도는 경제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발전용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발전소 건설 계획을 쏟아내고 있다. 대표적으로 UMPP 즉, Ultra Mega Power Project 를 정부 주도 하에 시행하여, 필요한 전력량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는 물론 주정부까지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인도 내 대기업들은 개별 발전소 건설 계획을 발표하고, 자금 확보를 위해 기업공개를 실시하는 등, 예상되었던 인도 내 발전소 건설의 붐은 현실이 되었다.

가격 중시 시장인 인도는 품질이 중요한 발전소 건설에도 값싼 중국산 자재를 사용하여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었다. 그러나 중국산 자재 사용 발전소들이 하나 둘, 품질 문제를 드러내고 있고, 석탄 및 천연가스 공급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열효율이 높은 SUPER CRITICAL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려 하는 등, 인도 내 발전소 건설 시장에 변화가 일고 있고, 고효율의 발전소 건설을 위해서는 고품질의 발전 부품의 사용 및 핸들링 기술이 요구 되어, 가격보다는 품질 중시의 시장으로 점점 변해가고 있는 상황이다.

성화산업은 이러한 인도 발전시장을 분석하여,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고온 고압용 배관 및 배관 지지대를 수출하고자 인도 시장으로 진출을 모색하게 된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UMPP 중 하나로, TATA POWER에서 건설 중인 MUNDRA PROJECT의 배관 입찰에 참가하였고, 1년간의 협상 결과로 올해 미화 약 6,800만 달러 계약을 수주하였다. 이 계약에는 현지 건설부분도 포함되어 있어, 2009년 7월 인도 뭄바이에 SEONGHWA CONSTRUCTION INDIA PRIVATE LIMITED로 법인설립을 완료하였고, 건설 현장인 MUNDRA에 PROJECT 사무실을 개설하였다.

인도 회사들의 아주 TIGHT한 NEGO 특성 및 관세 문제를 포함한 복잡한 세금 관련 문제들로 초기 사업 정착 및 프로젝트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지속적인 인도시장 분석을 통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다.

TATA POWER 외에도 NTPC, ADANI POWER, JWS ENERGY, BHEL 등의 많은 인도 고객들도 거래를 희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화산업은 MUNDRA PROJECT을 계기로 본격적인 인도 발전시장 조사 및 영업 업무를 확대 할 계획이다. 현장 작업자를 포함하여 총 60여명에 이르는 본사 직원을 파견하여, 우수한 품질 및 서비스 공급자로써의 성화산업 의 이미지를 고객에게 심어주어 향후 추가 수주를 위하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현재 전력 수요량에 턱없이 부족한 발전량으로 인해, 현재 진행 중인 UMPP 프로젝트 (4,000MW 급 발전소)가 10여건이 추가로 남아 있는 상황이므로, 인도 내 영업 강화를 통해서, 그 수주량을 증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미국 암웨이사

인도에서 대박을 내고 있는 세계 최대 다이렉트 네트워킹 마켓 리더인 미국의 암웨이사는 인도에서 성공비결을 철저한 현지화로 자체분석하고 있다. 즉, 글로벌 모델 인도에서 통용 안되며, 변화와 도전에 항상 적응할 자세 중요하다는 것이다.

암웨이사는 사람관리, 고객접점 중시, 더블 브랜드, 현지계약 생산으로 배달기간 대폭 축소하여 경쟁자들을 앞서가고 있다.

암웨이 인디아의 핀크니 사장의 지론은 외부에서 개발돼 수입된 비즈니스모델은 인도에서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암웨이는 인도문화와 인도인 정서에 맞는 인도 모델을 발 빠르게 개발해 시장을 치고 나가고 있다.

인도시장에서는 5개 상품카테고리(퍼스널 케어, 홈 케어, 뉴트리션 및 웰니스, 화장품, 그레이트 밸류)에 115개 제품을 마케팅하고 있다. 이 중 뉴트리션 및 웰니스 분야 제품 매출이 50%를 차지하고 있다.

암웨이 인디아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네트워크베이스 강화를 위해 2013년까지 지사를 150개 늘려 총 300개 지사를 운영할 계획이다. 매출은 2015년간까지 연평균 25%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신제품도 매 6~8개 출시할 계획이다. 암웨이는 지난 2~3년 동안 소비자 접근과 인지도를 개선하는데 노력을 집중한 결과, 매출액이 2007년 80억 루피에서 2009년에는 141억 루피로 늘어났다. 또한, 픽업 센터인 지사의 질이 대폭 개선됐고 고객들에게 더 많은 좋은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최근 암웨이사는 55억 루피를 투자해 남인도 타밀나두 주(州)에 최초의 암웨이 인도 생산공장을 건설할 계획을 밝혔으며 생산공장 설립을 위해 타밀나두 주정부와 MOU를 체결하고 공장 건설이 예정대로 추진되면 오는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제품 생산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암웨이는 생산공장 건설 추진과는 별개로 뭄바이, 푸네, 콜카타 등 인도 전역에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해 인도에 특화된 상품을 생산하고 점유율 확대에 주력할 계획도 밝히는 등 대인도 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암웨이 인디아는 2013년 판매량 1,180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전년 1,130억 달러에서 약 50억 달러 가량 증가한 수치이다. 개인 사업자 수는 15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도에 1998년 진출한 이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암웨이 인디아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연평균 성장률(CAGR) 20%를 기록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시장 점유율 38%를 기록하며 업계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최근 약 6900만 달러를 들여 남인도 마두라이에 자체 생산시설 시공에 착수하는 등 인도 시장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인도에 시공되는 생산시설은 본토인 미국 외 중국 다음으로 큰 두 번째 규모의 생산공장으로 자사의 인도 국내 수요량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규모이다.

나. 진출 실패 사례

□ 미국 엔론사

1992년 미국 엔론사는 마하라슈트라 주정부와 투자액만 28억달러에 이르는 인도 최대 화력발전소(Dabhol Power Co., DPC) 건설계약을 체결하며 인도에 진출하였다. 동 계약체결은 당시 사상최대규모의 외국인 투자로 관심이 집중되었으나 결과적으로 엔론사는 새 집권정당과의 마찰로 약 10억달러의 투자손실을 입고 진입에 실패하였다.

엔론사의 인도 진출 실패의 직접적 원인은 집권당 교체로 인한 정치적 리스크였으나 엔론사의 경영안전장치가 정치리스크를 키운 화근이 되었다. 엔론사는 자사 리스크를 최소화 하고자 계약체결 시 자사에 유리한 조항(대금의 미 달러 지불, 연방정부가 주정부의 대금지급을 보증, 20년간 운영권 보장 및 국유화 조치 불가 등)들을 다수 포함하여 특혜 시비를 일으켰다. 특히 환경영향평가를 면제 받은 점은 농민과 환경단체는 물론 일부 정치인들까지 엔론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촉발시킨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인도 국민당이 집권하게 되면서 엘론사가 이전 인도 국민회의와 체결한 수의계약에 지나친 특혜가 있었다며 동 계약건을 무효화하였으며, 이러한 조치에 엔론사가 몇 가지 조항을 수정하며 합의점을 찾는 듯 보이는 듯 보였으나 주정부가 설계사양의 문제점을 근거로 엔론사에 벌금을 부과하였다. 이로 인해 결국 엘론사의 미국 본사 파산과 맞물려 발전소 건립 프로젝트는 무기한 중단되며 엔론사는 외국 기업 인도 진출의 대표적인 실패사례로 기록되었다.

□ 대우자동차

대우자동차는 1994년 DCM 도요타를 인수하며 인도 시장에 진출하였다. 기 진출해 있던 마루티스즈키사가 소형차 시장을 선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우자동차는 중형차 중심의 진출전략을 세웠으나 결론적으로 대우자동차는 수요예측의 실패와 인도 비즈니스 및 사회 문화를 잘못 이해하여 현지 시장 진출에 실패한 대표적 사례로 기록되었다.

첫 번째로 대우자동차는 철저한 시장조사 보다는 예약판매로 시장수요를 파악하고자 하였고 여기에 11만명이 몰리자 설비능력을 연 10만 대 규모로 확대하였다. 그러나 실제 구매로 이어진 예약판매가 1만대에 불과하였으며 위기를 맞게된 대우자동차는 부품 현지화를 통한 원가 절감으로 이를 타개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엔진 트랜스미션공장을 신축하는데 10억 달러의 투자금이 추가로 소요되었고 결국 과도한 투자액은 자동차 판매 부진으로 인해 대우자동차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두 번째 실패이유로는 인도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당시 인도인들에게 예약판매는 생소한 개념으로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예약률의 10%가 채 되지 않으나 대우자동차는 이를 조기에 파악하지 못하였다. 또한 계급문화가 여전히 존재하고 자존심을 중요하게 여기는 인도 특유의 문화를 무시하고 현지관리직에서 공장 바닥청소를 시키는 등 한국식 직장문화를 강요하여 현지직원들에게 큰 반발을 샀다.

결국 대우자동차는 초기의 과도한 투자 금액을 회수하지 못하고 본사의 파산까지 맞물려 2001년 조업중단 및 청산절차에 들어갔다.

7. 주요 투자법 내용

가. 개요

인도정부는 지속적인 고도성장과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부족한 국내 재원을 보완하고 선진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외국인 직접 투자(FDI)의 유치가 필수적이라고 인식하고, 투자개방 및 투자환경개선 조치를 꾸준히 취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에 필요한 정부승인을 차츰 줄여나가 현재는 대부분의 산업군에 있어 정부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자동승인제도를 정착시켰으며 정부승인이 필요한 산업군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개방을 단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통신부문의 외국인투자 지분 상한선을 49%에서 100%로 조건부 상향 조정하였으며, 신용정보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지분 상한선을 49%에서 74%까지 높였다. (2013년 7월). 또한 소매업에 대해서 일부 개방(단일 브랜드에 대한 100%까지 투자 허용, 멀티브랜드에 대해서는 51% 허용)이 단행되었다. 이외에도 외국인 투자가 제한되는 영세기업 고유업종의 수를 줄이는 등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지속하고 있다.

외국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투자 장애 요소들은 인도의 노동법, 외국인투자 지분 제한(유통업, 통신업, 보험업 등), 부동산 취득 및 개발의 제한, 인프라의 부족 등이며 이 중 어떤 한 가지도 속 시원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인도정부는 아직 남아있는 투자 제한 산업에 대한 점진적 개방, 각종 대형 인프라 개선사업의 시행(Ultra Mega Power Project, 공항개선 사업, 지하철 사업)을 통해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2년 1월 10일 인도산업정책진흥위원회(DIPP)에서 발표한 인도 소매유통시장의 단일 브랜드 사업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 100% 허용 확정 공표로 인해 단일 외국 브랜드가 인도 시장에서 100% 소유권과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단, 100% 단일 브랜드 사업 투자 시 원료 및 제품 구입의 30%를 현지의 사업규모 100만불 이하의 소규모 영세기업으로부터 구입을 해야 하는 조항이 있어 해외 기업들이 인도정부에 현실적인 개선을 요청하였다.

실제로 2014년 5월 들어선 인도 신정부는 국방, 철도, 보험업 분야에 대해서 FDI를 많게는 100%까지 승인하겠다고 발표한 바 적극적인 투자규제 완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일부 분야에 대해 FDI 100%개방을 승인했다. 국방 분야는 조건 별로 기술전수를 하지 않는 기업에게는 49%까지, 기술 및 노하우를 전달하는 기업에게는 74%까지, 이밖에 최첨단 기술·장비 및 현대화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기업에게는 100%까지 허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2014년 8월 FDI확대안을 승인했다. 철도의 경우, 인프라 확충을 공약으로 내건 신정부의 의지를 반영하며 기존 대규모 고속운송 시스템에 한해 승인했던 FDI의 상한선을 100%까지 확대했다. 보험업은 기존 26%에 머물던 것을 제한적이기는 하나 49%까지 확대했다.

그러나 신정부는 소매 멀티브랜드 FDI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파격적인 FDI 개방정책을 기대하는 것은 시기상조로 보인다. 이러한 입장은 국내산업 및 영세상인 보호가 그 목적인데, 현재는 지난 정부의 승인을 통해 영국의 TESCO만이 인도 내에서 대형 상점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4년 4월 인도 산업정책진흥위원회(Department of Industrial Policy and Promotion, DIPP)에서 발표한 FDI정책안내에 따르면, 단일 브랜드의 경우, 외국인직접투자 100% 허용을 유지하고 있어 외국 브랜드가 인도 시장에서 100% 소유권과 경영권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한 상태이다. 단, 100% 단일 브랜드 사업 투자 시 원료 및 제품 구입의 30%를 현지의 사업규모 100만불 이하의 소규모 영세 기업으로부터 구입을 해야 하는 조건이 있어 해외 기업들이 인도정부에 현실적인 개선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도정부는 이러한 단일 브랜드의 현실적 개선, 급감하는 재정적자 회복, 만모한 싱 전 총리가 이끄는 여당의 지지율 회복 등의 대정부 비난 여론을 되돌릴 목적으로 2012년 9월, 멀티브랜드 소매업 FDI를 전격 승인하였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인 '보스턴 컨설팅 그룹'은 이번 인도정부의 멀티 브랜드 소매업 개방 결정으로 인해 향후 3년간 160억 달러의 대인도 투자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멀티 브랜드 소매업 FDI 개방은 2011년 11월 24일에 전격 승인했다가 여론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으나, 이번에는 개방을 원하는 주(州)에 한해 개방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현재 마하라슈트라, 안드라 프라데시, 하리야나, 라자스탄, 마니푸르, 히마찰 프라데시 총 6개 주가 멀티 브랜드 소매업 FDI를 개방 하였다.

인도정부는 총 FDI 투자금액의 50%는 투자가 결정된 후 3년 내에 가공, 제조, 유통, 디자인 개선, 품질관리, 포장, 물류, 저장, 물류창고, 농업 생산 인프라 등 제반 인프라를 뜻하는 'Back-end Infrastructure'에 투자해야 한다는 조건을 명시하여 장기적으로 소매 유통관련 제반 인프라 구축이 활기를 띄게 되고, 투자자들에 의해 제반 인프라가 구축됨으로써 농산물 수확량이 증대되어 농민들의 수입 자체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열악한 저장시설 환경과 품질관리 미흡으로 제반 분야의 괄목할 만한 성장은 실현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멀티 브랜드 소매업 FDI 발표 시, 외국 투자자들의 100% 단일 브랜드 소매업 투자를 힘들게 하는 100% 투자 시 적용되는 조달 규정을 특별한 기술을 요하거나 정밀한 부품 조달이 필요한 경우 자국 조달이 힘들다는 점을 반영하여 특정 품목에 한정해 자국 조달 규정 철폐를 고려할 것을 시사하였다. 이 외에도 기존의 특정 브랜드의 소유주와 대인도 투자 주체가 동일해야 한다는 규정 설정으로 인해 브랜드 소유주와 투자 주체가 다른 경우가 많은 글로벌 단일 브랜드 소매업체들의 대인도 투자에 제한으로 작용되어 왔던 조항을 브랜드 소유주와 투자 주체가 다르다 하더라도 합법적인 승인을 받으면 브랜드의 소유주 여부에 관계 없이 투자가 가능하도록 수정하였다.

나. 외국인 직접 투자(FDI) 제도

□ FDI 승인의 종류

FDI에 대한 승인은 정부 사전승인이 불필요한 자동승인과, 정부(외국인 투자진흥 위원회, FIPB)의 사전승인이 필요한 FIPB 승인의 두 종류가 있다. 대부분의 제조업 및 서비스 분야에 대해 외국인 투자 장려 목적으로 절차 및 시간을 간소화 한 자동승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반면 FIPB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외국인 투자는 아래와 같다.

- ○ 담배 제조
- ○ 전자, 우주항공 및 방위 산업
- ○ 영세기업 고유 업종(Small Scale Sector)으로 유보된 산업(24% 지분까지는 승인 없이 투자 가능)
- ○ 이미 인도에 합작 투자, 기술 이전.상표권 계약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가 기존 투자.기술 협력과 동일한 분야에서 신규 투자.기술협력을 추진하는 경우(Press Note 1, 2005 Series)
- ○ 업종별 정책 또는 지분제한 범위를 벗어나거나 FDI가 허용되지 않는 업종인 경우

□ FDI 승인 절차

자동승인 대상 투자의 경우 인도중앙은행(RBI) 지방사무소에 인도로의 송금 수령 후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주식 발행 3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자동으로 투자가 승인된다.

정부승인대상투자의 경우, 외국인투자자가 서식(FC-IL)을 작성하여 재무부(Department of Economic Affairs(DEA))에 제출(재외 인도 대사관에 제출도 가능)하면 되고, 이는 일반적으로 접수 후 15일 이내에 외국인투자촉진위원회(FIPB)로 이송되어 검토 되며, 통상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 결정이 내려진다. 한편 투자 주체가 NRI(Non Resident Indian)이거나 수출촉진지역(EOU)에 대한 투자인 경우 혹은 소매업(단일 브랜드)에 대한 투자인 경우는 FIPB가 SIA로 서류를 제출하게 된다.

한편 정부 승인을 득하면 자동승인제도와 마찬가지로 송금 수령 후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RBI에 통보하고, 주식 발행 3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역시 RBI에 제출해야 한다.

□ 2010-11 회계연도 FDI 규정 관련 변동사항

투자 유치정책이 사실상 없다고 하는 것이 맞는 인도는 투자 금지 또는 제한을 완화하는 것이 투자 유치 정책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 수준으로 투자 유치정책은 부재한 상황이다. 인도 투자정책을 관할하는 DIPP(산업진흥정책국)에서는 2010-11 회계연도를 맞아 그간 중구난방식으로 발표되었던 회람(Circular)을 단일 형태로 정리해 발표하였다. 동 종합 외국인투자정책은 그간 투자 가능여부가 모호했던 분야에 대한 투자 허용 또는 제한을 명확히 함으로써 불 투명성을 제거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신규 투자 금지 분야로는 기존에 규정된 투자금지 영역에 영세기업 투자 영역(Chit Fund 사업, Nidhi Company 등)과 부동산 중개업, 대규모 전원 주택(Farm House) 개발업, TDR 중개업 등을 추가 투자 금지 분야로 지정하였으며, 신규 금지지정 사업분야는 기존 진출한 우리기업과는 별 관련이 없는 분야이다.

투자 규정 변동 분야는 이하와 같다.

○ 유전자 재조합 기술사용을 포함한 제약업 전반: 관련 규제가 불분명한 분야였으나, 금번 정책 발표를 통해 100% 자동승인루트로 투자가 가능해졌다.

○ 광고 및 영상 제작업: 영상 제작을 위한 금융 조달, 제작, 유통, 배급, 전시, 마케팅 및 기타 영상제작업에 수반되는 각종 활동에 대한 투자는 100% 자동승인루트로 가능하다.

○ 방송업 중 신규 방송 형태인 HITS(Headend-in-The-Sky) 항목: 직접투자뿐 아니라 포트폴리오 투자를 통한 모든 간접투자까지 최고 74%까지 투자 가능, 49%까지는 자동승인루트로 투자가능하며, 그 이상은 DIPP 승인사항이다.

○ 사업서비스업: 데이터프로세싱, 소프트웨어 개발, 컴퓨터 컨설팅 서비스, 소프트웨어 공급 서비스, 사업경영컨설팅 서비스, 시장조사서비스, 기술테스팅 및 분석 서비스 등 사업 서비스는 자동승인루트로 100% 투자가 가능하다.

○ 재화선물거래소: 직접투자 26% 상한 및 간접투자 23% 상한으로 최고 49%까지 DIPP 승인 하에 투자가 가능하다.

○ 신용정보회사(CIC): 간접투자의 24% 상한 속에 총 외국인 투자가 49% 이하로 DIPP 승인 하에 투자가 가능하다.

○ 의료서비스기관: 100% 자동승인루트로 투자가 가능하다.

○ 벤처 캐피탈 펀드: 100% 자동승인루트로 투자가 가능하다.

○ 석유, 천연가스 분야: 공공부문에 투자할 경우 DIPP 승인 조건 투자상한이 기존 26%에서 49%로 상향조정하였다.

○ 고급 연구개발서비스 기업 또는 R&D 센터, 학위과정 교육기관: 자동승인루트로 100% 투자가 가능하다.

○ 민간보안기관: 49%까지 DIPP 승인 하에 투자가 가능하다.

○ 창고저장업: 콜드체인을 포함한 각종 창고저장업, 100%까지 자동승인루트로 투자가 가능하다.

○ 특수 운송 및 운송지원서비스: 파이프라인 운송, 수자원 운송 등의 운송서비스와 이를 위한 관련 운송지원서비스의 경우 100%까지 자동승인루트로 투자가 가능하다.

□ 2011-12 회계연도 FDI 규정 관련 변동사항

인도정부는 기존 ECB(외국상업자본차용)/일시금수수료/로열티 항목만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했다. 그러나 인도정부는 2010년 9월 추가 항목을 발표하고 해당 항목의 주식 전환 포함 여부를 논의해왔는데 비 현금 항목의 주식 전환을 자유화해 사업 수행을 완화 하고 투자매력도 상승을 목적으로 다음 조건 하에 주식 발행을 허가하기로 결정하였다.

(a) 자본재, 기계 설비류, 중고기계 설비류를 포함한 장비 (b) 작동 전/법인설립 전 비용 (임대비용 포함)

다운스트림 투자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기존 투자회사/운영회사/투자 겸 운영회사 세 가지 카테고리에서 기업소유/인도인 통제 두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해 종합적으로 간소화되고 합리화되었다.

□ 2012-13 회계연도 FDI 규정 관련 변동사항

2012년 4월 10일 발표된 2012-13회계연도 FDI 규정은 2011-12회계연도 대비 큰 변동사항은 없었으나 이후 2012년 9월까지 총 7번의 주요 FDI 규정 수정안을 발표하였다. 이 중 가장 주목되는 FDI 규정 변동사항은 단일 브랜드 소매업 FDI 100% 개방과 기존 규정 완화 및 멀티 브랜드 소매업 FDI 51% 허용으로 인한 소매업에 대한 FDI 전격 개방이다.

단, 100% 단일 브랜드 FDI와 같이 51% 멀티 브랜드 소매업 FDI도 원료 및 제품 구입의 30%를 현지의 사업규모 100만불 이하의 소규모 영세기업으로부터 구입을 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 외에도 국내선 수송기에 한해 49%의 FDI를 승인함으로써 인도정부는 국내 항공산업에 대한 FDI도 개방하였으며, 방송분야에서도 텔레포트, DTH, 케이블 네트워크, Mobile TV 등에 대하여 기존 49%까지 허용되었던 FDI 허용을 74%까지 상향 조정하였다. 인도정부는 2012년 8월 1일 인도중앙은행(RBI) 승인을 통한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투자자의 FDI를 일부 허용하며 재정적자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외자유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 2013-14 회계연도 FDI 규정 관련 변동사항

2014년 6월 5일부로 인도중앙은행은 보험분야 FDI 규정을 수정하였다. 외국인직접투자(FDI)를 포함한 외국기관투자(FIIs) 및 해외간접투자(FPI)가 26%까지는 정부의 자동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멀티브랜드 소매업의 경우, FDI 50%이상 유입 시 초기투자금액 1억 달러(US) 이상, 물품 조달 시 최소 30% 이상 인도 영세업체 제품 사용 등 제한을 두고 있어 여전히 자국시장 보호에 중점을 두는 것을 엿볼 수 있다.

다. 산업 허가제

인도정부는 산업법(Industries Act, 1951)에 의거하여 산업 허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산업 허가를 얻어야 하는 대상은 점차 축소되고 있는 추세로서 아래 3가지 경우이다.

○ 산업 허가가 필수적인 업종
- 주류, 담배, 전자우주항공 및 방산품, 산업용 화약, 유해화학물질
○ 영세기업 고유 업종
○ 입지 제한을 받는 지역

□ 산업 허가

산업 허가 신청은 Form FC-IL을 작성, 상공부 산업지원국(SIA: Secretariat of Industrial Assistance)에 작성 제출하면 되고, 산업허가의 취득이 면제된 경우에는 SIA에 IEM (Industrial Entrepreneur Memoranda)을 제출하여야 한다.

오염 관리 조치로 발생하는 화학약품 혹은 재생 가능한 부산물이 영세기업용으로 지정될 수 있다. 정부는 오염 관리 조치를 채택할 목적으로 이러한 지정품목에 대한 수출 의무 부과 없이 산업 허가 취득 신청이 필요하다.

기업주는 사업 수립 시 오염 통제와 환경에 관련하여 법적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1986 년의 환경보호법에 의거한 공시(94년 1 월 27 일자의 SO 60(E))에는 인도환경청으로부터 취득되어야 할 환경 허가와 관련된 30 여 개의 사업목록이 제시되어 있다.

이 목록에는 석유화학 단지, 정유공장, 시멘트, 화력 발전소, 벌크 약제, 비료, 염료, 제지 등의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만일 투자액이 10억 루피 미만의 경우 제조업종이 살충제, 벌크약제, 제약품 또는 석면포와 관련 제품, 합성 페인트 단지, 광산 개발업, 일정 조건의 관광 개발, 히말라야 지역의 타르 도로공사, 증류소, 염료, 유리 공장이나 전기 도금 사업이 아닌 경우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허가는 불필요하다.
더욱이 영세 산업의 투자액이 천만 루피 미만인 경우, 그 사업은 중앙 정부에 공지 한다는 조건 하에 환경 허가 취득이 면제될 수 있다. 화학 발전소의 일부 부문에 대한 환경허가권이 주 정부에 위임되었다.

생태학적으로 매우 민감한 장소(예: 아라발리 레인지(Aravalli Range), 해안, 둔벨리(Doon Valley), 다하누(Dahanu) 등 에서의 산업 활동에 대해서는 인도 환경청이 마련한 별도의

지침이 존재한다.

□ 영세기업 고유 업종

5,000만 루피(약 11억 원) 미만 투자 기업은 영세기업(SSU, small scale unit)으로 분류되며 주정부의 산업국에 등록하면 영세기업으로 특혜를 받게 된다. 즉 영세 기업 은 영세기업 고유 업종으로 유보된 품목을 모두 생산할 수 있고, 입지 선택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외국인투자 기업이 SSU를 설립할 경우 납입 자본의 24% 이상 투자할 수 없고 이 이상의 투자를 원할 경우 정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영세기업 고유업종 품목에 대해 일반기업도 산업허가를 얻어 제조 및 영업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생산품의 50% 이상을 수출해야 한다.

인도정부는 영세기업 고유 업종의 수를 점차 축소하는 추세에 있는데 2007년 3월 기준으로 114개에 이르고 있다. (업종 내역은 부록 참조)

□ 입지 제한(Location Restrictions)

1991년 인구 센서스 기준, 인구 100만이 넘는 23개 대도시의 경계(Standard Urban Area Limit)로부터 25㎞ 이내에 입지하는 경우에는 산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1991.7.25 이전에 산업지역으로 지정된 곳인 경우와 전자, 컴퓨터 소프트웨어, 출판, 기타 비공해산업으로 지정된 산업은 예외로 함)

2011 센서스 상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지역

ㅇ Mumbai(12,478,447), Delhi(11,007,835), Bangalore(8,425,970), Hyderabad(6,809,970), Ahmedabad(5,570,585), Chennai(4,861,087), Kolkata(4,486,679), Surat(4,462,002), Pune(3,115,431), Jaipur(3,073,350)

라. 투자 장려/금지/제한 분야

□ 투자 장려 분야

인도정부가 투자를 장려하고 있는 분야는 제조업 및 인프라 개발 관련 분야로, 대부분의 제조업 및 서비스 분야에 대해 외국인투자가 자유화된 상태이다. 이와 관련 대부분의 제조업 은 외국인투자를 100% 허용하고 있다.

인프라 개발 관련 투자에 대해서는 단순히 100% 단독투자를 허용한다는 차원을 넘어 상당한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 여기에는 법인세 감면, 자본재 수입 시 관세면제 및 감면 등

여러 가지 혜택이 포함되고 있다.

대표적인 인프라 개발 분야는 발전(원자력 제외), 송전, 배전, 고속도로, 유료 도로, 교량, 항만, 호텔 및 관광, 도시 개발 프로젝트, 주택 건설 등이다.

대규모 투자에 대해서는 해당 주정부와 직접 협상이 가능하며, 이때 제공되는 인센티브는 투자 규모, 고용 창출 효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게다가 신정부가 내세웠던 인프라 확충 공약으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다. 신정부는 특히 도로 관련 프로젝트에 대해 40-50억 달러 규모의 투자기금 조성을 논의 중이다. 이에 일본 및 한국 기업들이 관심을 표명하였고, 정부는 민관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 중심 프로젝트 진행 의사를 밝혔다.

□ 외국인투자 금지 분야

외국인 투자 금지 분야는 투기 도박, 복권 비즈니스, 대부, 주택 및 부동산, 소매 유통, 원자력 에너지 업종이다. 단, 부동산에 대해서는 도시개발 사업, 주택 건설 등 일부 사업은 허용하고 있다.

□ 외국인투자 제한 분야

인도는 각 업종별로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해 투자 금지 및 허용, 승인 종류, 외국인투자지분 상한선 설정 등 다양한 제한을 두고 있다.

인도의 산업별 FDI 제한 현황 요약

제한 종류	해당 업종
투자금지업종	- 도박, 복권, 소매업(단일브랜드는 51%까지 가능) - 2008 년 정부통지 제 3 호(프레스노트 3)로 인정된 부동산개발 건설업이 외의 부동산 관련 사업 - 원자력, 철도 - 소매업(단일브랜드 판매를 제외)
개별출자비율 상한규제/ 가이드라인 있는 사업 (예시)	- 은행(자동인가율로 74%까지 출자가능. 기존 민간은행에의 출자에도 동일. 외국은행은 100% 출자한 자회사 설립도 가능 등) - 비은행(지정된 19 업종에 대해서는 직접투자가 인정, 100%출자도 가능하지만 출자비율에 따른 최저자본금액이 규정됨) - 공항(공항지상업무의 경우 자동인가율에 따라 74%까지 가능, 49%를 초 과한 출자는 개별인가 취득이 필요) - 택배업(편지배달을 제외, 개별인가취득 조건으로 100% 출자가능) - 출판매체(뉴스·시사분야는 26%까지 출자가능)

제한 종류	해당 업종
	- 방송(세부분야별 지분제한 있음) - 석유(정제 이외)정제품 판매업, 소규모 중규모 석유개발업, 석유 파이프 라인은 자동인가율로 100% 외자출자가 가능. 단, 별도 정한 조건,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함 - 석유정제, 천연가스 및 LNG 파이프라인분야는 49%까지 자동인가 - 주택·부동산개발(일정규모 이상의 토지개발·건물건축을 수반하는 부동산 업은 정부 가이드라인 준수조건으로 100% 출자인정/미개발 토지 판매, 건물 전매 등은 불허) - 원자력개발(일정 업무조건으로 74%까지 출자가능. 74% 초과시 원자력 위원회 인가가 필요. FIPB 의 개별인가취득 조건) - 농업(플란테이션 포함): 직접투자가 인정되지 않음. 홍차농원에 대해서는 외자규제를 완화, 개별인가취득을 조건으로 100%까지 외자출자가능. * 커피 및 고무 가공·창고업은 자동인가율로 100%까지 출자가능 - 약품·의약품(라이센스취득이 의무인 일부 약품·의약품, 유전자 조작기술, 특정 세포배양기술을 제외하고는 100%까지 자동인가

2013년 7월 인도정부의 FDI 규제 완화 내용

분야	투자한도	승인방식
통신	74%→100%	~49%: 자동승인, 49-100%: *FIPB 승인필요
단일 브랜드 소매업	100%	~49%: 자동승인, 49~100%: FIPB 승인필요
보험	26%→49%	~49%: 자동승인
국방	26%	현재의 투자한도를 유지하되, 첨단기술 제조 기업에 한해 26%이상 투자 시 *CCS 의 승인을 통해 추가투자가능
자산재건회사	74%→100%	~49%: 자동승인, 49-100%: FIPB 승인필요
신용정보회사	49%→74%	~74%: 자동승인
운송서비스	100%	~100%: 자동승인
전력거래	49%	~49%: 자동승인
석유정제, 천연가스	49%	~49%: 자동승인
부동산재건축회사	74%→100%	~49% 자동승인, 49%-100%: FIPB 승인필요
차 농업(차 플랜테이션 포함)	100%	~100: FIPB 승인필요
상품거래	49%	~49%: 자동승인
보안업계 인프라회사	49%	~49%: 자동승인

주 1: FIPB(Foreign Investment Promotion Board, 외국인 투자진흥 위원회)

주 2: CCS(Cabinet Committee on Security, 보안각료위원회)

자료: MCI(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상공부) DIPP(Department of Industrial Policy & Promotion, 산업 정책 진흥부)

□ 투자제한분야 최근 변경사항

최근 인도정부는 국가안보 강화를 위해 총 10개 분야의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자동 인가율에서 사전 개별 인가율을 적용하도록 외국인투자제도를 변경키로 하였다.

2개 트랙으로 나누어 공항, 항만 등 8개 분야에 대해, 외국인출자비율이 49%를 넘어설 경우, 그리고 위험 화학 물질 등 2개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인출자비율과 관계없이 자동인가 대신 개별인가를 밟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①외국인투자지분 49%를 넘어설 경우 외국인투자 진흥 위원회(FIPB: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Board)가 개별 투자 신청 건 별로 세밀하게 사전조사를 하여 인가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 중 공항, 항만, 제약, 헬리콥터, 석유정제, 가스 파이프라인, 특사운송, 수로 등 8개 분야는 현재까지 100% 외국인투자도 자동 인가율이 적용되어 왔던 분야이다. ②위험화학물질, 산업용 폭약등과 같이 위험물질 생산 및 취급 분야의 외국인 투자는 외국인투자지분 비율에 관계없이 100% 개별인가품목으로 변경예정이다.

FIPB(외국인투자진흥위원회)는 투자분야가 자동인가품목이더라도, 민감 리스트에 해당 하거나 조세회피지역 자금이라면 승인권한을 보유하고, 특정 국가의 FDI 제한은 필요 시 파키스탄뿐만 아니라 타국 지정도 가능하다.

민감 분야에는 항만, 공항, 항해, 통신, 국제장거리통신 ISP, 정유, 석유, 원유 탐사, 해운, 도로, 부동산, 국방, 제약 등이 있다.

재무적 투자안에 대한 차관급위원회는 FDI 제안서가 민감 리스트에 해당되는지 상세 조사를 하며, 안보기관관계자도 이 위원회에 참가한다.
트리거 리스트(제동리스트)는 투자가, 투자분야, 투자대상지역(중국, 파키스탄과 국경 분쟁지역인 잠무 카쉬미르 등)을 포함한다.

경계점 도달 FDI 기준에 대해 관계부서, 규제당국이 더욱 상세한 조사지침을 마련한다.

다이내믹한 체크를 한 다음 투자 인가 건도 사후 취소를 허용한다.

외국인투자(국가안보관련)법은 중앙 정부가 국가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FDI 보다 우선임을 명시한다.

마. 기술협력

인도 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도정부는 FDI 또는 기술협력을 통한 기술도입을 장려하고 있다. 여기서도 자동승인 또는 정부사전승인의 양 제도가 사용되고 있다. 자동 승인을 위해서는 인도기업의 지불금 총액이 200 만 달러 미만이어야 하고 지불금이 국내 매출의 5% 이하, 해외 수출액의 7% 이하 이어야 하며 투자가 자동승인으로 허용된 산업이어야 한다.

바. 투자방식

인도 회사법(Company Companies Act 1956)에 의거하여 설립되는 모든 회사는 책임 제한 유무에 따라, 무한책임회사(Unlimited Company)와 유한책임회사(Limited Company)로 나뉘며, 유한책임회사는 책임제한방법에 따라 보증책임회사(Company Limited by Guarantee), 주식유한회사(Company Limited by Shares)로, 주식의 공모 여부에 따라 비공개회사(Private Company)와 공개회사(Public Company)로 나뉜다.

○ 책임제한유무

주주의 책임과 관련하여, 인도 회사법 역시 우리나라 상법의 회사편과 같이 무한책임회사는 주주의 책임이 제한되지 않고 유한책임회사는 주주의 책임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그 내용이 동일하다.

유한책임회사 중 보증책임회사의 주주는 사전에 정해진 금액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게 되며, 주식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주주 소유 주식의 한도에서 책임을 지게 된다.

○ 주식의 공모 여부

공개회사 (Public Company)와 비공개회사 (Private Company)의 주요 차이점은 주식의 양도 제한 유무로, 공개회사의 경우 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비공개 회사의 경우, 주식의 양도가 제한된다.

공개회사는 최소 자본금이 천만 루피이며 최소 7인의 주주와 최소 3인의 등기이사가 필요 하고 주주의 수에 있어서 제한이 없으며 사업계획서(prospectus)의 작성 및 주주총회 개최 가 의무화되며 총회결과는 정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공개회사 이사인 경우 보수수준은 회사 순이익의 11%를 넘지 않아야 하는 바, 배당을 통한 본국 송금이 제한 될 수 있다.

비공개회사는 주주의 수가 50인 이하로 제한되며 최소 2인의 주주와 최소 2인의 등기 이사를 확보해야 한다. 비공개회사의 경우 회사설립 직후에 주식의 배분이 가능하며 사업개시 역시 설립 직후 가능하다(공개회사의 경우 회사설립 후에도 사업개시증명서를 발부 받아야만 사업개시 가능). 사업 계획서의 작성이 불필요하며 주주총회개최도 자유롭다. 주식의 양도는

정관 부속서류에 의해서만 가능하며(Article of Association) 그렇지 않을 경우 제한된다. 비공개회사는 공개회사와는 달리 이사를 매년 교체할 필요가 없고 이사의 보수에 대해서도 제한이 없다. 따라서 배당을 통한 송금 역시 자유롭다. 비공개회사의 최소 자본금은 10만 루피 이상이며 회사 명칭에 India 가 삽입되면 최소 자본금이 50만 루피 이상이어야 한다.

이와 같은 인도 회사법상의 각 회사 종류에 따른 차이에 따라, 외국인은 인도 내 현지법인 설립 시 주식유한회사이면서 비공개회사로 설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인도는 대부분 품목을 인도중앙은행(RBI)을 통한 자동승인(Automatic Route) 품목으로 지정해 놓았으며, 이 경우 ROC 등록을 통해 법인설립이 가능하며 부가행정처리는 담당부처를 통해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자동승인품목이 아닌 경우는 법인설립 이후 재무부 산하 FIPB(Foreign Investment Promotion Board)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제조업인 경우는 공장등록 등의 허가와 신고가 추가된다. 한편 자동승인 품목일지라도 투자지분의 한도가 정해진 업종은 합작 파트너를 통해 합작투자를 해야 하며 품목별 자동승인여부 및 투자지분한도는 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한다.

설립형태	투자승인절차	사후절차
- 지사 - 프로젝트 오피스 - 연락사무소	RBI FNC-1 양식	
- 현지회사(Indian Company)	자동승인(Automatic Approval)	
- 합자회사(Joint Venture) - 완전자회사		RBI 신고 FC-GPR 양식
- 무한책임(unlimited) - 보증책임(limited by guarantee) - 주식 유한(limited by shares)	정부허가 FIPB FC-IL 양식	
- 비공개(private) - 공개(public)	설립절차(설립등기, 환경심사, 산업허가, IME 제출)	

사. 투자진출형태

1) 투자형태별

기본적으로 인도에 투자 진출하는 형태는 다른 나라와 동일하다. 진출형태로는 현지법인, 지사,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가 있고, 특정 프로젝트만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프로젝트 사무소가 있다.

□ 현지법인

현지법인은 말 그대로 인도의 회사법(company Act)에 따라 설립되며, 인도 국내기업으로 인도기업과 동일한 지위를 지닌다.

○ 단독 투자자회사(WHOLLY OWNED SUBSIDIARY)

현재 인도에서는 현지법인 설립을 고려하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대부분의 제조업은 몰론, 인프라 서비스업에 대해서도 투자 개방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어 원칙적으로 투자제한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이 100% 허용된다.

○ 합작 투자(Joint Venture)

현지 법인 설립을 결정한 후 100% 직접투자가 가능한 업종이라 하더라도, 투자를 고려하는 기업별 사업 여건 등 경우에 따라서는 합작투자를 고려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다. 보편적으로 해외 진출에 있어 합작투자보다는 단독투자의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인도의 경우에는 오히려 반대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종교 및 인종의 다양성과 문화의 이질성 등 우리나라와 다른 요소가 상대적으로 많은 나라가 인도로, 오랜 신뢰 관계를 구축하여 파트너와 협조 관계가 원만하다는 확인을 바탕으로 합작을 해도 진출 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러므로 51% 이상의 지분을 확보한 경우라도 실제 의사 결정에 있어 파트너와의 갈등으로 결정이 지연되거나 무산 되는 경우가 흔하다. 자본재, 플랜트, 기술 등을 좋은 조건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투자 진출의 경우, 이러한 합작투자의 문제점을 한번 더 고려해보아야 한다.

단독투자를 희망한다 하더라도, 의무적으로 합작투자만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인도 자국 산업 보호 육성을 위해 투자 지분을 제한하고 있는 업종으로의 진출이 그러한 경우이다.

100% 외국인 투자가 허용되지 않고, 투자 상한 등 일정한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는 업종은 아래의 22개 업종으로 이 경우에는 제한된 지분 내 합작 투자로만 투자 진출이 가능하다. 1)공항, 2)광물, 3)농업(플랜테이션 포함), 4)방송, 5)석탄/갈탄, 6)국내 항공, 7)방위/전략 산업, 8)위성 설치/가동, 9)주택/부동산, 10)인프라 스트럭쳐 및 관련 서비스, 11)보험, 12)복권 및 도박, 13)광업, 14)비은행 금융회사, 15)석유, 16)우편, 17)인쇄매체, 18)민간은행, 19)통신, 20)무역, 21)도시개발사업, 22)벤처 캐피털

구체적 제한은 크게 금지 업종 6개, 26% 한도 4개, 49% 한도 4개, 74% 한도 7개, 조건부 100% 10개로 각각 구분되어 있으며, 업종별 외국인 지분 한도 및 적용되는 구체적인 활동(activities)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DIPP 홈페이지 (http://dipp.nic.in)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금지 업종은 합작 투자도 불가능한데 그에 해당하는 6개 업종으로는 투기 도박업, 복권 비즈니스, 대부업, 주택 및 부동산업, 소매 유통업, 원자력 에너지, 농업이며, 농업은 화훼, 원예, 종자 개발, 축산, 양어, 버섯 등 채소 재배 등은 금지 업종에서 제외된다.

□ 지사(Branch Office)

지사는 말 그대로 외국기업의 인도 지사로서의 지위로, 기본적으로 외국기업이라 할 수 있다. 인도는 외국기업과 인도기업 간 법인세율에서 외국기업에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지사 또한 당연히 법인세에 있어 외국기업에 적용되는 세율을 적용 받는다.

지사는 법인이 아닌 인도에 있는 외국기업으로 간주된다. 외국기업 지사의 활동은 인도 중앙은행에 의해 제한되며 지사의 역할은 본사를 대신한 구매 및 판매 에이전트 활동, 조사 활동, 수출입 업무의 수행, 인도기업과 기술 및 자본 협력 추진, 전문 컨설팅 서비스 제공,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정보 기술 서비스 제공, 본사에서 공급한 제품에 대한 기술 지원으로 한정된다.

지사는 인도에서 실질적인 비즈니스를 수행할 수 있으며, 납세의 의무를 진다. 그러나 지사 사무소는 물품의 제조 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1949 년 인도 은행법에 따라 인도에 지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인도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사는 세금을 납부한 후 발생한 이익을 인도 은행을 통해 송금할 수 있으나 사전에 인도 중앙 은행의 외국환 관리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편 인도에 지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인도 기업법에 따라 규정된 서류를 사무소가 설치될 주정부의 기업 등록청(ROC)과 뉴델리에 있는 기업 등록청 본청에 각각 제출 해야 하며, 지사가 등록된 이후 매년 회계서류를 기업 등록청에 제출해야 한다.

□ 사무소

이들 사무소의 형태는 기본적으로 사업 및 활동의 범위에 따라 정해진다. 연락사무소와 지사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은 지사의 경우 영업 행위가 가능한 반면 연락사무소는 단순 연락 업무 또는 시장조사 등의 업무만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지법인은 통상 진출 국가의 국내기업으로 등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국내 법인과 동일한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현지에서 직접 생산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연히 현지 법인 설립이 전제되어야 하며, 100% 외국인 직접투자 기업이라 할지라도 인도 국내 기업으로 간주된다.

국가에 따라서 차이는 있으나 인도의 경우 영업상의 측면이나 조세부담, 기타 국내법 및 제도의 적용에 있어 지사와 현지법인이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지법인으로 등기하는 경우 현지법인의 활동에 관계된 채권자, 노동자 등 이해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사에 비해서 여러 가지 제한이 가해진다. 그러한 제한이 주어지는 만큼 법인은 거래, 자금 조달 등에 있어 지사에 비해 우월한 지위를 갖게 된다. 한편 인도정부는 지사는 제조 활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조업 투자 진출의 경우 현지법인 설립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연락 사무소, 지사, 프로젝트 사무소 등의 사무소는 인도중앙은행의 사전승인 없이 부동산을 획득할 수 없으며, 최장 5년 한도 내에서 부동산의 임차는 허용된다.

○ 연락사무소(Liaison 또는 Representative Office)

외국기업들의 경우 인도와의 비즈니스를 개시하기 위하여 초기에는 연락사무소를 개설 하는 것이 보통이나 인도에서 직접 상거래를 수행할 수는 없다. 연락 사무소는 사업 기회의 발굴이나 제품 홍보 등을 위하여 개설되며 인도에서 일체의 상업적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매출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연락사무소는 납세 의무를 지지 않는다.

또한 연락 사무소는 커미션을 받거나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 사무실 에서 집행하는 모든 비용은 해외에 있는 본사에서 송금되어야 하며 연락사무실을 철수 할 때에도 인도로부터의 자금 인출은 일체 금지된다.

인도에서의 연락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외국환관리법(India's Foreign Exchange Management Act, FEMA)은 인도중앙은행은 연락사무소 설립을 승인하고, 승인 기간은 최초 설립 후 3년으로 연장이 가능하다.

기업등록청(ROC)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 정관, 재무제표 그리고 인도에 사무실 설립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인도 기업부의 회계규정의 완화로 인하여 연락 사무소는 전체 재무제표를 제출할 필요 없이 인도 기업법 594조에서 명시한 손익 계산서만 제출하면 된다.

○ 프로젝트 사무소

외국기업이 인도에서 특정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하여 임시적으로 프로젝트 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다. 프로젝트 사무소는 기본적으로 특별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제한적인 목적으로 설립되며, 프로젝트 사무소에 대한 승인은 일반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건설 프로젝트, 인도정부 및 국제 금융기관 그리고 다국적 기관이 금융을 지 원하는 프로젝트에 한한다. 민간 프로젝트에 대한 사무소 개설은 예외적으로 승인 가능하다.

연락 사무소, 지사, 프로젝트 사무소 등의 사무소는 인도중앙은행의 사전승인 없이 부동 산을 획득할 수 없으며, 최장 5년 한도 내에서 부동산의 임차는 허용된다.

2) 투자 주체 별

□ 단독 투자, 합작 투자의 결정

일단 법인설립을 결정한 다음에는 합작투자를 할 것인가 단독투자를 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된다. 정부가 업종별 외국인 지분한도(equity cap)를 설정한 업종의 경우에는 현지 파트너와의 합작이 필수적이다. 100% 외국인 투자가 허용되는 업종의 경우를 살펴보면, 보편적으로 해외진출에 있어 합작투자보다 단독투자의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인도의 경우에는 오히려 반대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합작 투자 시 완전한 경영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76% 이상의 지분이 필요하다. 삼성전자 인도법인의 경우 최초의 합작투자에 실패했으나, 현재 단독투자로의 전환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가고 있다.

자본재, 플랜트, 기술 등을 좋은 조건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투자진출의 경우, 단독투자가 합작투자보다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법인 설립단계에서 참고할 투자관련 법규는 회사법, 노동법, 외환관리법 등으로 인도정부 각 부처 웹사이트에서 참고할 수 있다. 한편 인도 외무부에서 투자유치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에는 투자 관련 법규를 링크해 놓아 손쉽게 다양한 관련 법규를 참고할 수 있다.

자료: http://www.indiainbusiness.nic.in/investment/legislation.htm

□ 단독/합작 투자 별 고려사항

인도에 투자를 고려하는 기업들이 높은 기술수준과 인도 내에서 생산한 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을 경우, 가능한 한 합작보다는 100% 단독투자가 바람직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이유로는 인도시장에 밝은 현지 파트너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비즈니스 문화 차이 등의 문제로 인해 갈등 관계로 발전하여 오히려 기업 운영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자금, 기술력, 영업망, 인도정부의 단독투자 지분제한 등과 관련하여 비즈니스의 전개에 있어 인도 파트너가 필수적인 경우는 당연히 합작투자가 필요하나 단순히 영업, 생산, 물류, 관리

등 기업운영상의 편의를 위해 인도 파트너를 구하는 것이라면 차라리 현지 직원 채용을 통해 단독으로 꾸려나가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투자 별 전략 포인트

단독 투자	합작 투자
- 철저한 현지 시장 조사 - 인도 조세 및 법률제도 이해 - 판매망 구축을 위한 거래처 정보 확보 - 분야별 현지 전문가 및 전문기관 활용 - 현지 대학과의 교류를 통한 인적자원 확보 - 전문 부동산 업체를 통한 부지 및 생산기지 확보	- 파트너 기업배경, 재무상태 조사 - 인도 대기업과 합작 추진 - 지분율에 따른 전략 변경 필요 - 전문 법무법인을 통한 합작 계약서 철저한 검토 필수

자료: 각종 자료 종합

일반적인 경우 단독투자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단독 투자 시에는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시시각각 바뀌는 비즈니스 환경에서 신속한 의사결정은 생각보다 중요하다. 인도 기업과의 합작투자 시에는 한국기업의 의사와 무관하게 관련 의사결정이 한없이 지연되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시간에 대해 너그러운(시간을 무한하다고 여기는) 현지문화와도 연관되어 있다.

이 밖에도 세금관련문제, 이익의 본사송금문제, 기계설비 등의 도입, 공장건설 및 증설, 원부자재 도입, 노사문제 등 기업의 운영과 관련된 많은 측면에서 단독투자가 효율적이다. 현재 한국의 인도투자진출기업들은 거의 단독투자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합작투자 기업은 소수에 불과하다.

합작투자(J/V)의 장점 및 단점

합작투자(J/V) 장점	합작투자(J/V) 단점
- 인도정부 압력에 효율적 대처 - 투자 기업 위험 분산 효과 - 인도 기반시설, 자본, 자원 활용 - 외국기업 이미지 불식 - 시장 개척 용이성 (딜러 망 확보용이) - 정부 제공 국내 각종 혜택	- 경영권 확보 위한 지분문제(76% 이상) - 현지 경영환경 이해부족으로 인한 충돌 - 외국기업 핵심기술 유출 위험성 - 현지 파트너의 불필요한 경영참여 - 도덕적 해이로 인한 계약 위반 가능성 - 현지 파트너와 분쟁 시 조정 기간 장기화

자료: 각종 자료 종합

□ 합작투자 유의사항

투자지분한도 등의 제약이 있는 경우는 합작투자가 필수적이며, 기업성격상 합작 투자가 바람직한 경우에는 합작파트너의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합작투자를 포함한 중요한 협상은 항상 최고책임자와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대방이 실제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상대방이 대기업 계열사나 유력기업이라 주장할지라도 모든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합작투자계약 및 정관 등 서류상 법적 책임을 정확히 하고, 자본금납입 등과 관련된 조항과 미 이행 시 조치방법에 대해서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사회의 구성이나 사장(Managing Director)의 선임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인도에서는 51%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영권을 완전 장악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 이는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75%의 주주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즉, 75% 이상의 지분과 경영층 및 이사회를 장악했을 경우만이 경영권을 완전 확보하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대주주자격으로 합작에 참여 시 사장(Managing Director)자리를 양보해서는 안되며, 번갈아 가면서 사장을 임명하자는 요청에도 동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합작투자를 진행시킴에 있어 주요사항은 반드시 책임자와 협의하고 합의된 사항은 문서로 남겨야 한다. 구두상으로만 합의하고 사업을 추진 중 추후 문제 발생할 시, 인도 관련자들은 말을 바꾸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합작 성공사례 연구

기 업 명	합작연도	지분율	내 용
Suzuki and Maruti	1983	51:49	- 지속적인 성장 - 품질 개발 투자 - 생산비용 절감 합의 - 장기투자 합의 - 합작사 문화 이해 노력 - 인도 노동법 존중
Tyson Foods and Godrej Agrovet	2008	51:49	- Tyson Foods 생산기술 제공 - Godrej Agrovet 확보된 마케팅, 판매망 제공 - 고급 치킨 브랜드 이미지 강화 - 품질향상에 합의
Marks & Spencer and Reliance Retail	2008	51:49	- 단독 투자 제한 업종으로 합작 필수 - 5 년간 2,900 만 달러 투자 합의, 50 개 점포 확대 - 매장 크기 확대 - 인도에서 생산물 직접 생산 합의 - 시장성 성장 사업 인식

자료: 각종 언론기사 재구성

합작 실패사례 연구

기업명	합작연도	지분	내 용
Tata and IBM	1992	50:50	- 1999 년 합작 파기 - Tata 는 시장 확대 필요성, 직원 전문교육 필요성 - IBM 기술력 제공 - Tata IBM 매출: 1 억 6,500 만 달러(1998.4/1999.3) - IBM 이 Tata 모든 지분 인수, 100% 단독 회사 운영 - Tata 는 충분한 기술력 습득인식, 지분 판매
Samsung and Videocon	1998	74:26	- 2002 년 합작 파기 - 이익 배당 의견 불일치 - 경영방법에 대한 의견 불일치 - Videocon 지분 삼성 인수 - 인수가 약 300 크로 루피 (약 900 억 원) - 100% 단독 회사로 전환
Hotline Group and Haier	2000	51:49	- 경영전략의 불일치 - Haier 측 49% 지분 확보 요구 - Haier 의 수입 요구 등과 관련하여 Hotline 측과 의견 충돌 - 사업개시 이전에 합작 무산 - Haier 는 2003 년 단독투자로 인도 진출
Kinetic and Honda	1986	49:51	- 1998 년 합작 파기 - 오토바이 시장 축소, 사업성장 실패 - 가격 경쟁력 실패 - Honda 는 Kinetic engineering 에 모든 주식 매각 - Honda 는 Hero 사와 합작 합의
Danone and Wadia	1996	50:50	- 2009 년 합작파기 - 2006 년, 다논측에서 사업확장을 위해 단독 사업체를 세웠으나 와디아 측에서 소송함. - 신랄한 설전과 협상, 법적 공방 지속 - 다논측에서 자사 출자지분을 와디아에 판매 - 13 년 합작 관계 종결

자료: 각종 언론기사 재구성

□ 투자지역의 검토 및 합작 파트너의 물색

투자지역의 검토 시에는 사업목적과의 적합성, 부대비용, 물류 및 유통여건, 생활여건, 상권, 원부자재 확보여건 등을 세밀히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지역의 기 진출업체, 주요 인도기업, 관공서 등을 방문하여 그간의 어려움이나 애로사항 혹은 실패사례 등을 분석하는 것이 유용하다. 한편 투자진출과 관련된 변호사 및 회계사의 사전 자문을 받는 것 역시 바람직하다.

합작 파트너의 경우에도 상대방이 합작의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는 기업인지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야 하며 신용조사, 평판조사, 방문조사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합작 파트너의 발굴은 산업별 협회 등에서 발간한 디렉토리나 관련 전시회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 계약서의 유효기간 설정

계약서에는 가능하면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좋은데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하나는 인도인들의 계약 이후 좀 더 유리한 입장에 서기 위해 시간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유효기간 내에 인도 측이 내용 변경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계약서의 주요 사항에 유효기간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계약을 파기하지도 못하는 난처한 처지에 빠질 위험이 있다. 외국기업이 이를 잘못 다루면 법적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인도에서 소송은 몇 년 이상 걸린다고 보아도 무방하므로 결국은 투자실 패로 끝나게 된다.

참고로, 혼다(Honda)는 1984 년 히로 그룹(Hero Group)과 합작 계약을 맺은 이래 10 년마다 한번씩 계약을 갱신해 오고 있다. 이는 조건이 맞지 않으면 언제나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의미로, 최근에는 자본금 납입 등 합작 과정에서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되도록 계약서를 만드는 경우도 많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합작 시 제안할만한 지분율

대부분의 인도 합작사들은 자기주장을 많이 하며, 합작사의 주도권을 쥐려는 경향이 강하다. 합작사의 지분이 적은 경우에도 현지 시장 및 소비자에 대한 노하우, 정부 기관과의 관계 유지, 현지종업원 관리 등을 내세워 대표 이사직 등 경영 참여를 요구하며, 다수 지분을 가진 파트너의 결정에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경우가 많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즉, 26% 이상의 지분을 가진 주주도 중요한 의사결정에 개입하거나, 대주주의 결정에 제동을 걸 수 있으므로, 인도에서는 50%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더라도 자유로운 경영을 위해서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경영결정을 위한 주주 승인 지분율

지 분 율	권 한
주주 10% 이상 승인	- 소주주들의 의견 청취 - 부적절한 회사 운영 시 회사 법률회의 신청 - 부적절한 회사 운영 시 주주총회 신청
주주 최소 51% 이상 승인	- 자본금 변경 - 배당금 공표 - 이사 수 변경 - 이사 해임 - 관리 책임자 임명
주주 최소 75% 이상 승인	- 회사 정관 및 규정 수정 - 회사 명칭 변경 - 회사 지분 재구입 - 등록 사무실 변경 - 회사 신청서

자료: Government of India

인도 회사법에 의거하여 회사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주주 75%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지분 율 관련 규정을 잘 이용하면 파트너와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먼저, 적은 지분을 가진 파트너에게 끌려 다닐 수 있으므로, 확실한 지배권을 행사하려면 75% 이상의 지분을 확보해야 한다. 반대로 26%의 지분만 가지면 적은 비용으로 대주주를 견제하는 것이 가능하다. 파트너의 경영권 간섭을 완전 봉쇄하고, 현지 시장에 대한 노하우만을 이용하려면 상대 지분이 26% 미만이 되게 해야 한다. 실제로 최근 인도 진출 결정한 다국적 기업들은 파트너의 지분율을 아예 10% 정도에 맞추고 있다.

□ 외국인 진출 선호 형태

투자진출의 형태로는, 단순 시장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는 연락사무소를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상업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외국법인으로 간주되며 여러 제약요건이 있는 지사보다는 인도자국법인으로 간주되며 다양한 활동을 펼칠 수 있는 현지법인 설립이 보다 선호 된다. 단 현지법인 설립 시 일부 분야 및 품목의 경우, 아직 외국인 투자 제한 및 금지 규정이 있어 진출이 어려운 바, 이 같은 분야의 경우 인도인과의 합작법인 설립이 필요하다. 또한 많은 합작법인을 성공적으로 설립, 운영하고 있는 외국계 다국적기업과 같이 처음에는 지분 일부를 인수하며 시장성 및 현지진출여건을 탐색하는 기간을 거치고, 추후에 지분 비율을 높여가는 것이 성공적인 합작법인 설립의 노하우다.

8. 투자방식

가. 개요

2014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Companies Act 1956 조항 중 주요 부문이 수정된 인도 회사법(Companies Act 2013)이 효력을 지니게 되었으며, 이는 법률 절차 간소화를 비롯하여 친 기업적인 정책, e-거버넌스, 새로운 기업지배구조,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관련된 사항들이 변경되었다. 인도 회사법(Company Companies Act 2013)에 의거하여 설립되는 모든 회사는 책임 제한 유무에 따라, 무한책임회사(Unlimited Company)와 유한책임회사(Limited Company)로 나뉘며, 유한책임회사는 책임제한방법에 따라 보증책임회사(Company Limited by Guarantee), 주식유한회사(Company Limited by Shares)로, 주식의 공모 여부에 따라 비공개회사(Private Company)와 공개회사(Public Company)로 나뉜다.

나. 책임제한유무

주주의 책임과 관련하여, 인도 회사법 역시 우리나라 상법의 회사법과 같이 무한책임회사는 주주의 책임이 제한되지 않고 유한책임회사는 주주의 책임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그 내용이 동일하다.

유한책임회사 중 보증책임회사의 주주는 사전에 정해진 금액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게 되며, 주식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주주 소유 주식의 한도에서 책임을 지게 된다.

다. 주식의 공모 여부

공개회사 (Public Company)와 비공개회사 (Private Company)의 주요 차이점은 주식의 양도 제한 유무로, 공개회사의 경우 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비공개 회사의 경우, 주식의 양도가 제한된다.

공개회사는 최소 자본금이 천만 루피이며 최소 7인의 주주와 최소 3인의 등기이사가 필요 하고 주주의 수에 있어서 제한이 없으며 사업계획서(prospectus)의 작성 및 주주총회 개최 가 의무화되며 총회결과는 정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공개회사 이사인 경우 보수수준은 회사 순이익의 11%를 넘지 않아야 하는 바, 배당을 통한 본국 송금이 제한 될 수 있다.

비공개회사는 주주의 수가 200인 이하로 제한되며 최소 2인의 주주와 최소 2인의 등기 이사를 확보해야 한다. Companies Act 1956 과는 달리 Companies Act 2013에서는 공개 회사뿐 아니라 비공개 회사의 경우에도 회사 설립 후 주금, 최소 납입자본을 출자하였다는 증명서 없이는 사업개시를 할 수 없다.

주식의 양도는 정관 부속서류에 의해서만 가능하며(Article of Association) 그렇지 않을 경우 제한된다. 비공개회사는 공개회사와는 달리 이사를 매년 교체할 필요가 없고 이사의 보수에 대해서도 제한이 없다. 따라서 배당을 통한 송금 역시 자유롭다. 비공개회사의 최소 자본금은 10만 루피 이상이며 회사 명칭에India가 삽입되면 최소 자본금이 50만 루피 이상이어야 한다. 비공개 회사를 포함한 모든 회사의 이사 중 적어도 한 명은 회사 설립 이전 년도 365일 중 182일 이상 인도에 머물러야 한다.

이와 같은 인도 회사법상의 각 회사 종류에 따른 차이에 따라, 외국인은 인도 내 현지법인 설립 시 주식유한회사이면서 비공개회사로 설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인도는 대부분 품목을 인도중앙은행(RBI)을 통한 자동승인(Automatic Route) 품목으로 지정해 놓았으며, 이 경우 ROC등록을 통해 법인설립이 가능하며 부가행정처리는 담당부처를 통해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자동승인품목이 아닌 경우는 법인설립 이후 재무부 산하 FIPB(Foreign Investment Promotion Board)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제조업인 경우는 공장등록 등의 허가와 신고가 추가된다. 한편 자동승인 품목일지라도 투자지분의 한도가 정해진 업종은 합작 파트너를 통해 합작투자를 해야 하며 품목별 자동승인여부 및 투자지분한도는 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한다.

설립형태	투자승인절차	사후절차
- 지사 - 프로젝트 오피스 - 연락사무소	RBI FNC-1 양식	
- 현지회사(Indian Company)	자동승인(Automatic Approval)	
- 합자회사(Joint Venture) - 완전자회사		RBI 신고 FC-GPR 양식
- 무한책임(unlimited) - 보증책임(limited by guarantee) - 주식 유한(limited by shares)	정부허가 FIPB FC-IL 양식	
- 비공개(private) - 공개(public)	설립절차(설립등기, 환경심사, 산업허가, IME 제출)	

9. 투자진출형태

가. 투자형태별

기본적으로 인도에 투자 진출하는 형태는 다른 나라와 동일하다. 진출형태로는 현지법인, 지사,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가 있고, 특정 프로젝트만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프로젝트 사무소가 있다.

1) 현지법인

현지법인은 말 그대로 인도의 회사법(company Act)에 따라 설립되며, 인도 국내기업으로 인도기업과 동일한 지위를 지닌다.

□ 단독 투자자회사(WHOLLY OWNED SUBSIDIARY)

현재 인도에서는 현지법인 설립을 고려하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대부분의 제조업은 몰론, 인프라 서비스업에 대해서도 투자 개방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어 원칙적으로 투자제한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이 100% 허용된다.

□ 합작 투자(Joint Venture)

현지 법인 설립을 결정한 후 100% 직접투자가 가능한 업종이라 하더라도, 투자를 고려하는 기업별 사업 여건 등 경우에 따라서는 합작투자를 고려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다. 보편적으로 해외 진출에 있어 합작투자보다는 단독투자의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인도의 경우에는 오히려 반대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종교 및 인종의 다양성과 문화의 이질성 등 우리나라와 다른 요소가 상대적으로 많은 나라가 인도로, 오랜 신뢰 관계를 구축하여 파트너와 협조 관계가 원만하다는 확인을 바탕으로 합작을 해도 진출 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러므로 51% 이상의 지분을 확보한 경우라도 실제 의사 결정에 있어 파트너와의 갈등으로 결정이 지연되거나 무산 되는 경우가 흔하다. 자본재, 플랜트, 기술 등을 좋은 조건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투자 진출의 경우, 이러한 합작투자의 문제점을 한번 더 고려해보아야 한다.

단독투자를 희망한다 하더라도, 의무적으로 합작투자만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인도 자국 산업 보호 육성을 위해 투자 지분을 제한하고 있는 업종으로의 진출이 그러한 경우이다.

100% 외국인 투자가 허용되지 않고, 투자 상한 등 일정한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는 업종은 아래의 28개 업종으로 이 경우에는 제한된 지분 내 합작 투자로만 투자 진출이 가능하다.

1)공항, 2)광물, 3)농업(플랜테이션 포함), 4)방송, 5)석탄/갈탄, 6)국내 항공, 7)방위/전략 산업, 8)위성 설치/가동, 9)주택/부동산, 10)인프라 스트럭쳐 및 관련 서비스, 11)보험, 12)복권 및 도박, 13)광업, 14)비은행 금융회사, 15)석유, 16)우편, 17)인쇄매체, 18)민간은행, 19)통신, 20)무역, 21)도시개발사업, 22)벤처 캐피털 23)중소기업 제조업 24)전자상거래 25)멀티 브랜드 소매업 26)신용정보 회사 27)의약/제약품 28)발전

구체적 제한은 크게 금지 업종 6개, 26% 한도 4개, 49% 한도 4개, 74% 한도 7개, 조건부 100% 10개로 각각 구분되어 있으며, 업종별 외국인 지분 한도 및 적용되는 구체적인 활동(activities)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FDI 한도 비율은 DIPP 홈페이지(http://dipp.nic.in)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금지 업종은 합작 투자도 불가능한데 그에 해당하는 업종으로는 투기 도박업, 복권 비즈니스, 치트펀드, 니드히 회사(신용조합), TDR 거래, 원자력 에너지, 소매 유통업(단일 브랜드 제외), 주택 및 부동산업이 있다. 농업은 화훼, 원예, 양봉, 버섯 등 채소 재배, 종자 개발, 축산, 양어, 수경재배 등은 금지 업종에서 제외된다.

2) 지사(Branch Office)

지사는 말 그대로 외국기업의 인도 지사로서의 지위로, 기본적으로 외국기업이라 할 수 있다. 인도는 외국기업과 인도기업 간 법인세율에서 외국기업에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지사 또한 당연히 법인세에 있어 외국기업에 적용되는 세율을 적용 받는다.

지사는 법인이 아닌 인도에 있는 외국기업으로 간주된다. 외국기업 지사의 활동은 인도 중앙은행에 의해 제한되며 지사의 역할은 본사를 대신한 구매 및 판매 에이전트 활동, 조사 활동, 수출입 업무의 수행, 인도기업과 기술 및 자본 협력 추진, 전문 컨설팅 서비스 제공,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정보 기술 서비스 제공, 본사에서 공급한 제품에 대한 기술 지원으로 한정된다.

지사는 인도에서 실질적인 비즈니스를 수행할 수 있으며, 납세의 의무를 진다. 그러나 지사 사무소는 물품의 제조 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1949년 인도 은행법에 따라 인도에 지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인도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사는 세금을 납부한 후 발생한 이익을 인도 은행을 통해 송금할 수 있으나 사전에 인도 중앙 은행의 외국환 관리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편 인도에 지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인도 기업법에 따라 규정된 서류를 사무소가 설치될 주정부의 기업 등록청(ROC)과 뉴델리에 있는 기업 등록청 본청에 각각 제출 해야 하며, 지사가 등록된 이후 매년 회계서류를 기업 등록청에 제출해야 한다.

2013년 7월 기준 FDI 허용 범위 확대 상황

분야	투자한도	승인 방식
통신	74%→100%	~49%: 자동승인, 49-100%: *FIPB 승인필요
단일 브랜드 소매업	100%	~49%: 자동승인, 49~100%: FIPB 승인필요
보험	26%→49%	~49%: 자동승인
국방	26%	현재의 투자한도를 유지하되, 첨단기술 제조 기업에 한해 26% 이상 투자 시 *CCS의 승인을 통해 추가투자가능
자산재건 회사	74%→100%	~49%: 자동승인, 49-100%: FIPB 승인필요
신용정보회사	49%→74%	~74%: 자동승인
운송서비스	100%	~100%: 자동승인
전력거래	49%	~49%: 자동승인
석유정제, 천연가스	49%	~49%: 자동승인
부동산 재건축회사	74%→100%	~49% 자동승인, 49%-100%: FIPB 승인필요
차 농업 (차 플랜테이션 포함)	100%	~100: FIPB 승인필요
상품거래	49%	~49%: 자동승인
보안업계 인프라회사	49%	~49%: 자동승인

3) 사무소

이들 사무소의 형태는 기본적으로 사업 및 활동의 범위에 따라 정해진다. 연락사무소와 지사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은 지사의 경우 영업 행위가 가능한 반면 연락사무소는 단순 연락 업무 또는 시장조사 등의 업무만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지법인은 통상 진출 국가의 국내기업으로 등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국내 법인과 동일한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현지에서 직접 생산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연히 현지 법인 설립이 전제되어야 하며, 100% 외국인 직접투자 기업이라 할지라도 인도 국내 기업으로 간주된다.

국가에 따라서 차이는 있으나 인도의 경우 영업상의 측면이나 조세부담, 기타 국내법 및 제도의 적용에 있어 지사와 현지법인이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지법인으로 등기하는 경우 현지법인의 활동에 관계된 채권자, 노동자 등 이해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사에 비해서 여러 가지 제한이 가해진다. 그러한 제한이 주어지는 만큼 법인은 거래, 자금 조달 등에 있어 지사에 비해 우월한 지위를 갖게 된다. 한편 인도정부는 지사는 제조 활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조업 투자 진출의 경우 현지법인 설립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연락 사무소, 지사, 프로젝트 사무소 등의 사무소는 인도중앙은행의 사전승인 없이 부동산을 획득할 수 없으며, 최장 5년 한도 내에서 부동산의 임차는 허용된다.

□ 연락사무소(Liaison 또는 Representative Office)

외국기업들의 경우 인도와의 비즈니스를 개시하기 위하여 초기에는 연락사무소를 개설 하는 것이 보통이나 인도에서 직접 상거래를 수행할 수는 없다. 연락 사무소는 사업 기회의 발굴이나 제품 홍보 등을 위하여 개설되며 인도에서 일체의 상업적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매출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연락사무소는 납세 의무를 지지 않는다.

또한 연락 사무소는 커미션을 받거나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 사무실 에서 집행하는 모든 비용은 해외에 있는 본사에서 송금되어야 하며 연락사무실을 철수 할 때에도 인도로부터의 자금 인출은 일체 금지된다.

인도에서의 연락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외국환관리법(India's Foreign Exchange Management Act, FEMA)은 인도중앙은행은 연락사무소 설립을 승인하고, 승인 기간은 최초 설립 후 3년으로 연장이 가능하다.

기업등록청(ROC)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 정관, 재무제표 그리고 인도에 사무실 설립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인도 기업부의 회계규정의 완화로 인하여 연락 사무소는 전체 재무제표를 제출할 필요 없이 인도 기업법 594조에서 명시한 손익 계산서만 제출하면 된다.

□ 프로젝트 사무소

외국기업이 인도에서 특정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하여 임시적으로 프로젝트 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다. 프로젝트 사무소는 기본적으로 특별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제한적인 목적으로 설립되며, 프로젝트 사무소에 대한 승인은 일반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건설 프로젝트, 인도정부 및 국제 금융기관 그리고 다국적 기관이 금융을 지 원하는 프로젝트에 한한다. 민간 프로젝트에 대한 사무소 개설은 예외적으로 승인 가능하다.

연락 사무소, 지사, 프로젝트 사무소 등의 사무소는 인도중앙은행의 사전승인 없이 부동 산을 획득할 수 없으며, 최장 5년 한도 내에서 부동산의 임차는 허용된다.

나. 투자 주체 별

□ 단독 투자, 합작 투자의 결정

일단 법인설립을 결정한 다음에는 합작투자를 할 것인가 단독투자를 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된다. 정부가 업종별 외국인 지분한도(equity cap)를 설정한 업종의 경우에는 현지 파트너와의 합작이 필수적이다. 100% 외국인 투자가 허용되는 업종의 경우를 살펴보면, 보편적으로 해외진출에 있어 합작투자보다 단독투자의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인도의 경우에는 오히려 반대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합작 투자 시 완전한 경영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76% 이상의 지분이 필요하다. 삼성전자 인도법인의 경우 최초의 합작투자에 실패했으나, 현재 단독투자로의 전환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가고 있다.

자본재, 플랜트, 기술 등을 좋은 조건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투자진출의 경우, 단독투자가 합작투자보다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법인 설립단계에서 참고할 투자관련 법규는 회사법, 노동법, 외환관리법 등으로 인도정부 각 부처 웹사이트에서 참고할 수 있다. 한편 인도 외무부에서 투자유치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에는 투자 관련 법규를 링크해 놓아 손쉽게 다양한 관련 법규를 참고할 수 있다.

자료: http://www.indiainbusiness.nic.in/investment/legislation.htm

□ 단독/합작 투자 별 고려사항

인도에 투자를 고려하는 기업들이 높은 기술수준과 인도 내에서 생산한 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을 경우, 가능한 한 합작보다는 100% 단독투자가 바람직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이유로는 인도시장에 밝은 현지 파트너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비즈니스 문화 차이 등의 문제로 인해 갈등 관계로 발전하여 오히려 기업 운영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자금, 기술력, 영업망, 인도정부의 단독투자 지분제한 등과 관련하여 비즈니스의 전개에 있어 인도 파트너가 필수적인 경우는 당연히 합작투자가 필요하나 단순히 영업, 생산, 물류, 관리 등 기업운영상의 편의를 위해 인도 파트너를 구하는 것이라면 차라리 현지 직원 채용을 통해 단독으로 꾸려나가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투자 별 전략 포인트

단독 투자	합작 투자
- 철저한 현지 시장 조사 - 인도 조세 및 법률제도 이해 - 판매망 구축을 위한 거래처 정보 확보 - 분야별 현지 전문가 및 전문기관 활용 - 현지 대학과의 교류를 통한 인적자원 확보 - 전문 부동산 업체를 통한 부지 및 생산기지 확보	- 파트너 기업배경, 재무상태 조사 - 인도 대기업과 합작 추진 - 지분율에 따른 전략 변경 필요 - 전문 법무법인을 통한 합작 계약서 철저한 검토 필수

자료: 각종 자료 종합

일반적인 경우 단독투자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단독 투자 시에는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시시각각 바뀌는 비즈니스 환경에서 신속한 의사결정은 생각보다 중요하다. 인도 기업과의 합작투자 시에는 한국기업의 의사와 무관하게 관련 의사결정이 한없이 지연되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시간에 대해 너그러운(시간을 무한하다고 여기는) 현지문화와도 연관되어 있다.

이 밖에도 세금관련문제, 이익의 본사송금문제, 기계설비 등의 도입, 공장건설 및 증설, 원부자재 도입, 노사문제 등 기업의 운영과 관련된 많은 측면에서 단독투자가 효율적이다. 현재 한국의 인도투자진출기업들은 거의 단독투자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합작투자 기업은 소수에 불과하다.

합작투자(J/V)의 장점 및 단점

합작투자(J/V) 장점	합작투자(J/V) 단점
- 인도정부 압력에 효율적 대처	- 경영권 확보 위한 지분문제(76% 이상)
- 투자 기업 위험 분산 효과	- 현지 경영환경 이해부족으로 인한 충돌
- 인도 기반시설, 자본, 자원 활용	- 외국기업 핵심기술 유출 위험성
- 외국기업 이미지 불식	- 현지 파트너의 불필요한 경영참여
- 시장 개척 용이성 (딜러 망 확보용이)	- 도덕적 해이로 인한 계약 위반 가능성
- 정부 제공 국내 각종 혜택	- 현지 파트너와 분쟁 시 조정 기간 장기화

자료: 각종 자료 종합

□ 합작투자 유의사항

투자지분한도 등의 제약이 있는 경우는 합작투자가 필수적이며, 기업성격상 합작 투자가 바람직한 경우에는 합작파트너의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합작투자를 포함한 중요한 협상은 항상 최고책임자와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대방이 실제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상대방이 대기업 계열사나 유력기업이라 주장할지라도 모든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합작투자계약 및 정관 등 서류상 법적 책임을 정확히 하고, 자본금납입 등과 관련된 조항과 미 이행 시 조치방법에 대해서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사회의 구성이나 사장(Managing Director)의 선임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인도에서는 51%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영권을 완전 장악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 이는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75%의 주주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즉, 75% 이상의 지분과 경영층 및 이사회를 장악했을 경우만이 경영권을 완전 확보하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대주주자격으로 합작에 참여 시 사장(Managing Director)자리를 양보해서는 안되며, 번갈아 가면서 사장을 임명하자는 요청에도 동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합작투자를 진행시킴에 있어 주요사항은 반드시 책임자와 협의하고 합의된 사항은 문서로 남겨야 한다. 구두상으로만 합의하고 사업을 추진 중 추후 문제 발생할 시, 인도 관련자들은 말을 바꾸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합작 성공사례 연구

기 업 명	합작연도	지분율	내 용
Suzuki and Maruti	1983	51:49	- 지속적인 성장 - 품질 개발 투자 - 생산비용 절감 합의 - 장기투자 합의 - 합작사 문화 이해 노력 - 인도 노동법 존중
Tyson Foods and Godrej Agrovet	2008	51:49	- Tyson Foods 생산기술 제공 - Godrej Agrovet 확보된 마케팅, 판매망 제공 - 고급 치킨 브랜드 이미지 강화 - 품질향상에 합의
Marks & Spencer and Reliance Retail	2008	51:49	- 단독 투자 제한 업종으로 합작 필수 - 5 년간 2,900 만 달러 투자 합의, 50 개 점포 확대 - 매장 크기 확대 - 인도에서 생산물 직접 생산 합의 - 시장성 성장 사업 인식

자료: 각종 언론기사 재구성

합작 실패사례 연구

기업명	합작연도	지분	내 용
Tata and IBM	1992	50:50	- 1999 년 합작 파기 - Tata 는 시장 확대 필요성, 직원 전문교육 필요성 - IBM 기술력 제공 - Tata IBM 매출: 1 억 6,500 만 달러(1998.4/1999.3) - IBM 이 Tata 모든 지분 인수, 100% 단독 회사 운영 - Tata 는 충분한 기술력 습득인식, 지분 판매
Samsung and Videocon	1998	74:26	- 2002 년 합작 파기 - 이익 배당 의견 불일치 - 경영방법에 대한 의견 불일치 - Videocon 지분 삼성 인수 - 인수가 약 300 크로 루피 (약 900 억 원) - 100% 단독 회사로 전환
Hotline Group	2000	51:49	- 경영전략의 불일치

기업명	합작연도	지분	내 용
and Haier			- Haier 측 49% 지분 확보 요구 - Haier 의 수입 요구 등과 관련하여 Hotline 측과 의견 충돌 - 사업개시 이전에 합작 무산 - Haier 는 2003 년 단독투자로 인도 진출
Kinetic and Honda	1986	49:51	- 1998 년 합작 파기 - 오토바이 시장 축소, 사업성장 실패 - 가격 경쟁력 실패 - Honda 는 Kinetic engineering 에 모든 주식 매각 - Honda 는 Hero 사와 합작 합의
Danone and Wadia	1996	50:50	- 2009 년 합작파기 - 2006 년, 다논측에서 사업확장을 위해 단독 사업체를 세웠으나 와디아 측에서 소송함. - 신랄한 설전과 협상, 법적 공방 지속 - 다논측에서 자사 출자지분을 와디아에 판매 - 13 년 합작 관계 종결

자료: 각종 언론기사 재구성

□ 투자지역의 검토 및 합작 파트너의 물색

투자지역의 검토 시에는 사업목적과의 적합성, 부대비용, 물류 및 유통여건, 생활여건, 상권, 원부자재 확보여건 등을 세밀히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지역의 기 진출업체, 주요 인도기업, 관공서 등을 방문하여 그간의 어려움이나 애로사항 혹은 실패사례 등을 분석하는 것이 유용하다. 한편 투자진출과 관련된 변호사 및 회계사의 사전 자문을 받는 것 역시 바람직하다.

합작 파트너의 경우에도 상대방이 합작의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는 기업인지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야 하며 신용조사, 평판조사, 방문조사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합작 파트너의 발굴은 산업별 협회 등에서 발간한 디렉토리나 관련 전시회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 계약서의 유효기간 설정

계약서에는 가능하면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좋은데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하나는 인도인들의 계약 이후 좀 더 유리한 입장에 서기 위해 시간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유효기간 내에 인도 측이 내용 변경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계약서의 주요 사항에 유효기간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계약을 파기하지도 못하는 난처한 처지에 빠질 위험이 있다. 외국기업이 이를 잘못 다루면 법적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인도에서 소송은 몇 년 이상 걸린다고 보아도 무방하므로 결국은 투자실 패로 끝나게 된다.
참고로, 혼다(Honda)는 1984년 히로 그룹(Hero Group)과 합작 계약을 맺은 이래 10년마다

한번씩 계약을 갱신해 오고 있다. 이는 조건이 맞지 않으면 언제나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의미로, 최근에는 자본금 납입 등 합작 과정에서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되도록 계약서를 만드는 경우도 많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합작 시 제안할만한 지분율

대부분의 인도 합작사들은 자기주장을 많이 하며, 합작사의 주도권을 쥐려는 경향이 강하다. 합작사의 지분이 적은 경우에도 현지 시장 및 소비자에 대한 노하우, 정부 기관과의 관계 유지, 현지종업원 관리 등을 내세워 대표 이사직 등 경영 참여를 요구하며, 다수 지분을 가진 파트너의 결정에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경우가 많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즉, 26% 이상의 지분을 가진 주주도 중요한 의사결정에 개입하거나, 대주주의 결정에 제동을 걸 수 있으므로, 인도에서는 50%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더라도 자유로운 경영을 위해서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경영결정을 위한 주주 승인 지분율

지 분 율	권 한
주주 10% 이상 승인	- 소주주들의 의견 청취 - 부적절한 회사 운영 시 회사 법률회의 신청 - 부적절한 회사 운영 시 주주총회 신청
주주 최소 51% 이상 승인	- 자본금 변경 - 배당금 공표 - 이사 수 변경 - 이사 해임 - 관리 책임자 임명
주주 최소 75% 이상 승인	- 회사 정관 및 규정 수정 - 회사 명칭 변경 - 회사 지분 재구입 - 등록 사무실 변경 - 회사 신청서

자료: Government of India

인도 회사법에 의거하여 회사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주주 75%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지분 율 관련 규정을 잘 이용하면 파트너와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먼저, 적은 지분을 가진 파트너에게 끌려 다닐 수 있으므로, 확실한 지배권을 행사하려면 75% 이상의 지분을 확보해야 한다. 반대로 26%의 지분만 가지면 적은 비용으로 대주주를 견제하는 것이 가능하다. 파트너의 경영권 간섭을 완전 봉쇄하고, 현지 시장에 대한 노하우만을 이용하려면 상대 지분이 26% 미만이 되게 해야 한다. 실제로 최근 인도 진출 결정한 다국적 기업들은 파트너의 지분율을 아예 10% 정도에 맞추고 있다.

□ 외국인 진출 선호 형태

투자진출의 형태로는, 단순 시장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는 연락사무소를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상업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외국법인으로 간주되며 여러 제약요건이 있는 지사보다는 인도자국법인으로 간주되며 다양한 활동을 펼칠 수 있는 현지법인 설립이 보다 선호된다.

단 현지법인 설립 시 일부 분야 및 품목의 경우, 아직 외국인 투자 제한 및 금지 규정이 있어 진출이 어려운 바, 이 같은 분야의 경우 인도인과의 합작법인 설립이 필요하다.

또한 많은 합작법인을 성공적으로 설립, 운영하고 있는 외국계 다국적기업과 같이 처음에는 지분 일부를 인수하며 시장성 및 현지진출여건을 탐색하는 기간을 거치고, 추후에 지분 비율을 높여가는 것이 성공적인 합작법인 설립의 노하우다.

10. 진출형태별 절차

가. 투자형태별 설립절차

1) 인도 법인 설립 절차(본사가 한국에 있는 경우)

□ 유한회사(Pvt. Ltd.) 설립의 필수 조건(법인 설립 의뢰 전 결정 사항)

○ 최소 2인의 등기이사 결정
○ 자본금 결정(자본금에 따라 등록세 결정)
○ 회사 명칭 결정
○ 한국 본사명칭 사용의 경우 – 동일한 명칭이나 가장 유사한 이름으로 결정
○ 등기이사 1인의 전자 사인
○ 등기이사 2인의 Din Form 승인(등기이사 신상명세서)

□ 법인 설립 의뢰 시 등기 이사 제출 서류 등

○ 여권 사본 1장(여권의 사인란에 싸인, 여권 마지막 장 주소페이지 사본)
○ 비자 사본 1장(비자가 없는 경우는 필요하지 않음)
○ 증명사진 각 20매(여권 규격)
○ 인도 내 거주지 증명서 1부(주택 계약서 사본 등)
○ 주민등록증 사본(영문), 인감증명서(한글본)
○ 출생증명서(영문 - 아버지 영문 이름 명시하여 작성, 본인이 인도에 없을 경우 위임장 필요, 델리 한국대사관에서 발급)
○ Memorandum and Articles of company in Korea(한국본사 정관, 한글본 및 영문본) - 변호사 공증 또는 대한상공회의소 및 주한 인도대사관 공증 후 제출
○ Board resolution from Company in Korea(한국본사 명칭 사용 허가서, 아래 견본 참조)
○ 변호사 공증 또는 대한상공회의소 및 주한 인도 대사관 공증 후 제출
○ 회사 등기부 등본(한글본 및 영문본)
○ 변호사 공증 또는 대한상공회의소 및 주한 인도 대사관 공증 후 제출
○ 아래 4개의 서식은 Company Letter Head에 작성해 제출
- Power of Attorney 1
- Power of Attorney 2
- Board Resolution 1
- Board Resolution
○ 본사의 등기이사 List

□ 유한회사 설립 절차 세부 사항

○ 설립 전 절차 및 신청 서류

- 이사 1인의 "전자사인" 발급(2006년부터 시행, working day 5일 소요)
- 사진2매, 이사의 서명이 된 여권, 비자 복사본, 거주 증명서 필요.
- 등기 이사들의 Din form 승인(이사들의 개인 신상 명세, 10-15일 소요)

· 이사의 서명이 된 여권, 비자 복사본 각 1부
· 증명사진 2매
· 거주지 증명서(인도 및 한국)
· 출생증명서(한국 대사관 발급 또는 한국에서 영문으로 발급 - 아버지 영문 성함이 기재 필수)

○ 세부 설립 절차 및 신청 서류

- 회사 명칭 신청(R.O.C.에서 심사, 명칭이 부적합 하다고 판단 될 경우 재신청, 10-15일 소요)

· 이사들의 영문 이름, 여권 번호, 생년월일, 한국 주소(영문), 인도 주소
· 이사들의 아버지 영문 이름, 직업
· 이사 1인의 전자사인
· 서명 된 이사 1인의 여권 복사본
· 이사들의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영문) 또는 출생증명서(아버지 영문 성함 기재된 서류)
· 회사 등기부 등본(영문본, 한글본)
· Memorandum and Articles of company in Korea
· Board resolution from Company in Korea
· Power of attorney

- 회사 명칭 심사 및 승인(10일)
- 인도법인 정관 작성 및 법원 제출(3-5일), 법원 등록세 납부
- 인도법인 정관 심사 후 공증(3-5일)
- 법인 등록증 신청(2-3일)
- 자본금 등록세 수납
- 회사서류 등록 감사 후 회사 등록 승인(7-10일) 제출한 서류의 전산화 및 R.O.C of (M.C.A)에 접수되면 "회사정관" 감사 및 제출한 모든 서류를 감사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incorporation certificate(사업자등록증)" 발급
- 총 소요 기간은 30~45일
- 기타 세부 사항은 아래 표와 같음

□ 유한회사 법인 설립 절차

○ 법인설립 절차(계약 내용)
- 등기이사 1 인의 전자사인 발급(설립 전 절차)
- 등기이사 2 인의 Din Form 신청(설립 전 절차)

순서	내용	준비서류	담당부서	소요시간
1	기본 조건	- 최소 2 명의 이사가 필요 - 자본금 결정(자본금에 비례하여 등록세 징구)		
2	회사명칭신청	- 한국에 본사가 있는 경우	Tata R.O.C	1~2 일
	○ FORM 1A 작성(1A 에 필요한 내용) - 이사들의 영문성명, 여권번호, 생년월일, 한국주소, 자본금액, 인도주소, 전화번호, E-Mail, 아버지 영문이름, 직업 - 1 인의 이사 사인 - 서명된 여권 복사본 - 회사정관 및 본사 명칭 사용 승인서(변호사 공증 및 주한 인도대사관 공증 필수) - 본사 명칭 사용			
3	회사명칭결정	R.O.C에서 회사 명칭 결정서 수령(신청한 회사 명칭 중 적당한 것이 없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다른 명칭으로 다`시 회사 명칭을 신청해야 함)	R.O.C	5~10일
4	회사정관작성 및 수령	회계사가 작성한 회사정관 수령		1~2 일
5	회사등록신청	- 회사정관 2 권 - Form 1, Form 18, Form 32 - Consent of Directors - Declaration letter - Power of attorney - Name availability letter in original - Stamp duty for capital - Residency proof - Passport / visa copy	R.O.C	2~3 일
6	등록세 수납	○ 수납방법(자본금 규모에 따라 등록세결정) - 신용카드 결제 - 현찰 결제 - 은행수표 결제	R.O.C 지정은행	1~7 일

법인설립 후 절차 안내

순서	내용	준비서류	담당부서	소요시간
1	Pan number 신청 (회사)	- 신청서 - 사무실 임대 계약서 - 회사 직인 - 이사 사인	NSDL	10~15 일
2	Pan number 신청 (이사)	- 신청서 - 이사 사인 - 이사 사진 1 장 - 거주 증명서 - 여권 복사본	NSDL	10~15 일
3	Tan number 신청 (회사)	- 신청서 - 사무실 임대 계약서 - 회사 직인 - 이사 사인	NSDL	10~15 일
4	I.E. Code 신청 (회사)	- 신청서 (AFN-1, AFN-2A) - Bank Certificate - 회사정관 - 등기이사 명단 - PAN 카드 복사본 - 이사회 결의서	DGFT	10~15 일
5	은행계좌 개설	- 신청서 - 회사 정관 - 사무실 임대 계약서 - 이사회 승인서 - 회사 직인 - 이사 사인 - 보증금 - 이사 거주 증명서	은행	1~10 일

아래의 설립단계 중 1~7단계를 거치면 법인설립이 완료되며, 설립 후 실질적인 사업개시를 위해서는 8~12까지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위에서 설명하는 예는 비공개 회사의 예이나 공개회사의 경우도 거의 유사하다. 공개회사의 경우 사업계획서 (Prospectus)를 작성하여 다른 서류들과 같이 기업 등록국(ROC)에 제출해야 하며 법인증 수령 후에도 기업 등록국으로부터 사업개시증명서(Certificate for the commencement of business)를 수령하기 전까지는 사업을 개시할 수 없다.

□ 1 단계: FIPB 승인

자동승인품목이 아닌, FIPB의 승인이 요구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FC-IL을 작성하고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기타 문서를 FIPB에 제출하며 만일 사업계획서에 관련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면 FC-IL은 굳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FIPB의 승인을 득하면 30일 이내에 ROC에 등록해야 하며 FIPB의 승인에 소요되는 기간은 보통 4~8주다. (FC-IL Form은 부록참조)

인도 재무부 산하 FIPB 의 웹사이트

자료: http://finmin.nic.in/the_ministry/dept_eco_affairs/fipb/fipb_index.htm

□ 2단계: 산업허가 취득

한편 산업허가를 취득해야 하는 산업인 경우, FC-IL을 작성하여 SIA(Secretariat for Industrial Assistance)로부터 산업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산업허가를 취득해야 하는 경우는 알코올음료의 증류 및 제조와 같이 산업허가 취득이 의무화된 업종과 소규모 사업체 보호대상 품목에 24% 이상의 지분을 투자하는 경우 등이다. (소규모사업체 보호대상 품목 리스트는 부록참조)

□ 3단계: 이사의 선임

비공개회사의 설립에는 최소 2명 이상의 이사가 선임되어야 하며 공개회사의 경우는 3명의 이사가 선임되어야 한다. 예전에는 최소 1명의 인도국적 이사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으나 지금은 폐지되었으며 한국인으로 이사진을 구성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 4단계: 전자서명인증서신청 및 DIN신청

선임된 이사는 전자서명인증서(Digital Signature Certificate)를 확보하여야 한다. 전자서명 인증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이사의 여권사본, 비자사본, 사진, 거주증명 등의 서류를 확보하여 신청서와 함께 서비스업체에 신청하면 되며 4~7일 가량이 소요된다. (전자서명 인증서의 신청서 양식은 부록 참조) 이 인증서는 각종 서류의 전자서명에 필요하다. 전자서명인증서가 구비되면 이사 인식번호(DIN: Director Identification Number)를 신청해야 하는데 우선은 임시번호(Provisional Din Number, 60일 유효)를 받게 되고 차후에 정식번호(Permanent Din Number)를 받는다. 임시번호만으로 법인설립은 가능하나 회사의 운영을 위해서는 정식번호 발급이 필요하다.

DIN은 웹사이트 (www.mca.gov.in)를 통해 신청하는데 웹사이트 상에서 Din Form을 작성하여 제출한 후 심사를 통하여 임시 DIN이 발부되며, 정식 DIN은 법인 설립 후 신청해도 되며 약 3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 5 단계: 상호 결정 (Form 1A 작성 ROC 제출)

FORM 1A(양식은 부록 참조)는 회사 명칭 사용 및 변경을 위한 신청서로 총 6페이 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문서의 작성 및 신청은 실질적인 법인설립의 첫 번째 단계다. 설립하고자 하는 회사의 상호를 최대 6개까지 지정하여 기업등록국(ROC)에 제출하는데 이 중에서 이미 사용 중인 상호가 아니라면 한 개를 최종 선택할 수 있고, 만일 6개의 후보 이름이 모두 기사용 중인 상호라면 다시 한 번 FORM 1A를 작성 하여야 한다.

Form 1A의 내용에는 이사진의 신상명세가 포함되며 Form 1A와 함께 한국 본사의 영문 회사정관(법률사무소 및 주한 인도대사관 공증 필수, 한국에 모기업이 있는 경우), 한국본사의 Non Objection Letter 또는 회사명칭 허가의 이사회결의서 사본(한국에 모기업이 있는 경우)을 같이 제출한다. 한국에 본사가 없는 경우는 Form 1A와 함께 주인도 한국대사관의 공증서류를 같이 제출하면 순조롭게 업무가 진행되며 주인도 한국대사관의 서류 공증에는 신청인이 한국인 신분이고 어떤 업종에서 사업을 개시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업등록국(ROC)에 신청 후 상호가 결정되기까지 약 7-15일 정도가 소요된다. 인도에서는 상호 결정 시 사용할 수 없는 특정단어가 지정되어 있으며 한편으로 특정 단어 사용시 최소 자본금을 설정해 놓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상호로 사용할 수 없는 단어는 중앙정부 및 주정부의 이름, 대통령의 이름, 인도 및 다른 나라의 국가이름, 이미 사용하고 있는 상호 등이다. 예를 들어 Delhi Pvt. Ltd라는 회사명은 성립될 수 없다.

한편 한국에 본사가 있는 경우 인도 내 현지법인이 회사상호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는 문서(NOL, Non Objection Letter)를 발급받아 사본을 같이 제출해야 한다.

법인 명칭 사용 시 최소 자본금 의무가 부여되는 특정단어

특 정 단 어	최소 자본금 (루피)
Corporation	50,000,000
International, Globe, Universal, Continental, Inter-Continental, Asiatic, Asia(첫 단어로 사용 시)	10,000,000
International, Globe, Universal, Continental, Inter-Continental, Asiatic, Asia(첫 단어가 아닌 경우)	5,000,000
Hindustan, India, Bharat(첫 단어로 사용 시)	5,000,000
Hindustan, India, Bharat(첫 단어가 아닌 경우)	500,000
Industries	10,000,000
Enterprise, Products, Business, Manufacturing	1,000,000

예를 들어 Korea Corporation Pvt. Ltd.라는 상호명은 자본금이 5,000만 루피 이상이어야 하며 International Auto part Pvt. Ltd.라는 상호는 1,000만 루피 이상 Korea Trade International Pvt. Ltd.라는 상호는 500만 루피 이상 되어야 한다.

□ 6 단계: 회사정관작성

상호가 결정된 후에는 설립하는 법인의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회사의 정관(Memo randum of Association)과 상세정관(Article of Association)은 비공개회사 설립 시 의무 조항이나, 공개 회사 설립 시에는 상세정관의 작성은 의무화되지 않는다.

정관(Memorandum of Association)에는 회사의 명칭, 관할 등기소, 설립목적, 주주의 책임, 회사의 자본금 등이 명시되며 이 중에서 설립목적이 가장 중요하다. 이는 해당법인이 정관상의 설립목적에 어긋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없으며 설립목적의 변경은 ROC 를 통해서 재승인 받아야 하는 사항이다.

상세정관(Article of Association)은 정관에 부속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상세 정관의 내용은 해당 회사의 정관 및 인도 회사법의 규정과 일치해야 한다. 상세정관의 내용은 회사의 성격, 주식의 가치 및 수량, 주주의 권리, 주식 양도와 관련된 규정, 관리 인의 임명, 주주총회와 관련된 내용, 회계감사, 배당, 청산 등에 관한 내용으로 채워진다.

작성이 완료된 후에는 이사 2명(공개회사인 경우는 3명)이 직접 서명한 후 회계사가 공증해야 하며 정관 및 상세정관은 서명 완료 후에 해당 지방법원에 등기해야 하고 소요기간은 7일~15일 가량이다.

□ 7 단계: (관련 신청서류 제출)법인설립신고 및 법인 증 수령

상호 및 정관이 결정되고 나면 필요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기업등록국(ROC)에 법인 설립을 신청하며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다.

법인설립 신청 시 필요서류

1	FORM 1(회사 명칭 승인 신청서) – 양식은 부록 첨부
2	FORM 32(사장, 이사 등의 임명과 변경에 필요한 서류) (양식은 부록 첨부)
3	FORM 18(설립회사의 주소에 대한 서류) – 양식은 부록 첨부
4	자본금에 따른 등록비 납부
5	위임장(이사가 향후 정관을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 받는다는 내용
6	회사명칭 사용 승인서 원본
7	정관 및 상세정관
8	한국본사의 등기부등본
9	한국본사의 정관

자료: Registrar of Companies, Ministry of Corporate Affairs(기업부 기업등록소)

설립 신청 후 실제 설립이 허가되는 데에는 15일에서 20일가량 소요되며, 설립이 허가되면 법인증(Incorporation Certificate)을 받을 수 있다.

사무실을 미리 확보하고 회사설립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질적으로는 사무실을 미리 확보하기가 어려우므로 임시방편으로 회계사의 주소를 사무실 주소로 대신 등록 하였다가 향후에 주소변경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주소지 변경 시 주가 달라 지면 ROC 및 법원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주간 이동은 상당한 시간, 노력, 비용이 요구된다.

법인의 등기이사가 법인신청 전부터 완료될 때까지 인도에 머물면 법인설립 기간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이사가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 모든 서류를 한국으로 송부한 후 법무사 및 인도대사관 공증을 받아 법인설립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자본금별 등록비

Fees Payable to Registrar of Companies w.e.f. 1-5-2000			
Filing Fees for incorporation of a private limited company			
Authorized Capital (Rs.)	Filing Fees		Total (Rs.)
	Capital Registration Fees (Rs.)	Document Fees for filing four Documents at the time of incorporation (Rs.)	
1,00,000	4,000.00	800.00	4,800.00
2,00,000	7,000.00	800.00	7,800.00
3,00,000	10,000.00	800.00	10,800.00
4,00,000	13,000.00	800.00	13,800.00
5,00,000	16,000.00	1,200.00	17,200.00
6,00,000	18,000.00	1,200.00	19,200.00
7,00,000	20,000.00	1,200.00	21,200.00
10,00,000	26,000.00	1,200.00	27,200.00
15,00,000	36,000.00	1,200.00	37,200.00
20,00,000	46,000.00	1,200.00	47,200.00
25,00,000	56,000.00	2,000.00	58,000.00
26,00,000	58,000.00	2,000.00	60,000.00
30,00,000	66,000.00	2,000.00	68,000.00
35,00,000	76,000.00	2,000.00	78,000.00
40,00,000	86,000.00	2,000.00	88,000.00
45,00,000	96,000.00	2,000.00	98,000.00
50,00,000	1,06,000.00	2,000.00	1,08,000.00
51,00,000	1,07,000.00	2,000.00	1,09,000.00
60,00,000	1,16,000.00	2,000.00	1,18,000.00
70,00,000	1,26,000.00	2,000.00	1,28,000.00
80,00,000	1,36,000.00	2,000.00	1,38,000.00
90,00,000	1,46,000.00	2,000.00	1,48,000.00
1,00,00,000	1,56,000.00	2,000.00	1,58,000.00
2,00,00,000	2,06,000.00	2,000.00	2,08,000.00
3,00,00,000	2,56,000.00	2,000.00	2,58,000.00
4,00,00,000	3,06,000.00	2,000.00	3,08,000.00
5,00,00,000	3,56,000.00	2,000.00	3,58,000.00
10,00,00,000	6,06,000.00	2,000.00	6,08,000.00
15,00,00,000	8,56,000.00	2,000.00	8,58,000.00
20,00,00,000	11,06,000.00	2,000.00	11,08,000.00
25,00,00,000	13,56,000.00	2,000.00	13,58,000.00

법인설립 최종 신청서 제출 시 이사가 인도에 거주할 경우 이사의 여권원본을 제출하여 인도 거주 확인 후 여권을 돌려받을 수 있다.

법인의 등기이사는 법인증을 받은 후 한국으로 돌아가 다시 상용비자를 발급받아 재 입국해야 하며 상용비자 신청 시에는 인도법인의 각종 증빙 자료 및 인도법인 계좌로 자금이 입금된 증빙이 있어야 한다. 법인증을 받은 후 정관과 법인증을 합쳐서 1개의 책자로 만든다(보통 50부 가량 소요).

회사 설립이 완료되고 자금이 송금되면 30일 이내에 인도중앙은행에 통보해야 한다. 한편 자본금에 따라 등록비가 다르며 자본금이 10만 루피인 경우 4,800루피, 자본금이 100만 루피인 경우 2만 7,500루피, 자본금이1,000만 루피인 경우15만 6,000 루피이다. 이 외에도 정관 법원공증 등록세가 약간씩 별도로 추가된다.

□ 8 단계: Pan Number 신청 및 수령

소득세 번호(Permanent Account Number)는 법인용과 개인용이 있으며 각각 법인세 납부 및 개인소득세 납부를 위해서 필요하다. 법인증을 받은 후 신청 가능하며 15일 가량 소요된다.

□ 9 단계: 은행계좌 개설

법인증 및 Pan Card수령 후에는 법인 은행계좌를 설립할 수 있으나 매우 어려운 문제 중 하나로 HSBC, ICICI, HDFC, ABN Amro 등 유명 시중은행에 계좌개설을 신청할 경우 요구하는 서류가 많으므로 정확하게 서류를 준비하여 은행계좌를 신청하여야 한다.

계좌개설을 위해서는 정관, 사무실계약서, Board Resolution(은행계좌 개설을 위한 이사회 결의서), 이사의 여권, 비자, 사진 3매, 거주증명서(주택계약서 혹은 대사관 공증서류), 회사 직인 등을 준비해야 하며 이사 중 한 명이 은행에 출석해야 한다.

계좌 개설 시, 최소 현금1만루피에서 10만 루피가 필요하며, 계좌 설립 후에는 법인 설립 시 허가 받은 자본금이 한국으로부터 입금되어야 향후 취업비자 취득에 문제가 없다.

뭄바이와 델리에는 한국계은행인 신한은행이 위치해 있어 계좌개설과 관련된 업무가 다른 은행이 비교하여 신속하게 진행된다.

□ 10 단계: TDS 번호 신청(Tax Deduction at Source)

사무실 임차료, 차량 임차료, 전화요금, 직원급여 등 비용지출에 대한 원천징수 세금을 납부하는데 필요한 번호로 향후에 법인세 환급에도 사용된다.

TDS는 우리나라의 원천 징수세 개념으로 직원급여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사무실 임차료에

대한 건물주 소득세 원천징수 등을 TDS를 통해 하게 된다. 이처럼 비용에 대한 원천징수 책임이 비용을 지불하는 기업 측에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TDS번호신청은 법인증 및 Pan Card 수령 후 가능하며 15일 가량 소요된다. TDS 번호는 TAN(Tax Deduction Account Number)이라고 불리기도 하며, PAN번호와 TDS 번호는 인도 국세청(Income Tax Department, http://income taxindia.gov.in)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11 단계: 세금관련 고유번호 신청

Sales Tax, Service Tax, Excise Tax 등 사업의 형태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유형을 확인하여 납부번호를 신청하는데, Pan번호를 받은 후 진행 할 수 있으며 Sales Tax 등록번호와 Excise Tax 등록번호는 30일, Service Tax 등록번호는 15일 가량 소요된다.

Excise Tax는 소비세로 제조업의 경우 부과되며, Service Tax는 서비스업종에 대해 부과된다. 한편 수출입을 위해서는 Importer-Exporter번호(IEC No.)가 필요하다.

허가에 필요한 서류 목록

Pan Card 신청 서류	Tan Number 신청 서류	법인 은행계좌 신청 서류	Sale Tax number 신청 서류
- 신청서 - 사무실 임대 계약서 - 회사 직인 - 법인등록증 - 인도 법인 정관	- 신청서 - 사무실 임대 계약서 - 회사 직인 - 법인등록증 - 인도 법인 정관 - Pan card 복사본	- 신청서 - 회사 정관 - 사무실 임대 계약서 - 이사회 승인서 - 회사 직인 - 이사 여권 및 비자 사본 - 이사 거주증명서 사본	- 법인등록증 - 법인정관 - 이사회 결의서 - 이사 사진 4 장 - 사무실 계약서 - No Objection Certificate from Landlord - 회사 Pan card 사본 - 법인 은행 잔고증명서 - 은행 보증서(1 랙 루피) - 등기이사 여권, 비자, 주택 계약서 사본
수출입 코드	**전자서명**	**Din Form**	**Service Tax number**

신청 서류	신청 서류	신청 서류	신청 서류
- 회사 Pan Card 사본 및 등기이사 Pan Card 사본 - 은행 수출입코드 신청 허가서 - 등기이사 사진 2 장 - 이사회 결의서 - 인도법인 정관 - 신청료 자기앞수표 1,000 루피 - 보증서(undertaking letter)	- 신청서 - 여권 사본 - 비자사본 - 주민등록등본 영문 본 - 주택계약서 사본	- 신청서 - 여권 사본 - 비자사본 - 주민등록등본 영문 본 - 인도 집 계약서 사본 - 출생증명서	- 회사 정관 - 회사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무실 소유자의 NOC letter, 소유자의 소유 확인 서류) - 회사 Pan Card 사본 - 회사 직인 - Form ST1(신청서) - 정관에 등록된 이사의 거주증명서 - 이사의 Pan card 사본 - 회사법인 등록증 - Form 18 copy - 회사 은행 잔고증명서 - Board Resolution - 이사 여권/비자 복사본

주: 견본은 부록 참조

2) 지사 설립 절차

지사 설립 역시 FNC-1를 작성하여 인도중앙은행(RBI)의 승인을 받고 기업등록국 (ROC)에 등록하는 것으로, 법인설립에 비해 실질적인 이득이 없기 때문에 지사를 설립 하기 보다는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은행업과 같이 특수한 경우에는 현지법인보다 지사형태의 설립이 바람직한 경우 도 있다. 현지에서 연락사무소와 지사는 비슷한 의미로 혼용되고 있으며 상호나 명함에는 XX지사라고 표기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연락사무소 형태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독립구역내의 지사(Branch Office on "Stand Alone Basis") 형태의 지사는 특별경제구역(SEZ; Special Economic Zone)내로 그 활동범위가 제한되며 본사의 지사나 자회사를 포함한 SEZ 외부에서는 일체의 활동이나 거래를 할 수 없다(본사의 지사나 자회사와의 거래 포함). 일정한 조건하에 특별경제구역 내에서 제조나 서비스 활동을 하는 지사의 설치는 RBI의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3) 연락사무소 설립 절차

No.	준비 서류	작성 지역
1	- Application(신청서)	인도
2	- Name and Telephone numbers of the concerned persons in the applicant company.(Name, Telephone, Address in Korea , E-mail) (연락사무소장이 아닌 한국에 상주하는 한국인 직원 1 인의 연락처 자료)	한국
3	- Name and Address of the Bankers to the applicant company. (회사 주 거래 은행이름, 주소, 연락처)	한국
4	- Location of proposed office in India.(델리 사무소 주소 및 사무실 계약서, 선택사항) - 등록 대행사에서 주소 대행할 수 있음	인도
5	- Number of Persons likely to be employed in Liaison Office (연락사무소의 외국인 및 인도 직원 수) ・ Indian nationals(인도직원) ・ Expatriates(외국인직원)	인도
6	- Name and address of Head of Liaison Office.(소장 신상명세서)	인도
7	- Company's brief business profile.(회사의 간단한 사업추진서)	한국
8	- The proposed activities of the company.(인도에서 어떤 사업을 할지에 대한 계획서)	한국
9	- Notarized and Consularised Copy of Corporation Registry translated in English.(회사사업자등록증) - 변호사 또는 법무사 공증 후 인도대사관 공증 또는 한국상공회의소 공증 받음)	한국
10	- Notarized and Consularised copy of Articles - Memorandum of Association in English.(회사 정관) - 변호사/법무사 공증 후 인도대사관 또는 한국상공회의소 공증 받음)	한국
11	- Annual report of the company for the period ending _____ (연말정산서) - 변호사 공증 후 인도대사관 공증 또는 한국상공회의소 공증 받음	한국
12	- Authority to M/S ******,Chartered Accountants to represent the company before R.B.I / other Departments in relation to application for permission to establish a liaison office in India.(회계사에게 발급하는 위임장)	한국 또는 인도
13	- Ten company Letter Heads.(회사이름이 인쇄된 용지)	한국
14	- Official Order for appointment of Head-India Office(델리사무소 소장 발령서)	한국
15	- Power of Attorny (델리 사무소 소장에게 연락사무소 등록 및 운영을 위한 권한 위임장) - 변호사 공증 후 인도대사관 공증 또는 한국상공회의소 공증 받음	한국 또는 인도
16	- Board Resolution for opening Liaison Office in New Delhi (India) and appointing its Head-Mr._____.(회사 이사회에서 요청하는 연락사무소 개설 요청서) - 변호사 공증 후 인도대사관 공증 또는 한국상공회의소 공증 받음	한국
17	- List of Director(등기이사 리스트) - SL No. / Name / father's Name / address / email / Date of Appointment	한국

4) 프로젝트사무소 설립 절차

No.	준비 서류	준비지역
1	- Application Form(FNC 1)신청서	인도
2	- Name and Telephone numbers of the concerned persons in the applicant company: Name, Telephone, Address in Korea, E-mail (회사대표 이름, 전화번호, 한국주소, 이메일)(회사 대표와 project office 책임자가 동일한 경우 필요하지 않음)	인도
3	- Name and Address of the Bankers to the applicant company - (주거래 한국은행의 이름, 주소, 연락처, 이메일)	한국
4	- Location of proposed office in India(인도 사무실의 주소 증명서)	인도
5	- Name and address of Head of Project Office(지사장의 이름, 인도주소, 연락처)	인도
6	- Company's brief business profile(한국회사 소개서)	한국
7	- The proposed activities of the company(Project 에 대한 사업 설명서)	한국
8	- Notarized and Consularised copy of Corporation Registry translated in English. - (변호사 및 인도대사관 공증)(회사 등기부 등본 한글본 및 영문본 각 2 부)	한국
9	- Notarized and Consularised copy of Articles/ Memorandum of Association in English(회사 정관 및 사규 한글본 및 영문본 각 2 부) - 변호사 및 인도대사관 공증	한국
10	- Documentary Evidence relating to Project Funding(Project 에 대한 증빙서류)	한국
11	- Annual report of the company for the period ending 31.12.06 (Annual report 제출, 2006 년 리포트가 없으면 2005 년 리포트 준비, 각 2 부) - 변호사 및 인도대사관 공증	한국
12	- Audited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of the company and its subsidiaries for the year ending 31.12.04, 31.12.05 and 31.12.06. (Audited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제출, 최근 3 년치 제출, 2006 년 서류가 없으면 2003, 2004, 2005 년 준비, 각 2 부) - 변호사 및 인도대사관 공증	한국
13	- Authority to M/S ******, Chartered Accountants to represent the company before R.B.I / other Departments in relation to application for permission to establish a Project office in India.(회계사에게 발급하는 위임장, 인도 사무실 지사장이 발급 가능)	인도
14	- Twenty Five Letter Heads (회사 용지 25 장)	한국
15	- Official Order for appointment of Head-India Office. (Power of Attorney) (지사장에게 발급하는 위임장, 각 2 부) - 변호사 및 인도대사관 공증	한국
16	- Board Resolution for openingProject Office in NewDelhi(India)and appointing its Head(Project office 를 인도에 설치하고자 하는 요청서 각 2 부) - 변호사 및 인도대사관 공증	한국
17	- List of Directors, Serial No. Name, Father's Name, address, date of Appointment	한국
18	- Detail of Capital for Company(회사 자본금에 대한 내용)	한국

No.	준비 서류	준비지역
19	- Copy of passport and visa of representative of project office (지사장의 여권, 비자 복사본, 사진 5 장)	인도
20	- Date and Place of Incorporation(한국본사의 설립 날짜와 장소)	한국

프로젝트사무소 설립은 FNC-1(양식은 부록참조)을 작성하여 인도중앙은행(RBI)에 승인 을 요청하여야 한다. 필요한 서류로는 주한 인도대사관에서 공증한 모기업의 정관, 모기업의 대차대조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기이사 리스트, 거래은행확인서, 연락 사무소장 개인서류 등이며, 프로젝트사무소의 경우 프로젝트 관련증빙인 프로젝트 리포트가 추가로 필요하다. RBI의 승인을 득하면 30일 이내에 기업등록국(ROC, Registrar of Compa ny)에 등록해야 한다.

프로젝트사무소는 해당 프로젝트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조세의무를 부담해야 하므로 ROC등록 후에도 해당 법인 PAN번호 신청, TDS번호 신청 등 필요한 행정업무를 진행 해야 한다. 참고로 프로젝트 종료 후 납부하는 세금은 이익금(과세소득)의 41%~42%에 달한다.

나. 추천 법무법인/ 회계 법인

○ KPMG 삼정 회계법인(Korea Desk)
- 주소: KPMG No. 10. Mahatma Gandhi Road Nungambakkam Chennai – 600 034, India
- 담당자: 김태우 회계사
- 전화: -91-44-3914-5000/-91-90941-68678
- 메일: taewoo@kpmg.com
- 규모 관련정보: 삼정 회계법인의 인도사무소로, 한국인 회계사가 인도 진출 한국 기업의 세무 회계 관련 업무를 KPMG 한국데스크로서 담당(첸나이로 이전)/ 한국인 1명

○ KPMG 글로벌 법인
- 담당자: Manoj Pardasani(Partner), Global Transfer Pricing Services & India – Korea Corridor
- 주소: 8th Floor, Building 10-B, DLF Cyber City, Phase II Gurgaon 122002, Haryana, India
- 전화: +91-124-307 4589
- 휴대전화: (Delhi) +91-98111 50600
- 휴대전화: (Mumbai) +91-99671 56000
- E-mail: mpardasani@kpmg.com

○ Ernst & Young(Korea Desk)
- 주소: Ernst & Young Pvt. Ltd. Golf View Corporate Tower B, Sector 42, Sector Road, Gurgaon 122002, India
- 담당자: 신재완 부장
- 전화: -91-99718-17037
- 메일: Joe.Shin@in.ey.com
- 규모 관련정보: E&Y 의 한국데스크로 한국인 직원이 인도 진출 한국기업의 세무 회계 관련 업무 담당/ 한국인 1 명

○ 까마인디아 무역컨설팅회사
- 주소: 546A, 3rd Floor, Hanuman Mandir Road Chirag Delhi, New Delhi-110017
- 전화: -91-11-4183-4734 /-91-98107-60090
- 메일: kamaindia@hanmail.net
- 홈페이지: www.kamaindia.net
- 규모 관련정보: 인도 진출 한국기업 관련 투자진출상담, 투자자문, 법인설립대행 및 법률, 세무 회계 관련 업무 담당/ 한국인 1 명

○ 달마 엔터프라이즈
- 주소: 318, Somdutt Chambers II, 9 Bhikaji Cama Place, New Delhi-110 066
- 전화: -91-11-4603-2528
- 메일: dalma2001@gmail.com
- 규모 관련정보: 인도 진출 한국기업 관련 투자진출상담, 투자자문 등의 업무 담당/ 한국인 1 명.

○ PWC
- 주소: PricewaterhouseCoopers Pvt. Ltd. Building No. 10, 17th Floor Tower –C, DLF Cyber City Gurgaon – 122 002
- 전화: 91-124-330-6000/91-95827-10185
- 메일: Chris.h.kim@in.pwc.com
- 규모 관련정보: 한국인데스크에서 운영 중이며 투자자문, 세금관련 업무 담당

○ HINESH R DOSHI & CO, Chartered Accountants
- 주소: 102, A Wing, Rajgir Court, 6, Kohinoor Road, Nr Hotel Pritam, Dadar (East), Mumbai 400 014
- 전화: 91-22-24132475 / 24138040
- 휴대전화: 91-9820232635
- 팩스: +91-22-24184061
- 메일: info@hineshdoshi.com, hineshdoshi@vsnl.com

○ SKP
- 담당자: Manoj Gidwani, Director
- 주소: Ballard House, 2nd Floor, Adi Marzban Street, Ballard Estate, Mumbai - 400 001 India
- 전화: +91 22 5517 8100
- 팩스: +91-22 6617 8102
- 휴대전화: +91 98210 04240
- E-mai : skpgrp.info@skpgroup.com
- 홈페이지: www.skpgroup.com

○ T.R.Chadha & Co.
- 담당자: Mr. Sumant Chadha
- 주소: 1 Smruti, Ground Floor, M.V. Panlosakar Marg, Hanuman Cross Road No.2, Vile Parle(E), Mumbai-400 057, India
- 전화: +91 22 2612 1428
- 팩스: +91 22 2610 0092
- 휴대전화: +91 98 9224 0812
- E-mail: sumant@trchadha.com

○ M V Damania & Co, Chartered Accountants
- 담당자: Bharat Jain, Partner
- 주소: 14/2, Mahalaxmi Ind. Estate, D. Shivner Road, Lower Parel, Mumbai - 400 013, India
- 전화: +91 22 6661 4320/21/22
- 팩스: +91 22 2493 8040
- 휴대전화: +91 98194 34501
- E-mail: consult@mvdco.com
- 홈페이지: http://mvdco.com

○ Malay Damania, Senior Partner
- 주소: 2/1, Kunal Lexus, Gulmohar Rd., Next to S.N.D.T. College Gate, Off. Law College Road, Pune -411 004, India
- 전화: +91 20 2545 3330
- 팩스: +91 20 3022 4322
- 휴대전화: +91 98199 00789
- E-mail: consultmvdco@gmail.com
- 홈페이지: http://mvdco.com

○ DSK Legal Advocates & Solicitors
- 담당자: Ajay Shaw, Partner
- 주소: 1203, One Indiabulls Centre Tower 2, Floor 12 B841, Senapati Bapat Marg Elphinstone Road, Mumbai - 400 013 India
- 전화: (91-22) 6658 8000
- 팩스: (91 - 22) 6658 8001
- 휴대전화: (91 - 22) 6658 8000
- E-mail : contactus@dsklegel.com
- 홈페이지: www.dsklegal.com

○ Dua Associates
- 담당자: Pratibha Sunil Varghese, Partner Advocate & Solicitor
- 주소: G-1,Phoenix, BundGardenRoad,Opp.ResidencyClub, Pune-411001.
- 전화: +912026119760
- 팩스: +912026131060
- 휴대전화:0/9823085378
- E-mail: duapun@duaassociates.com

다. 부록

은행계좌 개설 이사회 결의서 견본

(Company letterhead)

COPY OF RESOLUTION PASSED IN THE BOARD MEETING OF
THE COMPANY ON APRIL, 20TH 2009 AT 11:00 A.M.
~~~~~~

Resolved that banking account in the name of the Company M/s ********** Pvt. Ltd , be opened with HDFC Bank, Kalkaji, New Delhi and that the following person who is the Director/Promoter of the Company for the time being is individually authorised to sign or accept all cheques, Bills of Exchange, Promissory Notes and other orders.
Mr. or Ms. _____

That the aforesaid Bank be instructed to honour all cheques, promissory notes, and other orders drawn by and all bills accepted on behalf of the Company.
That this resolution shall remain in force until notice in writing of its withdrawal or cancellation is given to the bank by the Director of the Company.

For and On behalf of Board of Directors.
Director
~~~~~~

법인설립을 위한 위임장 견본

(Company letter Head)

BOARD RESOLUTION

Extracts of the resolutions passed in the Board Meeting of the company held on , 2007 at 11A.M.at the Registered Office of the Company.

_____

POWER OF ATTORNEY

********* CO. LTD., a corporation duly organized and existing under the law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having its registered office at _____주소____ Korea, hereby appoint Mr. ……, R/O. _____주소___, Korea, as a head of the proposed Registration of Company for _____사업목적_____ of "********** CO. LTD.." in India and authorize him to take all necessary actions including signing and execution of various documents necessary to open the proposed Registration of Company in INDIA, including issuing power of attorney(s) in favor of any person who could make necessary corrections/ modification to the related documents filed with the concerned Registrar of Companies, RBI(Reserved Bank of India) and collecting the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of the proposed company.

For and on behalf of:
Mr._____
CEO
********** CO. LTD

연락사무소 설립을 위한 인도중앙은행(RBI) 제출서류 견본 1

FNC 1
(See Regulation 5)

A. General Instructions to Applicants :
The application form only should be completed and submitted to the Chief General Manager, Exchange Control Department (Foreign Investment Division), Reserve Bank of India, Central Office, Mumbai-400001.

B. Documentation :

i) English version of the certificate of incorporation/registration or Memorandum & Articles of Association attested by Indian Embassy/Notary Public in the country of registration.

ii) Latest Audited Balance Sheet of the applicant company/firm.

iii) In case of Project Office documentary evidence that the Project is funded by bilateral or multilateral International Financing Agencies OR the project has been cleared by the concerned regulatory authority OR the Indian company has been granted term loan for the concerned Project by a Financial Institution or a Bank in India.

1. i) Full name and address of the applicant company /firm [State whether the applicant is a proprietary concern or partnership firm or limited company or public sector undertaking or any other organisation (Please specify).
   ii) Date and Place of incorporation / registration.

2. Details of capital

i) Paid-up capital _____divided into_____shares of _____ each

ii) Free Reserves as per last audited Balance Sheet

3. Brief description of the activities of the applicant.

4. FOR LIAISON / BRANCH OFFFICE

i) Value of goods imported from and/or exported to India by the applicant during each of the last three years:

a) Imports from India

b) Exports to India

ii) Particulars of existing arrangements if any, for representing the company in India.

iii) Particulars of the proposed Branch/ Liaison Office

a) Details of the activities/services proposed to be undertaken/rendered by the office

b) Place where the office will be located.

5. FOR PROJECT OFFICE

If the office is to be opened on a temporary basis in connection with any specific project or contract to be executed in India by the applicant :

i) Brief description of the project/ contract, including terms of payment / duration, etc.

ii) Place where the office will be located

iii) Whether the project office is funded entirely by inward remittances or by any other source specified at B (iii)

6. Any other information which the applicant company wishes to furnish in support of this application.

We hereby declare that :

i) The particulars given above are true and correct to the best of our knowledge and belief;

ii) Our activities in India would be confined to the fields indicated in column 4(iii)(a) or 5 (i) above

iii) If we shift the office to another place, we shall intimate the Reserve Bank of India; and

iv) We will abide by the terms and conditions that may be stipulated by Reserve Bank of India if approval is given.

Place : (Signature of Authorised Official of the Applicant Company)

Name:

Date: Designation:

연락사무소 설립을 위한 인도중앙은행(RBI) 제출서류 견본 2

FORM – FC/IL

SIA

COMPOSITE FORM FOR FOREIGN COLLABORATION
AND INDUSTRIAL LICENCE

Please fill up the attached supplementary sheets

Part A: For only FC / Part B: For only IL / Both Part A and Part B for FC+IL

GENERAL INFORMATION

1. Type of Application (Please √ the Appropriate Boxes)

a. Foreign Collaboration (FC)
For Foreign Investment __ For Foreign Technology Agreements__

b. Industrial License (IL)__

2. (For Office Use Only)
Application No.
Application Date

3. Payment Details (For FC Application No Fee is Payable. For Industrial Licenses Rs. 2500, is Payable)

Draft No. _____

Amount (Rs.) _____

Draft Date _____

Drawn on _____ Payable at_____

(Name of the Bank)

I. Name and Address of the Promoter / Industrial Undertaking (Indian/foreign) in full (BLOCK LETTERS) for Correspondence.

Name of the Promoter/Indl.																			
Undertaking																			
Postal Address																			
Pin Code							Telephone												
Telex							Fax												
Cable																			
E-Mail																			

II. Registrar of Companies Regisration No._____ (If Registered)

III. Status of the Promoter/Industrial Undertaking

III (1) Status of the Promoter / Promoter Undertaking

___1. Central Government Undertaking ___ 5. Joint Sector Undertaking

___2. State Government Undertaking ___ 6. Private Sector Undertaking

___3. State Industrial Government Corpn. ___ 7. Individual Promoter

___4. Co-operative Undertaking ___ 8. Foreign/NRI/OCB Company

9. Foreign/NRI Individual

III (2) Indicate whether this proposal is for (Please the Appropriate Box)

___1. Establishment of New Undertaking / Setting up a New Company

___2. Effecting Substantial Expansion

___3. Manufacture of New Articles

___4. Amendments in existing Foreign Collaboration Approval

___5. Inducting Foreign / NRI equity in existing Indian Company

IV(1) Location of the Factory/Proposed Activities

Address																		
District																		
State																		
Pin Code							Telephone											
Fax																		
E-Mail																		

IV (2) Please Indicate whether the proposed location is (Please √ the Appropriate Box)

a. Within 25 kms from the periphery of a city having population above one million according to 1991 census

Yes No

b. If Yes,then whether it is located in an Industrial area / Industrial estate Designated / set up prior to 25.7.91

Yes No

V (A). EXISTING ACTIVITIES OF THE COMPANY(Here also specify Item codes as per National Industrial Classification of All Economic Activity, (NIC), 1987.

V (B). PROPOSED ACTIVITIES OF THE COMPANY

(1) Items of manufacture (including By-product/Co-product) proposed to be undertaken (supplementary sheets may be used if necessary).

(a) Item code (NATIONAL INDUSTRIAL CLASSIFICATION OF ALL ECONOMIC ACTIVITY (NIC), 1987)

(b) Item Description _____

(c) Proposed Annual Capacity _____

(d) Existing Capacity (If, applicable)* _____

(e) Total Capacity after expansion _____

(f) Unit of capacity _____

(g) Description of Activities to be undertaken(if no manufacturing is envisaged)

(2) Whether the Item is covered in Schedule I (Reserved for Public Sector), Schedule II (Under Compulsory Licensing) or
Schedule III (Reserved for manufacture in the Small Scale Sector) of the Notification No. 477 (E)
Dated 25th July, 1991

Schedule I	Schedule II	Schedule III
Yes	Yes	Yes
No.	No.	No.

(3) Briefly indicate process involved in manufacture of the items(s)

V(C) Attach list of Industrial Licence/Registration/LOI/IEM acknowledgements already issued in favour of the applicant so far.

V(D) Whether the Indian Promoter/Company has had a foreign collaboration earlier? If yes, please specify whether for the same or similar or different products/activity. Please also indicate the Approving Authority and date & No. of the Approval Letter.

V(E) Whether the foreign/NRI/OCB collaborator has collaborations with any other Individual/Company in India for the same or similar or different products/activities? If so,please furnish / details.

VI CAPITAL STRUCTURE

(I) Capital Structure of Existing Indian Company(Amount in Rupees) & proposed capital structure (if revision sought)

	Equity	Preference

(a)Authorised

Equity Preference

(b)Subscribed

Equity Preference

(c)Paid-Up

Existing Proposed

(a) Foreign Holding

Equity % Equity %

Preference Share Percentage

(II) Pattern of share holding in Paid-up Capital (Amount in Rupees)

(b)Non resident Indian Individual holding/OCB holding

	Existing		Proposed	
(i) Repatriable	Equity	%	Equity	%
	Preference Share		Percentage	

	Existing		Proposed	
(ii) Non-Repatriable	Equity	%	Equity	%
	Preference Share		Percentage	

	Existing		Proposed	
(c) Resident Holding	Equity	%	Equity	%
	Preference Share		Percentage	

		Existing					Proposed	
(d) Total(II) (a+b+C)			Equity		%		Equity	%
			Preference Share				Percentage	

VII Proposed Borrowings (In Rupees)

(i) Public Financial Institution ________________________

(ii) Public Borrowing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iii) Other Source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iv) ECB ____

(v) Promoter Contributions __________________________

Total Borrowing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VIII. Please Indicate in brief:

(i) The background of the Indian Promoters /Company including Proprietors /Promoter / Directors (attach seperate sheet, if necessary)

(ii) The background of the Foreign/NRI/OCB Collaborator/Promoter (attach seperate sheet, if necessary)

IX. Investment (in Rupees)

	Existing	Proposed
(A) Land		
(B) Building		
(C) Plant & Machinery		
(i) Indigenous		
(ii)Imported		
(a) CIF Value		
(b) Landed Cost		
(iii)Total[(i)+(ii)(b)]		
(D) Working Capital		
(E) Total Investment		

[A+B+C(iii)]

X. Export commitments / obligation which the applicant is prepared to undertake.

Item Code												

	Year	Units (Tonnes/number/meters/ any other)	Quantity	% age of Production	FOB Value in Rupees
	(1)	(2)	(3)	(4)	(5)
1st					
2nd					
3rd					
4th					
5th etc					
Tot					
Please Indicate buy back arrangements, if any					

XI. Employment(All Figures in Numbers)

	Existing	Proposed	Total
(If applicable)			
a. Supervisory			
b. Non-Supervisory			

XII. Expected date of commencement of commercial production

FORM – FC/IL PART: A

[For Foreign Collaboration]

XIII. Foreign Investment

(a) Financial Collaborator

Name _____

Address _____

Country _____

(b) Amount of foreign equity investment

Amount in Rupees	Percentage of paid-up capital

XIV. Foreign Technology Agreement

(a) Technical Collaborator

Name _____

Address _____

Country _____

(b) Royalty on Sales

Sales	Percentage of Sales	Period	Please tick ( ) Whichever is applicable
Domestic			Inclusive of taxes
Export			Net of taxes

(c) Nature and quantum of Lumpsum payment

Name of Foreign Currency	Amount of Foreign exchange required	No. of Installment in which Payments will be made	Please tick ( ) Whichever is applicable
			Inclusive of taxes
			Net of taxes

i)Technical Know-how fees

ii) Payment for design/drawing

iii) Payment for engineering services

iv) Payment for use of patents, brand names trade marks and the like

v) Any other payment (Please specify the purpose)

XV. (I) Total foreign Exchange inflow during the period of proposed collaboration

a) Equity

b) Foreign Exchange earnings based on f.o.b. value of export obligation/ commitment

(II) Total foreign Exchange outgo during the period of collaboration

i) Import of machinery and equipment										
ii) Import of raw materials & Components										
iii) Import of Spare & Consumables										
iv) Dividends & Profits (net of taxes)										
v) Lumpsum payments (net of taxes)										
vi) Royalty payments (net of taxes)										
vii) Design & Drawing Fee										
viii) Payment of Foreign Technicians										
ix) Payment on training of Indian Technician abroad										
x) Commission of Export etc.										
xi) Amount of interest to be paid on external commercial borrowing/deferred payment credit (Specify details)										
xii) Any other payments (Specify details)										
TOTAL (i) to (xii)										
Net Foreign Exchange Position										

XVI. If this application is for extension of existing collaboration agreement or renewal of the already expired collaboration agreement:

(a) Please indicate the period for which the agreement has already run and attach the copy of the

previous approval

No.& date of of agreement	Date of commencement of agreement Approval	Date of expiry
_____	_____	_____

(b) Justification for extension of the collaboration agreement with information about the status of absorption, adaptation and development of the technology already achieved.

(c)

(i) Whether you have set up any R & D Cell to absorb the know-how and the progress achieved in this regard

Yes ☐ No ☐

(ii) If yes, please indicate the number and date of communication under which recognised by Department of Science & Technology/Department of Scientific and Industrial Research

(iii) Expenditure on R&D facility set up (in Rupees) Annual recurring expenditure

Amount of investment in fixed assets

Annual recurring expenditure

(d) Total payment made so far (Net of taxes) (in Rupees)

a) Lumpsum									
b) Royalty									
c) Other payments									

XVII. Please indicate :

(a) the Regional Office of the RBI to whom a copy of the approval is to be endorsed

_____

(b) the name of the Authorised Dealer of Foreign Exchange concerned through whom the remittance of Technical know-how fees and Royalty will be made.

Name : _____

Address : _____

_____

DECLARATION

I/We hereby certify that the above statements are true and correct to the best of my/our knowledge and belief.

(Signature of Applicant) : _____
(Name in block letters) : _____
(Designation of the signatory) : _____
Place : _____
Date : _____

FORM – FC/IL PART : B

[For IL Application Only]

XVIII. Import Requirements:

a. Capital Goods for the Projects

	(in rupees)	(US $ Thousand)
Imported	_____	_____
Indigineous	_____	_____

b. Raw Materials(including components, intermediates and packing materials) per annum

	(in rupees)	(US $ Thousand)
Imported	_____	_____
Indigineous	_____	_____

ITEM NAME QUANTITY

1.

Unit Value

ITEM NAME QUANTITY

2.

Unit Value

ITEM NAME QUANTITY

3.

Unit Value

c. Consumables & Spares for CG for the Project per annum.

(in rupees) (US $ Thousand)

Imported __________ ______________ Indigin eous ___________ ______________

DECLARATION

I/We hereby certify that the above statements are true and correct to the best of my/our knowledge and belief.

(Signature of Applicant)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Name in block letters)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Designation of the signatory)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Place : _________________________

Date : _________________________

FORM FC-GPR

We (Name of the Indian Company) -----------declare that, being eligible to issue shares to non-residents under the automatic route of RBI, furnish the following information in connection with shares issued.

1. Name/ address (Regd.office) of the Indian company issuingshares to non-residents.
2. Whether existing company or New company recently formed
3. Activities of the company

NIC Code Description

---------- ----------

4. Particulars of shares issued

(a)Name and country of the foreign investor

(b)No. of shares issued : (Furnish equity & preference separately)

No. of shares Face value of shares Total face value

Issue Price At par (Rs.) / premium of Rs. per share

Total inflow on account of } Rs.

issue of shares to non-residents}

(including premium, if any) }

vide original FIRC from (Bank) _____enclosed.

(c) (i) We are listed company ; market related price per share is Rs.

OR

(ii) Other company ; Fair value of share is Rs.

5. Capital structure of the company (after issue of shares as per item 4)

(Rupees)

	Equity	Preference
I. Paid up capital		
II. (a) Non-resident Investment		
(i) NRIs/OCBs }		
(ii) Others }		
(b) Resident Investmentn		
Total		

III. Existing percentage of } NRI/OCBs ------- %

non-resident investment } Others ------- %

in the paid up capital } _____

[II(a) as percentage of I] Total %

Declaration :

We hereby certify that

1. We have carefully followed the procedure for issue of shares under the automatic route of RBI.
2. The foreign entity(ies) (other than individuals) to whom we have issued shares does/do not have any previous joint venture or technical collaboration or trade mark agreement in India in the same or allied field.
3. We don't require an Industrial Licence under the Industries (Development and Regulation) Act, 1951 or in terms of locational policy notified by the Government under the New Industrial Policy of 1991.

4. We are an SSI unit and the investment limit of 24% has been observed OR We are not an SSI unit (Delete whichever is not applicable under signature)
5. Our proposal is within the sectoral policy/cap permissible under the automatic route of RBI.
6. Our proposal does not fall under sector(s) in which FDI is not permitted.

For _____ (Name of the company/seal)

Signature _____

(Name) : _____

* Designation : _____

Date :

Place :

(* To be signed by senior official/responsible person in the company.)

11. 투자법인철수 및 청산

가. 인도에서의 투자법인 철수 및 청산 과정

1) 개요

인도는 전체 183개국을 대상으로 한 투자법인철수 및 청산 용이도 평가에서 128위를 차지하였다.

국가별 투자법인철수 및 청산용이도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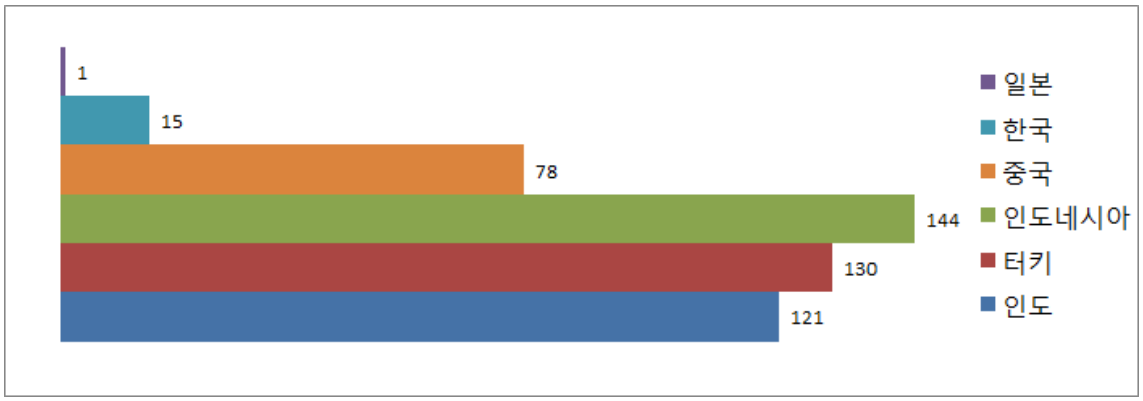

주: 순위자료(총 189개국)
자료: Doing Business 2013

인도는 2013년에는 119위로 2012년 128위에서 9계단 상승하며 개선양상을 보이다 2014년 보고서에는 다시 121로 순위가 하락하였다.

청산에는 법원 명령에 의한 청산과 자발적 청산이 있으며, 자발적 청산은 다시 주주에 의한 청산과 채권자에 의한 청산으로 나뉜다. 자발적 청산의 경우 법원의 감독을 받지 않고 절차 진행이 가능하며, 청산절차가 종료되면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여 해산 명령을 받을 수 있다.

2) 투자법인철수 및 청산 절차 구분

□ 법원에 의한 청산

회사가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등에 있어서 채권자, 회사(채무자), 법원의 청산 사무관(official liquidator) 등의 신청에 따라 법원은 회사의 청산을 명할 수 있다.

□ 주주에 의한 청산

회사가 채무를 모두 변제할 능력이 있으며, 자발적 청산을 원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청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청산인과 그의 보수가 결정되며 청산인의 임기시작과 더불어 회사의 대표를 비롯한 경영층은 경영권을 상실하게 된다.

청산인은 자산의 이전 및 매각을 통하여 부채를 정리하게 되며 청산 절차가 1년을 초과하여 지속될 경우 매년 주주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또한 마지막 주주총회에서 청산인은 회계장부에 대한 주주들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역 법원에 부속된 청산사무관과 회사등록계(registrar of company)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법원은 청산사무관에게 추가적인 조사를 지시할 수 있으며 이상이 없을 경우 법원은 해산을 명령하게 된다.

□ 채권자에 의한 청산

회사가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 채권자가 자발적으로 청산을 진행할 수 있으며, 청산절차에 대한 관리 및 회계장부의 승인은 채권자가 담당하고 채권자들은 5인 이상의 채권자로 구성된 채권단을 구성할 수 있다.

3) 투자법인철수 및 청산 관련 기타 사항

□ 종업원 해고

100명 이상 고용기업은 사업장 폐쇄 시 3개월 전에 정부허가를 받아야 하고 근로자에게 사본으로 통보해야 해야 한다. (단, 빌딩, 교량, 도로, 운하, 댐 등 건설관련 업체에는 적용되지 않음). 이 경우 사전허가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정부 측으로부터 허가 여부 통보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허가가 나온 것으로 간주되며, 폐업 시 근로자에게 보상으로 매 근속기간 1년당 15일분의 평균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한편, 100명 미만 고용기업이 사업장 폐쇄 시에는 2개월 전에 서면 통보하고 매 근속기간 1년당 15일분의 평균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 청산금 회수

현지 회계사에 따르면 지사의 청산은 약 2개월이 소요되며, 법인의 경우 문제가 없을 시 평균 6개월 정도 소요된다. 그러나 실제 인도에서는 모든 기업 활동의 종료에 따른 청산절차를 완료하고 잔여 재산을 본국으로 송금하는데 총 20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청산에 따른 복잡한 채권채무관계, 노동자의 보호, 조세 문제, 법원에서의 절차진행 지연, 외환당국의 통제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감당하지 못하는 많은 기업들이 편법을 동원하는 경우가 흔하다.

인도 내 외국회사의 지점/연락사무소의 청산절차의 송금은 RBI 승인을 조건으로 허용되며, 인도 내 외국회사 프로젝트 사무소의 청산대금 송금은 회사의 필요한 절차 이행을 조건으로 자동 승인된다. 단, 지사의 청산 시에는 청산대금의 본국 송금을 인도중앙은행이 임명한 지정딜러를 통해서 처리하여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는 점에서 프로젝트 오피스와는 구별된다.

인도에 투자한 외국자본이 송환을 원칙으로 투자되었다면, 일반적으로 자본에 대해 부과된 세금을 지불한 후에 본국으로 송환 가능하다. 또한 주식 펀드의 경우 주주의 양도 또는 청산 시에만 회수될 수 있으며, 제한된 바이 백(buy-back) 조항은 회사법에 의하여 규율되며, 감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12. 투자입지여건

가. 인도의 각 주 별 주요 산업을 고려한 입지 선정

델리, 첸나이, 뭄바이, 뱅갈로르, 하이데라바드 등 전통적으로 형성된 주요 도시의 상권을 중심으로 산업 개발이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에는 각 주의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국가의 고속도로 및 항만 건설 사업 등이 적극 추진되면서, 산업 개발 영역이 도시 주변 지역으로 점차 확산되는 추세이다. 수도 뉴델리에 인접한 우따르 프라데쉬 주의 Noida 및 Greater Noida 지역 및 하리야나 주의 Gurgaon, Manesar, Bawal 등이 산업 배후 기지로 크게 각광받고 있다.

인도 31개 주 중 투자 환경이 가장 좋은 5대 주로 마하라슈트라, 안드라프라데쉬, 카르나타카, 구자라트, 타밀나두를 선정하고, 장래 발전가능성이 있는 주로는 웨스트 벵갈과 뉴델리 에 인접한 우따르 프라데쉬 및 하리야나 주가 될 것으로 예상한 바, 동지가 조사한 각 주의 순위는 아래와 같다.

주 별 사업 환경 순위

순위	주 명	순위	주 명	순위	주 명
1	Maharashtra	11	West Bengal	23	Manipur
2	Andra Pradesh	12	Goa	24-25	Chhattisgarh
3	Karnataka	13	Kerala		Tripura
4	Gujarat	14	Delhi	26	Arunachal Pradesh
5	Tamil Nadu	15	Uttar Pradesh	27	Mizoram
6	Punjab	16	Orissa	28	Jharkhand
7	Haryana	17	Meghalaya	29	Nagaland
8	Madhya Pradesh	18	Uttaranchal	30	Jammu & Kashmir
9	Rajasthan	19	Chandigarh	31	Bihar
10	Himachal Pradesh	20-22	Sikkim, Assam, Pondicherry		

인도의 각 주정부는 전통적인 산업 환경과 발전 정도를 고려하여 특정 산업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고, 이들 주 별 특화 산업은 현지 투자 시 원부자재 및 숙련 인력 확보, 제품 공급처 확보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리하다.

투자환경이 좋은 5대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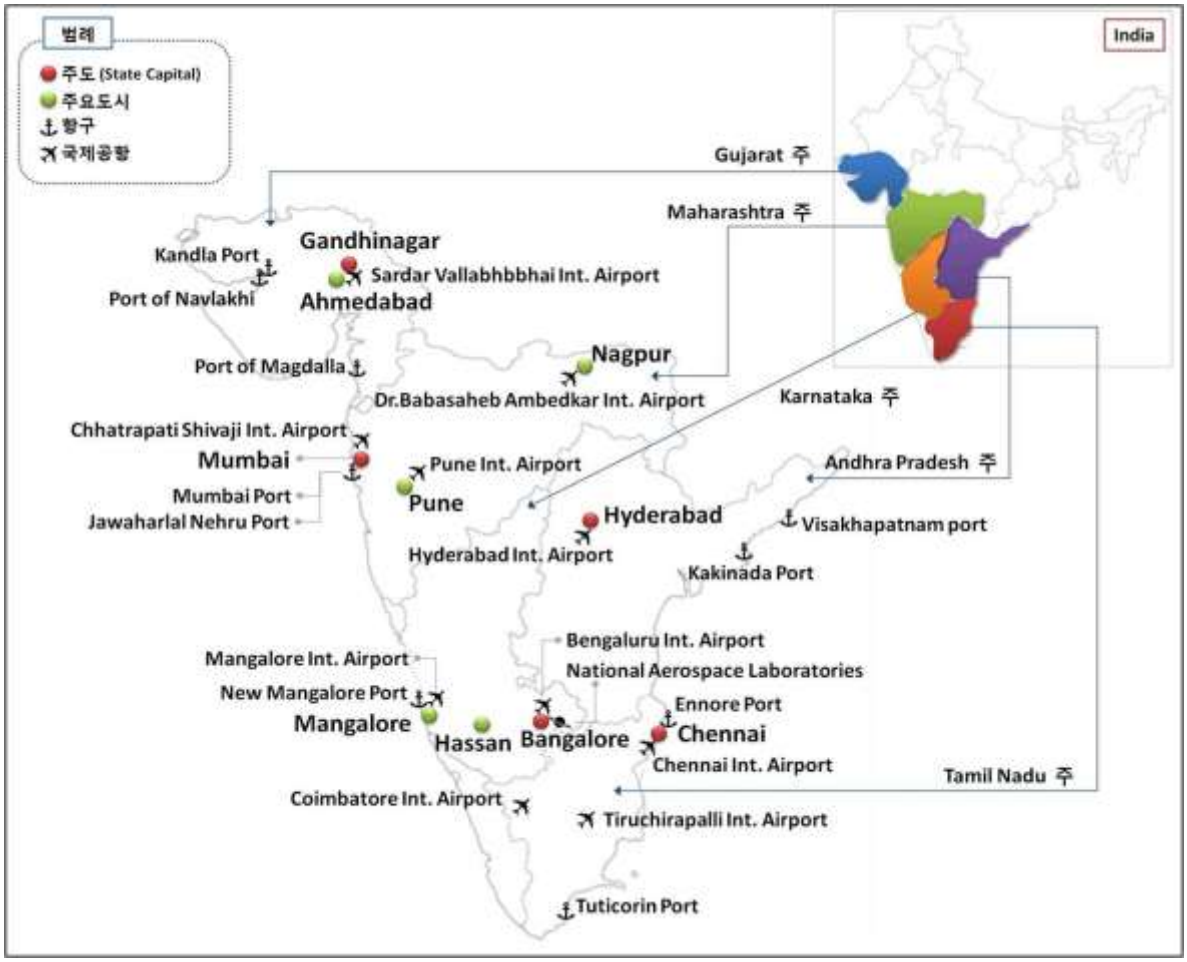

각 주 별/거점 도시 별 특화 산업

주 명	도시명	주요 산업
마하라슈트라	뭄바이	금융, 의약품, 자동차, 화학
타밀나두	첸나이	자동차, IT, 석유화학
카르나타카	방갈로	IT, 우주항공, 의류
안드라프라데시	하이데라바드	IT, BT, 보석류
구자라트	아메다바드	의약품, 석유화학, 섬유
웨스트벵갈	콜카타	IT, 피혁, 섬유, 전기.전자
펀잡	루디아나	섬유, IteS, 기계공구
하리야나	구르가온	자동차, 전기. 전자. IT(수도 델리와 인접)
유타르프라데시	노이다	전기. 전자, 자동차, IT
자르칸트	보카르	철강, 광산업
델리	뉴델리	중소제조 및 무역
차티스가르	라이푸르	보석, 알미늄, 철강, 시멘트
아쌈	구와하트	합판, 석유화학, 섬유, 비료, 시멘트, 천연가스, 고무, 차
마니푸르	임팔	수공예 산업

나. 주요 지역별 입지 여건

1) 델리(Delhi)

델리 개요

구분	내용
면적	1,483㎢(서울시의 2배)
인구	1783만명(2014.3월)
주 정치 현황	주총리는 2014년 2월 15일부터 현재까지 공석으로 남아있음.
주요 자원	도시 지역으로 특별한 지하 자원은 없음.
주요 산업	관광(호텔), 섬유, 화학, 비료, 음료, 공작기계, PVC 제품, 전자부품, 스포츠용품, 면도날 등
경제 지표	○ 국내총생산: 673억 1천만달러 (2014년 3월) ○ 1인당 소득: 1,761 달러(2013.8월)

자료: 각종 최신자료 재구성

□ 개요

델리 지역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인도의 수도로서 인프라와 다른 지역과의 연계성이 좋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델리 지역에는 인디라 간디 국제공항과 2개의 국내공항이 있으며, 여타 다른 도시 지역들과 도로 및 철도로 잘 연결되어 있다. 또한 델리 근교에 인도 최대 규모의 노이다 공업 단지가 조성되어 있다.

델리 시는 제조업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 지역(Industrial Areas)을 육성해 오고 있다. 델리시 북쪽 지역에 Naraina Industrial Area, 서쪽 지역에 Kirtinagar Industrial Area와 Mangolpuri Industrial Area가 있고, 남쪽 지역에 Okhala Industrial Area가 각각 위치해 있다.

델리는 제조업 투자에 적합한 지역은 아니지만 인도 정치 행정의 중심지이고 유력 경제권이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진출해 있다. 따라서 인도에 진출하는 기업들의 다수가 델리에 총괄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제조 기지는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대도시답게 건설, 유통, 은행, 방송, 전자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산재해 있다. 한편 델리의 면적은 약 1,483㎢이며 인구는 2014년 기준 1,783만명, 2011 인구 센서스 기준 km당 1만 1,297명으로 가장 인구가 밀집된 지역으로 꼽힌 바 있다.

최근에는 부동산 가격 폭등이 투자 진출 기업들의 애로 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투자 진출 기업들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인도정부가 뉴델리를 깨끗하고 정돈된 세계적 도시로 만들기 위한 '델리 종합 계획 2021'을

추진할 것이라 알려지면서 부동산 시장의 개발 기대감 고조와 버블로 사무실 및 주택의 임차료가 천청 부지로 솟아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신규 진출 기업들은 구르가온이나 노이다 등 델리 주변 도시로 진출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2) 마하라슈트라(Maharashtra)

마하라슈트라 주 개요

구 분	내 용
면 적	307,713㎢ (한반도 면적의 1.4배)
인 구	1억 1785만명(2014년 3월)
도시화 비율	45.22%
주요 도시	Mumbai(주 수도), Pune, Kudal, Aurangabad
주 정치 현황	Congress와 NCP(Nationalist Congress Party)의 연립 정부 주총리 Prithviraj Chavan (2010년 11월 11일부터 2014년 6월 현재까지 주의 총리로 재직중)
주요 자원	석회석, 코코아
주요 산업	IT, 금융, 증권, 식료품, 담배, 면직물, 제지·인쇄업, 고무, 플라스틱, 석유, 석탄, 화학, 제약, 금속업, 전기/기계류, 수송장비
주요 농산물	쌀, 팥수수, 밀, 땅콩, 콩, 사탕수수, 담배, 면화, 기름, 오렌지, 바나나, 망고, 포도, 캐슈넛, 라임

자료: Government of India, Maharashtra

□ 개요

마하라슈트라는 인구수 약 1억 명을 상회하며 45.22%의 도시화 비율을 기록한 주로서 가장 산업화된 주이다. 수도 뭄바이에서는 전체 주식거래의 70%가 이루어지는 등 금융과 상업, 영화 볼리우드(Bollywood)의 중심지이며, 육상과 해상 및 항공 교통망의 발달과 투자친화 정책을 통해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 선호지역 1순위로 꼽히고 있다.

마하라슈트라는 수도인 뭄바이를 중심으로 경제활동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으며 2013년 주총생산은 2,530억 달러를 기록하며, 인도 총 국민 소득의 15%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주총생산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철강, 자동차 산업, 서비스 분야에서의 급성장이 두드러지며 주총생산에서 86%를 차지한다.

□ 단점

중소기업 발전 법령을 2006년에 발표하여 실행 중에 있으며 이 정책은 사업절차 간소화 및 제조업/서비스 분야에서의 중소기업의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 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IT 기술/ITES 분야에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으며

3개의 IT 복합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이는 약 6,5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 비해 물가가 비싸다는 점과 높은 사무실 임차료가 투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인프라

마하라슈트라주의 인프라는 크게 인프라 시설과 사회적 인프라, 산업 인프라로 구분할 수 있다. 마하라슈트라 주의 도로는 인도 도로 전체의 약 12%를 점유하고 있으며 총 도로 길이는 235,595km이다. 16개의 중앙정부 및 주 정부 고속도로는 6개의 인접한 주와 연계되어 있어 훌륭한 교통 인프라를 자랑하고 있다. MSRTC(Maharashtra State Road Transport Corporation)는 버스운행 서비스를 1948년부터 시행 중이다.

□ 도로 및 교통

현재 주정부는 뭄바이(Mumbai) 도심과 나비 뭄바이(Navi Mumbai) 지역을 연결하는 22km 6차선 도로를 건설할 계획이다. 또한 주정부는 16,000대의 버스를 운행하고 12,000명의 관련 고용인을 두고 있으며, 하루 7백만 명에게 버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마하라슈트라 주의 철도 네트워크는 다른 주에 비해 잘 구축되어있으며 각 주와의 연계성이 뛰어나다. 마하라슈트라 주의 철도는 인도 전체 철도 레일의 9%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총 5,527km의 광범위한 철도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마하라슈트라 주는 도시철도도 운영하고 있으며, 매일 약6백만 명의 승객을 수송하고 있다. 해변 철도 네트워크는 서부철도의 한 부분으로, 그 범위를 구자라트(Gujarat), 라자스탄(Rajasthan), 푸네(Pune), 마하라슈트라까지 넓혔다. 주요 철도역은 뭄바이(Mumbai), 나그푸르(Nagpur), 푸네(Pune), 미라잔드 나쉬케르(Mirajand Nashikare)이다. 최근 마하라슈트라 주는 총 146.5km에 달하며, 49억불이 투입되는 도심지하철을 건설하고 있으며 9개의 구간을 3단계로 나누어 2011, 2016, 2021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 항만·공항

마하라슈트라 주는 해운분야 중 항구 규모 면에서 인도 주 내에서 가장 큰 항구를 가지고 있다. 720km의 해변을 따라 2개의 주요 항구와 53개의 비주류 항구를 보유하고 있다. 주요항구는 뭄바이항(Mumbai Port)과 나바 쉐바항(Nhava Sheva Port:JNPT Port)이다. 그중 JNPT 항구는 인도에서 가장 큰 항구이며,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항구이다. 또한, 이 항구는 BOT (build-operate-transfer)에 근거를 둔 민간투자에 의해 개발되었다. 마하라슈트라 주에는 3개의 국제공항과 6개의 국내공항이 있으며 이 공항들은 국제여객의 34%, 국제화물의 34%를 담당하며 인도인들의 중요한 이동수단이 되고 있다.

뭄바이 국제공항(Mumbai International Airport)은 현대화 작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현대화 작업이 끝난다면 연간 25,00만 명의 승객과 4만여 톤의 항공화물이 수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푸네 국제공항(Pune International Airport)과 나가뿌르(Nagarpur)국제여객, 화물터미널이 건설 중이며 나가뿌르 터미널의 건설은 경제특구의 발전과 연계하여 거대한 시너지(Synergy)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아우랑가바드 국제공항(Aurangabad International Airport)은 보수작업을 거쳐 국제공항의 연결고리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인도 도시산업개발공사(City and Industrial Development Corporation, CIDCO)는 나비 뭄바이에 신공항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도시산업개발공사는 인도 항공부의 승인을 확신하며, 2013년 12월 중순까지 나비 뭄바이 국제공항 프로젝트 참가신청(Reques for Qualifocation, RFQ)제출을 완료할 것이라 발표하였다. 이번 신공항 건설 프로젝트 진행 시 2017년 말까지 연간 1천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1,457억루피 규모의 1단계 산업이 완료될 것이며 이로 인해 현재 포화상태인 뭄바이 국제공항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산업개발공사에 따르면 동 프로젝트는 민관협력사업으로 향후 도로, 인프라 건설에 대한 입찰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 전력

전력인프라의 경우는 지속적인 전력부족으로 마하라슈트라 주정부가 전력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정책을 펼쳐왔다. 2013년 12월 기준, 인도에서 가장 많은 전력인 32,505MW를 생산하여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그로 인해 대도시인 뭄바이(Mumbai)의 경우에는 여름에도 전력이 끊기는 일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마하라슈트라 주의 전력 소비 비중을 보면 산업용 전력의 소비가 가장 많으며, 차례로 주거용 전력과 농업용 전력이 그 뒤를 잇는다.

마하라슈트라주의 대표적인 도시로는 뭄바이와 푸네를 들 수 있다. 이 지역은 첸나이 지역과 더불어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의 생산 단지로 부각되고 있다. 이 지역의 인프라 수준은 다른 지역보다 높으며 전력 공급도 안정적이다.

마하라슈트라 주의 주요 산업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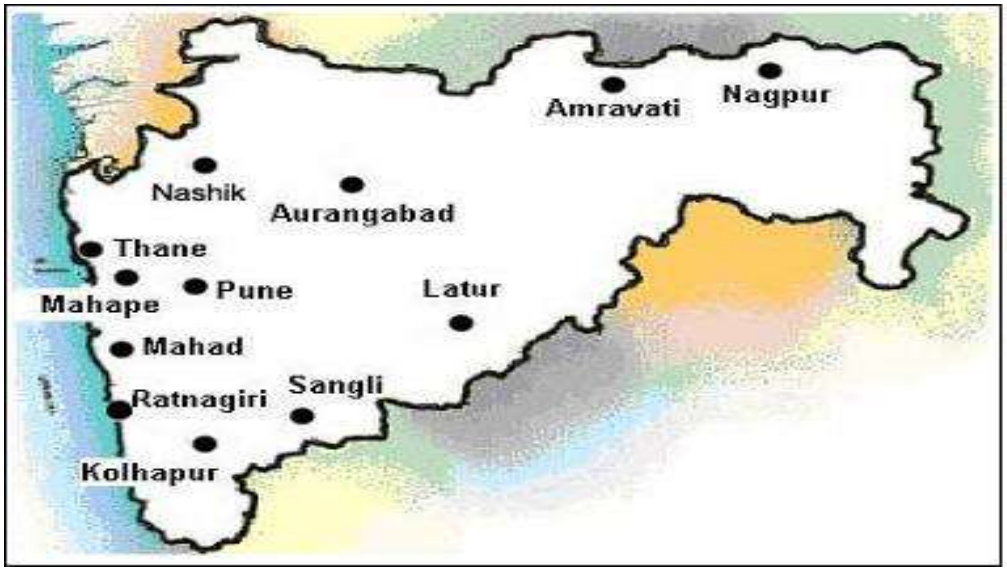

자료: 마하라슈트라 개발공사 (MIDC)

푸네는 교육 도시이자 자동차 및 부품 산업이 발달한 도시로 LG전자 제2공장, 동양알루미늄, GM, 폭스바겐, 월풀 등의 공장이 위치해 있으며 최근 현대중공업의 중장비 공장도 이 지역에 2008년도 11월에 완공되어 운영 중이다.

푸네 지역의 주요 산업 지역

푸네 지역의 산업 지역	그 룹	카테고리
Baramat	C/D	성장 중심
Chakan industrial area	C	주요 산업 지역
Jejuri	C	주요 산업 지역
Kharadi Knowledge Park	A	주요 산업 지역
Kurkumbh	C	주요 산업 지역
Pandare	C	주요 산업 지역
Pimpri Chinchwad	A	주요 산업 지역
Rajiv Gandhi Infotech Park, Phase I – Hinjawadi	A	주요 산업 지역
Rajiv Gandhi Infotech Park, Phase II –Hinjawadi	A	주요 산업 지역
Ranjangaon	B/C	5성급 산업 지역
Talegaon	B	주요 산업 지역
Talwade Software Park	A	주요 산업 지역

주: 그룹 A~D는 마하라슈트라 개발공사가 지역별 개발 정도에 따라 5 등급 (A,B,C,D,D+) 으로 분류한 것으로 A지역은 대도시와 같이 개발이 가장 많이 된 지역(A〉B〉C〉D〉D+) 이며 D+지역은 개발이 덜 된 지역으로 분류됨. 반면 D+지역은 정부의 재정적 인센티브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으며 A는 이와 반대됨
자료: 마하라슈트라 개발공사 (MIDC)

3) 카르나타카(Karnataka)

카르나타카 주 개황

일반사항	주	카르나타카(Karnataka)
	인구	6405만명(2014년 3월)
	면적	19,1791 ㎢
	종교	힌두(83%) 무슬림(11%)
	언어	Urdu (9.7%), Telugu (8.34%), Tamil(5.5%), Marathi (4.4%), Tulu(3.4%), Hindi(1.9%) 등
정치제도	주총리	Shri. Siddaramaiah(2013년 5월 13일 등극)
	의회구성	양원제
경제지표	주총생산	988억 3백만 달러(2014.3월)
	1인당소득	1281.44달러(2013.12월)

자료: 각종자료 재구성

□ 개요

카르나타카 주는 타밀나두 주와 함께 인도남부지역의 경제발전과 공업화를 주도하는 주로 1990년대 말 연간 GDP 성장 8%대, 산업성장률 7%대를 유지했으나 2001년 이후 4~5%대로 둔화되었다. 그러나 2012~13년에 15.4% 성장하면서 급속한 발전을 이루고 있다.

세계은행 보고서 Doing Business에 따르면 주도인 방갈로르는 주요도시 사업 환경 순위 에서 13위를 기록하였다. 카르나타카 주는 친 기업정책을 사용하여 절차의 간소화, 빠른 승인, 에스코트 서비스 등을 통해 투자자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 산업정책(New Industrial Policy: 2009~2014)에서 우호적 기업환경을 위해 산업성장 도모, 지역발전 불균형 해소, 고용창출, 제조 산업 육성을 목표로 정했다.

□ 인프라

주 정부는 전력, 도로, 공항, 용수공급 등 인프라 개발과 현존 인프라시설 개·보수 사업에 역점을 두고, 중앙정부예산 지원과 함께 민자 유치를 적극 모색하고 있다. 카르나타카 주에는 방갈로르 국제공항을 비롯한 총 7개의 공항이 존재하며 망갈로르 (Mangalore) 공항의 국제화 작업이 진행 중이며, 하산(Hassan), 마이소르(Mysore) 공항이 신설 중에 있다.

카르나타카 전력 공사는 2013년 1월에만 13,596MW 전력 생산을 34개의 댐과 25개의 발전소에서 생산하고 있다. 최근 증가하는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Cogentrix, Nagarjuna Power Corporation과 합작 프로젝트를 계획해 비다디(Bidadi)에 발전소를 건설하고 기존 발전소 개선 사업을 통해 추가로 5976㎿의 전력 생산을 계획하고 있다.

방갈로르 지역에는 전 대다수의 글로벌 IT기업의 대다수가 밀집해 있는데 TI, IBM, 오라클 등이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으며 삼성과 LG의 소프트웨어 개발센터도 이곳에 위치해 있다. 이뿐 아니라 위프로, 인포시스, TCS 등 인도의 IT대기업들도 이곳에서 활동하고 있어 IT산업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다.

카르나타카 주

자료: http://www.kumbangalore.com

4) 타밀나두(Tamil Nadu)

타밀나두 주 개요

일반사항	주	타밀나두(Tamilnadu)
	인구	7431만명(2014년 3월)
	면적	130,058㎢(한반도 면적의 60%)
	종교	힌두(88.6%), 기독교(5.7%), 무슬림(5.5%)
	언어	타밀어 (Tamil), 텔구(Telgu), 우르두(Urdu)
정치제도	주총리	Selvi J Jayalalithaa
	의회구성	단원제
경제지표	주총생산	1414억 8천만달러(2014.3월)
	1인당소득	1644.75달러(2013년 12월)

자료: 각종자료 재구성

□ 개요

현대자동차를 비롯하여 포드, 르노-니산-마힌드라(합작), 아쇽 레일랜드 등 여러 자동차 업체들의 생산 공장이 위치해 있으며 이외에 노키아 휴대폰 공장과 삼성전자 제2공장도 들어서고 있다.

타밀나두 주는 인도 내 최대의 섬유제조업 및 수출 지역이다. 인도 전체 생산량의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티루뿌르(Tirupur)의 경우 인도 내 니트웨어 산업 수출의 56% 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주정부는 산업이 주도인 첸나이에 집중되는 것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디루발루르(Thiruvallur) 및 칸치뿌람 (Kanchipuram)에 새로운 제조업 단지 건설을 계획을 하고 있다.

최근 섬유, 자동차, 시멘트, 종이 등의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인근의 안드라프라데시주와 카르나타카 주의 영향을 받아 정보기술과 생명공학 분야가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도로 및 교통

타밀나두 주의 인프라시설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매우 양호한 수준으로 1,805km길이의 24개 중앙정부고속도로가 펼쳐져 있고 NHAI(National Highway Authority of India)의 Golden Quadrilateral road link프로젝트의 주요 종착역이기도 하다. 타밀나두 중심은 24개의 주정부 고속도로와 연계되어 있고 도로 밀도는 1,588km/1000sq km로 국가 평균인 1,115km/1000sq km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타밀나두 주는 인도의 주들 중 처음으로 소도시에서 마을까지 도로를 포장한 주이다.

1975년 9월에 원활한 도로수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SETC(State Express Transport Corporation)가 설립되었다. 최근에는 도로 설비를 개선하기 위해 주정부가 투자한 World Bank-funded 프로젝트가 실행 중에 있다.

타밀나두의 철도 네트워크는 남철도(Southern Railway)의 관할권에 포함되며 이는 타밀나두(Tamilnadu), 케랄라(Kerala), 폰디체리(Pondicherry), 안드라 프레데쉬(Andhra Pradesh)의 부분을 포괄하고 있다. 타밀나두 주는 전장 5,911km의 철도 네트워크와 541개의 철도역을 보유하고 있다. 타밀나두의 주도인 첸나이(Channai)는 잘 정비된 교외 철도 네트워크를 자랑하며 이는 첸나이와 근교, 인접한 도시들의 연결 고리가 되어준다. MRTS(Mass-Rapid-Transit System)는 첸나이의 전장 25km의 교외 고가철도이고 이 철도는 첸나이 해변부터 발라체리(Velachery)교외까지 운행되며 21개의 철도 역을 경유한다.

□ 공항

타밀나두 주는 첸나이(Chennai)와 트리치(Trichy)에 국제공항이 위치해 있으며, 첸나이(Chennai), 코임바토르(Coimbatore), 투티코린(Tuticorin) 및 마두라이(Madurai)에 국내 공항이 위치해 있다. 첸나이 국제공항은 국가에서 처음으로 ISO-9001-2000증명서를 획득한 획득한 공항이며 전자 데이터 설비를 통해 통관을 진행하는 공항이기도 하다. 또한 첸나이공항(Chennai Airport)은 2012년 1월에 완공되었으며, 차트라파티 시바지 국제공항, 델리 인디라 간디 국제공항에 이어 인도에서 3번째로 규모가 큰 공항이다.

□ 전력

타밀나두 주 전력위원회에 따르면 2013년 12월 기준으로 타밀나두 주는 20,716MW의 전력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2008-09 기준으로, 총11,131.6MW과 견주어 볼 때 약 10,600MW 증가한 수치이다. 이 외에도 풍차를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전력생산 보유량은 7,946MW까지 가능한 상태이다. 타밀나두 주의 1인당 전력소비량은 1,000units으로, 타밀나두주의 전력은 타밀나두 TNEB(Electricity Board)와 GMR, 보루카(Bhoruka), 진달(Jindal)과 같은 독립 전력 생산자들(IPP)에 의해 제공된다. 재생 에너지는 농촌 지역의 성장 부문이므로 인도 정부는 타밀나두 주의 재생에너지 개발계획을 위해 MNRE(Ministry of New and Renewable Energy)의 결절 기관인 타밀나두 TEDA(Energy Development Agency)를 설립했으며 TEDA는 아나 대학교(Anna University) 와 함께 총 87만 달러가 소요되는 연구 및 개발 프로젝트에 돌입했다.

타밀 나두는 전력부문에 있어 유틸리티(Utility)구조를 가진 몇 안 되는 인도 주 중 하나로, TNEB가 전력생산, 전력 송·배전을 통틀어 관리한다. 타밀 나두 주는 2013년 2천만명에게 20,716MW의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첸나이 지역 주요 산업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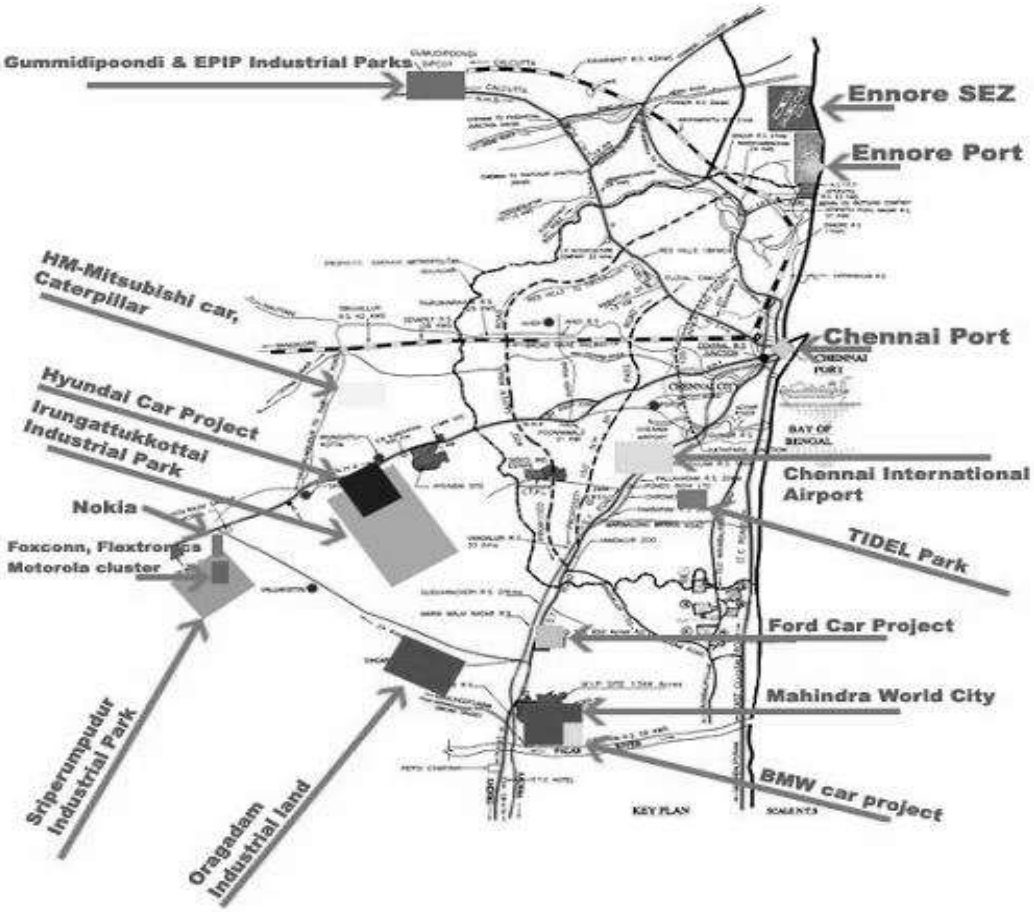

자료: TIDCO

5) 구자라트(Gujarat)

구자라트 주 개황

면적	196,000㎢(한반도 면적의 88.6%)
인구	약 6389만명 (2014년 3월)
도시화 비율	42.6%
주요 도시	Gandhinagar(주 수도), Gandhinagar, Ahmedabad, Baroda, Bharuch, Godhra, Jamnagar, Kheda, Rajkot, Surat, Vadodara
주 정치 현황	주총리 Anandiben Patel (2014년 5월 22일부터 집권 시작)

자료: 구자라트 주정부 사이트 및 각종자료 재구성

□ 개요

인도 서쪽에 자리 잡은 구자라트 주는 인도의 28개 주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주 중의 하나이다. 구자라트의 면적은 남한면적의 약 2배로 인구는 남한 인구보다 약간 많은 편으로 인구밀집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 구자라트주의 수도는 간디나가르이지만 가장 발달한 도시는 아메다바드로 이곳을 중심으로 경제활동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회계연도 2013년 기준으로, 구자라트주의 경제성장률은 12.69%를 기록했다.

주정부는 민자 유치를 통해 경제특구(SEZ) 추가 건설 및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어 구자라트 지역에는 여러 가지 특혜가 제공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는 관세혜택, 절차의 간소화, 등록수수료 면제, 발전소 설치기업에 대해 10년간 전기관련 세금 면제 등이 있다.

인도 전체인구의 약 5%, 총 생산의 16%, 총 수출의 1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외국인 투자유치의 3%를 차지하고 있다. 2010까지 5년 동안 주 총생산이 매년 10% 가까이 늘어나는 등 경제성장이 활발하며 주요 산업분야는 화학, 석유화학, 제약, 유제품, 시멘트 및 세라믹, 섬유, 보석 등이다. 구자라트 주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인프라, 주정부의 외국 자본에 대한 호의적인 정책, 노사안정, 구자라트 상인들이 일찍부터 해외에 진출한 경험 등의 이유로 서유럽 기업과 일본 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다.

□ 인프라

최근 국내·외 에너지 관련 기업들은 구자라트 주정부가 새롭게 시행중인 2009년 1월 신 태양에너지 정책 추진과 더불어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다. 2009년 8월 세계 최대 의 태양광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허브를 조성하기 위한 계획도 준비하고 있다. 2009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구자라트 주정부와 MOU를 체결하고 뭄바이 북쪽 150 km 지점에 '구자라트 비탈 이노베이션 시티 특별경제구역'을 건설하기로 합의했다. 사업기간은 총 6년이며 사업비는 2,520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번 사업은 구자라트 주변에 도로, 철도, 항만시설, 수자원 전력 등의 인프라시설과 함께 여러 가지 산업단지를 설치할 계획이다.

2013년 10월에는 일본이 구자라트 주 정부와 협력하여 도시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이라 발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구자라트 주 내 아메다바드 지역에 카메라 교통센서, 전자 안내판 등의 첨단 지능형교통시스템(ITS) 도입뿐 아니라 신공항 건설계획까지도 고려 중에 있다.

현재 구자라트 지역에는 60여개의 일본 기업들이 진출해 있으며 최근에는 마루티 스즈키 사가 Mandal-Becharaji 특별 투자구역에 제3공장 신축 계획을 발표하였다. 주인 일본상공회의소 마사카즈 사카키다 회장은 현재 구자라트 내 일본 기업들이 토지취득과 부족한 인프라 시설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인프라사업 제안서를 정부에 제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도로· 교통

구자라트 주의 면적 대비 도로비율은 2.7%로 안드라프라데시(Andhra Pradesh)(2.0%), 델리(Delhi)(0.05%), 마하라슈트라(Mahashtra)(1.4 등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월등히 높다. 2012년 기준 구자라트 주는 74,500km에 달하는 도로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 구자라트의 총 고속도로는 약 38.2%가 복합차선으로 만들어졌으며, 주의 총 도로의 87.9% 가 아스팔트로 깔려있다. 또한, 소도시에서 도시로의 연계성도 효율적으로 구축되어 있다. 최근에는 교통량 수요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도로 확장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아메다바드-나디아드(Ahmedabad-Nadiad)구간 국도 개통되었다.

철도 또한 도로와 같이 각 구간과의 연계성이 훌륭히 갖춰져 있으며 주 면적대비 철도 비중은 37.9%를 기록하고 있다. 2012년 기준 총 5,171km의 철도가 건축되어 있다. 인도 철도공사는 델리-뭄바이(Delhi-Mumbai) 연결 산업화물철도를 구자라트 통해서 연결할 계획이다. 중앙정부는 화물수송로 건설을 위하여 약 100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만약 화물수송로가 건설된다면 산업연계로 인한 경제파급효과로 구자라트의 산업에 활기를 넣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구자라트의 21개의 주요 철도역은 아메다바드(Ahmedabad), 아난드(Anand), 바브나갈(Bhavnagar), 부즈(Bhuj), 고드라(Godhra), 포르벤더르 (Porbandhar), 라즈콧(Rajkot), 바도다라(Vadodara), 발사드(Valsad)에 위치한다.

□ 항만· 항공

구자라트 주는 1,600㎞의 해안선에 걸쳐 41개 항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요 항구로는 칸들라(Kandla)이며 중소규모 항구는 40개가 있다. 민간유치를 통해 건설된 항구로는 피파바브(Pipavav), 문드라(Mundra) 및 다해즈(Dahej) 등이 있으며 인도 전체에서 가장 항구 시스템이 현대적으로 갖추어진 곳으로 평가 받는다.

구자라트 주가 인도에서 처음으로 항구 민영화를 불러일으켰으며, 4600여대가 넘는 함선과 1000대가 되는 소규모 배들이 항구를 방문한다. 총 화물처리량은 2012년-13년 기준 인도전체 화물량의 2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현재 구자라트 주는 항구부문에 10건의 Green Field Project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항구의 발달은 서쪽에 자리 잡고 있는 중동지방으로의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수출 전진기지와 물류기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된다.

구자라트 주는 13개의 국내공항이 바브나갈(Bhavnagar), 부즈(Bhuj), 잠나갈(Jamnagar), 칸들라(Kandla), 캐쇼드(Keshod), 주나가드(Junagadh), 포르밴덜(Porbandar), 라즈콧(Rajkot), 수랏(Surat), 바도다라(Vadodara), 잘라와드앤드 메사나(Zalawadand Mehsana)에 위치해 있으며, 아메다바드(Ahmadabad)에 단 하나의 국제공항이 위치하고 있다.

아메다바드에 있는 사다르 발라하이 파텔 국제공항(Sardar Vallahai Patel International Airport)는 하루에 150편의 비행기가 이륙하며 인도에서 8번째로 분주한 공항으로 알려져 있다.

□ 전력

전력 인프라의 경우, 전력생산량 및 1인당 전력소비량이 여타 주들에 비해서 월등히 높고 전력의 송배전 및 질적수준 또한 우수한 것으로 분석됐다. 구자라트 주의 전력생산량은 2013년 12월 기준으로 26.269MW에 달하며 이 수치는 마하라슈트라주 다음으로 높다.

구자라트의 주요 산업 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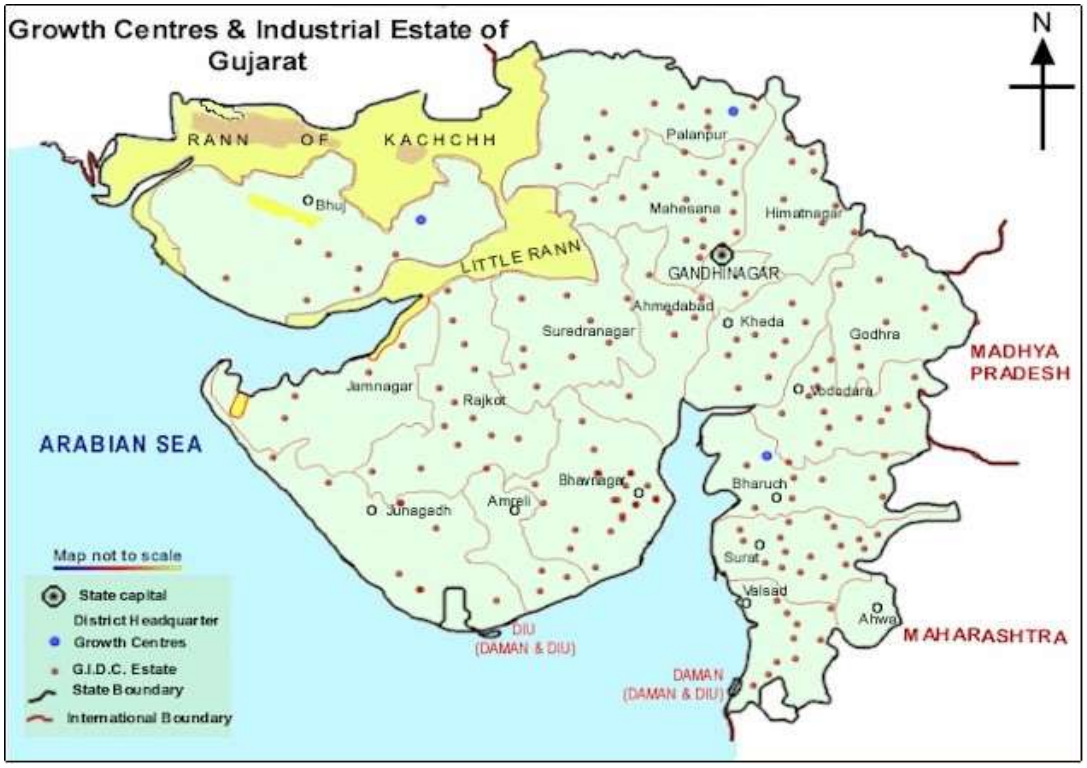

자료: 구자라트 주정부

구자라트의 주요 산업

주요 산업	점유율
Petroleum Products	34 %
Chemicals & Pharma	27 %
Engineering Industries	9 %
Food Processing	9 %
Textiles & Apparel	7 %
Metallurgical Ind.	6 %
Mineral Based Industries	2 %
Rubber & Plastic Prod.	2 %
Paper Prod.	1 %
Others	3 %
Total	**1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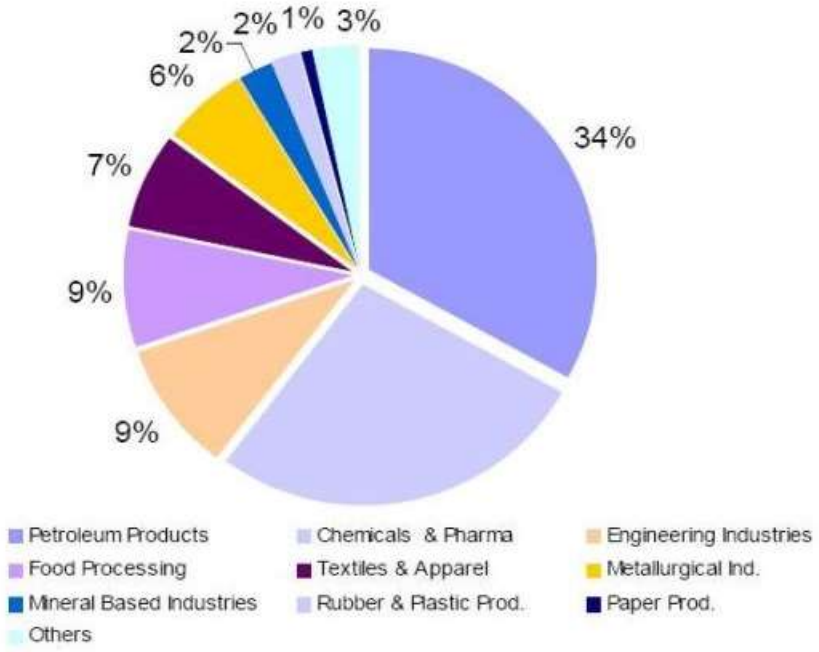

자료: 구자라트 주정부

구자라트 내 SEZ 현황 (정부 승인된 SEZ)

이 름	품 목	면적 (헥타르)
Kandla SEZ	Multi-product	1,021
Surat SEZ	Multi-product	111
Surat SEZ	Apparel	56
Surat SEZ	Multi-product	74
Dahej SEZ	Multi-product	1,841
Mundra SEZ	Multi-product	10,000
Ahmedabad SEZ	Pharmaceuticals	120
Ahmedabad SEZ	Engineering	230
Ahmedabad (Dhandhuka) SEZ	Pharmaceuticals	200
Ahmedabad SEZ	Apparel	38
Jamnagar SEZ	Petroleum & Petrochemicals	4,400
Jamnagar SEZ	Multi-product	2,470
Gandhinagar Electronic Park	Electronics	28
Vilayat SEZ	Pharmaceuticals	160
Dholera SEZ	Multi-product	30,000
Anjar SEZ	Textiles & Apparels	284
Hazira SEZ	Steel & Engineering	387
Kutch SEZ	Steel	101
Vadodara SEZ	Hitech Engineering SEZ	101
Bharuch SEZ	Chemicals	160
Jaghadia (Bharuch) SEZ	Ceramics & Glass	197

자료: 구자라트 주정부

구자라트의 외국인 투자지원정책

구분	내 용
이자보조기금	중소기업이 새 프로젝트, 확장, 다양화 또는 현대화를 하기 위한 중소기업에게 인센티브 5년 간 매년 최대 50만 루피까지 5%의 이자 지원.
기술개선	자본 설비로 인한 대출에 대해 연간 최대 30만 루피까지 3%의 이자 지원
R&D 지원	R&D 기관 지원. 지원받는 연구에 대해 최대 50만 루피까지 프로젝트의 50% 지원
품질보증	BIS 보증, ISO 9000, ISO 14000, ISO 14000, HAVVP, WHO GMP 등 최대 20만 루피까지 비용 50% 지원
마케팅 지원	최대 20만 루피까지 국제 무역 전시회 참가 보조. 산업 협회에 최대 50만 루피까지 총 렌트 비용의 50%까지 보조

자료: MSME Report, iNDEXTb

6) 안드라 프라데시(Andhra Pradesh)

안드라 프라데시 개황

일반사항	주	안드라 프라데쉬(Andhra Pradesh)
	인구	8466만명(2014)
	면적	275,000 ㎢
	종교	힌두(89%) 무슬림(5%)
	언어	영어, 힌디
정치제도	주총리	N. Chandrababu Naidu (2014년 6월 8일부터 임기시작)
	의회구성	양원제
경제지표	주총생산	1426억 5천만달러(2014년 3월)
	1인당소득	1300.77달러(2013년 12월)

자료: 각종자료 재구성

□ 개요

안드라 프라데시는 4,537km길이의 17개의 중앙정부 및 주정부 고속도로를 가지고 있다. 안드라 프라데시 주의 수도이자 교통의 요지인 하이데라바드는 방갈로르와 더불어 인도의 2대 IT 도시 중의 하나로서 마이크로소프트 아시아 지역 본사가 소재해 있는 지역이다. 하이데라바드를 IT의 허브로 만들기 위해 지식 기반 산업 파크를 설치하여 하이테크 산업, 금융 산업, 문화 산업, 관광 산업 등의 투자 유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주정부의 산업화 정책,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등의 효과로 국내외 기업들에게 투자 선호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IT 등 지식기반산업이 잘 발달되어 있으며, 세제혜택, 주정부 정책의 유연성, 정책이행, 지방행정의 질 면에서 우수하여 국내 및 해외투자가들에게 투자친화적이라는 좋은 평판을 얻고 있다. 최근 인도중앙은행(RBI)에 의하면, 안드라 프라데시 주는 산업투자지역으로 1위인 구자라트 지역 다음인 2위를 기록하였다.

주정부는 Visakhapatnam과 Kakinada에 2개의 경제특구(SEZ)를, AP산업투자공사(APIIC)의 주도로 여러 개의 산업지구를 건설하였으며, 하이데라바드에 의약단지, 섬유, IT단지를 설치 개발 중이다. 이외에도 주 내 각 지역에 식품가공, 자동차부품, 의류, BT, 섬유 단지를 개발 중이다.

□ 도로·교통

안드라 프라데시는 4,643km길이의 17개의 중앙정부 및 주정부 고속도로를 가지고 있다. 2009-10년의 보고에 따르면, 총 도로 길이는 199,990km로 도로 밀도는 68,013 sq/km이다.

이 주에는 37개의 도로개발 프로젝트(Public-privave partmership project)가 각각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안드라 프라데시는 도로 인프라에 약 3.2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으로

이는 주의 도로 안전, 수용량,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도로분야의 계획은 이전에 건설된 429km의 주정부 고속도로의 보완과 6,000km에 달하는 주요 건설 도로 망의 장기적 재정유지를 위해 고안되었다. 도로 수송의 개선은 농업과 산업의 발전, 그리고 시장으로의 접근성을 확대시켜 주의 주민들에게 서비스와 직업 기회를 같이 제공할 계획이다.

안드라 프라데시의 면적 대비 도로비율과 철도비율은 다른 주의 수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이 주는 총 길이 5,030km의 철도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세컴더라바다스(Secumderabadas)에 본사를 두고 있는 South Central Railway가 관리한다. 곧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MRTS(Mass Rapid Transit Service)프로젝트가 마무리되면, 2021년 260만 명이 넘는 승객을 태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항만· 공항

안드라 프라데시 주의 항만은 인프라수준에서 구자라트, 마하라슈트라에 이어 항만 수 기준으로 3위이나 소규모항 화물 물동량에 있어서는 전체의 9%로 미약한 수준으로 분석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안드라 프라데시 주정부는 하이데라바드(Hyderabad), 비자야와다 (Vijaya wada), 비사카파트남(Visakhapatnam), 넬로르(Nellore), 아난타푸르(Anantapur) 등의 주요 경제중심지와 동 경제중심지 사이의 지역에 대한 산업개발을 위해 인프라시설 확충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안드라 프라데시 주는 7개의 국내공항을 소유하고 있으며, 공항은 비사카파트남(Visakhapatnam), 피루파티(Tirupati), 라자흐문드리(Rajahmundry), 와랑갈(Warangal), 비제 야와다(Vijayawada), 도나콘다(Donakonda), 카다판드 푸따파띠(Kadapaand Puttaparthy)에 위치하고 있다. 최근 하이데라바드 국제공항(Hyderabad International Airport) 건설이 완공되었으며, 비사카파트남(Visakhapatnam)을 국제공항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중소도시들에 대한 국내공항 또한 지속적으로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 전력

인도 전력부처의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안드라 프라데시 주는 2013년 12월 기준 17,285MW의 전력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도 주 중에서 4위의 해당하는 전력생산량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의 전력 에너지원 별 비중은 2013년 12월 기준 화력 69%, 신재생에너지 29%, 원자력 2% 다른 주 대비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에너지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장기적 측면에서 에너지 효율이 높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1인당 전력소비량은 2000-2010년도 기준 1014kwh로 인도 평균 778kwh에 비해 약 200kwh 높은 전력 소비량을 기록하고 있으며 전력의 송·배전 또한 양호하며 모든 마을까지 전력보급이 100% 이루어진 주이다.

안드라 프라데쉬 주 인프라 현황

시설	도로	199,990km
	철도	5046km
	항만	5 + 1 (Gangavaram에 민간항만 개발 예정)
	공항	5 + 6 (6개 도시에 설립 예정)
	전력	17285MW
사회	출생률	1.66 (2013)
	사망률	7.2 (FY 10)
	태아사망률	4.1%(2013.9)
	평균연령	66.08 (2011)
산업	산업파크	Pharma Park Parawada, Apparel Export Parks Gundlapochampally Visakhapatnam, Marnine Biotech Park Visakhapatnam, Special Economic Zone Vishakapatnam
	산업발달지역	Hyderabad, Vijawada, Bheemavaram, Sircilla, Ranha Reddy
	산업단지	Pydibhimavaram, Parawada, Peddapuram
	산업클러스터	Vakalpudi Kondapalli, Tada, Gujulamandyam, Palamaneru, Penukonda, Kodada, Pashamylaram, Cherlapally, Mankhal

자료: 각종자료 재구성

안드라 프라데시 주의 주요 산업 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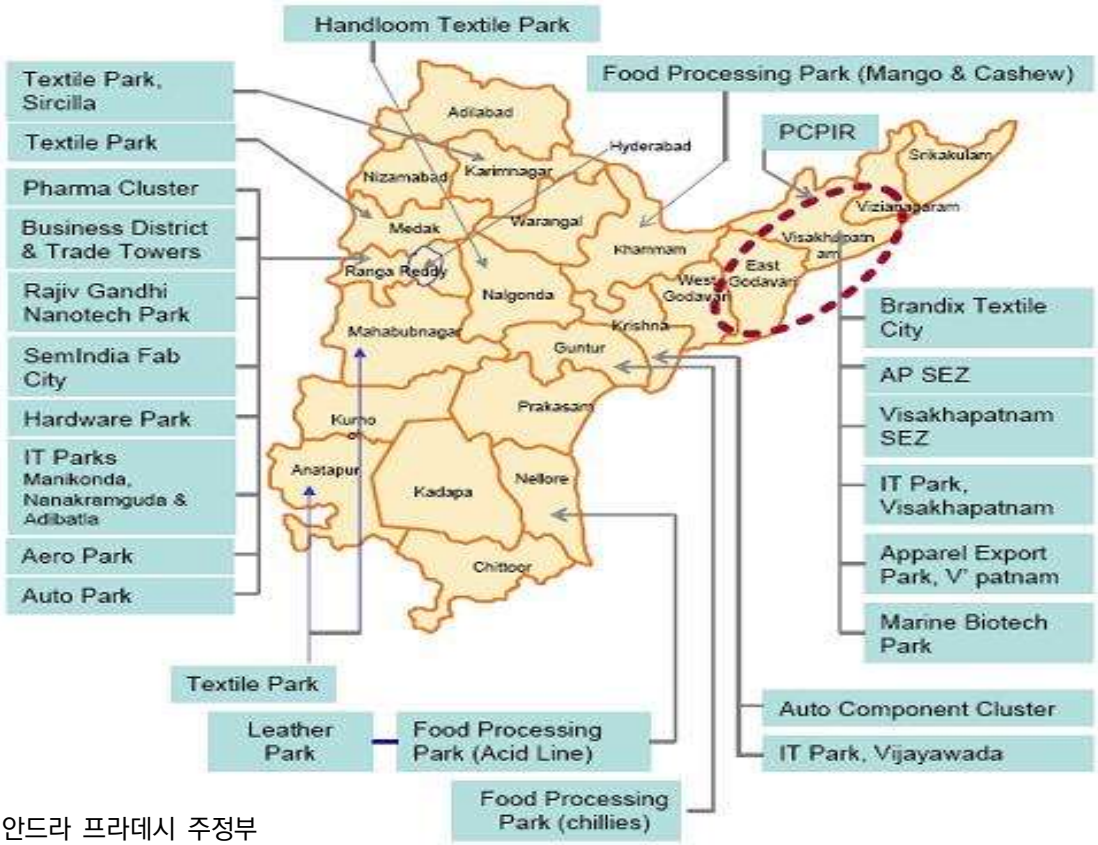

자료: 안드라 프라데시 주정부

7) 하리야나(Haryana)

하리야나 개황

일반사항	주	하리야나(Haryana)
	인구	2,535만명 (2013)
	면적	44,212 ㎢
	종교	힌두(89.2%), 시크교(5.8%), 무슬림(4.6%)
	언어	영어, 힌디, 펀자비, 우루드
정치제도	주총리	Bhupinder Singh, Hooda
	의회구성	단원제
경제지표	주총생산	653억 7천만달러(2014.3월)
	1인당소득	2040달러(2013년 12월)

자료: 각종자료 재구성

□ 개요

하리야나 주는 델리와 인접해있기 때문에 수도권 동반성장의 혜택을 받고있으며 특히 델리와 서쪽으로 접한 구르가온(Gurgaon)이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구르가온은 델리 소재 인디라 간디 국제공항과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외국인이 주로 거주하고있는 델리 남쪽 지역과는 30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델리 인접성이 뛰어나다. 또한 각종 규제로 인해 사무실 공간이 부족한 델리에 비해 고층건물과 쇼핑몰이 계속 들어서고있어 최근 델리의 사무실들이 구르가온으로 이전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하리야나 주정부는 종합적인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주 총리 산하에 경제개발청 (EDB)을 설치하였으며 이를 통해 경제 정책을 수립, 실행, 감독하고 있다. 특히 해외기업의 투자유치를 통한 경제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투자에 적합한 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해왔으며 전자, IT, 식품 가공업을 우선 산업 분야로 지정하였다.

구르가온 근처에는 인도 최대의 자동차 회사인 마루띠 스즈끼의 공장과 최대의 오토바이 제조사인 히로 모토사(Hero MotoCorp)의 공장이 위치해 있으며 각종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밀집하여 자동차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이곳에 설치된 IMT Manesar(IMT: Industrial Model Township)에는 각종 제조 기업들이 입주해 있는데 삼성전자의 휴대폰 공장, 진단 시약 제조 기업 SD의 공장 등도 이곳에 위치해 있다. 하리야나 주는 이러한 IMT를 2개 더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하리야나 주에는 이 외에도 섬유산업단지(Panipat), 경공업 산업단지 (Faridabad) 등이 설치되어 있다.

□ 도로·교통

2010년 인도 경제현황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하리야나 주 도로의 총 길이는 24,218Km (2010년 4월 기준)로 주 면적대비 도로비율이 다른 주에 비해 높은 편은 아니지만 중앙정부고속도 1, 2, 8, 10, 22번이 통과하고 있어 교통이 아주 편리하다. 하리야나 주는 소도시에서 주요도시까지 100%의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 주에 속한다. 또한 하리야나 주의 도로는 약 3,411개의 버스를 유동시키고 있으며, 인도에서 높은 도로 수송률을 보이는 주중 하나이다. 현재 진행중인 쿤들리-마네살-팔왈(Kundli-Manesar-Palwal) 간 고속도로 건설을 통하여 세계적인 인프라를 갖추기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도시주요지역을 연결해 연계성을 강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철도는 2010년 4월 기준, 총 길이 1,595Km로 각 구간과의 연계성이 잘 형성되어 있고, 칼카(Kalka), 쿠룩쉐트라(Kurukshetra), 로탁(Rohtak), 진드(Jind), 알발라(Ambala), 파니파탄드 자카레르(Panipatand Jakhalare)는 하리야나의 주요 기차역이다. 자가다리 (Jagadhari)에는 기차 연구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최근들어 델리와 위성도시를 연결하는 도시 철도를 노이다 지역에 2012년에 착공하여 2014년에 완공하는 계획이 진행 중에있다. 이 외에도 델리, 구르가온, 노이다 지역을 통과하는 델리 지하철이 운행 중에 있으며, 구르가온을 중심으로 한 델리 인접지역의 발전이 계속될 전망이다.

□ 공항

국내선 공항은 찬디가르(Chandigarh)에 위치해 있으며, 민간 비행장은 핀조르(Pinjore), 카르날 (Karnal), 히쌀(Hissar), 비와니안드 날나울(Bhiwaniand Narnaul)에 있다. IGI공항(Indra-Ghandi)은 델리에 있으며 구르가온(Gurgaon)과 파리다바드 (Faridabad)에 인접해있다.

□ 전력

하리야나 주의 전력량은 2013년 12월 전력생산량은 8251MW이다. 따라서 주정부는 11차 계획(2007~12)에서 전력량 확대 계획을 세웠다. 하리야나 주는 야무나 나갈(Yamuna nagar)에 600MW 화력발전소를 건설함으로써, 히사르 내 케다르(Khedar) 지역에 1,200MW 화력발전소, 빠니파트(Panipat) 지역에 1,360MW 화력발전소 등 총 3개의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하리야나 주

자료: 인도 통상-투자 진출 안내서, 2007.1, 주인도한국대사관

8) 우타르프라데시(Uttar Pradesh)

우타르프라데시

일반사항	주	우타르프라데시(Uttar Pradesh)
	인구	약 2억명(2014년 3월)
	면적	294,000㎢
	종교	힌두교(80%), 이슬람(18%), 기타(2%)
	언어	힌디어, 우르두
정치제도	주총리	Akhilesh Yadav
	의회구성	단원제
경제지표	주총생산	1474억 8천만달러(2014. 3월)
	1인당소득	553달러(2013년 12월)

자료: 각종자료 재구성

□ 개요

우타르프라데시 주는 인구가 1억 8,000만 명에 달하여 인구 기준으로 인도 1위이나 전반적인 투자 환경은 뒤쳐지는 편이다. 하지만 델리 동쪽에 인접한 노이다 및 Greater 노이다 지역은 우수한 인프라와 수도 인접성 등의 이유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 도로 및 교통

우타르프라데시 주는 아홉 개의 인접한 주들과 도로 연계성이 좋으며, 고속도로는 국가 전체의 고속도로 중 9.6%를 차지하고 있다. 도로의 총 길이는 248,501km이며 또한 다른 주와의 교통연계를 더욱 경제적이고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972년에 UPSTC (우타르프라데시 Transport Corporation)를 설립하였다.

우타르프라데시 주는 약 7, 668대의 버스를 소유하고 있으며, 매달 2천 5백만 달러가 넘는 수익을 올리고 있다. 2011-12년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 국가 고속도로 위원회에서 49개의 프로젝트를 수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민간합작 투자를 통해 노이다-그레이트노이다-아그라(Noida-Greater Noida-Agra)를 연결하는 165km 의 야무나(Yamuna) 고속도로 건설이 최근 완공되었으며 이 고속도로는 5개의 주요도시를 거쳐 경제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우타르프라데시 주의 철도 네트워크는 인도에서 가장 크다. 농업, 시멘트, 비료, 석탄 그리고 제조업은 이러한 철도 서비스의 혜택을 직접 누리는 산업들이다. 러크나우(Luck now)는 북쪽과 동북쪽을 잇는 철도의 주요교차점이며, 이 철도는 총 연장길이는 8,901km가 넘는 인도의 다른 주와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주 내의 철도 네트워크도 잘 갖춰져 있어, 시내와 지역을 이어주는 구실도 함께 한다.

□ 공항

우타르프라데시 주는 총 여섯 개의 공항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것들은 아그라(Agra), 알라하바드(Allahabad), 고라크푸르(Gorakhpur), 칸푸르(Kanpur), 러크나우(Lucknow) 그리고 바라나시(Varanasi)에 위치하고 있다. 국제 항공편들은 러크나우에(Lucknow) 있는 쵸드리 차란 싱 국제공항(Chaudhary Charan Singh International Airport)과 바라나시(Varanasi)에 있는 랄 바하둘 샤스트리 공항(Lal Bahadur Shastri Airport)에서 이용할 수 있다. 거땀 부다 나갈(Gautam Buddha Nagar), 슈르와스티(Shrawasti), 쿠시나갈(Kushinagar) 지역에는 새로운 공항을 건설하려는 계획이 추진 중에 있으며 타지 국제 공항(Taj International Airport)은 델리(Delhi) 주변에 건축 계획 중인 두 번째의 국제 공항이다.

□ 전력

우타르프라데시 주는 2013년 12월 기준으로, 14,274MW의 전력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다. Noida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력부족이 8~15%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전력난을 겪고 있으며, 투자유치 및 산업발전 저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우타르프라데시 주는 Nodia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력 부족률이 매우 높아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 발전소 건설 및 배전 기관 민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주정부는 Energy Regulatory Committee(ERC)를 설치하여 전력난 타개를 위해 발전용량 증가, 민간자본의 발전소 건설 및 전력손실 방지 등을 추진하고 있다. 주정부는 전력량을 2012년까지 12,000MW를 주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현재 노이다(Noida), 칸푸르(Kanpur), 모라다바드(Moradabad) 지역에 민간자본 발전소를 설치하고 있으며 특정 지역에 집중된 발전소 건설이 아닌 분산하여 건설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노이다 지역 주요 입주기업

업체명	생산품목
HCL Group	컴퓨터/소프트웨어
Panasonic	전자제품
Amit Agro (Uncle Chips)	식품
Fedders Lloyd	에어컨
HCL – HP	컴퓨터/주변장치
Flex Industries	포장재 설비
Indo Copp	산업 장비
BPL Sanyo	가전제품
Samsung	전자제품
Phoenix Lamps	램프
SGS Thompson	전기 장비
Tata Unisys	컴퓨터/소프트웨어
TCS	소프트웨어
Eveready	손전등
Haldiram	식품
D.S.Group	Pan Masala, Spices
Aachvvis Softech Pvt. Ltd	IT/ITES
Seaview Developers Limited	IT/ITES

자료: http://www.sezindia.nic.in/

그레이터 노이다 지역 주요 입주기업

기 업 명	제조 품목
Asian Paints Ltd.	Paints
Delphi	Automotive Systems
Denso India Ltd.	Auto Parts
Devyani Beverages Ltd.	Pepsi Soft Drinks
Escorts Yamaha Motors	Motor Cycle
Hind Polymers Ltd.	Plastic Granules
Hindustan Adhesive Ltd.	Adhesive Tapes
Hindustan Times	Press

기 업 명	제조 품목
Honda Power Products	Power Products
Honda Siel Cars India Ltd.	Honda Passenger Cars
Hongo India	Automotive Components
Hotline Appliances	Electronics
HPCL Ltd.	LPG Bottling Plant
Jay Containers	Ship Containers
J.K. Magnetics Ltd.	Audio/Video Tapes
Korin India Ltd.	Cielo Rear Suspension
L.G. Electronics	Electronics
Majestic Auto	Two Wheelers
Moser Baer	Data storage devices
New Holland Tractors	Ford Tractors
Nicco Batteries Ltd.	Auto Batteries
Punjab Fibres Ltd.	Cotton Yarn
Pushpsons Fibrol Ltd.	Industrial Oil
Pushpsons Industries Ltd.	Cotton Fabrics (100% EOU)
Reinz Talbros Ltd.	Auto parts
Sakura Seimitsu Ltd.	Clocks & Watches
Samtel Color Ltd.	Colour Picture Tubes
Vectra Ltd.	Truck Manufacturer
Hindustan Times	Printing Press
Daewoo Electronics	Electronics
Priya Foods	Biscuits
G S C Toughend Glass	Toughend Glass
T-Series	Audio and Video Cassettes
Sheela Foams	Mattresses
Videocon	Electronics
WIPRO Ltd.	IT/ITES
NIIT Technologies Limited SEZ	IT/ITES

주: 2013. 6월 확인 기준

자료: http://www.sezindia.nic.in/

Noida 및 Greater Noida지역에는 삼성전자, LG전자 및 각종 협력업체 등 많은 우리 기업들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외국기업들의 투자도 활발하다. 예를 들어 일본의 혼다 자동차는 그레이터 노이다 지역에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라자스탄 주에 제2공장을 설립키로 발표했다.

다. 주요 투자 지역

2010 회계연도부터 2012 회계연도까지 3년 간의 지역별 투자 통계를 보면 뭄바이 부근 지역이 전체의 36.6%를 차지하였으며 뉴델리 지역이 16.5%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만을 놓고 보면 뉴델리 지역이 전체의 50% 가량을 차지하고 있고 첸나이 부근이 28%, 뭄바이 부근이 15%를 차지하고 있다.

제조업 투자를 위한 입지 환경을 살펴보면 뉴델리 지역은 델리 동쪽 노이다 및 그레이터 노이다에 많은 기업이 진출해 있으며 델리 서쪽의 구르가온 및 마네사르 지역에도 삼성전자(STI), 두산엔지니어링, SD, 포스코 등 다수의 기업들이 진출해 있다.

2000~2013년 지역별 투자 통계

순위	RBI의 지역 오피스	관할 주	2010-11 (April-March)	2011-12 (April-March)	2012-13 (April-march)	2013-14 (April-Sept'13)	누적 유입량 (April '00-Sept '13)	% age to total Inflows (US$)
1	뭄바이	MAHARASHTRA, DADRA & NAGAR HABELI, DAMAN & DIU	27,669 (6,097)	44,664 (9,553)	47,359 (8,716)	10,785 (1,839)	304,279 (65,175)	32
2	뉴델리	DELHI, PART OF UP AND HARYANA	12,184 (2,677)	37,403 (7,983)	17,490 (3,222	8,087 (1,350)	176,668 (37,643)	18
3.	첸나이	TAMIL NADU, PONDICHERRY	6,115 (1,352)	6.771 (1,422)	15,252 (2,807)	6,644 (1,157)	59,454 (12,238)	6
3	방갈로르	KARNATAKA	6,133 (1,332)	7,235 (1,533)	5,553 (1,023)	4,599 (792)	54,044 (11,576)	6
5	아메다바드	GUJARAT	3,294 (724)	4,730 (1,001)	2,676 (493)	2,399 (397)	41,498 (9,047)	4
6	하이데라바드	ANDHRA PRADESH	5,753 (1,262)	4,039 (848)	6,290 (1,159)	12,346 (405)	39,238 (8,373)	4
7	콜카타	WEST BENGAL, SIKKIM, ANDAMAN & NICOBAR ISLANDS	426 (95)	1,817 (394)	2,319 (424)	920 (156)	11,425 (2,462)	1
8	찬디가르	RAJASTHAN	1,892 (416)	624 (130)	255 (47)	168 (28)	5,732 (1,229)	1
9	보빨	MADHYA PRADESH, CHATTISGARH	2,093 (451)	569 (123)	1,208 (220)	693 (116)	5,480 (1,229)	0.5
10	코치	KERALA,	167	2,274	390	276	4,597	0.5

순위	RBI의 지역 오피스	관할 주	2010-11 (April-March)	2011-12 (April-March)	2012-13 (April-march)	2013-14 (April-Sept'13)	누적 유입량 (April '00-Sept '13)	% age to total Inflows (US$)
		LAKSHADWEEP	(37)	(471)	(72)	(48)	(959)	
11	파나지	GOA	1,376 (302)	181 (38)	47 (9)	69 (12)	3,622 (783)	0.4
12	자이뿌르	RAJASTHAN	230 (51)	161 (33)	714 (132)	127 (21)	3,451 (706)	0.4
13	칸뿌르	UTTAR PRADESH, UTTRANCHAL	514 (112)	635 (140)	167 (2)	79 (13)	1,693 (361)	0.2
14	부바네스와르	ORISSA	68 (15)	125 (28)	285 (52)	80 (14)	1,693 (361)	0.2
15	구와하티	ASSAM, ARUNACHAL PRADESH, MANIPUR, MEGHALAYA, MIZORAM, NAGALAND, TRIPURA	37 (8)	5 (1)	27 (5)	2 (0.3)	350 (79)	0
16	판타	BIHAR, JHARKHAND	25 (5)	123 (24)	41 (8)	4 (0.1)	195 (38)	0
17	REGION NOT INDICATED		20,543 (4,491)	53,851 (11,399)	21,833 (4,004)	30,139 (5,028)	250,372 (52,523)	25.7
SUB TOTAL			88,520 (19,427)	165,146 (35,121)	121,907 (22,423)	67,415 (11,376)	963,795 (204,658)	100
18	RBI'S- NRI SCHEMES(from 2000 to 2002)		0	0	0	0	533 (121)	-
GRAND TOTAL			88,520 (19,427)	165,146 (35,121)	121,907 (22,423)	67,415 (11,376)	964,328 (204,780)	-

자료: 산업 정책 진흥국 (DIPP)

한편 인도 남쪽의 첸나이 부근에는 현대자동차 및 협력 업체, 삼성전자(제2공장) 그리고 롯데제과 등이 진출해 있으며 뭄바이 및 푸네에는 LG전자(제2공장), 포스코, 현대중공업 등이 진출해 있다. IT로 유명한 방갈로르 등지에는 LG소프트웨어, 삼성전자 소프트웨어 법인(SISO) 등이 입주해 있다. 입지 확보와 관련해서는 대규모 투자의 경우 주정부와의 협상을 통해서 무상이나 아니면 좋은 조건으로의 장기 임차를 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기존에 조성된 산업 단지를 활용해서 입주하는 경우가 많다.

라. 특별경제구역(SEZ, Special Economic Zone)

1) 개요

특별 경제 구역은 외화 순취득 의무를 달성할 경우 입주할 수 있으며 각종 조세 인센티브(관세, 법인세. 소비세, 서비스세, 중앙 판매세 등), 운영상의 인센티브(영세기업(SSI) 유보 품목에 대한 투자 상한선 및 산업 허가 면제, 수입 시 별도 허가 불요 등)를 제공받는다.

인도 정부는 2000년 4월 특별 경제 구역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설립 및 입주 실적이 저조하자 특별 경제 구역법(SEZ Act 2005)과 시행령을 마련하였고 동 법은 2006년 2월 발효되었다. 특별 경제 구역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특별 경제 구역법 개괄
- 종래 입주 기업에게 수출 의무를 부과하던 것에서 5년 내 외화 순취득 의무만 달성토록 간소화한다.
- 법인세 감면 범위를 확대한다.
- 영세기업 고유 업종에 대한 투자를 허용한다.
- 자본재 등 수입 시 관세를 면제한다.

○ 조세 인센티브
- 면세지역으로 지정 받아 무역활동, 관세, 조세 등에서 외국영토로 간주한다.
- 자본재, 원자재, 소비재, 예비품 (spares) 등의 수입에 대한 관세를 면제한다.
- 국내 시장으로부터 자본재, 원자재, 소비재, 예비품 조달시 소비세(Excise Tax)를 면제한다.
- SEZ기업의 수출활동을 위한 서비스 이용 시 서비스세를 면제한다. 수출제품에 대해서 서비스세를 면제한다.
- 수출이익에 대해 초기 5년간 법인세를 100% 면제, 향후 5년간 50% 면제, 추가 5년간 재투자 이익의 50%까지 면제한다.
- 제품의 주간(Interstate)이동 시 중앙 판매세를 면제하고, 부가가치세는 주별 인센티브 정책에 따라 다르며, 면제해 주는 경우가 많다

○ 주요 운영상의 인센티브
- 대부분의 제조업 분야에서 100% 외국인 직접투자를 자동 승인한다.
- SSI(소규모기업)유보 품목에 대한 투자 상한선 및 산업허가를 면제한다.
- 수입 시 별도의 허가를 요구하지 않는다.
- SEZ내 자체 통관시설이 이용 가능하다.

○ 입주 기업의 의무
- SEZ 입주기업은 제조, 무역, 서비스업에 종사 가능하다.
- SEZ 입주기업은 5년 내 외화 순취득(NFE) 의무가 있다.
- 개발구 위원회(Development Commissioner)와 관세청 관계자로 구성된 위원회가 입주기업의 사업성과를 감시한다.
- 면세수입품목의 5년 이내 실사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경제구역법 실시 후 국내외 대기업의 SEZ설치 및 투자가 급증하면서 과열현상을 보였으며 이에 따른 세수감소 및 서민층의 불만, SEZ대상지역 이주 및 보상 시의 갈등 등으로 부정적인 여론이 늘어나면서 SEZ제도 운영상의 변화가 전망되고 있다. 특별경제구역 입주기업의 혜택에 대한 예시로는 다음과 같다.

□ 수출전용기업(EOU)

100% 수출기반기업(EOUs, Export Oriented Units)이나 STP(Software Technology Park)를 이용한 인센티브도 가능하다. EOU는 특별한 공단에 입주해 있지 않아도 신청 및 지정이 가능하다. 단, 수출을 전제로 한다면 자본재 수입 시 관세 면제를 받을 수 있고, 수출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의 협력업체도 EOU를 승인 받으면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소프트웨어 테크놀로지 파크 (STPI)

소프트웨어 테크놀로지 파크(STPI)는 IT산업의 육성을 위한 독특한 제도로 인도 전역에 40여 개 이상 설치되어 있으며 인도 IT산업 육성에 중추적 역할을 한 바 있다. 소프트웨어 테크놀로지 파크에 입주한 기업이나 수출전용기업(EOU, Export Oriented Unit)으로 등록된 기업은 파격적인 세금혜택을 받게 되나, 다만 매출의 대부분을 수출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STP/EOU정책에 의한 지원은 2009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실시될 계획이었으나 인도 산업경제부는 계속해서 관련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 전자하드웨어기술파크(EHTP)

전자산업을 육성, 수출잠재력을 높이고 효율적 전자부품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EHTP에는 관세면제, 수출 간주 혜택, 조세감면 혜택 등이 주어진다. EHTP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규정 양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고 통상 2주내에 승인서가 발급된다. 정부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해당 통신 IT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인터뷰를 해야 하며, 통상 6주 내에 승인 결정이 이루어진다. 이들 기업의 외국인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100% 외국인투자 자동승인 대상이 되며, 이에 포함되지 않는 투자는 FIPB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STPI/EOU기업과 SEZ입주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구분	STPI/EOU 입주기업	SEZ입주기업
지원 기간	- 설립 후 최장 10년, - 조세혜택은 2009년 3월 31일까지 계속	- 제조 개시시점부터 15년
법인세 감면	- 수출이익에 대한 100% 법인세 면세	- 최초 5년간 수출이익 100%면세 - 추가 5년간 수출이익 50% 면세 - 재투자이익면세 (최대수출이익의 50%)
관세감면	- 자본재 및 원자재 수입 시 관세 면제	
서비스세	- 입주기업에 의해 사용된 서비스는 서비스 세 면세 - 수출된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세 면세	
소비세	- 자본재나 원자재 구입시 소비세 면세 - S/W제작시 소비세 면세	

자료: NASSCOM, 2007

2) 특별경제구역 세부사항

□ 입지지원종류: SEZ (Special Economic Zone)

인도는 1965년, Kandla에 아시아 최초로 수출 증진을 목적으로 수출진흥지역(EPZ) 모델을 설정하고 운영했으나, 인도 정부의 규제로 인해 투자 및 진출 효과가 미미했다.

세계적인 수준과 비교했을 때 열악한 인프라 시설 개발, 고용창출, 해외 및 외국인 투자의 증진, 상품 및 서비스 수출 증진, 추가적인 경제 활동 생성을 위해 SEZ를 도입했다.

□ SEZ 이외 기타 입지 지원(참고사항)

인도 IT 산업 육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 바 있는 소프트웨어 테크놀로지 파크(STPI)에 등록된 기업은 매출의 대부분을 수출하는 조건으로 파격적인 세금혜택을 받았는데 2009년 3월 31일 까지 한시적으로 세금지원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인도 상공부는 관련 지원을 연장 중이다.

전자하드웨어기술파크(EHTP)에는 전자산업을 육성, 수출잠재력을 높이고 효율적으로 전자 부품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관세면제, 수출 간주 혜택, 조세감면 혜택 등이 부여 되는 바, EHTP에 입주한 기업의 외국인 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100% 외국인투자 자동 승인 대상이 되며, 이에 포함되지 않는 투자는 FIPB의 승인이 요청 된다.

□ SEZ 입주조건 및 입주기업 의무

○ SEZ 입주기업은 제조, 무역, 서비스업에 종사가 가능하다.
○ 종래 EPZ에서는 입주기업에게 수출의무를 부과했으나, SEZ는 5년 내 외화 순수취득(Positive Net Foreign Exchange Earning)의무만 부과하여 입주 용이성을 개선하였다.
○ 개발구위원회(Development Commissioner)와 관세청 관계자로 구성된 위원회가 입주기업의 사업성과 감시한다.
○ 면세 수입품목의 경우 5년 이내 실사를 받을 의무를 진다.
○ 100인 이상 기업은 종업원을 해고할 때 반드시 정부의 허가를 얻어야 하고, 3개월 이상 근무한 계약직 사원은 자동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인도의 노동법은 특구 내에서도 적용된다

□ SEZ 운영정책

○ 조세 인센티브

면세 지역으로 지정 받아 무역활동, 관세, 조세 등에서 외국 영토로 간주하고 자본재, 원자재, 소비재, 예비품(spares) 등의 수입 시 수입관세 면제, 국내시장으로부터 조달 시 이에 대한 물품세(Excise Tax)를 면제받는다. 수출 이익에 대해 초기 5 년간 법인세 100% 면세, 향후 5 년간 50% 면제, 추가 5 년간 재투자 이익의 50%까지 면제하여 총 15 년간 세금감면 혜택을 부여 받는다. SEZ 기업의 수출활동을 위한 서비스 이용 시 서비스세를 면제하여 수출제품에 대해서도 서비스세가 면제된다. 제품의 주(state)간 이동 시 중앙 판매세, 서비스세를 면제하고, 부가가치세는 주 별 인센티브 정책에 따라 다르며, 면제해 주는 경우가 많다.

○ 주요 운영상 인센티브
- 대부분의 제조업 분야에서 100% 외국인직접투자를 자동 승인
- SSI(소규모기업) 유보 품목에 대한 투자 상한선 및 산업허가 면제
- 수입 시 별도의 허가를 불요
- SEZ내 자체 통관시설이 이용가능

□ SEZ 입주기업 유의 및 참고사항

SEZ 구역에서 생산된 제품은 관세 납부 후 내국세 영역에서 판매 가능하고 주정부 판매세 및 기타 부과 세금의 경우 각 주정부의 방침에 따라 면세범위가 적용되므로 미리 파악이 요구된다.

인도는 유구한 지방자치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 지방정부의 힘이 강하고 특정 지방정부를 장악하고 있는 야당이 정부의 정책을 반대할 경우 정부의 정책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새로운 경제특구 승인 시 지방정부의 역할이 축소되는 등 행정적인 장벽들도 대거 제거되어 사업의 허가와 추진이 더 용이하게 되었다.

조세 감면 혜택 등으로 인한 수출 증가 추세

회계연도	수출 실적(억 루피)	전년 대비 성장률(%)
2003-2004	1,385	39
2004-2005	1,831	32
2005-2006	2,284	25
2006-2007	3,462	52
2007-2008	6,664	93
2008-2009	9,969	50
2009-2010	220,711.39	121.40%
2010-2011	315,868	43.11
2011-2012	364,478	15.39
2012-2013 (2012.12.31까지)	353,195	-

자료: http://www.sezindia.nic.in

□ 지정절차

개인, 협동조합, 법인, 합작회사 등 형태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며, 주정부 및 승인위원회(BOA; Board of Approval)에 제출하고, 최종 승인은 승인위원회를 통해 이뤄진다.

SEZ 승인체계

① 1단계: 원칙승인 (In-Principal Approval)
- 토지 확보 또는 토지 관련 주정부와의 합의 없이 일반적인 SEZ 개발 계획안에 대하여 승인해 주는 제도

② 2단계: 정식승인 (Formal Approval)
- 토지취득 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했을 때 승인해 주는 제도

③ 3단계: 설립고시 (Notification)
- 토지취득이나 사용허가가 완전히 이루어지고 이를 입증한 서류가 갖추어진 경우에 SEZ 설립을 최종 승인해 주는 제도

자료: Ministry of Commerce, 2007

2012년 7월 기준, 인도정부는 총 588건을 승인하였고, 이 중 386건은 고지된 (notified) 상태이다.

구체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다.

번호	절 차	법적 고려 사항	비 고
1	지방정부에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생략가능 (BOA에 직접신청 가능)
2	지방정부 검토 후 45일 이내 추천과 함께 BOA에 신청서 전달		
3	중앙정부는 전달 이후 50일 이내에 승인 서류 발급 결정		발급일로부터 3년간 유효
4	중앙정부에 세부요청자료 (토지관련법적권리 증명서류 등) 제출	리스의 경우 계약 기간 20년 이상	
5	중앙정부가 SEZ을 공표	Letter of Approval의 조건 수용 필요	신청자가 SEZ 개발자 지위 획득
6	개발자가 BOA에 SEZ개발작업에 대한 권한위임 신청		자본재 수입 등에 대한 세제 혜택
7	SEZ 설립이후 6개월 이내에 승인위원회 선임		SEZ 활동에 대한 규제 및 관리
8	SEZ 입주 기업 선정		승인위원회에 신청서 제출
9	승인서 발급	Letter of Approval- (From G) 발급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 영업 시작 필요

자료: sezindia.gov.in, 2011

특별경제구역의 설립승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주정부의 수석비서에게 신청서 제출
○ 제출서류의 상세 목록
- 신청자의 자격 리포트: 특별경제구역의 특징
- 특별경제구역 위치 상세 내역: 기반구조시설 계획
- 재정 상세내역, 투자계획 (최소 Rs 1 billion)

↧

○ 환경평가 허가: 전기, 판매세금, 관세 등의 공제에 대한 확약

↧

○ 제안서를 중앙정부 통상교역부에 제출
○ 제안서를 검토 – 재정부 검토 위원회 허가

↧

○ LOA 승인 – 1년간 유효: 프로세싱 구역내의 업체의 승인

□ 투자지역 지정요건

SEZ 입주를 위한 최소 면적

분류	면적
다 품목 제조 SEZ	500 hectares
단일품목 제조 SEZ	50 hectares
FTWZ (자유무역 및 물류창고 지대)	40 hectares
수공예품, 생명공학, 그린에너지, 귀금속 부문 SEZ	10 hectares

정보통신 분야 경제특구의 경우 기존 10헥타르 최소요구토지(minimum land area) 규정이 없어졌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 다른 최소한의 시가지(built-up area)가 필요하다. 또한 올해 8월 인도 정부는 다품목 제조 특별경제구역(Multi-Product SEZ) 의 최소 토지한도를 종전 1,000헥타르에서 500헥타르로 축소하였으며, 부분별 특화 경제개발구역(Sector-Specific SEZ) 의 최소 토지한도를 기존 한도의 절반인 50ha로 줄였다. 이를 통해 인도정부는 특별경제구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수출을 장려하고 지속되는 경상수지적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기존 특별경제구역 입주기업이 사업운영을 확장하고자 할 경우 타 특별경제구역으로의 확장이 불가했으며, 인도 정부승인위원회의 허가를 통해 입주자격 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신규등록만이 가능했으나, 2013년 6월 기존 특별경제구역 입주기업들도 타 특별경제구역으로 사업운영을 확장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더욱 많은 투자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개방하였다.

□ 재정지원

SEZ 주요 혜택

SEZ 입주업체 혜택사항	SEZ 개발업체 혜택사항
배타적 면세구역으로 무역 및 관세에서 외국영역 대우를 받음	SEZ 개발, 운영, 관리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 수입시 면세 조치
제조업, 무역, 서비스 등 다양한 업종 활동 가능	외국투자의 SEZ내 주거시설, 쇼핑몰, 병원, 학교 등 다양한 시설 건립 허용
외환수익 의무에서 3년내 적극적 외환수익 거두는 것으로 조건 약화	개발업체 투자 모기업에 대한 소득세 면세
수입시 별도의 허가 불요	SEZ내 개발계획 수립의 자율성 보장
국내 구입물품 판매세(Sales Tax) 환급	Service Tax 면제
SEZ내 자체 통관시설 이용	SEZ내 자체발전, 송전, 배전 허용

자료: KIEP “인도 경제특구(SEZ) 정책과 문제점”

□ SEZ 주 별/업종별 현황

공식인가 SEZ 기준 마하라슈트라 102개, 안드라 프라데시 109개, 타밀 나두 67개, 카르나타가 61개, 구자라트 43개 등이 분포되어 있다. 설립고시 된 SEZ 기준, 안드라 프라데시 78개, 마하라슈트라 65개, 타밀나두53개, 하리야나에 35개가 위치하고 있다.

공식인가 기준 SEZ의 업종별 분포를 살펴보면 IT/ITES가 62%, 기타 바이오 5%, 의약 4%, 섬유 3% 순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설립고시 기준으로 보면 IT/ITeS 64%, 의약 5%, 엔지니어링 5%, 바이오 4%, 섬유 4% 순이다.

지역별 SEZ 지정 개괄

자료: Maps of India

지역별 SEZ 지정 현황

State	Formal approvals	In-principle approvals	Notified SEZs	Operational SEZs
Andhra Pradesh	109	6	78	39
Chandigarh	2	0	2	2
Chhattisgarh	2	1	1	1
Delhi	3	0	0	0
Dadra&Nagar Haveli	2	0	1	0
Goa	7	0	3	0
Gujarat	43	7	30	18
Haryana	46	3	35	5
Himachal Pradesh	0	0	0	0
Jharkhand	1	0	1	0
Karnataka	61	1	40	22
Kerala	29	0	24	8
Madhya Pradesh	19	2	9	2
Maharashtra	102	16	65	20
Nagaland	2	0	2	0
Orissa	10	1	5	1
Pondicherry	1	1	0	0
Punjab	8	0	2	2
Rajasthan	10	1	10	5
Tamil Nadu	67	6	53	33
Uttar Pradesh	31	1	21	9
Uttarankhand	2	0	1	0
West Bengal	18	3	9	6
GRAND TOTAL	76	49	392	173

자료: Department of Commerce, 2013.7

권역별 SEZ 정식승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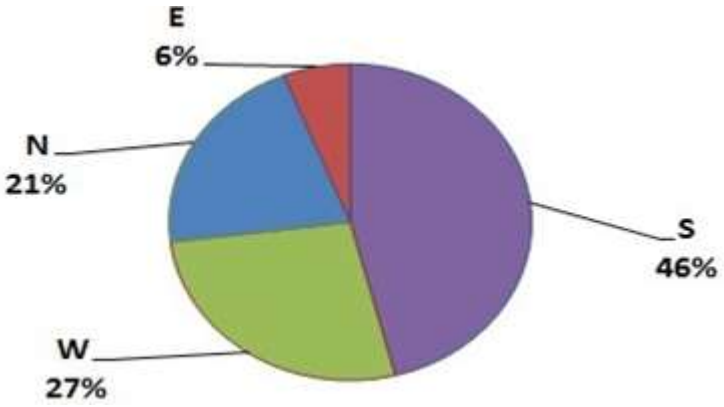

자료:Department of Commerce, 2012 (권역별 SEZ 정식승인 현황 최신자료)

산업별 SEZ 지정 현황

Sectors	Formal approvals	In-principle approvals	Notified SEZs	Operational SEZs
Aviation/Aerospace/ Copper	2	1	1	
IT/ITES/Electronic Hardware/Semiconductor	351	1	235	
Textiles/Apparel/Wool	15	2	12	
Pharma/chemicals	20	3	20	
Petrochemicals & petro.	4	1	2	
Multi-Product	25	15	17	
Building product/material	4	2	1	
Beach & mineral/metals	3	0	2	
Bio-tech	31	0	20	
Engineering	9	1	16	
Multi-Services/Services	16	3	9	
Metallurgical Engineering	1	0	0	
Electronic prod/ind	3	0	3	
Auto and related	2	1	1	
Footwear/Leather	6	0	5	
Gems and Jewellery	13	3	6	
Granite processing Industries	2	0	1	
Power/alternate energy/solar	3	2	3	
FTWZ	14	5	7	
Metal/Stain. Steel/Alum/Foundary	8	2	5	
Food Processing	5	0	4	

Sectors	Formal approvals	In-principle approvals	Notified SEZs	Operational SEZs
Non-Conventional Energy	6	0	4	
Plastic processing	0	2	0	
Handicrafts	5	0	3	
Agro	6	2	5	
Port-based multi-product	7	2	2	
Airport based multiproduct	4	0	0	
Writing and printing paper mills	2	0	1	
GRAND TOTAL	577	49	385	

자료: Ministry of Commerce & Industry, Department of Commerce, 2013

인도 SEZ 주요 투자 기업

기 업	지 역
Nokia SEZ	Tamil Nadu
Quark City SEZ	Chandigarh
Flextronics SEZ	Tamil Nadu
Mahindra World City	Tamil Nadu
Apache SEZ (Adidas Group)	Andhra Pradesh
Divvy's Laboratories	Andhra Pradesh
Rajiv Gandhi Technology Park	Chandigarh
ETL Infrastructure IT SEZ	Chennai
Hyderabad Gems Limited,	Hyderabad
Biocon Limited	Karnataka
Chandigarh Administration	Chandigarh
Suzlon Infrastructure Ltd	Karnataka

자료: commerce.nic.in 2013

□ 주 정부 별 인센티브

해당 지역의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여러 주들이 주정부 차원의 지원정책을 추진 하고 있는데 안드라프라데시(Andhra Pradesh), 타밀나두(Tamilnadu), 구자라트 (Gujrat), 카르나타카 (Karnataka), 마하라슈트라(Maharashtra) 등이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주정부 차원의 인센티브로는 부지공급, 지방세 면제 등이 일반적이다.

○ 구자라트

구자라트 주는 투자자들에게 산업성장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상당 규모의 투자를 성공적으로 유치하였으며 2009년 발표한 인센티브 정책을 현재까지 유지 중이다. (http://ic.gujarat.gov.in/promo-sch/promo_scheme.html) 주정부의 정책 목표는 후진 산업 개발, 대규모 고용기회 창출, 해외 투자 유입,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인프라 및 인적자원 개발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양호한 인프라, 주정부의 외국자본에 대한 호의적인 정책, 구자라트 상인들의 해외 진출 경험 등을 이유로 서유럽 계통의 외국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다.

구자라트 주에서 가장 특이한 사항은 2차 산업이 다른 주에 비하여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산업구조는 산업공단 및 배후도시에 대한 충분한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며, 2차 산업은 외국인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전망이다. 특히 구자라트 주 정부는 산업개발 및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아래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현존 SEZs(경제특구) 육성 및 SEZs 추가 건설
- 산업 및 도시 인프라개선, 항만개발 등 인프라 개발 사업 추진
- 전력분야 개혁(5 개 소형전력사업 민영화 추진, 34 억 달러 규모)
- 노동법 개혁을 통한 산업투자 촉진
- 인프라개발청(GIDB) 설치를 통한 인프라사업 신속 처리
- 중소기업 집중육성
- 민간자본으로 무역센터, 산업파크 등 설치

○ 안드라프라데시

안드라프라데시주는 매년 투자유치액을 10% 이상씩 늘리겠다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소규모 기업을 위해서는 자본금의 최대 15%까지 지원하고, 인지세와 양 도세를 환급해 주며 전기비용, 대출비용, 부지구입비용, 자본재 구입비용 등을 지원해 주 고 있다.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을 위해서는 투자규모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해주고 있으 며 전기비용, 특허비용, 인지세, 부지구입비용 등을 지원해 주고 있다. 안드라 프라데시 주 정부는 2005년 신산업정책을 바탕으로 주의 산업 인프라 업그레이드 계획 (Industrial Infrastructure Scheme)을 단계적으로 실시하며 산업지구 개발을 더욱 활발히 추진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안드라 프라데쉬 주의 산업 인프라 업그레이드 계획에 따르면 안드라 프라데시 주는 2005년 4월, 6개의 산업 클러스터를 설정하였고 이러한 계획은 2010년 3월 31 일까지 지속되었으며,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다. 이 밖에도 주에 지원하는 산업 (IT, 관광산업, 인프라사업, 의류 및 섬유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다. 구체적인 인센티브 관련 정보는 웹페이지 (http://siadipp.nic.in/ state/ind_policy_ap.htm)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카르나타카

인도의 실리콘밸리라 할 수 있는 방갈로르가 위치한 카르나타카주는 1984년 Texas Instruments가 투자를 개시한 이래 많은 외국기업의 투자대상지가 되고 있다.

카르나타카 주는 1991년 소프트웨어 테크놀로지 파크(STPI)를 설립하고 97년에 주정부 차원의 지적 재산권 정책(IP Policy)을 발표하였으며 99년 인도공과대학 방갈로르 캠퍼스 (IIT Bangalore)를 유치하였다. 카르나타카 주는 IT기업에 대해 투자금액에 무관하게 지방판매세 (부가 가치세)를 10년간 면제해 주고 있으며 일부 등록/취득세는 5년간 면제하고, 양질의 전기 공급이 보장되며 전기세도 면제한다.

○ 마하라슈트라

2010년까지 200만 명 고용창출을 목표로 하는 "州 산업, 투자, 인프라 정책"을 채택하였으며 해외투자 유치 방안으로 저개발지역에 투자하는 경우 주 노동법의 적용 면제 등 비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마하라슈트라의 정책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소매, 관광, 연예산업을 신성장산업으로 설정
- 정보통신산업, 바이오기술산업 등의 고부가가치 산업 촉진
- SEZ 의 성장을 통해 고용창출 도모
- 농업기반 산업 육성
- Mumbai-Pune-Nashik-Aurangabad 도로 건설 등을 통한 도로 인프라 구축
- 주요 산업지역 간 가스분배 네트워크 구축
- 주 내 지역균형개발: 저개발지역에 투자하는 경우 주 노동법의 적용 면제 등 비재정적 인센티브 제공

여타 주에 비해 공적기금을 많이 투자해 온 결과 전력, 항만, 공항을 포함한 제반 인프라 시설이 여타 주에 비해 좋다. 발전용량은 14,000MW로 다른 주에 비해 가장 높다. 주의 주요 산업정책은 크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마하라슈트라주의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table>
<tr><th>구분</th><th>Group A</th><th>Group B</th><th>Group C</th><th>Group D</th><th>Group D+</th><th>NID</th></tr>
<tr><td>Electricity Duty
(전기세)</td><td>IT/ITES/BT/특별경제구역 내 유닛/전자 하드웨어 테크놀로지 파크에 대해 100% 면제</td><td>IT/ITES/BT/특별경제구역 내 유닛 및 전자 하드웨어 테크놀로지 파크에 대해 100% 면제 & 10년 간 수출전용기업에 100% 면제</td><td colspan="4">15년 간 모든 신 유닛에 100% 면제 적용</td></tr>
<tr><td rowspan="4">Stamp duty
(인지세)</td><td colspan="2">Public parks 내 IT/ITES/BT 유닛에 대해 100% 면제</td><td colspan="4">100 % exemption to all new Units / expansion of units
모든 신 유닛/유닛 확장에 대해 100% 면제</td></tr>
<tr><td colspan="2">Private parks 내 IT/ITES 유닛에 대해 75% 면제</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2">Private parks 내 BT 유닛에 대해 50% 면제</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2">I.T 유닛이 허가되고 기술사용협정이 적용되는 추가 기계 및 민간 부문에서 IT park에서 신 정부 기술 유닛을 시작하는 ITES 유닛에 대해 90% 면제</td><td colspan="4">새 IT 유닛과 ITES 유닛, 그것들의 새 확장을 시작하려는 사람이 실시하는 임대형 사업과 허가되고 기술사용협정이 적용되는 추가 기계에 대해 90% 면제</td></tr>
<tr><td>Refund of Octroi
(통행세)</td><td>모든 전자 유닛에 5년간 (소프트웨어 개발 포함) (뭄바이, 따네, 미라바얀더르, 푸네 지방자치단체 제외) 혹은 총 고정투자액 중 더 낮은 것</td><td>모든 유닛에 5년간 혹은 총 고정투자액의 100% 중 더 낮은 것</td><td>모든 유닛에 7년간 혹은 총 고정투자액의 100% 중 더 낮은 것</td><td>모든 유닛에 9년간 혹은 총 고정투자액의 100% 중 더 낮은 것</td><td>모든 유닛에 12년간 혹은 총 고정투자액의 100% 중 더 낮은 것</td><td>모든 유닛에 15년간 혹은 총 고정투자액의 100% 중 더 낮은 것</td></tr>
</table>

<table>
<tr><th>구분</th><th>Group A</th><th>Group B</th><th>Group C</th><th>Group D</th><th>Group D+</th></tr>
<tr><td rowspan="2">모든 소규모 산업에 대한 특별 자본 인센티브</td><td rowspan="2">-</td><td>100만 루피 재정 상한의 고정 자본투자의 20% 상한. 5년 이상 연간할부액에 대한 지출</td><td>200만 루피 재정 상한의 고정 자본투자의 30% 상한. 5년 이상 연간할부액에 대한 지출</td><td>250만 루피 재정 상한의 고정 자본투자의 35% 상한. 5년 이상 연간할부액에 대한 지출</td><td>350만 루피 재정의 고정 자본투자의 40% 상한. 5년 이상 연간할부액에 대한 지출</td></tr>
<tr><td colspan="4">농업가공 유닛, 수출 지향적 유닛, 가금류 유닛, 낙농업 유닛, 가드치롤리 지역과 힝골리 지역의 유닛에 대한 한 번의 할부 지출</td></tr>
<tr><td>신 섬유 양말 및 니트웨어 소규모 산업에 대한 이자 지원</td><td>-</td><td>매년 5%의 이율에 최대 4년간 100만 루피의 재정 상한</td><td>매년 5%의 이율에 최대 5년간 200만 루피의 재정 상한</td><td>매년 5%의 이율에 최대 6년간 250만 루피의 재정 상한</td><td>매년 5%의 이율에 최대 7년간 350만 루피의 재정 상한</td></tr>
</table>

주: Group A, B, C, D, D+, NID는 개발정도에 따른 구분 (A부터 가장 많이 산업화된 지역 순이다)

자료: www.midcindia.org

□ SEZ의 문제점

SEZ는 경제성장과 산업발전, 그리고 고용창출을 위해 고안되었으나 2005년 6월 인도 정부가 특별 경제구역 법(SEZ Act)을 제정하면서 과열되기 시작하여 신청 건수가 급증하여 승인을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토지 보상 및 선정 및 거주자 이동 등과 관련하여 수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여론 악화되는 실정이다.

기존 기업들이 특별한 투자 없이 SEZ로 이동해 면세 혜택을 누림에 따라 막대한 세수 감소가 우려되고 있고 개별 SEZ의 규모가 소규모인 경우가 많아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힘들고, 토지 매입이 어려워지자 SEZ에 대한 이해가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마. 기타 경제 구역

특별경제구역과 비슷하게 소프트웨어 테크놀로지 파크(STP)나 수출전용기업(EOU, Export Oriented Unit)을 운영 중이나 큰 차이점은 없다. 또한 STP 및 EOU의 경우 2009년 3월 31일까지만 조세 혜택이 주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STP나 EOU 제도를 통해 조세 혜택을 받던 기업들이 SEZ로 이동하는 추세이다.

13. 투자 진출 시 애로사항

가. 생활적인 면

인도는 매우 더운 나라로 뉴델리의 경우 여름철 최고기온이 섭씨 50도를 육박한다. 이러한 무더위 속에 청결하지 못한 환경 등으로 인해 온갖 전염병이 창궐하게 되어 생활이 힘든 편이다. 또한 음식 문화가 달라 한국 식품을 조달하기도 힘들고 골프 외에는 별다른 여가 생활을 즐기기도 어렵다. 대중교통 수단이 발달하지 않아 항상 자가용을 이용해야 하며 그나마 도로망이 부실하고 갖가지 사고가 많아 자가운전도 여의치 않다.

나. 노무 관리 및 인력 관리

인도에서는 1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인력 감축이나 공장 폐쇄 시에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갖가지 조항을 통해 퇴직금, 상여금 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해고 시에도 1개월~3개월의 사전 통지를 해야 하는 등 노동 유연성이 부족한 편이다.

한편 현지 노동자들은 수동적 성향이 강하고 조직에 충성하기보다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인센티브 등을 통해 동기부여를 해 주여야 하는데 이 역시 어려움 중 하나이다. 최근에는 인건비 폭등과 이직률의 급상승이 주요 애로사항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숙련 노동자의 구인난도 심한 편이다.

다. 인프라 부재

인도경제의 최대 문제점이자 애로 사항은 인프라 부재로 전력, 용수, 도로, 항만, 공항 등 모든 인프라가 매우 열악하여 이는 경제 발전과 투자 유치에 결정적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인도는 전기, 용수, 도로, 항만, 공항 등 모든 인프라가 부실하기 때문에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 전기의 경우 하루에도 몇 번씩 정전되기 때문에 자체 발전기 등의 시설을 확보해야 하며 공급되는 전기의 가격도 비싸다. 또한 도로가 잘 정비되지 않아 내륙 운송은 시간 및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편이다. 인프라 부재는 인도 진출기업들이 겪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이다.

예를 들어 전력의 경우 평시 전력 부족률이 7~8%, 피크타임 전력 부족률이 11~12%에 달하며 공급되는 전력의 품질도 매우 불량하다. 따라서 일상적으로 정전이 발생하며 공장이나 사무실에서는 이를 대처하기 위한 자가발전 시설을 구비해야 하는 실정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낮 최고 기온이 40도를 넘는 북인도의 한여름에는, 하루 정전 시간이 8시간여에 달해 전력 문제는 투자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 중 하나로 꼽힌다.

2012년 7월에는 인도의 수도인 뉴델리를 포함한 북동부 전역이 30일, 31일 이틀에 걸친 대규모 정전사태로 피해를 입은 바 있다. 동 사태로 인해 북부 및 동부, 북동부지역 연방 직할령 2곳 및 20개 주, 총 6억명의 인구가 15시간 이상 지속된 정전으로 큰 타격을 입었으며, 특히 하루 이용객이 180만명에 달하는 델리 지하철이 운행 중단되어 사회 전반에 큰 혼란이 발생하는 등의 혼란을 가져왔고 기업 피해액만 1억 75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일반 가정에 대한 용수 공급은 하루 2~3시간에 불과한 경우가 많아 펌프를 이용해 용수가 공급되는 시간에 물탱크에 물을 비축해야만 물의 상시적 사용이 가능하며 겨울에도 온수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각 가정에 순간온수기를 설치해야 한다.

인도의 도로망 역시 매우 열악하여 전체 도로 중 1.7%만이 연방국도(National Highway)로, 한국의 고속도로와는 달리 도로에 사람, 자전거 등이 같이 달릴 수 있다. 인도 Highway의 최고 속도는 보통 50㎞로 100㎞이상으로 달릴 수 있는 도로는 Expressway이며 델리 인근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 연방 국도가 전체 물동량의 40%를 담당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35%가 1차선, 53%가 2차선이고 4차선 이상은 12%에 불과하다. 주 국도(State Highway)는 전체도로의 4%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나 절반이 비포장 도로이거나 포장된 구간도 포장 상태가 매우 열악하다.

이 밖에도 항만, 철도, 공항 등 기본적인 산업 인프라의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라. 부동산 문제

그 동안 인도는 빠른 경제성장으로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여 부동산 값이 폭등하여 많은 기업들이 사무실 임대, 공장 부지 확보, 주택 임차 등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델리, 뭄바이, 방갈로르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로 부동산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여 전반적으로 임차료가 다소 감소하였으나 서서히 다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뉴델리의 경우 연간 100% 이상 급등하는 경우도 많으며 3 베드룸 주택은 월 임차료가 250만 원을, 100M^2(약 30평) 사무실은 월 임차료가 700만 원을 호가한다. 이처럼 사무실 및 전용공단의 공급 부족, 관련 허가 획득의 어려움 등 부동산 문제가 최근 투자 진출상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히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제하강 국면으로 인도 부동산 시장 수요 또한 크게 감소하였다. 이로 인해 2009년 인도 전체 주거용 부동산 가치의 경우 전년도 대비 15-20%하락하였으며, 상업용 부동산 또한 20-25%의 하락세를 보였다. 2013년 4분기의 인도 부동산 가격은 전 분기와 비교하여 2% 감소하였으며, 전년 동기대비 8% 감소하였다. 이러한 부동산 가격의 감소는 세계 경기불황과, 인도의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례로 뭄바이 South Central 주거 지역 경우 2014년 3월 기준 130~165㎡의 임대 아파트는 월 22.7만 루피(약 월 382만 원)의 가격대에 거래되고 있으며, 임대 사무실의 경우 지역별 가격차가 존재하지만 1평방 피트당 275루피(4,639원)에 거래된다. 한편 델리의 임대 사무실은 1평방 피트당 414루피(6,984원)를 기록했다.

뭄바이는 2010년에 세계에서 6번째로 높은 사무실 임대료로 파리·상해·싱가포르·뉴욕 보다도 비싼 임대 비용을 기록하였으나 이후 너무 높은 임대 비용으로 인해 사무실 수요가 중심지역 인근 지방으로 이동하기 시작하면서 2012년 부동산 임대 비용은 2011년 대비 8%가량 하락하였다. 2013년 12월 기준으로, 뉴델리는 세계에서 7번째로, 뭄바이는 15번째로 높은 사무실 임대 비용을 기록했다.

2013년에는 거래되지 않는 매물이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 컨설팅 전문업체 Knight Frank India에 따르면 뭄바이 남부 및 중부 지역인 Parel, Lower Parel, Mahalakshmi 지역 부동산 가격이 2013년 3분기 동안 10%이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동산 재고의 증가와 경기 침체로 인해 수요가 감소한 결과로 보인다.

한편, 뭄바이 외곽 및 서쪽 지역인 Navi Mumbai와 Thane지역 부동산 가격은 현재 안정적이며 약간의 상승세만을 보이고 있다.

2014 세계 사무실 부동산 임대 비용 순위

순위	전년도 순위	국가	도시	임대 비용(유로/m²/년)
1	1	영국	런던	2,122
2	2	홍콩	홍콩	1,432
3	6	러시아	모스크바	1,092
4	4	중국	베이징	1,027
5	5	일본	도쿄	1,003
6	8	미국	뉴욕	993
7	3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991
8	4	인도	뉴델리	959
9	10	프랑스	파리	895
10	9	호주	시드니	844
11	14	싱가폴	싱가포르	803
12	13	룩셈부르크	룩셈부르크 시티	788
13	11	노르웨이	오슬로	756
14	21	UAE	두바이	734
15	12	스위스	제네바	718

자료: Cushman & Wakefield, Office Space across the World 2014

서울과 비교하여 뉴델리의 사무실 임대료 수준은 서울의 2.2배, 뭄바이는 1.5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부동산시장조사업체인 '글로벌프로퍼티가이드(Global Property Guide·GPG)'에 따르면 2013년 4월 30일 120 제곱 미터 기준 뭄바이 도심 중심지는 월 임차료가 제곱 미터당 1,800루피 이며 수도인 뉴델리 도심 중심지는 제곱 미터당 557루피이다. 이 외에 방갈로르 지역의 경우에는 제곱 미터당 260루피이다. 이렇듯 인도에 투자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에게 높은 사무실 임대 비용은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어 진출 시 주의를 기해야 할 장애 요인이다.

마. 세금 문제

인도에서의 법인세율, 소득세율, 관세율은 매우 높은 수준이며 세금을 다 내면 수익을 내기가 매우 힘든 경우가 많다. 한편 인도 관계 당국에서는 한국에서 받은 급여와 인도에서 받고 있는 각종 지원(주택 임차 등)에 대해서도 과세하고 있어 합법적인 수준 안에서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필수적이다.

- ○ 법인세율: 법인 (31% ~ 34%), 지사(41% ~ 42%)
- ○ 소득세율: 30.9% (대부분의 경우)
- ○ 관세율: 약 26% (일반 품목의 경우)

한편 높은 조세율 이외에도 복잡한 조세체계 및 납부 방식, 세금 환급의 어려움, 불필요한 행정 처리, 빈번한 세법 및 관행 변경, 조세 당국의 고압적 자세 등이 애로 사항으로 꼽히고 있다.

바. 허가 지연 등 행정적인 문제

인도 관계 당국의 행정은 느리고 불투명한 경우가 많아 인도 투자기업은 관련 허가의 취득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각종 규제로 인해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건설업 허가만 보더라도 세계은행이 펴낸 Doing Business 2014에 따르면 전체 조사국가 189개국 중 인도는 건설 허가 취득 난이도 관련 182위, 절차 수 35개로 51개를 기록한 러시아에 이어 뒤에서 2번째를 기록하는 등 아직도 각종 규제 및 행정처리지연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도·중국·한국의 사업 환경 평가

구분		인도	중국	한국
사업 개시	절차 수	12	13	5
	소요 일수	27	33	5.5
사업 청산에 필요한 年數		4.3	1.7	1.5
건축 설계도의 승인 소요 일수		168	270	29

자료: 월드뱅크, Doing Business 2014

인도 연도별 부패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순위(부패지수)	85(3.4)	84(3.4)	87(3.3)	95(3.1)	94(36)	94(36)

자료: 국제투명성기구, www.transparency.org

국가별 부패지수(CPI) 보고서는 공무원 및 정치인들에 있어 부패가 존재하고 있다고 인식되는 정도에 기초하여 각국의 부패 정도를 수치화해 국가별 순위를 매긴 것으로 이 보고서에서 말하는 '부패'란 공무원의 뇌물 수수, 정부 조달에서의 유용, 공금 횡령 등 개인 이익을 위한 공권력의 사용이다. 지수는 2011년까지 부패가 전혀 없으면 10점, 부패가 만연한 상태를 0점으로 매기는데 만점(10점)에 가까울수록, 순위가 높을수록 부패 정도가 낮은 것을 의미하며 2012년부터는 0~100점으로 변경되었다. 인도의 경우, 국제적으로 투명하다고 평가받는 기준이자 OECD 가입 30개국의 평균 지수이기도 한 '7점 대'와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어 낮은 수준의 투명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사. 인건비의 상승

연 8% 이상의 고도 경제성장이 5년에 걸쳐 이뤄지면서 전문 인력 구인난이 심해지면서 인건비가 폭발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인도는 최근 9%대의 고도 성장을 거듭하면서 지난 몇 년간 두 자리수의 인건비 상승률이 이어지고 있다. 2008년 인도 근로자 인건비 상승률(13.3%)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상승률로 기록된다.

세계적인 HR회사인 Hewitt Associates(AON) 사의 조사에 따르면, 인도의 2013-14년 업종별 인상률은 의약, 건강관리, 생활과학 분야가 13.1%, 금융분야가 9.6%, IT 분야가 17%, 미디어분야가 14%를 기록하였다. 또한 직급에 따라 대리가 16.4%, 과장이 17.1%, 부장이 17.7%, 임원급이 18.5%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인도의 연평균 급여인상률은 향후 3-5년 동안 적어도 12-15%를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저임금 이점을 보고 투자하는 것은 주의가 요망된다.

인도 인력은 이직을 보편적인 몸값 상승의 기회로 여기며, 조금이라도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쉽게 이직하는 추세이다. 고용 에이전트의 부추김도 이직률 상승에 한 몫 담당하고 있다.

분야별 임금 수준

(단위: 십만 루피, 년)

분야	경력 0~3년	4~7년	8~12년	13년 이상
자동차	2.73~3.03	2.62~3.03	5.81~9.99	10.37~14.08
자동차부품	2.10~2.40	3.36~4.58	3.36~4.58	9.99~12.25
광고&미디어	2.15~2.50	3.83~7.37	6.50~13.63	8.33~20.33
뱅킹	2.65~4.46	6.42~7.67	10.17~22.08	18.75~45
BPO	1.78~2.47	4.04~5.58	8.48~18.52	24.08~25.34
비즈니스 서비스	1.42~2.41	2.83~4.49	7.25~9.84	6.29~19.42
금융서비스	2.15~2.63	4.27~5.70	7.73~12.88	18.54~24.42
인프라 스트럭처	3.12~3.27	3.23~6.70	4.73~15.82	10.45~40.63
IT	2.15~2.50	3.83~7.37	6.50~13.63	8.33~20.33
제조업	1.92~2.90	3.41~5.45	6.10~7.73	7.71~25.08
제약&화학	2.28~2.49	3.23~5.46	3.45~7.26	8.92~10.37
소매	1.50~3.11	4.35~4.57	8.75~10	17.33~19.67

자료: EmmayHR 2008

아. 규제 및 불투명한 행정

인도에서 카스트 제도는 법적으로 폐지되었지만 현실에서는 엄연히 존재하고 있으며 개인과 사회 현상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실제로 카스트와 얽힌 시회문제나 갈등은 인도 전체의 사회통합이나 인도가 하나의 목표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여러 종교, 인종, 언어가 상존하다 보니 일상적인 행정처리에 있어 비효율성이 큰 편 이다. 또한 사회주의 경제시스템을 운영한 전통으로 노동자 권익을 과다하게 보호한 노동법 체계 등이 실제 사업체를 운영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100인 이상 고용 사업장의 경우 노동자의 정리해고나 사업체 폐업 시 정부 사전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자. 한국 투자 기업들의 애로 사항

법인 및 공장 설립 단계 시 애로 사항

(단위: %)

구 분	대기업	중소기업	개인기업	합계
투자허가기관 및 파트너의 잦은 태도변화	9.4	5.2	4.2	18.8
인도 특유의 복잡한 행정체계	17.7	21.9	6.3	45.8
현지 협력처 물색, 선정의 어려움	4.2	1.0	0.0	5.2
협력처 물색 및 선정갈등	3.1	2.1	0.0	5.2
공장부지 선정 및 시공의 어려움	3.1	10.4	1.0	14.6
현지어의 의사소통	1.0	2.1	1.0	4.2
문제 없음	1.0	2.1	0.0	3.1
기 타	2.2	1.0	0.0	3.1
합 계	41.7	45.8	12.5	100.0

주: 설문 기업 65개, 유효 응답 60개, 다중 응답.
자료: 인도 진출 한국기업의 경영실태와 현지화 전략 연구, KIEP

한국 투자 기업들이 법인 및 공장 설립 단계에서 겪는 애로 사항으로는 투자허가 기관 및 파트너의 잦은 태도변화와 인도 특유의 복잡한 행정체계가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 투자 기업들이 경영관리 전반으로 겪는 애로 사항으로는 인프라 부족과 원자재 및 부품의 조달과 관련된 애로 사항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인도의 인프라가 실제로 인도에서의 사업 추진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는 점을 재확인하는 것이다. 인도의 제조업 발전 수준이 낮아 부품 조달에도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 관리 전반의 주요 장애 요인

(단위: %)

구 분	대기업	중소기업	개인기업	합 계
원자재, 부품 조달 난	3.9	12.6	2.9	19.4
인프라시설 부족	17.5	11.6	2.9	32.1
현지 금융 조달 난	1.9	3.9	1.0	6.8
생산코스트 상승	2.9	4.9	1.9	9.7
고용·인사관리 곤란	6.8	4.8	1.0	12.7
노사갈등·분규	1.0	0.9	0.0	1.9
내수시장진출 곤란	0.0	2.9	1.0	3.9
판매 대금 회수 곤란	2.9	2.9	1.9	7.7
부가세 환급 지연	0.0	1.0	0.0	1.0
한국기업간의 과대경쟁	0.0	1.0	1.0	2.0
진출현지경영 간섭	0.0	1.0	1.0	2.0
기 타	0.0	1.0	0.0	1.0
합 계	36.9	48.5	14.6	100.0

주: 유효 응답 56개, 다중 응답.
자료: 인도 진출 한국 기업의 경영 실태와 현지화 전략 연구, KIEP

14. 노무관리제도

가. 노동법 주요 내용

지난 UPA 연립정부는 연정 참여 정당 간의 공동 정책을 통해 근로자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노동법이 고용주 측에 불리하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됨에 따라서 노동법 개혁을 시도하였으나, 좌파 정당 및 노동조합측의 반대로 이렇다 할 진전이 없었다.

신정부는 지난 정권이 마무리 짓지 못한 노동법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고용창출과 노동생산성 향상을 그 목적으로 하는 신정부의 노동법 개혁의 내용은 주로 다양한 법령에 따른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아직 발효되지는 않았지만, 고용노동부는 기존 법령을 검토하고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제안서를 작성 중이다. 예를 들면, 산업분쟁법 1947의 종업원수 삭감 조항 변경 및 국가투자 제조분야(National Investment and Manufacturing Zone, NIMZ)에 속하는 기업들의 종업원 해고 자율화 등이 있다. 이는 신정부가 내건 공약 중 제조업 육성책과 부합하는 부분이며, 종업원 해고 시 고용주에게 대체 근무지를 소개해줄 것을 의무화하고 있어, 노동자를 보호하는 기본 기조 또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 산업분쟁법: Industrial Disputes Act, 1947

산업분쟁법은 사용자측의 불공정한 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되었으며, 1976년 개정을 통해 100명 이상을 고용한 기업과 100명 미만을 고용한 기업을 구분 하여 일시 해고, 감축, 폐업 등을 규제하고 있다.

100명 이상 고용 기업은 전력 부족, 자연 재해, 화재 등을 제외하고는 정부의 허가 없이 근로자를 일시 해고할 수 없다.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감축 시에는 3개월 전에 근로자에게 서면 통보하고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전허가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정부측으로부터 허가 여부 통보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 허가가 나온 것으로 간주된다. 근로자 감축 시 보상으로 매 1년 근무 기간마다 15일분 평균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사업장 폐쇄 시 3개월 전에 정부허가를 받아야 하고 근로자에게 사본을 통보해야 한다. (단, 빌딩, 교량, 도로, 운하, 댐 등 건설관련 업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사전허가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정부측으로부터 허가 여부 통보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 허가가 나온 것으로 간주된다. 폐업 시 근로자에게 보상으로 매 1년 근무 기간마다 15일분 평균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100명 미만 고용기업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일시 해고 시에 해고 기간 중에도 임금의 50%를 지불해야 한다. 단, 사용자와 근로자간 합의가 있을 경우 1년 동안 45일 이상 일시 해고 시에는 45일분만 보상해 주면 된다.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감축 시 1개월 전에 서면 통보해야 하며 보상으로 매 1년 근무 기간마다 15일분 평균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사업장 폐쇄 시에 2개월 전에 서면 통보하고 매 1년 근무 기간마다 15일분 평균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산업분쟁법은 근로자들에게 파업을 인정하고 있으나, 노동부는 근로자들이 파업 통보를 해오면 화해 절차를 요청하고 있으며 화해가 끝나기 전에 파업을 실시하면 불법 파업이 되는 제약을 두고 있다. 통상 노동자들이 파업 통보를 15일 전에 하나 노동부는 화해 요청을 파업 통보 13일 후에 하며, 화해 요청 10~12일 후에 화해 일자가 결정된다.

산업분쟁법에 따라 정부는 필수 서비스업종을 지정할 권한이 있는데 필수 서비스업종의 근로자 파업은 금지되고 있다. 참고로 비하르 주는 인력거 운전원을, 케랄라 주는 사제를 필수 서비스업으로 지정한 바 있다.

□ 계약 노동법: Contract Labour Act, 1970

계약 노동법은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기업측이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해야 하며, 계약 노동은 노예 노동과 유사하므로 원칙적으로 금지시켜야 하며, 필요 시 최소 한도로 허용해야 된다는 내용이다. 동 법은 기업의 자유로운 고용 및 해고 조치를 제약한다.

계약 노동이 가능한 비 핵심업종 분야는 ①유지 보수 ②서비스 ③기계 수리 ④건설 ⑤ 교량. 도로. 인프라 보수 ⑥병원 ⑦교육 기관 ⑧청소 ⑨쓰레기 처리 ⑩정원 관리 등이다.

계약 노동 허가증에는 사업자 성명, 주소, 최대 고용 인원, 사업종류 등이 표시되어 있으며, 상기 사항이 변경되면 사업자는 3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계약 노동자가 상용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할 경우, 계약 노동자 급여 수준, 휴일, 근무 시간, 기타 근로 여건 등은 상용 근로자의 급여 수준, 휴일 등 근로 여건과 동일해야 한다.

계약 노동 법규는 휴게실, 여성 노동자를 위한 휴게실, 어린이 놀이방, 통풍 장치, 조명 장치, 간이 식당, 화장실, 응급 약 등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정하고 있다.

□ 최저임금법: Minimum Wages Act, 1948

현재 인도 최저임금은 중앙정부와 국가샘플조사기관(National Sample Survey Organization)이 5년 주기로 소비자 지출조사를 실시하여 개정하게끔 되어 있다. 최저임금 분류는 크게 미숙련, 준숙련, 숙련 노동자로 구분되며 월 최저임금이 각각 311, 343, 377루피로 책정되어 있다. 또한 구분 별로 매장 및 시설 종사자, 유흥시설 종사자 등의 세부분류 및 식대, 주거보조비 포함여부를 명시하여 임금책정에 차별을 두었다.

노동자들의 경우 최저임금이 150루피 선에 그쳐 있으며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 나렌드라 싱 토마르(Narendra Signh Tomar)는 임금 지난 UPA정권 시절 미개정 상태로 남아 있는 공장법, 산업 분쟁법 및 아동 노동법 등을 검토하며 최저 임금법을 포함한 인도의 노동 분야 전반을 개혁하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 공장법: Factories Act, 1948

10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8.33%의 보너스 지급이 의무화되었다.

이 법안은 공장들의 등록과 허가를 규정하며, 어떠한 공장들은 공장 건설 전에 건설 계획의 승인이 필요하다. 각 공장은 사업장 전반에 걸쳐 최종 결정권자인 점유자를 나타내야 한다. 파트너십을 통한 회사의 경우에는 파트너 중 한 사람을 지정하거나 또는 점유자로 간주될 수 있다. 일반 회사의 경우에는 이사 중의 한 사람이 임명 되거나 다른 어느 이사가 점유자로 간주될 수 있다. 점유자는 법의 위반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형사상 고소당할 수 있다.

최소한의 건강, 안전, 복지 수단을 규정한 이 법안은 모든 공장들에게 효력이 미치며, 특별 조항들은 위험한 공정에 종사하는 공장들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또한 여성과 청소년을 위한 특별조항으로서 작업 시간, 주 별 휴가, 휴식 간격, 연차 들을 규정하고 있다.

□ 보너스 지급법: Payment of Bonus Act, 1965

이 법안은 월급의 8.33%를 최소한의 보너스를 규정하고 있으며, 연봉의 20%를 최대 보너스로 규정하고 있다. 보너스의 실질적인 액수는 회사의 이익을 기초로 하여 결정한다. 이 법안은 20명 이상이 근무하는 모든 공장과 회사에 적용된다.

새롭게 설립된 회사들은 물건을 팔기 시작한 이후부터 5년간 또는 이익을 창출할 때까지 보너스를 지불할 필요는 없다. 견습사원을 제외한 월급(기본급 + 생활 비용 수당)을 받은 근로자들은 3,500루피(85달러) 까지 보너스로 받을 자격이 있다. 30일 이하 근무한 근로자는 보너스를 받을 자격이 없다.

2014년 6월 현재, 델리 노동장관이 발표한 공지에 따르면, 고용주들은 종업원들에게 현금 대신 수표 혹은 전자결재시스템(Electric Clearing Service, ECS)을 통해 보너스를 지급하게 되어 있어 투명한 급여지급 시스템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 퇴직금법: Payment of Gratuity Act, 1972

근로자의 죽음이나 사임, 서비스의 종료 또는 은퇴 시 지불하는 수당이다. 이 법안은 20 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회사에게 적용된다.

이 수당은 최소한 5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들에게 적용된다. 근로자의 사고 또는 죽음의 경우에 5년 이하를 근무한 근로자라도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근로자에게 지불하는 수당은 매 서비스의 종료 연도 또는 그로부터 6개월이 초과한 경우에 15일치 봉급을 주며, 최대 한도는 35만 루피이다.

□ 근로자 국가 보험: Employees' State Insurance Act, 1948(Esic Act)

이 법안은 질병/사고/출산 등에 대해서 정부는 무료로 의료 혜택을 제공한다.

적용 범위는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모든 공장과 상점/영리 시설 등이 포함된다. 여기서 공장 의 의미는 제조 과정이 수행되는 지역을 의미한다.

전력 시설이 필요 없는 제조공장일 경우 20인 이상의 사업장에, 전력 시설이 필요한 제조 공장은 10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된다.

잔업을 제외한 월 급여 1만 루피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며, 고용주는 임금의 4.75% 를, 근로자들의 경우 임금의 1.75%를 보험료로 납부해야 한다.

□ 근로자 재해보상법 Workmen Compensation Act, 1923

이 법안에 따르면 사망이나 신체적 장애를 수발하는 고용기간 또는 사고가 발생하는 기간 동안에 근로자 또는 그들의 부양 가족에게 원조를 제공한다. 이 법안은 Employees State Insurance Act 법안에 포함되는 근로자들은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용주는 자신의 사업장에 적어도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어떤 특정한 직업병이 발병 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보상 금액은 장애의 성격, 장애 또는 사망의 원인이 된 상해가 있는 근로자의 연령에 따라서 다양하다.

□ 임산부 복지법: The Maternity Benefit Act, 1961

임산부 복지법은 출산 전후 특정 기간 동안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과 기타 다른 혜택을 규정한다. 10인 이상 근무하는 모든 상점과 영리 단체를 포함한 모든 공장들과 회사들에게 적용된다. 출산 예정일 바로 12개월 동안에 적어도 80일 이상 근무한 여성 근로자에게 유급 휴가의 형태로 출산 예정 날짜 전후 6주씩 12주까지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분만 전후 특정 기간에 대해서 여성 근로자들의 고용에 대한 규칙들이 존재한다.

□ 산업고용법: Industrial Employment (Standing Orders)Act, 1946

이 법안은 1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산업 시설에 적용되며 모든 사업장은 사업 개시 6개월 이내에 관계 당국에 복무 규정을 제출해야 한다. 산업시설은 공장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안은 고용인들의 고용 조건 예를 들면, 근로자의 등급, 근무 시간, 휴일, 임금 체계, 고용 종료, 절차, 휴가 등에 대해서 회사 고유의 규칙을 제출하든, 다른 규칙 모델을 적용하든 이러한 규칙에 따라야 한다.

□ 노동조합법: The Trade Unions Act, 1926

이 법안은 등록된 노동조합의 권리와 책임들을 규정하고 노동조합의 등록에 대한 규정을 제공한다.

나. 채용/해고 조건

1) 채용

□ 채용 대상

단독법인으로 진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히 초기에 기업 운영을 본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는 현지 관리자급 직원의 채용이 매우 중요하다. 이들이 갖추어야 할 조건은 관공서 업무, 경리 업무 등에 대한 경험, 집안 배경에 따른 지역 사회에서의 지위, 필요한 경우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사회적 배경 등이다.

합작투자나 100% EOU(수출형 기업)를 설립할 경우 우리 기업은 한국 기술자 수와 월 급여 수준을 정하고 한국 측 경영인 지정 여부 및 급여 수준을 통보해야 한다. 이것은 인도 내에서 외국인 기술자 채용과 관련 인도 중앙은행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초기의 각종 총무업무 및 재무업무를 담당할 유능한 실무자급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초기에 각종 비용 관련 자료, 증빙 서류 등의 정리를 소홀히 할 경우 회사 혹은 공장이 어느 궤도에 올랐을 때 누락되거나 분실되어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

공장 설립 혹은 매입 초기에는 가능한 국내에서 영어를 어느 정도 구사하는 엔지니어 출신이 장기 출장을 가서 공장 전반 사항을 점검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회사에 도움이 된다. 물론 인도에도 우수한 공학도나 엔지니어가 있지만 한국식으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공장의 Capacity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공장이 일정 궤도에 들어갔을 때 애로를 겪는 경우가 많다.

행정과 공장의 실무는 분리되어야 하고, 인도에서 공기를 맞춘다는 것은 인도인들의 관습과 환경 그리고 더위 등을 고려할 때 매우 어려운 일이므로 일단 업무에 착수하면 빠른 속도로 일을 진행시킬 수 있는 국내 엔지니어를 파견하고 현지에서 하급 엔지니어를 채용하여 진행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근무 기간에 따른 급여 및 복리후생제도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총무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채용하여 관련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중견 사원급 일수록 전직을 자기 경력을 높이는 수단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직률이 높은 편이다. 따라서 직원 채용 시에는 이러한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계약서상에 채용 및 근로조건을 명확히 해야 추후 발생할지 모르는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을 항시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일반 작업 근로자가 아닌 사무직 직원을 채용할 경우 3개월 정도를 견습기간으로 정하고 정식 고용계약은 테스트 이후에 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또한 정식직원으로 채용한 경우에도 해고할 수 있는 조건들을 제시하고 이를 점검하여 필요할 경우 해고의 근거로 제기하는 것이 분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다.

□ 채용 방법

미숙련공의 경우 신문 광고나 인력 수급 대행사, 학교 방문 채용, 연고 채용 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주에 따라서는 주정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구직자와 구인자를 등록시켜 채용을 촉진하는 경우도 있다. 사무실 근로자나 관리직 직원의 경우 통상 신문광고나 대행사, 인터넷, 또는 헤드헌팅 오피스를 통하여 채용이 이루어진다.

인도에서 설립된 회사는 인도 중앙은행의 사전 허가 없이 외국인 근로자 (해외 거주 인도인 포함)와 단기 고용 계약을 맺을 수 있으나, 복수의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에 각각의 고용기간을 합산한 총 고용기간은 1년에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외국인 1인당 고용기간이 한 번에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무부(Foreign Division, Ministry of Home Affairs)와 인도 중앙은행의 승인이 필요하다.

2) 해고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의 경우와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의 경우 해고 절차와 조건이 다르며, 제조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해고 3개월, 서비스업과 사무직의 경우 1개월 전에 서면 통보해야 법적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

범죄 행위 또는 계약 위반에 따른 해고의 경우에도 다음 절차를 거쳐야 한다.

○ 해당자에 서면 통보하고, 서면으로 해명의 기회를 제공한다.
○ 사용자와 피고용인 사이에 의견이 다를 때 회사 내 사용자측과 노조측 대표로 구성되는 '불만 해결 위원회'에 회부하겠다는 통보를 해야 한다.
○ 회사 내의 '불만 해결 위원회'에서 해고 사유가 인정되면 해고할 수 있다
○ 해고를 당한 자는 불만이 있을 경우 노동 법정에 제소할 수 있다
○ 노동법정에서 해고당한 측에 유리한 결정을 하는 경우 재고용해야 하며, 그 기간 내 발생할 수 있었던 승진과 급여 등 모든 불이익을 보상해야 한다.

따라서 통상 사용자 측은 근로자 해고 시 문제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3개월간 자택에서 쉬도록 유도하고 3개월 분의 임금을 지불하고 있다. (사무직 및 서비스 업의 경우는 통상 1개월) 퇴직금은 최종 급여의 50% x 근속 연수로 계산된다. 그러나 10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의 경우 폐업뿐만 아니라 근로자 해고의 경우도 사전에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지나치게 까다로운 노동 관련 법규로 인해 전체 노동력의 소수만이 정식으로 취업하고 있고, 대다수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공식 직종에 취업하고 있는 상황이다.

100명 이상 근로자 고용 시 일시적인 공장 폐업, 노동 인력 감축 등의 경우 정부 승인이 필요하다. 하지만 명백한 업무 불량 등으로 인한 해고는 정부 승인이 없어도 3개월 전 통지를 통해 가능하다. 현 인도정부는 기업 경쟁력 강화 및 경제개혁 정책 추진 차원에서 현 노동법규를 최대한 신축적으로 운용하려고 노력하는 한편, 노동법 개정 작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노조 및 좌파 계열 정당들의 강경한 반대로 개정 작업이 순조롭게 진척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다수의 우리 기업들은 직원을 정식 채용하지 않고, 인력 관리 회사를 통해 형식적으로는 용역 형태로 간접 채용하며 근로자 관리는 이들 인력 관리 회사가 맡아서 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다. 임금 및 노동 관련 통계

1) 임금 체계

임금은 산업, 업체 규모, 지역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결정된다. 임금은 시간 기준 또는 산출 기준으로 지급될 수 있는데 전자가 일반적이며, 노조가 결성된 영역에서는 노사 협상에 의해 결정된다. 급여는 기본급과 수당으로 구성된다.

수당은 소비자물가지수에 연동되는 생계 보조금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 통상 기본급의 60% 이상이 된다. 정부의 공기업 임금 가이드 라인은 전체 임금 동향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최근의 5차 임금 권고안은 수당의 경우 물가에 100% 연동되도록 권고하고 있다. 급여 책정 시 직원에게 결정되는 수당의 경우, 소득 공제 가능한 수당과 그 한도 이상으로 책 정하는 것이 직원들의 소득세 절세 효과를 위해 도움이 된다.

추가적으로 각 업체별로 특별히 제공 가능한 수당을 임의로 책정할 수 있다. 급여 책정 시 고려할 만한 주요 수당 별 년간 소득 공제 가능 한도는 다음과 같다.

각종 수당	소득 공제 한도
주택임차수당(House Rental Allowance)	기본급 40%(대도시 50%), 책정주택임차수당(HRA), 연임차료 납부액-기본급의10% 중 최소액 기준
교통비 수당(Conveyance Allowance) 또는 차량 유지 수당(Vehicle Maintenance Allowance) 중 택일	○ 교통비 - 일반인 월 800루피, - 지체장애자 월 1,600루피 ○ 차량 유지 - 1600CC 이하 월 1,200루피, - 1600CC 이상 월 1,600루피 · 기사 급여 포함 시 월 600루피 추가 공제
의료 수당(Medical Allowance)	연 15,000루피 한도
휴가 여행 수당(Leave Travel Allowance)	인도 내 가족의 여행 비행 경비 4년마다 2회 공제 가능
전문 개발 수당 (Professional Development Allowance)	서적 구입, 세미나, 워크샵 실비 기준
자녀 교육 수당 (Children's Education Allowance)	최대 2자녀, 자녀당 월 100루피, *보육원 비용 월 300루피 추가 공제

자료: Incometaxindia

상기 수당 외에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소득신고 시 적용할 수 있는 소득공제 가능 사항으로는 개인당 최대 100,000루피까지 장기투자 관련 공제와 주택구입 대출 시 연간 최대 150,000 루피, 의료보험 연간 15,000 루피 및 65세 이상의 부양 가족당 5,000루피씩 추가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복잡 다양한 소득 공제 항목이 있으므로, 반드시 직원 별 소득세 산출 시 지정 회계사를 통하여 신고하여야 할 것이다.

□ 사회보장 부담

일종의 국민연금제도로서 EPF(Employees Provident Fund)제가 20인 이상 사업장의 월 급여 6,500루피 이하 근로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적용되며, 그 이상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는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기본급과 수당을 합한 급여의 12%를 노동자와 사측이 각각 부담한다.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사고나 재해 시 노동자 보상법에 따라 보상해야 한다.
○ 공장법은 공장의 조명, 환기, 안전, 보건 및 복지 등 전반적인 작업 환경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자 보험법에 따라 모든 산업 근로자에게 의료 수당이나 의료 서비스 등 의료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 분쟁 해결, 해고, 감원, 축소, 공장 폐쇄는 '47년 산업조정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2) 임금 수준 및 추세

ㅁ 임금 수준

인도의 평균임금이나 최저임금 등은 주요 도시 별, 주 별, 산업별로 차이가 있다. 평균 및 최저임금 정보는 인도 노동부 웹사이트(http://labour.nic.in/)에서 확인 가능하다. 대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에 비해 약 30% 정도 급여가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직종별 평균 임금 현황

(단위: 루피, 월)

직업	임금액	직업	임금액
전기 기술자	15,000-82,000	품질검사관	5,100-12,000
기계 기술자	14,000-75,000	사무원	6,500-12,000
회계사	11,500-83,000	타자원	4,500-8,500
현장 주임(공장장)	9,000-33,000	전기전자 조립공	6,500-12,400
십장	9,200-35,000	공원	4,500-12,000
연장 제작공	7,200-25,000	반숙련 노동자	4,500-17,000
숙련 노동자	6,500-20,000	비숙련 노동자	3,500-8,500
비서(개인)	7,500-40,000	청소부	3,000-6,500

자료: EIU, Country Commerce India

급여 인상과 관련 인도정부는 공무원의 임금인상은 물가상승률을 100%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민간기업도 이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너스법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상여금은 연봉의 최저 8.33%(1개월치 급여분)에서 최고 20%에 상당하는 액수를 지급해야 하며, 고용자 공제기금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고용자는 근로자의 연봉 중 6.5% -8.1%를 근로자 퇴직 연금으로 기탁해야 한다.

분야별 임금 수준

(단위: 십만 루피, 년)

분야	경력 0~3년	4~7년	8~12년	13년 이상
자동차	2.73~3.03	2.62~3.03	5.81~9.99	10.37~14.08
자동차 부품	2.10~2.40	3.36~4.58	3.36~4.58	9.99~12.25
광고&미디어	2.15~2.50	3.83~7.37	6.50~13.63	8.33~20.33
뱅킹	2.65~4.46	6.42~7.67	10.17~22.08	18.75~45
BPO	1.78~2.47	4.04~5.58	8.48~18.52	24.08~25.34
비즈니스 서비스	1.42~2.41	2.83~4.49	7.25~9.84	6.29~19.42
금융 서비스	2.15~2.63	4.27~5.70	7.73~12.88	18.54~24.42
인프라 스트럭처	3.12~3.27	3.23~6.70	4.73~15.82	10.45~40.63
IT	2.15~2.50	3.83~7.37	6.50~13.63	8.33~20.33
제조업	1.92~2.90	3.41~5.45	6.10~7.73	7.71~25.08
제약&화학	2.28~2.49	3.23~5.46	3.45~7.26	8.92~10.37
소매	1.50~3.11	4.35~4.57	8.75~10	17.33~19.67

자료: Emmay HR

□ 임금 추세

매년 거의 15만 명의 석사 졸업자와 35만 명의 대학 졸업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음에도 25%만이 산업계에서 고용할 수 있는 인재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인도기업은 인재 유치 또는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임금 인상 등의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도 임금 상승률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추세다. 2014년 2월 발표된 연례임금상승률조사 보고서에서는 2014년 인도의 전체적인 임금상승률을 10%대로 전망하였다. 총선 뒤 정권교체를 통한 경기회복 및 인플레이션율 감소에 대한 기대감 상승을 주 원인으로 꼽았다. 산업별로는 제약이 12.0%, 화학이 11.2%, 시멘트가 10.8%, 그리고 엔지니어링 서비스가 10.6%로 임금상승을 주도할 것이라고 예측하였고, 반대로 자동차 9.5%, 에너지 9.2%, 금융 9.1% 순으로 임금상승률이 저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4년의 주요 산업분야별 인건비 상승률 예측

(단위: %)

상위 5개 분야	상승률	하위 5개 분야	상승률
제약	12.0%	자동차	9.5%
화학	11.2%	에너지(석유/가스/발전)	9.2%
시멘트	10.8%	인프라스트럭쳐	9.1%
엔지니어링 서비스	10.6%	금융	9.1%
소비재	10.3%	소매	8.8%

자료: AON Hewitt

직급별 인상폭의 경우 예년에는 경영층 및 고위층의 상승폭이 초급 및 중급 인력에 비해

높았으나 최근에는 이와 반대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으며 초급 및 중급 인력의 인상폭이 높은 상박하후(上薄下厚)형태가 일반적이다. 또한 비 숙련 노동자의 경우는 인건비가 크게 상승되지 않는 등 인건비 상승은 교육받은 숙련 근로자 위주로 이루어 지고 있다.

인도 인력은 이직을 보편적인 몸값 상승의 기회로 여기며, 조금이라도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쉽게 이직하는 추세이다. 고용 에이전트의 부추김도 이직률 상승에 한몫 담당하고 있다. 부동산, 에너지, 소매업, 통신업, 은행 및 금융업, 회계 서비스, 컨설팅, 법률 서비스 등의 분야는 전년 대비하여 임금 상승이 소폭으로 이루어졌으며 한편 지난 몇 년간 임금 상승을 주도했던 IT분야는 루피화 인상 등의 악재 때문에 크게 인상되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매년 1,000만 명의 가용 인력이 있으나 숙련된 인력 보유와 채용과 관련해 매년 500만 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건설업이 현재의 성장률을 지속한다면 현재 3,100만 명의 건설 산업 종사자 중 매년 15%의 인력의 추가가 요구되고 있다.

3) 근무시간 및 휴일

공장법(The Factories Act, 1948)은 주 48시간 근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통상적으로 사무직 근로자는 주 5일간 35-38시간, 공장 근로자는 주 6일간 43~48시간을 근무한다. 1일 9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근무 시간에는 두 배의 임금이 지급된다.

휴식 시간을 포함하여 하루 10시간 반 이상을 근무할 수 없으나 주 정부는 ①긴급 수리 종사자, ②공장의 정상적인 가동을 위한 업무 종사자, ③업무 자체가 단속적이어서 법정 이상의 휴식시간을 갖는 종업원, ④기술적 사유로 연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업무의 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초과 근무가 아니라면 일요일 근무나 야간 근무에 특별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공휴일 근무는 통상 100% 수당이 지급되나 근로자들은 대체로 유급 휴가로 대체하는 것을 선호한다. 산업이나 직종에 따라 표준 근로시간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근로 시간 관련 규정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인도의 법정 공휴일은 14 일이다. 또한 유급 휴가는 30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휴가 기간이 15일 이내일 경우 잔여휴가 가운데 15일 분에 대해서는 특별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40일을 근무한 이후 20일당 1일의 비율로 유급 연차 휴가가 주어지며. 연간 7일의 유급 병가(Sick Leave)가 허용된다. 출산휴가는 12주이며, 경조사 등을 위해 7~10일의 임의 휴가(Casual Leave)가 주어진다. 한편 2013년 12월 2일, 중앙정부가 발표한 Negotiable Instruments Act, 1881에 따르면, 뭄바이 지역 연간 법정 공휴일은 24일로 유지되고 있다.

라. 노무 관리 유의 사항

1) 일반 노동 여건

일반적으로 인도는 노동력이 풍부하고 임금은 낮지만 노동 생산성이 매우 낮아서 저임금의 효과가 생각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특히 원재료를 본국에서 들여와 생산하는 경우 생산성이 낮고 원재료 낭비가 크다는 것도 부담이 되어 왔다.

단순 노동자의 대부분이 근로의식이 부족하여 약간의 돈이 모이면 생산지를 무단 이탈하여 10-20일씩 결근하고 돈이 떨어지면 다시 돌아오는 일도 많아 일에 대한 책임의식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어 왔으며 지역별, 민족 별로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지 진출 한국계 기업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볼 때 북부지역의 인력(특히 펀잡 출신)은 관리부서, 남부 지역은 기술직, 동부 지역 인력은 비즈니스, 서부 지역 출신의 경우 예능, 학술 분야에 각자의 장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인도의 IT붐 이후 민간 산업계와 노동계의 노동 규율과 납기 준수에 대한 의식이 크게 높아지고 있고, 외국인 기업의 인도 진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과거의 인도 노동력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많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 기업은 인도기업에 비해 다소 나은 보수를 지급하는 반면 일의 생산성 면에서 훨씬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끊임없이 근로자들을 교육시키고 있다.

2) 노사 관계

인도에서 최초로 노동운동이 인정되고 보호되기 시작된 것은 1926년의 노동조합법이 제정되면서부터이다. 인도의 독립과 함께 노동조합의 수는 급격히 늘어났으나 대부분의 노동조합들은 규모가 작고 지역 또는 국가 단위의 연합체에 가입되어 있다.

노조의 설립 및 가입은 의무 사항이 아니며, 종래에는 노동자 7인의 동의에 의하여 노조 설립이 가능하였으나, 2001년 법 개정으로 100인 이상 혹은 근로자 1/10 이상의 동의로 설립 요건이 강화되었다. 외부인의 노조 가입은 노조 집행부원 숫자의 1/3 또는 5명을 초과할 수 없다.

인도의 대표적 노동조합들은 Indian National Trade Union Congress(INTUC), All-India Trade Union Congress(AITUC), Center of Indian Trade Unions(CITU), Indian Workers' Association(IWA), United Trade Union Congress(UTUC) 등이 있다. 현재 노동조합원 수가 3,000만에 달하지만, 현대화된 산업군의 경우 가입률이 1/4 수준 이고 특히 국영기업의 경우 이 비율은 더욱 낮아진다.

인도의 노동조합들은 정치적 성향이 매우 강하여 정치인들이 노동조합 지도자가 되는 경우가 많고, 인도에서 발생되는 많은 파업이나 기타 유사한 노동운동 관련 쟁의 행위는 근로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기보다 특정 정당의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인도 권역별로 살펴볼 때, 노사 분규가 심한 지역은 이른바 힌디벨트라고 불리는 중북부 지방이며, 남부 지역은 다소 양호한 편으로 분규의 주요 원인은 임금과 인력관리 문제이다. 분쟁 기간은 통상 1일내 해결이 22%, 5일 이내 20%, 5-10일이 11%, 10-20일 13%, 20일 이상이 34% 정도가 된다. 인도 법규상 노동쟁의는 6주간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나 실제 해결 과정에서는 2-3개월 혹은 6개월까지도 파업이 지속되는 경우가 흔하다.

인도의 대규모 기업들의 경우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집단적 대표성을 가진 기구는 크게 2가지이다. 첫 번째는 100명 이상의 근로자들이 있는 기업의 경우 중앙정부나 주 정부는 고용주에게 노사 동수로 이루어진 작업위원회(Works Committees)를 구성하고 활성화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이 위원회의 목적은 노사 간의 대화와 협조, 경쟁과 토론을 통해 건전 한 노사 관계 문화를 형성하고 그 활동을 촉진시키는 데 있다.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위원회에 근로자 대표들을 파견할 수 있으며, 인도의 노동조합법에 의하면 노조의 설립은 7인 이상의 동의만으로 가능하며 복수 노조가 인정된다.

복수 노조의 경우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대표 노조 선정 기준은 없으나, 기업들은 대표 노조를 선정하여 해당 노조와 협상을 하는 것이 일반적 관행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인도에서는 단체협상의 내용 중 많은 중요한 부분들이 미리 법제화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단체 협상과 관련된 협상의 범위나 내용을 규정해 두지 않는 경우가 많다. 즉 많은 부분이 사전에 법적 규정에 의하여 해결된다고 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단체협상은 기업 단위의 교섭 구조를 가지고 있다.

노사간 갈등 해결 방법은 1947년의 산업분쟁법에서 명기하고 있다. 많은 개별 기업들에는 특정한 고충 해결 방식들이 있으나 근로자들이나 노동조합은 인도 법에 따라 분쟁 해결을 조정위원회(Conciliation Board)에 맡길 수 있다. 중재 위원회 외에도 주 산업 법원이나 중앙법원의 결정에 의해 분쟁의 해결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이러한 세 기관에서 결정된 내용은 최종적인 것이며 어떠한 이유에서도 재검토되지 않는다.

인도의 노동법은 특이하게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의 견을 법제화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중앙정부의 노동 관련 기준법들은 각 주 별로 서로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라자스탄 주와 우타르 프라데쉬 주의 경우 좀 더 우호적인 경제적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중앙정부의 노동 감독의 영역을 줄였으며, 오릿사 주와 웨스트 벵갈 주는 복수 노조의 경우 비밀 투표를 통해 대표 조합을 선출하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인도 개별 주들의 노동 법령은 중앙정부 노동 법령과는 달리 각 주 별 특성에 맞게 변화 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인도에 기업이나 공장을 설립할 경우 중앙정부의 노동 법령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이나 공장이 들어서는 대상 주의 노 동 관계 법령에 대한 이해를 함께 하고 있어야 한다.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는 주 정부 지역의 경우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외국투자 기업의 정착에 중점을 둔 개선된 노사 관계 관련 법령이 있는 경우가 많다.

인도를 동서남북으로 나누어 대표적 도시를 기준으로 노사관계 상황을 설명하기도 한다. 동부지역의 콜카타가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가장 강한 곳으로 일반적으로 외국기업들이 기피하는 대표적 지역이다.

이에 비해 남부의 첸나이는 사람들의 성격이 온순하고 노사관계가 다른 지역에 비해 안정적이고 외국기업에 친화적이며 정부 지원이 많은 곳이다. 첸나이와 함께 인도 서부의 뭄바이 도 안정적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곳이며 인도 북부의 뉴델리는 남쪽의 첸나이나 서쪽의 뭄바이에 비해 근로자 기질이나 노사 관계의 안정성 면에서는 약간 떨어진다고 본다.

□ 2012년, 마루티 스즈키사 파업 사태

2012년 7월 마루티 스즈키사의 마네사르 공장에서 3,000여명의 노동자가 파업에 들어가 사측과의 충돌로 1명이 사망하고 100여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2011년에도 파업사태로 5억 달러 이상의 손해를 본 바 있는 마루티 스즈키사는 인도 자동차 시장의 점유율이 45%에 달하는 인도 최대 자동차 생산업체로 해당 사태는 동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파업사태는 ①마루티 스즈키사내 일본 모기업인 스즈키사의 영향력이 확대되어 인도인들의 이질감 및 박탈감이 심화된 점, ②순이익 감소의 영향으로 생산비용을 절감 하고자 계약직 노동자 고용을 확대한 점, ③마네사르 공장 노동자 평균 연령이 25세 미만으로 관리자들의 엄격한 규율 적용에 자제심을 잃고 반발이 커진 점 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사태 수습과정에서 회사측은 주모자 색출 의지를 강하게 표명함과 동시에 파업에 참여했던 모든 노동자, 최대 300~500명의 인력을 해고할 것임을 밝혀 해당 소요 사태가 해결 되기 전에는 섣불리 공장을 재가동하지 않을 뜻을 밝혔다. 그러나 해당 사태로 인해 마루티 스즈키사 뿐만이 아니라 주요 협력사 300여개 및 2차 벤더 2,000여개 업체가 직, 간접적인 타격을 받게 되었다.

마루티 스즈키는 파업으로 인한 생산 감소로 2008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매출이 하락하였으며 하루 6만 5,000달러 정도의 손실을 입어 파업 기간 동안 총 4억 달러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되며, 생산율 저하로 차량 공급의 지연과 인도 최대 축제인 '디왈리(Diwali)' 시즌에 급증하는 수요를 맞추지 못할 것으로 분석되어 손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2014년 3월 토요타 노조 파업사태

2014년 3월 임금인상을 두고 노사간 지리멸렬한 협상실패를 이어가던 뱅갈로르 토요타 키를로스카 인도 법인 경영진은 직장(공장)패쇄를 선언하였다. 토요타 키를로스카 직원의 2013년 평균 월 급여는 25,500루피였으며, 경영진 측에서는 3,050루피를, 노조측에서는 4,000루피를 인상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를 계기로 토요타 노조는 약 한 달 간 파업을 이어갔고, 이로 인해 약 2,000여 대의 자동차생산 손실을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

2012년 마루티 스즈키 노조 총파업사태와 같이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해당 사태로 인해 익월 내수 판매율이 전년동월 대비 16.04%, 약 2,000여 대가 감소하며 타격을 입었다.

2) 채용 이후의 인사 관리

신흥국의 경우 자국기업의 불법 행위와 잦은 마찰은 관행처럼 묵인되지만 외국기업의 현지 투자 혹은 공장 운영 시에는 원칙이 강조되고 법규의 엄격한 준수가 요구되는바 인사 관리 에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 법규와 관행의 준수

현지에서 노사 관리 시에는 현지 노동법규와 중앙 및 지방 정부의 노동 정책, 현지 기업의 노동 관행 등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준수가 필수적이다. 또한 근로조건의 결정, 징계와 해고, 노사문제 발생 시 철저히 현지 노동법규를 기본으로 삼아야 하며, 운영 기준도 현지의 관행에 기본을 두어야 한다. 흔히 우리기업들이 우리 식의 법규 관행에 젖어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 현지인과 마찰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 사내 외 노사 정보 수집 및 대응 준비

현지의 주변업체 및 경쟁기업의 인사 정책, 근로조건에 대해 항상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자사의 노사관리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확신하고 자칫 방심할 경우 주변 업체 노사 갈등 의 여파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주재원과의 마찰, 언어 소통의 장애, 대화 기법의 차이, 업무 지식의 상이, 처우 차이에 대한 이해 부족, 정보 공유 부족 등으로 인해 현장과 사무실 간 근로자의 불신과 불만이 고조될 수 있으므로 현지 근로자의 의식과 특성 파악, 제도 운영 개선 등을 통하여 문제 발생 소지를 줄여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현장 관리자에 대한 주기적 관리

현지인 출신의 현장 관리자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일방적 행동, 정보 독점, 조직 관리 태 만, 파벌 형성, 능력 부족 등의 행태를 보일 수 있으므로 일정한 주기 별로 별도의 회의 시간 등을 이용하여 전반적 분위기를 환기시키거나 부족한 점을 인식시켜 계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철저한 근태 관리 및 근무 평정

엄격하고 공정한 규정을 두어 근태관리를 철저하게 시행해야 한다. 지각이나 조기 퇴근을 수용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 철저히 규정을 적용하고,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월-분기-연간 개근한 자에게는 포상을 하고 근무 태만자에 대해서는 급여상의 불이익을 주는 등 당 근과 채찍을 적절히 사용해야 한다. 정확한 근무 평정 기록을 유지하는 것은 인적 자원 관리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향후 노동분쟁이나 해고 등의 경우에 매우 중요하다.

□ 인도인들의 근무 습성 숙지

대기업 직원이라면 이직률이 높지 않지만 전반적으로 한 회사에 대한 충성심은 낮은 편이다. 또 업무의 경계를 확실히 하고 그 범위를 절대 벗어나지 않으려는 성향을 보인다. 더구나 메모하는 습관이 없기 때문에 업무 지시를 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명확히 하고 가능한 문서로 남겨야 한다.

□ 조직 체계의 관리

인도인들에게 있어서 조직 전체의 시스템이 갖는 중요성은 자신의 직속 상관, 혹은 직속 라인이 갖는 중요성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 따라서 어떤 지시가 최하위층까지 정확히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휘 계통을 간결하게 하고 일의 완급과 우선순위를 미리 정하여 지시해야 한다.

□ 감성에 의한 관리

주의를 줄 경우 정확히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를 신속하고 가급적 일대일로 지적해야 한다. 외국인 고용주가 억지로 잘못을 인정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역효과를 내며, 인도인은 정에 약한 면이 있으므로 직원의 경조사 시 최대한 성의를 보이는 것이 좋다.

4) 고용 관리 애로 사항

인도 근로자의 책임 의식, 애사심 및 소속감 부족, 근무태만 등이 우리 진출기업의 주요한 인사 관리상 애로사항이다.

인사 관리상의 애로 요인

(단위: %)

구 분	대기업	중소기업	개인기업	합 계
안일한 작업 태도	6.4	12.8	3.2	22.4
시간외 근무 기피	3.2	0.0	0.0	3.2
책임 의식 부족	15.2	19.2	4.8	39.2
애사심 및 책임감 결핍	5.6	6.4	1.6	13.6
위계 의식 부족	1.6	0.0	0.8	2.4
제품 및 부품 절도 행위	0.8	0.8	0.8	2.4
단체적 협동 의식 결핍	0.8	2.4	0.0	3.2
지나친 평등 의식	0.8	0.0	0.0	0.8
작업 능력 부족	3.2	2.4	0.0	5.6
의사 소통 어려움	0.8	3.2	0.8	4.8
출신지 및 카스트간 갈등	0.8	0.0	0.8	1.6
현지 관리층의 과다한 권리 행사	0.0	0.0	0.0	0.0
종교적 이유	0.0	0.0	0.0	0.0
문제없음	0.0	0.0	0.8	0.8
기 타	0.0	0.0	0.0	0.0
합 계	39.2	47.2	13.6	100.0

주: 유효 사례 61개

자료: 인도 진출 한국 기업의 경영 실태와 현지화 전략 연구, KIEP

채용 시 주의 사항으로는 공장 근처의 현지 주민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과 어느 한 지방 출신 인력을 주로 뽑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현지 주민이 채용될 경우 조그마한 분쟁 발생 시 지역주민들과 합세하여 큰 분규로 발전되기 쉽고, 특정 지방출신을 많이 뽑을 경우 그 직원들이 주도권을 쥐고 노사분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도 진출 대기업들은 델리에서 멀리 떨어진 각 주를 돌면서 일정 부분씩만 조금씩 인력을 채용하여 분규를 예방하고 있다.

또한 근무 시 항상 지시내용을 최대한 명확히 하며 업무의 책임 소재를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책임감 및 소속감 고취를 위해서 일부 진출기업은 현지직원들에게 전권을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성과에 따른 보상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높은 이직률에 대한 대책도 필요한데 여러 기업이 장기근속자를 우대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우대사항으로는 근속년수에 따른 보너스 지급, 각종 복리 후생 제공 등이 있다.

15. 조세제도

가. 세금의 종류와 내용

인도정부는 조세제도의 투명화, 단순화, 효율화를 위해 종래 각 주에서 다양한 세율로 적용하여 운용하던 판매세를 부가가치세(VAT)로 대체하는 제도를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중이다. 아울러 중앙정부의 물품세, 서비스세와 지방정부의 VAT, CST 등 모든 주요 간접세를 2010년까지 물품/용역 소비세(Goods and Services Tax, GST)로 통일하려던 노력은 신정부에서도 지속되고 있다. 지금까지 인도정부는 심각한 재정적자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1994년 서비스세를 도입하는 등 조세 기반 확대를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으나, 각종 조세 관련 예외 규정을 무분별하게 운영하고 있어, 조세 기반 확대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투자 및 영업 활동시에도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인도는 헌법의 규정에 따라 중앙정부와 주정부가 조세 권한을 공유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농업 소득세를 제외한 개인 및 법인에 대한 소득세, 부유세 등 대부분의 직접세와 관세, 물품세(Excise Taxes), 서비스세 등의 간접세를 부과한다. 주정부가 과세하는 가장 중요한 조세에는 간접세인 VAT(VAT로 대체되지 않은 주는 판매세(Sales tax)), 인지세(Stamp Duty), 주 물품세(State Excise) 토지 수입세, 직업세(Profession Tax) 등이 있다. 이와 별개로 하위 지자체(Local Bodies)에서 부과하는 재산세, 입시세(Octroi), 수도세, 정화세 등이 있다.

중앙정부는 주간(Inter-state) 상품 교역에 대해 주간 판매세(CST: Central Sales Tax)를 부과하나 실제 징수는 주정부에서 실시하며, 세수도 주정부에 귀속된다.

인도정부는 세율인하, 법률단순화, 납부준수를 중심으로 직접세(Direct Taxes Code, DTC), 재화 및 용역세(Goods and Services Tax, GST) 등의 대규모 조세개혁을 앞두고 세율을 현행과 비슷하게 유지하면서 재원조달을 강화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1) 직접세

□ 법인세

법인 소득에서 원자재 매입, 임금, 합리적인 수준의 상여금, 임대료, 보험금, 로열티 지급액, 이자, 배당금, 리스대금, 세금(판매세, 시영(市營)세, 재산세, 도로세, 관세 등), 감가상각, R&D 관련 비용 등을 제한 금액이 법인세의 과표가 된다. 인도 기업과 외국기업 간에 법인세율에는 차이가 있다. 인도에 설립한 현지법인은 인도 법인으로 간주되나, 지사, 프로젝트 사무소의 경우는 외국법인으로 간주하고 있다.

인도정부는 2011-12 회계연도 예산안 발표에서 각종 세제 관련 내용을 일부 개편한 바 있다. MAT(Minimum Alternate Tax, 최저한세)의 경우 18%에서 18.5%로 인상되었으며, 외국기업에의 실효이자율은 기존 19.0035%에서 19.4361%로 인상되었다. 2012-13 회계연도 예산안 발표에서는 법인세율에 관한 특별한 변동 사항 없이 이전 법인세법을 그대로 적용하였으며, 인도거주 납세자의 해외보유자산에 대한 법인세 신고 의무 조항을 추가하였다. 2013-14 회계연도 예산안 발표에서 소득이 1억 루피 이상인 인도 기업에 한해 추가부담금을 기존 5%에서 10%로 상향 조정하였고 외국 기업의 경우 2%에서 5%로 상향 조정하였다. 정부는 이외에도 모든 세금에 있어 추가부담금을 5%에서 10%로 인상하였다.

한편, R&D 활동을 위해 차입한 자본에 대한 이자 지급의 경우 125~150%까지 공제가 가능함은 동일하며 기술료를 지불하는 업체에 한해서는 연간 25%의 감가상각을 인정한다.

인도와 이중과세방지협정 등 조세협력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기업에게는 주식 배당, 이자, 로열티, 기술 서비스료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고 있으며, 한-인도 이중 과세 방지 협정에 따라 한국 기업의 경우 주식 배당에 대해 15% 또는 20%, 이자에 대해 10% 또는 15% 로열티에 대해 15%, 기술 서비스료에 대해 15%를 과세한다.

수출 위주의 기업이나 특별경제구역(SEZ)에 입주해 있는 기업, IT 파크 등 특정 지역 내의 기업에 대해서는 약 10년간 법인세가 면제 또는 감면된다. 이들 지역 또는 기업으로는 개별 공고된 특정주(notified States) 및 낙후지역(backward Districts) 입주 기업, 전자 하드웨어 테크놀로지 파크(Electronic Hardware Technology Parks, EHTPs) 및 소프트웨어 테크놀로지 파크(STPs) 입주 기업, 100% 수출기업(Export Oriented Units, EOU) 및 수출가공구(EPZ) 입주 기업, 특별경제구역(Special Economic Zone, SEZ) 입주업체 등이다.

또한 인프라 시설(도로, 고속도로, 공항, 항만, 철도, 상수, 관개, 위생 및 하수설비 프로젝트 등)의 개발, 보수, 운영 관련 기업, 과학 및 산업 관련 연구 및 개발 활동(Scientific and Industrial Research & Development Activities) 관련 기업 등에 대해서도 법인세 감면 혜택이 부여된다.

법인세(Corporate Income Tax)

과표(연간 소득)	소득세율	
	1억 루피 이상	1억 루피 이하
국내 기업 (Domestic Companies)	33.99% (30% + 10% 추가부담금 + 3% 교육세)	30.9% (30% + 3%교육세)
외국 기업 (Foreign Companies) *지점, 프로젝트 오피스 포함	43.26% (40% + 5% 추가부담금 + 3% 교육세)	41.2% (40% + 3%교육세)

주: 외국 기업에는 지사, 프로젝트 오피스 포함

자료: 2013-14 Union Budget

□ 개인 소득세

소득세는 소득 정도에 따라 누진 과세된다. 세율은 소득에 따라 10%, 20%, 30%의 3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과세를 위한 거주자의 범위는 당해 회계연도 중 인도 내에 182일 이상 머무는 경우, 또는 지난 4년간 합쳐서 365일 이상을 인도 내 체재한 경우, 당해 회계연도에 인도에 60일 이상 머문 경우는 거주자로 간주되어 개인 소득세가 과세된다.

2011-12회계연도 개정된 소득세법안에 따르면, 과세가 인정되는 소득범위는 작년보다 2만 루피 상향 조정된 18만 루피로 전반적으로 과표가 상향조정 되어 전반적 소득수준 인상에 따른 소득세율을 현실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80세 이상 노인 범주를 신규 신설, 50만 루피 이상의 소득을 지닌 노인들의 경우만 과세되도록 변경되었으며, 기존의 "노인" 층에 해당하는 연령을 65세에서 60세로 하향조정하였으며 2012-13 회계연도에서 개인 소득세 기본공제의 상향조정에 따른 소득세 인하를 추진하였다.

2013-14회계연도에는 직접세 관련 변동사항이 없어 개인소득세 및 법인세율은 작년과 동일하나, 소득 및 매출 규모에 따라 할증료를 신설하였다. 또한 기존과 같이 소득세의 3%가 교육세로 부과되는데, 예를 들어 연간 소득이 100만 루피인 사람의 경우 30.9%로 세금 부담이 복리 계산된다.

2013-14회계연도 개정된 소득세 기준안

구분		소득세율
개인 (60세 미만)	20만 루피 미만	-
	20만 루피 이상 50만 루피 미만	25만 루피 이상 소득의 10%
	50만 루피 이상 100만 루피 미만	50만 루피 이상 소득의 20% + 3만 루피
	100만 루피 이상	100만 루피 이상 소득의 30% + 13만 루피
노인 (60세 이상 80세 미만)	25만 루피 미만	-
	25만 루피 이상 50만 루피 미만	25만 루피 이상 소득의 10%
	50만 루피 이상 100만 루피 미만	50만 루피 이상 소득의 20% + 2만5,000 루피
	100만 루피 이상	100만 루피 이상 소득의 30% + 12만5,000 루피

구분		소득세율
고령 노인 (80세 이상)	1만 루피 미만	총 소득의 10%
	1만 루피 이상 2만 루피 미만	1만 루피 이상 소득의 20% + 1,000 루피
	2만 루피 이상	2만 루피 이상 소득의 30% + 3,000 루피

주: 소득세의 3%가 교육세로 tax-on-tax 방식으로 기존내역에 추가 부가됨.

자료: 2013-14 Union Budget

□ 배당분배세

배당금 수령주체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세금이 면제된다. 배당분배세(Dividend Distribution Tax)는 배당을 실시하는 회사가 부담하는 세금으로 2011-12 회계연도 예산안 발표로 동 예산안 발표 이후부터는 추가부담금(Surcharge)이 2010년의 7.5%에서 5%로 2.5% 인하됨으로써, 총 16.2225%의 과세 부담을 진다. (15% + 5% 추가부담금 + 3% 교육세)

SEZ 개발자의 이익의 경우에는 배당분배세 과세 면제 대상이었으나 2011년도 예산안에 의거, 2011년 6월 1일부터는 SEZ개발자에 대해서도 배당분배세 면제 규정이 철폐되게 되었다. 2013-14 회계연도 예산안 발표에서 추가부담금이 기존 5%에서 10%로 인상된 바, 총 16.995%의 과세 부담을 진다. (15% + 10% 추가부담금 + 3% 교육세)

동 세금 관련 유의할 점은, 한국 조세특례 제한법에 의거 자회사 납부 배당분배세에 대한 간접납부세액공제한도가 50%에 불과 하였으나, 인도 진출한 기업의 부당한 이중 배당세 납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09년 2월을 기준으로 100% 공제가 가능하도록 세법 개정이 이루어짐으로써 인도 진출 한국기업들의 부담이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2013-14 회계연도 배당분배세 개정 내역

(단위: %)

배당분배세 (Dividend declaration by domestic companies)	개정 전	개정 후	증가율
기준세율	15	15	
추가부담금(Surcharge) 5%/10%	0.75	1.5	
교육세(Cess) 3%	0.4725	0.495	
최종 실제부과세율	16.2225	16.995	4.761905

주: 소득세의 3%가 교육세로 tax-on-tax 방식으로 기존내역에 추가 부가됨.

자료: 2013-14 Union Budget

□ 최저한세(MAT: Minimum Alternative Tax)

최저한세란 영업이익이 발생한 기업이 비용 공제와 손금 산입 등으로 인해 법인세가 장부상 이익의 15% 이하로 산출된 경우라도 납부해야 하는 15%의 법인세이다. 즉 사업소득이 있는 기업이 아무리 많은 공제와 감면을 받더라도 납부해야 할 최소한의 세금으로, 기업들이 세테크를 통해 법인세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부과하는 세금이다.

인도정부는 2010-11 회계연도부터 최저한 세율을 15%에서 18%로 인상한 데 이어 2011-12 회계 연도부터는 18%을 18.5%로 인상하였다.

2013-14회계연도 MAT 개정 내역

(단위: %)

최저한세(MAT)	개정 전	개정 후	증가율
기준세율	18.5	18.5	
추가부담금(Surcharge) 5%/10%	0.925	1.85	
교육세(Cess) 3%	0.58275	0.6105	
최종 실제부과세율	20.00775	20.9605	4.761905

주: 소득세의 3%가 교육세로 tax-on-tax 방식으로 기존내역에 추가 부가됨.

자료: 2013-14 Union Budget

본 세율은 교육세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며, 2007-08 회계 연도부터 법인세 면제 대상 기업에 대해서도 최저한세를 납부토록 함으로서 특별경제구역(SEZ) 입주 기업, 소프트웨어 단지(STP) 입주 기업, 수출특화기업(EOU)이 타격을 받게 되었다. 2011-12 회계연도 예산안에서는 특별경제구역(SEZ) 개발자도 MAT를 납부토록 변경되었다.

□ 원천징수세(Withholding Tax)

모든 인도기업은 특정 지불 요건 발생 시점이나, 피지불인의 계좌에 지급하는 시점에 지정 된 비율로 원천징수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제한 세금은 일반적으로 공제 월말로부터 7일 이내에 인도 중앙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주요 원천징수 대상에는 급여, 전문· 기술 서비스료, 이자, 용역료, 임차료, 커미션 또는 중개료 등이 있다.

또한 기업은 매 분기 말부터 15일 이내 조세당국에 일정 신고서 양식을 기재하여 전산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누락 시에는 매월 누락 분의 1%에 해당하는 이자가 징수되고, 세금과 동일 금액의 벌금이 부과될 뿐만 아니라 형사적으로 고소당할 수 있다. 아울러 모든 인도 기업은 매해 10월 말까지 직전 회계연도 소득을 전산 신고하여야만 한다. 비 거주 인도인과 외국기업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재정법(Finance Act)에 의해 정해진다.

과세 대상 별 원천징수세율(%)

과세 대상	인도 소득세율	한국(주2)
이자(Interest)	21.115	10-15
배당금(Dividends)	10(주1)	15-20
로열티(Royalties)	20	15
기술서비스(Technical Services)	20	15

주1: 배당 소득에 대한 세금은 면제되나 배당 기업에 배당분배세를 과세

주2: 이중 과세 방지 협약 세율

자료: Income Tax Department, Department of Revenue, Ministry of Finance, Government of India

우리나라의 경우, 이자를 은행에 지불할 시 이자율 10%가 적용되며, 아닐 경우 15%가 적용된다. 배당금은 회사 자본의 20% 이상을 수령인이 보유할 시 15%, 아닐 경우 20%가 적용된다. 소득세법 90항에 따라 납세자에게 인도 소득세율과 이중과세방지협정 세율 중 이득이 되는 세율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ㅁ 부유세(Wealth Tax)

인도정부는 1957년 부유세법(Wealth Tax Act)에 따라 개인과 회사에 대해 150만 루피를 초과하는 비 생산요소자산(non-productive assets)에 매년 3월 31일 1%의 부유세를 부과한다. 토지, 비 공장 건물, 영업이나 생산 활동에 사용되지 않는 상업용 재산, 종업원을 위한 사무실이나 기숙사시설, 귀금속 또는 장식품, 자동차, 비행기 등이 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2) 간접세

2012-13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발표된 간접세 관련 주요 변동내역은 아래와 같다. 기본관세 10%를 그대로 유지하며, 물품세(Excise Duty) 및 서비스세(Service Tax) 또한 12% 수준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과 스마트폰, SUV 및 고급차량, 레스토랑, 담배 등 고급 소비재의 간접세 인상을 통한 재원을 확보한다는 내용이 이에 해당한다.

나. 관세

인도의 관세 구조는 기본 관세와 상계 관세의 합으로 이루어진다. 기본 관세는 순수한 관세를 의미하며, 상계 관세는 내국세인 소비세(Excise duty)를 수입품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합산하게 하는 CVD(CounterVailing Tax)가 있다. 또한 인도는 교육 특별세 3%를 상계 관세와 총 관세에 각각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총 관세율은 기본 관세와 상계 관세의 단순 합보다 약간 높아지게 된다.

여기에 2006-07년부터 새로이 기본 관세 인하에 따른 내국 산업 보호 목적의 추가적인 특별

관세로서 상당수의 품목에 대해 ACD(Addi -tional Customs Duty)를 최종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인도는 품목에 따라 관세가 다르지만 전체 품목의 70% 정도가 기본 최고 관세가 적용 되며, 인도의 기본 최고 관세는 지난 수년간 매년 최고 5%씩 인하되었으나, 2010-11 회계연도 이후 현재까지 10%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제조업 부흥을 위해 기계류 등 자본재와 특정 원자재에 대해서는 10%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 2011-12 회계연도 관세율 변동 사항

주 부가가치세(State Value Added Tax)가 면제 되지 않을 경우 SEZ의 모든 통관물품은 (교역재 포함) 국내과세지역(Domestic Tariff Area)에서 부가관세 면제된다. 대형 터널굴착기(Tunnel Boring Machines)와 관련부품, 물 펌프장(Water Pumping Station)과 물 저장 시설에 대한 관세가 완전 면제된다. 예산안에 명시된 23개 고압트랜스미션 설비 수입 시 2011년 3월 1일부터 감면된 기본 관세인 5%를 부과한다. 패키지 소프트웨어 수입 시 서비스세 기납부 경우 상계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철광석 수출 시 수출관세를 20% 증가한다 전기차 관련 각종 예산안 명시된 부품의 경우 특혜관세를 적용한다.

□ 2012-13회계연도 관세율 변동 사항

○ 기본관세 면제 항목
- 20인치 이상 LCD/LED TV
- 석탄 탄광 프로젝트
- 화력발전용 탄(steam coal): 양허관세 1%(2014년 3월 31일 까지)
- 전력발전을 위한 천연가스, LNG, 우라늄 등
- 터널 천공기/관련부품 등 도시개발공사(MDA)로부터 인증된 도로건설사용장비
- 하이브리드/전기 자동차 제작을 위한 리튬이온 자동차 배터리: 특별상계관세 면제, 상계 관세 6%
- 항공기 유지보수를 위한 부품 및 테스트 장비
- 항공기 새 타이어/재생 타이어
- 니켈 및 니켈 관련 광물

○ 기본관세 상향 조정 항목
- USD40,000초과 + 3000cc초과 휘발류/2500cc초과 디젤 대형차량/MUVs/SUVs 완성차 : 60% 75%
- 자전거: 10% 30%, 자전거 부품 : 10% 20%

○ 기본관세 10% ▷ 7.5% 하락 항목
- 티타늄 관련 광물
- 보일러 제조 관련 파이프 및 튜브
- 트랙터 및 관련 부품
- 열차 보호 및 경고시스템 등

○ 특별상계관세 면제 항목
- LED 램프 제조 목적 LED
- 하이브리드/전기 자동차 제작을 위한 리튬이온 자동차 배터리: 기본관세 면제, 상계관세 6%
- 하이브리드 자동차 특정 부품
- 국방/경찰용 방탄헬멧 제조용 아라미드 섬유/직물
- 준설기
- 혈압측정기
- 태양발전 프로젝트 또는 태양발전시설 구축 관련 부품, 장비 등

자료: KPMG

□ 2013-14회계연도 관세율 변동 사항

2013-14 회계연도 관세 부분 변동 사항은 아래와 같다. 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용 특정부품의 양여기간을 2015년 3월 31일까지 연장한다. 가죽 및 가죽제품(신발 포함) 생산을 위한 기계류 관세율을 기존 7.5%에서 5%로 인하한다. Pre-forms precious 및 준보석 관세율을 기존 10%에서 2%로 인하한다.

비가공 티탄 철광 및 미분류 티탄 철광 수출 관세를 각각 10%, 5%씩 부과한다. 셋톱박스 관세율을 기존 5%에서 10%로 인상한다. 생사(Raw Silk) 관세율을 기존 5%에서 15%로 인상한다. 기관용 석탄 및 역청탄(Bituminous Coal)의 수입관세를 기본관세 2%, 상계관세 2%로 변경한다. 최고급 자동차 및 오토바이 관세율을 기존 75%에서 100%로 인상한다. 금 통관 시 면세 한도를 인상하였으며, 남성의 경우 5만 루피, 여성의 경우 10만 루피를 부과한다.

2013-14 회계연도 자동차분야 품목별 관세 현행과 개정안

구분		현행	개정안
럭셔리 승용차	중고모델	100%	125%
	신모델	75%	100%
럭셔리 오토바이	신모델	60%	75%
SUV 차량(소비세)		27%	30%
디젤 차량 샤기(소비세)		14%	13%

자료: 'Impact of Union Budget 2013-14', Care Ratings

2013-14 회계연도 기타분야 품목별 관세 변동사항

구분	항목	주요 사항
관세	가죽 및 가죽제품(산발 포함)생산을 위한 기계류	관세 인하(7.5% → 5%)
	pre-forms precious 및 준보석	관세 인하(10% → 2%)
	비가공 티탄 철광(unprocessed ilmenite) 및 미분류 티탄 철광(ungraded ilmenite)	각각 수출관세 10%, 5% 부과
	셋톱박스	관세율 인상(5% → 10%)
	생사(Raw Silk)	관세율 인상(5% → 15%)
	기관용 석탄(Steam Coal) 및 역청탄(Bituminous Coal)	수입 관세 변경(기본관세 2%, 상계관세 2%)
	금 통관 시 연세 한도 인상	남성 5 만루피, 여성 10 만루피

자료: Union Budget 2013-14

다. 소비세(물품세) (Excise Duty: CENVAT)

2010-11 회계연도 인도정부는 경기침체 속 소비 촉진을 위해 8%로 인하했던 소비세를 10%로 인상한 바 있으며, 다시 2012-13회계연도 발표에서 기존 10%에서 12%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2013-14 회계연도까지 그 수준을 유지하였다.

매년 정부 예산안에서 일부 품목에 대해 산업 현황을 고려하여 조정이 이루어지는데 2011-12 회계연도부터 변동되는 주요 내역 중 우리 기업들과 관련되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2011-12 년 소비세 주요 변동 내역
- 130개 품목에 대한 면세 철회
- 시멘트 경우, 거래가치에 기초한 소비세 부과
- 기성복 및 섬유 일부 제품에 대한 소비세 부과
- 하이브리드 차 관련 제품에 대한 세금 혜택

○ 기존 면세대상에서 1% 과세 대상으로 변경된 품목들
- 커피 및 차 믹스, 소스, 케찹, 기조리요리제품, 과실기반 음료수, 일부 우유 제품
- 플라이 애쉬, 포타시움 아이오다이드, 모든 종류의 실리콘, 의료용 수소제품 등
- 마취용품, 수술용 고무제품, 진찰용 장갑, 체내주입용 액상 등
- 잉크, 치과용 파우더
- 노트북, 가죽 보드, 교육용 교재 제작용 종이 등
- 수제카펫, 장판용 섬유, 코코넛 섬유, 황마
- 수학용 키트, 연필깎이, 수저, 포크 등 주방용품

○ 전력산업 관련 주요 변동내역
- 2011년 3월 1일부터 울트라 전력 프로젝트에 쓰이는 대표 설비들에 대한 면세 확대
- 2011년 3월 1일부터 일정조건하의 메가 전력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특정 설비에 대한 면세 확대
- 2011년 3월 1일부터 울트라 메가 발전 프로젝트 또는 메가 발전 프로젝트에 쓰이는 폐기물처리시스템, 용수시스템, 석탄운송시스템에 대한 면세 확대

○ 자동차산업 관련 주요 변동내역
- 수소전지 이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소비세인 10% 적용
-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쓰이는 기존 연료의 전환키트에 대한 소비세를 10%에서 5%로 인하
- 공장에서 제조된 앰블란스 자동차에 대한 감면 소비세 10% 적용

□ 2012-13 회계연도 물품세 부분 변동 사항

자동차 산업 관련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오토바이 스쿠터를 포함한 이륜차의 경우 기존 10% 물품세가 그대로 유지되나, 그 외 휘발유/LPG/CNG 및 디젤 자동차의 물품세는 2%씩 증가한다고 변경되었다.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이륜차	오토바이, 스쿠터	10%	10%
휘발유/LPG/CNG	길이 4m 이하 & 배기량 1200cc 이하	10%	12%
	길이 4m 이상 & 배기량 1500cc 이하	22%	24%
	길이 4m 이상 & 배기량 1500cc 이상	22%+Rs15,000	27%
디젤	길이 4m 이하 & 배기량 1500cc 이하	10%	12%
	길이 4m 이상 & 배기량 1500cc 이하	22%	24%
	길이 4m 이상 & 배기량 1500cc 이상	22%+Rs15,000	27%

소비제 산업 관련 주요 변동사항으로는 가공 처리된 콩(Processed Soya)에 대한 물품세를 기존 10%에서 6%로 인하한다는 내용이다.

제약 산업 관련 주요 변동 내역으로는 처방용 약품(Formulation)에 대한 물품세를 기존 5%에서 6%로 인상한다는 내용이 있다.

도로· 건설 관련 주요 변동 내역은 시멘트(소매)에 대한 물품세를 기존 10%+톤당 80~160루피에서 12% + 톤당 120루피로 인상한다는 내용이다.

□ 2013-14 회계연도 물품세 부분 변동 사항

면직물 (섬유 포함) 물품세 0%를 적용한다. 수제 방적실 섬유 물품세 12% 적용한다. 야자 및 삼베로 제작한 바닥용 매트 및 수제 카펫 물품세를 면제한다. 선박 물품세 및 상계관세를 면제한다. 담배 물품세를 18%로 인상한다. SUV 차량 물품세를 기존 27%에서 30%로 인상한다 다만, 택시는 적용하지 않는다. 2,000 루피 이상 휴대전화에 물품세 6%를 부과한다.

□ 서비스세(Service Tax)

2008년 말 경기부양의 목적으로 12.36%의 서비스세를 10.30%로 인하하였으며, 2009-10 회계연도 및 2010-11 회계연도 예산안에서도 동 내용이 유지되다가 2012-13회계연도 예산안에서 10%에서 12%로 재인상하였고, 2013-14 회계연도에도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서비스세는 컨설팅, 부동산, 조사 회사, 공인 회계사 등 특정 서비스 활동에 대해서는 10%의 서비스 세와 Finance Act 2004에 만들어진 수정안에 따라 총 서비스세에 대한 3%의 추가세가 부과되어 합계 10.30%가 부과된다. 또한 인도정부는 재원 확보 수단으로 시간이 갈수록 서비스세의 부과 대상 및 세금 부과 범위를 넓혀 나가고 있는데 2011-12 예산안에서 개정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새로운 2가지 과세항목을 추가하여 주류를 제공하는 에어컨 시설이 된 레스토랑에 대한 과세를 시작하고 호텔 서비스에도 과세를 시작한다.

또한 기존 과세대상의 해석을 확대하여 사업 지원 서비스(Business Support Service) – 어떤 종류의 운영 및 행정적 보조를 포함한다(to include operational or administrative assistance of any kind)고 명시하여 거의 모든 종류의 서비스를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법률서비스는 개인부터 기업까지 모두 포함된 법률 자문 서비스, 중재, 항의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건강 서비스(Health Services)는 모든 일반 병원 서비스와 진단서비스(25개 이상의 병동과 중앙 에어컨 시스템이 갖춰진 시설) 그리고 의사 방문 서비스까지로 대상을 확대한다.

새로운 면제항목을 도입한다. 항만이나 공항 내 업무 계약 서비스(Works Contract services) 등에 새로운 면제항목을 도입한다. 수출입 서비스 같은 경우는 확실한 서비스를 위한 기준을 재조정하고, 2011년 4월 1일부터 Point of Taxation Rules 을 도입하여 서비스가 제공된 것으로 간주되었을 때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이는 송장 또는 지불과 서비스 제공에 대한 지불에서 바뀐 Pont of Taxation에 해당한다.

□ 2012-13 회계연도 서비스세 변동 사항

정부 및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및 농· 축산업 관련 서비스가 포함되었다. 교육, 거주지 대여, 오락 및 여가 서비스, 철도 및 택시를 포함한 대중교통을 포함하고, 경작, 사육, 생산, 가공, 마케팅까지 농· 축산 관련 서비스를 모두 포함한다.

헬스케어, 자선사업, 종교활동, 스포츠, 예술가, 비영리단체 봉사자, 무소속 작가, 동물보호 및 주차 관련 서비스는 서비스세를 면제한다. 특정 인프라, 운하, 관개, 저가주택공급관련 건설 서비스도 서비스세가 면제된다. 영화 저작권에 대한 사항도 서비스세가 면제된다.

□ 2013-14 회계연도 서비스세 변동 사항

2013년 4월 1일부로 인도 내에 위치한 모든 레스토랑, 카페, 푸드코트 및 펍에서는 약 4%대의 서비스세를 지불해야 한다. 해당 레스토랑이 호텔 혹은 일정 기타 상업시설에 위치해 있어도 세금은 동일하게 부과된다. 더불어 영화관에서 상영되는 영화에도 서비스세가 부과되어 대중오락인 영화산업이 타격을 입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판매세(Sales Tax)

판매세는 주정부의 판매세(State Sales Tax)와 중앙정부 판매세(Central Sales Tax)의 두 종류가 있다. 주를 넘는 거래일 경우에는 주정부 판매세와 중앙정부 판매세 모두 부과되나, 주 내부의 거래일 경우에는 주정부의 판매세만이 부과된다. 중앙정부 판매세는 품목에 따라 4% 또는 10%가 부과된다. 주 정부 간의 거래일 경우에 판매된 모든 제품에 대해서 중앙정부 판매세와 3%-10%의 세율 또는 주정부 판매 세율이 과세된다.

□ 부가가치세(VAT)

부가가치세(VAT)는 간접세의 일환으로 인도 주정부 세수의 대분분을 차지한다. 2005년 4월 1일부터 인도정부는 부가가치세(VAT)를 도입하여 주정부의 판매세(Sales Tax)를 부가가치세(VAT)로 대체하였다. 인도 주와 연방 직할령을 포함하는 35개 지역 중, Andaman 및 Nicobar Islands지역과 Lakshadweep지역을 제외한 33곳에 부가가치세(VAT)를 도입하였다. 각 주와 연방 직할령 별로 납세 의무 평가 방식과 세금 징수 방법이 다르다.

부가가치 세율은 일반적인 제품에 대해 대부분 12.5%가 적용되지만, 예외적으로 산업용 원자재나 자본재, 농산품, 의약품 등 270개 품목에 대해서는 4%가 적용되고, 금, 은, 등 귀금속에 대해서는 1%가 적용되고 있다.

□ 물품입시세/ 진입세(Octroi Duty/Entry Tax)

지방자치단체(Municipal Corporation)가 과세하는 물품입시세(Octroi Duty)는 자치 구역으로 들여오는 물품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해당주 경계선 검문소 당국이 과세 및 징수할 권리를 가지며, 과세 기준을 위한 상품 적정가치를 매길 수 있다. 진입세(Entry Tax)는 주(state) 지역 안으로 들어오는 물품에 대해서 주정부가 과세하며 주간 세율이 다양하다.

현재 물품입시세(Octroi Duty)는 마하라슈트라 주 안에서만 징수되고 있으며, 세율 또한 도시마다 다양하다.

마하라슈트라 주는 징수 과정을 간소화하고 주간 상품이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 2013년 10월부로 물품입시세(Octroi Duty)를 지방정부세(Local Body Tax)로 대신하기로 결정하였다. 지방정부세(Local Body Tax)는 소비, 사용, 판매를 위해 들여오는 제품들에 대해 부과되며, 통상 4%의 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지방 정부세(Local Body Tax)를 납부한 물품이 다른 지역으로 판매될 경우, 납부 금액의 90%가 환급된다.

□ 인지세(Stamp Duty)

교환, 약속어음, 보험증권, 주식의 양도계약, 사채 그리고 부동산의 양도에 관한 증서 등과 같은 서류에 대해서 다양한 비율로 과세하는 것이다. 인도에서 주식의 양도에 관한 인지세는 시장가에 대해서 0.25%를 과세한다.

□ 연구개발세(R&D Cess)

기술 수입에 대해서는 5%의 R&D세를 과세한다. 기술의 의미는 디자인, 설계, 출판물, 기술 직원의 서비스(기술 직원의 인도에서의 생활 비용도 과세될 수 있다)등을 포함한다.

□ 재산세(Real estate Property Tax)

시 정부는 부동산(Real Estate Property Tax)에 대해, 주정부는 토지로부터의 수익에 대해 과세한다. 한편 한 회계 연도에 12만 루피를 초과하는 각종 임대료(Rental Payment) 수익도 원천과세 대상이 된다(개인 15%, 그 외 20%).

3) 이전가격세제 (TP, Transfer Pricing)

2001년 4월 법률 발표 이후 10년이 경과하였으며, 인도정부는 2012-13회계연도 예산안 발표에서 이전가격 제도를 강화하고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APA, Advance Pricing Agreements)를 도입하였다.

필요 문서로는 매년 TP Study라 하여 이전가격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 및 TP 이슈화되었을 때의 대응 준비 자료로 보통 80~100페이지 문서 준비 제출을 필요로 한다. 3CEB라 하여 TP Study 요약본으로 매년 9월 30일에 제출해야 하는데, 원재료, 자본재, 로열티, 비자본재, 은행 대출 및 이자관계 등 총 7가지를 확인하는 문서 준비 제출이 필요하다

TP관련 인도 현황으로는OECD 가이드라인과 유사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사용하며, 정상가격에 대해 5%의 편차를 인정했었으나 각 산업별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고, 제3자가 중간개입된 간접적 거래도 이전가격 대상거래로 간주하며, 특수관계자 범위 결정 시 지분관계가 없어도 경영권 및 의존비율 등 사실관계에 근거한 실질적 판단규정을 적용한다.

TPO(Transfer Pricing Office)의 과세권한을 강화하고 AO(Assessing Officer)로부터 독립적 활동을 보장하고, 인도 관세청과 TPO와의 정보교류 확대 등으로 쎄와 관세의 동시접근을 하고 있으며, 이익률이 높지 않은 외국계 제조기업을 타깃으로 세수확보를 위한 공격적인 과세를 하고 있다. 현재 IT, ERP 금액 및 지원금액, 본지사 간의 대출에 대한 이자송금, 로열티, 서버사용비용 및 출장자 비용, 인도정부가 인정하는 수익률(5~8%)이하에 대한 이슈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정밀 조사가 이뤄지는 대상 기업은 AO가 TPO에 이전거래가 1억 5,000만 루피 이상인 기업을 의무적으로 통보하고(2006년 이후 내부가이드라인에 의한 것) 전년도 Review대상 기업은 일반적으로 재 Review 대상이 되기에 처음 Review를 받을 때, 최대한 준비를 잘해서 TPO에 강한 이상을 주어야 한다. 3CEB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 및 제출 기한을 넘은 기업(매년 9월 30일부터 30일 사이)은 계속적인 적자 및 낮은 이익률의 기업, 수익률에 중요한 변화가 있는 기업 및 큰 지출이 본사 및 특수 관계자사에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인도 전체 TPO에 대한 사항으로는 전국 TPO(14개 점)가 이슈사항 공유 및 협력을 한다는 점과, 인도정부는 미국, 영국(선진국 수준의 정밀하고 섬세함)과 같은 기준에서 TP Review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매년 TP 과세는 증가 추세이며, 추후 증가시킬 계획이다(2005~06회계연도: 1,000억 루피, 2006 ~07회계연도: 1,200억 루피). 인도 2009~10 회계연도 총 재정은 1조 루피로, 전체 재정에 상당 부분 비정규과세인 TP에서 부과되었으며, 전 세계 TP이슈 가운데 70% 이상이 인도에서 발생하였고, 인도정부는 TP이슈에 대한 특별 TP Tribunal(법정) 창설을 준비하고 있다.

다. 이중 과세 방지 협정과 국가별 협정세율

인도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총 88개 국가와 이중 과세 방지 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이중 85개 협정이 발효되었다. 각 국가별 적용 세율은 아래와 같다.

2014년 6월 현재, 인도 정부는 사이프러스(Cyprus)와 맺은 이중과세방지협정(Double Taxation Avoidance Agreement, DTAA)을 재검토 중이다. 이는 2013년 11월, 사이프러스로부터 유입되는 자금에 대한 명확한 정보 결여 등의 이유로 인도 정부가 재검토 대상으로 지명했기 때문이다. 신정부는 기존 10%였던 이자소득세를 변경할 의사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이 다른 국가들에 대한 전면적인 협정 재검토로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인도의 이중 과세 방지 협정 체결국 및 국가별 적용 세율

대상국	이자소득세(%)	배당세(%)	로열티(%)
호주	15	15	15
오스트리아	10	10	10
아르메니아	10	10	10
방글라데시	10	15	10
벨로루시	10	15	15
벨기에	15	15	10
보츠와나	10	10	10
브라질	15	15	15
불가리아	15	15	20
캐나다	15	25	15
중국	10	10	10
사이프러스	10	15	15
체크공화국	10	10	10
덴마크	15	25	20
이집트	20	20	30
에스토니아	10	10	10
에티오피아	10	7.5	10
핀란드	10	15	15
프랑스	15	10	10
조지아	10	10	10
독일	10	10	10
그리스	20	0	10
헝가리	10	10	10
아이슬란드	10	10	10
인도네시아	10	15	15
아일랜드	10	10	10
이스라엘	10	10	10
이탈리아	15	25	20
일본	10	10	10
요르단	10	10	10
카자흐스탄	10	10	10
케냐	15	15	20
한국	15	20	15
쿠웨이트	10	10	10
키르기스스탄	10	10	15
리비아	20	0	10

대상국	이자소득세(%)	배당세(%)	로열티(%)
리투아니아	10	15	10
룩셈브루크	10	10	10
말레이시아	10	10	10
말타	10	15	15
모리셔스	20	15	15
몽고	15	15	15
몬테네그로	10	15	10
모로코	10	10	10
모잠비크	10	7.5	10
미얀마	10	5	10
나미비아	10	10	10
네팔	15	15	15
네덜란드	10	10	10
뉴질랜드	10	15	10
노르웨이	15	15	10
오만	10	12.5	15
필리핀	15	20	15
폴란드	15	15	22.5
포르투갈	10	15	10
카타르	10	10	10
루마니아	15	20	22.5
러시아연방	10	10	10
사우디아라비아	10	5	10
세르비아	10	15	10
싱가포르	15	15	10
남아공	10	10	10
스페인	15	15	20
스리랑카	10	15	10
스웨덴	10	10	10
수단	10	10	10
스위스	10	10	10
시리아	7.5	0	10
슬로베니아	10	15	10
타지키스탄	10	10	10
탄자니아	12.5	15	20
태국	25	20	15
트리니나드코바고	10	10	10
터키	15	15	15

대상국	이자소득세(%)	배당세(%)	로열티(%)
투르크메니스탄	10	10	10
우간다	10	10	10
우크라이나	10	15	10
UAE	12.5	15	10
아랍연방공화국	21	0	10
멕시코	10	10	10
영국	15	15	15
미국	15	20	15
우즈베키스탄	15	15	15
베트남	10	10	10
잠비아	10	15	10

자료: Foreign Direct Investment-Policy & Procedures(www.dipp.nic.in)

라. 조세 관련 유의 사항

인도의 관세 체계는 여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잡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인도의 총 관세는 기본 관세(Basic Duty)와 부가 관세(Additional Duty) 그리고 특별 부가 관세(Special Additional Duty)를 합산하여 산정되며, 이 또한 단순 합산이 아니라 복리 계산하는 방식처럼 복잡한 산식에 의해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

조세 제도가 복잡하고 세무 공무원들의 재량이 과도하게 부여되어 있으며, 법인 및 개인 소득세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악명이 높다. 이에 따라 외투기업 주재원들은 개인 소득세를 낮추어 신고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인도 세무당국은 빈번한 세무 조사를 실시하여 현재 근무 중인 주재원은 물론, 10년 전 근무한 바 있는 과거 주재원들의 개인소득세 축소 신고액을 찾아내 추징한 사례가 있다.

뿐만 아니라 추징금 납부로 사안이 종결된 이후에도 세무 당국 책임자가 교체되면 종전의 추징금 계산에 하자가 있었던 부분을 발견하였다고 하면서 제2차, 제3차의 세무 조사를 실시하여 새로운 추징금을 부과하는 등 외국인 투자기업들에 대해 지속적이고 반복되는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투자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잦다.

16. 금융제도

가. 개요

인도의 금융제도는 중앙은행인 인도중앙은행(Reserve Bank of India, RBI)과 상업은행, 인도산업개발은행((Industrial Development Bank of India: IDBI), 인도수출입은행 (Export-Import Bank of India), 개발금융기관, 보험회사, 투신사 등 다수의 비은행 금융기관과 협동은행 (cooperative banks)들로 구성되어 있다.

ㅁ 은행업

은행자산은 2014년 현재 약 1조 3,400억 달러(US)에 달하며, 2005/06 회계연도 이래로 연평균성장률(CAGR) 21%을 기록하였다. 인도금융산업의 중추인 인도상업은행은 지정상업은행(scheduled commercial bank)과 비지정상업은행(non-scheduled commercial bank)으로 분류되는데 인도는 지정상업은행이 은행 부문을 광범위하게 지배하고 있다. 지정상업은행 내에서 총자산보유 비율은 국영은행이 73.7%, 舊민영은행 4.5%, 新민영은행 14.6%, 외국계은행 7.2%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국영은행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지정상업은행(SCBs)

지정상업은행은 제2차 지정은행에 선정된 금융기관들로서, 최소 납입자본금 50만루피 이상, 어떠한 은행의 업무도 예금자의 이익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없다는 요건이 충족된 은행을 의미한다. 지정상업은행이 되면 중앙은행으로부터 거래자격이 주어지며, 자동적으로 클리어링하우스(Clearing house/결제기관)의 멤버십을 얻게 된다. 지정상업은행은 협동은행과 상업은행으로 구분되며, 상업은행은 인도계 은행과 외국계 은행으로 나뉜다.

2010년 이후 인도 지정상업은행 지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2011년 기준 인도 전체 가구 중 오직 58.7%만 은행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 그 성장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 지정상업은행(Scheduled commercial Bank) 지점 수

년도	지방	준도시	도시	대도시	합계
2009년 3월	31,529	19,337	16,726	15,236	82,897
2010년 3월	32,529	21,022	18,288	16,364	88,203
2011년 3월	33,868	23,299	19,046	17,806	94,019
2012년 3월	36,503	26,144	20,650	19,080	102,377
2013년 3월	39,439	28,691	21,720	19,961	10,9811

자료: Reserve Bank of India

□ 자본시장

인도에서는 대다수의 주식거래가 NSE(인도증권거래소)와 BSE(뭄바이증권거래소)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BSE는 2013-14 회계연도에 총 시가총액이 1조 2,100억 달러, NSE는 2014년 5월 기준 1조 4,700억 달러를 기록하며 꾸준한 상승세를 기록 중이다.

2013-14년 회계연도 기준, 1992년 4월 이래로 누적 외국기관투자(FIIs) 유입액은 2014-15 회계연도 예상치를 포함하여 8조 4,891억 루피(약 1,697억 달러)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외국기관투자자(FIIs) 수는 2013년 12월 기준, 1,742개이며 SEBI (인도증권거래위원회)와 등록한 서브어카운트(sub-accounts)의 수는 6,335개이다.

□ 비 은행 금융기관

인도에서 트랜스포트파이낸스(transport finance), 설비리스(equipment leasing), 할부구입 활동의 많은 부문이 비 은행 금융기관(NBRCs)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고 있다. 인도중앙은행(RBI)에 등록된 비 은행금융기관은 2014년 3월 기준, NBFC-ND(non-deposit, 무보증)이 12,029개, NBFC-ND(deposit, 보증)이 241개로 집계되었다.

□ 소액금융업

소액금융 부문은 소액저축으로부터 소액대출, 소액창업, 소액보험, 소액송금, 소액연금까지 확장되었으며, 2014년 3월 기준 소액금융 분야 규모는 전년 대비 35% 확대된 약 2,739억 루피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나. 금융서비스

1) 인도의 주요 은행 현황

□ SBI (State Bank of India)

현재 영업 중인 인도은행 중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으로 인도인으로부터 가장 많은 신뢰를 받고 있으며 1806년 Bengal에 최초 설립되었다. (인도 첫 은행은 1786년 설립된 The Genral Bank of India로 현존하지 않음)

SBI는 자산기준 인도 최대의 은행으로 Fortune 500 리스트에 포함된 유일한 인도은행으로, 12,000개 이상의 지점과 21,000여개의 ATM기기, 200,000명 이상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다. SBI는 전세계 32개국에 82개의 해외사무소를 가지고 있으며, 자회사로 SBI Capital Markets, SBI CAP Securities, SBI DFHI, SBI Factors, SBI Life, SBI Cards를 두고 있다.

전략적 합병을 통해 SBI는 연금펀드, 일반보험, 모바일뱅킹, 프라이빗에쿼티 등 많은 비즈니스 영역에 새롭게 진출하고 있음.

□ ICICI 은행

ICICI 은행은 2014년 3월 말 기준, 총 운용자산 5조 9,464억 루피(약 980억 달러)로 인도 내 2위, 순이자수익으로는 약 1,976억 루피(약 32억 달러)의 우량 은행이다.

고객요구에 대한 이해와 맞춤 재무설계로 ICICI 은행은 인도 고객으로부터 SBI에 다음으로 선호되는 은행이며, 모바일 ATM, 시외지역을 위한 저비용 ATM 업무를 시작하여 광범위한 접근성으로 인도인들 생활에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

□ HDFC 은행

1994년 설립된 이래 HDFC 은행은 '신뢰가 자산이다', '단단한 신뢰 기반 아래 최고의 은행 및 파이낸셜 서비스가 나올 수 있다'라는 철학 아래 운영되고 있다. HDFC 은행은 소액은행업무, 도매 은행업무, 장기금융 등 광범위하면서도 혁신적인 상품을 제공함으로써 10여년 동안 25-30%의 지속적인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개인금융, 도매 은행업, NRI서비스 세 분야를 중점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HDFC 은행은 2013년 1월, 푸네에 기반을 둔 소액금융 회사인 Suryoday Microfinance Pvt. Ltd의 소액금융 기금 마련에 7,000 루피를 지원하는 등 향후 소득하위 계층이 소액금융기관에 맹목적으로 의존하는 경향을 줄이려 하고 있다.

□ DHFL

1984년 4월, Rajesh Kumar Wadhawan은 낮은 이자율의 주택자금 융자를 대부분의 중간 및 저소득계층에게 제공함으로써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켜주는 주택자금 융자회사 DHFL를 설립하였다.

그동안 보통의 인도인들에게 불가능으로만 여겨졌던 자금대출을 현실화하여 잠재 신용리스크가 높다는 일반적인 인식을 버리고 역발상으로 접근하였다. 뭄바이에 본사를, 4개의 지역에 지역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인도 전역에 105개의 지점과 71개의 서비스센터를 보유하고 있다.

2) 인도의 외국계 주요 은행 진출 현황

□ 시티은행

미국의 다국적 종합금융그룹으로 인도에 진출한 외국계 은행 중 최대 규모이다. 인도 내 30여 개 도시에 42개 지점, 600여 개의 ATM를 보유하고 있으며 직원 수는 7,500명에 달한다. 시티은행은 제3의 협력 업체를 통한 자산 임대 비즈니스 개발과 온라인 마케팅 플랫폼을 가장 효과적인 시장전략으로 채택했다.

□ HSBC

세계적인 종합금융그룹인 HSBC그룹의 최대 규모의 자회사로 1853년 인도 진출 후, 인도내 총 49개의 지사, 50개의 ATM 기기를 보유하고 있다. 1985년 인도에서 처음으로 은행업무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1987년 인도에 처음으로 ATM기기를 선보였으며 온라인 금융망을 통한 inter-branch, inter-city 연결고리를 마련하였다.

□ Standard chartered 은행

인도 통치기간 중 인도와의 무역을 원활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영국계 금융기관으로 1858년 12월 진출해 현재 인도 42개 도시에 65개의 지사, 268개의 ATM 기기를 보유하고 있다.

□ DBS 은행

싱가포르 국적의 이슬람계 은행으로 인도 12개 도시에 12개의 지사와 40개의 ATM 기기를 보유하고 있다.

□ JP 모건체이스 은행

미국의 종합금융 투자은행으로 1930년 인도에 진출해 현재 4개의 지사가 있다.

□ BNP Paribas 은행

유로 통화권 내 최대 규모를 가진 프랑스 은행으로 1860년 인도에 진출해 현재 8개의 도시에 10개의 지사를 보유하고 있다.

3) 인도에 진출한 우리나라 은행 현황

한인도 CEPA 체결로 금융서비스분야에서는 체결일인 2010년 1일부터 4년간 우리나라 은행 지점 10개소를 인도에 설치할 수 있도록 협정이 체결되었다.

은행법 개정(2010년 11월 18일 시행)으로 국외점포 신설 시 금융위원회의 사전협의제도가 폐지되고 사후보고제도로 변경돼 은행의 해외진출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되었다.

□ 신한은행

가장 먼저 인도에 진출한 국내 은행으로, 국내은행으로서는 입지가 두터운 편으로 현재 델리, 뭄바이, 벨로르 3개 지역에 진출해 있다. 100여 개의 기업고객과 600여 명의 개인고객을 확보하고 현재 여수신액 3,000억 원 정도를 기록하며, 10여 곳의 기업고객과 추가로 접촉하고 있다.

□ 우리은행

우리은행은 첸나이 지점에 2012년 4월 부로 지점설립인가를 받아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

□ 국민은행

국민은행은 2012년 6월 뭄바이에 사무소를 설립한 뒤, 이듬해 6월 인도 중앙은행(RBI)의 승인을 받아 지점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사무소 개소에 앞서 인도 최대 민영은행인 ICICI은행과 업무협약을 맺어 인도에 진출한 국민 은행 고객은 ICICI은행을 통해 계좌개설, 외국환, 국민은행 지급보증을 담보로 한 해당기업 대출업무에 이르기까지 금융 전반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밖에 2008년 8월에는 외환은행이, 2012년 11월에는 기업은행이 뉴델리에 사무소를 설립하였고, 현재 외환은행은 첸나이 지점 설립과 관련하여 인도 금융당국의 정식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17. 외환제도 및 자금조달

가. 외환 관리 기구

인도는 1973년에 제정된 외환관리법에 따라 인도중앙은행(RBI)의 외환관리국은 정부 정책에 따라 외환을 관리하고 있다. 1990년에는 인도중앙은행이 지정한 외환 딜러들이 중앙은행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외환 거래를 해왔으나, 최근 신경제 정책의 추진과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완화로 외환 거래 허가 은행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나. 외환 거래

1) 환율 제도

인도 루피화에 대한 환율은 1975년까지는 영국의 파운드화에 연계된 고정 환율제가 유지되어 왔으나 1975년부터는 14개국의 주요 국제통화에 연계된 통화 바스켓 방식으로 환율을 결정해 왔다. 1992년 3월부터는 이중환율제가 도입되어 수출로 벌어들인 모든 외화의 40% 는 공식 환율로, 나머지 60%는 시장환율로 매각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그러나 1994년 3월부터 공식 환율은 폐지되고 시장 환율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수출 업자는 수출 경화 수입에 대해 시장환율로 매각이 가능하게 되어 수출업자는 환율상승의 프리미엄을 얻은 바 있다.

2) 중앙은행의 외환 통제

인도 중앙은행이 인도 내 현금 거래의 모니터링을 담당하고 있다. 인도 내 모든 금융기관과 중계기관들은 건당 50만 루피를 초과하는 현금 거래에 대해 격주로 거래 내역을 보고해야 하고 그 기록을 5년 동안 보관해야만 한다.

인도 재무부가 2012년 9월에 발표한 인도 외채보고서에 의하면 2010-11회계연도 인도의 총 외채규모는 3,059억 달러로 3,000억 달러를 돌파하였으며, 2011-12회계연도에는 이보다 약 400억 달러 더 늘어난 3,458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이는 전체 GDP의 20%에 달하는 규모이다. 또한 2014년 3월에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외채가 총 4,260억 달러로 GDP의 23.3%를 차지하며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인도의 외채 규모는 최근 수년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어 인도 중앙은행의 외환통제가 매우 엄격하게 이뤄지고 있다. 법제상으로는 외국기업의 인도 내 사업 (투자 진출 또는 프로젝트에 따른 과실, 로열티, 공사 대금 송금)에서 발생되는 과실 등의 송금이 중앙은행의 사전심사를 받아야만 가능하도록 하여 까다롭게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해외송금 유입액과 외환보유고가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전망이 어둡지만은 않은 상황이며, 인도의 외환관리도 점차 완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인도정부는 2003년부터 개인의 달러 구좌 개설 허용, 해외여행 시 개인이 소지할 수 있는 외화의 한도를 10,000달러로 크게 늘린 바 있다. 앞으로 외환관련 규정이 점차 완화되어 조금씩 자유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3) 기타 사항

외환관리법(FEMA)에 의하면 모든 외환거래는 인도중앙은행의 승인(일반 또는 특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승인된 프로젝트, 차관 도입, 라이선스 계약 등과 관련한 송금은 중앙은행이 임명한 딜러들에 의해 환전이 이루어질 경우 사실상 제약이 없다.

사적인 거래를 통해 투자지분을 매각하는 경우, 중앙은행의 관할 지역 사무소에서 허가를 얻어야 하며, 매각 지분의 가격은 외환관리법에 의한 고시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2003년 1월, 자금 세탁 방지법이 도입되어 지능범죄(white-collar crime)나 자금 세탁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된 경우에는 정부가 관련자의 재산을 몰수할 수 있다.

수입허가를 취득한 수입업자는 외국환 거래은행으로부터 수입에 필요한 외화를 매입할 수 있으나 선적서류 제출 전에는 해외 송금을 할 수 없다.

다. 과실 송금, 현지 자금 조달 방법(대출) 등

1) 과실 송금

외국 투자는 NRI가 특별히 비상환 조치를 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로운 송금이 가능하다. 외국 투자에 대한 주식 배당금은 공인 중매인을 통해 자유롭게 송금 가능하다.

NRI는 RBI의 사전승인 없이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매각할 수 있다. NRI는 주식을 상환조건으로 보유하거나 소득세 당국이 발행에 필요한 NOC/세금 납입 증서를 갖고 있으면 주식 매각 수익금에 대한 송환을 은행에 의뢰할 수 있다.

사적인 경로를 통해 주식을 매각할 경우 RBI의 지점은 2000년 5월 3일 고시번호 FEMA (외국환 관리법) 20/2000 RB의 규정 10.B에 제시된 지침에 따라 인도회사의 외국지분 투자 회수를 허용한다.

중앙은행은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자금 회수 조건을 최초 외국인투자 허가 당시 결정하며, 투자 자금 회수 시 중앙은행의 사전허가를 필요로 한다. 중앙은행은 투자 자금 회수 시 통상 분할 송금을 허용했으나, 최근 들어 일괄 전액 송금을 허용하는 추세이다.

이윤, 주식 배당금 등(당좌 계정 송금으로 분류됨)은 자유롭게 송금된다. 개인 송금의 경우에는 현지법인에서 법인장이 소득세 납부 증명을 하면 납세 후 가처분 소득 전액 범위 내에서 해외로 송금이 가능하며, 사무소에서는 공인회계사로부터 소득세 납부 증명을 받으면 납세 후 가처분 소득 범위 내에서 송금이 가능하다.

지점과 프로젝트 사무소에 의해 벌어들인 이익의 송금은 사전승인이 필요없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33%) 납부 및 배당분배세 납부 후 해외송금이 가능하다. 지사의 이익 송금 또는 연락사무소의 청산 등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회계 감사 완료된 공증된 대차대조표와 관련 년도의 손익계산서 사본
○ 공인회계사의 증명서: 송금 대상 이익의 인도 내 입금 사실, 송금할 이익이 승인된 행위에 의해 벌어졌는지 여부, 수익에 지사의 자산재평가 이익이 포함되지 않았는지 여부 증명
○ 기타 서류
- RBI의 사무실 개설 승인서
- RBI의 부동산 매각 승인 서류
- 인도 법원이나 송금에 대한 법적인 잔여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는 외국회사의 확인서
- 최종 송금 후 잔고 확인 가능한 은행 잔고 증명서
- 매년 회계상 RBI에 의해 질의되거나 계류된 문제의 이행 사항
- 회계감사 증명서

해외 친척에게 생활비 및 이주비를 송금할 경우 10만 달러까지 송금이 가능하며(종전 5,000 달러) 교육비 송금은 3만 달러(종전 5,000 달러)로 상향 조정하였고, 컨설팅 비용 송금에 있어서도 종전 건당 1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로 완화하였다.

외국인투자 기업은 외환관리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한 후 이익, 로열티, 자본금 등을 은행 거래를 통해 자유롭게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으나 임대 수입 또는 자신 매각 대금의 송금은 금지되어 있다.

법인의 경우, 법인세(33%) 납부 및 배당세 15% 납부 후 해외로 송금이 가능하다. 외국인 근로자의 송금은 월 소득의 75% 이내로서 연간 5만 달러 이내 및 송금 횟수도 연 12회로 제한하고 있다.

1년 이상 유보된 수익금의 경우 재투자한 것으로 간주 되어 본국 송금 시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하고 배당 수익은 외환은행의 승인으로 송금 가능하며 승인 기간은 통상 2개월이다.
수출업자는 수출 대금으로 지급받은 외화의 50%까지를 외화계정으로 보유할 수 있다.

수출 대금은 아프가니스탄이나 파키스탄에 대한 수출인 경우 선적 후 최장 3개월 이내, 여타 국가에 대해서는 선적 후 최장 6개월 이내에 외국환 거래 은행에 매도하여야 하며 자본재 또는 엔지니어링 제품의 경우에는 동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수입허가를 취득한 자는 수입에 필요한 외화를 매입할 수 있으나 선적 서류 제출 전에는 해외 송금이 불가능하다. 단, 기계류 및 자본재의 수입대금으로 외국 공급업체가 선납을 요구할 때는 수입 대금의 최대 15%까지를 중앙은행의 허가를 받아 선납할 수 있다.

□ 미화 이체, 보유 한도

하기 금액을 초과하는 외화 소지 시에는 인도 중앙은행(RBI)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 ○ 휴가 여행 목적: $ 10,000 한도
- ○ 선물/기부 목적: $5,000 한도, 수혜자의 경우 $10,000
- ○ 비즈니스 여행 경비: $ 25,000 / 인
- ○ 외국 학생: 학비 추정 액 또는 학년 기준 $100,000 한도
- ○ 외국으로부터의 건축/자문 서비스: 프로젝트 당 $1,000,000 한도
- ○ 상표권/프랜차이즈 구매를 위한 송금 일체
- ○ 사전 법인 설립 경비의 변: $100,000
- ○ $ 25,000을 초과하는 외국으로의 반환 송금 일체

□ 경상수지 거래

경상거래의 거래 대상에는 수출품, 수입품, 비 화폐용 금(金), 외국 여행비, 해상· 항공운임, 보험료, 이자· 배당금 등의 투자수익 등이 포함되며, 인도 내에 영원히 거주하지 않거나 인도 내 해외기업에 임명되어 파견된 합작기업, 지사, 지점, 사무실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인도 시민권자들은 월 급여의 100%까지 송금이 가능 하다. 또한 외국기업에 의해서 임명된 인도 사무소/지점/지사, 합작기업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과 인도 시민권자가 인도에서 세금을 지불한다는 조건 하에 월급의 75%까지 해외로 지불될 수 있다.

송금 제한 목록은 복권 당첨금의 송금, 경주/경마 기타 다른 장기로서 획득한 수입의 송금, 축구 도박, 내기 경마, 금지된 잡지, 복권 등을 구입하기 위한 송금, 인도 기업의 해외 자회사 또는 조인벤처에서 지분 투자의 일조로 이뤄진 수출품에 대한 커미션의 지불, Rupee State Credit Route 하에 수출품에 대한 커미션의 지불, 전화의 Call Back 서비스와 관련된 지불이 이에 해당한다.

□ 자본수지거래

자본수지거래는 경상수지 또는 자본수지 거래를 위해 인도에 거주하는 개인에 의해서 연간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송금액을 말하며, 허용 한도만 보증될 수 있다. RBI는 거주자에 의한 해외 투자, 외환의 차용 및 대출, 통화의 수출입, 인도 내외의 부동산의 양도 및 획득과 같은 자본수지 거래를 규정하고 있다. 외환거래관리법 규제 하에 거주인들의 경상수지거래와 자본수지거래 또는 어떤 특정 지불 조건 하에 두 개가 조합된 거래에 대해서 연간(1월-12월) 10만 달러까지 송금이 허용된다.

2) 현지 대출

현지 통화로 대출받을 수가 있으며 자금 용도는 시설자금 대출과 운전자금 대출이 있다. 담보는 본사의 보증, 국내 소재 예금, 국내 발행 Standby LC를 제공할 수가 있으며, 현지 신용에 따라 현지 소재 부동산 등을 담보로 제공할 수가 있다.

현지 대출제도로서 ECB(External Commercial Borrowing) 대출을 들 수 있다. 인도 루피 이외 통화 대출은 현지에서는 가능하지 않으며, 반드시 해외은행을 통하여 대출을 도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계 은행 중 유일하게 수출입은행만이 이자 금액에 대한 원천 징수세금 11.11%를 면제 받으므로 가능하면 USD 대출은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하여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한국수출입은행은 보통 본사의 보증을 통하여 대출을 제공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ECB 대출 이용 시에는 인도 소재 은행을 반드시 주선 은행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대출 계약 시 계약서 초안을 주선 은행 앞으로 제출하여 RBI 제반 규정에 부합하는지를 사전 점검을 하여야 한다. ECB 대출은 시설자금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최소 평균 차입 기간은 3년 이상이어야 한다.

□ 역외금융 차관(External Commercial Borrowings)

역외금융 차관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제한이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역외금융 차관 역시 외환관리법(FEMA, 1999)에 관리되는 자본계정 거래로 인도 기업의 해외기업 인수, 일정한 형태의 공기업 지분 매입, 자본재 구입, 신규 사업 추진, 부동산·인프라 개발 사업 등의 용도에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ECB는 기업 운영 자금이나 자본 시장의 투자 및 대출금 등으로는 전용될 수 없다.

ECB의 대여자가 당해 인도기업의 25% 이상의 외국인투자자인 경우에는 500만 달러까지는 차입에 제한이 없으나 500만 달러 초과 시에는 소유 지분액의 4배를 초과할 수 없다는 제한이 따른다. 또한 2,000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3년 이상의 대여 기간이 보장되어야 하며 그 초과 시에는 최소 5년 이상의 대여 기간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3년 이상 5년 이하의 대여 기간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6개월 리보 금리에 2%를 가산한 금리를 초과하지 못하며, 5년을 초과하는 대여 기간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6개월 리보 금리에 3.5% 를 가산한 금리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제한이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여기서 금리는 명목을 불문하고 일체의 지급비용을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이상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RBI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다. 현재 ECB의 조기 상환은 대출금의 최소 평균 만기일을 준수한다는 조건하에 4억 달러까지 승인 없이 가능하다.

□ 인도 은행의 우선 부문(Priority Sector) 대출 의무

인도상업은행(Indian Commercial Bank)과 인도에서 영업 중인 외국은행(Foreign Bank)은 RBI가 정한 우선 부문 (Priority Sector)에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대출해야 한다.

우선 부문 대출의무 관련 규정은 인도중앙은행에서 매년 7월 발표하는 "Master Circular-Lending to Priority Sector"에 의해 규정되며, 전체 대출 중 우선부문에 대한 의무대출비율은 인도은행이 40% 이상, 외국은행이 32% 이상이다. 이와 관련 매년 업데이트 되는 자료는 https://www.centralbankofindia.co.in/upload/obc/MainMenuEnglishLevel-2_Priority_Sector_Lending.pdf를 통하여 확인 가능하다.

우선 부문 대출 의무 규정은 한국계 등 외국 은행이 이행하기 매우 어려운 규정으로서 외국 은행 영업 활동의 제한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 우선 대출 부문 범위

우선 부문 대출 의무 비율

구 분	인도은행 및 지점 20개 초과 보유 외국은행	지점 20개 미만 보유 외국은행
우선 부문 대출	은행 대출의 40%	은행 대출의 32%
농업 대출	은행 대출의 18%(은행 대출의 4.5%를 초과하는 간접금융은 18%를 목표로 하는 농업부문 대출 실적에 계산 되지 않음. 그러나, 40%를 목표로 하는 우선 부문 대출 실적에는 계산됨)	없음
소기업 대출	소기업 대출은 40%를 목표로 하는 우선 부문 대출실적에 계산됨	없음
무역 금융	없음	없음
취약 부문 대출	은행 대출의 10%	없음

자료: 2013년 7월 인도중앙은행(Reserve Bank of India) Master Circular 인용

농업(Agriculture) 대출의 경우 농업, 낙농, 어업, 가축, 가금, 양봉 등 유사 활동에 종사하는 농민, 집단 또는 기업에 대한 직. 간접 대출이 해당된다.

소기업(Small Enterprises) 대출일 경우 소기업에 대한 직접금융은 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면서 설비투자 금액이 소액인 기업에 대한 대출이 해당된다. 소기업에 대한 간접금융은 수공예품 등의 판매를 위해 투입물을 제공하는 자 또는 생산자 조합 등에 대한 대출이 해당된다.

소매업(Retail Trade) 대출은 생활 필수품 거래 소매업자, 소비자 협동 조합 등에 대한 대출이 해당된다.

소액 대출(Micro Credit) 은 5만 루피를 초과하지 않는 대출이 해당된다.

교육 대출(Education loans)은 교육을 위해 개인에게 주어지는 대출이 해당되며, 대출한도는 인도 국내 교육은 100만 루피, 해외 교육은 200만 루피이다.

주택 대출(Housing loans) 주택의 구입 또는 건축을 위해 개인에게 주어지는 대출로, 대출한도는 200만 루피다. 주택 수리를 위한 대출의 한도는 도시지역이 20만 루피, 시골지역이 10만 루피이다.

□ 우선부문 대출 의무 미 이행 시 벌칙

인도은행이 우선부문 대출의무를 미 이행 시에는 농촌개발은행(National Bank for Agricultural and Rural Development, NABARD)의 지방인프라개발펀드(Rural Infrastructure Development Fund, RIDF)에 일정 자금을 공여해야 한다.

매년 인도정부는 RIDF 자금규모를 결정하는데, 전체 자금의 50%는 우선부문 대출의무 비율 40%을 채우지 못한 은행에 비례 배분하고, 나머지 50%는 농업부문 대출 의무 비율 18%에 미치지 못한 은행에 비례 배분한다. 동 자금에 대한 이자율은 RBI가 결정한다.

외국은행의 우선부문대출의무 미이행 시, 인도 소산업개발은행(Small Industry Development Bank of India, SIDBI)의 소기업 개발펀드(Small Enterprises Development Fund, SEDF)에 자금을 공여해야 한다.

SEDF 자금은 자금 공여 기간은 3년이며 매년 RBI가 은행 별 공여 규모를 결정한다. SEDF 자금의 50%는 우선부문 대출의무 비율 32%에 미치지 못한 은행에 비례 배분하고, 나머지 50%는 소기업과 무역금융 대출의무 비율 각각 10%와 12%에 미치지 못한 은행에 비례 배분한다. 외국 은행의 SEDF 공여 자금 규모는 우선 부문 대출 의무 금액의 부족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공여 자금의 이자율은 인도 중앙은행이 정한다.

3) 외환

인도 중앙은행 내 외환 관리국에서 현행 외환관리에 대한 사항들을 규정하는 2000년 6월 1일에 발효된 현재의 외환관리법(The Foreign Exchange Managemnet Act: FEMA)을 바탕으로 관리 및 시행하고 있다.

수출 대금 회수, 수입 대금 지불은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수출 대금 회수 외화의 50%는 EEFC 구좌에서 보유할 수 있지만 나머지 50%는 매각해야 한다. 외국환은행은 실제 수요에 기초한 것에 대해서만 외화를 매각할 수 있으며, 외화를 구입 했지만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외화를 다시 매각해야 한다. 다만 2014년 6월 기준, 인도의 외환 보유고가 3,135억 달러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개인 및 기업에 대한 외환 규제는 많이 완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4) 환전

일반 여행 시, 해외 여행 티켓 1장당 2,000달러까지 현찰 환전이 가능하며, 여행자수표를 포함하여 연간 10,000달러까지 환전이 가능하다. 업무 출장 시에는 출장임 증빙을 해야 하며, 비용을 회사 계좌에서 출금하는 경우 1회 출장 시마다 2만 5,000달러까지 환전이 가능하며 현찰 한도는 2,000달러로 일반 여행 시 현찰 환전 가능 한도와 동일하다.

5) 자금 조달

인도에 자회사를 설립한 외국 기업은 인도 자회사를 통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펀드를 조성할 수 있다.

□ 자기 자본(Equity Capital) 발행

보통주를 발행하여 금융을 일으키는 경우 당해 회사는 일반적인 FDI 지분율 제한에 관한 규제의 범위 내에서 자금조달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와 같이 보통주를 통한 자금조달의 경우에는 이러한 형태의 자금조달이 갖는 세법상의 함의를 눈여겨봐야 한다. 인도회사가 배당을 하는 경우에 주주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세금 부담이 없다. 왜냐하면 인도 세법상 이익 배당은 회사 단계에서 소득세를 납부한 후 남는 이익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더 이상 소득세를 이중으로 주주가 납부해야 한다고 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익 배당을 하는 회사는 소득세와는 별도로 배당분배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인도 회사법은 배당 가능한 이익이 납입 자본금의 20%가 넘는 경우에는 당해 배당 가능 이익의 10%를 법정 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정 적립금은 사업에 재투자가 가능하다. 또한 보통주를 통한 투자는 원칙적으로 지분양도나 회사의 청산을 통해서만 회수가 가능 하고 자사주 매입을 통한 회수는 매우 제한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 우선주 발행

우선주 발행의 경우도 역시 보통주와 마찬가지로 FDI로 간주하는 것이 원칙이다. 인도 회사는 우선주의 발행을 통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 특기할 사항은 모든 우선주가 인도 회사법에 따라 신규 자본금의 납입 부분 또는 유보 이익을 통해 20년 이내에 모두 상환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신청은 자동승인이나 FIPB 승인을 통해 가능하며, 우선주 발행에 대해서는 다음의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우선주의 발행은 인도 회사법(Indian Companies Act)에 따라 루피화로만 가능하다.

보통주로 전환 옵션이 부여된 우선주는 외국인 직접투자 지분으로 간주된다. 전환 옵션이 미부여된 우선주는 외국인 직접투자 지분 상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역외 상업 차관(External Commercial Borrowings, ECBs) 규정을 따라야 한다. 배당률은 재정부에서 규정한 상한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 글로벌 주식예탁증서/미국예탁증권/외국환 전환사채 발행

글로벌 주식예탁증서(GDR)/미국예탁증권(ADR)/외국환 전환사채(FCCB)를 통한 외국인 투자는 외국인 직접투자로 간주된다. 인도회사는 일련의 규제를 조건으로 GDR/ADR/FCCB의 발행을 통한 국제 시장에서의 자본 조달이 허용된다. GDR/ADR/FCCB를 통한 자금 조달은 오직 주식거래소 상장기업만이 가능하며, ADR/GDR 또는 5억 달러 이하의 FCCB의 발행은 사전 승인이 불요하다.

V. Business 참고정보

1. 물가정보

(1달러= 60.07 INR / 2014년 06월 30일 기준)

구분	항목	가격(INR)
식품류	쌀 1kg	45.29
	계란 12개	50.57
	쇠고기 등심 1kg	판매 금지 품목
	돼지고기 등심 1kg	현지 정서상 미 판매
	우유 1L	37.06
	식용류 1L	200
	생수 1L	25
	맥주 (하이네켄 355ml, 6팩)	900
	담배 1갑 (말보로 라이트)	170
	햄버거 (맥도날드 맥치킨세트)	147
	김치찌개 1인분	600
의료비	의료보험료 (4인가족, 치과제외 Full Cover, 1년)	15,000(사보험)
	병원진료비 (의료보험 X, 몸살감기 내과초진)	750~1,100
	병원진료비 (의료보험 ㅇ, 몸살감기 내과조친) * 보험은 24시간 이상 입원시만 적용되며, 내과 초진 시 의료보험 유무 관계없이 동일 적용 (공보험 개념 없음)	750~1,100
차량관련	중형승용차 (2000cc 신차, 오토, 에어컨포함 기본사양)	1,696,540
	무연휘발유 1L	1.27 (US$)
	자동차 등록비	68,270
	자동차보험료의무(2000cc신차,운전경력10년,대인/대물커버,1년)	48,800
교통비	도심 1시간 주차료 * 통상적인 상가 주차비용 기준임. 시간당 비용 개념을 도입한 상가는 거의 없으며, 공/민영 주차장 없음. 대부분 기사를 보유하고 있어 주로 노면 주차 이용하며, 비용 없음.	50
	지하철 기본요금 (1구간)	12
	시내버스 기본요금	20
	택시 기본요금	25
통신	시내전화 요금 (3분)	3
	국제전화 요금 (3분, 한국으로 걸 때)	30
	휴대전화 요금 (월표준 1분)	1
	인터넷 월사용료 (ADSL 기준)	1,095.55

구분	항목	가격(INR)
주택	아파트 월 임차료 (150sm, semi-furnished, 시내, 중상급) * 뉴델리에는 외국인이 거주하는 아파트가 거의 없고 주택이 대부분으로 델리 인근 신도시 구르가온 포함 조사	45,000~65,000
교육	외국인학교 초등 1년 수업료 (중상급)	39,000 (US$)
	외국인학교 중등 1년 수업료 (중상급)	42,000 (US$)
	외국인학교 고등 1년 수업료 (중상급)	43,000 (US$)
숙박	특급호텔(5성급) 1박 정상요금 (싱글)	10000-12000
	중급호텔(3성급) 1박 정상요금 (싱글)	6000-8000
임금/노무	대졸 초임 (중상급 대졸, 영어구사, 외국인회사 초임 월급여)	22,000~27,000
	생산직 초임 (학력무관 월급여 초임)	11,000~16,000
	매니저급 급여 (인사담당 5년 경력 과장급 월급여)	55,000~82,000
	주당 법정근무시간	48시간
	출산휴가일수	90일 (정부 권장일 180일)
	연간 국경일수 * 토/일요일 등 주말 제외 시 약 14~15일 수준, 주 별로 상이하여 정해진 연간 국경일 수 없음.	연중 약 18일
	주5일 근무 여부	평균 주 6일
기타	드라이크리닝 (정장 1벌 기준)	500

2. 취업유망분야 및 유의사항

가. 인도 노동시장의 현황 및 특징

인도의 인력 시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첫째가 도시 인력으로 전체 인력 시장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둘째는 일반적인 공식 루트를 통한 인력으로 8%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32%를 차지하고 있는 세 번째는 비공식 루트 및 시골 지역의 인력 시장이다.

특히 인도 대도시에서 가장 큰 인력 수요를 보이고 있어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춘 인재들은 대부분 대도시에서 직장을 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표적으로 델리, 뭄바이, 첸나이 세 개 도시에서 가장 높은 인력 수요가 나타나고 있다.

인도 인력들은 IT 분야 취업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동 분야는 기타 분야들에 비해 연봉도 높은데, 인도의 IT, 엔지니어링 분야에 속해 있는 인력들은 모두 영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기에 해외에서의 사업이나 관련 프로그램을 다루는 데에도 익숙하여 해외 기업들도 인도 인력들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

인도의 일자리 창출에는 IT, 헬스케어, 숙박업 관련 분야가 주도하였는데 이러한 노동 시장의 흐름은 인도 시장의 현재 흐름과도 연관성이 많다. 이 외 인력 시장에서 전망이 높은 분야로는 식료품, 섬유, 목재, 화학, 고무 등이며 최근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도 높은 인력 수요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나. 인도 인력 채용 시 유의사항

인도 인력을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인력 채용 시 몇 가지 유의하여야 할 점들이 있다. 인도 인력 관리는 문화적 차이, 종교, 성향, 임금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현지 진출기업들이 힘들어하는 부분 중 하나다.

□ 급여 및 인센티브

최근 인도의 한 리크루팅 업체에서 진행한 설문 결과에 의하면 대부분의 인도 인력들은 급여 부분에 있어 큰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인도 인력들이 회사에서 가장 좋아하고 만족감을 느끼는 부분으로는 같은 직장의 다른 동료들에 비해 자신이 높은 급여 또는 인상을 받았을 때 가장 기뻐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으며 실제로 사무실 내에서 직장 동료들 간에 급여 문제에 있어 경계심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급여 문제는 누구나 다 민감하게 반응하고 인력들이 기업에서 일하는 원동력 중 하나이기에 인센티브, 보험 등과 같은 부분은 계약 시 명확하게 명기하여 확실히 하여야 차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 잦은 이직률

인도 진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인력 관리 부분에서 항상 빠지지 않고 나타나는 부분은 인도 인력들의 잦은 이직이다. 이직에 있어 한국 기업들과 인도 기업들 간의 인식 차이도 명확하게 나타나는데, 인력들이 직장을 구할 때 기업의 브랜드 가치, 개인 능력 개발의 가능성, 경력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부분은 한국과 비슷하나 인도 인력들은 직장을 구할 때 자신이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고 주요 업무는 무엇인지, 어떠한 것을 배울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비중을 더욱 높게 두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1-2년 짧게 직장을 다니고 옮긴다 하더라도 크게 상관이 없으며 기업에서도 이러한 인재들을 능력이 있어 더 높은 연봉, 더 좋은 조건으로 다른 기업으로 옮겼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인도 인력이 이직을 할 때는 급여, 조건, 업무 환경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나 타 직장으로 몸값을 높여 움직일 수 있는 자신의 급여가 가장 높이 올랐을 때 이직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높은 임금 상승률과 경력직 인력의 연봉

인도는 인구가 많아 해외 기업들은 보통 인도 인력의 인건비가 타 국가에 비해 많이 저렴하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로 선진국들과 비교하였을 때 대졸 신입자, 생산직, 단순 노무직 등의 인력들의 인건비는 확실히 저렴하다.

그러나 경력자, 고위직 인력의 연봉은 해외 기업들의 생각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는데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직 사원이나 과장급 이상 되는 사원의 연봉은 대졸 신입자에 비해 보통 2~3배, 많게는 약 5~6배 정도까지 차이가 난다.

인도에서 인력 채용을 원하는 기업들은 보통 바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경력자를 많이 선호하는 편이며 실제로도 경력자의 채용률이 가장 높으나 높은 비용과 잦은 이직률로 인해 최근 인도의 인력 시장은 갓 대학을 졸업한 인력을 뽑아 여러 부서에서 일을 시켜보고 가장 적합한 부서에 배치하여 키워서 쓰는 경우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 기업이 인도에서 현지 경력자를 채용할 때 인도 인력들의 몸값 올리기를 조심하여야 하는데, 예를 들어 인도 인력이 현재 자기가 받고 있는 연봉이 30만 루피라고 하였을 때 이직을 원하는 기업에 50만-60만 루피를 받고 있다고 속여 자신의 몸값을 크게 올리고 기업과 협상을 진행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인재경영 컨설팅사 Aon Hewitt의 보고서는 2014년 인도 평균 임금상승률이 1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세계 경제위기가 발생한 2009년을 제외하고, 지난 10년간 가장 낮은 수치이다. 경기침체로 더 하락할 수 있었던 임금상승률이 총선에 대한 기대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적절한 상승이 가미된 결과로 해석된다. 과거 몇 년 동안 인도의 물가상승률이 두 자릿수에 근접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인플레이션을 차감한 실질상승률은 2% 정도이다.

인도 기업들은 점점 감소하는 임금 예산으로 인해 성과급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추세로 핵심인재와 다른 인재들 사이에 차별화를 두어 성과가 높은 인재의 임금은 큰 폭으로 상승시키고 타 직원의 임금 상승은 비교적 낮게 책정하는 등 2014년 실적우수자의 임금상승률은 15.3%로 전망된다.

직급별 임금 인상률

구 분	2012	2013(전망치)
최고 관리직/고위 경영진	9.7	9.3
중간 관리직	10.8	10.3
주니어 관리직	11.5	11.0
일반 직원	10.6	10.4
육체 노동자	9.0	8.7
핵심 인재	14.4	14.1
평균	10.7	10.3

자료: Aon Hewitt 2013 Salary Survey

분야별 임금 인상률

분 야	FY 2013-2014 임금인상률	FY 2014-2014 임금인상률 전망
자동차 & 자동차부품	10.3	9.9
은행 & 금융서비스	9.7	9.5
화학	11.9	11.6
소비재부문	10.9	10.6
엔지니어링 & 제조업	11.2	10.9
에너지	10.0	9.7
첨단산업분야	11.7	11.5
IT서비스	12.3	12.0
인프라 & 부동산	9.7	9.4
물류	9.4	9.2
미디어 & 홍보	9.8	9.6
제약, 생명과학 & 헬스케어	12.6	12.4
유통업	9.3	9.1

자료: Deloitte Annual Compensation & Benefits Trends Survey India FY 2014-15

□ 기타 유의사항

한국과 인도의 문화차이를 인정 및 이해하고 한국 기업문화를 그대로 인도인에게 강요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의 기업문화는 상당히 엄격한 규율과 팀워크를 통해 일사 분란하게 움직이나 인도는

정반대의 기업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종교, 문화, 인종, 계급이 다양하여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시간과 규칙에 대해 엄격하지 않으며 팀으로 일하기보다는 개인적으로 일하는 것을 선호한다.

인도인의 주요 관심사는 급여, 고용안정성, 회사 및 상사로부터의 인정, 직책/호칭 등을 들 수 있는데, 동일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급여와 혜택, 고용안정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회사와 근로자간 약속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예를 들어, 급여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인 재정악화로 인해 약속을 지키기 힘들 경우 정보를 공유하고 근로자의 이해를 구하며 언제까지 이를 지키겠다고 자세히 설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인도 근로자들은 회사에서 인정을 받지 못할 때 노조에 매력을 느끼는 경우가 많기에 자주 칭찬해 주고 우수직원을 포상하는 등의 적절한 격려가 필요하다. 자존심이 세기에 공개적인 자리에서 굴욕감을 주는 행위는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욕설 및 체벌 등의 과격한 행위는 근로자들의 불만 및 불화를 야기 시키며 큰 이슈가 되었던 마루티스즈키 사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도 지목되고 있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 회사 내 차별적 기준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소외 및 불만 계층에 대한 관리에 특히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노무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현지 최고 경영자가 진두지휘 하여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며 성급하게 해고를 결정하거나 일을 크게 만드는 일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간관리자를 적극 육성하여 작은 분란의 징후가 발생했을 때 먼저 해결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노무관련 문제에 빠르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3. 비즈니스 에티켓

가. 약속 잡기

인도인들은 시간 엄수를 높이 평가하지만 스스로는 잘 실천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여 언제든지 약속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스케줄을 유동성 있게 잡을 필요가 있다.

계약 체결과 관련된 의사 결정은 오직 최고위층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점을 유의하여 고위층이 아닌 하위 또는 중간관리층이 구두로 하는 말을 무조건 신임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중간관리층이 의사 결정을 내리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갖고 있어 최고위층 보다 좀 더 만나기 쉽고 우리편으로 만들면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이 진행될 수도 있는 등 중간관리층과 최고위층의 관계를 잘 파악하고 전략을 잘 세우면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인도 경영층은 보통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 사이에 약속을 잡는 것을 선호하며, 인도 회사의 근무시간은 통상 9시반~5시, 점심 시간은 1~2시 사이라는 점을 유념하여 미팅 시간을 잡는 것이 좋다.

인도를 방문할 시 몬순 기간에 많은 비가 내려 이동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더위와 몬순을 피할 수 있는 10~3월 사이에 방문하는 것이 좋으며 수많은 종교적 공휴일에는 비즈니스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지역별로 서로 다른 공휴일들이 존재하고 해마다 날짜가 바뀌는 점을 유의하여 사전에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스케줄 변경과 지연은 인도인과 사업을 하는데 있어 자주 발생하는 부분이며, 인도 가정 문화 특성상 가정에 중요한 일이 발생하였을 때 또한 비즈니스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인도 가정에서 아이들의 결혼, 관혼상제, 일가 친척과 양친을 보살피는 것은 남자의 일임을 알아두는 것이 좋다.

나. 드레스 코드

남성은 정장을 갖추어야 하나 더운 날씨로 인해 양복 상의와 넥타이는 생략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IT 분야의 경우 구두 대신 스니커즈를 신는 등 캐주얼한 의상이 보편화되어 있다.

인도 문화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죽으로 된 의상은 피하는 것이 좋으며, 외국여성이라 하더라도 짧은 치마나 반바지 등은 피하는 것이 좋다. 여성은 보통 전통 의상이나 바지 정장(pantsuit)을 선호하는 편이다.

다. 대화

대부분의 인도인들은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하는 것을 즐기며 비즈니스 미팅을 함에 있어서도 가벼운 잡담으로 회의를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인도인들은 일반적으로 개방적이고 우호적이며 서구에 비해 사생활에 대한 관념이 낮은 편으로 지나치게 사적인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가족 문화와 발달된 커뮤니티의 특성상 인도인에게 있어 가족과 개인의 생활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는 것은 일반적인 것이며 심지어 가족에 대해서 자주 물어보는 것을 우호의 표시로 해석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개인차가 있으며 처음 만난 사이거나, 적절하지 않은 자리에서 지나치게 사적인 질문을 하게 되면 큰 결례가 될 수 있으니 항상 이러한 상황과 질문에는 주의가 필요하며 상황과 분위기에
따라 적절히 조절하고 되도록이면 먼저 사적인 질문을 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도인들은 직접적으로 반대 표시를 잘 하지 않는데 드러내 놓고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적대적인 태도로 인식하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인도인이 대화 도중 양 옆으로 고개를 흔들거나 8자형으로 빠르게 고개를 움직이기도 하는데, 이는 부정의 표현이 아니라 “당신의 말을 이해한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한국의 고개를 위아래로 끄덕이는 것과 같다고 보면 된다.

인도인은 귀납적 접근을 통한 인식 성향이 강하여 상대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목적으로 주제와 부합되지 않는 개인적, 사회적, 경험적 맥락에서 다방면의 질문을 던질 수 있어 혹 이러한 주제들이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나가면 된다.

라. 화제

인도인들에게 있어 매우 인기 있는 세 가지 화제는 정치, 크리켓, 영화이며 최근에는 경제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관련 주제도 추가되었다. 동 주제들에 대해 미리 사전 준비를 하고 비즈니스에 임하면 관계 형상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도 사람들은 정치적 문제에 대해 토론하는 데 열광하지만 특정 지역에 한정된 정치 이슈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인도인들이 좋아하는 크리켓 게임의 경우 이는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국가적인 오락으로 몇몇 세계적 크리켓 선수들은 스타 대접을 받고 있다.

외국인을 만나면 으레 인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자주 던지는데 이는 부정적인 의사표시를 기대하고 던지는 것이 아니기에 되도록이면 긍정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좋다.

인도는 연간 영화 제작 편수가 1,000~12,000편에 이르는 세계 최대 영화 제작국가로 전국적으로 극장 수가 18,000여개가 넘는다. TV의 보급이 관객 수를 감소시키기는 하였으나 TV, 비디오, CD 등을 통해 최신 상영작을 놓치지 않고 본다.

이러한 영화에 대한 국민적 열광에 힘입어 은막의 스타가 정치에 입문하여 국회의원이나 주의원으로 활동하는 경우도 흔하다.

인도의 경제 개방에 대한 화제가 나왔을 경우 1991년을 기점으로 한 인도의 경제 개방은 모든 인도인들에게 개인적으로나 직업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쳤기에 이러한 변화에 대해 각자의 견해를 갖고 있으며 찬반 입장을 밝히는 것을 꺼려하지 않지만 저마다의 입장이 다르기에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좋다.

마하트마 간디는 인도의 국부이기에 간디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은 절대 삼가야 하며 인도인들은 자신들의 풍부하고 오랜 문화적 유산에 자긍심을 가지고 있어 특히 외국인들에게 그들의 역사와 전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즐긴다.

마. 피해야 할 주제들

종교에 관해서 논하는 것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지만 한편으로 종교는 그들의 일상에 매우 깊게 뿌리박고 있기 때문에 특정 종교 의식에 대한 순수한 질문은 매우 환영 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국민이 파키스탄에 대해서는 매우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주제는 피하는 것이 좋다.

자신들의 경제 발전을 매우 자랑스러워하기 때문에 빈곤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매우 꺼리며 만약 외국인이 먼저 그런 주제를 꺼낼 경우 아주 무례한 비판으로 받아 들일 것이다.

많은 외국인들이 인도의 카스트 제도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실여부 및 기타 사항들은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인도인들도 카스트 제도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며 물어보더라도 대부분 현재 카스트 제도는 사회에서 거의 사라졌으며 잘 모른다고 답변을 하며 대화를 회피하는 경우가 많은 등 되도록이면 이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바. 호칭

서구식으로 성이 이름 뒤에 명기되며 Mr. 또는 Ms.를 성 앞에 붙여 부르면 되나 이름 앞에 Dr.나 Professor가 명기되어 있으면 성 앞에 이러한 명칭을 붙이는 것이 좋다.
상대방의 직위나 나이가 높은 경우 Sir, Madam이라 부르는 것이 좋으며 정부 고위급 인사의 경우 존칭으로 성명 앞에 Shri, 성명 뒤어 Ji를 붙인다.

한 사람의 지위는 나이, 학력, 직업 카스트에 따라 정해지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정부 기관에 근무하는 것은 민간 부문에 종사하는 것보다 훨씬 고상한 것으로 인식된다.

사. 이름

인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성(surname)을 사용하며 특히 북인도에서 그러한 경향을 많이 보인다. 여성들은 남편의 성을 따르며 남부 5개 주에서는 통상 성을 쓰지 않고 아버지 이름의 머리글자 뒤에 이름을 붙인다.

이슬람교도들은 이름 뒤에 'bin'(son of)이 들어가며 아버지의 이름이 그 뒤에 이어진다. 여성이라면 'binte'(daughter of)가 들어가게 된다. 메카 순례를 다녀온 남성은 'Haji', 여성은 'Hajjah'가 이름의 맨 앞에 붙는다.

시크교의 경우 성 뒤에 남성은 “Singh”, 여성은 “Kaur”가 붙는다.

아. 선물

선물을 받자마자 열어 보는 것은 예의가 아니며, 전달 시 가장 높은 직책의 임원에게 두 손으로 전달하는 것이 좋고 선물 포장은 흰색, 검정색은 피하고 녹색, 빨간색, 노란색을 쓰는 것이 좋다.

초대를 받았을 경우에는 초콜릿, 꽃 등의 작은 선물을 준비하거나 술을 마시는 사람에게는 수입 위스키가 아주 좋은 선물이 된다. 만약 현금을 선사하는 경우가 있다면 금액을 홀수로 맞추어야 한다.

자. 협상

인도에서 접대는 비즈니스에 있어 핵심 요소인데 대부분 미팅이 이루어질 때 차가 나올 때까지 시작조차 하지 않으며 가벼운 잡담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 엄격한 위계질서 때문에 자리 배치도 대부분 직위 순으로 착석한다. 명함을 먼저 받으면 높은 직위의 사람에게 먼저 인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미팅 초반에 자신의 이름, 지위, 역할, 회사 소개, 미팅 목적을 명료하고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언제나 명함을 주는 것이 좋다.

고용인들은 지시 받은 대로 행동하며 설령 보스의 지시가 잘못되었음을 아는 경우에도 모든 결정권과 책임은 보스에게 귀속되기에 반박을 잘 하지 않는다. 인도의 경직된 계급사회적 특성을 감안할 때 일반 직원이 상위 레벨의 관계자를 대면하게 되는 경우는 흔치 않기에 상위 직책을 가진 직원이 직접 미팅에 참석하여 결정권을 가진 사람과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도인들은 협상이 생활의 일부로 뛰어난 언변과 능수능란한 협상력을 갖추고 있다. 인도 바이어는 가격 내리기와 조건 양보 받기로 유명하며, 협상 과정에서 인내심과 침착함은 필수 요건이다. 공격적 협상 태도는 무례함으로 받아들이며 인도인들은 체면을 매우 중요시하기에 미팅 중 지적이나 비판에 신중해야 하고 사전에 상세한 설명이 포함된 제안서를 보내면 담당자가 책임자에게 먼저 보고를 올려 관심도를 높일 수 있다. 인도인은 대부분 뛰어난 기억력으로 협상을 유리하게 전개하며, 식사 자리에서 주고받은 이야기도 나중에 협상에 유리하게 이용하기도 한다. 관련 분야 지식도 상당한 수준이므로 계약 마지막 순간까지 사소한 이야기나 약속에 유의해야 한다. 미팅 후 협의 내용 요약서를 보내는 것도 좋다.

인도인은 다중 업무 처리 경향이 있어, 미팅 중 비서가 들어와 문서 결재를 한다거나 전화 수신 및 통화, 회의와 무관한 주제로 직원들끼리 대화를 하기도 하나, 이러한 행동은 관심이나 집중이 결여된 것이 아니라 문화적 차이로만 인지 해야 하며, 상대방이 무슬림 교도일 경우, 미팅 도중에도 기도 시간이 되면 잠시 미팅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도 있다.

영문 카탈로그는 필수이며, 샘플을 가져와 직접 보여주는 것이 거래 성공률 제고에 도움이 된다. 인도 바이어들이 “인도 시장가격보다 높으면 안 된다”, “중국제품과 가격 면에서 높으면 팔기 힘들다”는 등 가격에 대한 압박을 주기도 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점이 중국제품보다 우수한지, 한국 제품 사용 시 장기적으로 유지보수 비용, 교체 비용 등이 절감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상세한 비교 분석표로 준비하는 것이 좋다. 상대방 회사의 매출액에 관한 질문은 보편적이며, 인도인은 연봉 정보를 공유하는 경향이 있어 상대방의 연봉이나 개인 수입에 대해서도 물어볼 수 있다.

인도인은 체면을 중요시하기에 직접적인 거절이나 충돌을 피하는 경향을 보인다. 만일 “다음에 재논의하자”, “회사에 확인해 보겠다”로 대답하면 이는 “No”의미로 보아도 무방하며, 바로 계약을 체결할 것처럼 구체적인 협상을 진행하는 경우가 빈번하나 실제로는 기술과 가격 등 정보 수집만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다.

인도 바이어가 참고인 확인을 할 수 있는 알려진 회사가 있다면 제안서에 포함하는 것이 좋다. 인도인은 새로운 제안이나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 제안의 실제 성공 사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본격적인 거래 협상이 시작되면 인도인은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며 경쟁사 제품을 제시하여 조바심에 의한 출혈 경쟁을 유발하기도 하는데 실적에 대한 압박으로 불리한 양보를 하지 않도록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의사 결정과정은 느린 편이며 대부분 최고 경영자나 오너의 결재를 거쳐야 한다. 정부와 거래 시엔 특히 의사 결정이 상당 기간 지연될 수 있음을 예상하여야 하며, 인도인이 여러 번 미팅에 나타나지 않고 다음 약속을 고집해도 이는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인도인과의 협상 시 스케줄을 강조하면 난감해하는 경향이 있어 여유 있게 계획해야 한다.

일반적 서구식 스케줄 개념(연역적 접근)	인도식 스케줄 사고방식(귀납적 접근)
큰 틀을 짜놓고 구체적 사항에 접근 - 계약 체결 시 스케줄 사전 확정 - 스케줄 이행을 위한 장애 요소 제거 - 스케줄에 맞춰 계약 이행	구체적 사항을 모아 큰 틀에 접근 - 느슨한 스케줄. 이행 변수를 강조 - 의사결정 지연, 시장 상황 변경 등 장애 요인 발생 시 인과관계로 인식 - 스케줄 조정 및 협의 사항 변경 제안
인도인 관점: 변수와 융통성을 무시함	서구식 관점: 계약 불이행

어떠한 경우에도 육체적 다툼을 벌이는 것-옷깃을 잡는 것을 포함해서-은 용납되지 않는데, 인도인들은 자제심을 잃는 순간 모든 권위가 사라진 것으로 여기며 아무리 불쾌한 경우에도 미소로 응대하는 것이 가장 득이 된다.

신디(Sindhis), 마르왈리(Marwaris), 구자라티(Gujratis), 파르시 등의 상인 집단이 전체 인도 상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편 이슬람, 크리스천 상인은 매우 드물다.

차. 비즈니스 식사 및 접대

인도 문화는 손님 접대를 중요시하며, 집으로 초대하는 경우도 흔하다. 이 때 가벼운 제과 제품 등을 선물로 들고 가는 것이 예의이며 미팅 시 가벼운 접대는 협상의 시작으로 커피, 차와 같은 음료와 가벼운 스낵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 거절하기보다는 예의상 받아 두는 것이 좋다.

식사 미팅 또는 미팅 후 식사를 할 때에 인도인 상대가 채식주의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독실한 무슬림의 경우 엄격하게 금주하며, 대다수 힌두교인들도 금주를 생활화하므로 음주를 여러 번 권하는 행위는 삼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평상시 음주를 하는 사람이라도 종교적 기간 중엔 금주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수 차례 미팅을 통해 친숙해진 인도인이 결혼식과 같은 가족 행사에 초대할 경우, 가족구성원이 회사를 소유하는 인도 기업 문화에서 중요한 비즈니스 기회가 될 수 있고, 상인 커뮤니티를 통한 네트워킹이 이뤄질 수 있으므로 장기적 차원에서 참석하는 것이 좋다.

카. 계약 시 주의할 관행

인도인과 계약 작성 시 사소한 사항까지 모두 계약서에 포함시켜야 하며, 인도인이 협상 중 “No Problem”이라고 대답했을지라도 이는 단지 “당신 의중은 알겠다”는 식이지 동의가 아니므로, 계약에 반영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인도인에게 최종 의사 결정이란 계약이 아닌 하나의 과정의 의미에 가까우며, 체결을 앞두고 갑자기 협의된 사항을 변경하자는 제안이 들어오면 계약을 취소하려는 의사로 받아들이지 말고 차분히 대응해야 한다.

흔히 구사하는 전략으로 계약서에 자신에게 유리한 조항들로 모두 채우고 선심 쓰듯 하나씩 양보해주는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이 나머지 조건들에 대해 느슨한 대응을 하도록 유도하여 결국 7:3 정도의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인도 바이어와 거래 경험이 있는 업체들은 모두 D/A, D/P 거래를 피할 것을 권하는데, 인도 바이어들이 상당기간 정상 거래를 하다가 외상 거래로 전환하자마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계약상 위반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 측은 절대적으로 불리하나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중재국을 제3국으로 해두는 방편도 고려해 볼 만하다.

인도 바이어가 독점 계약기간을 수년간 정해두고 경쟁국 제품만 취급하며 한국기업이 다른 바이어에게 공급하려고 하면 위반 클레임을 거는 경우가 있다. 독접 수입 계약기간은 짧을수록 좋으며, 계약금을 받아두면 계약 이행 및 공급 계약 체결을 독촉하는 방편으로 활용 가능하다.

장기 판매 계약의 함정
○ 한국의 S 사 : 인도 Y 사와 L/C 조건 진행하다가 구매수량이 커지면서 일부 D/A 로 전환 - 1 차 8 만 달러 수입 증액하면서 L/C 6 만 달러, 잔액 2 만 달러를 D/A 로 진행 - 2 차 주문 시 2 만 달러 D/A 제안, 결제 시 다시 일부만 결제하는 방식으로 조금씩 미수금액을 늘려 D/A 거래 확대 - 결과: 10 년간 20 만 달러 미수금 회수 못함
○ 한국의 M 사 : 인도 N 사와 거래하며 L/C 한도를 이유로 D/A 로 전환, 5 년간 거래 규모가 4 배 증가했으나, 대리점은 3 년후부터 대만 업체와 거래, D/A 미결제건을 미끼로 가격 인하 등 각종 사안을 요구 - 결과적으로 담당자가 교체되고 D/A 를 중단했으나 미결 건에 대한 대안이 확실치 않은 상태로, 장기 고정 거래선으로 유지해온 현지 독점 Distributor 로 인해 신규 거래선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자료: STS 무역 자료

타. 기타

대부분의 인도인은 힌두교도이고, 힌두교는 남녀의 공공연한 접촉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시크교도와 크리스천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마찬가지이며 심지어 이슬람교도의 경우 여성과 닿으면 기도하기 전에 의식에 따라 몸을 깨끗이 해야 하는 등 남녀 사이의 예의를 주의하여야 한다.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힌두교도들의 전통적인 인사말은 “namaste(나마스떼)”이다. 인사법은 턱 아래에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이는 것이다. 악수도 보편화 됐으나, 여성의 경우 먼저 악수를 청할 시에만 악수하며, 악수를 청하기엔 적당하지 않을 상황에서 외국인이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사이다. 이러한 인도식 인사 시 대체로 좋은 반응을 보이나 상대방이 힌두교가 아니라면 이러한 인사는 자제하는 것이 좋다.

힌두교도들이 대화 시 편안함을 느끼는 거리는 1~1.2m 정도이며 상하를 막론하고 손짓으로 부르는 것은 매우 무례하다고 받아들이며, 비즈니스 석상에선 손가락으로 가리키거나 손짓하는 행위를 삼가야 한다. 혹 손짓으로 누군가를 부를 때는 손바닥을 아래로 해서 손가락을 움직인다. 손바닥을 위로 할 경우 모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손을 엉덩이 근처에 올린 채 서 있는 것은(‘arms akimbo’) 화가 났다는 의사 표시이며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것은 결례이고 인도 사람들은 보통 턱으로 가리킨다.

발은 청결하지 못한 것으로 인식되므로 절대 자신의 발이 다른 사람에게 닿지 않도록 주의하고 만약 닿았다면 사과해야 한다.

4. 이주정착 가이드

가. 거주지

델리, 뭄바이, 첸나이 등 지역에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가능한 한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하다. 특히 주재원 주거 밀집 지역에는 외국인들도 많이 모여 살고 있다.

일반적으로 주택 임차는 3-4층 단독 건물에 한 개 층을 임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주택 임차료는 월 1,500달러부터 월 3,000달러 수준으로 거실 1개, 방 3개, 주방 1개, 주차장 1-2개와 기본 가구가 갖추어져 있다. 최근에는 델리 주택가격 급등으로 구르가온 지역으로 많은 한국기업이 이전하면서 구르가온 소재 아파트에 주재원들이 거주하는 추세이다.

구르가온 지역은 델리에 비해 저렴한 가격에 동일한 면적, 전기 및 용수 문제 걱정이 없는 아파트를 구할 수 있어서 많은 주재원들의 터전이 되고 있다. 뭄바이 경우는 델리, 첸나이 임차료에 2배 이상으로 월 2,500달러부터 월 6,000달러가 일반적이다. 첸나이 경우는 월 1,000달러부터 월 3,000달러 수준으로 최근 임차 수요 증가로 임차료가 크게 오르고 있는 추세이다.

주택 임차 시 부동산 에이전트를 통하여 쉽게 물색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1개월 분의 임차료 수준이다. 임차 계약 시 대부분 소유주는 세금 감면을 위해 11개월 계약을 요구하며, 최소 10개월 또는 1년 분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요구(구르가온 2개월분)한다. 이는 해약 시 거주기간 중 미지불건 또는 주택 파손 등 문제가 있을 시 공제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다.

입주 전 수리를 필요로 하는 주택의 경우는 수리가 완료된 후 잔금을 지불하고 입주하는 것이 좋다. 인도는 외국인이 살기 적합한 임차 건물이 한정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단독 주택보다는 아파트를 권장한다. 주택 구입은 개인 이름으로 취득이 허용되지 않으나 법인 명의를 이용할 시 외국인들의 부동산 취득이 이루어진다.

나. 교육

ㅁ 델리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외국인 학교와 인도 사립학교가 있다. 외국인 학교로는 Pathway International School, TISB International School, Canadian International School, American Embassy School과 인도 사립학교인 British School 등이 있다.

□ 첸나이

미국, 영국, 호주 외국인 학교와 인도 사립학교가 있으며 외국인 학교로는 AISC(American International School – Chennai), Billabong International School, British International School와, 인도 사립학교인 Chettinad Vidyashram, Sishya, Abacus, Lady Andal, St. Michaels Academy 등이 있다.

□ 뭄바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외국인 학교와 인도 사립학교가 있다. 외국인 학교로는 Ecole Mondiale World School, DSB International School, American School of Bombay와 영어를 사용하는 인도 사립학교가 있다. 외국인 학교는 해당 외국어를 구사하지 못할 경우 입학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유치원 및 초등학교 저학년 제외된다.

다. 전화 신청

전화 신청은 먼저 BSNL(국영 전화국)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받아, 작성하여 제출한다. 신청 시 신청서 및 거주 확인증 사본(주택 계약서 사본), 신원 증명서 사본 등을 제출한 후 최대 2-3주 내에 설치된다. 비용은 설치비, 등록비가 소요된다.

개인 통신사인 Airtel, TATA Indicom, Reliance의 경우, 신청서 및 거주 확인증 사본, 신원 증명서 사본 등을 제출한 후 최대 1-2주 이내에 설치된다. 비용은 설치비, 등록비가 소요된다.

핸드폰 개통은 Prepaid(선불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여 여권 사본, 비자 사본, 사진 2장, 신청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신청 후 약 48시간 이내 본인 확인을 거친 후 개통이 된다. 인도 정부는 비사용 전화번호 개수를 줄이기 위해 2012년 11월부터 외국인 선불제 번호 사용자의 경우 3개월 후 자동 만료가 되도록 제한을 두고 있기에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Postpaid(후불제)의 경우 상기 언급한 서류 외 본인 명의의 거주 증명서가. 후불제는 따로 기간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나 해외 출장으로 인해 해외 로밍이 필요할 경우 해당 통신사의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여 국제 로밍 서비스 신청 및 보증금 약 5,000루피를 지급해야 개통이 가능하다.

라. 정부 등록

인도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비자가 필요하다. 그리고 1년 이상의 비자 소지자(외교관 제외)는 인도 도착 후 14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사무소(FRRO)에 등록해야 한다.

비자 종류는 관광 비자(6개월 복수-3개월 체류 가능), 상용 비자(6개월-5년 이하 복수), 학생 비자, 주재원 비자, 연구원 비자, 언론 비자 등이 있다. 주요 도시 외국인등록사무소 주소는 아래와 같다.

○ 델리
- 전화: 011-2671-1348
- 팩스: 011-2671-1348(Telefax)
- E-메일: frrodelhi@hotmail.com, boihq@mha.nic.in, frrodli@nic.in
- 주소: East Block-VII, Level-II, sector-1, R.K.Puram, New Delhi-110066

○ 구르가온
- 전화: 0124-2869309
- 주소: FRO Gurgaon, Office ot the FRO, 3rd Floor, Mini Secretariet, Near Rajiv Chowk District Court, Gurgaon, Haryana

○ 뭄바이
- 전화: 022-2262-1169, 2262-0446 – Ext. 270
- 팩스: 022-2262-0721
- E-메일: dcpsb2.frro@indiatimes.com, frromum@nic.in
- 주소: 3rd Floor, Special Branch Building Badruddin Tayabji Lane, Behind St.Xaviers College, Mumbai-400 001

○ 첸나이
- 전화: 044-2345-4970
- 팩스: 044-2345-4971
- E-메일: frrochn@nic.in, chiochn@nic.in
- 주소: Shastri Bhawan, 26, Haddows Road, Chennai-600 006

○ 콜카타
- 전화: 033-2247-0549
- 팩스: 033-2247-0549(Telefax)
- E-메일: frrokol@nic.in
- 주소: 237, Acharya Jagdish Chandra Bose Road, Kolkata-700 020

마. 자동차 구입

차량을 구입할 시 운전면허증, 거주지 확인서, 차량 구입 계약서, 차량 보험 지불증 등 관련 서류를 RTO(Regional Transport Office)에 제출하여 차량에 대한 검사(엔진번호 등)를 마친다. 등록 후 10일 이내 차량번호판을 받을 수 있다.

바. 은행구좌

은행 구좌을 개설하기 위해 개인 여권 사본, 회사 고용 계약서, 거주 확인서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 하면 되고, 은행마다 다르나 7일내지 15일정도 소요된다. 외국계 은행으로는 HSBS, Citi Bank, Standard Chartered Bank 등 29개 외국 금융기관이 지점 형태로 진출해 있다.

한국계 은행으로는 신한은행(3개 지점), 우리은행(1개 지점)을 포함하여 하나은행, 외환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이 각각 1개의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 신한은행 뉴델리 지점
- 전화: 011-4500-4800
- 주소: 3F, D-6, South Extension Part 2, New Delhi

○ 신한은행 뭄바이 지점
- 전화: 022-6199-2000
- 주소: Wockhardt Towers, 5th floor, West Wing Bandra Kurla Complex, Bandra(E), Mumbai

○ 신한은행 첸나이 지점
- 전화: 0417-227-8200
- 주소: MM Hall, No. 8, Thirumalai Mudali St, Walajapet, Vellore District, Tamilnadu

○ 우리은행 첸나이 지점
- 전화: 044-3346-6900
- 주소: 6th Floor, EA Chambers, No. 49, 50L, Whites Road, Royapettah, Chennai

○ 하나은행 뉴델리 연락사무소
- 전화: 011-4601-2835
- 주소: B-1/18, First Floor, Vasant Vihar, New Delhi 110057

○ 외환은행 뉴델리 연락사무소
- 전화: 011-4354-8960
- 주소: Flat No. 511, Ansalbhawan 16, KG Marg, New Delhi

○ 국민은행 뭄바이사무소
- 전화: 022-6708-2748~49
- 주소: Unit No. 221, 2nd floor “Trade Center”, Bandra Kurla Complex, Bandra(E), Mumbai

○ 기업은행 뉴델리사무소
- 전화: 011-4076-9071~2
- 주소: Unit No. 401-A, 4th Floor, Eros Corporate Tower, Nehru Place, New Delhi 110019

○ 농협 뉴델리 지점
- 핸드폰: 084-84476-12063
- 주소: 6th Floor, EA Chambers, No. 49, 50L, Whites Road, Royapettah, Chennai

사. 병원

병원은 일반적으로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의사 진단서를 받아야 약국에서 약을 구입할 수 있다. 주요 도시 별 유명병원은 아래와 같다.

□ 델리

○ 병원명: Indraprastha Apollo Hospital
- 주소: Srita Vihar Delhi Mathura Road, New Delhi
- 전화: 011-2692-5858, 2692-5801
- 홈페이지: www.apollohospitals.com

○ 병원명: BATRA Hospital
- 주소: 1, Tughlakabad Institutional Area, Mehrauli Bakaprur Road, New Delhi
- 전화: 011-2605-6148, 11-2605-6153, 11-2605-7154, 11-2605-6155
- 홈페이지: www.batrahospitaldelhi.org

○ 병원명: Holy Family Hospital
- 주소: Okhla Road, Jamia Nagar, New Delhi
- 전화: 011-2684-5900~9

○ 병원명: Fortis Hospital
- 주소: Vasant Kunj, New Delhi
- 전화: 011-4277-6222

○ 병원명: Max Medcentre
- 주소: Panchsheel Park, New Delhi
- 전화: 011-2649-9870

○ 병원명: Aashlok Hospital
- 주소: 25-A, Block AB, Community Centre, Safdarjung Enclave, New Delhi
- 전화: 011-2616-5901~7

○ 병원명: Holy Angels Hospital
- 주소: Plot-B Vasant Lok, Vasant Vihar, New Delhi
- 전화: 011-2410-0561, 11-2410-2832

□ 뭄바이

○ 병원명: Bombay Hospital
- 주소: 12, Marine Lines, Mumbai 400 020
- 전화: 022-206-7676
- 팩스: 022-208-0871
- 홈페이지: www.bombayhospital.com

○ 병원명: Breach Candy Hospital
- 주소: 60 Bhulabhai Desai Road, Mumbai 400 026
- 전화: 022-2366-7995
- 홈페이지: www.breachcandyhospital.org

○ 병원명: Jaslok Hospital
- 주소: 15, Dr.G.Deshmukh Marg(Pedder Road), Mumbai 400 026
- 전화: 022-6657-3333, 3010
- 팩스: 022-2352-0508
- 홈페이지: www.jaslokhospital.net

○ 병원명: BYL Nair Hospital
- 주소: Dr A. Nair Road, Byculla, Mumbai 400 008
- 전화: 022-2308-1490-9
- 팩스: 022-2307-5243
- 홈페이지: http://www.nair.edu/

□ 첸나이

○ 병원명: Apollo Hospital
- 주소: 21, Greams Lane, Greans Road, Chennai 600 006
- 전화: 044-2829-3485

○ 병원명: Devaki Hospital
- 주소: 148, Luz Chorch Road, Chennai 600 004
- 전화: 044-5571-3270

○ 병원명: Bill Roth Hospital
- 주소: 43, Lakshmi Talkies Road, Shenoy Nagar Chennai 600 030
- 전화: 044-2644-0020

○ 병원명: Malar Hospital
- 주소: 51. 1st Main Road, Gandhi Nagar, Adyar, Chennai-600020
- 전화: 044-2491-4023

○ 병원명: Madras Medical Misson
- 주소: 4-A, Dr. J, Jayalalitha Nagar, Mogappair, Chennai – 600037
- 전화: 044-2656-1801

□ 캘커타

○ 병원명: Apollo Gleneagles Hospital, Kolkata
- 주소: #58, Canal Circular Road Kolkata
- 전화: 033-23203040, 2122, 2003~6
- E-mail: Apollo_gleneagles@hotmail.com

5. 생활여건

가. 기후

인도는 지역별로 기후 편차가 매우 심하다. 연평균 기온은 27-34도 정도이며, 1월이 가장 낮고 4-5월이 가장 높다. 또한 국토가 넓어 지역에 따라 다양한 기후가 존재한다.

기후	지역
한대성 기후	히말라야 고산지대
건조기후(사막기후포함)	서북부 지대
열대성 기후	콜카타(구 캘커타), 첸나이(구 마드라스), 뭄바이(구 봄베이), 델리, 북부 평야 지대의 도시들을 포함한 전 국도의 절반 이상

1) 기온/습도

보통 인도의 여름은 3월말부터 시작하며 5월이 가장 덥다. 수도 델리의 경우 4-5월 최고 기온은 50도까지도 올라간다. 남인도의 경우는 연중 평균이 34도이다. 6월말부터는 몬순이 시작되는 우기로 기온은 35도 전후로 다소 떨어지지만 이때는 습도가 높아 매우 무덥다. 우기가 끝나는 9월말에서 11월까지는 몬순과 기후는 비슷하나 습도가 다소 내려간다.

겨울은 11~2 월로 상당히 서늘하여 대표적인 관광 시즌이다. 델리 경우 가장 기온이 낮은 1월 최저 기온도 3~5도 정도로 영하 날씨는 찾아볼 수 없다. 뭄바이, 첸나이 경우 평균 29도 정도 된다.

2) 강우량

강우량은 북동부 Assam 지방이 연평균 10,870mm로 세계 최고이며 내륙지방은 연평균 750mm로 건조하나 지역별로 편차가 매우 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3) 기상 재해

인도는 기상 재해가 매우 많은 나라 중 하나이다.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폭염으로 죽고, 영하의 날씨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사하는 사람도 많다. 또한 2005년 하루 강우량으로는 사상 최대 기록인 944mm의 강우로 이재민과 엄청난 재산 피해를 입기도 했다. 2007년은 몬순이 6월 초부터 시작하여 많은 비가 내리는 이상 기온을 보였다.

나. 시차/근무 시간

1) 시차

그리니치 천문대 표준시간(GMT)보다 5시간 30분 빠르며(GMT+5:30), 한국 표준시간보다 3시간 30분이 느리다. 따라서 우리나라 정오 12시일 때 현지 시각은 오전 08:30 분으로 한국 시간으로 오후1시 이후에야 인도와 정상적인 통화가 가능하다.

2) 근무 시간

공무원들의 근무 시간은 09:00~17:30이며, 매주 토/일요일은 휴무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부 부처는 10:00시 이후에야 정상적인 업무가 시작된다고 보면 된다. 또한 부서별로 근무 시간이 다소 차이가 있으며, 뭄바이 공무원 근무 시간은 10:00~17:00 또는 10:30~ 17:3으로 이원화 되어있다. 첸나이 공무원 근무 시간은10:00~17:00이다. 민간기업은 업체의 사정에 따라 상이하다. 토요일 정상 근무를 하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격주 휴무 또는 매월 둘째 주 휴무인 기업들도 있다. 은행의 근무시간은 평일 10:00~16:00, 토요일은 10:00~12:0에 정상 영업을 한다. 다만 현금 인출기는 24시간 동안 사용 가능하다.

3) 서머타임

서머타임은 실시하지 않고 있다.

다. 주요 단위

1) 도량형

단위	도량형
거리	meter
중량	gram

실제 생활에서는 feet가 주요 도량형으로 사용되고 있어 투자업체의 공장 구매 및 주택 임차의 경우 한국에서 사용하는 평당으로 환산하기 어려워 도량형 환산표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거리 및 면적을 측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2) 전기 규격

인도는 전력 공급이 수요를 쫓아가지 못해 약 10% 정도의 수급 격차가 상존하여 단전이 일상화되고 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단전이 되는 것을 볼 수 있고, 따라서 일반 가정이나 호텔 등에서 자체 발전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또한 불안전한 전기사정으로 일반 생산 공장에서도 외부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자체 발전기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전기 규격은 50HZ, 220V가 표준이다. 한국(60HZ)과 헤르츠가 달라 한국에서 반입한 국산 전자제품(특히 모터 부착)의 경우 가동되기는 하지만 100% 효율을 발휘하지 못하고 일정 기간(1~2년) 사용 후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다.
또한 전압의 등락폭이 커 180~280V까지 움직이므로 민간제품은 안정기를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외에도 컴퓨터 등에는 UPS를 부착하여 전기가 나갈 경우 자동으로 UPS 전원이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전기 사정은 지역별 편차가 커 뭄바이(구 봄베이) 및 인근 지역이 인도 내에서 가장 양호 하며, 캘커타 등 인도 동부, 첸나이 등 동남부 지역도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뉴델리 중심의 북부 지역은 단전이 일상화(특히 무더운 여름철)되고 있다.

라. 환율/환전

1) 통화 단위/종류

통화 단위	RS(RUPEE, 루피), PAISA(파이사, 1/100RS)
동전	25, 50 PAISA, 1, 2, 5RS,
지폐	2, 5, 10, 50, 100, 500, 1,000RS
고액 계산 단위(인도에서만 통용)	LAKH(랙: 10만 루피), CRORE(크로르: 1,000만 루피)

2) 환율

2013년에는 미국발 양적 완화 출구전략에 따른 외국인기관투자(FII) 유출 확대와 고질적인 대규모 무역수지적자, 경상수지적자, 고인플레이션, 단기 달러화 수요 공급 불일치, 글로벌 경기침체 등의 현상이 중첩되며 지난 8월 28일 인도 중앙은행 고시환율 기준 68.36을 기록하였으며 인도 루피화의 급락은 BRICs 등 주요 신흥국들의 환율 변동치 보다 큰 변동을 보였다.

2013년 10월 이후 환율이 60대 초반대인 안정세로 보였고, 2014년 5월 신정부 출범 이후 루피화 환율 강체 추세로 돌아섰다. 올해 5월 19일 인도 중앙은행 고시환율 기준 58.43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2013년 6월 이후 거의 1년 만에 58대로 돌아온 것이다. 6월 27일 현재 달러당 60.10루피에 거래 되고 있으며, 이는 사상최고치 68.36루피를 기록했던 지난해 8월의 루피화 약세 쇼크에 비해 상당히 안정을 찾아가는 양상이다.

한편 최근 이라크 사태로 인도 루피화 가치가 앞으로 3~6개월 내에 미 달러당 65루피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루피화 가치 하락세는 이라크 사태로 국제유가가 근 9개월 만에 최고치인 배럴당 113달러를 웃돈 게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국내 원유 수요량의 3분의 2가량을 수입하는 인도의 루피화 가치는 유가 영향을 쉽게 받는다. 유가 상승세는 인도 국내물가 상승과 경상수지 적자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루피화(Rs)의 환율(RS/US$)

회계 연도	2006-07	2008-09	2009-10	2010-11	2011-12	2012-13	2013-14
환율	45.5	45.9	47.4	45.6	47.9	54.45	60.50

주: 인도의 회계 연도는 당해 연도 4월부터 익년 3월까지임.

자료: Reserve Bank of India

3) 환전

환전은 공항 환전소나 시내은행 및 호텔에서도 가능하지만, 호텔의 경우 은행이나 공항 환전소에 비해 다소 불리한 환율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일정 수준 이상의 레스토랑이나 쇼핑센터의 경우 달러로 지급이 가능하지만 달러가 통용되지 않는 곳도 많아 일정 금액 이상의 경우 환율 면에서 가능한 환전하여 지급하는 것이 유리하다.
국제적인 카드는 일정 규모의 상점이나 호텔, 레스토랑에서 사용하는데 거의 문제가 없다.

4) 인도의 루피화 지폐 종류

500루피/100루피/50루피/10 루피권

5) 신용카드 사용

신용카드는 주로 호텔, 고급 일반 식당, 쇼핑센터, 공항, 병원 등에서 결제 가능하나, 일반 소매상 및 재래식 시장에서는 결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신용카드는 비자카드, 마스터 카드 등이 현지에서 사용 가능하다.

마. 교통/통신

1) 비행편

현재 우리나라에서 인도로의 직항은 델리와 뭄바이로 각각 주3편 직항이 운행하고 있다. 첸나이 경우는 직항이 없으며, 싱가포르, 방콕, 쿠알라룸푸르를 경유하여 입국할 수 있다.

델리는 아시아나 항공이 주 3회 운행하고 있으며 저녁 시간에 인천을 출발하여 당일 밤 12시 전후에 델리에 도착하고, 델리에서 서울 편은 새벽 시간에 출발하여 당일 낮 12시 후에 서울에 도착 한다.

뭄바이의 경우 대한항공이 주 3회 운행하고 있고, 첸나이 경우 국내 입국 시 싱가포르 항공이 다소 편리하다.

여타 지역을 경유하는 항공편은 방콕(TG), 싱가포르(SQ), 쿠알라룸푸르(KL)를 경유하여 델리 또는 서울로 가는 항공편이 매일 운행되고, 케세이퍼시픽(CX)은 주4회 운행되고 있다.

또한 에어 인디아(AI)가 뭄바이-델리-홍콩-서울로 운항하고 있으나, 잦은 시간 변경과 지연 출발 등으로 낮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첸나이는 케세이퍼시픽이 서울-홍콩-첸나이 구간을 운행 중이다.

항공임은 아시아나 항공, 대한항공, 싱가포르 항공이 상대적으로 비싸고, 여타 경유편은 조금 저렴한 편이다. 출입국 일자가 명확할 경우에는 인터넷을 이용해 비교적 저렴한 티켓을 살 수도 있다. 다만 6월초 여름 방학 시즌이나 겨울에는 항공권을 미리 예약하지 않으면 티켓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2) 현지 교통

□ 택시

인도에서 외국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내 교통수단은 택시가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다. 버스도 운행하고 있으나 신변 안전 등의 면에서 이용하는 외국인은 거의 없다고 보는 편이 옳다. 택시에는 우리 식의 미터기를 장착한 택시가 있으며, 이는 공항이나 호텔 등에서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 거리에서는 지나가는 택시를 세워서 이용할 수 없으며, 호텔이나 특정 지역에서 택시를 불러서 타고 가는 형태이다.

택시 요금은 대표적으로 델리의 국제선 공항 (인디라간디 공항)에서 약25~ 30분이 소요되는 시내 호텔까지의 요금이 200루피(약 5달러) 전후이다. 뭄바이, 첸나이 경우 공항에서 시내 호텔까지 요금은 300~400루피 수준이다.

인도에서 공항, 호텔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영업용 택시.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길에서 세워서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콜택시 개념으로 불러서 이용할 수 있다. 미터기가 부착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타고나서 미터기로 하라고 운전사에게 확인하는 것이 요금에 대해 분쟁을 없애는 방법이다.

□ 오토릭샤

인도에서 단거리를 갈 때 가장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인 '오토릭샤'. 오토바이 엔진에 덮개를 씌운 삼륜차로, 약 10분 탈 경우 약 40루피(천 원)를 요구한다. 우리나라의 일반택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길에서 지나가는 것을 세워서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출장자의 경우 처음일 경우 매우 불결해 보일 수도 있어 이용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또한 오토릭샤를 이용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갈 곳과 요금을 확인하고 타는 것이 좋다. 정부에서는 2007년 2월부터 미터기 사용을 권하고 있지만, 현실상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미터기 사용 시 나중에 실제 가격보다 높은 요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델리, 뭄바이, 첸나이에서 하루 이상 여러 곳을 다닐 경우에는 차를 임차하여 사용한다. 이 경우 반드시 운전사가 포함되어 있으며, 하루 임차료(10시간, 100km이내 사용)는 현대 엑센트 급의 차량이 1,200~2,000루피(27~50달러) 정도이다.

3) 국내 교통

인도는 남북으로 3,300km, 동서로 2,700km에 달해 매우 넓은 나라이다. 따라서 여타 지방 도시로 출장을 갈 경우 교통수단은 자연히 비행기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물론 수백km 이내의 거리는 기차 또는 승용차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주요 도시로의 출장은 비행기가 일반적이다.

델리에서 뭄바이까지는 약 1,500km, 델리-첸나이는 2,500km에 이른다. 비행기로 델리에서 뭄바이는 약 1시간 40분, 첸나이까지는 3시간 이상이 걸린다. 델리를 기준으로 뭄바이나 첸나이, 콜카타 등 지방 주요 도시로는 매일 많은 편수의 국내선 항공기가 운항되고 있다.

인도의 대표적인 국내선 항공은 인디언에어, 킹피셔, 제트 에어웨이 등 3개 항공사가 있으며, 인도의 국내선 항공 운임은 상대적으로 매우 비싼 편이지만, Air Decan, Spice Jet, Go Air등 저가 항공도 많이 이용한다. 단 가격이 싼 만큼 잦은 시간 변경과 지연이 있으니 조심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학생들을 중심으로 인도를 장기간 여행하는 사람들은 기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델리에서 뭄바이까지는 특급 열차의 경우에도 만 하루가 걸린다.

4) 통신

□ 우편

인도의 우편 서비스는 정부가 운영하는 우체국과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우편 서비스로 구분된다. 그러나 정부 우체국은 시간이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질에서 민간 업체에 비해 크게 뒤지기 때문에 대부분 민간 업체의 우편 서비스를 이용한다.

인도의 민간 우편서비스 업체는 수십 개가 존재하며 인도에서는 이를 꾸리에(Courier) 서비스라고 부른다. 대부분의 업체들은 특정 민간 우편업체를 지정해서 우편물이 있으면 해당 업체의 직원이 우편물을 수령하여 배달하게 된다.
비용은 델리, 뭄바이, 첸나이의 경우 시내 배달 비용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비용은 10-20루피(250원), 인도 최남부의 경우 약 40루피(1,000원) 정도이다. 특히 민간업체의 우편 서비스는 인도 어느 지역 이라도 이틀 이내에 배달되기 때문에 대부분 이들 민간 우편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 전화

인도에서 한국으로 전화를 걸 때는 '0(국제전화) + 82(한국 국가코드) + 지역 코드(단 앞자리 '0'은 제외) + 전화번호' 이다. 서울 전화인 02-123-4567번으로 전화한다면 00-82-2-123-4567로 한다. 한국과의 국제 전화 비용은 지난 수년간 많이 인하되어 공중전화 기준으로 1분당 약 400원 정도이다.

인도 국내전화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첫 자리가 0번으로 시작되는 지역(도시) 번호를 누르고 전화번호를 누르면 된다. 예를 들어 뭄바이에 있는 123-4567번으로 전화할 때는 022-123-4567로 누르면 된다.

인도시내에서 국제전화를 할 때는 거리에서 STD/ISD라고 적힌 노란 간판이 달린 공중 전화 박스에서 할 수 있지만, 우리와 같이 동전이나 카드를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미터기로 사용 내역이 자동 기록되고, 공중전화를 관리하는 사람이 청구서에 따라 금액을 청구하게 된다.

호텔 등에서도 당연히 국제전화, 인도 시외 전화를 이용할 수 있지만 일반 공중 전화보다 몇 배 이상 비싸므로 사용하지 않은 것이 좋다. 또한 최근에는 인도에서도 핸드폰 사용이 일반화되고 있어 출장 시 전화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는 핸드폰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고, 비용도 싸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바. 한국 기관 및 단체

○ 주 인도 한국대사관
- 주소: 9, Chandragupta Marg, Chanakyapuri Ext. New Delhi- 110021 (뉴델리 국제공항에서 차로 20분, KOTRA 뉴델리 무역관에서 차로 30분 소요 거리)
- 전화: (91-11) 2688-5374/6, 5412, 5419
- 팩스: (91-11) 2688-4840

○ 뭄바이(구 봄베이) 총영사관
- 주소: Kanchanjunga Bldg., 9th FL., 72, Peddar Road, Mumbai 400026, India
- 전화: (91-22) 2388-6743 - 5
- 팩스: (91-22) 2388-6765

○ 재인도 한국경제인협의회
- 전화: (91-124) 4628-500
- 한인회장: 신정수

○ 뉴델리 한인회
- 전화: (91-11) 4165-5061/63
- 한인회장: 김백규

○ KOTRA 뉴델리 무역관
- 주소: Korea Trade Center, New Delhi, #2, 12th Floor, DLF Cyber Terraces, Building 5-A, DLF Cyber City Phase-III, Gurgaon-122022, Haryana, India (뉴델리 국제공항에서 차로 25분 소요)
- 전화: (91-124) 4628-500
- 팩스: (91-124) 4628-501

○ KOTRA 뭄바이 무역관
- 주소: Korea Trade Center, Mumbai, 1001A, 10th Floor, Tower 1, India Bulls Finance Centre, Senapati Bapat Marg, Elphinstone (W), Mumbai 400 013, India (뭄바이 국제공항에서 차로 40분 소요)
- 전화: TEL: (91-22) 4925-5400
- 팩스: (91-22) 4925-5454

○ KOTRA 첸나이 무역관
- 주소: Korea Trade Center, Chennai, 463 Swami Building(Paravatham Block), Anna Salai, Teynampet, Chennai-600018, India (첸나이 국제공항에서 차로 30분 소요)
- 전화: (91-44) 2433-7280
- 팩스: (91-44) 2433-7281

○ KOTRA 방갈로르 무역관 (신설무역관)
- 주소: Korea Trade Center, Bengaluru, #711, 7th Floor, Prestige Meridien-1, MG road, Bengaluru -560001, Karnataka, INDIA (방갈로르 국제공항에서 차로 1시간 소요)
- 핸드폰: (91-95) 9197-5877 (신승훈 관장, 무역관 대표 전화 미설치)
- 이메일: shshin@kotra.or.kr (신승훈 관장, 무역관 대표 이메일 미구축)

○ 주 인도 한국 지상사 협의회(재인도 한국경제인협의회 남부지부로 2010년 변경)
- 전화: (91-44) 2433-7280 /핸드폰(91-98400 25933)

인도에는 한국 종교단체들도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 종교단체는 현지 정착, 여행 등에 대한 조언과 협조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어 초기 부임자나 여행자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천주교 델리한인성당
- 주소: Green Avenue Lane, Vasant Kunj, New Delhi
- 전화: 91-96502-26261(사목회장)
- 주임신부 : 김성훈 신부님

○ 베델교회(뉴델리)
- 주소: C 225, Ladosarai, New Delhi
- 전화: (91-11) 4609-5886(목사님 현재 공석, 안종규 장로님)

○ 임마누엘 교회(뉴델리)
- 주소: 24, Lodi Road, New Delhi
- 전화: (91-11) 2614-5342
- 담임: 김광선 목사

사. 기타 유용한 정보

1) 주요 특산물

인도의 경우 대리석 관련 조각 제품 등이 세계적으로 유명하며, 다이아몬드, 루비 등 보석 관련 제품도 상당히 발달되어 있다. 또한 낮은 인건비로 스카프, 숄, 카펫 등도 품질에 비해 재질 및 가격이 매우 저렴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북부 제문 지역의 카시미는 방문객들의 주요 선물거리로 선호되고 있다.

2) 주요 쇼핑센터

□ 뉴델리

○ 셀렉트 시티워크: 사켓에 위치한 쇼핑센터로 한국의 백화점과 가장 유사한 쇼핑몰이다.
○ 엠포리엄: 바산트쿤지에 위칭한 명품 쇼핑센터로 한국의 명품몰과 유사하다.
○ 안살 플라자: South Extention 근방에 위치한 쇼핑센터로 한국의 백화점과 근접한 형태의 쇼핑몰이다.
○ 바산트 록: 프라야 또는 모던바자르로 불리는 곳으로 바샨트 콘티넨탈 호텔 옆에 위치한 상업 지구이다. 레스토랑, 대형슈퍼, 카페, 상점 등이 들어서 있다.
○ 코넛 플레이스: 뉴델리 중심이 되는 광장으로 각종 상점, 사무실, 레스토랑, 특산품점, 영화관 등이 위치해 있다.
○ 앰비언스 몰: 뉴델리 외곽의 구르가온 신도시에 위치한 대형몰로 한국의 백화점과 유사한 형태로 각종 엔터테인먼트가 밀집해있다.

□ 뭄바이

○ 빅바자루/페닉스홀: 로얼파렐에 위치한 쇼핑몰로 식료품, 생활용품, 의류, 가전, 수입 제품 등을 구비한 백화점식 쇼핑몰로 뭄바이 시내에서 가장 큰 복합 쇼핑단지이다.
○ 크로스로드: 하지알리 사원 교차로에 위치한 쇼핑몰로 생활용품 전반 판매, 뭄바이 최초의 현대식 쇼핑몰로 고급 제품 위주로 판매하고 있다.
○ 아시아틱 스토어: Churchgate 맞은편에 위치한 상점으로 각종 생활용품, 의류 등 단일 건물 내 복합용품을 판매하고 있다.

□ 첸나이

○ 시티센터: 닥터 암베커로드 마이라퍼 지역에 위치한 약 30 만 s/f 의 대규모 쇼핑몰로 의류 및 귀금속, 건강식품, 가정용품, 서적 등을 판매하고 있다.
○ 스펜서플라자: 안나 살라이에 위치한 유명 쇼핑센터로 의류, 가전 제품, 컴퓨터, 신발, 가구 등을 판매하고 있다.
○ 카난앤손: 1900 년에 문을 연 전통을 지닌 보석점으로 시내 High Road 에 위치하고 있으며 고급 금, 은제품을 주로 판매하고 있다.
○ 바파랄: 1910 년에 개장한 보석점으로 Cathedral Road 에 있으며, 다이아몬드, 금, 은제품을 주로 판매한다.

□ 뱅갈로르

○ 유비시티: 시내 중심인 MG 로드(Vitta Mallya road)에 위치해 있으며 루이비통, 몽블랑, 버버리 등 명품매장 등이 진출해 있다.
○ 오리온 몰: 브리게이트 게이트웨이에 위치, 의류, 홈데코, 생활용품 등을 판매하는 쇼핑존과 멀티플렉스 극장, 푸드코트 등을 포함한 4 층 규모의 대형 쇼핑몰이다.
○ 피닉스 마켓시티: 화이트필드 메인로드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 290 만 평방피트로써 대형몰과 소매업점, 멀티플렉스 극장, 푸드코트 등이 들어서 있으며 타타그룹 산하의 주얼리매장인 타니시크가 들어서 있다.
○ 포럼 몰: 코르망갈라에 위치해 있으며 사무용품, 서적, 의류 및 잡화 등을 판매하고 있고 IMAX 관 등 최신식 영화시설이 운영중이며 근방에 빅바자르, 스테이플스 등이 들어서 있다.
○ 가루다 몰: 시내 중심에 위치한 6 층 규모의 건물로 180 여개의 매장이 들어서 있으며 아동용품, 패션잡화, 귀금속 상점이 들어서 있다.

6. 취항정보

가. 국내 및 국외 항공사 한국-인도(인천-델리) 취항 정보

정보 / 항공사	출발지 및 도착치	경유 유/무 및 경유지	운항요금 및 Tax	소요시간	비고
아시아나항공	인천-델리	무	운항요금: 136-237만원 Tax: 21만원 포함	8시간10분 6시간 40분	-
싱가포르항공	인천-델리	유-1번 (싱가폴)	운항요금: 116-218만원 Tax: 54만원 포함	13-16시간	-
말레이시아 항공	인철-델리	유-1번 (쿠알라룸프르)	운항요금: 140-175만원 Tax: 45만원 포함	13-15시간	
스링랑카항공	인천-델리	유-2번 (싱가폴) (콜롬보)	운항요금: 122-297만원 Tax: 61만원 포함	29시간10분	-
케세이퍼시픽	인천-델리	유-1번 (홍콩)	운항요금: 91-162만원 Tax: 37만원 포함	13-16시간	-
중국국제항공	인천-델리	유-1번 (북경)	운항요금: 84-99만원 Tax: 35만원 포함	13시간45분 10시간35분	-
중국남방항공	인천-델리	유-1번 (광주)	운항요금: 75-210만원 Tax: 25만원 포함	14시간15분 11시간15분	-
일본항공	인천-델리	유-1번 (도쿄)	운항요금: 110-144만원 Tax: 56만원 포함	30시간 12시간	-
제트에어웨이즈	인천-델리	유-1번 (방콕)	운항요금: 101-126만원 Tax: 33만원 포함	17시간35분 30시간05분	-
인도항공	인천-델리	유-1번 (홍콩)	운항요금: 122-136만원 Tax: 29만원 포함	10시간25분 9시간45분	-
타이항공	인천-델리	유-1번 (방콕)	운항요금: 126-200만원 Tax: 42만원 포함	16시간 20분 15시간 10분	

정보 / 항공사	출발지 및 도착치	경유 유/무 및 경유지	운항요금 및 Tax	소요시간	비고
터키항공	인천-델리	유-1번 (이스탄불)	운항요금: 218-423만원 Tax: 63만원 포함	33시간 31시간	

주: 왕복기준, 대략적인 정보로 실제 예약 날짜 및 기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음

나. 국내 및 국외 항공사 한국-인도(부산-델리) 취항 정보

정보 / 항공사	출발지 및 도착치	경유 유/무 및 경유지	운항요금 및 Tax	소요시간	비고
아시아나항공	부산-델리	유-2번 (김포) (인천)	운항요금: 129-232만원 Tax 불포함	11시간20분 10시간40분	-
타이항공	부산-델리	유-1번 (방콕)	운항요금: 114-120만원 Tax: 42만원 포함	15시간55분	-
케세이퍼시픽항공	부산-델리	유-1번 (홍콩)	운항요금: 93-161만원 Tax: 40만원 포함	19시간	-
일본항공	부산-델리	유-1번 (도쿄)	운항요금: 106-144만원 Tax: 56만원 포함	13시간	-
제트에어웨이즈	부산-델리	유-1번 (홍콩/방콕)	운항요금: 87-121만원 Tax: 33만원 포함	18시간	-
중국국제항공	부산-델리	유-1번 (북경)	운항요금: 69-85만원 Tax: 31만원 포함	16시간15분 29시간30분	-

주: 왕복기준, 대략적인 정보로 실제 예약 날짜 및 기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음

7. 출입국 및 비자제도

가. 비자의 종류

인도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비자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와는 2005년 10월부터 외교관 여권 및 관용여권에 대해서는 90일 이내에서 비자가 면제되고 있다. 비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비자 종류	기간	발급 주체
단기비자(복수)	15일~6개월	해외 주재 인도 공관(대사관) 재량으로 발급
장기 비자	1년 이상	해외 주재 인도 대사관이 본국(인도) 해당 부처 (Ministry of Home Affairs)에 조회하여 발급

1) 도착비자 시행

인도 도착 비자 시행은 박근혜 대통령의 인도 국빈 방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것으로서 인도 정부는 정상회담으로 조성된 양국간 협력 기조를 더욱 강화하고, 우리 국민들에 대한 각별한 배려와 호의를 보여주는 차원에서 도착비자 시행 예정인 다른 국가들보다 예외적으로 빨리 이 제도를 시행하여 4월 15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대한민국 국적자는 관광비자에 한하여 인도 도착 후에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델리, 뭄바이, 첸나이, 콜카타 등 8개의 인도 공항에 도착하는 경우에만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2) 외국인거주등록

1년 이상의 비자 소지자(외교관 제외)는 인도 도착 후 14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사무소(FRRO)에 등록해야 하고, 연락처는 아래와 같다.

○ 델리
- 전화: 011-2671-1348
- 팩스: 011-2671-1348(Telefax)
- E-메일: frrodelhi@hotmail.com, boihq@mha.nic.in, frrodli@nic.in
- 주소: East Block-VII, Level-II, sector-1, R.K.Puram, New Delhi-110066

○ 구르가온
- 전화: 0124-2869309
- 주소: FRO Gurgaon, Office ot the FRO, 3rd Floor, Mini Secretariet, Near Rajiv Chowk District Court, Gurgaon, Haryana

나. 비자 연장

인도에서 체류 중 체류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사무소(FRRO)에 신청하면 된다. 비자를 연장할 경우 단기 비자는 180일까지 연장 가능하며, 추가 비용은 필요 없고 여권과 사진이 필요하다. 연장 기간이 180일 이상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에 한해 허용하며, 추가로 Rs100(약 2.3달러)이 소요된다. 관광비자는 연장이 불가하여 해외 출국하여 재발급 받아야 한다.

다. 특별 허가가 필요한 지역

비자 신청 시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 허가가 필요하다. 분쟁 지역인 인도 북동부 지역의, ASSAM, MEGHALAYA, MANIPUR, MIZORAM, NAGALAND 및 ANDAMAN ISLANDS, Sikkim, Arunachal Pradesh, Himachal Pradesh 일부지역, Jammu & Kashmir 일부지역 입국을 위해서는 비자 신청 시 추가 요청해야 하며 인도 도착 후 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 동 허가 취득에는 최대 15일이 소요되며 그룹 여행객의 경우 2주 전에 신청해야 한다. MANIPUR, MIZORAM, NAGALAND의 경우 도착 후, 24시간 이내에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한다.

라. 비자 발급처 및 구비 서류

○ 발급처: 주한인도대사관 (신청: 주한인도대사관 맞은편 BLS Service Korea Co. Ltd.)
- 주소: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37-3, 주한인도대사관
- 전화번호: (02)798-4257/4268 (BLS 서비스 접수센터: 02-1600-9984)
- 근무시간: 월~금 09:30~13:30, 14:00~16:00 (공휴일 및 토요일 휴무)
- 서류 신청 시간: 09:00~12:30
- 수령 시간: 16:30~17:30
- 소요 시간: 신청 후 약 1 주일(접수후 면담일 결정, 면담 후 당일 또는 익일 수령가능)
- 소요 비용: 1 년 194,500 원, ~5 년 322,500 원, (신청수수료 4,400 원 및 스캔서비스 2,100 원 별도)

○ 구비 서류 (상용비자)
- 단기 비자: 신청서(APPLICATION FORM), 사진, 여권
- 장기 비자: 신청서, 인도 측의 초청장 또는 계약서 등의 근거 서류, 사진, 여권
- 상세 사항은 www.blsindiavisa.kr 참고

○ 구비 서류 (취업비자)
- 비자 신청서, 컬러사진 2 매(특정 규격에 맞는 사진), 무통장 입금증원본(외환은행, BLS Service Korea Co. Ltd. 건물 1 층에 위치), 인도 회사의 고용계약서 원본, 인도 회사의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고용계약서의 경우 회사 레터지에 고용기간, 세금 항목, 급여, 영문이름, 직위, 근무지, 발행일, 발행인 사인, 회사직인날이 명시되어야 함을 주의
- 상세 사항은 www.blsindiavisa.kr 참고

아프리카, 남아메리카로부터 인도 입국 시 YELLOW FEVER 예방 주사를 맞아야 하며, 기타 지역으로부터 인도 입국자는 방역이 불필요하다.

마. 입국 정보 및 세관 신고

○ 인도 루피화(Rupee)의 반입이 불가하다.
○ 5,000달러 이상 반입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 950ml 이하의 위스키 1병, 담배 2박스(20갑)는 면세 통관이 가능하다.
○ 기타 향수, 화장품 등 Rs2,400(85달러)까지는 면세 통관에 해당한다.
○ 비디오카메라 등 대형 아이템은 여행자 물품(TOURIST BAGGAGE RE-EXPORT FORM) 양식으로 신고 후 반입하고 출국 시 신고해야 한다.
○ 상업적 가치가 있는 샘플의 경우 인보이스를 반드시 지참하여 필요 시 관세를 내고 통관해야 하며, 인보이스가 없을 경우 세관원 임의로 관세를 산정하거나 압류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 출국 및 입국 공항에 모두 환전소가 있으며, 환전에는 반드시 환전 증명서를 받아 보관하여야 나중에 외화로 재 환전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 출국 시 루피화는 반출이 불가하며, 달러화는 어떠한 경우에도 10,000 달러 이상 반출이 불가능하고, 이 중 현찰이 5,000달러를 넘을 수 없다.(적발 시 구치소 송치)

바. 출국 정보 및 세관 신고

출국 시 원칙적으로 공항세를 지불해야 한다. 파키스탄, 네팔, 방글라데시, 부탄, 스리랑카 등 인접국인 경우 Rs150, 기타 국가로 출국할 경우 Rs300이나 대부분 항공권 구매 시 이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상용 및 취업 비자 등으로 인도에서 120일 이상 체재 후 출국할 경우에는 "소득세 납입증명서 (INCOME TAX CLEARANCE)"를 제출해야 한다.

사. 주의할 사항

출장 차 입국하는 업체의 경우 대부분 제품의 샘플 등을 지참하고 입국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에는 관세 부과를 고려하여 미리 송장을 소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도는 아직 어느 정도의 언더 밸류는 인정되고 있으며 제품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40%까지도 언더 밸류를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시물품의 경우 반송이 확실할 경우 까르네(Carnet)를 받아 오는 것이 최선이다. 다만 경우에 따라 현지에서 처분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일단 인보이스를 지참하는 것이 좋다.

또한 아무 준비없이 입국하는 경우 화물을 찾아서 세관을 통과하기 전에 트렁크나 가방이 분필로 X마크를 그어둔 것은 반드시 지우고 나오는 것이 요령이다. 왜냐하면 이는 X레이 체크에서 세관 검색대에서 검사하라는 표식이기 때문이다.

아. 공항↔시내 교통편

공항에서 델리, 뭄바이, 첸나이 시내까지는 대부분 20~30분 내외에 도착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편이다. 공항에서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교통편은 택시, 오토릭샤이고, 버스는 없다. 다만 우리나라처럼 이용 후 거리에 따라 요금을 청구하는 후불 택시보다는 공항의 택시 사무소에서 미리 갈 곳을 알려주고 요금을 납부한 후 택시를 타는 선불제 택시가 일반적이다. 간혹 여행자에게 접근하여 자기 차를 이용할 것을 권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안전 면에서나 비용 면에서 절대 이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항에서 시내 호텔까지의 택시비용은 200~300루피(약 5~6달러) 내외이다.

8. 관광/호텔/식당/통역

가. 관광

인도는 광활한 국토와 오랜 역사를 배경으로 많은 여행객들이 인도를 방문하고 있고, 전 국토에 걸쳐 많은 관광지가 산재해 있다. 그러나 넓은 국토뿐만 아니라 교통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인도를 단기간 내 여행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매우 어려운 환경이다. 인도는 북부 히말라야의 고산 지대, 북서부의 사막 지대, 중부 고원 지대, 동북부의 차 경작지대, 7,000Km에 이르는 해안선 등과 요가 등으로 대표되는 인도 정신문화 유산, 각 지역 에 산재해 있는 왕조 유적을 통해 세계적인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인도의 지역별 주요 관광지는 다음과 같다.

- ○ 북 부: Srinagar, Manali, Moosoori, Nainital, Shimla(고산 지역, Hill Town)
- ○ 북중부: Agra, Jaipur, Delhi, Kajuhraho, Baratpur, Gwalior
- ○ 서 부: Ahmedabad, Mumbai(구 Bombay), Goa(해안 관광지), Cochin, Aurangabad Aja nta, Elora 등이 있는 문화 유적지
- ○ 남 부: Hassan, Trivandrum, Kovalam, Madurai, Chennai(구 Madras), Pondicherry, Mam anapuram (해안 관광지)
- ○ 동 부: Puri, Bhubaneswar, Kolkata(구 Calcutta), Ranchi, Bodhgaya, Dharjeeling (유적지 및 차 플랜테이션 지역)

1) 뉴델리 및 인근 주요 관광지

ㅁ 시내 관광

사진	주요 관광지
	○ Red Fort 무갈왕조 제5대 황제 샤자한이 건설(1639~1748년)한 성으로 올드델리의 대표적 관광 명소로 붉은 빛의 사암으로 지어져 '붉은 성'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사진	주요 관광지
	○ India Gate 제1차 세계 대전에 참전하여 전사한 9만 명의 인도 병사를 위한 높이 42m의 위령비이다.
	○ Qutab Minar 회교도(터키)들이 인도를 처음 정복한 기념으로 세운 높이 73m의 탑(1215년)이다.
	○ Raj Ghat 마하트마 간디 묘소(1948년 1월 유해를 화장했던 장소)로 근처에 간디 기념관이 있다.
	○ Lakshmi Narayan Temple 델리 중심가인 코너트 플레이스에서 서쪽으로 약 1.5Km 떨어진 Mandir Marg에 위치한 전형 적인 힌두사원(1938년 건축), 기타 국립박물관, 국립 현대미술 박물관, 마하트마 간디 박물관, 인디라 간디 및 라지브 간디 기념관이 있다.

□ 인근 지역

사진	주요 관광지
	○ Taj Mahal 아그라(델리에서 남동쪽으로 약220Km)에 있는 세계 7대 불가사의의 하나로 꼽히는 건축물로, 무갈 제국의 제5대 황제 샤자한이 죽은 왕비를 위해 지은 무덤이다. (1631 건축시작, 1653 완성)
	○ 암베르 포트 자이푸르 외곽 언덕에 위치한 가장 볼 만한 장소 중 하나로, 1600년 만싱 경에 의해 시작되어 현재 모습으로 완성된 것은 18세기 스와이 싱에 의해서이다. 붉은 사암과 흰색 대리석으로 구성된 힌두와 무슬림 건축 혼합의 대표적인 예다.
	○ 자이가르 포트 궁수들로 표적물을 잘 공격할 수 있도록 공교하게 건축되었다. 만싱 경이 이 성에 거대한 양의 보물을 묻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음. 만든 후 한 번밖에 발사한 적이 없었다고 전해지는 아시아에서 가장 대표적인 '자이 반'이 있다. 천문 관측대인 잔타르 만타르, 하와마할, 시티 팰리스 및 박물관이 볼거리이다.

2) 뭄바이 및 인근 주요 관광지

□ 시내 관광

사진	주요 관광지
	○ Gate of India(인도의 문) 포트지구의 남쪽에 있는 타지마할 호텔 앞에 봄베이만을 마주하며 거대한 문이 서있음. 이것이 뭄바이의 가장 대표적인 역사적 건축물인 Gate Way of India임. 1911년 영국왕 조지 5세 부부의 인도 내방을 기념하여, 당시 뭄바이 총독에 의해 건조 되었고, 1927년 완공됨. 건조 목적은 조지 5세의 인도 방문을 영원히 기념 하자는 것이며 또한 영국 본토에서 오는 요인의 인도 방문 환영식장 용도였다.
	○ Taj Mahal Hotel 인도의 문 바로 앞에 세워진 금세기 최고 건축물의 하나로, 타타그룹의 창업주에 의해 축조되었으며 현관이 독특하게 바다를 향하고 모든 방 창문으로는 바다를 볼 수 있도록 하여 실내에 있으면 마치 배 위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실내 장식의 기조는 붉은 색이며, 외관 모양은 인도 사라센 양식과 고딕 양식이 혼합된 형태이다.

사진	주요 관광지
	○ Dhobi Ghat (도비가트) 뭄바이 시내의 기찻길 옆에 위치한 도비가트는 공동 빨래터로서 시내 및 인근에서 모아온 세탁물을 전통적 손빨래 방법으로 처리하여 배달하는 역할을 한다.
	○ Mani Bhavan(마하트마 간디박물관) 1917~1934년 뭄바이 간디 운동의 본부로 사용된 건물로 비폭력이라는 불멸의 사상으로 인도의 자유를 획득하기 위해 싸운 것을 기념하기 위한 국립기념관으로 1층에는 간디 의 생애와 사상 그리고 그것들에 관한 화제를 모은 책들로 만들어진 도서관이 있고 2층에는 간디가 사용했던 방이 그 당시대로 보존되어 있다.

□ 인근 지역

사진	주요 관광지
	○ 아잔타 동굴 뭄바이 동쪽 334km에 소재하는 아우랑가바드에 있는 서기 3세기 유적지로 거대한 하나의 석굴에 주로 힌두교, 불교 및 자이나교 등 3개 종교의 벽화, 조각 등이 잘 보존 되어 있으며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유적지이다.
	○ 엘로라 동굴 엘로라 석굴 전경(Ellora Kailasa natha Temple) 아잔타와 비슷한 지역에 위치하나 건축년도가 더 늦고 보존이 잘 되지 않은 점을 제외하면 아잔타 동굴과 비슷하다.

3) 첸나이 및 인근 주요 관광지

사진	주요 관광지
	○ 타밀나두 주정부 박물관(Government Museum) 1857년에 설립된 역사가 있는 박물관으로 지질학, 고고학, 인류학, 동물학, 식물학 및 건축학적 의미가 있는 장소로, 관람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금요일 및 국경일은 휴관하며, 외국인 입장료는 6달러다.
	○ 마하발리쯔람 (Mahabalipuram) 마하발리쯔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신상 모습 들이다. 첸나이 시내에서 58km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마하발리는 "위대한 씨름", 쯔람은 "장소"라는 의미로 7세기 위대한 왕인 Nara simhavarman 1세를 마하발리라 불렀으며 마하발리쯔람은 그가 거처했던 지역이다. 고대 사원, 화강암에 조각한 동물 형상, 궁전 터 등이 그 시대의 영화를 보여주는 장소다
	○ 위웨까넌드박물관(Vivekananda Museum) 위웨까넌드 박물관은 예전에 아이스 하우스라고 불리며, 아메리카에서 배로 운송된 얼음 덩어리들을 저장했던 건물에 있다. 후에 위웨까너드가 자신의 금욕적인 철학을 설파하는 회합장소가 되었고, 현재는 힌두교 스와미의 일생을 담은 사진과 기념물들을 전시하고 있다.
	○ 윌루워르 꼬뗌(Valluvar Kottam) 1976년 세워진 윌루워르 꼬뗌은 존경받은 따밀의 시인 띠루윌루워르를 기리기 위한 곳으로, 그의 고전작인 쿠랄은 2천여 년 전에 쓰여진 것이라 한다. 꼬뗌은 고대 따밀 건축물을 본따서 지은 건물로, 1330개의 시구로 구성된 쿠랄을 판에 세기고 현대 미술로 묘사하였다.

사진	주요 관광지
	○ 까뿔리시워러르 템플(Kapaleeshwarar Temple) 드리위디언 양식으로 건축되었으며, 따밀나두의 유명한 사원 도시들을 볼 수 있는 고뿌럼(사원 입구의 장식물)과 먼더뺌, 저수지 등 건축적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다.
	○ 성도마 대성당(San Thome Cathedral) 1504년에 건축된 후 1893년에 신고딕 양식으로 개축된 성도마 대성당은 까뽈리시 워러르 템플 근처에 있으며, 사도 도마의 유해가 보관된 곳이라고 전해진다.

4) 방갈로르 및 인근 주요 관광지

사진	주요 관광지
	○ 랄박 식물원 (Lalbagh Botanical Garden) 방갈로르 도심 남쪽에 위치한 랄박식물원은 약 97만㎡ 면적에 1천 종이 넘는 남인도의 자생식물과 열대 희귀 수목, 영국풍의 유리 온실과 분수 등을 갖추고 있다. 18세기 이슬람 왕조를 연 하이데르 알리와 그의 아들인 티푸 술탄이 대를 이어 조성한 정원이 그 시초이며 방갈로르에 '정원도시'라는 별칭이 붙게 만든 아름다운 식물원으로 산책을 즐기기에 좋다.
	○ 티푸 술탄의 여름궁전(Tipu Sultan Summer Palace) 1791년 티푸 술탄에 의해 완성된 티푸 술탄의 여름궁전이다. 티푸 술탄은 인도 역사상 유일하게 영국에 저항을 하였던 군주이다. 대부분의 인도 건축물들이 석조 건축인데 반해, 티푸 술탄의 여름궁전은 아름다운 티크목 기둥과 날렵한 아치 형태로 유명하다.
	○ 방갈로르 궁전(Bangalore Palace) 1887년 우데야르 왕조때 지어진 궁전으로 실제로 보면 인도 풍의 건축양식이 아닌 유럽에서 볼 수 있는 건축양식이 특징이다. 손으로 직접 그린 꽃무늬의 내부 벽지 및 장식, 영국과 중국에서 수입한 도기류 및 가구, 색과 모양이 다양한 샹들리에와 아름다운 무늬의 창들로 궁전의 내부를 한층 고급스럽게 조성해놓았다.

□ 인근 지역

사진	주요 관광지
	○ 마이소르 궁전(Mysore Palace) 카르나타카 주의 상징으로 통하는 마이소르 궁전은 14세기부터 영국 식민시대까지 남인도의 중심도시인 마이소르 지역을 통치한 우데야르 왕조의 궁전이다. 영국의 건축가의 헨리어원이 설계한 궁전으로 인도-사라세닉 양식의 건축양식을 띄고 있다. 거대한 규모와 호화로운 시설을 자랑하는 이 궁전은 1897년에 시작 하여 1912년에 완공 되었으며 화려한 스테인드글라스와 은과 상아 등으로 장식한 문들, 그리고 당대 최고의 그림들로 구성된 내부는 화려하고 호사스러움을 자랑한다.
	○ 차문디힐(chamundi Hills) 도심 남쪽 약 10km 지점에 위치한 구릉지로 마이소르의 문턱 역할을 한다. 해발 1050km 이상의 고원으로 연중 무덥지 않아 동식물이 서식하기에 좋다. 차문디힐 정상에는 차문데스와리 사원이 위치해있어 태양빛을 받으면 황금빛을 내어 진풍경을 이룬다.

자료: 인도 관광청, 각 주 정부 관광부서 등

나. 호텔

인도의 호텔은 지역별, 등급별 가격 차이는 물론, 계절에 따라 성수기(주로 겨울철)와 비수기 (주로 여름철)의 가격 차이가 매우 크다. 특히 11월 이후 겨울철은 인도의 대표적인 비즈니스 시즌일 뿐만 아니라 국제회의, 결혼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됨에 따라 호텔 값이 매우 비싸다.

특히 최근에는 외국인의 인도 진출과 출장이 잦아지면서 지난 1년 사이 호텔 룸 가격이 두 배로 높아졌다. 5스타급 호텔 230-280달러, 4스타급 호텔 180-230달러, 3스타급 호텔 100-130달러 수준이며 조식과 세금(Luxury Tax 12.5%)을 포함한 가격이다.

□ 델리, 뭄바이 및 첸나이 지역 주요 호텔 연락처

뉴델리

호텔명	주소	TEL/FAX
The Oberoi	Dr. Zakir Hussain Marg New Delhi - 110003.	011-2436-3030/ 011-2436-0484
Taj Palace	2, Sardar Patel Marg, Diplomatic Enclave, New Delhi - 110021.	011-2611-0202/ 011-2611-0808
Taj Mahal	1, Mansing Road, New Delhi - 110011.	011-2302-6161/
The Lalit	Barakhamba Avenue,Cannaught Place, New Delhi-110001.	011-2341-1001/ 011-2341-2233
Hyatt Regency	Bhikaji Cama Place, Ring Road New Delhi - 110066.	011-2679-1234/ 011-2679-1122
Le Meridien	Windsor Place, Janpath, New Delhi - 110001.	011-2371-0101/ 011-2371-6989
Surya Hotel	Friends Colony, New Delhi - 110065	011-2683-5070/ 011-2683-7758
Vasant Continental	Basant Lok, Basant Vihar, New Delhi - 110057	011-2614-8800/ 011-2614-8900
ITC Maurya	Diplomatic Enclave, Sardar Patel Marg, New Delhi - 110021	011-2611-2233/ 011-2611-3333
Park Hotel	15, Parliament Street, New Delhi - 110001.	011-5150-2541/ 011-2374-4420
Ambassador Hotel	Sujan Singh Park New Delhi - 110021.	011-2463-2600/ 011-2463-2252
Hotel Rajdoot	Mathura Road New Delhi - 110014	011-2431-6404/ 011-2431-7442
Hotel Marina	C-59, Cannaught Circus, New Delhi - 110021	011-2332-4658/ 011-2332-6809
Hotel Diplomat	9, Sardar Patel Marg, New Delhi - 110021	011-2301-6755/ 011-2301-8605
The Hans Plaza	15, Barakhamba Road, New Delhi - 110001	011-2331-6861/ 011-2373-7403
The Leela Kempinski Hotel	Ambience Island, NH-8, Gurgaon - 122002	0124-477-1234/ 0124-477-1235

뭄바이

호텔명	주소	TEL/FAX
Oberoi Hotel	Nariman Point, Mumbai, India	022-6632-5757/ 022-6632-4142
Taj Mahal	Apollo Bunder, Mumbai 400 001, India	022-6665-3366/ 022-6665-0323/24
Taj President	90, Cuffe Parade, Mumbai – 400 005, India	022-6665-0808/ 022-6665-0303
Trident Hotels	Nariman Point, Mumbai, India	022-6632-4343/ 022-6632-5000

첸나이

호텔 명	주소	TEL/FAX
Park Sheraton	132 T.T.K. Road, Chennai, India	044-2499-4101/ 044-2499-7101
Taj Connemara	Binny Road, Chennai, Tamil Nadu, India	044-500-0000/ 044-5500-0555
Taj Coromandel	37, Mahatma Gandhi Road Nungambakkam Chennai - 600 034	044-500-2827/ 044-5500-2089
Le Royal Meridien	1 GST Road, St Thomas Mount, Chennai, India	044-2231-4343/ 044-2231-4344

□ 한국인 운영 게스트하우스

인도의 호텔요금은 매우 비싸 각 주요 도시에는 한국인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가 속속 생겨나고 있다. 호텔에 비해 시설은 뒤떨어지지만 한식으로 식사를 할 수 있고, 현지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장기간 출장 시 과다한 호텔비 부담 등을 고려할 때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현재 델리에는 많은 게스트 하우스가 운영되고 있으며, 1박에 아침 및 저녁 식사를 포함하여 싱글룸은 120달러, 트윈은 2명에 160달러를 기준으로 약간씩 차이가 있다.

뉴델리

게스트 하우스 명	휴대폰	이메일	주소
드림하우스	98100-97323	dreamindia@hotmail.com	A-132, First Floor, Neeti Bagh, New Delhi
러빈도 호텔	97176-58031	luvindo@hotmail.com	E-23, East of Kailash, New Delhi-110065
로즈가든	98105-97766/ 98106-84301	rosegardenindia@hanmail.net	B3/54, Safdarjung Enclave, New Delhi-110029
아이리스 (구 진주집)	98111-63660 /98103-37473	jnusoni@hanmail.net	P-2, Green Park Extension, New Delhi
이레 게스트하우스	98712-77807/ 98711-44892	yireindia@hammail.net	S-235, Panchsheel Park, New Delhi
코린도 게스트하우스	98111-73132	abcindia@dreamwiz.com	C-4/127, Second Floor Safdarjung D Block, New Delhi-110016
한사랑 게스트하우스	99585-68282	kyung-lae777@hanmail.net	E-424, Greater Kailash II, New Delhi

구르가온

게스트 하우스 명	휴대폰	이메일	주소
골든아이	81302-15553	goldensysshin@gmail.com	F-44, South City-1, Gurgaon
다래 게스트하우스	98992-01562	kksworld@hanmail.net	210, Sector 27, Gurgaon/ B-209, Palms Spring Apt., Sector 54, Gurgaon
산들바람	99712-23885/ 070-4084-2106	breeze993@naver.com	E-022, Belaire, DLF-5, Gurgaon
신라게스트하우스	98992-35829	silla2006@naver.com	A3-503, Sahara Grace Apt, Gurgaon
편안한 쉼터 올인	98718-08041	parksunent@hotmail.com	A-708, Sahara Grace Apt., M.G Road, Gurgaon

게스트 하우스 명	휴대폰	이메일	주소
한사랑게스트하우스	98717-70049	kyung-lae777@hanmail.net	Apt DLF Belair A-161, DLF City Phase-V, Golf Course Road, Gurgaon
한우리	88007-68282/ 88009-38282	pkyuj@hotmail.com	B-576-A, Sushant Lok-I, Gurgaon-122002
코지 게스트하우스 (Cozy House)	070-7571-7804/88267-85182	koogjay@hanmail.net (다음카페: http://cafe.daum.net/cozyhouse)	PPK-292, DLF Park Place, Phase 5, Sector 54, Gurgaon

노이다

게스트 하우스 명	휴대폰	이메일	주소
구하우스	98116-49124	kss8032@hanmail.net	Plot 7 Chi 3- Casia Nodosa Estate, Great Noida
로얄패밀리	98104-91526	sjfamily0411@yahoo.com	Omaxe, The Forest Sherwood Tower 301, Sector 92, Noida
아이리스(구 진주집)	98111-63660 /98103-3747 3	jnusoni@hanmail.net	C-128 Sector 44, Noida
올레(구 오맥스)	98116-89779	-	B-139, Sector 44, Noida
인도 게스트하우스	88606-79663	-	P-222, ATS Green Village Sector 93A, Noida
팔도강산	98189-50207/ 99998-34983	leefibe7@yahoo.co.kr	Gateway Tower, Sector 44, Noida
한빛 게스트하우스	99108-65333	clk1969@naver.com	D-183, Sector 51, Noida

님라나

게스트 하우스 명	휴대폰	이메일	주소
구하우스	98116-49124	kss8032@hanmail.net	B-13, RIICO RESIDENTIAL COLONY, NEEMRANA, RAJASTHAN 일본공단과의 거리: 2KM 한국공단과의 거리: 10KM

첸나이 한인 운영 게스트 하우스의 경우, 대부분의 1 일 숙박 요금은 약 70 달러(싱글 기준)이며, 조식 및 석식이 포함된 가격이다.

첸나이

게스트 하우스 명	TEL
고모네 호텔	91-97910-75211(H.P), 044-4218-7878
그린 호텔	91-99406-56777(H.P), 070-7446-3373(인터넷전화)
달선 호텔	91-98410-17007(H.P), 044-4300-9953
말죽거리	91-98400-20004(H.P), 044-2715-6842
세종 호텔	91-98419-86865(H.P), 91-98416-23681(H.P)
송이 호텔	91-99405-76548(H.P), 91-94440-79777(H.P)
한강 호텔	91-97890-23478(H.P), 070-7517-0252(인터넷전화)
한국관	91-96267-48915(H.P), 91-95517-83985(H.P)
한국호텔	91-98401-48907(H.P), 070-7752-2516(인터넷전화)
Kim's House	91-98407-37701(H.P), 044-2716-2882

□ 그 외 뭄바이, 첸나이, 방갈로르 게스트 하우스 연락처

○ 뭄바이 로얄에코텔: 98201-93587 (휴대전화) royalecotel@naver.com (이메일)

○ 첸나이 한국인 운영 게스트 하우스

- 경복궁: 난나담(시내중심지)에 위치한 경복궁게스트 하우스는 1일 숙박요금은 미60달러이며, 객실 10개가 있다. (전화: 44-42113346/ 핸드폰: 98843-65116)
- 오달선: 알레야 지역에 위치한 오달선 게스트 하우스는 룸이 10개이며 숙박 요금은 1일 60달러이다. (전화: 44-24997097/ 핸드폰: 98410-12002)
- 세종게스트하우스: 44-5210-5442 (핸드폰: 98416-23681)
- 팜하우스: 41-4710-6383 (핸드폰: 98400-88288)
- 킴스하우스: 44-4710-2777 (핸드폰: 98402-09562)

○ 방갈로르 한국인 게스트 하우스

- 오아시스 호텔: 91-99455-33077
- 코인 게스트 하우스: 91-98450-21255

다. 식당

1) 먹거리 및 식당

현지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식당은 인도식당 외에 중식당, 한국식당, 일본 식당을 들 수 있다. 델리의 경우 한국식당이 5곳, 첸나이 3곳, 뭄바이는 한국 식당이 없다. 한국식당은 메뉴가 매우 제한적이고 가격도 비싼 편이다.

예를 들어 김치찌개, 자장면 등이 400루피(약 만원)이고, 냉면은 500루피(약 12,000원)이다. 식사 비용이 가장 저렴하게 드는 것은 인도 식당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의 식성과 잘 맞지 않은 음식이 많아 처음 인도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다소 꺼리게 된다. 중국 식당은 호텔의 중식당을 이용할 수 있다.

델리의 경우 일본 식당은 호텔에 2-3곳, 시내에 2개 정도가 있으며 첸나이 경우 2곳이 있다. 뭄바이는 일본 식당이 없으나 중국 식당은 많은 편이다.

인도인들의 주식

밀가루로 화덕이나 프라이팬에 구운 빵(난 또는 차파티)을 소스 등에 찍어 먹는다.

각 도시 별 주요 식당은 아래와 같다.

뉴델리

식 당 명	전화번호	비 고
한국 식당		
미소	99102-99367	구루가온 Golf Course Road의 Global Foyer에 소재, 한식 전문
명가	96502-75322	구르가온 Sector 29에 소재, 한식 전문
단비	99588-71021	구르가온 Star Mall에 소재, 각종 찌개, 탕, 고기류 등 한식 전문
궁	011-4608-2663/ 0124-438-3101	그린파크와 구루가온(2호점)에 소재, 갈비, 등심, 한식 전문

식 당 명	전화번호	비 고
서울식당	011-3096-0289	각종 찌개류 등 한식
K2	0124-4379-1513	구루가온 MGF Plaza Mall 3층 소재, 한국식 중화요리 등
구 하우스	98116-68586	그레이트 노이다에 소재, 한국식 등
일본 식당		
Tamura	011-2615-4082	우동류, 튀김, 각종 덮밥류 등(생선초밥, 회는 주말에만 가능)
Sakura	011-5250-0300	Nikko 호텔내 일식당, 고급이나 가격이 매우 비쌈
중국식당		
Nan King	011-2613-8936	음식의 품질, 가격, 장소 등에서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
Canton	85279-54466	구르가온 DLF Cyber Hub에 소재
주요호텔내		Taj Palace, Oberoi 등 주요 호텔 내 중국 식당 이용 가능

뭄바이의 경우, 한국 식당은 아직 없으며 그 외에 이용 가능한 식당은 아래와 같다.

뭄바이

식 당 명	전화번호	비 고
중국 식당		
Golden Dragon	022-2202-3366	타지마할 호텔 내 1층에 소재하며 뭄바이 최고 중국식을 제공함
China Garden	022-2363-0841	Crossroad백화점 1층에 위치하며 가격은 비교적 저렴
Lings Pavilion	022-2282-0023	타지마할 인근 소재
Kamling	022-2204-2618	앰베서더 호텔 바로 옆에 위치, 가격은 비교적 저렴
인도 식당/기타		
Busaba	022-2204-3769	한국식 일부 제공하며 가격은 10 달러 정도 (정식, 된장국, 비빔밥)
Excellensea	022-2261-8991	대표적 해물요리를 취급(랍스터, Crab, 병어)
India Jones	022-5632-4343	한국식 일부 포함, 일식, 중국식, 인도식 등
Thai Pavilion	022-6665-0808	태국 전통 식당, Taj President호텔 내
Copper Chimney	022-2492-0505	전통 인도 식당

첸나이

식 당 명	전화번호	비 고
한국 식당		
경복궁 호텔	044-5221-3346	활어회 전문
인서울 식당	044-2435-3377	고기류 전문
중국 식당		
China Town	044-2811-2246	푸켓 피시, 치킨 딤섬 등의 중국 요리
Golden Dragon	044-5500-2827	광동 음식을 비롯한 중국 요리 일체
인도 식당/기타		

식 당 명	전화번호	비 고
Karaikud	044-26211777	피시 프라이, 양고기 요리 일체
Woodlands	044-2811-7016	남인도 음식 전문
Saravana Bhavan	044-2483-2671	인도 요리
Don Pepe	044-2811-041291	멕시칸 요리 취급
Benjarong	044-2432-2640	TTK Road에 위치, 타이 음식 전문

방갈로르

중국식당이 많으며 양식, 일식, 한식, 이란식 등 다양하게 있고, 특급호텔에서는 주로 양식, 중식, 일식 레스토랑이 있으며 서비스세는 약 20% 가량이다.

한국 식당	전화번호
아리랑	91-99161-62400
뜰안	91-88841-80113
해금강	91-80411-27730

라. 통역

뉴델리의 한국인 통역원은 현지 유학생 및 개인사업자들이 대부분으로서 델리 시내에서의 통역비는 통상적으로 하루 8시간 기준으로 150달러이다. 석사, 박사과정 이상의 경력자 등은 업무내용의 난이도 등에 따라 200달러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구르가온 및 노이다와 같은 델리 인근 지역으로의 출장에는 170달러, 그 외의 지방 출장은 200달러 이상의 통역비가 일반적이다.

한국어 통역이 가능한 인도인의 수는 그리 많지 않으며 비용의 폭이 120-250달러로 다양하나 그만큼 실력의 편차도 크다고 할 수 있다. 관광 가이드 정도는 무난하지만 비즈니스 목적으로는 그다지 유용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니 인도인 통역을 섭외할 경우에는 전화 인터뷰 등 사전 확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역원은 현지 사업자 및 거래업체 등을 통해 구할 수 있다. 아래 명단은 비즈니스 미팅 및 전시회 등 통역 경력자들의 연락처이다. 뉴델리 무역관에 의뢰할 경우, 보유하고 있는 통역원 리스트를 통해 추가적으로 통역원을 추천하기도 한다.

통역원 정보

성명	휴대폰	이메일
김경철	91-98180-39335	koindo@hotmail.com
김현정	91-96546-65690	mail2jaykim@gmail.com
신상림	91-99582-30260	pyungsim@hotmail.com
안유진	91-85271-74379	minervayj@hanmail.net
조현경	91-88007-76554	joara85@hotmail.com

주: 차량임차비용: 한국 유사모델 현대 베르나 기준 1일 $40-50 수준
(단 1일 80㎞, 8시간 기준이며 거리 및 시간 초과시 추가요금 부과)

9. 출장 시 유의 및 참고사항

가. 출장 시 유의사항

□ 의복 준비

인도 대부분의 지역이 아열대 기후이나 델리를 포함한 북부 지역의 경우 여름, 겨울 간 기온 차가 심해 겨울의 경우, 특히 북부 지방 여행을 계획하는 경우 두툼한 옷 준비가 필수적이다.

그 외 계절의 경우도 태양빛이 강렬하므로 반팔 외에 긴 팔 의복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4월부터 10월까지는 우리의 한여름 이상으로 기온이 올라가 5~7월은 최대 50도까지도 올라간다. 동절기(12월말부터 2월까지) 기간에는 기온이 새벽시간 최저 기온도 4~5도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는다. 뉴델리를 제외한 중남부 지방은 연중 최저 온도가 20도 이하로 내려오지는 않아 두툼한 의복은 필요하지 않다.

□ 치안

인도의 치안 여건은 여타 개도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다. 그러나 외국인 여행자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절도, 강도, 성추행 등 여러 가지 형태의 범죄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고 실제 이러한 사례들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한다.

인도-파키스탄 간 분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카시미르 지역은 여행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국경 분쟁이 있는 북동부 지역을 방문할 경우도 주의가 요망된다. 정치 군사적으로 민감한 카시미르, 북동부 2~3개주, Andaman Island 등을 여행하기 위해서는 별도 허가가 요구 된다. 이들 지역은 테러에 의한 집단 사망 사고가 종종 발생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 교통

한국 개념의 택시(보행 중 지나가는 택시를 잡아타는 형식)는 릭샤(오토바이 형태의 삼륜차)로 오토바이 엔진에 뒤의 승객 칸(통상 2~3인 자리)을 붙인 3륜 형태가 대부분이다. 한국 에서 볼 수 있는 4륜 택시의 경우 콜택시 또는 렌터카 개념으로 스탠드로 직접 찾아 가거나 전화로 이용 신청을 해서 이용하고 있다. 다만 뭄바이의 경우에는 일반 택시가 매우 많아 언제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다. 일반 시내 버스의 경우 요금이 저렴하지만 연결 노선이 불편하고 언어 소통, 추행 등의 문제가 있어 힌디어 구사가 어느 정도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여성의 경우 버스 내 추행 가능성이 많은 점도 유의해야 한다.

인도 여행 시, 또는 출장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릭샤 또는 택시 이용 전 요금에 대해 운전수로부터 명확한 확답을 듣고 이용해야 바가지의 우려가 없다는 점이다.

□ 위생

인도는 질병의 천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여러 가지 질병이 창궐하는 지역이다. 흔히 댕기열이라고 하는 열병, 말라리아 등이 특히 인도에서 흔히 발병하고 있다. 최근에는 치킨구니아로 많은 사람들이 열병으로 사망하고 있어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특히 유의해야 한다. 여행 또는 출장으로 인도에 온 사람들이 가장 걸리기 쉬운 질병이 배탈이다. 이는 물을 잘못 마시거나 현지에서의 음식으로 발생하게 되며, 물은 생수병으로 파는 것을 제외 하고는 절대 마시지 않는 것이 좋다. 또한 일반 식당에서도 반드시 미네랄워터를 마시도록 하고, 식당에서 주는 물(거의 정수한 물이다)은 마시지 않는 것이 좋다.

현지에서 열이 날 경우는 빨리 병원으로 가는 것이 좋다. 단순히 국내에서 준비해온 감기약 등을 먹는 것은 위험하며, 병원에서 의사의 진찰을 받는 것이 최선이다.

□ 팁(Tip)

인도에서도 호텔이나 고급 식당 등에서 일정한 금액의 팁은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다. 그러나 미국과 같이 팁 관행이 엄격하지는 않으며, 다만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고 가능한 상황에서는 주는 것이 좋다는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

적정한 팁 금액은 호텔에서 숙박을 할 경우 1박당 40~50루피(약 1달러), 호텔에서 벨 보이나 짐 운반 등의 서비스를 받을 경우 1인당 10루피(250원) 정도를 주면 적당하다. 또한 일정한 수준 이상의 식당에서는 몇 명이 함께 식사한 경우 식사 금액에 상관없이 100루피 정도를 두면 적당하다.

인도에 출장을 올 경우 보다 편한 상담과 이동을 위해 차량을 렌트하는 경우가 많다. 차량을 렌트할 때 렌터카에는 반드시 운전수가 붙어 있으며, 운전수가 하루 일정을 마치고 돌아갈 경우 하루 당 50~100루피 정도를 주면 적당하다. 간혹 출장 온 사람들이 팁 관행을 몰라 과다한 금액의 팁을 주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 팁은 받은 사람은 다음날에도 동일한 수준의 금액을 기대하는 경향이 많으므로 과다한 팁은 주지 않는 것이 좋다.

나. 관공서 관행

□ 비효율의 대명사

인도에서 정부 부처는 비효율의 대명사로 볼 수 있다. 정부를 접촉해야 하는 모든 업무는 일이 제때에 제대로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 항상 고민해야 하며, 비공식적으로 급행료를 지급하는 경우도 흔하다.

대표적으로 우체국의 경우를 보면 송부한 물건을 기다리기 보다는 항상 화물의 수령자가 화물이

도착했는지 여부를 알아보고 찾으러 가는 경우가 많다. 또한 도착했다 하더라도 이런 저런 이유로 물건을 내주지 않아 각 단계별로 급행료를 주면서 물건을 찾아오게 된다. 한두 번의 경험을 한 사람들은 절대 우체국을 통해서 물건을 송달하지 않는다.

□ 세계 최하위 수준의 부패지수

인도는 영국 식민지배 시의 전통과 사회주의적 정책 운영으로 전통적으로 관료의 힘이 매우 강하며 인허가 등 일상 생활은 물론 사업을 할 경우 관료사회와의 접촉이 필수적이다. 특히 모든 기업체들이 크든 적든 세금 문제에 고민하고 있으며 이는 인도의 관료주의를 단적으로 대변하고 있다. 특히 최근 한국업체의 진출이 많음에 따른 비자 갱신 문제가 현지진출업체 직원들의 큰 불만 사항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은 인도에서 많은 인프라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의 하나로 세금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과세가 투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담당자의 자의적인 과세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국제투명성기구(TI)의 2011년 부패인식지수(CPI) 발표에서 인도는 10점 만점의 3.1점을 받으며 182개국 중 95위를 차지하는 오명을 얻었으며 2012년에는 100점 만점의 36점을 받아 176개국 중 94위를 차지했다.

다. 공휴일

인도의 공휴일은 대부분 종교와 연결되어 있다. 인도는 힌두교, 이슬람, 불교, 기독교 등 다양한 종교가 혼재하고 있어 각종 종교 관련 공휴일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휴일이 많은 나라이다. 인도 정부는 매년 공휴일을 연간17일로 제한하고 당해 연도의 공휴일을 매년 별도로 발표하고 있다.

또한 주정부마다 일정 범위 내에서 별도로 공휴일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래에 명시된 공휴일 외에도 지역에 따라 다른 공휴일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비즈니스 출장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미리 현지에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한편 KOTRA 무역관 별 공휴일은 각 무역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4년 인도중앙정부 발표 공휴일(Public Holiday)

일자	요일	공휴일
1.14	화	Milad-Un-Nabi
1.26	일	Republic Day
3.17	월	Holi
4.08	화	Ram Navami

일자	요일	공휴일
4.113	일	Maha Shivaratri
4.18	금	Good Friday
5.14	수	Buddha Purnima
7.29	화	Idu'l Firt
8.15	금	Independence Day
8.18	월	Janamashtami(Vaisnava)
10.02	목	Mahatma Gandhi's Birthday
10.03	금	Dussehra
10.06	월	Idu'l Zuha
10.23	목	Diwali(Deepavali)
11.04	화	Muharram
11.06	목	Guru Nanak's Birthday
12.25	목	Christmas

라. 비즈니스 관련 주요 현지 기관

- Reserve Bank of India(인도중앙은행), http://www.rbi.org.in/
- National Council of Applied Economic Research(인도응용경제연구소) http://www.ncaer.org/
- Confederation of Indian Industry(CII, 전경련에 해당), http://www.cii.in/
- Federation of Indi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FICCI, 인도중앙 상공회의소), http://www.ficci.com/
- Associated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Assocham, 상공회의소) http://www.assocham.org/
- National Software Services Companies (NASSCOM, 인도 소프트웨어 협회) http:// www.nasscom.org/
- Indian Electrical & Electronics Manufacturers' Association (IEEMA, 인도 전기전자 제조업자협회), http://www.ieema.org/
- Electronic Component Industries Association (ELCINA, 인도 전자부품협회) http://www.elcina.com/
- India Trade Promotion Organization (ITPO, 인도무역진흥기관), http://www.indiatradefair.com/
- Automotive Component Manufacturers Association of India (ACMA, 인도 자동차부품 제조업자협회), http://www.acmainfo.com

10. 유관기관 웹사이트

○ FEDERATION OF INDIAN CHAMBERS OF COMMERCE & INDUSTRY (FICCI, 인도상공회의소)
- Delhi office
  ·E-Mail: ficci@ficci.com
  ·Website: http://www.ficci.com

○ ASSOCIATED CHAMBERS OF COMMERCE & INDUSTRY OF INDIA (ASSOCHAM)
- E-mail: assocham@nic.in
- Website: http://www.assocham.org

○ SOCIETY OF INDIAN AUTOMOBILES MANUFACTURERS (SIAM)
- E-mail: siam@siam.in
- Website: http://siamindia.com

○ AUTOMOTIVE COMPONENT MANUFACTURERS ASSOCIATION OF INDIA (ACMA)
- E-mail: acma@acma.in
- Website: http://acmainfo.com

○ ELECTRONIC COMPONENT INDUSTRIES ASSOCIATION (ELCINA)
- E-mail: elcina@vsnl.com
- Website: http://www.elcina.com

○ NATIONAL ASSOCIATION OF SOFTWARE & SERVICE COMPANIES (NASSCOM)
- Email: info@nasscom.in
- Website: http://www.nasscom.org

○ FEDERATION OF INDIAN EXPORT ORGANISATIONS (FIEO)
- Email: fieo@nda.vsnl.net.in; fieo@fieo.org
- Website: www.fieo.org

○ INDIAN ELECTRICAL & ELECTRONICS MANUFACTURERS' ASSOCIATION(IEEMA)
- Mumbai Office 추가해
  ·Email: mumbai@ieema.org; seminar@ieema.org
  ·Website: http://www.ieema.org
- Delhi Office
  ·Emal: delhi@ieema.org
  ·Website: http://www.ieema.org

○ ALL-INDIA ASSOCIATION OF INDUSTRIES (AIAI)
- Email: info@aiaiindia.com
- Website: http://www.aiaiindia.com

○ ALL INDIA RESORT DEVELOPMENT ASSOCIATION (AIRDA)
- Email: info@airda.org
- Website:- http://www.airda.org/

○ ASSOCIATION OF MUTUAL FUNDS IN INDIA (AMFI)
- Email Id: contact@amfiindia.com
- Website: http://www.amfiindia.com

○ MUMBAI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MCCI)
- Email: bcci@bombaychamber.com
- Website:- http://www.bombaychamber.com/

○ ELECTRONIC & COMPUTER SOFTWARE EXPORT PROMOTION COUNCIL (ESC)
- Head Office (New Delhi)
  · Email : info@escindia.com
  · Website: http://www.escindia.in
- Kolkata Office:
  · E-mail: esck@escindia.com
  · Website: http://www.escindia.in/

○ ENGINEERING EXPORT PROMOTION COUNCIL (EEPC)
- Head Office
  · E-mail : eepcho@eepcindia.net
  · Website: http://www.eepcindia.org/

○ FEDERATION OF HOTEL AND RESTAURANT ASSOCIATIONS OF INDIA (FHRAI)
- Email: fhrai@vsnl.com
- Website: http://www.fhrai.com/

○ INDIAN MACHINE TOOL MANUFACTURERS' ASSOCIATION (IMTMA)
- Head Office
  · Email : imtma@imtma.in
  · Website: http://www.imtma.in
- Gurgaon Office
  · Email: imtma.ggn@imtma.in
  · Website: http://www.imtma.in

○ INDIAN ASSOCIATION OF AMUSEMENT PARKS & INDUSTRIES (IAAPI)
- Email: info@iaapi.org, iaapindia@yahoo.com
- Website: http://www.iaapi.org

○ INDIAN MERCHANTS' CHAMBER
- Head Office
  ·E-Mail : imc@imcnet.org
  ·Website: http://www.imcnet.org
- Branch Office
  ·E-Mail : imcvashi@imcnet.org
  ·Website: http://www.imcnet.org

○ ORGANISATION OF PHARMACEUTICAL PRODUCERS OF INDIA (OPPI)
- E-Mail: indiaoppi@vsnl.com
- Website: http://www.indiaoppi.com

○ AUTOMOTIVE TYRE MANUFACTURERS' ASSOCIATION (ATMA)
- E-Mail: atma@vsnl.in, atma@bol.net.in
- Website: http://www.atmaindia.org

○ CONFEDERATION OF INDIAN INDUSTRY (CII, 인도 전경련)
- New Delhi Office (CII)
  ·E-mail: info@cii.in
  ·Website: http://www.cii.in/

○ INDIA TRADE PROMOTION ORGANISATION (ITPO, 인도무역진흥기구)
- E-mail: info@itpo-online.com
- Website: http://www.indiatradefair.com

○ ALL-INDIA MANUFACTURERS ORGANIZATION (AIMO)
- Head office
  ·Website: www.aimoindia.com
  ·E-Mail: aimoindia@aimoindia.com

11. 무역관 안내

가. 무역관 연락처

○ 주 소 : #2, 12th Floor, DLF Cyber Terraces, Building 5-A, DLF Cyber City Phase-III, Gurgaon – 122002, Haryana, India
○ 전 화 : (91-124) 4628-500
○ 팩 스 : (91-124) 4628-501
○ E-mail : ktcdelhi@ktcdelhi.net

나. 무역관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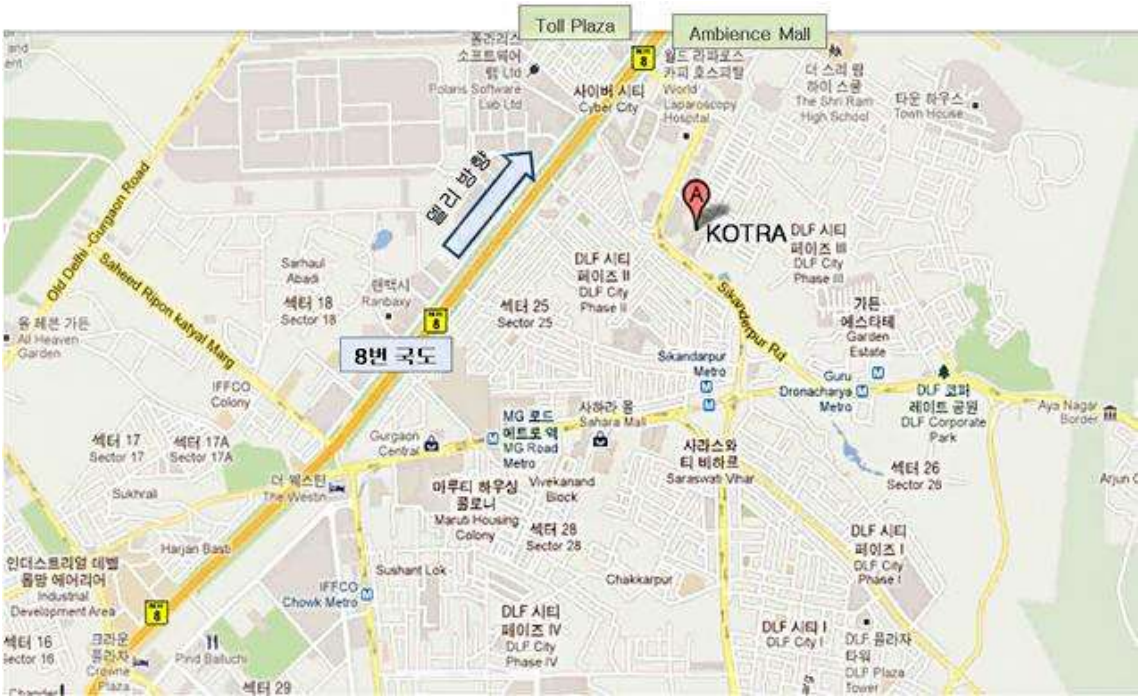

뉴델리 무역관은 뉴델리 서남쪽 약 20km 떨어진 위성도시 Gurgaon에 위치한다.

무역관까지는 인도 내 지하철, 버스 등 교통수단의 미발달로 공항 등에서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며 약 25분 정도 소요된다. 택시는 공항 내 Travel Desk를 이용하여 선불제 택시를 이용하거나 공항청사 밖에 대기하고 있는 택시를 이용할 수 있으나, 미터기를 켜지 않고 차후 지나치게 많은 돈을 요구하거나 미터기를 켜더라도 외국인들이 길을 잘 모르는 점을 이용하여 길을 돌아가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야 한다.

승차 전 운전자와 협상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며, 공항-뉴델리 무역관 간 요금은 주간 기준 Radio Taxi(콜택시)를 이용할 경우 500루피 가량 소요된다. 운전기사 중 영어사용 불가자가 많으므로 무역관 주소에 대한 메모를 보여주거나 Travel Desk의 협조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무역관은 델리에서 NH-8(8번 국도)를 타고 서남쪽으로 이동하다가 DLF Gateway Tower가 보이는 Vishwakarma Chowk에서 DLF Cyber City 방향으로 빠져나오면 RBS(Royal Bank of Scotland) 뒤편에 있는 DLF Cyber Terraces 5번 빌딩에 위치한다.
지하철을 이용할 경우 Yellow Line의 Huda Metro 방면 Sikandarpur Metro에서 하차하여 릭샤 등을 이용하여 당관이 위치한 5번 빌딩으로 이동하는 것이 편리하다.

다. 무역관 업무안내

○ 관할지역: 인도(뭄바이, 첸나이, 방갈로르 무역관 관할지역 제외), 네팔

○ 시장개척사업

- 중소기업 해외 세일즈 출장지원
  관할 지역을 방문하는 한국기업의 현지에서의 바이어 상담 주선, 호텔 예약, 안내 등 세일즈 제반 활동을 지원하는 일을 한다.
- 무역사절단 지원
  한국의 수출입업체를 모집, 무역사절단을 구성 해외에 파견하여 바이어/셀러와의 상담을 주선하여 직접적인 수출성과가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KOTRA 본사, 지자체 등의 단위로 파견되는 중소기업 세일즈단에 대한 현지 수출 상담회 개최를 지원하고, 시장동향 정보 제공, 현지 안내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
- 방한 구매단 유치 및 개별 바이어 방한 유치
  한국으로부터의 제품 수입에 관심이 있는 바이어를 대상으로 단체 혹은 개별적으로 방한을 유치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조사사업

- 수출 유망 상품 및 산업별 시장동향 조사
  특정 상품의 수요 및 생산동향, 수출입 추이 분석 등 현지 시장동향을 파악하여 국내업계에 전파하는 일을 한다.
- 수출 직결정보 수집 및 거래알선
  박람회, 전시회, 무역사절단, 한국상품구매단 등 각종 수출마케팅 과정에서 입수되는 바이어의 구매 오퍼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관련업계에 전파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원격지에 소재한 한국수출업체와 바이어간의 교신에 따른 애로사항도 함께 지원한다.
- 해외시장 조사대행
  국내업체로부터 바이어 발굴 및 해외시장 동향 조사 의뢰를 받아 해외 무역관에서 자체 조사 후, 국내업체에 해당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지사화사업 추진

지사화 사업은 해외지사 설치 여력이 없는 한국의 기업들이 해외무역관을 지사로 활용토록 하는 사업으로서, 뉴델리 무역관을 지사로 선정(평균참가비: 1개사당 300만원) 하면 1년간 바이어 발굴부터 수출계약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 뉴델리해외무역관 지사선정업체 지원내용

· 시장정보 제공(품목별 수요/수출입/가격/경쟁/신제품 동향 등)
· 품목별 바이어정보 제공 및 바이어 신용조사
· 관심바이어 발굴, C/L발송, 카타로그 배포
· 관심바이어 FOLLOW-UP 지원
· 현지 세일즈 출장지원(호텔예약/상담주선/상담장제공/통역지원 등)
· 국제입찰 참가지원
· 인콰이어리 제공
· 기타 수출 계약시까지의 제반 사항 등

○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 정보제공: 무료 이메일 뉴스레터 서비스, 설명회 등 연수사업
- 상담·컨설팅: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 상담서비스 제공
- 판로 개척지원: 상담회, 시장개척단 등 사업을 통해 진출기업 현지 내수시장 및 제3국 수출 확대 지원
- 애로 해소지원: 투자기업 애로사항 접수 및 현지 공관과의 협력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한 애로 해결 지원
- 맞춤형 지원서비스(유료서비스): 해외 현지 법인 설립 지원서비스(OPS 사업)

뉴델리 무역관 투자기업지원센터(+91-124-4628-531) 또는 KOTRA 본사 해외투자지원단(02-3460-7365)에 문의 요망